

하 권

환 경 법 전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2024년 6월



환 경 부

일 러 두 기

1. 수록 법령의 범위

가. 이 법령집은 2024년 6월 현재 주요 시행중인 환경부 소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수록하였으며, 별지 서식은 제외하였습니다.

나. 개정·공포되어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의 일부 조항은 음영 처리하였습니다.

2. 수록순서

법령 수록은 분야별로 배열하였으나 일부 관련이 있는 법령인 경우에는 같이 게재하였습니다.

3.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연혁의 표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의 연혁을 본문 법령제명 아래에 법령의 공포 연·월·일과 공포번호를 제·개정 순서에 따라 표시하였습니다.

4. 본 법령집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률내용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정책→환경정책일반)에 게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제·개정 되는 법령도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에 게재하겠습니다.

전 체 목 차

상 권

제1편 녹색전환·환경일반

0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3
0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5
0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5
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시행령	131
0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	147
0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93
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229
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61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73
10.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633
1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651
12.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669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685
14. 환경분쟁 조정법·시행령·시행규칙	735
15.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789

16.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807
17.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813
18.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819

제2편 기후변화·대기환경

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827
0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913
03. 한국환경공단법·시행령	993
0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015
05.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1091
0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599
07.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647
0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1777
09.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787
10.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1857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1923
1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961

중 권

제3편 수자원

0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987	
02.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 2093	
0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2109	
0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령 ····· 2149	
05. 물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2161	
0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203	
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2277	
08.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 2325	
09.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2485	
10.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2491	
11.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 2499	
1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2505	
13.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 2517	

제4편 물환경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573	
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705	
03.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 2819	
0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827	
05.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 2947	

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955	
07. 물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 3017	
0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 3387	
09.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 3497	
1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 3505	
11. 한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 3529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723	
13.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 3835	

제5편 물이용

01. 먹는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3845	
0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3987	
0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4001	
0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031	
05.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 4047	
06. 상수원 관리규칙 ····· 4263	
07.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4285	
08.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 4301	
09.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 4447	
10.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규칙 ····· 4573	

하 권

제6편 자연보전

01.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	4603
0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4617
0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635
0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4679
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707
0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	4759
0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4779
0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809
09.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4861
10. 습지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4883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929
1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199
13.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5229
14.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5355
1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5483

제7편 자원순환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01

0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5811
0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5859
0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5877
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973
06.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6157
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169
08.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6269
0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6681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6735

제8편 환경보건

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6813
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877
03.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7011
04.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시행규칙	7107
0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7179
0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7251
07.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7277
0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477
09.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7613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701

제6편 자연보전

01.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	4603
0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4617
0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635
0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4679
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707
0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	4759
0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4779
0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809
09.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4861
10. 습지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4883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929
1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199
13.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5229
14.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5355
1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5483

제6편 자연보전

01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

목 차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4607	제1조(목적) 4607
제2조(법인격) 4607	
제3조(사무소) 4607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4607
제3조의2(정관) 4607	
제4조(등기) 4608	제3조(설립등기) 4608
	제4조(이전등기) 4608
	제5조(변경등기) 4608
제5조(임원) 4608	
제6조(대리인의 선임) 4608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4608
제7조(직원의 임면) 4608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4609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4609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4609
제9조(사업) 4609	
	제9조(사업) 4610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4610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4610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4610
제11조(출자 등) 4610	제12조(출자 등) 4610
제12조(수수료의 징수) 4610	
제13조(자금의 차입) 4610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4611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4611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4611
제15조(잉여금의 처리) 4611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4611
	제16조(예비비) 4611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4611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4612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4612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4612	
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4612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4612	
제22조(공단의 규정) 4612	
제23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4612	
제24조(지도·감독) 4612	
제25조(민법의 준용) 4613	
제26조(벌칙) 4613	
부칙 4613	부칙 4613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정 2016. 5.29 법률 제14226호 개정 2018.10.16 법률 제15830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2. 6.10 법률 제1890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제정 2017. 5.29 대통령령 제28076호 개정 2019. 1.15 대통령령 제2948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5.>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①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 제3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과 소재지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그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4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 소재지: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2. 새로운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 3.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② 공단은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2. 이전한 하부조직의 종전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3. 이전한 하부조직의 새로운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 4.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이전한 사실 ③ 공단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주된사무소의 또는 하부조직의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만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3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된 후 2주일 이내 2.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 변경된 후 3주일 이내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6. 10.>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치료 4.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6. 자연공원의 청소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0.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4.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2.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 3.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공단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입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자금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공단은 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4조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계획서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填)한 후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적립한다. 제16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법을 제14226호(2016. 5.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①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단은 이 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22조(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자연공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4226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채권 등 매인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공단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과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로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8076호, 2017. 5. 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89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2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각각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국립공원공단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한 재산,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여 또는 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7조에 따라 공단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공단 재산은 그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장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30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를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국립공원공단 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제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국립공원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03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편 자연보전

0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4621	제1조(목적) 4621
제2조(법인격) 4621	
제3조(설립등기) 4621	
제4조(정관) 4621	
제5조(사업) 4622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4622	
제6조(임원) 4623	
제7조(임원의 직무) 4623	
제8조(임원의 임기) 4623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4623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4624	
제11조(이사회) 4624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4624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4625	
제14조(대리인의 선임) 4625	
제15조(운영 재원) 4625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4625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4625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4625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4625	
제18조(차입금) 4625	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4625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4626	
제20조(수익사업 등) 4626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4626
제21조(사업연도) 4626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4626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4626
제23조(결산서의 제출) 4626	제7조(결산서의 제출) 462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잉여금의 처리) 4626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4627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4627
제26조(출입·검사 등) 4627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4627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4627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4627
제29조(비밀엄수의무) 4628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628	
제31조(「민법」의 준용) 4628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628	
제33조(벌칙) 4628	
제34조(과태료) 4628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628
부칙 4628	부칙 462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13. 6.12 법률 제11880호 개정 2014. 3.18 법률 제12453호 2018. 6.12 법률 제1565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생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정관) ① 국립생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정 2013. 9. 9 대통령령 제24718호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6. 12.) 1.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2.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적응 등에 관한 연구 3. 기후대별 지구생태 변화 관찰 및 극한기후 적응 연구 4.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 생태계교란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의 생태계 위해(危害) 관리에 관한 연구 6.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생태계의 순환,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 등 생태계의 존재와 기능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말한다)의 유형화, 평가 및 지속적 활용방안 연구 7. 동식물 등 생태 관련 전시, 체험 및 홍보 시설 조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9. 국내외 생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및 생태계 정보망 구축·운영 사업 10. 생태관광(「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 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 12. 생태계 조사·연구와 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5.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2. 보전·증식·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평가 4. 멸종위기 야생생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 6. 12.] 제6조(임원) ①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립생태원 증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①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재원)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입금) 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립생태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빌린 곳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생태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국립생태원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연도) 국립생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생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국립생태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국립생태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국립생태원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 국립생태원 관련 기념품·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국립생태원에서 사육·재배한 동식물 등의 보급 4. 국립생태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국립생태원 시설의 임대 6. 국립생태원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③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생태원의 경영상태,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 및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출입·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생태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국립생태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립생태원은 연구·전시·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전시·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 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성·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사업 계획 및 결과의 우수성 등 3.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견 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력의 수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국립생태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비밀엄수 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민법」의 준용) 국립생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880호, 2013.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생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령」 제41조제8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4718호, 2013. 9. 9.> 이 영은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국립생태원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13. 6. 12]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생태원의 임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한다. [시행일: 2013. 6. 12] 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생태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 2013. 6. 12] 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국립생태원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생태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명칭은 국립생태원의 명의로 본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생태원은 설립 당시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생태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생태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13. 6. 12] 제9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본다.	〈32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2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여러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2453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0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국립생태원은 기존에 복원센터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4633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300	500
1)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가 국립생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가 국립생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	150	250

0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개정 2012. 3. 21.)	
제1조(목적) 4641	제1조(목적) 4641	제1조(목적) 4641
제2조(정의) 4641		
제3조(금지행위) 4642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4642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제2장 허가과 신고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4643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4643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4643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4644	제4조(허가의 변경) 4643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4644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4644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4644
제6조(결격사유) 4644		
제6조(결격사유) 4645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4645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4647	제7조(허가의 협의) 4647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4647	
	제9조(수정·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4648	
제9조(조건부 허가) 4648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4648	
제10조(허가의 제한) 4648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4649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4649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4649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4649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4649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4650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4650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4650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4652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465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4653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4653 제16조(해양오염방지) 4654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4656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4657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4657 제20조(시정명령) 4658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658 제21조의2(실태조사) 4659 제22조(홍보 및 교육) 4660 제6장 벌칙 제23조(벌칙) 4660 제24조(벌칙) 4660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4653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4653 제5장 폐기물 처리 <개정 2012. 3. 21.> 제18조(폐기물 처리) 4653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4654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4655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4655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4655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4656 제6장 남극활동감시원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4657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4657 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4658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659 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4659 제8장 벌칙 <개정 2012. 3. 21.>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4653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465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5조(벌칙) 4661 제26조(양벌규정) 4661 제27조(과태료) 4661 부칙 4662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661 부칙 4662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661 부칙 466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2004. 3.22 법률 제195호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12.26 법률 제9256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 3.23 법률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4.10.15 법률 제12768호 2018. 1.16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2018.10.16 법률 제15787호 2020. 3.31 법률 제17159호 2020. 5.26 법률 제17304호 2024. 1.6 법률 제19999호(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봉(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生態系)를 말한다. 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 항공기·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4.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과학기지	제정 2005.10.25 대통령령 제19094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3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3.21 대통령령 제23670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3.23 대통령령 제24474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4.17 대통령령 제28799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9. 4.16 대통령령 제29685호 제1장 총칙 <개정 2012. 3. 21.>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정 2010. 3. 8 외교통상부령 제103호 개정 2013. 3.23 외 교 부 령 제 1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를 설치하거나 과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5호의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협 의당사국으로 인정된 남 극조약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5.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 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 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6. "환경보호위원회"라 함은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자문 및 권고를 목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7. "남극광물자원"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화석연료(化石燃料)와 금속·비금속광물을 포함한 무생 물로서 재생되지 아니하는 자원을 말한다. 8. "남극활동감시원"이라 함은 남극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 여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 또는 우리나라 등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 필요한 조사·감시 등을 하도 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 9. "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 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조류·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3. 31.> 1.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2.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식물"이란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 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수송·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절취(竊取)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제2장 허가과 신고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4조(허가의 변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2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남극활동계획서 2. 환경영향평가서 3. 폐기물관리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 3. 31., 2014. 10. 15., 2018. 10. 16., 2020. 3. 31., 2020. 5. 2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제8조에 따른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나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음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전문개정 2012. 3. 21.]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세부 내용 2.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3. 남극활동에 이용하는 장비 및 시설 4. 남극활동 참가자 [전문개정 2012. 3. 21.]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 3. 31., 2014. 10. 15., 2018. 10. 16., 2020. 3. 31., 2020. 5. 2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4. 1. 16.)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일: 2024. 7. 17.] 제6조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①제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 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로 예상되는 경우 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 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 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남극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9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고, 남극조약협약의당사국회의 개최 120일 이전까지 남극조약협약의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 방안) 사.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아.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약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약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제3항에 따라 공개 또는 송부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⑤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방법,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1. 허가신청시 제출된 서류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2.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7조(허가의 협의)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④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⑤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1.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2. 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과학 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3. 공무수행을 위한 정부조사단 등의 방문 4. 법 제22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 [전문개정 2012. 3. 21.] 제9조(수정·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보완됨으로써 처음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2. 외교부장관이 수정·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3. 21.]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 보호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2020.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개정 2012. 3. 21.]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전문개정 2012. 3. 21.]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2. 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3. 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③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 내에 남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④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남극활동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⑤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의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하거나 남극지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과학 연구활동 또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2. 박물관·식물원·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 등에 전시할 목적인 경우 3. 동물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다만, 남극토착 포유류나 조류의 포획은 다른 전시장에서 표본을 얻을 수 없거나 보존조치의 목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채취량 또는 반출량(이하 "포획량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 2.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 등이 자연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3.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이하 "포획 등"이라 한다)이 관련 생태계의 균형 및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획 등을 하려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 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특별보호종의 포획 등이 수행하려는 과학 연구활동에 필수적인 것 2. 특별보호종의 포획량 등이 그 종의 생존과 개체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일 것 [전문개정 2012. 3. 2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毀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착륙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박테리아·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3. 21.]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통상적인 과학기지 운영을 위하여 기지 안에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지 주변에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2.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항공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를 이륙·착륙시키는 경우 3.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4.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화약이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3. 2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5장 폐기물 처리 <개정 2012. 3. 21.> 제18조(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제16조(해양오염방지)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자신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남극지역의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군함은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사성 물질 2. 전지류 3. 액체 및 고체 연료 4. 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포함한 폐기물 5.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포함한 폐기물 6.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7. 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를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연료용 드럼통 9.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10.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11. 반입된 조류제품 12. 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은 야외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소각로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은 제18조제1항제8호의 폐기물로 처리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으로부터 반출·제거되거나 소각·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병화가 없는 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병화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기록하여야 한다. 1. 1군: 하수 및 생활폐수 2. 2군: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3. 3군: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4. 4군: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5. 5군: 방사성 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감축·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방안 2.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관리방안 3.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4. 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④ 법 제5조제3호의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진행 중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남극환경모니터링을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영향의 정도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규정에 맞는지 여부 2.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 3.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영향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남극환경에 미치는 경우 그 남극활동을 정지·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할 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①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 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장비·선박·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④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⑤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지명·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남극활동을 종료한 경우 :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2. 남극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년 4월 30일까지(4월 30일 이전에 남극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전문개정 2012. 3. 21.] 제6장 남극활동감시원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시설물·장비·선박·항공기 및 보존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임명 종료에 관한 사항을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기지에서 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2.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련 전문가 3. 정부 내 관계 행정기관에서 남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3. 21.]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제20조(시정명령) ①외교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 -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안 - 남극환경보호 연구 -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육성·지원 -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 - 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 -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 ③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3. 31.>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0. 16.> 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2. 3. 21.]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財源) 확보 방안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남극연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 남극에 관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현황 - 남극환경보호 연구 현황 -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현황 - 남극과학기지와 연구기반 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22조(홍보 및 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력 등 7.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만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남극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장 벌칙 <개정 2012. 3. 2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따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20. 3. 31.> ②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20. 3. 31.> ④ 삭제 <2013. 3. 23.> ⑤ 삭제 <2013. 3. 23.> 부칙 <제7195호, 2004. 3.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극활동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남극지역에서 남극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남극활동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9094호, 2005.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3호, 2008. 2. 2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칙 <제103호, 2010.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별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⑦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1> 까지 생략 <162>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의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① 까지 생략 ③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2977호, 2011. 6. 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각각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제9256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호 및 제2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4항·제5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23670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4424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12768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5344호, 2018. 1. 16.>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787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극활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7159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4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9호, 2024. 1. 1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474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99호, 2018. 4. 17.>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685호, 2019. 4. 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4671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4672

[별표 1] (개정 2012.3.21)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활동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활동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활동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간 남극활동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취소		
나.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취소		
다.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1) 남극활동 참가자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1개월	활동정지 3개월	취소
2) 남극활동 목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1개월	활동정지 3개월	취소
3) 남극활동 경로를 현저히 이탈한 경우(50퍼센트 이상 이탈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1개월	활동정지 3개월	취소
4) 승인을 받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활동하거나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6개월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 승인지역 외의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활동하거나 승인지역 외의 지역에서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3개월	활동정지 6개월	취소
6) 승인된 수량보다 많은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6개월	취소	
7) 승인된 종류 외의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6개월	취소	
8) 승인조건 외의 남극토착동식물에 위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포획 등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3개월	활동정지 6개월	취소
라.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1)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활동정지 3개월	활동정지 6개월	취소
2)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활동정지 1개월	활동정지 3개월	취소

[별표 2]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300	500	7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300	500	700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700	1,000	1,00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6호	300	700	1,0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7호	300	500	700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8호	500	700	1,00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9호	700	1,000	1,00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4677

[별표]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300	500	700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300	500	700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700	1,000	1,00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6호	300	700	1,0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7호	300	500	700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8호	500	700	1,00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9호	700	1,000	1,000

제6편 자연보전

0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4683	제1조(목적) 4683	제1조(목적) 4683
제2조(정의) 4683		
제3조(적용 범위) 4684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4684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4684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685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4685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4685	제3조(조사계획) 4686
제6조(기초조사 등) 4686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4686	제3조의2(도서조사원) 4687
제6조의2(도서조사원) 4687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4687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4687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4687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4688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4689
제8조(행위제한) 4689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4690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4690
제9조(허가) 4690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4691
제10조(출입금지 등) 4691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4692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4692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4692	제6조(권한의 위임) 4693	
제12조의2(토지등의 매수) 4692	제7조(보고) 4694	
제12조의3 삭제 4693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694	
제13조(위임 및 위탁) 469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벌칙) 4694		
제15조(양벌규정) 4694		
제16조(과태료) 4695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695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4695
부칙 4695	부칙 4695	부칙 469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1997.12.13 법률 제5447호 개정 1999. 5.24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 2002.12.30 법률 제6946호 (환경정책기본법) 2003.12.30 법률 제7019호 2004. 2. 9 법률 제16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2007. 5.17 법률 제8465호 2009. 5.21 법률 제9696호 2011. 4.28 법률 제10612호 2011. 7.28 법률 제10974호 2011. 7.28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18 법률 제12458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3. 3.21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8. 8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 2.13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2. "자연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종유석(鐘乳石) 등과 같이 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 또는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정 1998. 6.20 대통령령 제15844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 등중개정령) 2004. 6.25 대통령령 제18443호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4호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18. 7. 3.>	제정 1998. 7. 6 환경부령 제48호 개정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4. 6.30 환경부령 제158호 2007.11.16 환경부령 제258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4.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存置)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8.]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5.>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 6. 25.>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조사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6. 25.> 1. 동·식물의 분포 및 현황 2. 식생현황 3. 특이한 지형·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아닌 자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15.> ④ 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5., 2007. 11. 15.>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 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제3조(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도서조사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서조사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1. 16.>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제3조의2(도서조사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6. 30.]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6. 30.]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 흙, 돌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해당 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특정도서가 속한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와 지도 2. 특정도서 안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3. 그 밖에 특정도서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1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③ 해뜨기 전과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8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8., 2012. 2. 1.> 1.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증축 2. 개간(開墾), 매립, 준설(浚渫) 또는 간척 3.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4.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5. 입목·대나무의 벌채(伐採) 또는 훼손 6. 흙·모래·자갈·돌의 채취(採取), 광물의 채굴(採掘) 또는 지하수의 개발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8. 도로의 신설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 도서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搬出)하는 행위 10. 특정도서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 6. 3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搬入)하는 행위 11.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3. 지질, 지형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 2024. 2. 13.> 1. 군사·항해·조난구호(遭難救護) 행위 2.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4.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9조(허가)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 1.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2. 행위자 3. 행위의 기간 4. 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5. 행위의 내용·규모 6.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7., 2004. 6. 30., 2007. 11. 16.>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 2024. 2. 1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보수·개축(改築) 4.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0조(출입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 2024. 2. 13.〉 1. 도서의 주민이 생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항해·조난구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①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 위반시의 벌칙 ②시·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 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제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2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삭제 (2011. 4. 28.)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6. 25.] 제6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6. 25.>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및 이에 관한 사항의 공고 2.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8. 8., 2007. 11. 15.> 1.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1의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정도서 안에서의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의 접수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위의 허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벌칙)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7. 28.]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 5.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조(보고)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 3.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자 5.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부칙 <제5447호, 1997. 12.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982호, 1999. 5. 2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 7. 3.] 부칙 <제15814호, 1998.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⑮ 생략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부칙 <제48호, 1998.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46호, 2002. 12. 30.〉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 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	제5조 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3호, 2004. 6. 2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4호, 2007. 11. 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9025호, 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8호, 2004. 6. 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 2007. 11. 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7019호, 2003.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7호, 2004. 2.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8465호, 2007. 5.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9696호, 2009. 5.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12호, 2011. 4.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시·도특정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특정도서는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로 본다. 부칙 〈제10974호, 2011. 7.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257호, 2012. 2.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2458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2. 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4. 3. 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도서”를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로”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9251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⑯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9590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2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③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4705

[별표] 〈신설 2018. 7.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 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마. 법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150	250	300

제6편 자연보전

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4713	제1조(목적) 4713	제1조(목적) 4713
제2조(정의) 4713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4713	
제3조(국가 등의 기본 책무) 471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714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 4714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 변경 · 시행 등) 4714	
	제4조(시 · 도별계획의 수립 · 변경 · 시행 등) 4715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4716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4716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4716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4716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4717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4717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4717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4719	
	제7조(위원회의 운영) 4719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4720	
제8조(허가 등) 4720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4721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4721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4722	제7조(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723
제9조(결격사유) 4723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4724		제8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4724
제11조(과징금) 4724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724	
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4725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4725	
	제13조(검사관의 위촉) 4726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472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폐원) 4727	제15조(검사관의 해촉) 4726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4727 제10조(휴원·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4727 제11조(폐원·폐관 시의 조치사항) 4727 제12조(폐원·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4728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4728
제14조(보유동물의 조사 등) 4728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4729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4729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중) 4730
제15조(금지행위) 4729		
제16조(안전관리) 4730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4731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4732
제17조(질병관리) 4731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4731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4733
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 4732	제19조(교육대상자) 4732	제18조(교육기관) 4733 제19조(교육의 내용 및 시간) 4734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 4733	제20조(운영·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4734	제20조(운영·관리 기록 및 보존) 4734
제20조(운영·관리 기록 및 보존) 4734		
제21조(자료의 제출) 4735	제21조(조치명령) 4736	제21조(동물원·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4735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4735	제22조(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의 권역·업무 및 지정요건) 4736	제22조(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4737
제23조(조치명령) 4736	제23조(비용지원) 4738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4738
제24조(거점동물원·수족관의 지정·운영) 4736		
제25조(비용지원 등) 4737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4739	
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 4738		
제27조(청문) 4739		
제2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473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741		
제30조(벌칙) 4741		
제31조(양벌규정) 4742		
제32조(과태료) 4742	제25조(규제의 재검토) 4742	제24조(규제의 재검토) 4742
부칙 474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742	
	부칙 4743	부칙 474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22.12.13 법률 제1908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고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증식하고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4. “해양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 5. “담수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강, 호소(湖沼) 등 물에 사는 생물을 말한다. 6. “보유동물”이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위탁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이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 등의 기본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적정 전시문화 조성을 통한 보유동물의	전부개정 2023.12.12 대통령령 제3395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전부개정 2023.12.14 환경부령 제106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지 증진 및 국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확보와 안전하고 건강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유동물의 전시, 관리, 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홍보 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추진계획 3. 보유동물의 복지와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 방안 4. 동물원 및 수족관 내 공중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방안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종합계획 및 시·도별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시·도별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도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시·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3조제2항의 사항 ④ 시·도지사는 시·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시·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도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도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 2.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 3.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공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의 지원을 받거나 동물원·수족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평가의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서식환경 등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안전관리 및 질병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2)가)(1)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코끼리과·코뿔소과·하마과·곰과 전종 2. 식육목 중 사자, 호랑이, 퓨마, 표범, 설표(雪豹), 재규어, 스라소니, 치타, 코요테, 자칼, 늑대, 하이어나, 리카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3. 영장목 중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필리핀원숭이, 개코원숭이 등 4. 우제목 중 물소, 들소, 기린, 낙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5. 뱀목 중 노랑아나콘다, 붉은꼬리보아, 듀메릴보아, 그물 무늬비단왕뱀, 자수정비단왕뱀, 버마비단왕뱀, 아프리카비단왕뱀, 살모사류, 코브라류, 바다뱀류, 아메리카독도마뱀, 멕시코독도마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6. 악어목 전종 7. 왕도마뱀과 중 코모도왕도마뱀, 크로커다일왕도마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로서 보유동물의 보호와 건강·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유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그 밖에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도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 2. 보유동물의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유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유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보유동물 중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부차관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3.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4. 동물원의 휴·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폐관(이하 “휴·폐원”이라 한다)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5.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신청의 경우 가.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및 평면도 나.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마. 동물원의 휴·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바.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나.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및 변경허가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3.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4.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른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별표 1 제3호가목3)에 따른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별표 1 제5호 다목에 따른 보유동물 중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3.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허가권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되, 법 제12조제1항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이 법(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7. 제10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가 취소(제10조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중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검사관이 현장조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과징금) ① 허가권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거나 공중보건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 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 또는 부과·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구체적인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2. 제2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청당한 사유 없이 시설·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검사관의 위촉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유동물의 보전·사육·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의 지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확인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 제13조(검사관의 위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동물원 검사관 및 수족관 검사관의 수는 각각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검사관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최근 3년 이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검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검사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검사관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요청의 대상인 검사관은 그 검사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검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검사관의 해촉)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받았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폐원)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휴원일 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보유동물 관리계획, 향후 개방계획(이하 “휴원 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휴원 시 관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 또는 폐관하려는 경우 보유동물 이관 등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실하게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검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검사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검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방하지 않는 일수는 제1항에 따른 의무 개방 일수에 포함한다. 제10조(휴원·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원·휴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휴원·휴관 사유서 2. 휴원·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 3. 향후 개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휴원·휴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원·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제11조(폐원·폐관 시의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보유동물의 이관 조치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휴원·휴관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원·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폐원·폐관 신고를 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휴·폐원 신고, 허가증 반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유동물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유동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폐원·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일 또는 폐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원·폐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2.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폐원·폐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 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이하 “동물종 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② 동물종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종 개체 현황 및 번식을 위한 관리 현황 2. 사육시설 현황 3. 온도, 습도, 채광, 조도 등 동물종의 서식환경 4. 동물종의 건강·영양관리 현황 및 복지 상태 5. 동물원·수족관 내 동물종, 직원 및 공중을 위한 안전시설 현황 6.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 체계 7. 그 밖에 해당 동물종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조사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금지행위)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 2.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 3.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1.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2.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3.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동물중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실태조사”는 “동물중 조사”로 본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보유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 학술 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다른 국공립수목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 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중)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물원·수족관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포획·격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질병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1. 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피모(被毛)·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변검사 3. 영상진단검사 4. 혈액검사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질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 해양수산부장관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질병: 질병관리청장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유동물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질병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중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동물원·수족관 질병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가 필요한 대상 중, 검사항목,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제1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거나 보유동물 현황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2.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란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수의사 및 비상근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한다)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3. 그 밖에 보유동물의 안전 및 질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주기·경비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보유동물의 포획 조치 2. 보유동물의 탈출 방지 및 이동 제한을 위한 시설 설치 3. 보유동물의 격리 조치 제18조(교육기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원 나.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야생동물의 보전·연구·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족관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생물 및 담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운영·관리 기록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중 및 개체 수 2.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기록 4.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운영·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사항: 10년 2.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사항: 10년 3. 법 제20조제3호에 따른 사항: 5년 4.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사항: 5년	동물의 보전·연구·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물원·수족관별 교육실적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교육의 내용 및 시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운영·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육시설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기록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 시·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기,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및 사육사 보유 현황 기록 3. 보유동물의 질병 치료에 관한 기록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사고에 관한 기록 제21조(동물원·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검사: 허가 후 5년마다 1회 2. 수시검사: 허가권자가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시설·장비 등의 실태 및 보유동물 관리 실태, 근무자의 근무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여부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 3.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 준수 여부 5. 교육대상자의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조치명령) ①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거점동물원·수족관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거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거점동물원·수족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검역 지원 3.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 지원 4. 종 보전을 위한 종 보전·증식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1조(조치명령)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의 권역·업무 및 지정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	일시·대상 및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미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거점동물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동물원·수족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비용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에 대한 자문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대한 자문 3.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4.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22조(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및 평면도 2. 인력 및 장비 현황 3. 보유동물 명세서 4.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의 보전·복원 및 관련 조사·연구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 등의 생태·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홍보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수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보유동물의 보전·증식, 조사·연구, 전시·교육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육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연구 3. 국내의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육 및 관리 방법의 개선 연구 5.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수의(獸醫) 또는 수산질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등의 인력 양성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 동물원·수족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공 동물원·수족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2. 제24조제3항에 따른 거점동물원·수족관의 지정 취소 제2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원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폐원 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	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공공 동물원·수족관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유역한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관·폐관 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 법 제22조에 따른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30조(벌칙)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4.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청문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2.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제3항에 따른 휴·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부칙 〈제19086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휴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휴원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원·휴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사·질병 발생 위험 중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부칙 〈제33950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행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제16조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미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부칙 〈제1066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관하여 의무 개방 일수를 적용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의무 개방 일수를 30일로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관리 기록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요건(제9조제1항 관련)	4749
[별표 2]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	4752
[별표 3]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 시설 및 인력 요건(제22조제3항 관련)	4753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4754

[별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요건(제9조제1항 관련)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가. 동물원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가) 일반기준

- (1) 보유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 및 사육면적을 확보할 것
- (2) 보유동물의 섭식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과 형태의 먹이, 깨끗한 식수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 것
- (3)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사육 및 전시 시설에는 울타리, 해자(孩子), 격벽(隔壁), 철망 등을 설치하여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할 것
- (4) 행동풍부화를 위한 물품 또는 시설을 설치할 것
- (5)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것
- (6) 보유동물 질병관리를 위해 검역 또는 방역 시설과 진료 또는 격리 시설을 갖추 것

나) 종별 기준

(1) 포유류

- (가) 주행성(晝行性) 포유류는 자연채광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
- (나) 보유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은신처 및 잠자리를 설치할 것
- (다) 번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끼를 낳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

(2) 조류

- (가) 자연채광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 다만, 자연채광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조명을 활용할 수 있다.
- (나) 보유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햇대 등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 (다) 번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란장을 제공할 것

(3) 파충류 · 양서류

- (가) 자연채광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 다만, 자연채광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조명을 활용할 수 있다.

- (나) 수생동물의 경우 물을 흘려보내거나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는 등 동물 특성에 맞는 수환경을 제공할 것

2)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가) 보유동물의 종이 총 70종 이상인 경우

- (1)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 수의사를 포함한다)을 갖추 것. 다만,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이라 한다)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근 수의사 1명 이상 또는 비상근 수의사 2명 이상을 갖추 것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교의 동물원 보유동물의 분류군별로 각 2명 이상을 갖추 것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 분야의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자연환경관리 분야의 기술사, 생물분류(동물) 분야의 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동물자원학, 애완동물학, 생물학, 생태 · 생리학 또는 산림자원학 등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수의사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라) 동물의 사육 및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보유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

- (1)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 수의사를 포함한다)을 갖추 것. 다만,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근 수의사 1명 이상 또는 비상근 수의사 2명 이상을 갖추 것

- (2) 비교의 동물원 보유동물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가)(2)(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갖추 것

- (가)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한 경우: 3명 이상

- (나)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명 이상

비고: 동물원 보유동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양서류

나. 수족관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가) 일반기준

- (1) 수족관의 수조는 보유동물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크기와 수심을 갖추 것
- (2) 보유동물에게 제공하는 물과 먹이를 깨끗하고 신선한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 것
- (3) 수온, 온·습도, 조명, 소음 등 사육환경을 보유동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할 것
- (4) 사육수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하며, 적절한 수질 관리 프로그램을 갖추 것
- (5) 사육수의 위생을 위하여 여과시설과 소독시설을 포함한 생명유지장치(Life Support System, LSS)를 갖추 것
- (6) 비상시에도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 것
- (7) 보유동물의 행동풍부화를 위한 물품 또는 시설을 갖추 것
- (8) 보유동물 질병관리를 위해 검역 또는 방역 시설과 진료 또는 격리 시설을 갖추 것

나) 종별 기준

- (1) 포유류(고래목으로 한정한다)는 치료, 분리 사육을 위해 별도로 구획된 예비 수조 및 치료 공간을 확보할 것
- (2) 포유류[기각류(지느러미 발을 가진 포유류 무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수중생활 및 육상생활이 모두 가능하도록 수조 외에 육상 공간을 확보할 것
- (3) 파충류(바다거북류로 한정한다)는 개체 간 다툼이나 질병 발생 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격리수조를 갖춰야 하고, 번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 산란장을 제공할 것

- (4) 조류(맹금류로 한정한다)는 은신처 및 등지,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육상 공간을 확보할 것

2)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가)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보유동물의 종이 총 200종 미만인 경우

- (1) 수의사(비상근 수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중 1명 이상을 갖추 것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고 제1호의 수족관 보유동물의 분류군별로 각 2명 이상을 갖추 것.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각 분류군별로 1명씩만 갖추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수산생명의학, 수산학, 양식학, 동물자원학, 애완동물학, 생물학 등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수생생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유동물의 종이 총 200종 이상인 경우

- (1) 수의사(비상근 수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중 2명 이상을 갖추 것

- (2) 가)(2)(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고 제1호의 수족관 보유동물의 분류군별로 각 3명 이상을 갖추 것

비고

1. 수족관 보유동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포유류·파충류·조류

나. 어류·양서류·무척추동물 및 그 밖의 해양동물

2. 포유류 중 기각류, 파충류 중 바다거북류, 조류 중 맹금류를 보유한 경우 전문인력 중 수의사(비상근 수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가.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진료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3) 보유동물에 대한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 4) 동물의 반입·출입 관련 검역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5) 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 6) 보유동물 및 관리자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질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및 보유동물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
 - 8) 폐사동물의 부검 및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9)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 의한 정기적인 질병검사에 관한 사항
- 나. 질병관리계획의 이행책임자와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3.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보유동물의 탈출방지 시설의 설치 현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보유동물이 사육시설 내에서 부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사육시설 설계 및 제작 시 내구성 및 화재에 강한 자재 사용 등 동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
 - 라) 정전 등 비상시 안정적인 해수 공급 및 수온·수질 관리 대책, 생명유지장치 관리 대책
- 2) 보유동물 탈출 시 대응에 관한 사항
 - 가) 포획계획 및 포획방법에 관한 사항
 - 나) 포획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포획도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비상연락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화재·재난 시 사람 및 보유동물의 대피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책임자와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4. 동물원의 휴원·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관·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동물원의 휴원·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관·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보유동물의 기록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 종명 및 출처에 관한 기록

2) 반입일 및 반출일에 관한 기록

3) 개체 수 및 동물인식표 관리에 관한 계획

나. 보유동물의 이관 또는 반입·반출에 관한 사항

1) 보유동물의 반입·반출 예정기관과의 협의사항

2) 폐원·폐관 시 동물 이관 절차 및 계획

3) 보유동물의 수송절차와 방법에 관한 계획

다. 휴원·휴관 기간 동안 또는 폐원·폐관 이후의 보유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관리자 및 근무계획

2) 동물사육사 유지·관리계획

3) 보유동물 먹이 관리 및 공급계획

4) 수족관 해수공급 및 수온·수질관리 계획

5.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보유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

나. 보유동물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다. 보유동물 중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 교육 프로그램 진행 장소 및 시간

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2) 교육 프로그램 진행의 구체적인 방법
 - 3) 교육 목적으로 동물과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지는 부위 및 시간
 - 4) 교육 목적으로 먹이주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먹이의 종류, 양 및 급여 방법
- 라. 보유동물 안전에 관한 사항
- 마. 관람객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바. 사육사 및 지원 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나무, 바위, 물 웅덩이 등의 제공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행동풍부화에 관한 사항
- 나. 스트레스 완화, 정형행동(반복적·지속적인 행동으로서 목적이 없는 이상 행동을 말한다) 저감 등 긍정강화에 관한 사항
- 다. 복지증진을 위한 수족관 실무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 라. 보유동물 복지 실태 평가 및 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별표 2]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

권역	지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부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영남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별표 3]

거점동물원·거점수족관 시설 및 인력 요건(제22조제3항 관련)

1. 거점동물원

가. 시설 요건

- 1) 전체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2)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진료실, 검사실, 처치실, 입원실을 포함해야 한다)
- 3) 교육 강의실 및 현장 교육장
- 4) 연구 실험시설 및 시험방사 훈련시설
- 5) 검역시설: 격리 검역장소와 질병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시설
- 6) 수의 장비: 초음파진단기, 원심분리기, 세균 배양기, 위내시경, 유전자증폭검사기(PCR), 효소면역진단기(ELISA)

나. 인력 요건

- 1) 운영·관리 인력: 총 5명 이상
- 2) 사육·복지 인력: 총 8명 이상
- 3) 시설·조경 인력: 총 2명 이상
- 4) 수의 인력: 총 4명 이상(수의사 3명 이상, 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1명 이상)

2. 거점수족관

가. 시설 요건

- 1) 수조 바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전체 수조 용량 5천세제곱미터 이상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3) 교육 강의실 및 현장 교육장
- 4) 연구 실험시설 및 시험용 수조시설
- 5) 검역시설: 격리 검역장소와 질병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시설
- 6) 수의장비: 초음파진단기, 원심분리기, 세균 배양기, 위내시경, 혈액검사기

나. 인력 요건

- 1) 운영·관리 인력: 총 5명 이상
- 2) 사육·복지 인력: 총 8명 이상
- 3) 시설·수질관리 인력: 총 2명 이상
- 4) 수의 인력: 총 4명 이상(수의사 2명 이상(상근 수의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수산질병관리사 2명 이상)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 및 보유동물의 복지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150	200	300
다. 법 제13조제2항·제3항에 따른 휴원·폐원 또는 휴관·폐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150	250	400
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150	200	300 (4차 이상 위반 시 500)
마.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200	250	300
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200	250	300
사.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150	200	300
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150	200	250
자.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않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150	250	30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	4757
[별표 2]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제19조 관련)	4758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공익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법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별표 2]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제19조 관련)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의사 및 수산질병 관리사	공통교육	4시간
2.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 업무 를 보조하는 사람	전문교육(수의·수산질병 관리 임상, 방역 및 검역, 보유동물 건강관리 등)	4시간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육사	공통교육	4시간
4.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사육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전문교육 (행동풍부화, 긍정강화, 안전관리, 서식환경 및 영양 관리, 동물복지 등)	4시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외에 영 제19조제2호 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공통교육	4시간

비고

1. 공통교육은 방역 및 공중위생, 재난·안전 관리, 사고 예방, 동물복지, 동물별 생애습성, 수질 및 생명유지장치(LSS) 운영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 임직원들이 공통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 소양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교육대상자는 공통교육의 경우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또는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의 구분 없이 두 교육기관 모두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의 경우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에서,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3. 공통교육 및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편 자연보전

0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

목 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763	제1조(목적) 4763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4763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4764	
제4조(정관) ?	
제4조(정관) 4764	
제5조(기본계획) 4765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4765
제6조(시행계획) 4766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766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4766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4766
제6조의2(실태조사) 4766	
제7조(보전·관리계획) 4766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4767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4767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4767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4767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4767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4768	
제11조(지정기탁재산) 4768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4768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4768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4768
제14조(회계 등) 4769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4769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476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5조(조세감면) 4769	
제16조(재정지원) 4769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4769	
제18조(준용) 4770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4770	제11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770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보전협약) 4771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4771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4771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4771
제6장 국민신탁단체 〈개정 2021. 5. 18.〉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4771	제13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4771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4772	제13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4772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4773	제13조의4(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4773
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관리계획 수립·시행) 4773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4773	
제7장 보칙 〈신설 2021. 5. 18.〉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4773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4773
제22조(모금) 4774	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4774
제22조의2(청문) 4774	
제8장 벌칙 〈개정 2021. 5. 18.〉	
제23조(과태료) 4774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4774
부칙 4775	부칙 477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 2006. 3.24 법률 제7912호 개정 2008. 3.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 7.21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 7.28 법률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27 법률 제13875호 2018.10.16 법률 제15831호 2019.11.26 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2019.12. 3 법률 제16696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5.18 법률 제18155호 2023. 8. 8 법률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 2.13 법률 제20309호 (정부조직법)	제정 2007. 3.22 대통령령 제19945호 개정 2009. 6.26 대통령령 제21573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6.21 대통령령 제2725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5.18 대통령령 제32649호 2024. 5.14 대통령령 제3450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2021. 5. 18., 2023. 8. 8.>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재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과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 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 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4조(정관) ①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보전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의 요건·내용·절차에 관한 사항 15. 보전재산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 16.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이바지한 자의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13.> 제5조(기본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목표·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보전재산의 기준·분류에 관한 사항 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③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 2020. 5. 26.>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7조(보전·관리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관리계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교육·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해당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문화유산의 경우 가. 문화유산의 명칭·위치·면적·재산현황 나. 문화유산의 작자·유래 다. 문화유산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형태 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위치·면적·재산현황 나. 지형·지질·자연경관의 특수성 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 토양의 특성 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전재산은 이를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취득한 보전재산 및 제19조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내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 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4. 6.>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4조(회계 등) ① 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④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1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① 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5. 26.> 1. 기본계획안의 수립 2. 시행계획안의 수립 3. 보전재산에 대한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4. 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 5. 보전재산의 취득·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한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탁법인,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11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민신탁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국민신탁법인이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3. 국민신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보전협약)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6장 국민신탁단체 <개정 2021. 5. 18.>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면적 및 권리내용 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 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에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계획 3. 국민신탁단체의 운영계획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보유 현황 2. 해당 법인의 국민신탁 경험 및 수행능력 3.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계획의 타당성 4.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④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일 및 지정사유 ⑦ 그 밖에 국민신탁단체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이 취소된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일 및 취소사유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13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민신탁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① 국민신탁단체는 제20조의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국민신탁단체는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7장 보칙 <신설 2021. 5. 18.>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보전협약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1. 7. 21., 2020. 5. 26., 2021. 5. 1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행정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전 2. 개발사업 : 해당 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	제13조의4(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국민신탁단체는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당 국민신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기간·소요예산·추진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화한 후 그 결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화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화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모금)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8장 벌칙 <개정 2021. 5. 18.>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26., 2021. 5. 18.> 1. 제10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5. 26.> ③ 삭제 <2016. 1. 27.>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화결과 및 반영내용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모금지역·모금기간·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④ 삭제 <2016. 1. 27.> ⑤ 삭제 <2016. 1. 27.> 부칙 <제7912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2월 이내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와 자연환경국민신탁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의 연명으로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국민신탁법인의 이사회에 인계하고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37호, 2008. 3. 28.>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②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수입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9945호, 2007. 3. 22.>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73호, 2009. 6. 2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27252호, 2016. 6.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부터 ②⑩까지 생략	부칙 <제31614호, 2021. 4.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에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부터 ③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649호, 2022. 5. 18.>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05호, 2024. 5. 14.>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1조 생략 부칙 〈제13875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1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696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제9조 중 법률 제16696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의 개정 부분: 2020년 6월 4일 - 부터 6.까지 생략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부칙 <제18155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따른 문화재”를 “따른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⑳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6편 자연보전

0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4783	제1조(목적) 4783
제2조(정의) 4783	제2조(정맥) 478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784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포) 4785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관리의 기본원칙) 4784	제4조 삭제 4785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4785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4786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4786	제6조 삭제 4786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4786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4786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4786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4787
제8조(사전협의) 4791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4788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4792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 4790
제10조(토지등의 매수·교환) 4792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교환) 4792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4792	제10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4792
제11조 삭제 4793	제11조 삭제 4793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4793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4793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4796	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4794
제13조(토지등의 수용·사용) 4797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4794
	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4794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4795
	제12조(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의 범위) 4795
	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4796
	제1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479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4797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4797	제15조(권한의 위임) 4797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4798	
제17조(벌칙) 4798	
제18조(양벌규정) 4798	
부칙 4799	부칙 4799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3.12.31 법률 제7038호 개정 2004.12.31 법률 제7284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005. 5.31 법률 제7548호 2007. 7.13 법률 제8506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9. 1.30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 3. 5 법률 제9479호 2011. 4. 6 법률 제10561호 2012.12.18 법률 제11565호 2014. 3.11 법률 제12414호 2017. 4.18 법률 제14772호 2020. 5.26 법률 제17318호 2023. 5.16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2023. 8. 8 법률 제19587호 (배상유산 보호 및 조서에 관한 법률) 2023.10.31 법률 제1980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1의2.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제정 2004.12.30 대통령령 제18618호 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2호 2006. 1.26 대통령령 제1929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9.10 대통령령 제20256호 (광업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2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6.20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 6.16 대통령령 제21537호 2009.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레드문송법 시행령)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축산·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 8.17 대통령령 제22346호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74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4. 9.11 대통령령 제25596호 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7.10.17 대통령령 제28363호 2018. 4.17 대통령령 제28799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범람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0호 2022. 2.15 대통령령 제3243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24. 4.23 대통령령 제34439호 2024. 5. 7 대통령령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5., 2009. 6. 16.〉 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4. 6.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2. 백두대간은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백두대간은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증진될 수 있게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1. 한북정맥: 강원특별자치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2. 낙동정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의 매봉산에서 운주산, 엄광산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물운대로 이어지는 산줄기 3. 한남금북정맥: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속리산에서 보광산, 소속리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4. 한남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광교산, 가현산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5. 금북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백월산, 오서산을 거쳐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지령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6. 금남호남정맥: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의 영취산에서 장안산, 마이산을 거쳐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7. 금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짜리재, 계룡산을 거쳐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의 부소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8. 호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내장산, 무등산을 거쳐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9. 낙남정맥: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의 지리산에서 옥산, 불모산을 거쳐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의 분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본조신설 2020. 11. 2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임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31.> [전문개정 2011. 4. 6.] [제목개정 2023. 10. 31.]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3.] 제4조 삭제 <2009. 6. 1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2. 완충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보호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30., 2009. 6. 16., 2020. 11. 24., 2024. 4. 23.> 1.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진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나.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제목개정 2020. 11. 24.] 제6조 삭제 <2005. 11. 30.>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0., 2009. 6. 16., 2017. 10. 17.> 1.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목적 2.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연월일 3.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려는 지번·지목 및 지적 3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보호지역 및 구역을 명시한 도면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0., 2017. 10. 17.> [제목개정 2005. 11. 30.]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4. 3. 11., 2017. 4. 18., 2020. 5. 26., 2023. 10. 31.〉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1의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2.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의2.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정비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7. 10. 15., 2009. 6. 16., 2009. 11. 2., 2010. 8. 17., 2014. 9. 11., 2020. 11. 24.〉 1. 도로·철도·하천·궤도시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작업장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은 송전탑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최소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 3. 국가통신시설 4.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6. 8. 4., 2009. 6. 16., 2010. 3. 9., 2014. 9. 11., 2019. 7. 2.〉 1.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설 2.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보전·관리 또는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이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7. 9. 10., 2014. 9. 11.〉 1.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2. 개발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갱내채광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의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 다만, 산불·조난 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4. 3. 11., 2017. 4. 18., 2020. 5. 26.>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의 설치 등	3.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석회석 노천채광 ④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8. 6. 20., 2009. 11. 26., 2014. 9. 11., 2015. 12. 22., 2022. 2. 15.> 1.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을 위한 시설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부지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⑤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2020. 11. 24.>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⑥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1. 진입로 2. 현장사무소 3. 작업장 4. 지질·토양의 조사·탐사 시설 5.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경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운반 시설 [제목개정 2009. 6. 16.]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삭제 <2005. 11. 30.>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2014. 9. 11.>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9. 6. 16., 2014. 9. 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林道)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나. 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④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8. 4. 17.> ⑤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 9. 11.> 1. 증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⑥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2014. 9. 11.> 1.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2.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3. 상하수도시설 ⑦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교육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奉安墓)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9의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1호의2 및 제8호의2에 따른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2. 삭제 (2017. 4. 18.) [전문개정 2011. 4. 6.]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회석의 노천 채광을 말하며, 해당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11. 30., 2014. 9. 11.) 1.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한 면적 이내일 것 2.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⑧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교육 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 11. 30., 2009. 6. 16., 2014. 9. 11.) ⑨ 법 제7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그 중 제3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17. 10. 17.) 1.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육류·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2. 농장 조망시설 및 눈·비 대피시설 3.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간이매점 및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⑩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2017. 10. 17.) ⑪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2017. 10. 17.) [제목개정 2009. 6. 16.]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중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한 시설의 설치.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사전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 3.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실행하는 환경보전사업 또는 산림사업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2. 산림·경관 및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0., 2007. 10. 15., 2009. 12. 14., 2014. 9. 11., 2015. 6. 1.> 1. 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1부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 ④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10조(토지등의 매수·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교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교환하는 경우 그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1. 4. 6.] [제목개정 2020. 5. 26.]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료부터 해당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모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교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1.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등 2.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등 3.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등 4. 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읍·면·동에 위치하는 폐교재산 [본조신설 2005. 11. 30.] [제목개정 2009. 6. 16., 2020. 11. 24.] 제10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임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임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0. 5. 4., 2014. 9. 11.>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11조 삭제 <2009. 3. 5.>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본조신설 2005. 11. 30.] [제목개정 2009. 6. 16.] 제11조 삭제 <2009. 6. 16.>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시·군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비·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세부사업추진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1. 30.]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3.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백두대간의 복원·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임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0. 15., 2014. 9. 11.> 1.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임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2. 임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5. 11. 30.]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수익금은 임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지원대상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 11. 15.> [본조신설 2005. 11. 30.] 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11조의3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임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임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0. 5. 4., 2014. 9. 11.>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보호·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지급시기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⑦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별채허가 또는 신고일(별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연도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별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연도의 경우에는 별채허가·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할계산한다. [본조신설 2005. 11. 30.]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4. 9. 11.> 1.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2.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3. 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 등을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05. 11. 30.] 제12조(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의 범위)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물·장�물 제거 등 산림환경 정화활동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지원 대상·기준 및 보호·관리활동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1. 4. 6.]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5. 26.>]	2. 산림환경 보호·관리에 관한 홍보활동 3.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4. 등산로, 입간판 등 산림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 [본조신설 2020. 11. 24.]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1. 24.>] 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역협의체: 백두대간의 보호·관리 및 이용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나.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다.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2. 지역협의체: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하나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나.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다.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광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백두대간의 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④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된다. ⑤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 사업 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2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5. 26.)] 제14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5. 26.)]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6.]	3. 백두대간의 보호·관리 및 산림환경의 보전·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제1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시설의 설치 목적 3. 설치 대상 지역의 위치·면적 4. 설치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명세 6.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그 효과 7. 설치예정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천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본조신설 2020. 11. 24.] 제15조(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3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4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5호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5. 11. 30., 2006. 1. 26., 2007. 10. 15., 2009. 6. 16., 2020. 11. 2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5. 26.>]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5. 26.>]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1. 4. 6.] [제15조에서 이동 <2020. 5. 26.>]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심구역에서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2.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완충구역에서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4. 제10조의3에 따른 토지등매수청구서의 접수와 매수대상 여부 등의 통보 5. 제11조의5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서로 연결한 지역에서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산설 2010. 8. 17.> 1. 개발행위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행위의 총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나 핵심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8. 17., 2020. 11. 24.> [제12조에서 이동 <2020. 11. 2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09. 3. 5.] [제16조에서 이동 <2020. 5. 26.>] 부칙 <제7038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인가·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84호, 2004. 12. 3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548호, 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6호, 2007. 7.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8호, 2004. 12. 30.>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2호, 2005. 11. 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2호, 2006. 1. 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2〉 까지 생략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⑤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479호, 2009. 3.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1호, 2011. 4.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① 생략 ②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56호, 2007. 9. 10.〉 (광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⑥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322호, 2007. 10.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1565호, 2012.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4호, 2014. 3.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72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8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⑲부터 ㉞까지 생략 부칙 〈제19587호,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 제2차관·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지식경제부 제2차관·국토해양부 제1차관·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제20854호, 2008. 6. 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으로 한다. ⑬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537호, 2009.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7호, 2009. 11. 2.〉 (궤도운송법 시행령)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3. 10. 31.>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802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8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삭도(索道)·궤도(軌道)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⑫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47호, 2009. 11. 2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⑭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881호, 2009. 12.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㉔ 부터 ㉞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073호, 2010. 3. 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령·시험림 및 보호수”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46호, 2010. 8.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전탑의 작업장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송전탑의 설치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작업장의 설치면적 및 설치기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협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전협의를 하는 개발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474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596호, 2014. 9. 11.〉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02호, 2015. 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754호, 2015. 12. 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㉔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363호, 2017. 10. 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9호, 2018. 4. 1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㉔부터 ㉔까지 생략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80호, 2020. 11. 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1호, 2022. 2. 1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4439호, 2024. 4. 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7호, 2024. 5. 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제34550호, 2024. 6.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⑬부터 ⑭까지 생략

제6편 자연보전

0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815	제1조(목적) 4815	제1조(목적) 4815
제2조(정의) 4815		
제3조(기본원칙) 481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818		
제5조(국민의 책무) 481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818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4818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4818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4818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819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4820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820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4821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4821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4821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4822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 4822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4822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4823	제4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4823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4823		제5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4823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4823		제6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방법) 4824
제13조(외국인들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4824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4824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4825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4825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4825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482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4826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4826 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4827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4827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4827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4828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등) 4828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4829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4829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개정 2018. 10. 16.〉		
제21조 삭제 4829		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4829 제8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지정해제 관련 협의) 4830
제21조의2(위해성평가) 4829		제9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절차) 4830 제9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4831 제9조의3(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4832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4830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4833		제10조 삭제 4834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4834 제11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4835 제11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4836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4834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4834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483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4838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4838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4839 제25조(승인·허가의 취소 등) 4839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4840 제27조(기술개발) 4841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4841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4842 제29조(교육·홍보) 4842 제7장 보칙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4843 제31조(국고 보조) 4844 제32조(청문) 4845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845 제34조(별직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847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4847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4841 제14조 삭제 4842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4843 제16조(권한의 위임) 4845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4846	제11조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 신고) 4837 제11조의5(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4838 제11조의6(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 4838 제12조(승인·허가의 취소 절차) 4839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4841 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4844 제15조(규제의 재검토) 484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몰수) 4848		
제37조(양벌규정) 4848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848	
제38조(과태료) 4848		
부칙 4849	부칙 4849	부칙 484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2. 2. 1 법률 제11257호 개정 2012.12.11 법률 제11536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14. 3.18 법률 제12459호 2016.12.27 법률 제14513호(해양수산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8.10.16 법률 제15833호 2019.12.10 법률 제16806호 2023. 8.16 법률 제196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0.)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 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제정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3호 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8호 2017. 6.27 대통령령 제28165호 (해양수산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1.30 대통령령 제28616호 2019.10.15 대통령령 제30125호 2020. 6. 2 대통령령 제30749호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2. 6 대통령령 제3419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13. 2. 1 환경부령 제499호 개정 2013.12.18 환경부령 제530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물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9.10.17 환경부령 제828호 2020. 6. 9 환경부령 제871호 2024. 2.16 환경부령 제10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삭제 (2018. 10. 16.)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0.>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차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	제1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및 자연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종의 국명(國名) 및 학명 2. 종별 생태적·분류학적 특징 3. 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4. 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③ 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2.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4.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2.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3.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30.)	제4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를 통보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인들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은 자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방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消失)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방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본조신설 2020. 6. 2.]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 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	다. (개정 2020. 6. 9.) [제목개정 2020. 6. 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목개정 2019. 12. 10.]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반입 현황 관리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현황 관리 2. 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현황 관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기준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관리 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1. 생물자원의 보유 현황 2. 생물자원 보유기관 3. 생물자원 보유기관과 관리기관의 인력 및 장비 4. 국제동향 5. 정책 및 제도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생물자원의 연구·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하여야 할 필수적인 계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개정 2018. 10. 16.〉 제21조 삭제 〈2018. 10. 16.〉 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거나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3. 위해성평가의 방법 ②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징 2. 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3.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이 정하는 기준 ③ 국립생태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위해성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해성평가 계획과 그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7.] 제8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지정해제 관련 협의)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9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 신청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매도화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증명(種名) 증명서 사본 3. 사용계획서 4.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나.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다.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 신청서와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의 사본을 국립생태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0. 17.] 제9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국립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물학적·생태적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2. 수입·반입 승인을 신청한 이후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등이 발표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국립생태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9조의3(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 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8. 10. 16.〉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10조 삭제 〈2019. 10. 17.〉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6.>		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0. 17., 2024. 2. 16.>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 중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반입허가서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 제11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16.>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 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2. 16.> [본조신설 2019. 10. 17.] [제목개정 2024. 2. 16.] 제11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16.>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제1항의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2. 16.> [본조신설 2019. 10. 17.] [제목개정 2024. 2. 16.] 제11조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목적(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에서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수량 3.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공국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방법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보관시설의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16.>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자에게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2. 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①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		[본조신설 2019. 10. 17.] [제목개정 2024. 2. 16.] 제11조의5(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① 법 제24조의 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2.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3.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5.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6.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11조의6(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25조(승인·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2.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재배 이행계획서 3.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 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 시설 평면도 및 사진 4.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그 밖에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12조(승인·허가의 취소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나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이미 자연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18. 10. 16.]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제11조의5제2항 또는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24조의2제1항,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 [전문개정 2019. 10.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정보교환·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지원 3.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0.) 1.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평가 및 증진 기술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8. 10. 16.] 제29조(교육·홍보)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3년 이상 실시한 연구소 또는 단체 2. 생물다양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2019. 10. 15.>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실적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현황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학과의 연혁, 정원 등 현황 자료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현황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물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신청기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3. 8. 16.>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4. 2. 6.>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 나.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다.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라.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2의2.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감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0.>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의3.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2의4.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2의5.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계의 위해 또는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원증으로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3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홍보 사업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6. 2., 2024. 2. 6.>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불승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취소,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들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의 수리 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체결·해지 및 정당한 보상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5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허가 7.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7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7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의 수리 7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7의5.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 7의6.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개체의 사육 또는 재배 허가 8. 법 제25조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포획·채취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8의2. 법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검사 및 질문 9의2.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10.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삭제 <2013. 12. 11.>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체계약(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해지 및 상당한 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6. 2.>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 등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0. 16., 2023. 8. 16.> -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10. 15., 2020. 6. 2.) -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평가 -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 6. 2.> [본조신설 2013. 12. 1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제36조(물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물수한다. <개정 2018. 10. 16., 2023. 8. 16.>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4.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 2023. 8. 1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6.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257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부칙 <제24283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30> 제3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공고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개월 이내에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공고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제499호,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30호, 2013. 12. 1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998호, 2013. 12. 1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65호, 2017. 6. 27.〉 (해양수산생명과학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생명과학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과학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부칙 〈제828호, 2019. 10. 17.〉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 2020. 6. 9.〉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 2024. 2. 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5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16호, 2018. 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25호, 2019. 10. 15.〉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49호, 2020. 6. 2.〉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2호, 2022. 12. 30.〉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192호, 2024. 2. 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1536호, 2012. 12. 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2459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3호, 2016. 12. 2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5833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확정되는 국가생물 다양성전략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래생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어 시행 중인 외래생물관리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벌칙 및 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몰수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06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9661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4859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4860

[별표 1] (신설 2020. 6.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 가. 식생 군락 조성·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 나. 하천 정화 및 식생대의 조성·관리 등 수질의 개선
 - 다. 저류지의 조성·관리 등 자연재해의 저감
2. 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 가. 경관숲·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의 유지·개선
 - 나.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조망축의 조성·관리
 - 다.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3.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휴경(休耕)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나.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한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 다.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라.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을 조성·관리하는 경우: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마.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금액

[별표 2] <개정 2024. 2.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100	150	200

제6편 자연보전

09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4865	제1조(목적) 4865
제2조(정의) 4865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4865
제3조(적용 범위) 4865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4865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4865
제5조(사업) 4866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4866	제4조(설립등기) 4867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4867	제5조(정관 포함사항) 4868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4868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4868
제8조(임원 및 직원) 4868	
제9조(임원의 직무) 4869	
제10조(임원의 임기) 4869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4869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4870	
제13조(이사회) 4870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4870	
제15조(대리인의 선임) 4870	
제16조(운영 재원) 4870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4871	
제17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4871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4871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4871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4871
제19조(차입금) 4871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4871
제20조(수익사업 등) 4872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4872
제21조(사업연도) 487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4872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4872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4872
	제14조(업무보고 사항) 4873
제23조(잉여금의 처리) 4873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4873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4873
제25조(출입·검사 등) 4873	
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4873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4874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4874
제28조(비밀엄수의무) 4874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874	
제30조(「민법」의 준용) 4874	
제31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874	
제32조(별칙) 4874	
제33조(과태료) 4875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875
부칙 4875	부칙 487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15. 1.20 법률 제13033호 2019.11.26 법률 제1660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2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11. 26.〉]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 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11. 26.〉]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0. 2.25 대통령령 제30482호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6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하기 위한 실험시설 나. 생물자원을 전시하기 위한 옥내·옥외 전시시설 다. 생물자원을 수집·보존·관리하기 위한 수장고(收藏庫) 시설 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장단기 사업계획 3. 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 5.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등 연구·개발 6. 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 8.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중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1. 26.)]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배양 및 제공 3.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4. 생물자원의 보전·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 5.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6.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7.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8.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 9.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確證標本) 소재 정보 구축 10. 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1. 생물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2.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11. 26.] [제3조에서 이동, 중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1. 26.)]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 2. 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11. 26.)]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운영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연안생물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1. 26.>]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 11. 26.>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제5조(정관 포함사항) 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사업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이하 “국립생물자원관장”이라 한다)의 검토 의견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2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11. 26.>]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11. 26.>]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11. 26.>]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1. 2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 11. 2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11. 26.>] 제13조(이사회)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 11. 26.>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생물자원관법인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 11. 26.>]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11. 26.>] 제15조(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11. 26.>]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 11. 2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11. 26.>]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 11. 26.>] 제17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 11. 26.>] 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 11. 26.>]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 예정 기관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수익사업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 11. 26.>] 제21조(사업연도)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6.>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 11. 26.>]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1. 26.>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자금의 차이 및 상황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 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생물자원관법인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 4. 생물자원관법인에서 사육·재배·배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 5. 생물자원관법인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6. 생물자원관법인 시설의 임대 7. 생물자원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 수입·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 11. 26.>]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생물자원관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 11. 26.>]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 관련 조사·연구 활동의 성과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 11. 26.>]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19. 11. 26.>] 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조사·연구, 교육·전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14조(업무보고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 2. 경영현황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생물자원의 조사·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3. 생물자원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국민체감도,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19. 11. 26.>]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26.>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2019. 11. 26.>] 제28조(비밀엄수 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 <2019. 11. 26.>]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26.>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19. 11. 26.>] 제30조(「민법」의 준용) 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제26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제27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32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제28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29조를 위반하여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9. 11. 26.>] 부칙 <제13033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위원의 연명(連名)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15. 1. 20.] 제2조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일: 2015. 1. 20.] 제3조 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 2015. 1. 20.] 제4조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0482호, 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חקל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건립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기획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기획단의 명칭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안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5. 1. 20.] 제8조 부칙 〈제1660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 후 관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9. 11. 26.] 제2조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 : 2019. 11. 26.] 제3조 제4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에 따른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건립추진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9. 11. 26.] 제4조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단의 명의로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 제6조(예산안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 11. 26.] 제6조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9. 11. 26.] 제7조 제8조(국립생물자원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4881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생물자원관 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1)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가 생물자원관법인 명칭을 사용한 경우		150	300	500
2)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가 생물자원관법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50	200	300

제6편 자연보전

10

습지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4. 3. 24.〉		
제1조(목적) 4889	제1조(목적) 4889	제1조(목적) 4889
제2조(정의) 4889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4890		
제4조(습지조사) 4890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4891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891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4892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892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4893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4894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4894	
	제3조의6(운영세칙) 4894	
	제4조 삭제 4894	
제6조(습지조사원) 4894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4894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4895		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4895
		제4조 삭제 4895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 3. 24.〉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4896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4896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4897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4897
제9조(협약의 이행) 4897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4898	제5조의3(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4898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4898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4898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4898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4899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4899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4900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899	제6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4900
제12조(습지보전·이용시설) 4900	제9조(습지보전·이용시설) 4900	
	제10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등) 4900	
제13조(행위 제한) 4900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4900	제7조(경작·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 4901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4901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4902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4902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4902
제14조(중지명령 등) 4903	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4903	
제15조(출입 제한) 4904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4904	제9조(출입제한·금지의 표지등) 4904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905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천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4905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4905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4905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4905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장) 4906		제10조의2(이용료) 4906
제18조의2(이용료) 4906		
제3장 보칙 <개정 2014. 3. 24.>		
제19조(포상금) 4907	제15조(포상금) 4907	
제20조(손실보상) 4908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4908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4908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4908	제12조(재결신청서) 4908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4909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4909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910	제18조(권한·사무의 위임·위탁) 4910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4912	제19조(보고) 4912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4912
제22조의2(국고 보조) 4912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4912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4912	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4913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913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벌칙 〈개정 2014. 3. 24.〉 제23조(벌칙) 4914 제24조(벌칙) 4914 제25조 삭제 4915 제26조(양벌규정) 4915 제27조(과태료) 4915 부칙 4915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915 부칙 4915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4915 부칙 4915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정 1999. 2. 8 법률 제5866호 개정 2002.12.26 법률 제6825호 2004. 2. 9 법률 제716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 3.31 법률 제7461호 2006.10. 4 법률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1.26 법률 제8291호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58호 2010. 4.15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1. 7.28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 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10호 2014. 3.24 법률 제12525호 2016. 1.27 법률 제13880호 2019. 8.27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21. 1. 5 법률 제17844호	제정 1999. 8. 7 대통령령 제16528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3. 6.25 대통령령 제18017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 중개정령) 2005. 9.30 대통령령 제19072호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7.24 대통령령 제20188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 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 3.29 대통령령 제22738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1.14 대통령령 제25081호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9.10.29 대통령령 제30172호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3호 2023. 6.27 대통령령 제3358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9. 8. 7 환경부령 제79호 개정 2003. 7.29 환경부령 제143호 2005. 9.30 환경부령 제184호 2007. 7.26 환경부령 제241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민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3.14 환경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청명개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12.31 환경부령 제89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20. 4. 9 환경부령 제860호, 해양수산부령 제404호 2021. 7. 5 환경부령 제487호
제1장 총칙 <개정 2014. 3. 24.>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란 배수(排水), 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천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조(습지조사)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적·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의 보전·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2.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 방안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습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2·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⑤간사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07. 7. 24.]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7. 24.]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습지조사원)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 7. 24.]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7. 24.]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24.] 제4조 삭제 (2005. 9. 30.)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습지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5.> 1. 관계 공무원 2. 지형·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13. 3. 23.>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 흙과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 3. 24.)		③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13. 3. 23.> 제3조(타인토지에서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3. 7. 29.>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회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 9. 30.>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⑦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4. 3. 24.] 제9조(협약의 이행) 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 7. 29., 2005. 9. 30., 2008. 3. 14., 2013. 3. 23., 2021. 7. 5.>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청 4.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20. 4.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20. 4. 9.> [본조신설 2003. 7. 29.]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협약등록습지의 보전·관리,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인증에 대한 지원 2.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약등록습지 등록 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 3.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군·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4.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군·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본조신설 2021. 7. 6.]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7. 24.>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보호 또는	제5조의3(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5.]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4. 3. 24.]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 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보전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5.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②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 9. 30.〉 ③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2조(습지보전·이용시설)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홍보 시설 및 안내·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4.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이용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제9조(습지보전·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7. 24.]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제10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7. 24.]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제6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7. 29., 2005. 9. 30., 2007. 7. 26., 2008. 3. 14., 2020. 4. 9.] 1.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2.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5. 습지보전·이용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 [제목개정 2007. 7. 26.]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선편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7. 24.]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06. 8. 4., 2008. 4. 3., 2010. 10. 14., 2021. 7. 6., 2023. 6. 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제7조(경작·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특별자치시·시·군·구 또는 이에 연결한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7. 5.>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 7. 5.> [제목개정 2021. 7. 5.]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조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7. 29., 2005. 9. 30.>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4조(중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 7. 24., 2021. 7. 6.>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사시설 나. 항로표지시설 다. 해저 송전선로 [본조신설 2003. 6. 25.] 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 14.]	[본조신설 2003. 7. 29.]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5조(출입 제한)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등 생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습지보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6. 8. 4., 2008. 2. 29., 2012. 7. 31., 2013. 3. 23., 2021. 7. 6., 2024. 5. 7.> 1.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연구 2.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조(출입제한·금지의 표지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9., 2005.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 7. 29., 2008. 3. 14., 2013. 3. 23.>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① 정부는 제1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을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6. 25., 2005. 9. 30., 2007. 7. 24., 2008. 2. 29., 2010. 10. 14., 2013. 3. 23.>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13. 3. 23., 2021. 7. 5.>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3. 7. 29.>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 지역 주변의 생태계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장)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의2(이용료)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은 5년을 말한다. 제10조의2(이용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7. 7. 26., 2020. 4.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 7. 26., 2008. 3. 14., 2013. 3. 23., 2020. 4. 9., 2021. 7. 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7. 7. 26., 2020. 4.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4. 3. 24.] 제3장 보칙 <개정 2014. 3. 24.> 제19조(포상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	제15조(포상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9.) ④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20. 4. 9., 2021. 7. 5.>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 8.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포획·채취가 허용되는 자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6.> [본조신설 2003. 7. 29.]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0조(손실보상)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 범죄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5. 12. 30.>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②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9. 30., 2008. 2. 29.,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3. 6. 25.] 제18조(권한·사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 7. 24.>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금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출입의 제한·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관리 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 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 7. 6.> 1.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 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관리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0. 29.>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금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출입의 제한·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의 보전·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조사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2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과·징수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 10. 29., 2021. 7. 6.>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3. 6. 25.] [제목개정 2019. 10. 29.]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위탁 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위탁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9.]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주·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 사업시행 현황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24.>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3. 6. 25.]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 7. 29.]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벌칙 <개정 2014. 3. 24.> 제23조(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4. 3. 24.]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0. 29.> 1. 법 제6조에 따른 습지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위촉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4. 3. 24.] 제25조 삭제 <2008. 3. 21.>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 -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부칙 <제5866호, 1999.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지역중 습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중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및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 14.> [전문개정 2011. 3. 29.] 부칙 <제16528호, 1999. 8. 7.>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고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 7. 29., 2005. 9. 30.> 부칙 <제79호, 1999. 8. 7.>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 2003.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존 면허어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3.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 부칙 <제6825호, 2002.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제18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7호, 2004. 2.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습지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⑰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17호, 2003. 6. 25.>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2호, 2005. 9. 30.>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	부칙 <제184호, 2005. 9. 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 2007. 7. 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 2008. 12. 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습지보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종·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⑪ 내지 ⑮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7461호, 2005. 3. 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5호, 2006. 10.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91호, 2007. 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⑨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88호, 2007. 7. 24.〉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호·제2호·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중 피신청인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 2020.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 생략 ⑱ 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⑲ 내지 ㉒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1> 까지 생략 <51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 제20조제2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점용 ⑫ 부터 ㉑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49호, 2010. 10.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487호, 2021. 7. 5.>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항·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을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점·사용허가”를 “점용·사용허가”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8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수산부”를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58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001호, 2012. 7.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호·제2호·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257호, 2012. 2.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2>까지 생략 <503>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81호, 2014. 1. 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85호, 2015. 1.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30172호, 2019.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3호, 2021. 7. 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10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33582호, 2023. 6.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4488호,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2525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각 호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한 행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이용료 징수 2. 제1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부칙 〈제13880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㉖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7844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사용 목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이용료부터 적용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4927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4927

[별표 1] <신설 2014.1.14>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구 분	원상회복 기간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3개월 6개월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나. 전체 면적이 100㎡ 초과	3개월 6개월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6개월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이하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초과 200㎡ 이하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 초과	2개월 4개월 6개월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6개월

10.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2] <개정 2021. 7.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8.> 제1조(목적) 4942 제2조(정의) 4942 제2조(정의) 4944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494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4946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 7. 28.> 제1절 총칙 <개정 2011. 7. 28.>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4947 제5조의2 삭제 4949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4949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4949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4950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4950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4951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4953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4953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4955	제1조(목적) 4942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4942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4947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4948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4949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4949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4950 제6조 삭제 4951	제1조(목적) 4942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 4942 제3조 삭제 4942 제4조(유해야생동물) 4943 제4조의2(야생동물 질병) 4944 제4조의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4944 제5조(실태조사) 4949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4950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4951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4953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주기 및 방법) 49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4956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4957 제10조(땃, 창애, 울무 등의 제작금지 등) 4957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4958 제11조의2 삭제 4959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4959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 4959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4955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4956 제7조의6(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4956 제8조(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4957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판매 등) 4957 제10조(야생동물의 운송) 4958 제11조 삭제 4959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4959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4960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 7. 28.〉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4961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장기 보전대책) 4961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4961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4962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4962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허가신청) .. 4962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 4962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 4963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신청) 4963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4964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4964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신고) 4965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4965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4966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 4966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4967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 496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 4974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 4976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 4977 제16조의5(개선명령) ····················· 4977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 4978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 4979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 4979 제16조의9(권리·의무의 승계 등) ·········· 4980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등) ······························· 4980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 4982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개정 2011. 7. 28.)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 4969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 4972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 4974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 4977 제14조(보호시설 등) ····················· 4981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 기록) ····· 4968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 4969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의 발급 등) ······························· 4969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 4970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 ···· 4971 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 4972 제23조의3(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 4973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 4974 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 4974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4975 제23조의7(사육시설 설치기준) ··············· 4976 제23조의8(사육시설의 검사) ····················· 4977 제23조의9(개선명령) ······················· 4977 제23조의10(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 4979 제23조의11(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 498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4982		제24조(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4982 제25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4982 제26조(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4983 제27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신고) 4984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취소 등) 4984		제28조(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4985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 4985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4985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 4986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4987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4989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수출 등) 4989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의 취소) 4990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보관 등) 4990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4991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4992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4992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4993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4994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4995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4996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4997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4997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4997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4998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4998 제31조의4(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499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5000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5000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5001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5002		제32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5002
제25조 삭제 5002		제33조 삭제 5002
제25조의2 삭제 5002		
제26조(시·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5002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 〈개정 2011. 7. 28.〉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5003		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5003
		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5004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004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5004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004		
	제16조(재해의 범위) 5005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5005	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5005
	제18조(금지행위) 5006	
제29조(출입 제한) 5008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5008
		제38조(출입 제한 등의 표지) 5008
		제39조(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5009
제30조(중지명령 등) 5009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5009	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5009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5009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5010	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5010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5010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5010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5011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5011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5012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5012	제4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5012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50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5013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평가) 5013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신설 2014. 3. 24.>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5014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5014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 .. 5015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 5015	제44조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5015 제44조의3(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비용의 지원) 5016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5016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5017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5017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5017
제34조의7(질병진단) 5018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기관) 5027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5018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5020	제23조의6(검역관리인의 임무) 5033	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5020
제34조의9(역학조사) 5021		제44조의7(역학조사) 5021
제34조의10(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5023		제44조의8(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이동제한·살처분 명령) 5023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5025		제44조의9(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 5024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5025		제44조의10(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5024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신설 2021. 5. 18.>		제44조의11(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5025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5027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5025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5028		제4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 5027
제34조의15(수입금지) 5028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 5027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5029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5028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5030		제44조의16(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5028
		제44조의17(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5029
		제44조의18(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5030
		제44조의19(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5031
		제44조의2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50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18(수입검역) 5031		제44조의21(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5032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5032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5032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5032		제44조의23(지정검역물의 관리) 5035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5033		제44조의24(불합격품 등의 처분) 5036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5034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5036		
제7절 곰 사육 금지 <신설 2024. 1. 23.>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5037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5037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5038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5038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5039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5039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5039
제36조(등록취소) 5039		제46조(변경등록사항) 5040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5040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5040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5040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5040	
	제24조의2 삭제 5041	
	제25조 삭제 5041	
	제26조 삭제 5041	제47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5041
제39조 삭제 5041	제27조 삭제 5041	제48조 삭제 5041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5041		
제41조 삭제 5041		
제41조의2 삭제 50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수렵 관리 〈개정 2011. 7. 28.〉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5041	제28조(수렵장의 설정) 5041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5042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5042 제51조(수렵장 안내판·시설 등의 설치기준) 5043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5043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5044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5044
제44조(수렵면허) 5044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5044	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5046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5046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5046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5047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5047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5046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5046	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5048 제59조(수렵강습) 5049 제60조(수강신청 등) 5050
제46조(결격사유) 5048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5046	제61조(수렵면허증 등) 5051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5051 제63조(수렵승인신청) 5052 제64조 삭제 5053
제47조(수렵 강습) 5048		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5054 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5054 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5055 제68조(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5055 제69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5056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5050	제33조 삭제 5051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5051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5052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5051	제35조(보험 가입) 5053	
제50조(수렵승인 등) 5052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5054	
제51조(수렵보험) 5053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5053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505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5055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5057
제55조(수렵 제한) 5056		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5059
제5장 보칙 <개정 2011. 7. 28.>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5057	제37조(보고) 5057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5059		
제57조(포상금) 5060	제38조(포상금의 지급) 5060	
제57조(포상금) 5062		제72조(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5064
제57조의2(보상금 등) 5064	제38조의2(보상금) 5064	
제58조(재정 지원) 5064		제72조의2(수수료) 5067
제58조(재정 지원) 5065		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5067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5066		제74조(직무 범위) 5067
제58조의3(수수료) 5067		제75조(보수) 5068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5067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5068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5068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5068		제77조(야생생물 보호원증) 5068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 5068		제78조(행정처분의 기준) 5069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5069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5069		
제64조(청문) 5070		
제64조(청문) 5070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5071	제39조(권한의 위임) 5071	
제66조(위임 및 위탁) 5071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5074	제79조(규제의 재검토) 5076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074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076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507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벌칙 <개정 2011. 7. 28.> 제67조(벌칙) 5077 제67조(벌칙) 5077 제68조(벌칙) 5078 제69조(벌칙) 5079 제69조(벌칙) 5080 제70조(벌칙) 5082 제71조(몰수) 5084 제72조(양벌규정) 5085 제73조(과태료) 5085 부칙 5088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085 부칙 5088	제80조 삭제 5085 부칙 508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4. 2. 9 법률 제7167호 2004.12.31 법률 제7297호 (자연환경보전법)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31 법률 제7457호 2005. 3.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 8. 4 법률 제767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6.10. 4 법률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4.11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 4.11 법률 제8346호 (문화재보호법) 2007. 4.11 법률 제8365호 (약사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환경보전법) 2007. 5.17 법률 제8467호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762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신림보호법) 2010. 2. 4 법률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2010. 7.23 법률 제10388호 2011. 7.21 법률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1. 7.28 법률 제10977호 2011. 9.16 법률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 3.22 법률 제11666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3. 7.16 법률 제11912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도로법) 2014. 3.11 법률 제12412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2014. 3.24 법률 제12521호 2015. 2. 3 법률 제13167호 2016. 1.27 법률 제13882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문화환경보전법) 2017.12.12 법률 제15196호 2018.10.16 법률 제15835호 2019.11.26 법률 제16602호(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1.26 법률 제16609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법)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 8.11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2021. 5.18 법률 제18171호 2022. 6.10 법률 제18908호	제정 2005. 2. 7 대통령령 제18696호 2005. 9.14 대통령령 제19049호 2007. 4. 4 대통령령 제1999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5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 8 대통령령 제2107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5. 6 대통령령 제21481호 2011. 1.20 대통령령 제22630호 2011. 3.29 대통령령 제22737호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1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7.16 대통령령 제25480호 2015. 3.24 대통령령 제26159호 2015. 7.20 대통령령 제26416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11. 1 대통령령 제27569호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8호 2018. 3.27 대통령령 제28721호 2019. 9.10 대통령령 제30073호 2020. 2.25 대통령령 제30482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26 대통령령 제30706호 2020. 9.11 대통령령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9.29 대통령령 제31070호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2호 2021. 6.22 대통령령 제31809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 3.14 대통령령 제33332호 2023.12.12 대통령령 제33951호 2024. 2.27 대통령령 제34258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5.14 대통령령 제34509호	제정 2005. 2. 7 환경부령 제171호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5. 9.27 환경부령 제183호 2007.10. 1 환경부령 제24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07.12. 4 환경부령 제260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 1 환경부령 제332호 2011. 1.21 환경부령 제393호 2011. 3.31 환경부령 제404호 2012. 5.31 환경부령 제457호 2012. 7. 3 환경부령 제466호 2012. 7.27 환경부령 제469호 2012.12.31 환경부령 제491호 2013. 2. 1 환경부령 제49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9.10 환경부령 제516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17 환경부령 제565호 2015. 3.25 환경부령 제598호 2015. 8. 4 환경부령 제612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29 환경부령 제737호 2018.12.10 환경부령 제784호 2019. 9.25 환경부령 제823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5.27 환경부령 제867호 2020. 9.29 환경부령 제884호 2020.11.27 환경부령 제892호 2021. 9.16 환경부령 제942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2.12. 9 환경부령 제1010호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3.14 환경부령 제1024호 2023. 6. 9 환경부령 제1039호 2023.12.14 환경부령 제106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3 법률 제19088호 2023. 3.21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8. 8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 1.23 법률 제20119호 2024. 2. 6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2024. 2.13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8.>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1. 5. 18.>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3조 삭제 <2013. 2.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I에서 정한 것 4. 삭제 <2012. 2. 1.>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본조신설 2015. 3. 24.]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8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1. 5. 18., 2024. 1. 23.〉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4조의2(야생동물 질병) 법 제2조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4조의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말한다. 1. 국내에 유입·정착·전파될 가능성 2. 국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3.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해당 질병에 대한 유해성 정보 [본조신설 2024. 5.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I에서 정한 것 4. 삭제 (2012. 2. 1.)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8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곰 사육농가”란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시행일: 2025. 1. 24.] 제2조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야생생물은 현재 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재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 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 7. 28.) 제1절 총칙 (개정 2011. 7. 28.)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9. 10.) 1.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8.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7. 31.]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 24.> 1.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의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삭제 <2012. 2. 1.>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별(種別) 서식지 및 서식현황 2. 종별 생태적 특성 3. 주요 위협요인 4. 보전 또는 관리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12. 10.>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3.]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양도·양수·보관·폐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13.]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4. 2. 6., 2024. 2. 13.>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결과 신고에 관한 정보 3. 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3. 12. 12.]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물을 학대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제6조 삭제 <2012. 7. 31.>	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현황 명세서 2. 운영 현황 명세서 3.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에,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9. 삭제 (2013. 7. 16.) 10.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경우 1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에,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1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삭제 <2017. 12. 12.>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12.> 1.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지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7. 28.]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 2.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1. 선형(線形) 무늬 가. 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나. 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²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탈출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2. 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3. 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공기관등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8조의3(야생동물 전사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사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주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3. 6. 9.]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조류 중 앵무목(Psittaciformes), 평과(Phasianidae), 되새과(Fringillidae), 납부리새과(Estrildidae) 전 종 2. 파충류 중 거북목(Testudines) 전 종 3. 파충류 중 코브라과(Elapidae), 살모사과(Viperidae)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Squamata)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부치아목, 이구아나아목을 포함한다) 4. 전갈목(Scorpiones)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Arthropoda) 전 종 [본조신설 2023. 12.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3.] 제8조의4(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13.]		제7조의5(전시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가. 서식지외보전기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전하는 야생동물로 한정한다) 나.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바.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본조신설 2023. 12. 14.] 제7조의6(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진료 및 치료 시설 2.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 3. 환기, 조명 및 온도·습도 조절 설비 등 적절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②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는 수의사 및 사육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0조(덧, 창애, 울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덧, 창애, 울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8.]		를 각각 1명 이상씩 갖춰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14.] 제8조(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이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덧·창애·울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①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파충류·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하려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운송자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13.]		및·창해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7. 27.] 제10조(야생동물의 운송)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3.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4. 법 제35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떨어진 야생동물 등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거나 번식기의 수컷 등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물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삭제 (2014. 3. 24.)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2.>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라·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액 및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전문개정 2012. 7. 31.]	것 [본조신설 2023. 12. 14.] 제11조 삭제 (2015. 3. 25.)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0., 2015. 3. 25.>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24. 1. 23.>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시행일: 2025. 1. 24.] 제12조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 7. 28.〉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 보전계획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7. 31.]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2. 12. 13.>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한다. <개정 2020. 5. 26.> 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전문개정 2012. 7. 31.]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2.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 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전문개정 2012. 7. 27.]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 수출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다. 수출품·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물품에도착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다. 사육계획서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증식된 야생생물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3.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1. 폭발물, 땃, 창애,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2023. 3. 21., 2024. 2. 6.>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전문개정 2012. 7. 27.]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①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21., 2024. 2. 6.>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수입·반출·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 허가		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I·II·III)에 포함 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② 삭제 <2007. 5. 17.>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I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족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족견본을 말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족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족견본을 말한다.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그 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수산물학원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⑥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수출·수입등을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 상대국, 해당 생물의 명칭·수량·크기 및 종류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현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7. 31.]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화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II·III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아.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 기록)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9., 2018. 3. 27.>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5.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①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2.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3조제5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은		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해당 약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약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약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약기 사진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18. 12. 10.]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2. 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사육·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2017. 12. 12.>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등 허가서 사본 3.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4.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 ①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23. 3. 14.>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 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16.]	4.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영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용계획서, 양도·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해당한다)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3. 3. 14.> 1.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영무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영상 등 폐사·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수입허가증 등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 7. 27.] 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 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3(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①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0.> 1. 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 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2.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할 것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한다. 5.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⑧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목개정 2011. 7. 28.]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16.]	의 인공증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법 제16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공증식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족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족견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0.> 1.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이하 “사육시설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 신청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다만, 개체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육시설의 소재지 ②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3. 25.> 1.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2.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보호 시설 3.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동물치료소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7(사육시설 설치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7.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5(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3. 27., 2020. 2. 25.>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5.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족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4. 7. 16.]	제23조의8(사육시설의 검사)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영 제13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 동물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2. 수시검사: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7. 17.] 제23조의9(개선명령)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약품 등을 갖추어 것 3. 사육동물을 이송·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육시설등록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개선 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예산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 2. 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2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 외의 경우: 6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육시설등록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명령을 수정·보완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		제23조의10(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사육시설등록자는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 10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11.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9(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23조의11(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1.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채취·구입,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20. 2. 25., 2021. 6. 22., 2023. 3. 14.>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1의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수목(樹木)만 해당한다)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곤충류만 해당한다) 4. 국립수산물연구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만 해당한다) 5. 서식지외보전기관 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목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 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개정 2011. 7. 28.)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2. 12. 13.>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2. 7. 31.]	제24조(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25.] 제25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23. 12. 14.>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생물의 이동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인공증식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폭발물, 땃, 창에,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생물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종류·수량, 구입일·판매일, 거래상대방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전문개정 2012. 7. 27.] [제목개정 2015. 3. 25.] 제26조(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이란 별표 7에 따른 야생생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와 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할 것 2. 그 밖에 인공증식 또는 재배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15. 3.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2022. 12. 13., 2023. 3. 21., 2024. 2. 6.> 1. 인체에 급박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제27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22. 12. 13.> -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확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제28조(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25.]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7. 11. 30., 2020. 11. 27.>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3. 3. 21., 2024. 2. 6.>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2020. 5. 26., 2023. 12. 12., 2024. 5. 14.> 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관광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3. 일시 채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반려(伴留) 목적의 야생생물을 반입하는 경우: 일시 채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축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축견본을 말한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화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III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축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축견본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11. 27.>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의 종 판별 2.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양도·양수·보관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22. 12. 13.>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확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경우에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시켜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신설 2020. 5. 26.> [전문개정 2012. 7. 31.] [제목개정 2015. 3. 24.]	동물질병관리원(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여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전문개정 2012. 7. 27.] [제목개정 2015. 3.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3. 3. 21., 2024. 2. 6.>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양도·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④ 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12. 13.> ⑤ 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등에 대한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보관 또는 폐사 신고의 방법, 기간, 절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13.)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1조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수출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반입할 수 있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2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3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보관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 또는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중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4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증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영업의 내용·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5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정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6.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6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① 야생동물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2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2조의6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2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7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2.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관리 3.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보관 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 5.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8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3.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우 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 양도·양수한 경우 3.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수입·반입·수출·반출·양도·양수·인공증식·보관·폐사·방사한 경우 7.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야생동물 영업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9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경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10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생산·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방법·절차, 결과 제출,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11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 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9. 25.> 1.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충가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7. 28.]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야생동물명·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0.> [전문개정 2012. 7. 27.]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8. 4.>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地物),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협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31조의4(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별표 8의6에 따른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이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2024. 1. 23.>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2024. 1. 23.>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2024. 1. 23.>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23조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본조신설 2020. 11.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3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24. 1.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시행일: 2025. 1. 24.] 제23조의2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 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23조의3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5조 삭제 <2012. 2. 1.> 제25조의2 삭제 <2012. 2. 1.> 제26조(시·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광		제32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획대상 야생화된 동물, 포획절차 및 포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33조 삭제 <2013. 2.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 <개정 2011. 7. 28.>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1. 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유 및 목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3. 토지의 이용 현황 4. 지정 면적 및 범위 5.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전문개정 2012. 7. 27.] 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 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2. 불을 놓는 행위 [전문개정 2012. 7. 31.] 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2. 7. 31.]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4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등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 입목(立木)·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7. 1. 17., 2024. 2. 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5. 8. 7.] 제28조 제29조(출입 제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2024. 2. 13.>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실태조사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9. 25.>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전문개정 2012. 7. 27.] 제38조(출입 제한 등의 표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 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0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간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39조(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 시의 과태료 [전문개정 2012. 7. 27.] 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청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해당관서의 장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 계약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계약 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2. 7. 27.] 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3조제13호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멸종위기종관리계획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16. 8. 11.>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0. 5. 26.>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서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서를 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鎮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지원금액 [전문개정 2012. 7. 31.]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설정하려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7. 28.]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평가) 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신설 2014. 3. 24.>		②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9. 25.>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4.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시행 3.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협력 4.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 5.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 6.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목표 및 중점방향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진단 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 질병 관련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질병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제44조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위한 건물, 시설의 명세서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목개정 2019. 11. 26.]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사람 2. 시설기준: 진료실, 입원실, 임시 보호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추 것 3. 장비기준: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추 것 [본조신설 2015. 3. 24.]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계획서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3(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비용의 지원) ①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경위서(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 경위 등을 포함한다)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내역서(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3.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방사(放飼)한 야생동물의 명세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5.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9. 29.> [본조신설 2015. 3. 24.]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0.> 1.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2.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를 말한다)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6.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7(질병진단)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26.> 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진단 및 조사·연구 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8. 11.> 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7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9. 29.> 1. 조직·인원 및 사무분장표 2.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질병진단 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⑥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관리, 시료(試料)의 포장·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1. 26.> 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4. 3. 24.]		② 법 제34조의7제8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20. 5. 27.>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9. 29.>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2020. 9. 29.>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9. 29.>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①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장과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야생동물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1.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2.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결핵 3.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브루셀라병 4.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광견병 6. 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야생동물 질병명 2.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사육시설(사육시설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주소 3.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일시 4.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는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9(역학조사)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시·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44조의7(역학조사) ①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질병이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3. 해당 시·도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기술·장비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야생동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생동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요청받거나 법 제34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려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 명 이상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지체 없이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야생동물 관련 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발견 일시·장소, 종류, 성별 및 연령 등 일반 현황 2.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3.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원인 및 경로 4. 야생동물 질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방법 5. 그 밖에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역학조사를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⑥ 제5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10(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3. 야생동물의 살처분		[전문개정 2020. 5. 27.] 제44조의8(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이동제한·살처분 명령)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2020. 5. 27.> 1.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2.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려면 대상 지역·질병 및 조치기간이 적힌 별지 제40호의6서식의 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명령서를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③ 법 제34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살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삭제 <2020. 5. 27.> 2. 삭제 <2020. 5. 27.> 3. 삭제 <2020. 5. 27.> ④ 시·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④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내 이동제한·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중간 전파 또는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⑥ 법 제34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5. 27., 2020. 9. 29.>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⑦ 법 제34조의10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5. 27.> 1.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한 야생동물에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살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살처분 명령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5. 27.> [본조신설 2015. 3. 25.] [제목개정 2020. 5. 27.] 제44조의9(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 법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의 소각 및 매몰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20. 5. 27.>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10(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① 법 제34조의10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는 별표 8의5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26.) ⑤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4. 3. 24.] [제목개정 2019. 11. 26.]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같다. <개정 2020. 5. 27.>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매물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11(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1제1항에 따라 매몰한 야생동물의 사체의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야생동물 사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발굴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별표 8의4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11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말한다. 1. 매몰된 사체와 관련된 야생동물 질병 2. 매몰된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5. 3. 25.]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1. 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을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예찰지역으로 지정 2.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등 확산방지를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③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44조의9부터 제44조의11까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 대상 지역, 예찰기간, 수행 인원, 예찰의 결과 2.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대상 지역, 조치기간, 소독방법, 출입통제 또는 소독의 결과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포획 또는 살처분: 대상 지역·종, 포획 도구 또는 살처분 방법, 포획 또는 살처분의 결과 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신설 2021. 5. 18.〉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의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에 대하여 소독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기관) 법 제34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5. 14.]	제4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 법 34조의13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2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 ① 법 제34조의13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44조의13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13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이하 “야생동물검역사”라 한다)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검역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동물의 질병과 관련된 분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동물의 검역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검역사가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야생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본조신설 2021. 5. 18.] 제34조의15(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하며, 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한다)과 그 사체 2.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診斷液類)(해당 진단액류에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검역대상질병의 유해성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16(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①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7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연구조사 또는 의약품의 제조 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안전관리계획서 4. 그 밖에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물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물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2.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전문인력 확보 여부 2.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3.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물량이 적정한지 여부 4.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유출되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17(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각 또는 매물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조의16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등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직접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등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게 명하거나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직접 소각·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등은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지정검역물등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		제44조의18(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미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34조의18(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신고 또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설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발아 수입하는 경우 3. 수출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19(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①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의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법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3.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증 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서 다.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등 허가서 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증 5. 제44조의18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은 별표 8의7과 같고, 지정검역물의 검역기간은 별표 8의8과 같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③ 법 제34조의18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하는 경우 그 검역 방법 및 검역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8의7과 별표 8의8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2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법 제34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의 제출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제2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제출 3.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구두 신고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21(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① 법 제34조의19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입한다. ② 법 제34조의19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을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지정받으려는 장소 및 지정 요청 사유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20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검역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18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절차,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제23조의6(검역관리인의 임무)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의 입고·출고·이동·소독에 관한 사항 - 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에 관한 사항 -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별표 8의9에 따른 수입검역증명표지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 견본품 - 법 제34조의9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 [본조신설 2024. 5.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을 포함한다)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자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4. 법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시설·장비의 검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정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5.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금액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지정된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제44조의23(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4조의2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하 “보관관리인”이라 한다)이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야생동물의 분뇨 등 오물과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비용 3. 야생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명할 수 있다. ⑦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 다)·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물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매물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물등을 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소각·매물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정검역물의 소독, 입·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기 법 제34조의22제6항에 따른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0와 같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44조의24(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법 제34조의23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대한 소각 또는 매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조의2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4조의16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7절 곰 사육 금지〈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양수·운반·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34조의24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①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 사육농가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중 어느 한 곳 이상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육곰 수색 및 포획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사육농가에게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행정기관은 신고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인근 주민에게 사육곰 탈출 사실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곰 사육농가가 제1항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곰 사육농가에게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34조의25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육곰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사육곰이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제34조의24제1항에 따른 곰 사육이 금지되기 전에 사육 중인 곰을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34조의26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단체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34조의27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에 위한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34조의28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8.> [제목개정 2011. 7. 28.] 제36조(등록취소)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춘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6조(변경등록사항) 법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소재지 2. 신축·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및 전시 2.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3.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본조신설 2012. 7. 27.]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6조(변경등록사항) 법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소재지 2. 신축·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및 전시 2.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3.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본조신설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3.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 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7. 28.] 제39조 삭제 <2019. 11. 26.>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①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월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1조 삭제 <2012. 2. 1.> 제41조의2 삭제 <2012. 2. 1.> 제4장 수렵 관리 <개정 2011. 7. 28.>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제24조의2 삭제 <2020. 2. 25.> 제25조 삭제 <2020. 2. 25.> 제26조 삭제 <2020. 2. 25.> 제27조 삭제 <2020. 2. 25.>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제47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박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장의 소재지 2. 신축·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박제품 및 박제용 야생동물의 출처, 구입일시, 종류 및 수량 2. 박제품의 제작일시 및 판매일시 3. 거래상대방 [전문개정 2012. 7. 27.] 제48조 삭제 <2013. 2.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정한다. 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전문개정 2012. 7. 27.]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설정계획서 2.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수렵장 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4. 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 상황 조사 명세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5. 수렵장 관리에 관한 수입·지출예산 명세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1. 7. 28.]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 2. 수렵기간·이용방법·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 요금 3. 인공증식·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명세 4. 수렵장에서의 수렵 금지구역 지정 5.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6. 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명세 [전문개정 2012. 7. 27.] 제51조(수렵장 안내판·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 2. 제49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②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수렵장 관리소 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 응급의료시설 4. 사격연습시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 수렵장의 경계표지시설 8. 안전관리시설 [전문개정 2015. 8.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수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4조(수렵면허)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19. 9. 25., 2022. 12. 9.>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증명사진 1장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그 중 하나의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다른 수렵면허의 갱신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2019. 9. 25., 2022. 12. 9.> 1.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증명사진 1장 3. 수렵면허증 4.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4조(수렵면허시험 등)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전문개정 2012. 7. 27.] 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7. 27.]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시·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시·도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2. 7. 27.]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10. 16., 2019. 11. 26.>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7. 28.] 제47조(수렵 강습)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 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1.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2.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갖출 것 가. 제59조제2항의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삭제 <2015. 8. 4.> ② 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4.>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관 또는 단체 등록증 3. 전문인력 명세서 4. 수렵강습기관 시설 명세서 5. 사업계획서(실기 강습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렵 강습 교재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전문개정 2012. 7. 27.] 제59조(수렵강습) ①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실시 예정일 30일 전에 그 일시·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습의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② 제1항에 따른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1. 7. 28.]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 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3. 제4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전문개정 2012. 7. 27.] 제60조(수강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개정 2015. 8. 4.>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수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3조 삭제 <2012. 7. 31.>	제61조(수렵면허증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증명사진 1장 ④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수렵면허증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전문개정 2012. 7. 27.]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22. 6.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수렵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0조(수렵승인 등)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	제63조(수렵승인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 있다. <개정 2014. 3. 11.> ④ 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의 서식환경 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방사 또는 복원 7.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단속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 보호 계몽활동 12.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전문개정 2012. 7. 31.] 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2.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3.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여 그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애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전문개정 2012. 7. 31.]	2.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3.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4.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할 것 ③ 수렵장설정자는 제24항제4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가 반납된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등을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17.> ④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7. 17.> [전문개정 2012. 7. 27.] 제64조 삭제 <2014. 7.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 7. 28.]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수렵장 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 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의 필요성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4.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계획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5. 1명당 포획량 6. 수렵방법 및 수렵 도구 7.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8. 위탁관리에 관한 예산 설명서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전문개정 2012. 7. 31.]	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위탁받으려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운영계획 2. 시설계획 3.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 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4. 필요예산 명세 [전문개정 2012. 7. 27.] 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① 수렵장설정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렵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 포획 상황 2.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 현황 3. 수렵장 운영경비 명세 및 수입금의 사용명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		②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포획 상황 3. 수렵장의 관리·운영 현황 [전문개정 2012. 7. 27.] 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렵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포획 신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 7. 27.] 제68조(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수렵장 운영·관리 접수대장에 해당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 수렵기간, 수렵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적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수렵장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수렵장 밖으로 반출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수렵한 야생동물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수령 및 사용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1. 7. 28.]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5. 2. 3., 2023. 3. 21., 2023. 8. 8., 2024. 2. 6.>		제69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법 제54조제1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전문개정 2011. 7. 28.] 제5장 보칙 <개정 2011. 7. 28.>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제37조(보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0. 9. 29.>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① 법 제55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집회 장소 또는 광장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2.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5. 8.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9. 11. 26.> 1. 서식지의보전기관의 운영자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5. 삭제 <2012. 2. 1.>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삭제 <2012. 2. 1.> 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	1. 살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확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7. 31.] [제목개정 2020. 9. 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9. 11. 26., 2022. 12. 13.>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4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5. 삭제 <2012. 2. 1.>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삭제 <2012. 2. 1.> 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열액·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시행일: 2025. 12. 14.] 제56조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알선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땃, 창애, 울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땃, 창애,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땃, 창애,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 검역물을 수입한 자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3. 24.> [전문개정 2012. 7.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7. 28.]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 2022. 12. 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밧, 창애, 울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밧, 창애,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에,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7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물 수입·반입한 자 7의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7의4.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 검역물을 수입한 자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상으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7. 28.] [시행일: 2025. 12. 14.] 제57조 제57조의2(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2.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3.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 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9. 11. 26.]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령으로	제38조의2(보상금)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야생동물의 평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72조(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법 제58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2022. 6. 10.> -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 야생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교육 - 삭제 <2012. 2. 1.> -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매물 -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보호구역의 관리 -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2022. 6. 10., 2022. 12. 13.> -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 야생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교육 - 삭제 <2012. 2. 1.> -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매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 보호구역의 관리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 7. 28.] [제록개정 2014. 3. 24.] [시행일: 2025. 12. 14.] 제58조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 7. 28.] 제5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본조신설 2013. 7. 16.]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72조의2(수수료) ① 법 제58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7.] 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 11. 27.> 1.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2. 7. 27.] 제74조(직무 범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계몽 2. 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3.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관리 4.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및 서식환경 개선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24.>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 7. 28.]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의 관리 6.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불법 거래행위 감시업무의 보조 [전문개정 2012. 7. 27.] 제75조(보수)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정부임급단가기준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6.> ②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야생생물 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전문개정 2012. 7. 27.] 제77조(야생생물 보호원증)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 7. 28.]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7. 28.]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 2022. 12. 13.> [전문개정 2011. 7. 28.] [시행일: 2025. 12. 14.] 제63조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의 발급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 제7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승인·허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 2021. 5. 18.> [전문개정 2011. 7. 28.]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승인·허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 2021. 5. 18., 2022. 12. 13.> [전문개정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5. 12. 14.] 제64조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7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④ 삭제 <2012. 2. 1.> [전문개정 2011. 7. 28.] 제6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16., 2020. 5. 26., 2023. 3. 14., 2024. 5. 14.>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등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 3.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포획·채취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관 신고의 접수 6.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허가증 반납의 수령 7.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입 또는 반출의 허가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양도·양수·폐사(斃死) 등 신고의 접수 9의2.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 9의3.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의 허가 9의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시설의 등록의 접수 9의5.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9의6.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9의7.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9의8.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증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9의9.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9의10.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9의11.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 9의12.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입 또는 반출 허가의 취소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송·이송 1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조치 13. 삭제 <2020. 5. 26.> 14. 삭제 <2020. 5. 26.> 15.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훼손행위 또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도·단속과 행위의 제한 16.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의 제한·금지, 출입 제한·금지 지역의 위치 등의 고시, 출입 제한·금지의 해제 및 그 사실의 고시 17.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 18.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및 체결의 권고와 계약 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1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2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원방안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의 요청 21. 삭제 <2020. 5. 26.> 2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검사 및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의 검사 24.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소에 출입 및 관계 서류 등의 검사 25. 법 제57조(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임명 27.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위촉 28. 법 제62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임 및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촉 29.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30.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제12호·제2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1.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2.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3. 제13조제5호에 따른 약기 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24., 2020. 9. 29., 2024. 5. 14.> 1.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2.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허가 3. 법 제57조제8호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4.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 12. 12.> [전문개정 2012. 7.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식실태 정밀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찰중 조사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4.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12 제1항제2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업무(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23. 12. 12.>]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의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5. 3. 24.>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관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포획 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20. 5. 26.) 1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 1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박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 및 그 갱신과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19.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에 관한 사무 20. 법 제48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28.]	사무 2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 안에서의 야생동물 수렵승인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2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에 관한 사무 24.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에 관한 사무 25.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 7. 31.] [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23. 12. 12.>]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삭제 <2024. 2. 27.> 2. 제13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2014년 7월 17일 3. 제13조의4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2014년 7월 17일 4. 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 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7. 16.] [제39조의3에서 이동 <2023. 12. 12.>]	제7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기준: 2014년 7월 17일 2. 제23조의4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 2014년 7월 17일 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2014년 7월 17일 4.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2014년 7월 1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벌칙 <개정 2011. 7. 28.>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24. 1. 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사육·증		5. 제23조의9에 따른 개선기간: 2014년 7월 17일 6.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2014년 7월 17일 7. 제29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등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17일 8.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사항: 2014년 7월 17일 9. 제47조제3항에 따른 박제업자의 변경등록사항: 2014년 7월 17일 10.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신청·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17일 11. 삭제 <2017. 11. 30.> 12. 제7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요건: 2014년 7월 17일 [전문개정 2014. 7.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시행일: 2025. 1. 24.] 제67조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21. 5. 18.>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밧, 창에,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5의2.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8. 제34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한 자 9. 제34조의16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11. 제34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13.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4. 제34조의2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22. 6. 10.> [전문개정 2011. 7. 28.]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22. 12. 13.>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에,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삭제 <2012. 2. 1.> 9. 삭제 <2012. 2. 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삭제 <2012. 2. 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으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신행위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전문개정 2011. 7. 28.]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22.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2024. 1. 23.) -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 -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에,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삭제 <2012. 2. 1.> - 삭제 <2012. 2. 1.> -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의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0의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한 자 - 삭제 <2012. 2. 1.> -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전문개정 2011. 7. 28.] [시행일: 2025. 1. 24.] 제69조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27.,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 1. 삭제 <2017. 12. 1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밧, 창에, 울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5의2. 삭제 <2021. 5. 18.> 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전문개정 2011. 7. 28.] 제71조(물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개정 2013. 7. 16., 2022. 6. 10.> 1.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구입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전문개정 2011. 7. 28.] 제71조(물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개정 2013. 7. 16., 2022. 6. 10., 2024. 1. 23.> 1.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구입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은 몰수한다. <신설 2024. 1. 23.> -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사육·증식된 사육곰 -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양수·운반·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 -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전문개정 2011. 7. 28.] [시행일: 2025. 1. 24.] 제71조 제7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4. 3. 24., 2019. 11. 26., 2021. 5. 18.> -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80조 삭제 <2009. 6.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6의2.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0. 5. 26., 2022. 12. 13.>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2. 2. 1.)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2. 2. 1.)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7. 23.) ⑤ 삭제 (2010. 7. 23.) ⑥ 삭제 (2010. 7. 23.) ⑦ 삭제 (2010. 7. 23.) 부칙 (제7167호, 2004. 2.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부칙 (제18696호, 2005. 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부칙 (제171호, 2005. 2.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제33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 급으로 본다. 제4조(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은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 급으로 본다. 제5조(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본다. 제6조(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본다. 제7조(유해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해조수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본다.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한다.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 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49호, 2005. 9. 14.〉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1호, 2007. 4.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중 제1호란 내지 제3호란, 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내지 ⑫생략 부칙 〈제183호, 2005. 9. 27.〉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 2007.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 또는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수의 수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유해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생태계위해외래종·식물의 수입·반입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종·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시·도관리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관리야생동·식물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0385호, 2007. 11. 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연구원”을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21078호, 2008. 10. 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0호, 2007.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제31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멸종위기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 2009.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조수보호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박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제18조(생물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수렵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수렵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렵면허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수렵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수렵강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481호, 2009.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2630호, 2011. 1. 20.〉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7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2977호, 2011. 6. 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93호, 2011. 1. 21.〉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 201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 2012.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 2012.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 2012.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강습 신청 기간의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부칙 〈제491호, 201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수렵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5조(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수보호원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26조(명예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조수보호원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2호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생물다양성”으로 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을 “기술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234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001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시·도보호야생동·식물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보호 야생생물 등”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99호, 2013. 2.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16호, 2013.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 2014. 7. 1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 2015.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시설 일부를 훼손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 기관의 지원 10.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 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의 연구 제60조제1항중 “제8조,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36조, 제39조, 제40조”를 “제3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을 “제2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중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4조”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5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3항제3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 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②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 또는 반출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신청하거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⑤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⑨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480호, 2014. 7. 16.〉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9호, 2015. 3. 24.〉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6호, 2015. 7. 2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612호, 2015.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면허 갱신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4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렵감습기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감습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렵 감습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 감습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렵 감습 이수증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렵 감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3일 이전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벌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44호,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569호, 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거목 및 처묵부터 허묵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578호, 2018. 1. 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737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 2018.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 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면허를 신청하거나 수렵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벌령응급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 2020. 5. 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벌금을 병과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 제4조제1항에 제3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97호, 2004. 12. 31.〉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8721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2), 같은 표 제2호나목3) 및 같은 표 제3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73호, 2019.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82호, 2020. 2. 25.〉 (생물자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706호, 2020. 5. 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 2020. 9. 29.〉 이 규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 2020. 11. 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호, 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인력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0호, 2023. 1. 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24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육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75>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57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제44조·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7476호, 2005. 3.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칙 <제31013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삭제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1070호, 2020.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2호, 2020. 11. 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9호, 2021. 6. 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육시설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039호, 2023. 6. 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 2023. 12. 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 2024. 5. 17.> 이 규칙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 〈제7676호, 2005. 8.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⑥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192호, 2022. 12. 30.〉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33332호, 2023. 3.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951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보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수렵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4258호, 2024. 2. 2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509호, 2024. 5. 14.〉 이 영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내지 ㉔생략 ㉔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㉔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045호, 2006. 10.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내지 ㉓생략 ㉓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및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343호, 2007. 4. 11.> (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346호, 2007. 4. 11.>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365호, 2007. 4. 11.〉 (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⑤내지 ⑥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67호, 2007.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야생화된 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동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화된 동물로 본다. 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⑫ 부터 ③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762호, 2007. 12.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2〉 까지 생략 〈513〉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②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 중 “등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 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③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000호, 2010. 2. 4.>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 조”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88호, 2010. 7.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으로 본다. 제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은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으로 본다. 제5조(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동·식물특별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구역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7조(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로 본다. 제8조(야생동·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동·식물보호원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9조(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76조제6항 전단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④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동·식물(「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말한다)”을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⑪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의보전기관의 지원 제57조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제300조의 제목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물의 전문구조·치료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으로, “제33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을 “제33조제3항·제5항”으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⑮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9 및 15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51을 삭제한다. <table border="1" data-bbox="147 275 557 398"> <tr> <td data-bbox="147 275 196 339">149</td><td data-bbox="196 275 410 33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td><td data-bbox="410 275 557 339">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td></tr> <tr> <td data-bbox="147 339 196 398">150</td><td data-bbox="196 339 410 39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td><td data-bbox="410 339 557 398">야생생물 보호 구역</td></tr> </table> ⑯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6조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1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구역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1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 제1호”로 한다. ⑯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60호,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1257호, 2012. 2.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1666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3〉까지 생략 〈50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한다. <5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⑨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12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아 들여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점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7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12호, 2014. 3. 1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2521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야생동물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야생동물 수출·수입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수출·수입 등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제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5항·제6항”으로 한다.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3167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2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96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생물 보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서식지의보전기관이 야생생물을 보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본다. 부칙 〈제15835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2호, 2019. 11. 2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6609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6항, 제16조의7제2항·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4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8항 및 제73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72호, 2020. 8. 1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7제5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㉞부터 ㉟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71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제1항제5호의2 및 제70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검역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08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8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3, 제8조의4, 제11조, 제13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호다목·라목, 제69조제1항제17호 및 제7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부터 적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의 공포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의4 및 제70조제8호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2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제22조의4 및 제70조제8호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의 보관·관리 방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할 때까지 보관하거나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보관하는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 폐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증식한 자 또는 허위로 폐사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폐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3. 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40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5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㉔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㉓부터 ㉔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0119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피해의 예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곰 사육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10호의2·제10호의3 및 제71조제2항,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4 및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1호에 따른 곰 사육능가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육곰의 부속물 섭취 등에 관한 특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제조된 사육곰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다. 부칙 〈제20231호, 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③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5129
[별표 1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2 관련)	5130
[별표 1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관련)	5131
[별표 1의4]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5135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5136

[별표 1] (개정 2018. 3. 27.)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생물

가. 수출 또는 반출 허가

-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2)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4)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 1)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2)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수령예정자가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을 것
 - 나)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때 물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3)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재수출허가

-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2.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에 포함된 생물

가. 수출 또는 반출 허가

-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2)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 1) 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 2)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3)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될 것
 - 나)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때 물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다. 재수출허가

-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I에 포함된 생물

가. 수출 또는 반출 허가

- 1)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 1) 생물의 종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I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2) 생물의 종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I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출 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 3) 재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4)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다. 재수출승인

- 나)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전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비교

-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생물종 및 그 가공품으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표본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에 포함된 생물종 및 그 가공품으로 본다.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포함된 동물로서 조류 또는 포유류에 대한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기준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조류·포유류의 가공품과 고래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4)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별표 1의2] <개정 2023. 3. 14.>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2 관련)

1.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식육목(CARNIVORA)		
고양이과(Felidae)		
1	치타	<i>Acinonyx jubatus</i>
2	사자	<i>Panthera leo</i>
3	스라소니	<i>Lynx lynx</i>
4	퓨마	<i>Puma concolor</i>
5	재규어	<i>Panthera onca</i>
6	표범	<i>Panthera pardus</i>
7	호랑이	<i>Panthera tigris</i>
8	설표	<i>Panthera uncia</i>
곰과(Ursidae)		
9	말레이곰	<i>Helarctos malayanus</i>
10	반달가슴곰	<i>Ursus thibetanus</i>
11	아메리카검정곰	<i>Ursus americanus</i>
12	불곰	<i>Ursus arctos</i>

2.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악어목(CROCODYLIA)		
1	알리게이터악어과 모든 종	<i>Alligatoridae spp.</i>
2	크로커다일악어과 모든 종	<i>Crocodylidae spp.</i>
3	인도악어과 모든 종	<i>Gavialidae spp.</i>
뱀목(SERPENTES)		
4	코브라과 모든 종	<i>Elapidae spp.</i>
5	살모사과 모든 종	<i>Viperidae spp.</i>

[별표 1의3] <개정 2023. 3. 14.>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관련)

1. 별표 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2.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식육목(CAR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1	작은발톱수달	<i>Aonyx cinereus</i>

나.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거북목(TESTUDINES)		
돼지코거북과(Carettochelyidae)		
2	돼지코거북	<i>Carettochelys insculpta</i>
늑대거북과(Chelydridae)		
3	악어거북	<i>Macrochelys temminckii</i>
남생이과(Geoemydidae)		
4	남생이	<i>Mauremys reevesii</i>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번호	국명	학명
영장목(PRIMATES)		
긴꼬리원숭이과(Cercopithecidae)		
1	동부콜로부스	<i>Colobus guereza</i>
2	필리핀원숭이 (개잡이원숭이)	<i>Macaca fascicularis</i>
3	일본원숭이	<i>Macaca fuscata</i>
4	히말라야원숭이	<i>Macaca mulatta</i>
5	돼지꼬리원숭이	<i>Macaca nemestrina</i>
6	검은짧은꼬리원숭이	<i>Macaca nigra</i>
7	보닛원숭이	<i>Macaca radiata</i>
8	사자꼬리원숭이	<i>Macaca silenus</i>
9	토크원숭이	<i>Macaca sinica</i>
10	그리벳원숭이	<i>Chlorocebus aethiops</i>
11	올리브개코원숭이	<i>Papio anubis</i>
12	다이애나원숭이	<i>Cercopithecus diana</i>
13	맨드릴	<i>Mandrillus sphinx</i>
14	브라자원숭이	<i>Cercopithecus neglectus</i>
15	사바나원숭이	<i>Chlorocebus sabaeus</i>
16	망토개코원숭이	<i>Papio hamadryas</i>
17	모나원숭이	<i>Cercopithecus mona</i>
거미원숭이과(Atelidae)		
18	검은이마거미원숭이	<i>Ateles geoffroyi</i>

올빼미원숭이과(Aotidae)		
19	세줄무늬올빼미원숭이	<i>Aotus trivirgatus</i>
로리스과(Lorisidae)		
20	순다로리스	<i>Nycticebus coucang</i>
사람과(Hominidae)		
21	침팬지	<i>Pan troglodytes</i>
22	고릴라	<i>Gorilla gorilla</i>
23	오랑우탄	<i>Pongo pygmaeus</i>
긴팔원숭이과(Hylobatidae)		
24	큰긴팔원숭이	<i>Symphalangus syndactylus</i>
25	검은빛긴팔원숭이	<i>Nomascus concolor</i>
26	흰손긴팔원숭이	<i>Hylobates lar</i>
여우원숭이과(Lemuridae)		
27	알락꼬리여우원숭이	<i>Lemur catta</i>
꼬리감는원숭이과(Cebidae)		
28	흰머리카푸친	<i>Cebus capucinus</i>
29	비단마모셋	<i>Callithrix jacchus</i>
30	검은솔마모셋	<i>Callithrix penicillata</i>
31	다람쥐원숭이속 모든 종	<i>Saimiri spp.</i>
32	검은머리카푸친	<i>Cebus apella</i>
33	목화머리타마린	<i>Saguinus oedipus</i>
소목(ARTIODACTYLA)		
소과(Bovidae)		
34	바바리양	<i>Ammotragus lervia</i>
35	마르코염소	<i>Capra falconeri</i>
36	흰오릭스	<i>Oryx dammah</i>

사슴과(Cervidae)		
37	바라싱가	<i>Rucervus duvaucelii</i>
낙타과(Camelidae)		
38	과나코	<i>Lama guanicoe</i>
페커리과(Tayassuidae)		
39	목도리페커리	<i>Tayassu pecari</i>
말목(PERISSODACTYLA)		
말과(Equidae)		
40	몽골야생말	<i>Equus przewalskii</i>

4. 특정 시설 장치 및 관리 여부가 개체의 생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식육목(CARNIVORA)		
물개과(Otariidae)		
1	남아메리카물개	<i>Arctocephalus australis</i>
고래목(CETACEA)		
참돌고래과(Delphinidae)		
2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	<i>Tursiops truncatus</i>
3	남방큰돌고래	<i>Tursiops aduncus</i>
코끼리목(PROBOSCIDEA)		
코끼리과(Elephantidae)		
4	아시아코끼리	<i>Elephas maximus</i>

나. 조류(AVES)

번호	국명	학명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5	참매	<i>Accipiter gentilis</i>
6	말뚝가리	<i>Buteo buteo</i>
7	흰꼬리수리	<i>Haliaeetus albicilla</i>
8	참수리	<i>Haliaeetus pelagicus</i>
9	붉은허벅지말뚝가리	<i>Parabuteo unicinctus</i>
10	달마수리	<i>Terathopus ecaudatus</i>
11	독수리	<i>Aegypius monachus</i>
콘돌과(Cathartidae)		
12	큰콘돌	<i>Vultur gryphus</i>
파랑새목(CORACIIFORMES)		
코뿔새과(Bucerotidae)		
13	붉은코뿔새	<i>Aceros nipalensis</i>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다.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뱀목(SERPENTES)		
비단왕뱀과(Pythonidae)		
14	미얀마왕뱀	<i>Python molurus bivittatus</i>
15	그물무늬왕뱀	<i>Python reticulatus</i>
왕뱀과(Boidae)		
16	듀메릴보아구렁이	<i>Acrantophis dumerili</i>
17	왕뱀	<i>Boa constrictor</i>
18	그린아나콘다	<i>Eunectes murinus</i>
19	노랑아나콘다	<i>Eunectes notaeus</i>
도마뱀목(SAURIA)		
이구아나과(Iguanidae)		
20	그린이구아나	<i>Iguana iguana</i>
악어도마뱀과(Xenosauridae)		
21	악어도마뱀	<i>Shinisaurus crocodilurus</i>
테구도마뱀과(Teiidae)		
22	콜롬비아골드테구	<i>Tupinambis teguixin</i>
왕도마뱀과(Varanidae)		
23	물왕도마뱀	<i>Varanus salvator</i>

5134

라. 양서류(AMPHIBIA)

번호	국명	학명
장수도롱뇽과(Cryptobranchidae)		
24	중국장수도롱뇽	<i>Andrias davidianus</i>

[별표 1의4] <신설 2020. 5. 26.>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가.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은 야생동물과 사산 또는 유산된 야생동물의 태아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 당시의 해당 야생동물 및 그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경우: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비 또는 정상적인 야생동물의 평가액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을 뺀 금액

나.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의 출입제한 일수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 - 출입제한 기간 중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 × 해당 사육시설의 최근 1년 1명당 평균 유료 관람료 × 70퍼센트(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 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다.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이하 “야생동물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야생동물이 발견된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시·군·구 단위로 판단한다): 야생동물평가액 전액
-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 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90
- 3) 그 밖의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80

2.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감액한다.

가.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2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3)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4)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4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5)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야생동물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3) 야생동물의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개정 2025. 5.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호	50	100	100
나.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호	20	40	60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3호	50	100	100
마.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바.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4호	50	100	100
사.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아.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2	100	100	100
자.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3	100	100	100
차.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4	30	5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5	50	100	100
타.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6	50	100	100
파.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의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6호	50	100	100
하.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7호	50	100	100
거. 법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2호의2	100	150	200
너.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8호	50	100	100
더.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8호의2	50	100	100
려.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9호	50	100	100
머.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법 제73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0	30	50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50	50	50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0	100	100
5) 야생생물의 동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100	100	100
6)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제18조제3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	100	100
7) 가축의 방목		50	100	100
8)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100	100	100
9) 동물의 방사(제18조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50	100	100
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2호	50	100	100
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처.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3호	50	100	100
커. 법 제34조제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3호의2	50	10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터. 법 제34조제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 제34조제6제1항에 따른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3호의3	50	100	100
퍼. 법 제34조제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4호	100	150	200
허. 법 제34조제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5호	100	150	200
고. 법 제34조제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6호	100	150	200
노. 법 제34조제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6호의2	100	150	200
도.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4호	50	100	100
로.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춰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5호	50	100	100
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6호	50	100	100
보. 법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7호	50	10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소.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9호	100	100	100
오.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0호	50	100	100
조.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1호	50	100	100
초.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2호	50	50	100
코. 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3호	100	100	100
토.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7호	100	150	200
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4호	100	100	100
호.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3조제2항	150	200	300 (4차 이상 위반 시 50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	5143
[별표 2] 삭제 <2013.2.1.>	5150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5150
[별표 3의2] 야생동물 질병(제4조의2 관련)	5150
[별표 3의3]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방법(제7조의3제3항 관련)	5152
[별표 4]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조 관련)	5153
[별표 5] 곰의 처리기준(제22조제1항제4호 관련)	5154
[별표 5의2]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5154
[별표 6]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4조 관련)	5158
[별표 7]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6조 관련)	5171
[별표 8]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8조 관련)	5171
[별표 8의2]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2제2항 관련)	5181
[별표 8의3]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5제2항 관련)	5183
[별표 8의4] 소각 및 매몰기준(제44조의9 관련)	5185
[별표 8의5]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44조의10제1항 관련)	5186
[별표 8의6]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제31조의4 관련)	5187
[별표 8의7]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44조의19제3항 관련)	5188
[별표 8의8] 지정검역물 검역기간(제44조의19제3항 관련)	5188
[별표 8의9] 수입검역증명 표지(제44조의22제1항 관련)	5189
[별표 8의10]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보관관리 기준(제44조의23제3항 관련)	5189
[별표 9] 수수료(제72조의2제1항 관련)	5190
[별표 10]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제59조제2항 관련)	5190
[별표 11] 삭제 <2012.7.27.>	5190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5191

[별표 1] (개정 2022. 12. 9.)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나. 포유류, 조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육상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種子, 씨앗), 구근(球根, 알뿌리), 인경(鱗莖, 비늘줄기), 주아(珠芽, 살눈),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라. 해조류, 고등균류, 지의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포유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국명	학명
1	늑대	<i>Canis lupus coreanus</i>
2	대륙사슴	<i>Cervus nippon hortulorum</i>
3	무산쇠족제비	<i>Mustela nivalis</i>
4	물범	<i>Phoca largha</i>
5	반달가슴곰	<i>Ursus thibetanus ussuricus</i>
6	붉은박쥐	<i>Myotis rufoniger</i>
7	사향노루	<i>Moschus moschiferus</i>
8	산양	<i>Naemorhedus caudatus</i>
9	수달	<i>Lutra lutra</i>
10	스라소니	<i>Lynx lynx</i>
11	여우	<i>Vulpes vulpes peculiosa</i>
12	작은관코박쥐	<i>Murina ussuriensis</i>
13	표범	<i>Panthera pardus orientalis</i>
14	호랑이	<i>Panthera tigris altaica</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번호	국명	학명
1	담비	<i>Martes flavigula</i>
2	물개	<i>Callorhinus ursinus</i>
3	삼	<i>Prionailurus bengalensis</i>
4	큰바다사자	<i>Eumetopias jubatus</i>
5	토끼박쥐	<i>Plecotus ognevi</i>
6	하늘다람쥐	<i>Pteromys volans aluco</i>

3. 조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국명	학명
1	검독수리	<i>Aquila chrysaetos</i>
2	고니	<i>Cygnus columbianus</i>
3	넓적부리도요	<i>Eurynorhynchus pygmeus</i>
4	노랑부리백로	<i>Egretta eulophotes</i>
5	느시	<i>Otis tarda</i>
6	두루미	<i>Grus japonensis</i>
7	먹황새	<i>Ciconia nigra</i>
8	불제비갈매기	<i>Thalasseus bernsteini</i>
9	저어새	<i>Platalea minor</i>
10	참수리	<i>Haliaeetus pelagicus</i>
11	청다리도요사촌	<i>Tringa guttifer</i>
12	크낙새	<i>Dryocopus javensis</i>
13	호사비오리	<i>Mergus squamatus</i>
14	흑고니	<i>Cygnus olor</i>
15	황새	<i>Ciconia boyciana</i>
16	흰꼬리수리	<i>Haliaeetus albicilla</i>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국명	학명
1	개리	<i>Anser cygnoides</i>
2	검은머리갈매기	<i>Larus saundersi</i>
3	검은머리물떼새	<i>Haematopus ostralegus</i>
4	검은머리족새	<i>Emberiza aureola</i>
5	검은목두루미	<i>Grus grus</i>
6	고대갈매기	<i>Larus relictus</i>
7	긴꼬리딱새	<i>Terpsiphone atrocaudata</i>
8	긴점박이올빼미	<i>Strix uralensis</i>
9	까막딱다구리	<i>Dryocopus martius</i>
10	노랑부리저어새	<i>Platalea leucorodia</i>
11	독수리	<i>Aegypius monachus</i>
12	따오기	<i>Nipponia nippon</i>
13	뜸부기	<i>Gallicrex cinerea</i>
14	매	<i>Falco peregrinus</i>
15	무당새	<i>Emberiza sulphurata</i>
16	물수리	<i>Pandion haliaetus</i>
17	벌매	<i>Pernis ptilorhynchus</i>
18	붉은가슴흰죽지	<i>Aythya baeri</i>
19	붉은배새매	<i>Accipiter soloensis</i>
20	붉은어깨도요	<i>Calidris tenuirostris</i>
21	붉은해오라기	<i>Gorsachius goisagi</i>
22	불쇠오리	<i>Synthliboramphus wumizusume</i>
23	불종다리	<i>Galerida cristata</i>
24	새매	<i>Accipiter nisus</i>
25	새호리기	<i>Falco subbuteo</i>

번호	국명	학명
26	섬개개비	<i>Locustella pleskei</i>
27	솔개	<i>Milvus migrans</i>
28	쇠검은머리족새	<i>Emberiza yessoensis</i>
29	쇠제비갈매기	<i>Sterna albifrons</i>
30	수리부엉이	<i>Bubo bubo</i>
31	시베리아흰두루미	<i>Grus leucogeranus</i>
32	알락개구리매	<i>Circus melanoleucos</i>
33	알락꼬리마도요	<i>Numenius madagascariensis</i>
34	양비둘기	<i>Columba rupestris</i>
35	올빼미	<i>Strix aluco</i>
36	재두루미	<i>Grus vipio</i>
37	잣빛개구리매	<i>Circus cyaneus</i>
38	조롱이	<i>Accipiter gularis</i>
39	참매	<i>Accipiter gentilis</i>
40	청호반새	<i>Halcyon pileata</i>
41	큰고니	<i>Cygnus cygnus</i>
42	큰기러기	<i>Anser fabalis</i>
43	큰덤불해오라기	<i>Ixobrychus eurhythmus</i>
44	큰뒷부리도요	<i>Limosa lapponica</i>
45	큰말뚝가리	<i>Buteo hemilasius</i>
46	팔색조	<i>Pitta nympha</i>
47	항라머리검독수리	<i>Aquila clanga</i>
48	흑기러기	<i>Branta bernicla</i>
49	흑두루미	<i>Grus monacha</i>
50	흑비둘기	<i>Columba janthina</i>
51	흰목물떼새	<i>Charadrius placidus</i>
52	흰이마기러기	<i>Anser erythropus</i>
53	흰죽지수리	<i>Aquila heliaca</i>

4. 양서류·파충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국명	학명
1	비바리뱀	<i>Sibynophis chinensis</i>
2	수원청개구리	<i>Dryophytes suweonensis</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번호	국명	학명
1	고리도롱뇽	<i>Hynobius yangi</i>
2	구렁이	<i>Elaphe schrenckii</i>
3	금개구리	<i>Pelophylax chosonicus</i>
4	남생이	<i>Mauremys reevesii</i>
5	맹꽁이	<i>Kaloula borealis</i>
6	표범장지뱀	<i>Eremias argus</i>

5. 어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국명	학명
1	감돌고기	<i>Pseudopungtungia nigra</i>
2	꼬치동자개	<i>Pseudobagrus brevicorpus</i>
3	남방동사리	<i>Odontobutis obscura</i>
4	모래주사	<i>Microphysogobio koreensis</i>
5	미호종개	<i>Cobitis chuii</i>
6	얼룩새코미꾸리	<i>Koreocobitis naktongensis</i>
7	여울마자	<i>Microphysogobio rapidus</i>
8	임실납자루	<i>Acheilognathus somjinensis</i>
9	좁수수치	<i>Kichulchoia brevifasciata</i>
10	통사리	<i>Liobagrus obesus</i>
11	흰수마자	<i>Gobiobotia nakdongensis</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번호	국명	학명
1	가는돌고기	<i>Pseudopungtungia tenuicorpa</i>
2	가시고기	<i>Pungitius sinensis</i>
3	క్క저기	<i>Coreoperca kawamebari</i>
4	꾸구리	<i>Gobiobotia macrocephala</i>
5	다묵장어	<i>Lethenteron reissneri</i>
6	돌상어	<i>Gobiobotia brevisbarba</i>
7	독종개	<i>Cottus koreanus</i>
8	묵납자루	<i>Acheilognathus signifer</i>
9	버들가지	<i>Rhynchocypris semotilus</i>
10	부안종개	<i>Iksookimia pumila</i>
11	새미	<i>Ladislavia taczanowskii</i>
12	어름치	<i>Hemibarbus mylodon</i>
13	연준모치	<i>Phoxinus phoxinus</i>
14	열목어	<i>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i>
15	칠성장어	<i>Lethenteron japonicus</i>
16	큰줄납자루	<i>Acheilognathus majusculus</i>
17	한강납줄개	<i>Rhodeus pseudosericeus</i>
18	한독종개	<i>Cottus hangiongensis</i>

6. 곤충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국명	학명
1	닷무늬길앞잡이	<i>Cicindela (Abroschelis) anchoralis</i>
2	붉은점모시나비	<i>Parnassius bremeri</i>
3	비단벌레	<i>Chrysochroa (Chrysochroa) coreana</i>

번호	국명	학명
4	산굴뚝나비	<i>Hipparchia autonoe</i>
5	상제나비	<i>Aporia crataegi</i>
6	수염풍뎡이	<i>Polyphylla laticollis manchurica</i>
7	장수하늘소	<i>Callipogon (Eoxenus) relictus</i>
8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i>Sinia divina</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국명	학명
1	깊은산부전나비	<i>Protantigius superans</i>
2	노란잔산잠자리	<i>Macromia daimoji</i>
3	대모잠자리	<i>Libellula angelina</i>
4	두점박이사슴벌레	<i>Protopocilus astacoides blanchardi</i>
5	뚱보주름메뚜기	<i>Haplotropis brunneriana</i>
6	멋조롱박딱정벌레	<i>Acoptolabus mirabilissimus mirabilissimus</i>
7	물방개	<i>Cybister (Cybister) chinensis</i>
8	물장군	<i>Lethocerus deyrolli</i>
9	불나방	<i>Arctia caja</i>
10	소똥구리	<i>Gymnopleurus (Gymnopleurus) mopsus</i>
11	쌍꼬리부전나비	<i>Cigaritis takanonis</i>
12	애기뿔소똥구리	<i>Copris (Copris) tripartitus</i>
13	여름여리표범나비	<i>Mellicta ambigua</i>
14	왕은점표범나비	<i>Argynnis nerippe</i>
15	윤조롱박딱정벌레	<i>Acoptolabus leechi yooni</i>
16	은줄팔랑나비	<i>Leptalina unicolor</i>
17	참조박뒤영벌	<i>Bombus (Megabombus) koreanus</i>
18	창언조롱박딱정벌레	<i>Acoptolabus changeonleei</i>
19	큰자색호랑꽃무지	<i>Osmoderma caeleste</i>

번호	국명	학명
20	한국고마잠자리	<i>Nannophya koreana</i>
21	홍줄나비	<i>Chalinga pratti</i>

7. 무척추동물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국명	학명
1	귀이빨대칭이	<i>Cristaria plicata</i>
2	나팔고둥	<i>Charonia lampas</i>
3	남방방게	<i>Pseudohelice subquadrata</i>
4	두드럭조개	<i>Aculamprotula coreana</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국명	학명
1	갯게	<i>Chasmagnathus convexus</i>
2	거제외줄달팽이	<i>Satsuma myomphala</i>
3	검붉은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suensoni</i>
4	금빛나팔돌산호	<i>Tubastraea coccinea</i>
5	기수갈고둥	<i>Clithon retropictum</i>
6	깃산호	<i>Plumarella spinosa</i>
7	대추귀고둥	<i>Ellobium chinense</i>
8	둔한진총산호	<i>Euplexaura crassa</i>
9	망상괘시산호	<i>Echinogorgia reticulata</i>
10	물거미	<i>Argyroneta aquatica</i>
11	밤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castanea</i>
12	별혹산호	<i>Ellisella ceratophyta</i>
13	붉은발말뚝게	<i>Sesarmops intermedius</i>
14	선침거미불가사리	<i>Ophiacantha linea</i>

번호	국명	학명
15	연수지멘드라미	<i>Dendronephthya mollis</i>
16	염주알다슬기	<i>Koreanomelania nodifila</i>
17	울릉도달팽이	<i>Karaftohelix adamsi</i>
18	유척나무돌산호	<i>Dendrophyllia cribrosa</i>
19	의염통성게	<i>Nacospatangus alta</i>
20	자색수지멘드라미	<i>Dendronephthya putteri</i>
21	잔가지나무돌산호	<i>Dendrophyllia ijimai</i>
22	착생갯산호	<i>Plumarella adhaerens</i>
23	참달팽이	<i>Koreanohadra koreana</i>
24	촉매키산호	<i>Echinogorgia complexa</i>
25	칼세오리옆새우	<i>Gammarus zeongogensis</i>
26	해송	<i>Myriopathes japonica</i>
27	흰발농게	<i>Austruca lactea</i>
28	흰수지멘드라미	<i>Dendronephthya alba</i>

8. 육상식물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국명	학명
1	광릉요강꽃	<i>Cypripedium japonicum</i>
2	금자란	<i>Gastrochilus fuscopunctatus</i>
3	나도풍란	<i>Sedirea japonica</i>
4	만년콩	<i>Euchresta japonica</i>
5	비자란	<i>Thrixspermum japonicum</i>
6	암매	<i>Diapensia lapponica</i> var. <i>obovata</i>
7	제주고사리삼	<i>Mankyua chejuense</i>
8	죽백란	<i>Cymbidium lancifolium</i>

번호	국명	학명
9	탐라란	<i>Gastrochilus japonicus</i>
10	털복주머니란	<i>Cypripedium guttatum</i>
11	풍란	<i>Neofinetia falcata</i>
12	한라솜다리	<i>Leontopodium coreanum</i> var. <i>hallaisanense</i>
13	한란	<i>Cymbidium kanran</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번호	국명	학명
1	가느동자꽃	<i>Lychnis kiusiana</i>
2	가시연	<i>Euryale ferox</i>
3	가시오갈피나무	<i>Eleutherococcus senticosus</i>
4	각시수련	<i>Nymphaea tetragona</i> var. <i>minima</i>
5	개가시나무	<i>Quercus gilva</i>
6	갯봄맞이꽃	<i>Glax maritima</i> var. <i>obtusifolia</i>
7	검은별고사리	<i>Cyclosorus interruptus</i>
8	구름병아리난초	<i>Neottianthe cucullata</i>
9	기생꽃	<i>Trientalis europaea</i> subsp. <i>arctica</i>
10	끈끈이구개	<i>Drosera peltata</i> var. <i>nipponica</i>
11	나도범의귀	<i>Mitella nuda</i>
12	나도승마	<i>Kirengeshoma koreana</i>
13	나도여로	<i>Zigadenus sibiricus</i>
14	날개하늘나리	<i>Lilium dauricum</i>
15	넓은잎제비꽃	<i>Viola mirabilis</i>
16	노랑만병초	<i>Rhododendron aureum</i>

번호	국명	학명
17	노랑붓꽃	<i>Iris koreana</i>
18	눈썹고사리	<i>Asplenium wrightii</i>
19	단양쑥부쟁이	<i>Aster altaicus</i> var. <i>uchiyamae</i>
20	대성쓴풀	<i>Anagallidium dichotomum</i>
21	대청부채	<i>Iris dichotoma</i>
22	대홍란	<i>Cymbidium macrorhizon</i>
23	독미나리	<i>Cicuta virosa</i>
24	두입약난초	<i>Cremastra unguiculata</i>
25	매화마름	<i>Ranunculus trichophyllus</i> var. <i>kadzusensis</i>
26	무주나무	<i>Lasianthus japonicus</i>
27	물고사리	<i>Ceratopteris thalictroides</i>
28	물석송	<i>Lycopodiella cernua</i>
29	방울난초	<i>Habenaria flagellifera</i>
30	백부자	<i>Aconitum coreanum</i>
31	백양더부살이	<i>Orobancha filicicola</i>
32	백운란	<i>Kuhlhasseltia nakaiana</i>
33	복주머니란	<i>Cypripedium macranthos</i>
34	분홍장구채	<i>Silene capitata</i>
35	산분꽃나무	<i>Viburnum burejaeticum</i>
36	산작약	<i>Paeonia obovata</i>
37	삼백초	<i>Saururus chinensis</i>
38	새깃아재비	<i>Woodwardia japonica</i>
39	서울개발나물	<i>Pterygopleurum neurophyllum</i>

번호	국명	학명
40	석곡	<i>Dendrobium moniliforme</i>
41	선모시대	<i>Adenophora erecta</i>
42	선제비꽃	<i>Viola raddeana</i>
43	섬개야광나무	<i>Cotoneaster wilsonii</i>
44	섬시호	<i>Bupleurum latissimum</i>
45	섬현삼	<i>Scrophularia takesimensis</i>
46	세볼투구꽃	<i>Aconitum austrokoreense</i>
47	손바닥난초	<i>Gymnadenia conopsea</i>
48	솔잎난	<i>Psilotum nudum</i>
49	순채	<i>Brasenia schreberi</i>
50	신안새우난초	<i>Calanthe aristulifera</i>
51	애기송이풀	<i>Pedicularis ishidozana</i>
52	연잎평의다리	<i>Thalictrum coreanum</i>
53	왕제비꽃	<i>Viola websteri</i>
54	으름난초	<i>Cyrtosia septentrionalis</i>
55	자주망귀개	<i>Utricularia yakusimensis</i>
56	장백제비꽃	<i>Viola biflora</i>
57	전주물고리풀	<i>Dysophylla yatabeana</i>
58	정향풀	<i>Amsonia elliptica</i>
59	제비동자꽃	<i>Lychnis wilfordii</i>
60	제비붓꽃	<i>Iris laevigata</i>
61	조름나물	<i>Menyanthes trifoliata</i>
62	죽절초	<i>Sarcandra glabra</i>

번호	국명	학명
63	지네발란	<i>Cleisostoma scolopendrifolium</i>
64	진노랑상사화	<i>Lycoris chinensis</i> var. <i>sinuolata</i>
65	차겔이란	<i>Oberonia japonica</i>
66	참땃꽃	<i>Halenia coreana</i>
67	참물부추	<i>Isoetes coreana</i>
68	초령목	<i>Michelia compressa</i>
69	칠보치마	<i>Metanarthecium luteo-viride</i>
70	콩짜개란	<i>Bulbophyllum drymoglossum</i>
71	큰바늘꽃	<i>Epilobium hirsutum</i>
72	파초일엽	<i>Asplenium antiquum</i>
73	피뿌리풀	<i>Stellera chamaejasme</i>
74	한라송이꽃	<i>Pedicularis hallaisanensis</i>
75	한라옥잠난초	<i>Liparis auriculata</i>
76	한라장구채	<i>Silene fasciculata</i>
77	해오라비난초	<i>Habenaria radiata</i>
78	흑난초	<i>Bulbophyllum inconspicuum</i>
79	홍월굴	<i>Arctous rubra</i>

9. 해조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국명	학명
1	그물공말	<i>Dictyosphaeria cavernosa</i>
2	삼나무말	<i>Coccophora langsdorfii</i>

10. 고등균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국명	학명
1	화경솔발버섯	<i>Omphalotus guepiniiformis</i>

[별표 2] 삭제 <2013. 2. 1.>

[별표 3] <개정 2023. 12. 14.>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환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별표 3의2] <개정 2019. 12. 20.>

야생동물 질병(제4조의2 관련)

원인체	질병명
세균 (39종)	가성결핵(pseudotuberculosis), 결핵병(tuberculosis), 급성호흡기감염증(acute respiratory infections), 기종저(blackleg), 단독(erysipelas), 대장균증(colibacillosis), 디프테리아(diphtheria), 라임병(lyme disease),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매독(syphilis), 백일해(pertussis), 브루셀라병(brucellosis), 비브리오패혈증(<i>Vibrio vulnificus</i> sepsis), 세균성이질(bacillary dysentery), 세균성폐렴(bacterial pneumonia), 수막구균성뇌수막염(meningococcal meningitis), 아토병(tularemia), 예시니아증(yersinosis),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유비저(melioidosis),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hemorrhagic <i>E. coli</i> infection), 장티푸스(typhoid fever), 캄필로박터증(campylobacteriosis), 콜레라(cholera), 탄저병(anthrax), 파라티푸스(paratyphoid fever), 파상풍(tetanus), 파스튜렐라병(Pasteurellosis), 페스트(pest), 헬리코박터감염증(<i>Helicobacter pylori</i> infection), 가금티푸스(fowl typhoid), 리스테리아증(listeriosis), 마이코플라즈마증(mycoplasmosis), 보툴리누스중독증(botulism), 살모넬라증(salmonellosis), 앙무병(psittacosis), 조류결핵병(avian tuberculosis), 추백비(癰白癰: 병아리흰설사병)
바이러스 (58종)	가성광견병(pseudorabies), 개전염성간염(infectious canine hepatitis), 개홍역(canine Distemper), 고양이면역결핍증(feline immunodeficiency syndrome), 고양이백혈구감소증(feline panleukopenia), 고양이백혈병(feline leukemia), 광견병(rabies),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돼지열병(hog cholera), 돼지조제스키병(Aujeszky's Disease), 뎅기열(Dengue fever), 로타바이러스감염증(Rotavirus infection),

원인체	질병명
	림프구성핵막뇌막염(lymphocytic choriomeningitis), 마르부르그병(Marburg fever), 바이러스성간염(viral hepatitis), 바이러스성출혈열(viral hemorrhagic fever),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블루팅병(blue tongue), B형간염(type B hepatitis), 성홍열(scarlet fever), 소바이러스성설사증(bovine virus diarrhea), 소전염성비기관염(infectious bovine rhinotrachitis), 시미안면역결핍증(simian immunodeficiency syndrome), 시미안포아미바이러스감염증(simian foamy virus infection),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알류산병(Aleutian disease), 양아구창(orf), A형간염(type A hepatitis), 에볼라출혈열(Ebola hemorrhagic fever),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enterovirus infection), 우역(rinderpest), 유행성 이하선염(mumps), 유행성출혈열(epidemic hemorrhagic fever), 인플루엔자(influenza),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진드기매개뇌염(tick-borne encephalitis),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파보바이러스성장염(parvoviral enteritis), 폴리오(polio), 풍진(rubell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ronavirus infection), 크로이츠펔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황열 (yellow fever), 홍역(measles),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뇌척수염(encephalomyelitis),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레오바이러스감염증(reovirus infection), 봉입체성간염(inclusion body hepatitis), 산란저하증후군(egg drop syndrome), 써코바이러스감염증(PCV-2 infection), 오리바이러스성장염(duck viral enteritis),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 조두(fowl pox),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조류콜레라(fowl cholera), 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포진)(Herpes simplex virus infections)

원인체	질병명
기생충 (18종)	간흡충증(clonorchiasis), 개선충증(scabies), 다방조충증(multilocular echinococcosis), 바베시아증(babesiosis), 선모충증(Trichinellosis), 심장사상충증(heartworm disease), 아메리카너구리회충증(baylisascariasis), 왜소조충증(hymenolepiasis), 요충증(enterobiasis), 장흡충증(intestinal trematodiasis), 천공개선충증(<i>Sarcoptes scabiei</i> var. <i>suis</i> infestation), 촌충증(taeniasis), 톡소플라즈마증(toxoplasmosis), 편충증(trichuriasis), 폐흡충증(paragonimiasis), 포낭충증(hydatidosis), 크립토스포리듐증(cryptosporidiosis), 회충증(ascariasis)
곰팡이 (6종)	피부사상균증(dermatophytosis), 곰팡이증(fungal infection), 크립토코커스증(cryptococcosis), 히스토플라스마증(histoplasmosis), 클라미디아증(chlamydiosis), 향아리곰팡이병(chytridiomycosis)
원충 및 리켓치아 (12종)	리케치아병(rickettsioses), 말라리아(malaria), 조류말라리아(avian malaria), 발란티듐증(balantidiasis), 발진열(endemic typhus), 발진티푸스(typhus fever), 아메바성 이질(amoebic dysentery), 지아디아증(giardiasis), 타일레리아증(theileriosis), Q열 (Q fever), 류코사이토존병(leucocytozoonosis), 블라스토씨스토시스증(blastocystosis)
프리온 단백질 (3종)	사슴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양해면상뇌증(scrapie)
중독 등 (3종)	조류중독증 (algal poisoning), 선천성기형(congenital anomaly), 농약중독증 (pesticide poisoning)
기타	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별표 3의3] 〈개정 2023. 6. 9.〉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방법(제7조의3제3항 관련)

1. 조사 항목

-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
- 가. 부상을 입거나 고립된 야생동물 또는 사체(뼈, 털·깃털, 가죽, 허물 등 사체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인공구조물 상 충돌 흔적 또는 추락 흔적(발자국 등을 포함한다)
 - 다. 위험요인

2. 조사 방법

-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조사 방법을 따라야 한다.
- 가. 조사 대상 지역 내의 인공구조물 혹은 지점을 선정하고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충돌추락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 나.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 내부 또는 주위를 탐색하여 조사 항목을 확인한다.
 - 다. 도보 및 육안 탐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안경, 망원카메라 또는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한다.
 - 라. 최소 2인 1조로 조사한다.
 - 마. 조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에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진 촬영기기로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 바. 조사 항목을 발견한 경우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진 촬영기기를 활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기록한다.
 - 사. 사진 촬영 시 동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쉽도록 촬영해야 한다.
 - 아. 청소원·경비원 등 관리자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조사 당일 피해 기록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다.
 - 자. 중복 기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시 확인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관리기관에 신고한다.

3. 조사 결과 관리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가. 조사자 정보
 - 나. 조사 일시
 - 다.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 정보
 - 라. 조사 항목 정보(식별 가능한 야생동물 또는 사체의 종명(種名)과 개체수를 포함한다)
 - 마. 위치 정보
 - 바. 그 밖에 필요한 정보
4. 조사 결과 확인
- 조사기관은 조사원이 기록한 정보 중 적합하다고 확인된 정보만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공공기관등의 협조
- 조사원은 현장조사 시 관계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목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 가.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 나.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방지를 위해 조치한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 현황
 - 다. 형태, 위험요인 등 인공구조물 관련 자료
 - 라. 청소원·경비원 등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탐문조사
 - 마. 그 밖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6. 안전수칙
-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가. 차도 등 보행자 도로가 아닌 도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요청한 후 안전하게 조사한다.
 - 나. 안전조끼,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 다. 부상을 입거나 고립된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사체를 수거하는 경우 질병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라텍스 장갑, 집게 등을 활용해야 하며, 야생동물 또는 사체를 직접 만지지 않는다.

[별표 4] (개정 2012.7.27)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 가. 야생동물을 가공·유통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나. 포유류, 조류, 양서류·파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 분	등급	종 명
포유류	I 급	가. 반달가슴곰 <i>Ursus thibetanus ussuricus</i> 나. 사향노루 <i>Moschus moschiferus parvipes</i> 다. 산양 <i>Naemorhedus caudatus</i> 라. 수달 <i>Lutra lutra</i>
	II 급	가. 담비 <i>Martes flavigula</i> 나. 물개 <i>Callorhinus ursinus</i> 다. 삵 <i>Prionailurus bengalensis</i>
조류	II 급	가. 뜰부기 <i>Gallinix cinerea</i> 나. 큰기러기 <i>Anser fabalis</i> 다. 흑기러기 <i>Branta bernicla</i>
파충류	II 급	구렁이 <i>Elaphe schrenckii</i>

3. 멸종위기 야생동물 외의 야생동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가. 고라니 <i>Hydropotes inermis</i> 나. 너구리 <i>Nyctereutes procyonoides</i> 다. 노루 <i>Capreolus pygargus</i> 라. 멧돼지 <i>Sus scrofa</i> 마. 멧토끼 <i>Lepus coreanus</i> 바. 오소리 <i>Meles leucurus</i>

구 분	종 명
조류	가. 가창오리 <i>Anas formosa</i> 나. 고방오리 <i>Anas acuta</i> 다. 쇠기러기 <i>Anser albifrons</i> 라. 쇠오리 <i>Anas crecca</i> 마. 청둥오리 <i>Anas platyrhynchos</i> 바.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양서류	가. 계곡산개구리 <i>Rana huanrensis</i> 나. 북방산개구리 <i>Rana dybowskii</i> 다. 한국산개구리 <i>Rana coreana</i>

[별표 5] <개정 2012.7.27>

곰의 처리기준(제22조제1항제4호 관련)

종류	처리기준(나이)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
큰곰	25년 이상	10년 이상
반달가슴곰	24년 이상	10년 이상
늑보곰	40년 이상	10년 이상
말레이곰	24년 이상	10년 이상
아메리카흑곰	26년 이상	10년 이상

[별표 5의2] <개정 2023. 3. 14.>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1. 일반 사육기준

가. 물과 음식 제공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먹는물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해야 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내적·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격리시설, 월동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온도, 습도, 조명(자연광 포함) 등을 실내·실외,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한다.
- 3)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생종(고래류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영장과 다른 땅을 제공하고, 고래류의 경우 수영장을 제공하며, 영장류의 경우 수직·수평 이동이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제공하고, 고양이과의 경우 바닥보다 높은 위치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게 잡자리,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 건강관리

- 1) 수의적 프로그램, 사후부검,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 격리·검역 및 질병관리 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2)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에는 예방의학, 임상치료와 수술, 사전 병리검사,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건강검진은 종별로 검사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 4) 사육시설등록자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 및 사육시설 청소 등 사육시설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 행동관리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일지 등 일간 행동평가양식을 만들어 각 개체의 이상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기록하고 검토해야 한다.
- 3)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사 또는 사람과 지나친 접촉으로 대상동물이 사람과 친숙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육사를 지정하여 사육동물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관리 점검대장을 작성·비치하는 등 정기적으로 시설과 안전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3)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의 평가, 안전문제를 처리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확인된 모든 안전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사육시설등록자는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이루어 일하도록 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 5) 사육시설등록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점검해야 한다.
- 6) 사육시설등록자는 야외 방사장 등 실외 사육시설을 사육동물의 탈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관리해야 한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가. 포유류

종류	국명	기준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비율	시설 및 장비
영장목	사자꼬리원숭이, 올리브개코원숭이, 다이애나원숭이, 맨드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큰긴팔원숭이	- 넓이: 31.5㎡ - 높이: 3m	42%	-
	동부콜로부스, 필리핀원숭이(게잡이원숭이), 일본	- 넓이: 11.6㎡ - 높이: 2.5m	42%	-

종류		국명	기준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비율	시설 및 장비
		원숭이, 히말라야원숭이, 토크원숭이, 망토개코원숭이, 검은이마거미원숭이, 검은벚긴팔원숭이, 흰손긴팔원숭이			
		돼지꼬리원숭이, 검은짧은꼬리원숭이, 보닛원숭이, 그리벳원숭이, 브라자원숭이, 사바나원숭이, 모나원숭이, 세줄무늬올빼미원숭이, 알락꼬리여우원숭이, 검은머리카푸친	- 넓이: 5.3㎡ - 높이: 3m	35%	-
		순다로리스, 흰머리카푸친, 비단마모셋, 검은솔마모셋, 목화머리타마린	- 넓이: 2.8㎡ - 높이: 2.5m	35%	-
		다람쥐원숭이속 모든 종	- 넓이: 1.6㎡ - 높이: 2.5m	35%	-
코끼리목		아시아코끼리	- 넓이 35㎡ - 높이 3m - 야외 방사장 넓이 125㎡	70% (야외 방사장 35%)	-
식육목	곰과	말레이곰	- 넓이: 10.5㎡ - 높이: 2.5m	35%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를 권장
		반달가슴곰, 아메리카검정곰	- 넓이: 21㎡ - 높이: 2.5m	35%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를 권장
		불곰	- 넓이: 32㎡	35%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를 권장
	고양	치타	- 넓이: 24.5㎡ - 높이: 2.5m	35%	-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종류	국명	기준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비율	시설 및 장비
이 과	사자, 호랑이	- 넓이: 14㎡ - 높이: 2.5m	35%	-
	스라소니	- 넓이: 8㎡ - 높이: 2m	35%	-
	퓨마	- 넓이: 8.4㎡ - 높이: 2m	35%	-
	재규어, 표범, 설표	- 넓이: 14㎡ - 높이: 2.5m	35%	-
족 제 비 과	작은발톱수달	- 육상: 넓이 5.3㎡, 높이 2m - 수영장: 넓이 2.1㎡, 깊이 0.6m	35%	-
물 개 과	남아메리카물개	- 육상: 넓이 3.5㎡ - 수영장: 수표면 넓이 14㎡, 깊이 1.5m	35%	-
소목	흰오릭스, 바라싱가, 과나코	- 넓이: 35㎡ - 높이: 3m	35%	-
	마르코염소, 목도리페커리	- 넓이: 14㎡ - 높이: 2m	35%	-
말목	몽골야생말	- 넓이: 35㎡ - 높이: 2m	35%	-
고래목	큰 돌고래 (태평양 돌고래), 남방큰돌고래	- 수표면 넓이: 84㎡ - 깊이: 3.5m	35%	-

나. 조류

종류	국명	기준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면적 비율	시설 및 장비
매목	참매, 말뚝가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붉은허벅지말뚝가리, 달마수리, 독수리, 큰콘돌	- 길이 및 너비: 가장 큰 개체의 비고 제5호가목에 따른 기준 날개폭의 3배 - 높이: 가장 큰 개체의 비고 제5호가목에 따른 기준 날개폭의 2배	길이 50%, 너비 25%	-
파랑새목	붉은코뿔새	- 넓이: 5.3㎡ - 높이: 2m	35%	-

다. 파충류

종류	국명	기준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면적 비율	시설 및 장비
악어목	알리게이터악어과 모든 종, 크로커다일악어과 모든 종, 인도악어과 모든 종	- 사육시설 내에서 개체 이동과 선회가 가능한 면적 - 육상 가로 및 세로 길이는 비고 제5호나목1)부터 10)까지의 악어의 경우에는 기준 크기의 100%, 그 밖의 악어의 경우에는 성체 크기의 100% - 수면부: 수심은 50cm 이상, 넓이는 육상면적의 60% 이하(수면부 면적은 육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25%	- 개방형 사육시설의 경우 높이 1.5m 이상의 안전펜스를 설치할 것 - 수면부에 수온과 수질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자연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 모래, 쿠션 등 발이나 다리에 부담이 없는 부드러운 바닥재를 사용할 것

종류	국명	기준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면적 비율	시설 및 장비
거북목	돼지코거북, 악어거북, 남생이	- 길이: 비교 제5호나뭇잎 11)부터 13)까지에 따른 크기란의 등갑길이의 3배 이상 - 너비: 비교 제5호나뭇잎 11)부터 13)까지에 따른 크기란의 등갑너비의 2배 이상	25%	- 몸을 말릴 수 있는 노출부를 설치할 것 - 수질 유지를 위한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뱀목	코브라과 모든 종	- 가로: 1.2m - 세로: 0.6m	10%	-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미안마왕뱀	- 가로: 1.2m - 세로: 0.5m	35%	-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그물무늬왕뱀	- 가로: 2.5m - 세로: 1.2m		
	왕뱀	- 가로: 2m - 세로: 1.2m		
	그린이나콘다	- 가로: 1.5m - 세로: 1m		
	노랑이나콘다	- 가로: 1.25m - 세로: 1m		
	듀메릴보아구렁이	- 가로: 0.4m - 세로: 0.3m	10%	-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살모사과 모든 종	- 가로: 1m - 세로: 0.5m	10%	- 출입구에 탈출 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종류	국명	기준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면적 비율	시설 및 장비
도마뱀목	그린이구아나, 악어도마뱀, 물왕도마뱀	- 가로: 1.5m - 세로: 1m	25%	-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출입구에 탈출 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 올라갈 수 있는 나뭇가지 등을 설치할 것
	콜롬비아골드데구	- 가로: 2m - 세로: 1.5m	25%	- 출입구에 탈출 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비고

1.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목, 말목, 고래목, 코끼리목 및 생태적 특성상 실외활동을 주로 하는 생물종의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장과 야외 방사장 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2. 실내 사육시설이란 지붕, 벽면 및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갖추어 사육동물의 외부접촉이 차단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실내 사육시설의 기준면적보다 넓은 별도의 실내·실외 전시설 또는 야외 방사장 등을 갖춘 경우에는 실내 사육시설의 면적이 기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코끼리목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법 제71조에 따라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
 - 나.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야생동물 치료기관
 - 다.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보호 시설
 - 마.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 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5. 위 표에서 "기준 날개폭" 및 "기준 크기"란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 날개폭 및 기준 크기를 말한다.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가. 기준 날개폭

(단위: m)

국명	날개폭
1) 참매	1.31
2) 말뚝가리	1.37
3) 흰꼬리수리	2.45
4) 참수리	2.5
5) 붉은허벅지말뚝가리	1.21
6) 달마수리	1.9
7) 독수리	2.95
8) 큰콘돌	3.5

나. 기준 크기

(단위: m)

국명	크기
1) 삼악어	2.5
2) 안경카이만	2
3) 미시시피악어	4
4) 뉴기니악어	3
5) 바다악어	5
6) 나일악어	4
7) 세렝게악어	3.5
8) 드워프카이만	1.2
9) 난쟁이카이만	1.2
10) 매끈이카이만	1.2
11) 돼지코거북	등갑길이: 0.7 등갑너비: 0.5
12) 악어거북	등갑길이: 1.0 등갑너비: 0.7
13) 남생이	등갑길이: 0.3 등갑너비: 0.2

[별표 6] <개정 2022. 12. 9.>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4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 살아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을 포함한다.

2.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익수목(CHIROPTERA)			
관박쥐목(Rhinolophidae)			
1	관박쥐	<i>Rhinolophus ferrumequinum</i>	
애기박쥐목(Vespertilionidea)			
2	고바야시박쥐	<i>Eptesicus kobayashii</i>	
3	생박쥐	<i>Eptesicus nilssonii</i>	
4	문둥이박쥐	<i>Eptesicus serotinus</i>	
5	큰집박쥐	<i>Hypsugo savii</i>	
6	긴가락박쥐	<i>Miniopterus schreibersi</i>	
7	관코박쥐	<i>Murina leucogaster</i>	
8	긴꼬리수염박쥐	<i>Myotis frater</i>	
9	쇠큰수염박쥐	<i>Myotis ikonnikovi</i>	
10	큰발윗수염박쥐	<i>Myotis macrodactylus</i>	
11	큰수염박쥐	<i>Myotis mystacinus</i>	
12	흰배윗수염박쥐	<i>Myotis bombinus</i>	
13	우수리박쥐	<i>Myotis petax</i>	
14	멧박쥐	<i>Nyctalus aviator</i>	
15	작은멧박쥐	<i>Nyctalus noctula</i>	
16	집박쥐	<i>Pipistrellus abram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7	북방애기박쥐	<i>Vespertilio murinus</i>	
18	애기박쥐	<i>Vespertilio sinensis</i>	
큰귀박쥐과(Molossidae)			
19	큰귀박쥐	<i>Tadarida teniotis</i>	
고슴도치목(ERINACEOMORPHA)			
고슴도치과(Erinaceidae)			
20	고슴도치	<i>Erinaceus amurensis</i>	
침서목(SORICOMORPHA)			
침서과(Soricidae)			
21	제주맛쥐	<i>Crociodura dsinezumi</i>	
22	맛쥐	<i>Crociodura lasiura</i>	
23	작은맛쥐	<i>Crociodura shantungensis</i>	
24	갯침서	<i>Neomys fodiens</i>	
25	침서	<i>Sorex araneus</i>	
26	뒤쥐	<i>Sorex caecutiens</i>	
27	쇠뒤쥐	<i>Sorex gracillimus</i>	
28	꼬마뒤쥐	<i>Sorex minutissimus</i>	
29	큰침서	<i>Sorex mirabilis</i>	
30	긴발톱침서	<i>Sorex unguiculatus</i>	
두더지과(Talpidae)			
31	두더지	<i>Mogera wogura</i>	
토끼목(LAGOMORPHA)			
토끼과(Leporidae)			
32	멧토끼	<i>Lepus coreanus</i>	
33	만주토끼	<i>Lepus mandshuric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우는토끼과(Ochotonidae)			
34	우는토끼	<i>Ochotona hyperborea</i>	
설치목(RODENTIA)			
청설모과(Sciuridae)			
35	청설모	<i>Sciurus vulgaris</i>	
36	다람쥐	<i>Tamias sibiricus</i>	
쥐과(Muridae)			
37	등줄쥐	<i>Apodemus agrarius</i>	
38	흰날적다리붉은쥐	<i>Apodemus peninsulae</i>	
39	비단털등줄쥐	<i>Cricetulus barabensis</i>	
40	쇠갈발쥐	<i>Lasiopodomys mandarinus</i>	
41	멧발쥐	<i>Micromys minutus</i>	
42	갈발쥐	<i>Microtus fortis</i>	
43	대륙발쥐	<i>Myodes rufocanus</i>	
44	숲들쥐	<i>Myodes rutilus</i>	
45	비단털쥐	<i>Tscherskia triton</i>	
뛰는쥐과(Dipodidae)			
46	긴꼬리꼬마쥐	<i>Sicista caudata</i>	
식육목(CARNIVORA)			
개과(Canidae)			
47	승냥이	<i>Cuon alpinus</i>	
48	너구리	<i>Nyctereutes procyonoides</i>	
곰과(Ursidae)			
49	큰(불)곰	<i>Ursus arctos</i>	
족제비과(Mustel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50	산달	<i>Martes melampus</i>	
51	잘(검은돈)	<i>Martes zibellina</i>	
52	오소리	<i>Meles leucurus</i>	
53	족제비	<i>Mustela sibirica</i>	
우제목(ARTIODACTYLA)			
멧돼지목(Suidae)			
54	멧돼지	<i>Sus scrofa</i>	
사슴목(Cervidae)			
55	노루	<i>Capreolus pygargus</i>	
56	붉은사슴	<i>Cervus elaphus</i>	
57	고라니	<i>Hydropotes inermis</i>	

3. 조류(AVE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아비목(GAVIIFORMES)			
아비목(Gaviidae)			
1	흰부리아비	<i>Gavia adamsii</i>	
2	큰회색머리아비	<i>Gavia arctica</i>	
3	회색머리아비	<i>Gavia pacifica</i>	
4	아비	<i>Gavia stellata</i>	
논병아리목(PODICIPEDIFORMES)			
논병아리목(Podicipedidae)			
5	귀뿔논병아리	<i>Podiceps auritus</i>	
6	뿔논병아리	<i>Podiceps cristatus</i>	
7	큰논병아리	<i>Podiceps grisegena</i>	
8	검은목논병아리	<i>Podiceps nigricolli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9	논병아리	<i>Tachybaptus ruficollis</i>	
슴새목(CELLARIIFORMES)			
슴새목(Procellariidae)			
10	슴새	<i>Calonectris leucomelas</i>	
11	흰배슴새	<i>Pterodroma hypoleuca</i>	
12	붉은발슴새	<i>Puffinus carneipes</i>	
13	쇠부리슴새	<i>Puffinus tenuirostris</i>	
바다제비목(Hydrobatidae)			
14	바다제비	<i>Oceanodroma monorhis</i>	
사다새목(PELECANIFORMES)			
얼가니목(Sulidae)			
15	푸른얼굴얼가니새	<i>Sula dactylatra</i>	
16	갈색얼가니새	<i>Sula leucogaster</i>	
군함조목(Fregatidae)			
17	군함조	<i>Fregata ariel</i>	
가마우지목(Phalacrocoracidae)			
18	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pillatus</i>	
19	민물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rbo</i>	
20	쇠가마우지	<i>Phalacrocorax pelagicus</i>	
21	붉은뺨가마우지	<i>Phalacrocorax urile</i>	
황새목(CICONIIFORMES)			
백로목(Ardeidae)			
22	중대백로	<i>Ardea alba</i>	
23	왜가리	<i>Ardea cinerea</i>	
24	붉은왜가리	<i>Ardea purpure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5	흰날개해오라기	<i>Ardeola bacchus</i>	
26	알락해오라기	<i>Botaurus stellaris</i>	
27	황로	<i>Bubulcus ibis</i>	
28	검은댕기해오라기	<i>Butorides striata</i>	
29	검은해오라기	<i>Dupetor flavicollis</i>	
30	쇠백로	<i>Egretta garzetta</i>	
31	중백로	<i>Egretta intermedia</i>	
32	흑로	<i>Egretta sacra</i>	
33	열대붉은해오라기	<i>Ixobrychus cinnamomeus</i>	
34	덤불해오라기	<i>Ixobrychus sinensis</i>	
35	해오라기	<i>Nycticorax nycticorax</i>	
저어새과(Threskiornithidae)			
36	검은머리흰따오기	<i>Threskiornis melanocephalus</i>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37	원앙	<i>Aix galericulata</i>	
38	고방오리	<i>Anas acuta</i>	
39	아메리카홍머리오리	<i>Anas americana</i>	
40	미국쇠오리	<i>Anas carolinensis</i>	
41	넓적부리	<i>Anas clypeata</i>	
42	쇠오리	<i>Anas crecca</i>	
43	청머리오리	<i>Anas falcata</i>	
44	홍머리오리	<i>Anas penelope</i>	
45	청둥오리	<i>Anas platyrhynchos</i>	
46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47	발구지	<i>Anas querquedula</i>	
48	미국오리	<i>Anas rubripes</i>	
49	알락오리	<i>Anas strepera</i>	
50	쇠기러기	<i>Anser albifrons</i>	
51	회색기러기	<i>Anser anser</i>	
52	흰기러기	<i>Anser caerulescens</i>	
53	흰머리기러기	<i>Anser canagicus</i>	
54	미국흰족지	<i>Aythya americana</i>	
55	흰족지	<i>Aythya ferina</i>	
56	댕기흰족지	<i>Aythya fuligula</i>	
57	검은머리흰족지	<i>Aythya marila</i>	
58	큰흰족지	<i>Aythya valisineria</i>	
59	캐나다기러기	<i>Branta canadensis</i>	
60	흰뺨오리	<i>Bucephala clangula</i>	
61	북방흰뺨오리	<i>Bucephala islandica</i>	
62	바다꿩	<i>Clangula hyemalis</i>	
63	흰줄박이오리	<i>Histrionicus histrionicus</i>	
64	검둥오리	<i>Melanitta americana</i>	
65	검둥오리사촌	<i>Melanitta deglandi</i>	
66	흰비오리	<i>Mergellus albellus</i>	
67	비오리	<i>Mergus merganser</i>	
68	바다비오리	<i>Mergus serrator</i>	
69	붉은부리흰족지	<i>Netta rufina</i>	
70	원앙사촌	<i>Tadorna cristata</i>	
71	황오리	<i>Tadorna ferrugine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72	흑부리오리	<i>Tadorna tadorna</i>	
73	머스코비오리	<i>Cairina moschata</i>	
74	붉은부리오리	<i>Dendrocygna autumnalis</i>	
75	황갈색오리	<i>Dendrocygna bicolor</i>	
수리목(ACCIPITR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76	초원수리	<i>Aquila nipalensis</i>	
77	왕새매	<i>Butastur indicus</i>	
78	말뚝가리	<i>Buteo buteo</i>	
79	털발말뚝가리	<i>Buteo lagopus</i>	
80	개구리매	<i>Circus spilonotus</i>	
81	수염수리	<i>Gypaetus barbatus</i>	
82	관수리	<i>Spilornis cheela</i>	
83	불매	<i>Spizaetus nipalensis</i>	
매과(Falconidae)			
84	비둘기조롱이	<i>Falco amurensis</i>	
85	헨다손매	<i>Falco cherrug</i>	
86	쇠황조롱이	<i>Falco columbarius</i>	
87	황조롱이	<i>Falco tinnunculus</i>	
닭목(GALLIFORMES)			
꿩과(Phasianidae)			
88	들꿩	<i>Tetrastes bonasia</i>	
89	메추라기	<i>Coturnix japonica</i>	
90	멧닭	<i>Lyrurus tetrix</i>	
91	꿩	<i>Phasianus colchic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두루미목(GRUIFORMES)			
두루미과(Gruidae)			
92	쇠재두루미	<i>Anthropoides virgo</i>	
93	캐나다두루미	<i>Grus canadensis</i>	
뜸부기과(Rallidae)			
94	흰배뜸부기	<i>Amauornis phoenicurus</i>	
95	알락뜸부기	<i>Coturnicops exquisitus</i>	
96	물닭	<i>Fulica atra</i>	
97	쇠물닭	<i>Gallinula chloropus</i>	
98	쇠뜸부기사촌	<i>Porzana fusca</i>	
99	한국뜸부기	<i>Porzana paykullii</i>	
100	쇠뜸부기	<i>Porzana pusilla</i>	
101	흰눈쇠뜸부기	<i>Rallus aquaticus</i>	
세가락메추라기목(TURNICIFORMES)			
세가락메추라기과(Turnicidae)			
102	세가락메추라기	<i>Turnix tanki</i>	
도요목(CHARADRIIFORMES)			
물펭귄과(Jacaniidae)			
103	물펭	<i>Hydrophasianus chirurgus</i>	
물떼새과(Charadriidae)			
104	흰물떼새	<i>Charadrius alexandrinus</i>	
105	꼬마물떼새	<i>Charadrius dubius</i>	
106	큰왕눈물떼새	<i>Charadrius leschenaultii</i>	
107	왕눈물떼새	<i>Charadrius mongolus</i>	
108	큰물떼새	<i>Charadrius vered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09	검은가슴물떼새	<i>Pluvialis fulva</i>	
110	개펄	<i>Pluvialis squatarola</i>	
111	민당기물떼새	<i>Vanellus cinereus</i>	
112	당기물떼새	<i>Vanellus vanellus</i>	
도요과(Scolopacidae)			
113	깜작도요	<i>Actitis hypoleucos</i>	
114	꼬까도요	<i>Arenaria interpres</i>	
115	메추라기도요	<i>Calidris acuminata</i>	
116	세가락도요	<i>Calidris alba</i>	
117	민물도요	<i>Calidris alpina</i>	
118	붉은가슴도요	<i>Calidris canutus</i>	
119	붉은갯도요	<i>Calidris ferruginea</i>	
120	아메리카메추라기도요	<i>Calidris melanotos</i>	
121	작은도요	<i>Calidris minuta</i>	
122	좀도요	<i>Calidris ruficollis</i>	
123	종달도요	<i>Calidris subminuta</i>	
124	흰꼬리조도요	<i>Calidris temminckii</i>	
125	깍도요	<i>Gallinago gallinago</i>	
126	큰깍도요	<i>Gallinago hardwickii</i>	
127	깍도요사촌	<i>Gallinago megala</i>	
128	청도요	<i>Gallinago solitaria</i>	
129	바늘꼬리도요	<i>Gallinago stenura</i>	
130	노랑발도요	<i>Heteroscelus brevipes</i>	
131	송곳부리도요	<i>Limicola falcinellus</i>	
132	긴부리도요	<i>Limnodromus scolopace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33	큰부리도요	<i>Limnodromus semipalmatus</i>	
134	흑꼬리도요	<i>Limosa limosa</i>	
135	꼬마도요	<i>Lymnocyrtus minimus</i>	
136	마도요	<i>Numenius arquata</i>	
137	쇠부리도요	<i>Numenius minutus</i>	
138	중부리도요	<i>Numenius phaeopus</i>	
139	붉은배지느러미발도요	<i>Phalaropus fulicarius</i>	
140	지느러미발도요	<i>Phalaropus lobatus</i>	
141	큰지느러미발도요	<i>Phalaropus tricolor</i>	
142	목도리도요	<i>Philomachus pugnax</i>	
143	멧도요	<i>Scolopax rusticola</i>	
144	학도요	<i>Tringa erythropus</i>	
145	알락도요	<i>Tringa glareola</i>	
146	큰노랑발도요	<i>Tringa melanoleuca</i>	
147	청다리도요	<i>Tringa nebularia</i>	
148	삑삑도요	<i>Tringa ochropus</i>	
149	쇠청다리도요	<i>Tringa stagnatilis</i>	
150	붉은발도요	<i>Tringa totanus</i>	
151	누른도요	<i>Tryngites subruficollis</i>	
152	뒷부리도요	<i>Xenus cinereus</i>	
장다리물떼새과(Recurvirostridae)			
153	장다리물떼새	<i>Himantopus himantopus</i>	
154	뒷부리장다리물떼새	<i>Recurvirostra avosetta</i>	
호사도요과(Rostratulidae)			
155	호사도요	<i>Rostratula benghalensi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제비물떼새과(Glareolidae)			
156	제비물떼새	<i>Glareola maldivarum</i>	
갈매기과(Laridae)			
157	구레나룻제비갈매기	<i>Chlidonias hybrida</i>	
158	흰죽지제비갈매기	<i>Chlidonias leucopterus</i>	
159	검은제비갈매기	<i>Chlidonias niger</i>	
160	한국재갈매기	<i>Larus cachinans</i>	
161	갈매기	<i>Larus canus</i>	
162	괭이갈매기	<i>Larus crassirostris</i>	
163	긴목갈매기	<i>Larus genei</i>	
164	수리갈매기	<i>Larus glaucescens</i>	
165	작은흰갈매기	<i>Larus glaucoides</i>	
166	줄무늬노랑발갈매기	<i>Larus heuglini</i>	
167	흰갈매기	<i>Larus hyperboreus</i>	
168	붉은부리갈매기	<i>Larus ridibundus</i>	
169	큰재갈매기	<i>Larus schistisagus</i>	
170	재갈매기	<i>Larus vegae</i>	
171	북극흰갈매기	<i>Pagophila eburnea</i>	
172	세가락갈매기	<i>Rissa tridactyla</i>	
173	쇠목테갈매기	<i>Rhodostethia rosea</i>	
174	큰제비갈매기	<i>Sterna bergii</i>	
175	붉은부리큰제비갈매기	<i>Sterna caspia</i>	
176	검은등제비갈매기	<i>Sterna fuscata</i>	
177	제비갈매기	<i>Sterna hirundo</i>	
178	큰부리제비갈매기	<i>Sterna nilotic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79	목테갈매기	<i>Xema sabini</i>	
도둑갈매기과(Stercorariidae)			
180	북극도둑갈매기	<i>Stercorarius parasiticus</i>	
바다오리과(Alcidae)			
181	작은바다오리	<i>Aethia pusilla</i>	
182	흰수염작은바다오리	<i>Aethia pygmaea</i>	
183	알락쇠오리	<i>Brachyramphus perdix</i>	
184	흰눈썹바다오리	<i>Cephus carbo</i>	
185	흰수염바다오리	<i>Cerorhinca monocerata</i>	
186	바다쇠오리	<i>Synthliboramphus antiquus</i>	
187	바다오리	<i>Uria aalge</i>	
비둘기목(COLUMBIFORMES)			
비둘기과(Columbidae)			
188	분홍가슴비둘기	<i>Columba oenas</i>	
189	염주비둘기	<i>Streptopelia decaocto</i>	
190	멧비둘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191	홍비둘기	<i>Streptopelia tranquebarica</i>	
192	녹색비둘기	<i>Treron sieboldii</i>	
사막펙과(Pteroclididae)			
193	사막펙	<i>Syrhaptes paradoxus</i>	
두견목(CUCULIFORMES)			
두견과(Cuculidae)			
194	밤색날개뺨꾸기	<i>Clamator coromandus</i>	
195	뺨꾸기	<i>Cuculus canorus</i>	
196	검은등뺨꾸기	<i>Cuculus micropter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97	두건	<i>Cuculus poliocephalus</i>	
198	병어리빠꾸기	<i>Cuculus saturatus</i>	
199	매사촌	<i>Cuculus hyperythrus</i>	
올빼미목(STRIGIFORMES)			
올빼미과(Strigidae)			
200	쇠부엉이	<i>Asio flammeus</i>	
201	참부엉이	<i>Asio otus</i>	
202	금눈쇠올빼미	<i>Athene noctua</i>	
203	솔부엉이	<i>Ninox scutulata</i>	
204	흰올빼미	<i>Nyctea scandiaca</i>	
205	큰소쩍새	<i>Otus bakkamoena</i>	
206	소쩍새	<i>Otus sunia</i>	
207	긴꼬리올빼미	<i>Surnia ulula</i>	
속독새목(CAPRIMULGIFORMES)			
속독새과(Caprimulgidae)			
208	속독새	<i>Caprimulgus indicus</i>	
칼새목(APODIFORMES)			
칼새과(Apodidae)			
209	쇠칼새	<i>Apus nipalensis</i>	
210	칼새	<i>Apus pacificus</i>	
211	바늘꼬리칼새	<i>Hirundapus caudacutus</i>	
파랑새목(CORACIIFORMES)			
물총새과(Alcedinidae)			
212	물총새	<i>Alcedo atthis</i>	
213	호반새	<i>Halcyon coromand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14	불호반새	<i>Megaceryle lugubris</i>	
파랑새과(Coraciidae)			
215	파랑새	<i>Eurystomus orientalis</i>	
후투티과(Upupidae)			
216	후투티	<i>Upupa epops</i>	
딱다구리목(PICIFORMES)			
딱다구리과(Picidae)			
217	아물쇠딱다구리	<i>Dendrocopos canicapillus</i>	
218	붉은배오색딱다구리	<i>Hypopicus hyperythrus</i>	
219	쇠딱다구리	<i>Dendrocopos kizuki</i>	
220	큰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leucotos</i>	
221	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major</i>	
222	쇠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minor</i>	
223	개미잡이	<i>Jynx torquilla</i>	
224	세가락딱다구리	<i>Picoides tridactylus</i>	
225	청딱다구리	<i>Picus canus</i>	
참새목(PASSERIFORMES)			
제비과(Hirundinidae)			
226	귀제비	<i>Cecropis daurica</i>	
227	흰털발제비	<i>Delichon dasypus</i>	
228	제비	<i>Hirundo rustica</i>	
229	갈색제비	<i>Riparia riparia</i>	
종다리과(Alaudidae)			
230	종다리	<i>Alauda arvensis</i>	
231	쇠종다리	<i>Calandrella brachydactyl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32	북방쇠종다리	<i>Calandrella cheleensis</i>	
할미새과(Motacillidae)			
233	붉은가슴발종다리	<i>Anthus cervinus</i>	
234	쇠발종다리	<i>Anthus godlewskii</i>	
235	흰등발종다리	<i>Anthus gustavi</i>	
236	항동새	<i>Anthus hodgsoni</i>	
237	큰발종다리	<i>Anthus richardi</i>	
238	한국발종다리	<i>Anthus roseatus</i>	
239	발종다리	<i>Anthus rubescens</i>	
240	물레새	<i>Dendronanthus indicus</i>	
241	알락할미새	<i>Motacilla alba leucopsis</i>	
242	백할미새	<i>Motacilla alba lugens</i>	
243	검은턱할미새	<i>Motacilla alba ocularis</i>	
244	노랑할미새	<i>Motacilla cinerea</i>	
245	노랑머리할미새	<i>Motacilla citreola</i>	
246	긴발톱할미새	<i>Motacilla flava</i>	
247	검은등할미새	<i>Motacilla grandis</i>	
직박구리과(Pycnonotidae)			
248	직박구리	<i>Microscelis amaurotis</i>	
때까치과(Laniidae)			
249	때까치	<i>Lanius bucephalus</i>	
250	노랑때까치	<i>Lanius cristatus</i>	
251	재때까치	<i>Lanius excubitor</i>	
252	긴꼬리때까치	<i>Lanius schach</i>	
253	물때까치	<i>Lanius sphenocerc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54	참때까치	<i>Lanius tigrinus</i>	
할미새사촌과(Campephagidae)			
255	검은할미새사촌	<i>Coracina melaschistos</i>	
256	할미새사촌	<i>Pericrocotus divaricatus</i>	
여새과(Bombycillidae)			
257	황여새	<i>Bombycilla garrulus</i>	
258	홍여새	<i>Bombycilla japonica</i>	
물까마귀과(Cinclidae)			
259	물까마귀	<i>Cinclus pallasii</i>	
굴뚝새과(Troglodytidae)			
260	굴뚝새	<i>Troglodytes troglodytes</i>	
바위종다리과(Prunellidae)			
261	바위종다리	<i>Prunella collaris</i>	
262	멧종다리	<i>Prunella montanella</i>	
휘파람새과(Sylviidae)			
263	큰부리개개비	<i>Acrocephalus aedon</i>	
264	쇠개개비	<i>Acrocephalus bistrigiceps</i>	
265	개개비	<i>Acrocephalus orientalis</i>	
266	점무늬가슴취발귀	<i>Bradypterus thoracicus</i>	
267	휘파람새	<i>Cettia diphone</i>	
268	북방개개비	<i>Locustella certhiola</i>	
269	붉은허리개개비	<i>Locustella fasciolata</i>	
270	취발귀개개비	<i>Locustella lanceolata</i>	
271	알락꼬리취발귀	<i>Locustella ochotensis</i>	
272	큰개개비	<i>Megalurus pyryi</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73	쇠솔딱새	<i>Muscicapa dauurica</i>	
274	흰머리딱새	<i>Oenanthe hispanica</i>	
275	쇠솔새	<i>Phylloscopus borealis</i>	
276	산솔새	<i>Phylloscopus coronatus</i>	
277	솔새사촌	<i>Phylloscopus fuscatus</i>	
278	노랑눈썹솔새	<i>Phylloscopus inornatus</i>	
279	버들솔새	<i>Phylloscopus plumbeitarsus</i>	
280	노랑허리솔새	<i>Phylloscopus proregulus</i>	
281	긴다리솔새사촌	<i>Phylloscopus schwarzi</i>	
282	되솔새	<i>Phylloscopus tenellipes</i>	
283	쇠흰턱딱새	<i>Sylvia curruca</i>	
284	숲새	<i>Urosphena squameiceps</i>	
솔딱새과(Muscicapidae)			
285	큰유리새	<i>Cyanoptila cyanomelana</i>	
286	파랑딱새	<i>Eumyias thalassinus</i>	
287	흰꼬리딱새	<i>Ficedula albicilla</i>	
288	노랑딱새	<i>Ficedula mugimaki</i>	
289	황금새	<i>Ficedula narcissina</i>	
290	흰눈썹황금새	<i>Ficedula zanthopygia</i>	
291	붉은가슴울새	<i>Luscinia akahige</i>	
292	진홍가슴	<i>Luscinia caliope</i>	
293	쇠유리새	<i>Luscinia cyane</i>	
294	울새	<i>Luscinia sibilans</i>	
295	흰눈썹울새	<i>Luscinia svecica</i>	
296	꼬까직박구리	<i>Monticola gulari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97	바다직박구리	<i>Monticola solitarius</i>	
298	제비딱새	<i>Muscicapa griseisticta</i>	
299	솔딱새	<i>Muscicapa sibirica</i>	
300	검은등사막딱새	<i>Oenanthe pleschanka</i>	
301	딱새	<i>Phoenicurus aureus</i>	
302	검은머리딱새	<i>Phoenicurus ochruros</i>	
303	검은뺨딱새	<i>Saxicola ferreus</i>	
304	검은딱새	<i>Saxicola torquatus</i>	
305	유리딱새	<i>Luscinia cyanura</i>	
지빠귀과(Turdidae)			
306	검은목지빠귀	<i>Turdus atrogularis</i>	
307	검은지빠귀	<i>Turdus cardis</i>	
308	붉은배지빠귀	<i>Turdus chrysolaus</i>	
309	개똥지빠귀	<i>Turdus eunomus</i>	
310	되지빠귀	<i>Turdus hortulorum</i>	
311	대륙검은지빠귀	<i>Turdus merula</i>	
312	노랑지빠귀	<i>Turdus naumanni</i>	
313	흰눈썹붉은배지빠귀	<i>Turdus obscurus</i>	
314	흰배지빠귀	<i>Turdus pallidus</i>	
315	호랑지빠귀	<i>Zoothera aurea</i>	
316	흰눈썹지빠귀	<i>Zoothera sibirica</i>	
개개비사촌과(Cisticolidae)			
317	개개비사촌	<i>Cisticola juncidis</i>	
318	꼬리치레	<i>Rhopophilus pekinensis</i>	
상모솔새과(Reguli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19	상모솔새	<i>Regulus regulus</i>	
붉은머리오목눈이과(Timaliidae)			
320	수염오목눈이	<i>Panurus biarmicus</i>	
321	붉은머리오목눈이	<i>Paradoxornis webbianus</i>	
긴꼬리딱새과(Monarchidae)			
322	북방긴꼬리딱새	<i>Terpsiphone paradisi</i>	
박새과(Paridae)			
323	진박새	<i>Parus ater</i>	
324	박새	<i>Parus major</i>	
325	북방쇠박새	<i>Parus montanus</i>	
326	쇠박새	<i>Parus palustris</i>	
327	곤줄박이	<i>Parus varius</i>	
오목눈이과(Aegithalidae)			
328	오목눈이	<i>Aegithalos caudatus</i>	
스원호오목눈이과(Remizidae)			
329	스원호오목눈이	<i>Remiz pendulinus</i>	
동고비과(Sittidae)			
330	동고비	<i>Sitta europaea</i>	
331	쇠동고비	<i>Sitta villosa</i>	
나무발발이과(Certhiidae)			
332	나무발발이	<i>Certhia familiaris</i>	
동박새과(Zosteropidae)			
333	한국동박새	<i>Zosterops erythropleurus</i>	
334	동박새	<i>Zosterops japonicus</i>	
멧새과(Emberiz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35	긴발톱멧새	<i>Calcarius lapponicus</i>	
336	붉은머리멧새	<i>Emberiza bruniceps</i>	
337	노랑눈썹멧새	<i>Emberiza chrysophrys</i>	
338	멧새	<i>Emberiza cioides</i>	
339	노랑턱멧새	<i>Emberiza elegans</i>	
340	붉은뺨멧새	<i>Emberiza fucata</i>	
341	점박이멧새	<i>Emberiza jankowskii</i>	
342	흰머리멧새	<i>Emberiza leucocephala</i>	
343	북방검은머리쭈새	<i>Emberiza pallasi</i>	
344	쇠붉은뺨멧새	<i>Emberiza pusilla</i>	
345	쭈새	<i>Emberiza rustica</i>	
346	꼬까참새	<i>Emberiza rutila</i>	
347	검은머리쭈새	<i>Emberiza schoeniclus</i>	
348	촉새	<i>Emberiza spodocephala</i>	
349	흰배멧새	<i>Emberiza tristrami</i>	
350	검은멧새	<i>Emberiza variabilis</i>	
351	흰멧새	<i>Plectrophenax nivalis</i>	
되새과(Fringillidae)			
352	홍방울새	<i>Carduelis flammea</i>	
353	쇠홍방울새	<i>Carduelis hornemanni</i>	
354	방울새	<i>Carduelis sinica</i>	
355	검은머리방울새	<i>Carduelis spinus</i>	
356	붉은양진이	<i>Carpodacus erythrurus</i>	
357	양진이	<i>Carpodacus roseus</i>	
358	콩새	<i>Coccothraustes coccothrauste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59	밀화부리	<i>Eophona migratoria</i>	
360	큰부리밀화부리	<i>Eophona personata</i>	
361	되새	<i>Fringilla montifringilla</i>	
362	갈색양진이	<i>Leucosticte arctoa</i>	
363	솔갯새	<i>Loxia curvirostra</i>	
364	흰죽지솔갯새	<i>Loxia leucoptera</i>	
365	솔양진이	<i>Pinicola enucleator</i>	
366	멋쟁이새	<i>Pyrrhula pyrrhula</i>	
367	긴꼬리홍양진이	<i>Uragus sibiricus</i>	
찌르레기과(Sturnidae)			
368	찌르레기	<i>Sturnus cineraceus</i>	
369	쇠찌르레기	<i>Sturnus philippensis</i>	
370	잣빛쇠찌르레기	<i>Sturnus sinensis</i>	
371	북방쇠찌르레기	<i>Sturnus sturninus</i>	
372	환점찌르레기	<i>Sturnus vulgaris</i>	
참새과(Passeridae)			
373	참새	<i>Passer montanus</i>	
374	섬참새	<i>Passer rutilans</i>	
피조리과(Oriolidae)			
375	피조리	<i>Oriolus chinensis</i>	
바람까마귀과(Dicruidae)			
376	바람까마귀	<i>Dicrurus hottentottus</i>	
377	회색바람까마귀	<i>Dicrurus leucophaeus</i>	
378	검은바람까마귀	<i>Dicrurus macrocerus</i>	
숲제비과(Artam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79	흰가슴숲제비	<i>Artamus leucorhynchus</i>	
까마귀과(Corvidae)			
380	까마귀	<i>Corvus corone</i>	
381	갈까마귀	<i>Corvus dauuricus</i>	
382	떼까마귀	<i>Corvus frugilegus</i>	
383	큰부리까마귀	<i>Corvus macrorhynchos</i>	
384	물까치	<i>Cyanopica cyanus</i>	
385	어치	<i>Garrulus glandarius</i>	
386	잣까마귀	<i>Nucifraga caryocatactes</i>	
387	까치	<i>Pica pica</i>	
388	붉은부리까마귀	<i>Pyrrhocorax pyrrhocorax</i>	

4.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거북목(TESTUDINATA)			
자라목(Trionychidae)			
1	자라	<i>Pelodiscus maackii</i>	
장수거북목(Dermochelyidae)			
2	장수거북	<i>Dermochelys coriacea schlegelii</i>	
바다거북목(Chelonidae)			
3	바다거북	<i>Chelonia mydas japonica</i>	
뱀목(SQUAMATA)			
뱀亞목(Serpentes)			
뱀목(Colubridae)			
4	대륙유혈목이	<i>Amphiesma vibakari</i>	
5	능구렁이	<i>Dinodon rufozonatum</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6	실뱀	<i>Orientocoluber spinalis</i>	
7	누룩뱀	<i>Elaphe dione</i>	
8	무자치	<i>Oocatochus rufodorsatus</i>	
9	유혈목이	<i>Rhabdophis lateralis</i>	
10	줄꼬리뱀	<i>Orthriophis taeniura</i>	
코브라과(Elapidae)			
11	먹대가리바다뱀	<i>Hydrophis melanocephalus</i>	
12	바다뱀	<i>Pelamis platura</i>	
살모사과(Viperidae)			
13	살모사	<i>Gloydius brevicaudus</i>	
14	까치살모사	<i>Gloydius saxatilis</i>	
15	쇠살모사	<i>Gloydius ussuriensis</i>	
도마뱀亞目(SAURIA)			
장지뱀과(Lacertidae)			
16	줄장지뱀	<i>Takydromus wolteri</i>	
도마뱀과(Scincidae)			
17	도마뱀	<i>Scincella vandenburghi</i>	

5. 양서류(AMPHIB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유미목(CAUDATA)			
도롱뇽과(Hynobiidae)			
1	도롱뇽	<i>Hynobius leechii</i>	
2	제주도롱뇽	<i>Hynobius quepaertensis</i>	
3	한국꼬리치레도롱뇽	<i>Onychodactylus koreanus</i>	
4	이끼도롱뇽	<i>Karsenia korean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무미목(ANURA)			
두꺼비과(Bufonidae)			
5	두꺼비	<i>Bufo gargarizans</i>	
6	물두꺼비	<i>Bufo stejnegeri</i>	
개구리과(Ranidae)			
7	한국산개구리	<i>Rana coreana</i>	
8	북방산개구리	<i>Rana dybowskii</i>	
9	계곡산개구리	<i>Rana huanrenensis</i>	

[별표 7] <개정 2015.3.25.>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제26조 관련)

구 분	종 명
포유류	다람쥐 <i>Tamias sibiricus</i>
조류	1. 물닭 <i>Fulica atra</i> 2. 쇠물닭 <i>Gallinula Chloropus</i> 3. 청둥오리 <i>Anas platyrhynchos</i> 4.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양서류	1. 계곡산개구리 <i>Rana huanrenensis</i> 2. 북방산개구리 <i>Rana dybowskii</i> 3. 한국산개구리 <i>Rana coreana</i>
파충류	1. 까치살모사 <i>Gloydius saxatilis</i> 2. 능구렁이 <i>Dinodon rufonotatum</i> 3. 살모사 <i>Gloydius brevicaudus</i> 4. 쇠살모사 <i>Gloydius ussuriensis</i>

비고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별표 8] <개정 2023. 6. 9.>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8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 가.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및 야생생물의 가죽·털 등의 가공품을 포함한다.
-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은 제외한다.
- 다.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은 제외한다.

2.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익수목(CHIROPTERA)			
1	익수목 모든 종		
고슴도치목(ERINACEOMORPHA)			
고슴도치과(Erinaceidae)			
2	고슴도치과 모든 종		
참서목(SORICOMORPHA)			
참서과(Soricidae)			
3	제주땃쥐	<i>Crocidura dsinezumi</i>	
4	땃쥐	<i>Crocidura lasiura</i>	
5	작은땃쥐	<i>Crocidura shantungensi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6	갯철서	<i>Neomys fodiens</i>	
7	참서	<i>Sorex araneus</i>	
8	뒤쥐	<i>Sorex caecutiens</i>	
9	식뒤쥐	<i>Sorex gracillimus</i>	
10	꼬마뒤쥐	<i>Sorex minutissimus</i>	
11	큰참서	<i>Sorex mirabilis</i>	
12	긴발톱참서	<i>Sorex unguiculatus</i>	
두더지과(Talpidae)			
13	두더지과 모든 종		
토끼목(LAGOMORPHA)			
토끼과(Leporidae)			
14	토끼과 모든 종		
우는토끼과(Ochotonidae)			
15	우는토끼	<i>Ochotona hyperborea</i>	
쥐목(RODENTIA)			
다람쥐과(Sciuridae)			
16	다람쥐과 모든 종		
쥐과(Muridae)			
17	쥐과 모든 종		
뛰는쥐과(Dipodidae)			
18	긴꼬리꼬마쥐	<i>Sicista caudata</i>	
나무타기호저과(Erethizontidae)			
19	멕시코나무타기포큐파인	<i>Sphiggurus mexicanus</i>	
20	우루과이나나무타기포큐파인	<i>Sphiggurus spinosus</i>	
아구티과(Dasyproct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1	얼룩아구티	<i>Dasyprocta punctata</i>	
파카과(Cuniculidae)			
22	파카	<i>Cuniculus paca</i>	
식육목(CARNIVORA)			
고양이과(Felidae)			
23	고양이과 모든 종		
사향살과(Viverridae)			
24	사향살과 모든 종		
몽구스과(Herpestidae)			
25	인도갈색몽구스	<i>Herpestes fuscus</i>	
26	인도몽구스	<i>Herpestes edwardsii</i>	
27	회색몽구스	<i>Herpestes javanicus auropunctata</i>	
28	붉은몽구스	<i>Herpestes smithii</i>	
29	게잡이몽구스	<i>Herpestes urva</i>	
30	검은줄몽구스	<i>Herpestes vitticollis</i>	
아드유프과(Hyaenidae)			
31	아드유프	<i>Proteles cristatus</i>	
개과(Canidae)			
32	개과 모든 종		
곰과(Ursidae)			
33	곰과 모든 종		
물개과(Otariidae)			
34	물개과 모든 종		
바다코끼리과(Odobenidae)			
35	바다코끼리	<i>Odobenus rosmar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족제비과(Mustelidae)			
36	족제비과 모든 종		
스컹크과(Mephitidae)			
37	스컹크과 모든 종		
아메리카너구리과(Procyonidae)			
38	아메리카너구리과 모든 종		
기제미(PERISSODACTYLA)			
말과(Equidae)			
39	말과 모든 종		
맥과(Tapiridae)			
40	맥과 모든 종		
코뿔소과(Rhinocerotidae)			
41	코뿔소과 모든 종		
우제미(ARTIODACTYLA)			
돼지과(Suidae)			
42	돼지과 모든 종		
낙타과(Camelidae)			
43	낙타과 모든 종		
사슴과(Cervidae)			
44	사슴과 모든 종		
소과(Bovidae)			
45	소과 모든 종		
피갑과(CINGULATA)			
아르마딜로과(Dasypod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46	파나마아르마딜로	<i>Cabassous centralis</i>	
47	타투아아르마딜로	<i>Cabassous tatouay</i>	
빈치목(PILOSA)			
나무늘보과(Megalonychidae)			
48	호프만두가락나무늘보	<i>Choloepus hoffmanni</i>	
개미핥기과(Myrmecophagidae)			
49	작은개미핥기	<i>Tamandua mexicana</i>	
주머니쥐목(DIDELPHIMORPHIA)			
주머니쥐과(Didelphidae)			
50	주머니쥐과 모든 종		
천산갑목(PHOLIDOTA)			
천산갑과(Manidae)			
51	천산갑과 모든 종		
장비목(PROBOSCIDEA)			
코끼리과(Elephantidae)			
52	코끼리과 모든 종		
영장목(PRIMATES)			
53	영장목 모든 종		

3. 조류(AVE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앵무목(PSITTACIFORMES)			
1	앵무목 모든 종		
참새목(PASSERIFORMES)			
2	참새목 모든 종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아비목(GAVIIFORMES)			
아비과(Gaviidae)			
3	흰부리아비	<i>Gavia adamsii</i>	
4	큰회색머리아비	<i>Gavia arctica</i>	
5	회색머리아비	<i>Gavia pacifica</i>	
6	아비	<i>Gavia stellata</i>	
논병아리목(PODICIPEDIFORMES)			
논병아리과(Podicipedidae)			
7	귀불논병아리	<i>Podiceps auritus</i>	
8	불논병아리	<i>Podiceps cristatus</i>	
9	큰논병아리	<i>Podiceps grisegena</i>	
10	검은목논병아리	<i>Podiceps nigricollis</i>	
11	논병아리	<i>Tachybaptus ruficollis</i>	
슴새목(PROCELLARIIFORMES)			
슴새과(Procellariidae)			
12	슴새	<i>Calonectris leucomelas</i>	
13	흰배슴새	<i>Pterodroma hypoleuca</i>	
14	붉은발슴새	<i>Puffinus carneipes</i>	
15	쇠부리슴새	<i>Puffinus tenuirostris</i>	
바다제비과(Hydrobatidae)			
16	바다제비	<i>Oceanodroma monorhis</i>	
사다새목(PELECANIFORMES)			
얼가니과(Sulidae)			
17	푸른얼굴얼가니새	<i>Sula dactylatra</i>	
18	갈색얼가니새	<i>Sula leucogaster</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군함조과(Fregatidae)			
19	군함조	<i>Fregata ariel</i>	
가마우지과(Phalacrocoracidae)			
20	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pillatus</i>	
21	민물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rbo</i>	
22	쇠가마우지	<i>Phalacrocorax pelagicus</i>	
23	붉은뺨가마우지	<i>Phalacrocorax urile</i>	
황새목(CICONIIFORMES)			
백로과(Ardeidae)			
24	중대백로	<i>Ardea alba</i>	
25	왜가리	<i>Ardea cinerea</i>	
26	붉은왜가리	<i>Ardea purpurea</i>	
27	흰날개해오라기	<i>Ardeola bacchus</i>	
28	알락해오라기	<i>Botaurus stellaris</i>	
29	황로	<i>Bubulcus ibis</i>	
30	검은댕기해오라기	<i>Butorides striata</i>	
31	검은해오라기	<i>Dupetor flavicollis</i>	
32	쇠백로	<i>Egretta garzetta</i>	
33	중백로	<i>Egretta intermedia</i>	
34	흑로	<i>Egretta sacra</i>	
35	열대붉은해오라기	<i>Ixobrychus cinnamomeus</i>	
36	덤불해오라기	<i>Ixobrychus sinensis</i>	
37	해오라기	<i>Nycticorax nycticorax</i>	
저어새과(Threskiornithidae)			
38	검은머리흰따오기	<i>Threskiornis melanocephal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39	원앙	<i>Aix galericulata</i>	
40	고방오리	<i>Anas acuta</i>	
41	아메리카홍머리오리	<i>Anas americana</i>	
42	미국쇠오리	<i>Anas carolinensis</i>	
43	넓적부리	<i>Anas clypeata</i>	
44	쇠오리	<i>Anas crecca</i>	
45	청머리오리	<i>Anas falcata</i>	
46	홍머리오리	<i>Anas penelope</i>	
47	청둥오리	<i>Anas platyrhynchos</i>	
48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49	발구지	<i>Anas querquedula</i>	
50	미국오리	<i>Anas rubripes</i>	
51	알락오리	<i>Anas strepera</i>	
52	쇠기러기	<i>Anser albifrons</i>	
53	회색기러기	<i>Anser anser</i>	
54	흰기러기	<i>Anser caerulescens</i>	
55	흰머리기러기	<i>Anser canagicus</i>	
56	미국흰죽지	<i>Aythya americana</i>	
57	붉은가슴흰죽지	<i>Aythya baeri</i>	
58	흰죽지	<i>Aythya ferina</i>	
59	맹기흰죽지	<i>Aythya fuligula</i>	
60	검은머리흰죽지	<i>Aythya marila</i>	
61	큰흰죽지	<i>Aythya valisineri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62	캐나다기러기	<i>Branta canadensis</i>	
63	흰뺨오리	<i>Bucephala clangula</i>	
64	북방흰뺨오리	<i>Bucephala islandica</i>	
65	바다꿩	<i>Clangula hyemalis</i>	
66	흰줄박이오리	<i>Histrionicus histrionicus</i>	
67	검둥오리	<i>Melanitta americana</i>	
68	검둥오리사촌	<i>Melanitta deglandi</i>	
69	흰비오리	<i>Mergellus albellus</i>	
70	비오리	<i>Mergus merganser</i>	
71	바다비오리	<i>Mergus serrator</i>	
72	붉은부리흰죽지	<i>Netta rufina</i>	
73	원앙사촌	<i>Tadorna cristata</i>	
74	황오리	<i>Tadorna ferruginea</i>	
75	흑부리오리	<i>Tadorna tadorna</i>	
76	머스코비오리	<i>Cairina moschata</i>	
77	붉은부리오리	<i>Dendrocygna autumnalis</i>	
78	황갈색오리	<i>Dendrocygna bicolor</i>	
수리목(ACCIPITRIFORMES)			
콘돌과(Cathartidae)			
79	분홍빛콘돌	<i>Sarcorampus papa</i>	
닭목(GALLIFORMES)			
꿩과(Phasianidae)			
80	들꿩	<i>Tetrastes bonasia</i>	
81	메추라기	<i>Coturnix japonica</i>	
82	멧닭	<i>Lyrurus tetrix</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83	꿩	<i>Phasianus colchicus</i>	
84	작은칠면조	<i>Meleagris ocellata</i>	
85	흰점박이붉은트라고판	<i>Tragopan satyra</i>	
보관조과(Cracididae)			
86	푸른부리보관조	<i>Crax alberti</i>	
87	노랑혹보관조	<i>Crax daubentoni</i>	
88	볼망태보관조	<i>Crax globulosa</i>	
89	큰보관조	<i>Crax rubra</i>	
90	민주늑애기과너	<i>Ortalis vetula</i>	
91	북방관머리보관조	<i>Pauxi pauxi</i>	
92	관머리보관조	<i>Penelope purpurascens</i>	
93	검은보관조	<i>Penelopina nigra</i>	
두루미목(GRUIFORMES)			
뚝부기과(Rallidae)			
94	흰배뚝부기	<i>Amauornis phoenicurus</i>	
95	알락뚝부기	<i>Coturnicops exquisitus</i>	
96	물닭	<i>Fulica atra</i>	
97	쇠물닭	<i>Gallinula chloropus</i>	
98	쇠뚝부기사촌	<i>Porzana fusca</i>	
99	한국뚝부기	<i>Porzana paykullii</i>	
100	쇠뚝부기	<i>Porzana pusilla</i>	
101	흰눈썹뚝부기	<i>Rallus aquaticus</i>	
세가락메추라기목(TURNICIFORMES)			
세가락메추라기과(Turnicidae)			
102	세가락메추라기	<i>Turnix tanki</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도요목(CHARADRIIFORMES)			
물펭과(Jacaniidae)			
103	물펭	<i>Hydrophasianus chirurgus</i>	
물떼새과(Charadriidae)			
104	흰물떼새	<i>Charadrius alexandrinus</i>	
105	꼬마물떼새	<i>Charadrius dubius</i>	
106	큰왕눈물떼새	<i>Charadrius leschenaultii</i>	
107	왕눈물떼새	<i>Charadrius mongolus</i>	
108	큰물떼새	<i>Charadrius veredus</i>	
109	검은가슴물떼새	<i>Pluvialis fulva</i>	
110	개펄	<i>Pluvialis squatarola</i>	
111	민당기물떼새	<i>Vanellus cinereus</i>	
112	당기물떼새	<i>Vanellus vanellus</i>	
도요과(Scolopacidae)			
113	갯도요	<i>Actitis hypoleucos</i>	
114	꼬까도요	<i>Arenaria interpres</i>	
115	메추라기도요	<i>Calidris acuminata</i>	
116	세가락도요	<i>Calidris alba</i>	
117	민물도요	<i>Calidris alpina</i>	
118	붉은가슴도요	<i>Calidris canutus</i>	
119	붉은갯도요	<i>Calidris ferruginea</i>	
120	아메리카메추라기도요	<i>Calidris melanotos</i>	
121	작은도요	<i>Calidris minuta</i>	
122	좁도요	<i>Calidris ruficollis</i>	
123	종달도요	<i>Calidris subminut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24	흰꼬리조도요	<i>Calidris temminckii</i>	
125	붉은어깨도요	<i>Calidris tenuirostris</i>	
126	깍도요	<i>Gallinago gallinago</i>	
127	큰깍도요	<i>Gallinago hardwickii</i>	
128	깍도요사촌	<i>Gallinago megala</i>	
129	청도요	<i>Gallinago solitaria</i>	
130	바늘꼬리도요	<i>Gallinago stenura</i>	
131	노랑발도요	<i>Heteroscelus brevipes</i>	
132	송곳부리도요	<i>Limicola falcinellus</i>	
133	긴부리도요	<i>Limnodromus scolopaceus</i>	
134	큰부리도요	<i>Limnodromus semipalmatus</i>	
135	큰뒷부리도요	<i>Limosa lapponica</i>	
136	흑꼬리도요	<i>Limosa limosa</i>	
137	꼬마도요	<i>Lymnocyrtus minimus</i>	
138	마도요	<i>Numenius arquata</i>	
139	쇠부리도요	<i>Numenius minutus</i>	
140	중부리도요	<i>Numenius phaeopus</i>	
141	붉은배지느러미발도요	<i>Phalaropus fulicarius</i>	
142	지느러미발도요	<i>Phalaropus lobatus</i>	
143	큰지느러미발도요	<i>Phalaropus tricolor</i>	
144	목도리도요	<i>Philomachus pugnax</i>	
145	멧도요	<i>Scolopax rusticola</i>	
146	학도요	<i>Tringa erythropus</i>	
147	알락도요	<i>Tringa glareola</i>	
148	큰노랑발도요	<i>Tringa melanoleuc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49	청다리도요	<i>Tringa nebularia</i>	
150	빽빽도요	<i>Tringa ochropus</i>	
151	쇠청다리도요	<i>Tringa stagnatilis</i>	
152	붉은발도요	<i>Tringa totanus</i>	
153	누른도요	<i>Tryngites subruficollis</i>	
154	뒷부리도요	<i>Xenus cinereus</i>	
장다리물떼새과(Recurvirostridae)			
156	장다리물떼새	<i>Himantopus himantopus</i>	
157	뒷부리장다리물떼새	<i>Recurvirostra avosetta</i>	
호사도요과(Rostratulidae)			
158	호사도요	<i>Rostratula benghalensis</i>	
제비물떼새과(Glareolidae)			
159	제비물떼새	<i>Glareola maldivarum</i>	
돌물떼새과(Burhinidae)			
160	흰눈썹돌물떼새	<i>Burhinus bistriatus</i>	
갈매기과(Laridae)			
161	구레나룻제비갈매기	<i>Chlidonias hybrida</i>	
162	흰죽지제비갈매기	<i>Chlidonias leucopterus</i>	
163	검은제비갈매기	<i>Chlidonias niger</i>	
164	한국재갈매기	<i>Larus cachinnans</i>	
165	갈매기	<i>Larus canus</i>	
166	괭이갈매기	<i>Larus crassirostris</i>	
167	긴목갈매기	<i>Larus genei</i>	
168	수리갈매기	<i>Larus glaucescens</i>	
169	작은흰갈매기	<i>Larus glaucoide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70	줄무늬노랑발갈매기	<i>Larus heuglini</i>	
171	흰갈매기	<i>Larus hyperboreus</i>	
172	붉은부리갈매기	<i>Larus ridibundus</i>	
173	큰재갈매기	<i>Larus schistisagus</i>	
174	재갈매기	<i>Larus vegae</i>	
175	북극흰갈매기	<i>Pagophila eburnea</i>	
176	세가락갈매기	<i>Rissa tridactyla</i>	
177	쇠목테갈매기	<i>Rhodostethia rosea</i>	
178	쇠제비갈매기	<i>Sterna albifrons</i>	
179	큰제비갈매기	<i>Sterna bergii</i>	
180	붉은부리큰제비갈매기	<i>Sterna caspia</i>	
181	검은등제비갈매기	<i>Sterna fuscata</i>	
182	제비갈매기	<i>Sterna hirundo</i>	
183	큰부리제비갈매기	<i>Sterna nilotica</i>	
184	목테갈매기	<i>Xema sabini</i>	
도독갈매기과(Stercorariidae)			
185	북극도독갈매기	<i>Stercorarius parasiticus</i>	
바다오리과(Alcidae)			
186	작은바다오리	<i>Aethia pusilla</i>	
187	흰수염작은바다오리	<i>Aethia pygmaea</i>	
188	알락쇠오리	<i>Brachyramphus perdix</i>	
189	흰눈썹바다오리	<i>Cephus carbo</i>	
190	흰수염바다오리	<i>Cerorhinca monocerata</i>	
191	바다쇠오리	<i>Synthliboramphus antiquus</i>	
192	바다오리	<i>Uria aalge</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비둘기목(COLUMBIFORMES)			
비둘기과(Columbidae)			
193	분홍가슴비둘기	<i>Columba oenas</i>	
194	양비둘기	<i>Columba rupestris</i>	
195	염주비둘기	<i>Streptopelia decaocto</i>	
196	멧비둘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197	홍비둘기	<i>Streptopelia tranquebarica</i>	
198	녹색비둘기	<i>Treron sieboldii</i>	
199	장미빛비둘기	<i>Nesoenas mayeri</i>	
사막펙과(Pteroclididae)			
200	사막펙	<i>Syrhaptes paradoxus</i>	
두견목(CUCULIFORMES)			
두견과(Cuculidae)			
201	밤색날개뺨꾸기	<i>Clamator coromandus</i>	
202	뺨꾸기	<i>Cuculus canorus</i>	
203	검은등뺨꾸기	<i>Cuculus micropterus</i>	
204	두견	<i>Cuculus poliocephalus</i>	
205	병어리뺨꾸기	<i>Cuculus saturatus</i>	
206	매사촌	<i>Cuculus hyperythrus</i>	
속독새목(CAPRIMULGIFORMES)			
속독새과(Caprimulgidae)			
207	속독새	<i>Caprimulgus indicus</i>	
칼새목(APODIFORMES)			
칼새과(Apodidae)			
208	쇠칼새	<i>Apus nipalensi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09	칼새	<i>Apus pacificus</i>	
210	바늘꼬리칼새	<i>Hirundapus caudacutus</i>	
파랑새목(CORACIIFORMES)			
물총새목(Alcedinidae)			
211	물총새	<i>Alcedo atthis</i>	
212	호반새	<i>Halcyon coromanda</i>	
213	청호반새	<i>Halcyon pileata</i>	
214	불호반새	<i>Megaceryle lugubris</i>	
파랑새목(Coraciidae)			
215	파랑새	<i>Eurystomus orientalis</i>	
후투티목(Upupidae)			
216	후투티	<i>Upupa epops</i>	
딱다구리목(PICIFORMES)			
딱다구리목(Picidae)			
217	아물쇠딱다구리	<i>Dendrocopos canicapillus</i>	
218	붉은배오색딱다구리	<i>Hypopicus hyperythrus</i>	
219	쇠딱다구리	<i>Dendrocopos kizuki</i>	
220	큰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leucotos</i>	
221	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major</i>	
222	쇠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minor</i>	
223	개미잡이	<i>Jynx torquilla</i>	
224	세가락딱다구리	<i>Picoides tridactylus</i>	
225	청딱다구리	<i>Picus canus</i>	
오색조목(Capitonidae)			
226	왕부리오색조	<i>Semnornis ramphastin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왕부리목(Ramphastidae)			
227	바일론중부리	<i>Bailloni bailloni</i>	
228	카스타노티스중부리	<i>Pteroglossus castanotis</i>	
229	이색왕부리	<i>Ramphastos dicolorus</i>	
230	점박이작은중부리	<i>Selenidera maculirostris</i>	

4.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거북목(TESTUDINATA)			
늑대거북목(Chelydridae)			
1	악어거북	<i>Macrochelys temminckii</i>	
2	늑대거북	<i>Chelydra serpentina</i>	
늪거북목(Emydidae)			
3	지도거북속 모든 종	<i>Graptemys spp.</i>	
남생이목(Geoemydidae)			
4	큰머리늪거북	<i>Mauremys megaloccephala</i>	
5	중국출목거북	<i>Mauremys sinensis</i>	
6	아이버손거북	<i>Mauremys iversoni</i>	
7	라시오늪거북	<i>Mauremys pritchardi</i>	
8	구양자이출목거북	<i>Ocadia glyphistoma</i>	
9	필리핀출목거북	<i>Ocadia philippeni</i>	
10	비눈점거북	<i>Sacalia pseudocellata</i>	
뱀목(SQUAMATA)			
뱀亞목(Serpentes)			
뱀목(Colubridae)			

번호	국명	학명	
11	대륙유혈목이	<i>Amphiesma vibakari</i>	
12	능구렁이	<i>Dinodon rufozonatum</i>	
13	누룩뱀	<i>Elaphe dione</i>	
14	무자치	<i>Oocatochus rufodordatus</i>	
15	살뱀	<i>Orientocoluber spinalis</i>	
16	줄고리뱀	<i>Orthriophis taeniurus</i>	
17	유혈목이	<i>Rhabdophis lateralis</i>	
18	인도올리브뱀	<i>Atrretium schistosum</i>	
19	바다물뱀	<i>Cerberus rhynchops</i>	
20	바둑무늬뱀	<i>Xenochrophis piscator</i>	
코브라과(Elapidae)			
21	먹대가리바다뱀	<i>Hydrophis melanocephalus</i>	
22	바다뱀	<i>Pelamis platura</i>	
23	산호코브라	<i>Micrurus diastema</i>	
24	붉은띠코브라	<i>Micrurus nigrocinctus</i>	
살모사과(Viperidae)			
25	살모사	<i>Gloydius brevicaudus</i>	
26	까치살모사	<i>Gloydius saxatilis</i>	
27	쇠살모사	<i>Gloydius ussuriensis</i>	
28	복살모사	<i>Vipera sachalinensis</i>	
29	남방방울뱀	<i>Crotalus durissus</i>	
30	북방살모사	<i>Daboia russelii</i>	
도마뱀亞目(SAURIA)			
도마뱀부치과(Gekkonidae)			
31	끈끈이발도마뱀 속	<i>Hoplodactylus spp.</i>	

번호	국명	학명	
	모든 종		
32	뉴질랜드초록도마뱀 속 모든 종	<i>Naultinus spp.</i>	
33	도마뱀부치속 모든 종	<i>Gekko spp.</i>	Gekko gecko 제외
장지뱀과(Lacertidae)			
34	아무르장지뱀	<i>Takydromus amurensis</i>	
35	줄장지뱀	<i>Takydromus wolteri</i>	
도마뱀과(Scincidae)			
36	도마뱀	<i>Scinella vandenburghi</i>	

5. 양서류(AMPHIB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유미목(CAUDATA)			
도롱뇽과(Hynobiidae)			
1	도롱뇽	<i>Hynobius leechii</i>	
2	제주도롱뇽	<i>Hynobius quelpaertensis</i>	
3	한국고리치레도롱뇽	<i>Onychodactylus koreanus</i>	
4	네발가락도롱뇽	<i>Salamandrella keyserlingii</i>	
5	이끼도롱뇽	<i>Karsenia koreana</i>	
무미목(ANURA)			
두꺼비과(Bufonidae)			
6	두꺼비	<i>Bufo gargarizans</i>	
7	작은두꺼비	<i>Bufo radei</i>	
8	물두꺼비	<i>Bufo stejnegeri</i>	
무당개구리과(Discoglossidae)			

9	무당개구리	<i>Bombina orientalis</i>	
청개구리과(Hylidae)			
10	청개구리	<i>Hyla japonica</i>	
개구리과(Ranidae)			
11	한국산개구리	<i>Rana coreana</i>	
12	북방산개구리	<i>Rana dybowskii</i>	
13	계곡산개구리	<i>Rana huanrenensis</i>	
14	참개구리	<i>Pelophylax nigromaculatus</i>	
15	옴개구리	<i>Glandirana rugosa</i>	

[별표 8의2] <신설 2015.3.25.>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2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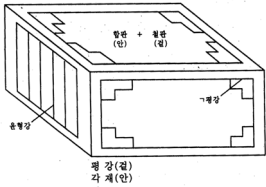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 분	자격기준 등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	1.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진료수의사: 수의사로서 제1호에 따른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일 것
야생동물 질병연구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동물학, 축산학, 의학, 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1인 이상일 것
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업무 담당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3인 이상일 것

2. 시설 기준

구 분		세부기준
부 지		○ 전체면적: 1,000㎡ 이상 ○ 건물: 전체면적의 20%(200㎡) 이상
시 설	진료실	○ 임상병리, 약제투여 및 그 밖의 치료시설을 갖추어 것
	수술실	○ 수술 관련시설을 갖추어 것
	영상진단실	○ 방사선 촬영장비를 갖추어 것
	입원실	○ 진료실과 구분·운영하되, 종에 따라 적절한 실내케이지 및 시설을 갖추어 것
	교육실	○ 야생동물보호 홍보·교육관련 강의, 전시 및 영상상영시설을 갖추어 것
	사체 및 유전자원 보관실	○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 것
	먹이준비실	○ 상하수도시설을 갖추어 것
	재활시설	○ 적정 면적확보 및 자연적응 훈련 가능시설을 갖추어 것
	창고시설	○ 먹이 및 자재보관용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 것
	격리·차폐시설	○ 소독과 격리가 가능한 1개의 실(室)을 갖추어 것

3. 장비 구비기준

구 분		세부기준
운반 장비	구조차량	○ 야생동물 구조·운송에 적합한 차량
	재 질	○ 나무, 종이, 금속 또는 플라스틱
	모형도(예시)	 
	공 통	○ 야생동물의 이동공간을 보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
	대형 맹수류 (곰 등)	○ 크기: 가로 1.8m, 세로 0.9m, 높이 0.9m ○ 재료: 합판(15mm), 철판(1.2mm), 각재(45mm), 평강 및 ㄱ평강(3×40mm), 운형강(15mm) ※ 인체 위해 예방을 고려
	그 밖의 맹수류	○ 크기: 가로 1.2m, 세로 0.6m, 높이 0.6m ○ 재료: 합판(12mm), 철판(0.9mm), 각재(45mm), 평강 및 ㄱ평강(3×40mm), 운형강(12mm) ※ 나무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창살을 나무판 등으로 덧댄 운반상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못이나 그 밖의 돌출물 등을 사전제거할 것

구 분	세부기준
포획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추 것)	1. 용접용 장갑(짧고 얇은 장갑 및 길고 두꺼운 장갑 각 1켤레 이상) 2. 동물 이송상자 바닥 깔개 3. 고글 등 눈 보호장치 4. 안대용 후드 또는 눈가리개용 장갑, 양말 및 주머니 5. 멸균생리식염수 및 일반 구급약품상자(해독제 포함) 6. 포획용 그물, 올가미 막대(Control Pole), 안전 집게(Grasper), 마취총, 파이프 마취총(Blow Gun), 막대 주사기[Jab Stick (Pole Syringe)] 7.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등 컴퓨터 작업 및 동영상 저장장치
진료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추 것)	1. 진료대 2. 수술대 3. 수술등 4. 흡입마취기 5. 환축상태감시기(ECG, Pulse oximeter 등) 6. 수액펌프(인퓨전펌프) 7. X-ray 영상진단장비 세트 8. 초음파진단기 9. 광학현미경 10. 혈액검사장비 세트 11. 원심분리기 12. 집중치료시설(ICU, Intensive Care Unit) 13. 세균 배양기 14. 고압멸균소독기(Autoclave) 15. 자외선 소독기 16. 이비인후과 유닛(ENT UNIT) 17. 네블라이저(Nebulizer) 18. 검이-검안 장비 세트(otoscopy, 검안경 및 안압측정기 등) 19. 일반외과 수술기구 세트 20. 정형외과 수술기구 세트 21. 미세수술장비(루페 등) 22. 석션기 23. 의료소모품 일체

[별표 8의3] 〈개정 2019. 12. 20.〉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5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분	자격기준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	1.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질병진단 담당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이 근무할 것
야생동물 질병진단 보조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양 또는 혈청검사 등의 훈련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것

2. 시설 기준

질병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부검실 1실과 질병진단 전용실험실 1실을 갖추어야 한다.

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 필수기자재

장비명	수량
광학현미경	1대
천평 또는 전자저울	1대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1대
원심분리기	1대

1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장비명	수량
고압멸균기(Autoclave)	1대
배양기	1대
증류수 제조기	1대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1대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1대
조직절편기(Microtome)	1대
항온수조	1대
슬라이드건조기	1대
파라핀 용융기	1대
염색बाट 또는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부검도구	1세트
부검대	1대
혐기배양기(Anaerobic jar)	1개

나. 권장기자재

장비명	수량
형광현미경	1대
CO ₂ 배양기	1대
냉동조직절편기(Cryotome)	1대
혈액검사기(Automatic blood cell counter)	1대
분광광도계	1대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1대

장비명	수량
도립현미경	1대
동혈청미량성분분석장치(Automatic serum analyzer)	1대
진공펌프	1대 이상
효소면역법판독기(ELISA reader)	1대
중합연쇄반응기(PCR machine)	1대
전기영동장치	1대
초저온냉동고	1대
자외선 발광기(Illuminator)	1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시스템(HPLC system)	1대

다. 필수 실험실 물품

물품명	수량
에칠알콜	검사업무를 원활히 실험할 수 있는 적정 수량
메칠알콜	
크리스탈 바이올렛(Crystal Violet)	
요오드	
항산성 염색시약	
혈구희석용피펫(blood cell diluting pipette)	
혈구계산판(Countingchamber)	
알콜램프 또는 가스램프	
세균배양용 백금이(루프)	
슬라이드글라스	
커버글라스	

물품명	수량
파라핀	
자이렌(Xylene)	
김사(Giemsa)	
에오신(Eosin)	
헤마톡시린(Hematoxylin)	
포르말린	
페트리디쉬	
혈액배지	
물러힌턴배지(Muller hinton agar)	
맥콩키배지(MacConkey agar)등 세균분리동정(同定: 생물 분류 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용 배지수종	
그 밖에 병성감정에 필요한 시약류 등	

소각 및 매물기준(제44조의9 관련)

1. 소각기준

가.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매물기준

가. 매물장소의 선택

1) 매물 대상 야생동물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지 등이 매물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사유지 또는 매물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물지의 크기 및 적정 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매물 수량

나) 지하수위·하천·주거지 등 주변 환경

다) 매물에 사용하는 액비 저장조, 간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등의 종류·크기

3) 매물 장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하천, 수원지, 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

나) 매물지 굴착(땅파기)과정에서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는 곳(매물지는 지하수 위에서 1m 이상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다) 음용 지하수 관정(管井)과 75m 이상 떨어진 곳

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마) 유실,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3)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샘물보전구역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나. 야생동물 사체의 매물 방법

1) 야생동물의 매물은 살처분 등으로 야생동물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하고, 사체의 매물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매물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파야 한다.

나)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는다.

다)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위에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사체 1,000kg당 85kg 비율로 뿌린다.

라) 사체를 투입하고 토양으로 완전히 덮은 후 최종적으로 생석회를 뿌린다.

마) 매물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는다.

바) 매물 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매물된 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물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책임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사체를 대규모로 매몰해야 하는 경우로서 1)의 방법으로는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게 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가) 매물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는 점토(粘土)·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혼합비율 15:85)로 충분히 도포(바닥 30cm 이상, 측면 10cm 이상)한 후 두께 0.2mm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이중비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중비닐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어야 한다. 다만,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고강도 방수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토 도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매몰 구덩이의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 침출수 배출관(유공관(有孔管)으로서 상부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다) 저류조의 용량은 0.5㎥ 이상으로 하되, 경사 아래쪽 중에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만들고,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매몰지 경계에서 외부와의 이격 거리 5m 이내 인 곳(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인 곳을 말한다)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을 각각 설치하며, 관측정의 수질측정, 결과해석, 보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매몰지 내부에 설치하는 관측정은 나)의 침출수 배출관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야생동물 사체 등의 운반

- 1) 사체 등은 핏물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소각·매몰 등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 2) 사체 등의 소각·매몰 등을 위한 목적지 출발 전과 목적지에 도착하여 사체 등을 하차한 후 동 운반차량 전체를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별표 8의5] <개정 2019. 12. 20.>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44조의10제1항 관련)

1.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m 이상 흙을 쌓는다.
 -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거나 저류조에 수집된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려 침출수를 흡수하게 한 다음 수거하여 재매몰 또는 이송처리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한다.
 -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침출수 배출관과 가스 배출관 주위에 탈취제와 톱밥을 뿌려주며,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 바. 매몰지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매몰지 점검 및 매몰지의 함몰·훼손 등의 경우에 보완조치를 한다.
 - 사. 매몰지 점검결과 경사면붕괴 또는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의 정비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제31조의4 관련)

1. 매몰

가. 매몰 장소

-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포획한 장소에 매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장소에 매몰할 수 있다.
 - 가)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
 - 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가 타인의 사유지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2) 매몰 장소의 위치는 별표 8의4 제2호가목3)에 따른다.

나. 매몰 방법

-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에 매몰할 수 없어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매몰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 2) 매몰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 3) 매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1m이상 되도록 파고, 폐수유출방지용 비닐을 덮는다.
 - 나) 구덩이의 바닥에는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뿌리고, 사체를 투입한 뒤 토양, 생석회 순으로 덮는다.
- 4)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에는 매몰 후 제44조의10제1항 및 별표 8의5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소각

-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나. 소각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해야 한다.

라. 소각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고온·고압방식의 멸균처리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고온·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고온·고압방식의 멸균처리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나. 고온·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 고온·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한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별표 8의7] 〈신설 2024. 5. 17.〉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44조의19제3항 관련)

1. 지정검역물 현물에 대한 검역방법
- 가.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나.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살아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살아있는 야생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관능검사(인간의 오감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 다.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검역증명서 등 서류 확인방법
- 가. 야생동물검역관은 우리나라와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간에 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나.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의 야생동물 검역업무 담당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원본 또는 부본을 말한다) 상의 지정검역물과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합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정한 내용 외에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한다.

[별표 8의8] 〈신설 2024. 5. 17.〉

지정검역물 검역기간(제44조의19제3항 관련)

구분	지정검역물의 종류	검역기간
포유류 (MAMMALIA)	1. 영장목(靈長目, PRIMATES)	30일
	2. 우제목(偶蹄目, ARTIODACTYLA)	15일
	3. 기제목(奇蹄目, PERISSODACTYLA)	10일
	4. 식육목(食肉目, CARNIVORA)	10일
	5. 익수목(翼手目, CHIROPTERA)	180일
	6. 그 밖의 포유류	5일
조류(AVES)	조류	10일
파충류(REPTILIA)	파충류	7일
그 외의 지정검역물		3일
비고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수출국 또는 국내의 방역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다음 각 목의 야생동물에 대하여 이 표에도 불구하고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전시의 목적으로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야생동물		
나. 국내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야생동물		
다.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야생동물		

[별표 8의9] 〈신설 2024. 5. 17.〉

수입검역증명 표지(제44조의22제1항 관련)

모형	규격
	지름
	바깥 원: 40mm
	안의 원: 25mm
	글자의 굵기
	안의 원: 1mm
	바깥 원: 1mm

[별표 8의10] 〈신설 2024. 5. 17.〉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보관관리 기준(제44조의23제3항 관련)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
 - 가. 살아있는 야생동물 운송차량
 - 1) 운송차량의 전면 또는 측면에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 2) 운송차량에 야생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화물칸이 있어야 하고,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
 - 3) 화물칸에는 야생동물의 외부 노출 및 오염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4) 화물칸 내부에는 야생동물이 수송 중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 5) 화물칸 상부에는 태양광선·비·눈 등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차폐장을 설치하되, 충분한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6) 운송차량의 후면에는 개폐식 문과 앞좌석에서 수송 중 동물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안전창을 설치해야 한다.
 - 나. 그 밖의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 1) 운송차량의 전면 또는 측면에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 2) 지정검역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수송 중 누수 또는 오염물질 누출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보관관리기준
 - 가.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출고하는 경우 그 지정검역물의 종류, 검역종료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나.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명, 입고일시, 검역종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다.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만 출고할 수 있다.

[별표 9] 〈개정 2015.3.25.〉

수수료(제72조의2제1항 관련)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근거법령	구 분		수수료	
			수입·반입하는 경우	수출·반출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	동물	살아있는 표본	10만원	10만원
		죽은 표본	100개 이상	5만원
			100개 미만	2만원
	식물	3,000개 이상	5만원	5만원
		3,000개 미만	2만원	2만원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

근거법령	구 분	수수료
법제16조의2 제1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10만원
법제16조의2 제2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5만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2만원

[별표 10] 〈개정 2015.8.4.〉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제59조제2항 관련)

강습과목	강습시간
수렵의 역사·문화	1시간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1시간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시간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1시간 (실기 강습은 제외한다)

비고

1.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은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강습과목 중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은 강습시간 외에 1시간 이상의 실기 강습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제2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렵 강습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1] 삭제 〈2012.7.27.〉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7조의2제1항제1호,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호,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 법 제34조의7제7항제1호, 법 제36조제1항제1호,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거나, 수렵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6)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처분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마. 제2호다목의 폐쇄명령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된 시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종류별로 사육 중인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법 제7조의2 제1항제3호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4)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5)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5호	지정취소			
6)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6호	경고	지정취소		
7)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7호	경고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8)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8호	경고	지정취소		
9)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알선·중개를 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9호	경고	지정취소		
10)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10호	경고	지정취소		
11)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11호	지정취소			
1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법 제7조의2 제1항제12호	경고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다. 사육시설등록자가 법 제16조의8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1호	등록취소			
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2호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3호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4호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5호	경고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6)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6호	경고	폐쇄명령 15일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7)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7호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8호	경고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9)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9호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10호	경고	등록취소		
1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11호	경고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등의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마.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4)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4호	경고	허가취소		
바.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1호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 제3호	경고	허가취소		
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제3호	허가취소			
아. 삭제 (2023. 1. 5.)					
자.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4호	지정취소			
5)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5호	경고	지정취소		
6) 법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6호	경고	지정취소		
7) 법 제3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7호	경고	지정취소		
차.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7제7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4조의7 제7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의7 제7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법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7 제7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7 제7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카.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가) 시설과 인력 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나) 시설요건이 부족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		
다)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타.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 제5항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파.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을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의2 제1항제1호	승인취소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의2 제1항제2호	경고	승인취소		
하.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의2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47조의2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3)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47조의2 제1항제3호	지정취소			
거.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수렵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가)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면허취소			
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법 제49조 제1항제4호	법 제49조 제1항제4호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5호	경고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6)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6호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7호	경고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8)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8호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나) 1년을 초과한 경우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가) 수렵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나)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고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10)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0호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나)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고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10)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0호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제6편 자연보전

1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203 제2조(정의) 5203 제3조(적용 범위) 5203 제4조(국가 등의 책무) 520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204 제6조(지원정책의 수립) 5204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7조(국가연락기관) 5204 제8조(국가책임기관) 5206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5207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 5209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5210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5210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13조(국가점검기관) 52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203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5205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5207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5207 제5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 5209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1조(목적) 5203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5207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5207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5209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5211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5211	제6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 5211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 5211
제16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5212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5212	
제4장 보칙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5212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5213	제4장 보칙	
제18조(협의회회의 구성·운영) 5214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5213	
	제10조(협의회회의 구성) 5214	
제19조(정보 보호) 5215	제11조(협의회회의 운영) 5215	
제20조(국고 보조) 5216	제12조(정보 보호) 5215	
제21조(재원 확보) 5216		
제22조(수수료) 5216	제13조(권한의 위임) 5216	제6조(수수료) 5216
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5216	제14조(업무의 위탁) 5219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220		
제25조(규제의 재검토) 5220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21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5221		
제27조(몰수·추징) 5221	제16조(과태료) 5221	
제28조(과태료) 5221		
부칙 5222	부칙 5222	부칙 522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7. 1.17 법률 제1453호 개정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12.24 법률 제16016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2.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 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3. "접근"이란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익"이란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정 2017. 8.16 대통령령 제28246호 개정 2018.12.18 대통령령 제29385호 2020. 9.11 대통령령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17.11.27 환경부령 제720호 개정 2018.12.27 환경부령 제79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인간의 유전자원등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 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5.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유전자원등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등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7조(국가연락기관)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 2. 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등 국가연락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① 외교부장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현황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점점기관(이하 "국가점점기관"이라 한다) 2. 그 밖에 사무국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책임기관 및 그 소관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0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사항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가책임기관) 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4.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5. 법 제12조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외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3.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4.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5. 「생물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인 신고인의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그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3.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방법(계약 등의 방법으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에 별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제3자를 통해 유전자원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이용기간 4.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5.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및 용도 6. 해당 유전자원등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 유전자원등의 이용방법 7. 해당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려는 국가 8.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해당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상호합의조건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2. 27.> ③ 영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④ 영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2. 27.>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은 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⑤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한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한 유전자원(미생물은 제외한다)의 수량 또는 농도를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려는 경우 3.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국내 유전자원등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 제9조제4항에서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공국(이하 "제공국"이라 한다)인 국내 유전자원등에 적법하게 접근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한민국 외에 다른 국가도 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치료제 개발, 식량 확보 등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의 신속한 접근 또는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는 경우. 다만, 그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생물다양성(이하 이 항에서 "생물다양성"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등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13조(국가점검기관) ①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는 경우에는 미리 접근 신고의 예외 대상 및 사유 등에 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예외 대상 및 사유와 신고의 제외사실 또는 절차간소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산업통상자원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5.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 2.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및 권고 3.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	제6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이하 "사전통고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차 준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①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국의 명칭 3.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4. 사전통고승인을 한 제공국 기관의 명칭, 승인날짜 및 승인번호 5.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6.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용 목적 및 용도 7.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1. 제3국으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익의 제기가 있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의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2.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등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둔다. ②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구축·운영하는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권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내 유전자원등의 해외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를 위한 외국의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의정서에서 규정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해양수산부 -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점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정보 보호) ①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 그 소관의 결정 2. 법 제10조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인정 3. 법 제12조에 따른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국가연락기관의 장,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정보 보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원등과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유전자원등의 이용 방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국고 보조)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재원 확보)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①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 및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마.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	제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접근 신고를 포함한다): 1만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관한 조사·관리 바.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12. 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12.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9. 11.>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라.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마.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2. 국가접점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목개정 2018. 12. 18.]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의 조사·관리 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수리 여부 통지 마.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 접수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다.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검검기관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한다. -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 12. 18.〉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절차 준수의 조사 또는 권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4.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몰수·추징)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에 관한 사무 제16조(과태료)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검검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4533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8조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2조 및 제14조는 이 법 시행 후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는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항 제5호 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17년 6월 27일까지는 각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 ②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17년 6월 27일까지는 각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부칙 〈제28246호, 2017. 8. 16.〉 이 영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제4항제2호, 제16조 및 별표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5호, 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13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720호, 2017. 11. 27.〉 이 규칙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 2018.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법률 제14533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016호, 2018. 12. 2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5227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	400	8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	100	200	4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200	400	800

제6편 자연보전

13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5240 제2조(정의) 5240 제2조의2(기본원칙) 5242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5243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5243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5244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5244 제4조의3(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5245 제4조의4(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 5246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관리) 5247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5247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5248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5248	제1조(목적) 5240 제2조(공원시설) 5241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5244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5245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5245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5246 제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5246 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5246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5246 제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5247 제3조(지정기준) 5248	제1조(목적) 5240 제2조 삭제 5240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5247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5249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5249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5249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5251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 5252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5252 제7조(도립공원위원회·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253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254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5255 제10조의2(전문위원) 5256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5256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5256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5256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5256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5257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5257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5258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5258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5258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5259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5259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5260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5260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5259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5260 제6조 삭제 5260 제7조 삭제 5260 제8조 삭제 5260 제9조 삭제 5260 제10조 삭제 5260 제11조 삭제 5260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5283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5282	
제24조(원상회복) 5283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 5283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5284	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5284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5284	
	제23조 삭제 5286	
	제24조 삭제 5286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5286		
제24조의4(이주대책) 5286		
제25조 삭제 5287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5287		
제27조(금지행위) 5287	제25조(금지행위) 5288	
제27조(금지행위) 5288		
제28조(출입 금지 등) 5289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5290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5290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5290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5291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5291
제31조(대집행) 5292		
제32조(감독처분) 5292		
제33조(청분) 5292		
제34조(사법경찰권) 5293		
제35조(공원대장) 5293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5293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5293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운영		
〈산설 2011. 7. 28.〉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5294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5294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5294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5293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5297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5295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5295 제27조의5(시정기간) 5297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5295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5297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5297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5298		
제36조의7(비용부담) 5298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5298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5298
제36조의8(금지행위) 5298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개정 2008. 12. 31.〉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5298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5298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5299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5300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5300 제26조(공원접종료 등의 징수) 5301
제38조(접종료 등의 징수) 5301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5302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5302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5302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5302		
제43조(보조) 5303		
제6장 삭제 〈2016. 5. 29.〉		
제44조 삭제 5303	제28조 삭제 5303	
제45조 삭제 5303	제29조 삭제 5303	
제46조 삭제 5303	제30조 삭제 5303	
제47조 삭제 5303	제31조 삭제 5303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8조 삭제 5304	제32조 삭제 5304	
제49조 삭제 5304	제33조 삭제 5304	
제50조 삭제 5304	제34조 삭제 5304	
제51조 삭제 5304	제35조 삭제 5304	
제52조 삭제 5304	제36조 삭제 5304	
제53조 삭제 5304	제37조 삭제 5304	
제54조 삭제 5304	제38조 삭제 5304	
제55조 삭제 5304	제39조 삭제 5304	
제56조 삭제 5304		
제57조 삭제 5304		
제58조 삭제 5304		
제59조 삭제 5304		
제60조 삭제 5304		
제61조 삭제 5304		
제62조 삭제 5304		
제63조 삭제 5304		
제64조 삭제 5304		
제65조 삭제 5304		
제66조 삭제 5304		
제67조 삭제 5304		
제68조 삭제 5304		
제69조 삭제 5304		
제7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304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5305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5305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5307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5307
제73조(손실보상) 5307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주민주원사업) 5308	제41조(재결의 신청) 5308 제41조의2(주민주원사업) 5308 제41조의3(상·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5308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5309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5309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5310		
제74조(권리·의무의 승계) 5310		
제75조(처분의 제한) 5310	제42조(처분제한) 5310	
제76조(협약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5310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5311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5311 제44조(매수절차 등) 5311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5311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5312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5312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5313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5313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315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5317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5317
제8장 벌칙 <개정 2008. 12. 31.>		
제82조(벌칙) 5317		
제83조(벌칙) 5317		
제84조(벌칙) 5318		
제84조(벌칙) 5318		
제85조(양벌규정) 5319		
제86조(과태료) 5319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5319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5319	제29조(과태료부과·징수 세부절차 등) 5319 제30조 삭제 5320
부칙 5320	부칙 5320	부칙 5320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정 2001. 3.28 법률 제6450호 개정 2002. 2. 4 법률 제6654호 (국토기본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5. 3.31 법률 제7456호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1. 3 법률 제8211호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11 법률 제8346호 (문화재보호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8. 3.21 법률 제8950호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10. 2. 4 법률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2010. 2. 4 법률 제1000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1. 4. 5 법률 제10548호 2011. 7.28 법률 제10978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6. 5.29 법률 제14228호 2016.12.27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법률 제14492호 2017. 4.18 법률 제14782호 2017.12.12 법률 제15198호 2018.10.16 법률 제15830호 (국립공원공단법) 2018.10.16 법률 제15838호 2019.11.26 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법)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425호 2022. 6.10 법률 제18909호 2022.12.13 법률 제19089호 2022.12.27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3.21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4.18 법률 제19361호 2023. 8. 8 법률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 1.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정 2001. 9.29 대통령령 제17380호 개정 2002.12.18 대통령령 제17809호 (국토기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4. 4 대통령령 제17952호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5. 9.30 대통령령 제19073호 2006. 3. 3 대통령령 제19370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신원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4.12 대통령령 제20008호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3호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9.18 대통령령 제21013호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 7.16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케도운수법 시행령)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 6.28 대통령령 제2222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0호 2011. 5. 3 대통령령 제22915호 2011. 9.30 대통령령 제23194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26 대통령령 제23558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 6.15 대통령령 제263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6. 6.21 대통령령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7. 5.29 대통령령 제28077호 2017. 6.27 대통령령 제28157호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3.13 대통령령 제28698호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	제정 2001.10.17 환경부령 제117호 개정 2005. 9.30 환경부령 제186호 2006. 5.30 환경부령 제205호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 6.29 환경부령 제23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2008. 9.19 환경부령 제298호 2010.10. 1 환경부령 제379호 2011. 3.31 환경부령 제405호 2011.10. 6 환경부령 제424호 2012. 1.27 환경부령 제446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5.30 환경부령 제702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31 환경부령 제841호 2023. 4.17 환경부령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2019. 1.15 대통령령 제29489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반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5.26 대통령령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 8 대통령령 제31237호 2022.11. 1 대통령령 제32975호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 1.1 대통령령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4. 3.19 대통령령 제34316호 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 삭제 <2005. 9. 30.>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9. 11. 2.,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2020. 12. 8., 2022. 11. 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1. 공원관리사무소·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경로당·도서관·공설수목장림·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砂防)·호안(護岸)·방책(防柵)·방화(防火)시설·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운수시설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점(유류점 등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0. 6. 9.]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 9. 30.]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2.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의3(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10. 5. 4., 2024. 5. 7.>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식물의 분포, 지형·지질, 수리·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국가유산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 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본조신설 2005. 9. 30.]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 9. 30.]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5. 29.] 제4조의4(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 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 5. 29., 2018. 10. 16.>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2017. 5. 29.> [본조신설 2005. 9. 30.] [제목개정 2010. 10. 1.] 제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전문개정 2010. 10. 1.]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 5. 29.> [본조신설 2010. 10. 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5. 29.]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	제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0. 1.]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10. 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 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30.>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6.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7.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5. 29.]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2. 18., 2005. 9. 30., 2010. 10. 1.> 1. 군작전·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천·간척·개간·항만(어항을 포함한다)·발전·철도·통신·방송·측후·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7. 5. 29.]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6. 12., 2007. 4. 12., 2008. 2. 29., 2011. 9.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13., 2019. 1. 15.> 1.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이사 중 이사가 지명하는 사람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10. 1., 2012. 1. 26., 2018. 3. 13.>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전을 심의할 경우에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 9. 30.> ⑥제3항제4호·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⑦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0. 1., 2019. 7. 2.>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국립공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6. 12., 2010. 10. 1., 2018. 3. 13.>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특별위원이나 위원·특별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안전별로 지명하는 위원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3.> ②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7. 4. 12., 2010. 10. 1.> ③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안전별로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4. 12., 2010. 10. 1., 2018. 3. 13.> ④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전과 관련 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⑤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4. 12., 2010. 10. 1., 2018. 3. 13.> 제7조(도립공원위원회·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 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 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에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 군수”라 한다)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도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7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시·도지사가”로 본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7. 5. 29.] 제8조(국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0조(공원위원회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 1.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군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군수가”로 본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7. 5. 29.]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2(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 및 자문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9. 30.]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12. 8.]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원 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1. 종류 2. 목적 및 사유 3. 내용과 규모 4. 사업비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5. 사업시행기간 6. 효과 7. 원상회복 또는 조정계획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제목개정 2010. 10. 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30.〉 1. 삭제 〈2011. 9. 30.〉 2. 삭제 〈2011. 9. 30.〉 3. 삭제 〈2011. 9. 30.〉 4.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11. 9. 30.〉 6.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7. 이미 결정·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 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 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0. 10. 1.]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4.>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면적 및 이용편의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환경보전상황 등 4. 도로·하천 등 지형·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 공원관리의 효율성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진체에 미치는 영향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3. 19.>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1. 10. 6.>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30., 2008. 12. 24., 2010. 1. 1., 2012. 7. 20., 2018. 3. 13.>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소음 및 빛공해 발생분석 5. 폐기물 배출분석 6. 자연 및 문화 경관 영향분석 7. 환경예의 악영향 감소방안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5. 9. 30.] 제6조 삭제 <2008. 9. 19.> 제7조 삭제 <2008. 9. 19.> 제8조 삭제 <2008. 9. 19.> 제9조 삭제 <2008. 9. 19.> 제10조 삭제 <2008. 9. 19.> 제11조 삭제 <2008. 9. 19.>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 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6. 5. 29.>] 제17조의3(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3. 자연생태계·자연자원·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4.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관리계획 6. 용도지구별 보전·관리계획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8. 지역사회 협력계획	제13조의2(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30., 2017. 5. 29., 2024. 5. 7.> 1. 자연생태, 지형·지질, 수리·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동·식물, 경관, 국가유산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 탐방예약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라.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 10. 1.> 제13조 삭제 <2008. 9. 19.>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6. 5. 29.>] 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본조신설 2011. 4. 5.] [제17조의3에서 이동 <2016. 5. 29.>]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2019. 11. 26., 2023. 8. 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5. 29.> [본조신설 2007. 7. 4.]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삭제 <2011. 4. 5.> 5. 삭제 <2011. 4. 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2020. 5. 26., 2023. 8. 8.>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22. 11. 1.>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08. 9. 18.]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5. 3., 2017. 5. 29., 2024. 5. 7.>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水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층 철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매점	1.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5조·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현상, 관리, 전승(傳承)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재조사 행위 4.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행위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라고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재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17. 5. 29.>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층철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 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층 철자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20. 5. 26., 2024. 5. 7.>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층철자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20. 5. 26., 2024. 5. 7.>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⑦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전문개정 2008. 9. 18.] [제목개정 2010. 10. 1.]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7. 6. 2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20. 12. 8.>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4.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6. 6. 21., 2017. 5. 29., 2022. 11. 1., 2023. 1. 10.>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5.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건조·냉동·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6. 제14조 각 호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 7. 「수산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바닷가에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받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지정받아 설치하는 유어장(遊漁場). 다만,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호안(護岸)·방화(防火)·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3.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22. 11. 1.>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므로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⑥ 법 제18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산설 2017. 5. 29.〉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4개월을 말한다. 〈산설 2017. 5. 29.〉 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산설 2017. 5. 29., 2022. 11. 1.〉 1.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 2. 음식점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량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4. 인명구조선, 구조보트, 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3. 공원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연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야영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장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제목개정 2010. 10. 1.] 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1.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09. 12. 15., 2010. 10. 1., 2011. 9. 30., 2015. 6.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内工業) 4. 삭제 <2011. 4. 5.> 5. 삭제 <2011. 4. 5.>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 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축 행위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 <2011. 4. 5.> ④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할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용 시설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 여 설치하는 개인묘지·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분뇨 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 5. 29.> [본조신설 2008. 9. 18.] [제목개정 2011. 9. 30.]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 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4조의6 삭제 <2011. 9. 30.>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0. 5.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 [본조신설 2008. 9. 18.]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7. 6. 29., 2008. 9. 19., 2010. 10. 1., 2011. 10. 6., 2012. 1. 27.> 1. 삭제 <2011. 10.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의 선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 10. 6.)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러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0. 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2019. 12. 20.>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 9. 19.>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 제12호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2010. 5. 31., 2011. 4. 5., 2014. 1. 14., 2016. 12. 27., 2022. 12. 27., 2024. 1. 30.> 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 4. 15.>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자를 말한다. 1.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2.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3.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신고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고시 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	제16조(환매권)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허가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정하는 기간 내"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 계획 결정·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9. 30.>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9. 30., 2006. 6. 12.>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2. 삭제 <2006. 6. 12.> 3.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6. 6. 12.>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10. 10. 1.> 1. 삭제 <2006. 7. 4.> 2. 위치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6. 12., 2010. 5. 4., 2010. 10. 1., 2022. 11. 1.>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9. 30., 2006. 8. 4., 2010. 10. 1., 2011. 9. 30., 2020. 12. 8., 2022. 11. 1.>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육림·조림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4. 공원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6.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을 하는 행위(시설이 증축되거나 부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삭제 <2010. 10. 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1. 5. 3., 2011. 9. 30., 2014. 7. 14., 2017. 5. 29., 2024. 3. 19.>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의2.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낙석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마을지구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5.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풀베를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농아먹이는 행위 7.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8의2.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9.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9의2.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을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내에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한 번만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하는 행위 10.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가. 「산림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한 행위 나. 「산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 다.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의 설치 행위는 제외한다) 라.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관리를 위한 행위 마. 「산림보호법」 제43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위 1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림 또는 공유림(2021년 12월 3일 이후 편입된 경우로 한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해당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②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대상·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2005. 9. 30.> 제20조(자연동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2. 13.>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0. 6.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원상회복) 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 같다. <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8. 6. 5.> 1.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철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하굿둑·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6. 삭제 <2010. 10. 1.>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 2 본문에서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 설비·에너지 공급설비·댐·저수지·수중보(水中淤)·하굿둑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구조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 2018. 6. 5.> [본조신설 2007. 7. 4.]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공원관리청은 반복·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② 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수량·방치장소·제거일시·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공원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 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원관리청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제거된 물건등을 찾아 가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 ④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이면 국고에,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해당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각각 귀속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건등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07. 7. 4.]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및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이 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변경, 제3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의4(이주대책) ①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 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으로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그 거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따라 공원구역 외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이 법에 따른 공원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23조 삭제 (2010. 10. 1.) 제24조 삭제 (2010. 10. 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5. 29.] 제25조 삭제 <2008. 12. 31.>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6. 5. 29.,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전통사찰보존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보호수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전문개정 2008. 12. 31.]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12. 31.]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2024. 2. 6.>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	제25조(금지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시설을 말한다. 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시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장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전문개정 2018. 3. 13.]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질·생태유해성물질·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25. 8. 7.] 제27조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7. 4. 18., 2020. 5. 26.>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설 2011. 4. 5.>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2022. 11. 1.>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구역·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0. 6.> [제목개정 2010. 10. 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 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협의를	행위 [제목개정 2022. 11. 1.]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구역·목적·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하계 한 경우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12. 31.] 제31조(대집행)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 12. 31.] 제33조(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34조(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공원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 삭제 <2011. 10. 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법 제36조에 따른 자연자원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5. 29.]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운영 〈신설 2011. 7. 28.〉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의 생태계 현황 및 야생생물의 분포·서식 현황 2. 토양,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현황 3.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은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문헌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29.]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 지질·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설 2016. 5. 29.) [본조신설 2011. 7. 28.]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 지질공원의 운영·관리계획 5. 지질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 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 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2. 1. 26.]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의 구역 및 면적 3. 인증연월일 4. 공원관리청 5. 지질공원 인증 목적과 그 근거법령 6. 지질공원 안의 지질명소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7.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 27.]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위하여 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 15.> 1.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29.>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인증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 3. 인증취소 연월일 4. 인증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 27.]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개정 2008. 12. 31.>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 1. 27.]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9. 12. 31.>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3. 8. 8., 2024. 2. 6.>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2. 1. 27.,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1. 10. 6.>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3. 31.> ⑥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⑤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2022. 12. 13.> [전문개정 2008. 12. 31.]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2. 1. 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에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 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 둘 이상의 시·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2018. 10. 16.>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장 삭제 <2016. 5. 29.> 제44조 삭제 <2016. 5. 29.> 제45조 삭제 <2016. 5. 29.> 제46조 삭제 <2016. 5. 29.> 제47조 삭제 <2008. 12. 31.>	제28조 삭제 <2017. 5. 29.> 제29조 삭제 <2017. 5. 29.> 제30조 삭제 <2017. 5. 29.> 제31조 삭제 <2017. 5. 29.>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8조 삭제 <2016. 5. 29.> 제49조 삭제 <2016. 5. 29.> 제50조 삭제 <2016. 5. 29.> 제51조 삭제 <2008. 12. 31.> 제52조 삭제 <2008. 12. 31.> 제53조 삭제 <2008. 12. 31.> 제54조 삭제 <2016. 5. 29.> 제55조 삭제 <2016. 5. 29.> 제56조 삭제 <2008. 12. 31.> 제57조 삭제 <2008. 12. 31.> 제58조 삭제 <2016. 5. 29.> 제59조 삭제 <2016. 5. 29.> 제60조 삭제 <2016. 5. 29.> 제61조 삭제 <2008. 12. 31.> 제62조 삭제 <2016. 5. 29.> 제63조 삭제 <2008. 12. 31.> 제64조 삭제 <2016. 5. 29.> 제65조 삭제 <2016. 5. 29.> 제66조 삭제 <2016. 5. 29.> 제67조 삭제 <2016. 5. 29.> 제68조 삭제 <2016. 5. 29.> 제69조 삭제 <2016. 5. 29.> 제7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2.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	제32조 삭제 <2017. 5. 29.> 제33조 삭제 <2017. 5. 29.> 제34조 삭제 <2017. 5. 29.> 제35조 삭제 <2017. 5. 29.> 제36조 삭제 <2010. 10. 1.> 제37조 삭제 <2017. 5. 29.> 제38조 삭제 <2017. 5. 29.> 제39조 삭제 <2017. 5. 29.>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신찰보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신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이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2. 7. 20., 2017. 5. 29.〉 1.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 2.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이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정 2010. 2. 4., 2010. 4. 15., 2011. 4. 5., 2019. 11. 26.,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건축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 삭제 (2010. 4. 15.) 4. 「관광진흥법」 5. 「광업법」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 「농지법」 8. 「도로법」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 「사도법」 11. 「사방사업법」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식품위생법」 14. 「초지법」 15. 「하천법」 16. 그 밖의 법령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3조(손실보상) ① 제30조제1항제3호·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처분을 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손실이 제30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0. 1.>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를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30.] 제41조의3(상·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9. 27., 2008. 9. 18.>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③ 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 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본조신설 2011. 4. 5.]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② 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30.]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① 법 제73조의3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5. 29.>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숙박비·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5. 29.> [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7. 5. 29.]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6. 5. 29.]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7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8. 12. 31.] 제75조(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5. 29.]	제42조(처분제한) ①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법 제75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려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2.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전문개정 2020. 12. 8.] 제44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	제28조(토지매수 청구서의 제출서류)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10. 10. 1.> 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6. 7. 4.> 3. 삭제 <2010. 10. 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 산정의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	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20. 12. 8.> ④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⑤ 공원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1.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군수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수임자 또는 수탁자 2.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 3.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의 범위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7. 7. 4., 2008. 9. 18.,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1. 대기환경 관리,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 2.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3.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3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추진에 관한 사항 4의3.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6의4.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0. 10. 1.>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 9.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 등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 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1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16의2.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17.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양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8의2.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8의3.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항 19.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 20. 제5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21.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1.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1. 법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주민 간 자발적 협약 체결 및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 3의3. 삭제 <2022. 11. 1.> 4.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사무 11.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22. 11. 1.> 13. 삭제 <2022. 11. 1.> 14.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삭제 <2022. 11. 1.> 17. 삭제 <2022. 11. 1.> 18. 법 제76조에 따른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19. 법 제77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4. 5.>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장 벌칙 <개정 2008. 12. 31.>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전문개정 2008. 12. 31.]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2.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 4. 자연공원의 생태탐방·문화·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5. 도립·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6.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본조신설 2011. 10. 6.]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한 자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12. 31.]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2. 6. 10.> 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3.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땃·옴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 3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전문개정 2008. 12. 31.]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2. 6. 10., 2024. 2. 6.> 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3.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땃·옴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농약을 뿌린 자 3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25. 8. 7.] 제84조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2017. 12. 12.>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공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6. 27.> [전문개정 2008. 9. 18.]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공단의 이사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4.> ②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8.>	제29조(과태료부과·징수 세부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공단 직원이나 시·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 9. 19.>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12.> 1. 삭제 <2016. 12. 27.> 2. 삭제 <2016. 12. 27.>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2.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제6450호, 2001.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부칙 <제17380호, 2001. 9.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안에 설치된 공원시설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결정고시를 하였거나 변경고시를 한 공원시설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본다. ③(사찰·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복원된 사찰·종교단체시설물	제30조 삭제 <2023. 4. 17.> 부칙 <제117호, 2001.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 2005. 9.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를 본다. 제4조(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54호, 2002. 2. 4.> (국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⑭내지 ⑯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복원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찰·종교단체시설물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종절차를 거친 사찰·종교단체 시설물로 본다. ④(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하는 영림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09호, 2002. 12. 18.> (국토기본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54호, 2002. 12.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로 한다.	②(자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5호, 2006. 5. 30.> 이 규칙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 2006. 7.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07.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고시나 변경고시(해당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있는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별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⑦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②내지 ③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952호, 2003. 4. 4.>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인민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3호, 2005.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치하는 원상회복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온천법」 제3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집단시설지구(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다)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7456호, 2005.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 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자연공원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4)중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제19370호, 2006.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 2008. 9. 1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 2010.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 201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 2011. 10. 6.〉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 2012. 1. 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내지 ㉗생략 ㉘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211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내지 ㉗생략 ㉘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㉑내지 <169>생략 <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㉑내지 ㉗생략 ㉘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㉘내지 ㉞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008호, 2007. 4.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호, 2007.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 2017. 5. 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㉔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346호, 2007. 4. 11.〉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에 따른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결정·시행중인 공원보전계획 또는 공원관리계획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부터 ⑲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⑤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⑯ 부터 ⑳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950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획예산책”를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⑩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21013호, 2008. 9. 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85호, 2008. 12.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29호,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제14조의5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원보호구역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1807호, 2009. 11. 2.>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궤도·삭도”를 “궤도”로 한다. ⑰ 부터 ⑳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87호, 2009. 12. 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 라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으로 한다. ㉔ 부터 ㉟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⑥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⑦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1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24호, 2010. 6. 2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8호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20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제4호 및 제85조제5항제3호 본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각각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 〈제22915호, 2011. 5.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4호, 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지설지구에 대한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지설지구가 공원계획으로 세분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제18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⑬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58호, 2012. 1. 26.〉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와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㉔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㉔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⑯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③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2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③부터 ㉔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다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 <제10000호, 2010. 2. 4.>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01호, 2010. 2.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2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16호, 2015. 6.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7245호, 2016. 6. 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④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별표 1의4의 제목 및 같은 표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077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비교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비교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된 어린이놀이터 및 유키장은 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을 설치하였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10548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border="1"> <tr> <td>168</td><td>「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td><td>공원마을지구</td></tr> <tr> <td>170의2</td><td>「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td><td>공원문화유산지구</td></tr> </table> 부칙 <제10978호, 2011. 7.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 부칙 <제28157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있는 국립공원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5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98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실시 중인 평가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8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4228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시설계획 결정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고시일로 본다. 제4조(자연자원의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자원 조사 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46호, 2018. 6. 5.>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89호, 2019. 1. 15.>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2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각각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04호, 2020. 5. 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492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82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8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0호, 2018. 10. 16.>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생략	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37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8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매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8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75호, 2022. 11.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2호, 2022. 12. 30.>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15838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25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225호, 2023. 1.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7호 본문 중 “같은 법 제6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 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4316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계획과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88호,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18909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9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6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⑦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4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5조·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한다. ⑥부터 ⑤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361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문화재를”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㉞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자연공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231호, 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5345
[별표 1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5345
[별표 1의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5346
[별표 1의4] 해양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물증자생산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5346
[별표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5348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5348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제3조 관련)

구분	기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별표 1의2] <개정 2020. 12. 8.>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제14조의2제2항 관련)

구분		규모
공공시설	공원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보호 및 안전시설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외의 시설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휴양 및 편의시설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교통· 운송시설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 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교량	폭 12미터 이하
	궤도 (삭도는 제외한다)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비고: 교통·운송시설 중 탐방로(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3] <개정 2011.5.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구분	대상 지역	면적(km ²)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번지 내	0.29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번지 내	0.23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0.20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

[별표 1의4] <개정 2023. 1. 10.>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

(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헥타르)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외의 자
해상 양식 어업 시설	해조류 양식어업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건홍식 나. 연승식	1 이상 1 이상	1 ~ 20 1 ~ 20
		2. 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1 ~ 30	1 ~ 20
	패류 양식어업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간이식 나. 연승식 다. 뗏목식	1 ~ 5 1 ~ 20 1 ~ 30	1 ~ 5 1 ~ 20 1 ~ 20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간석지 2) 천해	1 ~ 100 1 ~ 30	1 ~ 20 1 ~ 20
			나. 투석식 등 1) 간석지 2) 천해	1 ~ 20 1 ~ 30 1 ~ 10	1 ~ 20 1 ~ 20 1 ~ 5
			다. 침하식	1 ~ 10	1 ~ 5
		3.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 20	0.5 ~ 10
	어류등 양식어업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나. 뗏목식	1 ~ 20 1 ~ 20	1 ~ 20 1 ~ 20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간석지 2) 천해 나. 투석식 다. 침하식(어류는 제외한다)	1 ~ 100 1 ~ 30 1 ~ 20 1 ~ 20 1 ~ 20	1 ~ 20 1 ~ 20 1 ~ 20 1 ~ 20 1 ~ 20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헥타르)	
			어초계 (지구별조합)	어초계 외의 자
복합 양식어업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나. 건홍식과 연승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1 ~ 20 1 ~ 20	1 ~ 20 1 ~ 20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패류의 전복과 어류 등의 해삼만 해당한다) 나. 살포식과 투석식(패류만 해당한다)	1 ~ 30 1 ~ 100	1 ~ 20 1 ~ 20
	3. 혼합 양식어업	가. 건홍식과 살포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1 ~ 100	1 ~ 20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1 ~ 20	1 ~ 20
		다. 침하식과 연승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1 ~ 10	1 ~ 5
		라. 가두리식과 연승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1 ~ 10	1 ~ 10
		마. 가두리식과 살포식(패류 중의 전복과 어류등의 해삼만 해당한다)	1 ~ 10	1 ~ 10
		바. 가두리식과 투석식(패류 중의 전복과 어류등의 해삼만 해당한다)	1 ~ 5	1 ~ 5
		사. 수평망식과 살포식(수평망식으로 양식	1 ~ 5	1 ~ 5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헥타르)	
			어초계 (지구별조합)	어초계 외의 자
		하는 굴과 그 밖의 패류만 해당한다)		
	4.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패류·어류등)	0.5 ~ 5	0.5 ~ 5
	협동 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 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에 따른다.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1 이상	1 이상

비고

1. 해상양식어업시설의 구분·종류 및 방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3. 복합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2017년 5월 30일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류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설치한 자에 한정하여 기존 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위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9. 7.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종류	범위
자연생태 체험사업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2. 공원 내 갯벌, 모래 언덕,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복원 현장 탐방
문화생태 체험사업	1. 전통사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 절터, 성터, 옛무덤 등의 답사 2.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전통생활양식 등의 체험
농어촌생태 체험사업	1.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생활 체험 2.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건강생태 체험사업	1.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2.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부대사업	1. 전문가 양성 및 교육·홍보 2.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3.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5. 그 밖에 자연공원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

[별표 3] 〈개정 2022.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라목 또는 같은 호 카목1)의 위반행위를 한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 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 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4호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 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10	20	30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 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	5	5	5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 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	10	10	1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 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5호	10	20	30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제 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	5	10	10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 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10	30	50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6호			
1) 제한이나 금지된营业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10	20	30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 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6호의2	50	100	200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 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 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4항	10	10	10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3호	30	40	50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5353
[별표 1의2] 삭제 <2008.9.19.>	5353
[별표 2] 삭제 <2008.9.19.>	5353
[별표 3]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 관련)	5353

[별표 1] <신설 2012.1.27>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1. 소양과정: 40시간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기본소양	지질공원해설사의정의와역할	8
	서비스교육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학	12
	커뮤니케이션 기법	
	스토리텔링	
해설프로그램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1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 교육	8
	응급처치	

2. 전문과정: 60시간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지질의 이해	지구의 탄생 및 진화	15
	주요 암석의 생성과 특성	
	한국의 지질 특성 이해	
지형의 이해	지형의 생성과 소멸	5
	한국의 지형 특성 이해	
지질공원 제도의 이해	지질공원 도입배경 및 특성	4
	지질명소의 개념 이해	
지질공원 해설실무	지질공원별 현황 및 관리계획	20
	지질명소 답사 및 해설	
자연환경	야생동식물, 습지, 하천 등 자연생태계	8
문화관광	문화·역사·예술 자원	8

비고: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과정 중 자연환경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과정 중 문화관광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지질학 관련분야 전공자(「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지질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경우 전문과정 중 지질의 이해 및 지형의 이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 삭제 <2008.9.19>

[별표 2] 삭제 <2008.9.19>

[별표 3] <개정 2019. 12. 20.>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 관련)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기준요율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2. 토지의 개간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3.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제6편 자연보전

14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366	제1조(목적) 5366	제1조(목적) 5366
제2조(정의) 5366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5370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5369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5371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표지) 5370
제5조(자연보호운동) 5372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5371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5372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373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5373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5373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5374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5374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5375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5376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5376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 5376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5376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5377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5377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5378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 5378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5379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5378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5378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5380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379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5381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5381
	제12조(재해의 범위) 5381	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5382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5381	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5383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5382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5383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5386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5385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5385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5388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5387	제17조(금지행위) 5386	
제1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5387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5388	
제17조(증지명령 등) 5389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5389	
제18조(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389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5389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5390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5390
제2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5390		
제2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5390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5391		
제22조(자연유보지역) 5391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5391		
제24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5391		제9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5391
제25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5392		
제26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5392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5392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5393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5393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5394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394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5394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5395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0조(자연환경조사) 5395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5396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5397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5397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5397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5398		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5398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5398		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5398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5399	제24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 5400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5399
	제25조(별도관리지역) 5400	제16조(생태·자연도의 세부등급) 5401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5401	
	제27조(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5401	제16조의2 삭제 5402
	제28조(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5402	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5403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5403	제29조 삭제 5403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5403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5404	제30조 삭제 5404	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5404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5405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5405	제20조 삭제 5404
		제21조 삭제 5404
제37조 삭제 5406	제32조 삭제 5406	제22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5405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33조 삭제 5406	제23조 삭제 5406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5406		제24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406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5407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5407	제25조(시설의 이용료) 5406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5408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5408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5408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5409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5409		제27조(생태마을의 지정·해제 절차 등) 5409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5410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5411		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5411
제44조 삭제 5412		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5412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5412	제35조의2(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5413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5412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5414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5414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결손처분) 5427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5428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 5429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5429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5429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5429	
제6장 보칙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5431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5431	
제5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5433		
제53조(손실보상) 5433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5433	제37조(손실보상청구서) 5433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5433	제38조(재결신청서) 5433
제54조(국고보조 등) 5434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5434		제39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5434
		제40조(사업계획 등) 5435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5435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5435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5436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5436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5436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5437	제51조 삭제 5437	제41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5436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5437		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5437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5438		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5437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5439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439	제52조(권한의 위임) 5439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5440	
제62조 삭제 5441	제53조(보고) 5441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5441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441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544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5442 제64조(벌칙) 5442 제65조(양벌규정) 5443 제66조(과태료) 5443 부칙 5443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443 부칙 5443	제43조 삭제 5443 부칙 5443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 1991.12.31 법률 제4492호 전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297호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6.10. 4 법률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4.11 법률 제8355호 (광업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 5.17 법률 제8468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09. 1.30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 1.27 법률 제9982호 (광업법) 2010. 2. 4 법률 제10032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7.21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7.28 법률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7.28 법률 제10979호 2012. 2. 1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 3.22 법률 제11671호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 2. 3 법률 제13168호 2016. 1.27 법률 제13885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0호 2018.10.16 법률 제15839호 2019.12.10 법률 제16806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비밀유이 정보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46호 2021. 4.13 법률 제18031호 2022. 6.10 법률 제18910호 2022.10.18 법률 제1901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3.21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8. 8 법률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 1. 9 법률 제19962호 2024. 2. 6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 2.13 법률 제20309호 (정부조직법)	제정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4호 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5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4. 4 대통령령 제1999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8.17 대통령령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 9.10 대통령령 제20256호 (광업법 시행령)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6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 5.26 대통령령 제20791호 (경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장비를 위한 평생 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 4.21 대통령령 제21445호 (보급자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 7.16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 7.27 대통령령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 (화만법 시행령)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6호 (광업법 시행령)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1. 3.29 대통령령 제22736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2. 1.25 대통령령 제2352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1.26 대통령령 제23559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9.23 대통령령 제24762호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7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1992. 8.31 총 리 령 제408호 전부개정 2005.12.30 환경부령 제191호 2006. 6.30 환경부령 제206호 2007. 9.27 환경부령 제422호 (광업법 시행규칙) 2007.10. 1 환경부령 제24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07.11.16 환경부령 제259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환경부령 제31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09. 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2. 1.31 환경부령 제447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2. 7.20 환경부령 제4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2. 7.27 환경부령 제46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9.23 환경부령 제519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8. 5.28 환경부령 제760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 1. 5 환경부령 제966호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4., 2012. 2. 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6. 10.>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 7. 7 대통령령 제2544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7호 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8. 5. 21 대통령령 제26896호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2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2. 1. 6 대통령령 제32327호 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7호 (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31호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8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제3448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8. “생태축”이라 함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9.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漕)·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4.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 6.]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 1. 6.>]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1. 28.>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2021. 4. 13.>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1. 7. 21., 2017. 11. 28.>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20. 5. 26., 2022. 6. 10.>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2. 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 3.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4.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제2조에서 이동 <2022. 1. 6.>]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0. 5. 26.)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 2. 4.>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0. 5. 26.>	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4., 2007. 4. 4., 2007. 8. 17., 2007. 9. 10., 2010. 12. 29., 2024. 5. 7.>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4. 13.> 1.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8.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결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5. 21.>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0. 5. 26.>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5. 핵심구역·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1.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 2.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사유 및 목적 4. 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에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변경의 사유 및 목적 4. 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5. 변경연월일 6. 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땃·옴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4., 2009. 6. 9., 2017. 11. 28., 2020. 5. 26> 1.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①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경우 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9. 6. 9., 2014. 6. 3., 2020. 5. 26., 2021. 1. 5.>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②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동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 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증·개축시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하이고 높이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묘지의 설치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제3항 각호의 행위 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나. 동표 제3호 가목의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2.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판매 시설 ②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5. 26., 2008. 10. 29., 2009. 7. 16.> 1.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2. 증·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동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 나.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실내담배판매장·골프연습장·충포판매사·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같은 표 제9호가목의 병원 라.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마. 동표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 바. 초등학교 ②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1. 동표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③법 제15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하수도 또는 전수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②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층 이하인 경우 2. 증·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2. 증·개축시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8. 4., 2008. 4. 3., 2010. 10. 14., 2023. 6. 27.>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 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 4. 4., 2024. 5. 7.>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식물의 등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입목·죽을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15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땃·올무·그물·함정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2024. 2. 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일: 2025. 8. 7.] 제16조 제1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 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목적에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자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 9. 23.]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위반 시 벌칙의 내용 [본조신설 2013. 9. 23.]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제17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8조(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가유산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2020. 5. 26., 2023. 8. 8., 2024. 2. 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국가유산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5. 26., 2024. 2. 13.>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위치·면적 및 생태·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②환경부장관은 관리전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제목개정 2009. 7. 27.]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제2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7., 2020. 5. 26.> ②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2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금액 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사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22.] 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①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구역구분·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도지사는		제9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특별시장·광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7. 21.,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25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26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서에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8. 5. 28.>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1., 2020. 5. 26.>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다. 생태·경관보전지역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2. 4., 2020. 5. 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20. 5. 26.>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③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5.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정·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 2. 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형태·색채·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 3. 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 ②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	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⑤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경관영향 저감방안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4.> 1. 산·하천·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토양의 특성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1. 관찰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①영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7.>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도래지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찰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선정 2. 관찰요원의 배치 3. 관찰시기 및 주기 4. 관찰내용 및 방법 5. 관찰결과의 기록 ③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의 변화 관찰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지형·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거나 그 토지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④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5. 26.>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0. 5. 26.>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4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4. 4.> 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또는 강하구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 8. 4., 2007. 4. 4., 2010. 3. 9., 2010. 12. 29., 2012. 7. 31., 2024. 5. 7.>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에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9.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4.>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제27조(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생태·자연도의 세부등급)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의 경우 가. 완충보전지역 : 법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의 경우 가. 개발관리지역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나. 개발허용지역 : 3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⑤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③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지의 자연적 상태 및 인위적 변화상황 등을 나타내는 녹지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녹지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21. 7. 6.>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제16조의2 삭제 <2018. 5. 28.>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7. 11. 28.)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29조 삭제 (2008. 10. 20.)	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土地被覆) 현황, 지형, 식생 현황, 동식물상(動植物相)에 따른 주제도(이하 “기본 주제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를 추가하여 작성할 것 2.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의 구조·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유형도를 작성할 것 3. 제2호에 따른 유형도에 따라 구분된 생물서식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평가도를 작성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세부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주제도 및 그 속성자료 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형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가도 3. 작성 대상 도시지역의 현장조사 도면 및 현장조사표 4. 제작결과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전산파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17조에 따른 작성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관련협약·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1. 삭제 <2012. 2. 1.> 2. 삭제 <2012. 2. 1.> 3. 삭제 <2012. 2. 1.> 4. 삭제 <2012. 2. 1.> 5. 삭제 <2012. 2. 1.> 6. 삭제 <2012. 2. 1.> ②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정보 등	제30조삭제 <2018. 5. 21.>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구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20조삭제 <2013. 9. 23.> 제21조삭제 <2013. 9. 23.>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12. 2. 1.]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2. 2. 1.>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2. 2. 1.>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목개정 2012. 2. 1.]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 현황 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 현황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 4. 4.>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소속의 전문가 그 밖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영 제3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삭제 (2012. 2. 1.)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 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007. 4. 4.) 제32조삭제 (2018. 5. 21.) 제33조삭제 (2018. 5. 21.)	제23조삭제 (2018. 5. 28.) 제24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관리계획 제25조(시설의 이용료) ①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금액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6.)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아니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 5. 그 밖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자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임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③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2.>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기준·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은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생태마을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생태마을의 지정·해제 절차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의 마을을 생태마을(이하 "국가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로 지정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태마을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국가지정생태마을로 지정된 후에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정 당시의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산설 2013. 3. 22.>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1.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해제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 아래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환경·생태·문화 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마을(이하 “시·도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 “국가지정생태마을”은 “시·도지정생태마을”로,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시·도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로 본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④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거나 녹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④ 정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도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44조 삭제 (2021. 1. 5.)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 및 유형별 복원방법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3.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5. 28.] 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 7. 27., 2013. 9. 23.>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3. 3. 22., 2020. 5. 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지역을 조사·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1. 야생생물 서식 중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중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중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제35조의2(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상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상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상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비무장지대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9. 23.>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8., 2018. 10. 16., 2020. 5. 26.>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태통로의 설치·관리 현황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4. 야생동·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지질·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통로 조성 후 3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가. 현장 직접조사: 계절별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나.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이하 “감시장비”라 한다)를 이용한 조사: 계절별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 조사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가. 현장 직접조사: 연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나.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 연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 조사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통로 주변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현황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종 및 종별 이용 빈도 3.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현황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 2021. 1. 5.〉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4.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 현황 및 밀렵도구 등 설치 현황 5.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생태통로 부대시설의 관리 현황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태통로 및 그 부대시설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2.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빈도 및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증감 추이 등 생태통로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3. 9. 23.]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6.] 제3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환경부장관은 보고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3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등)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서 2. 자연환경복원사업지역의 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5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만 해당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지역의 면적,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면적,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4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8. 자연환경복원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⑥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방법·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4제6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5.]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개정 2021. 1. 5.>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10. 18.>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	2. 유지·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 9. 23.> ②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채굴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2. 28., 2013. 9. 23.> [전문개정 2007. 11. 15.] [제목개정 2022. 1. 6.]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4., 2007. 11. 15.>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2022. 1. 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溜池)·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2. 9., 2018. 5. 21., 2022. 1. 6.>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2. 1. 6.>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 11. 15., 2022. 1. 6.>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15., 2022. 1. 6.>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제2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5.> [제목개정 2022. 1. 5.] 제3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5. 28.> 1. 1억원 이하 : 2회 이하 1의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회 이하 2. 2억원 초과 : 4회 이하 ②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 6.]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8. 5. 21.] [제목개정 2022. 1. 6.]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5.>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6. 30.> [전문개정 2007. 11. 16.] [제목개정 2022. 1. 5.] 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 5.> [제목개정 2022. 1. 5.]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①제38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 6.] 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	재부와·정산부와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5.> [제목개정 2022. 1. 5.] 제3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5.> [제목개정 2022. 1. 5.] 제34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5.> 1. 토지의 용도별 및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22. 1. 5.]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2. 1. 6.>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1.] [제목개정 2022. 1. 6.]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9. 23., 2022. 1. 6.>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2. 1. 5.> [본조신설 2013. 9. 23.] [제목개정 2018. 5. 28.]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 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별 훼손면적 [제목개정 2022. 1. 6.]	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①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9. 27., 2007. 11. 16., 2008. 12. 31., 2012. 7. 20., 2013. 9. 23., 2018. 5. 28., 2022. 1. 5.>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확정한 날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같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정기관의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 3. 22.,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 4.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음이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허가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5. 28., 2022. 1. 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5. 28.>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2011. 7. 28., 2012. 2. 1., 2013. 3. 22., 2019. 12. 10., 2020. 5. 26., 2021. 1. 5.> 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2. 삭제 <2021. 1. 5.> 3. 삭제 <2021. 1. 5.>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삭제 <2021. 1. 5.> 7. 삭제 <2021. 1. 5.> 8. 삭제 <2021. 1. 5.>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10. 삭제 <2021. 1. 5.>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 받은 사업의 조사·유지·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7.,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5., 2013. 9. 23., 2018. 5. 21.> 1. 삭제 <2013. 9. 23.>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훼손·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22. 1. 6.]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3.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4. 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 11. 15.>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1. 16., 2018. 5. 28., 2022. 1. 5.>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2022. 1. 6.>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7.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 11. 16., 2022. 1. 5.> 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 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11. 16., 2013. 9. 23., 2022. 1. 5.>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1. 16., 2018. 5. 28., 2022. 1. 5.> 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2. 반환받는 횡수가 2회 이하일 것 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2022. 1. 6.>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2013. 9. 23.> [제목개정 2022. 1. 6.]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29., 2013. 3. 23., 2019. 7. 2., 2024. 5. 7.>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斷片化)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6., 2022. 1. 5.> [제목개정 2022. 1. 5.]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성 2. 생태·자연도의 1등급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한한다)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한한다) 6.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도로·도시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생태계 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종자·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생물농약의 개발·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 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 10. 자연친화적 해충제거 방법의 개발 11. 녹지지역·경관지구의 설정 12. 골재채취 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제거 15.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1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제53조(손실보상)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재결신청서)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2021. 1. 5.)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설 2016. 1. 27.) [제목개정 2016. 1. 27.]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중) ① 국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		제40조(사업계획 등) ①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동·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徴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7. 4. 4.> 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몽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4. 4.>	제41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0. 5. 26.)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방법·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8.]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삭제 <2012. 1. 26.>	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 5. 28.>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해설사의 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5. 28.> [본조신설 2012. 1. 31.] [제목개정 2018. 5. 28.] 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8. 5. 28.> ②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본조신설 2011. 7. 28.]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서) 1부 3.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1부 ③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8.> 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 1부 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 1부 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1부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⑥ 양성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5. 28.> [본조신설 2012. 1. 31.] [제목개정 2018. 5. 28.]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13. 3. 22., 2020. 5. 26.>	제5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9. 23., 2022. 1. 6.> 1.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4. 법 제4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 26., 2013. 9. 23., 2018. 5. 21., 2022. 1. 6.>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3. 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4. 법 제1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4의2.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입 제한·금지 및 고시 4의3.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출입 제한·금지 해제 및 고시 5.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증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6.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7. 삭제 <2018. 5. 21.> 8.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9.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의 수립·시행 9의2.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10.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11. 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12. 법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제46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③ 삭제 <2007. 4. 4.>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제62조 삭제 <2006. 10. 4.>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 5. 21.>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4.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을 위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국민 열람 5.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접수 [본조신설 2013. 12. 11.] 제53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 4. 4., 2018. 5. 21., 2022. 1. 6.>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8. 5. 21.> 5. 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9. 23.> ②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 9. 23., 2022. 1. 5.>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26.> 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6. 12. 30.]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2., 2020. 5. 26.> 제66조(과태료) ①제26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3. 22., 2020. 5. 26.>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5. 26.> ④ 삭제 <2017. 11. 28.> ⑤ 삭제 <2017. 11. 28.> ⑥ 삭제 <2017. 11. 28.> 부칙 <제7297호, 200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29.] 부칙 <제19245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43조 삭제 <2012. 1. 31.> 부칙 <제191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 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1>생략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호, 2006. 6. 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 2007. 9. 27.> (공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3조제2호”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9호, 2007.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②내지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91호, 2007. 4.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59호, 2007.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 2008. 12.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때 ②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84)생략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 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및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⑤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045호, 2006. 10.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제24조제2호중 “호소·강하구·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 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중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47호, 2012. 1. 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222호, 2007. 8. 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256호, 2007. 9. 10.〉 (광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01조의 규정”을 “제85조”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86호, 2007.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69호,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부칙 〈제519호, 2013.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 2018.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생략 부칙 〈제8355호, 2007. 4. 11.〉 (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⑮ 내지 ⑳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68호, 2007.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천탐광·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1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⑮ 부터 ㉑ 까지 생략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연환경해설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연환경해설사는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 2022.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에 따른 지역계수가 반영되어 부과·납부한 생태계보전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89호, 2024. 5. 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5〉 까지 생략 〈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7호, 2008. 3. 28.〉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②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91호, 2008. 5.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제21087호, 2008. 10.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생략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④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098호,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⑩ 까지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9774호, 2009. 6.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982호, 2010. 1. 27.> (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10032호, 2010. 2. 4.>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충포판매소”를 “충포판매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표 제7호 가목”을 “같은 표 제9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표 제17호 가목 또는 마목”을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⑬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1185호, 2008. 12.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445호, 2009. 4. 21.>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급자리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8조제2항 중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도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⑰ 부터 ⑳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29호,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1641호,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⑥ 부터 ⑥(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807호, 2009. 11. 2.〉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㉒부터 ㉔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⑮ 부터 ㉔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⑥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81호, 2009. 12.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③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의보전기관의 지원 제57조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979호, 2011. 7.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57호, 2012. 2.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1882호, 2009. 12. 14.〉 (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2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⑲ 부터 ㉑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887호, 2009. 12. 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㉓ 부터 ㉕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2073호, 2010. 3. 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할”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②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449호, 2010. 10.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56호, 2010. 12. 28.) (광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6조 중 “노천탐광”을 각각 “노천탐사”로, “채광계획”을 각각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생략 부칙 〈제11671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65조, 제6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환경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한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 질”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2560호, 2010. 12. 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36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2738호,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168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5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부칙 <제23529호, 2012. 1. 2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9조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559호, 2012. 1. 26.>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0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 제43조의2, 제46조제3항·제6항, 제59조제3항·제5항 및 제59조의2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사업의 인·허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양성기관의 업무기간에 대한 제5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본다. ②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2018년 12월 31일 2. 시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01호, 2012. 7.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155호, 2012. 10. 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가.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2019년 12월 31일 나. 그 밖의 시: 2021년 12월 31일 ③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재작성은 제34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시 작성 2.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작성일 기준으로 5년마다 다시 작성 부칙 〈제15839,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6호, 2019. 12.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7조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762호, 2013. 9.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97호, 2013. 12. 1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6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31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태계보전부담금”은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본다. 부칙 <제18910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2호, 2022. 10.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73호, 2014. 3. 24.>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의 소매점”을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339호, 2014. 4. 2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3. 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원구역”을 “공원 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지역을 포함한다)”으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	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 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448호, 2014. 7. 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⑳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 법」 제2조제1호”로 한다. ㉖부터 ㉙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713호, 2014. 11. 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한다. ㉓부터 ㉔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962호, 2024. 1.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호, 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연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부칙 〈제25837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6302호, 2015. 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⑮까지 생략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896호, 2018.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6조 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310호, 2018. 11. 2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기술능력란 다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다목 중 “기사 및 기술자는”을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급기술자”는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⑮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제29617호, 2019. 3.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사목(1)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72호, 2021. 7. 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 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 부칙 〈제32327호, 202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8조 제2항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비율 상향에 따른 적용례) 제46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1) 중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331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82호, 2023. 6.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36조제1항·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 관련)	5469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 관련)	5469
[별표 2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3 관련)	5473
[별표 2의3]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4 관련)	5474
[별표 2의4]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5474
[별표 2의5]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5474
[별표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5475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5476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	500m

비고 :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3. 3. 14.>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제20조제2항 관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개발사업의 종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마)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비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3)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3)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나. 특별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154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2)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운하 (나) 유통업무설비. 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설립. 다만, (1)부터 (3)까지 또는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에너지 개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 또는 (4)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가) 발전소 (나)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다) 765kV 이상의 옥외변전소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 (가) 발전소 (나)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다) 765kV 이상의 옥외변전소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라. 항만의 건설	(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나)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다)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다)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가) 도로의 신설 (나)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확장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국토의 설치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사. 철도(도시 철도를 포함 한 다)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아.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 또는 개간사업
자.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4)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 안에서의 시설설치 사업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차. 산지의 개발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조성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면적을 훼손하는 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의 설치사업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카. 특정 지역의 개발	(1) 가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사업 중 각각 그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타. 체육 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다)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파.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

[별표 2의2] <신설 2022. 1. 6.>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3 관련)

1. 훼손지의 생태가치

구분	평가항목
가. 일반 현황	1)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현황 2) 훼손면적, 녹지단절 등 현황
나. 식생 현황	1) 식생 훼손 정도 2)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생태계 복원 과정에서 목표 및 모범이 되는 표준생태계) 대비 현황 등
다. 물환경	1) 수질 상태 2) 개방수면 비율(특정 생물종의 서식을 위해 심은 식물 등이 수면의 상부를 가리지 않는 개방 정도) 등
라. 토양 환경	1) 유기물 함량 및 토양 산성도 2) 토양의 경도(단단한 정도) 등
마. 생태축 연결성	생태축 단절 현황 등
바. 야생생물 서식	1) 법정보호종 및 주요 종 출현 현황 2) 주요 종 분류군별 서식 조건 3)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출현 현황

2. 복원 필요성

구분	평가항목
가. 복원의 시급성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생태기능의 저하가 우려되거나 향후 복원이 어려워질 가능성
나. 복원 효과	복원사업 이후 자연생태계 서비스 기능 향상 및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

3. 사업추진 여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나. 국공유지 비율 및 사업비 조달 계획의 적정성

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등 행정절차 추진의 용이성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의3] 〈신설 2022. 1. 6.〉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4 관련)

평가대상	평가항목
1. 자연환경복원사업 진행 중 보고한 추진실적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2.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완료 후 보고한 추진실적	가.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 나. 평가 결과의 환류 정도 다. 기술 인력의 활용 정도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지원 기준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의4] 〈신설 2022. 1. 6.〉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1
 - 1) 외의 지목인 경우: 0
 - 녹지지역: 2
 - 생산관리지역: 2.5
 - 농림지역: 3
 - 보전관리지역: 3.5
 - 자연환경보전지역: 4
-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별 지역계수
 -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1등급 권역: 4
 -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2등급 권역: 3
 -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3등급 권역: 2
 - 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 5

비고

- 법 제4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와 제2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별 지역계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를 정할 때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 시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별표 2의5] <개정 2022. 1. 6.>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감면 대상 사업	감면비율 (퍼센트)
1. 자연환경복원사업	100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100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100
4.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0

[별표 3] <개정 2022. 1. 6.>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기술능력	시설	자본금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개인 : 14억원 이상 법인 : 7억원 이상

비고

1. 공통기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 및 자본금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능력
가. 위 표에 따른 기술사,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나. 위 표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중급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 위 표에서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을 말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말한다.
3. 자본금
가.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나.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을 말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별표 4] <개정 2022. 1.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500	700	1,000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마. 법 제40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1)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4호	100	150	200
		50	70	10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5479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 관련)	5480
[별표 2의2]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	5480
[별표 2의3]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	5481
[별표 3] 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 관련)	5481

[별표 1]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

유형	지정기준
1. 자연생태 우수마을	가. 총괄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 나. 지역환경 여건 (1) 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우수한 생태지역을 포함한 지역 또는 숲·습지·철새도래지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2) 경관·녹지공간 확보 : 마을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한 지역 또는 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 동·식물 서식지 등 수려한 경관을 갖춘 지역 (3) 친환경 생활양식: 취락구조·건축물 등의 주변환경과의 조화,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의 사용, 돌담·흙벽·나무 등 친환경 건축물의 사용, 무공해 농업의 사용,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여부 다. 주민활동 및 지역문화 (1) 주민활동 : 환경보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또는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판매활동 여부 (2) 보전활동관련 표창의 수상경력 여부 (3) 지역문화 : 전통 문화재의 보유 또는 환경보전 관련 지역축제의 개최 여부

유형	지정기준
2.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가. 총괄 자연형 하천조성, 녹화, 생태연못, 생태공원 등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 나. 복원효과 (1) 복원계획·목표의 달성도: 주변생태계와의 조화,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복원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2) 생태계 복원 결과의 효과 및 변화도 다. 활용 효과 운영·관리 실태 : 탐방객 수, 복원관리 프로그램의 개발·활용, 주민·환경단체의 자율참여 또는 복원 후의 관리노력

[별표 2] <개정 2019. 12. 20.>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중을 식수하며, 토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땅깎기 공사로 발생한 흙)를 사용한다.
3. 생태통로 입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부에 식생을 조성한다. 바닥은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하도록 흙이나 자갈·낙엽 등을 덮는다.
4.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5. 장차 야교목층 및 교목층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피복될 수 있도록 부엽토를 포함한 복토를 충분히 한다.
6.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야교목·관목·초목 등으로 조성한다.
7. 이동 중 안전을 위하여 생태통로 내부에는 작은 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하기에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고사목·그루터기·장작더미 등의 다양한 서식 환경과 피난처를 설치한다.
8.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되, 목재와 같이 불빛의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9. 동물이 많이 횡단하는 지점에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을 알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도록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 모습이 담겨 있는 동물출현표지판을 설치한다.
10. 생태통로 중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랑을 설치한다.
11.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12.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여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

[별표 2의2] <개정 2018. 5. 28.>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

1.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단위: 시간)

교육과정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
가. 해설안내	25	11	49	8
나. 자연환경의 이해	39	13	21	6
다.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1	7	19	2
라. 커뮤니케이션	5	4	11	8
마. 합계	80	35	100	24

2. 비고

- 가. 기본양성과정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 나. 간이양성과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연환경해설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연간 80시간 이상)인 사람 중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 1)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80시간 이상의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다. 전문과정은 기본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선택교육과정을 말한다.
- 라. 보수교육은 자연환경해설사의 기본양성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별표 2의3] 〈신설 2012.1.3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 가. 강의실
 - 나. 실습장
 - 다. 화장실, 급수시설
 - 라.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마.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인력기준
 - 가. 교육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상시근무인력 1명
 - 나. 전임강사 1명

[별표 3] 〈개정 2022. 1. 5.〉

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

업무내용	보고 횟수	보고기일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법 제17조)	수시	사유발생시
2.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법 제19조)	연 1회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3. 과태료의 부과·징수 실적(법 제66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4.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법 제46조 및 제48조)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5.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실적(법 제42조)	지정 : 연 1회 해제 : 수시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해제 : 사유발생시

제6편 자연보전

1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5508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5508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5509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5509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5510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5511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5511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5512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5512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5515	제15조(설명회의 개최) 5512	제4조(공청회의 주제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5512
		제5조(공청회의 진행) 5512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5513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5513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5514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5514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5515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5516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5516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5516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5516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5516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5518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5518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5518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5519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5519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반려 등) 5519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552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5522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5522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 .. 5522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5522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5522	
제20조(재협의) 5523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감독 등) 5523	
	제28조(재협의 대상) 5523	
제21조(변경협의) 5525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5524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5525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5527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5527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5528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5528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5529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5529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5529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5529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5531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5531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5531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5532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5533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5533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5533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5534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5534	
	제39조(설명회의 개최) 5535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5535	제11조(공청회의 진행) 5535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553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5538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5536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 5537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5537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 5537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5538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 5539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5540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5541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5544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5544 제31조(조정 요청 등) 5545 제32조(재협의) 5546 제33조(변경협의) 5547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5551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5552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5540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5541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5541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5543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5544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5545 제52조(조정 요청) 5545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5545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5546 제54조의2(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5547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5547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5545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5547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5551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5552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555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5554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5554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5554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5553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5554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5555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5555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재개의 통보) 5555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 5555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5555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5555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 5555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5555
제40조(조치명령 등) 5556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5557	
제40조의2(과징금) 5557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5558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5558
제41조(재평가) 5557		
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5558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5559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5559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5560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5560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5560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5561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5561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5563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5562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5563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5564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5564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등) 5565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5566		
제46조의2(변경협의) 5566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5566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5568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5568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5568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5568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 5569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5569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5570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 5570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 5570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 5570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5571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5572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5572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5573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5573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5573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5574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5574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5574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5574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5574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5576	
제55조(결격사유) 5576		
		제25조 삭제 5577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5577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 5577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557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6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5578 제57조(업무의 폐업·휴업) 5579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5579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업무 계속) 5580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5580 제60조(보고·조사) 5581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5581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5583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5. 29.〉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5583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5584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5586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5587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5589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11. 29.〉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5583 제69조의3(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5584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5587 제71조(응시자격) 5588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5588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5589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5589	제26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5578 제27조(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등) 5579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5580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5581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5582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5584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5584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5587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5587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5589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5590 제34조 삭제 559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5590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5590	제75조 삭제 5590	제35조 삭제 5590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5590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5591
제8장 보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5591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5592 제67조(청문) 5592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5592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5593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5593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5594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594	제8장 보칙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5591 제77조(위임 및 위탁) 5594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5599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5592 제38조(규제의 재검토) 5599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5600 제74조(벌칙) 5600 제75조(양벌규정) 5602 제76조(과태료) 5602 부칙 5605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5602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04 부칙 5605	부칙 5605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 1993. 6.11 법률 제4567호 전부개정 2011. 7.21 법률 제10892호 2011. 8. 4 법률 제11019호(산업단지 안·하가 질자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2013. 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 1.20 법률 제13040호 2015. 7.24 법률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6. 1.27 법률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 5.29 법률 제14232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6호 2018. 6.12 법률 제15662호 2019.11.26 법률 제16617호 2021. 8.17 법률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4. 2.20 법률 제20334호	제정 1993.12.11 대통령령 제14018호 전부개정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4. 4.29 대통령령 제25339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 7. 7 대통령령 제2544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3호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3.30 대통령령 제26170호 2015. 7.24 대통령령 제26438호 (역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7호 2016. 1.22 대통령령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 3.25 대통령령 제27057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6.28 대통령령 제2728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12.20 대통령령 제27675호 (실내고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3.29 대통령령 제27972호 (공형시설법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 2.27 대통령령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1호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9. 3.12 대통령령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4.23 대통령령 제29707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2호 2020. 2.25 대통령령 제30482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12 대통령령 제30673호 2020. 5.26 대통령령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 7.28 대통령령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제정 1993.12.11 총리령 제442호 전부개정 2012. 7.20 환경부령 제467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 2 환경부령 제580호 2014.12.16 환경부령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6. 1.14 환경부령 제636호 2016.11.30 환경부령 제680호 2017. 5.30 환경부령 제700호 2018.11.29 환경부령 제780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30 환경부령 제838호 2020. 5.25 환경부령 제863호 2021. 9.16 환경부령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2. 4.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12.20 환경부령 제1011호 2023. 4.17 환경부령 제10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2017. 11. 28., 2019. 11. 26.〉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7호 (환안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대통령령 제3116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에 관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7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1. 6. 22 대통령령 제31803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2021. 8. 10 대통령령 제31940호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1호 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7호 (담간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대통령령 제33101호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 3. 31 대통령령 제33369호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10.18 대통령령 제33824호 (공형시설법 시행령) 2023.12.19 대통령령 제34003호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아.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지침, 작성기준 및 점검목록 등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4. 2. 20.>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험이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27., 2019. 12. 31., 2023. 3. 31., 2023. 12. 19.>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1., 2015. 12. 30., 2016. 11. 29.>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나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계획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계획등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계획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31.>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31.> 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2.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 3. 31.> ③ 제1항제2호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 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 3. 31.>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3. 31.>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31.>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31.>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⑦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3. 3. 3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⑧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3. 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4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3. 31.> [본조신설 2018. 11. 27.]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족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1. 29.]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30.]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11., 2018. 11. 27.>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概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1. 22.>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계획: 별표 1 제1호나목 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2018. 11. 27.>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1. 27.> 1. 협의기관의 장: 20부 2. 승인기관의 장: 5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부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5부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1.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 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 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 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 지 못한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 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 2021. 8. 1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립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시행일: 2025. 2. 21.] 제13조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립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립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립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립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 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1. 27., 2023. 12. 19.> 1. 별표 2 제2호가목1) 2.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3. 별표 2 제2호마목2) 4. 별표 2 제2호사목2)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5. 29.>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5.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9.] [중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이하 “한국환	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반려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12., 2023. 3. 3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 2021. 8. 1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2023. 3.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 [제목개정 2016. 11. 29.]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내용·시행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계획을 수립·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9.>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전문개정 2019. 12. 31.]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9.>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2. 2.] [제7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재협의)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감독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2016. 11. 29., 2023. 12. 19.>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3. 31., 2023. 12. 19.> 1.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말한다)의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법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이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31.> 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④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내용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2. 21.] 제23조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3. 토지이용 상황 4. 사업의 성격 5. 환경 특성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 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5. 29.>	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3. 승인기관의 장 4. 협의기관의 장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10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5부 3. 승인기관의 장: 5부 4. 협의기관의 장: 20부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부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들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4. 25.>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산설 2023. 3. 31.)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31.)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8. 10.>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7.> 1.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12.>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 1. 환경영향평가서가 제46조에 따른 작성 내용·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⑥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 [제목개정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 2021. 8. 17.> 1. 한국환경연구원 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항만의 건설사업 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3. 3. 2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하계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 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 11. 26.> ⑦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조정이 가능한 경우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전문개정 2019. 12. 3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1.>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3. 31.> 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2023. 3. 31.> 1. 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제54조의2(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2.>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2. 30., 2018. 1. 16., 2019. 12. 31., 2022. 12. 20., 2023. 3. 31., 2023. 12. 19.>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설 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선형사업,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건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과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시설 규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규모를 말한다)의 증가로 증가된 사업규모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3. 삭제 <2014. 11. 11.>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초과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 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산정한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량(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퍼센트 미만의 오염물질이 여러 차례 증가되어 배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 증가된 배출량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8.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1.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9.>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1. 14., 2018. 11. 29., 2019. 12. 20.>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한다. <개정 2017. 11. 28.>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6. 11.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0.>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따른다. <개정 2019. 12. 30.>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건설컨설팅회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8. 6. 1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한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7.] [중전 제55조의2는 제55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7.>]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2020. 5. 12., 2023. 3. 31.>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 1. 14.>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 14., 2018. 11. 29.> 1. 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 1부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2. 2.>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본조신설 2015. 3. 30.] [제55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7.>]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본조신설 2018. 11. 27.]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5.> [제목개정 2020. 5. 25.]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제40조의2(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1. 8. 17.>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text{과징금} = \text{총 공사비} \times 3/100$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3. 31.>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1. 29.]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시행일: 2025. 2. 21.] 제42조 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2. 21.] 제43조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10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4. 2. 20.>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시행일: 2025. 2. 21.] 제44조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1.> 1.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의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3. 공휴일 및 토요일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등) ①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12. 30.,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제목개정 2016. 5. 29.]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19.>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일률적으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7. 11. 28.]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통보, 자료제출·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들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들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들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5. 26., 2023. 3. 31.>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2.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연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 받은 자 [본조신설 2015. 12. 30.]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14.]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환경영향평가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5. 12. 30.]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6. 1. 14. >]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나.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다.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라. 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마.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바.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가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6조(환경영향평가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제25조 [제22조의2로 이동 <2014. 12. 2.>]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9., 2022. 4. 25.>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사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의 조사·측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성·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8. 11. 29.]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6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5.>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30.> [본조신설 2018. 11. 29.]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제26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사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57조(업무의 폐업·휴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6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 제27조(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환경영향평가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사업자에게 한 제58조에 따른 행정		제28조(환경영향평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60조(보고·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제정 2016. 5. 29.)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30.]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7. 5. 30., 2018. 11. 29., 2019. 12. 30.>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5. 29.〉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 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영향평가사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장(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11. 29.〉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경력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 2019. 12. 30.〉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4.〉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	제69조의3(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제35조에서 이동 <2017. 5. 30.>]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5.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 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환경영향평가사들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들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들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		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계약 용역을 발주한 자,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삭제 <2016. 11. 29.>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 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삭제 <2016. 5. 29.> 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삭제 <2016. 5. 29.>	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 11. 29.>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 <2016. 11. 2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4., 2017. 5. 30.>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6. 5. 29.]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2.]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9. 11. 26.]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제75조 삭제 (2016. 11. 29.)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5. 30.> 제34조 삭제 (2016. 1. 14.) 제35조 [제30조의2로 이동 (2017. 5. 30.)]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8장 보칙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6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1. 8. 17.>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작성·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 5. 29.]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 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④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8. 17.>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증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증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증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취소 또는 인정정지 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완·반려 및 재검토 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통보 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조정·반려 및 재검토 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하. 법 제30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서.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조정·반려 및 재검토 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 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도.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5. 12.>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휴업 신고의 접수 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격력증의 발급 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3. 5. 23.> 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 11. 29.>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는 것 나. 교육·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다. 삭제 <2021.1.5>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014년 1월 1일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4. 1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2.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3. 3. 7.> [본조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14. 4. 3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4의3.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거부한 자 6의2.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한 자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또는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 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 2018. 6. 12., 2019. 11. 26.>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7. 삭제 <2016. 5. 29.>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5. 29., 2017. 11. 28.> 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6. 11. 29.>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법률 제 9037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마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표 제2호카목3), 같은 호 타목, 같은 호 파목9)·10)·23), 별표 3 제15호나목2) 및 별표 4 비고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사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제외한다)은 2015년 7월 2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6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부칙 〈제4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3.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 4.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평가 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의 내용 통보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의 내용 통보 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협의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협의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 중인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과 협의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②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 <table><tr><td>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td><td>「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td></tr><tr><td>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 종합계획</td><td>「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tr><td>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 계획</td><td>「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table> ③ 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보고,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 종합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 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 2014.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간선편지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 2016. 1. 14.〉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 종합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 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제680호, 2016.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나목·다목·바목, 같은 표 제12호라목, 같은 표 제15호마목 및 같은 표 제16호나목·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0호, 2017. 5. 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별표 3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 2018. 11. 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 201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 2020. 5. 25.〉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호, 2022.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제3호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⑲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⑭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⑯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⑮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⑯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⑳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㉑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㉙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㉚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한다. ㉛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㉞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㉟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협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55조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㉚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㉛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②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	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⑧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㉞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㉟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2), 같은 호 아목1)·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 파목11)·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㉖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 가서 ㉗ 마린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 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로 한다. 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 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 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 3항”으로 한다. ㉙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25339호, 2014. 4. 2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tr><td>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 주택지구의 지정</td><td>「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table> 별표 3 제1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 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 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5448호, 2014. 7. 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 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 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19호, 2011. 8.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

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 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 계획	「도로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5713호, 201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제16호가목, 별표 4 비고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별표 5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부칙 〈제25942호, 2014. 12. 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5)부터 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table border="1"><tr><td>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 개발 계획</td><td>「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tr><td>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 개발사업구역의 지정</td><td>「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table>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 개발 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 개발 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 〈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별표 3 제2호바목 단서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중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tr><td>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td><td>「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td></tr><tr><td>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중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td><td>「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td></tr></table> 제4조 생략 부칙 〈제26170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중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중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13040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사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이 취소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제1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26호, 2015. 7.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라목 및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438호, 2015. 7.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6807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지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 생략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⑱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⑳ 생략 부칙 〈제14232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64조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및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3항 후단, 같은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가목·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 같은 표 제11호바목·제12호나목·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다목, 별표 4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22호, 2016. 1.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에 게 협의의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1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환경영향 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거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거 서”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 〈제27057호, 2016. 3. 2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tr><td>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 계획</td><td>「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table> 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tr><td>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 지 조성계획</td><td>「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때</td></tr></table> 부 칙 〈제27285호, 2016. 6.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 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 지 조성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때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 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 지 조성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요청”으로 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6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의 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견의 수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2763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8조, 제63조제3항,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제78조, 제79조제3호 및 별표 10 제2호하목·거목·너목의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2(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제77조제1항제14호의2,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79조제1호의2·제1호의3, 별표 5 제3호,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10 제2호러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662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7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 제55조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의의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의 결정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생략 여부의 결정 주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약식질차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는 제69조의3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별표 2 제1호차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32호, 2021. 8. 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각각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334호, 2024. 2.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7), 같은 호 라목2)·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 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 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2호다목 및 같은 표 제16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 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 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5 제2호가목2)나)의 개정규정 에 따른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 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27675호, 2016. 12.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㉞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㉞ 생략 부칙 〈제27972호, 2017. 3. 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table border="1"> <tr> <td>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td><td>「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td><td>「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 </table>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tr> <td>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td><td> 「공항시설법」 제2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td><td>「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td></tr> </table> 별표 3 제13호자목을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3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및 ㉮ 생략 부 칙 (제28628호,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28686호, 2018. 2.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8948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도교통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table><tr><td>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td><td>「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td></tr></table>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tr><td>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td><td>「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td></tr></table> 부칙 〈제29311호,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람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약식평가서 의견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약식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제29617호, 2019. 3.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나)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제11호 단서 및 같은 비고란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29707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제30292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부장관의 의견 청취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30482호, 2020. 2. 25.〉 (생물자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 칙 〈제30673호, 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사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30704호, 2020. 5. 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30876호, 2020. 7. 28.〉 (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및 같은 호 다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30877호, 2020. 7. 2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tr> <td>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제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td> <td>「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별표 3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항만법」 제6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1169호, 2020. 11.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제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제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제31379호, 2021. 1. 5.〉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76호, 2021. 3. 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793호, 2021. 6.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1803호, 2021. 6. 22.〉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서 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섬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940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탐간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⑦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tr> <td>바. 수자원의 개발</td><td>「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td><td>「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 </table> 별표 3 제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2868호, 2022. 8. 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01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3), 같은 호 아목2), 같은 호 차목, 같은 표 제2호나목 11) 및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5호가	바.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바.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협의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21호, 2023. 3. 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69호, 2023.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9호, 2023. 5.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부칙 <제33824호, 2023. 10. 18.>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4003호, 2023.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와 목34)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50호, 2024. 6.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7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라목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5645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5646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5655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5656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5669
[별표 4의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3제3항 관련)	5673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5673
[별표 5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5681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5683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5683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5684
[별표 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5684
[별표 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5685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5685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나.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2. 환경영향평가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지하)

2) 수리·수문

3) 해양환경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2) 소음·진동

3) 위락·경관

4) 위생·공중보건

5) 전파장애

6) 일조장애

바.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 1) 사업개요
- 2) 지역개황
- 3) 자연생태환경
- 4) 생활환경
- 5) 사회·경제환경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2) 대기질, 악취
-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6) 경관
- 7) 전파장해, 일조장해
- 8) 인구, 주거, 산업

[별표 2] <개정 2023. 12. 19.>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항만의 건설·개발	1)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라. 수자원의 개발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2)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관역 물환경관리계획 3)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4)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 관리위원회와 협의하는 때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하수도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할 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관광단지의 개발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5)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6)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해당 계획의 확정 전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바. 산지의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되는 전국임도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 특정지역의 개발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기반 정비계획	계획의 확정 전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아.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때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자. 에너지 개발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차. 삭제 <2023. 12. 19.>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계획의 확정 전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 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삭제 <2016. 11. 29.>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라 고시하기 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 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항만의 건설	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 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어촌·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4) 삭제 <2016. 11. 29.>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삭제 <2016. 11. 29.>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도로의 건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구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바.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 철도의 건설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2) 삭제 <2015.12.30.>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4) 「자연공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의 결정 5)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6)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자연공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타. 산지의개발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계획을 수립(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파. 특정지역의 개발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계획의 확정 전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학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8) 삭제 <2022. 12. 20.> 9)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계획 11) 삭제 <2016. 11. 29.>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15) 삭제 <2014.12.30.> 16) 삭제 <2014.12.30.>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전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7) 삭제 (2014.12.30.) 18) 삭제 (2014.12.30.) 19) 삭제 (2014.12.30.) 20) 삭제 (2014.12.30.) 21) 삭제 (2014.12.30.) 22) 삭제 (2014.12.30.)	
	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특화발전특구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는 때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6) 삭제 (2016. 11. 29.)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 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도시 개발계획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3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하. 체육시설의 설치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삭제 (2016. 11. 29.)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 2) 삭제 <2022. 12. 20.> 3) 삭제 <2022. 12. 20.> 4)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5) 삭제 <2022. 12. 2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너.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더. 삭제 <2016. 11. 29.>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지 않거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을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바. 위 표 제2호파목23)에 따른 특구계획으로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3)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물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삭제 <2016. 11. 29.>

[별표 2의2] <개정 2023. 12. 19.>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삭제 <2022. 12. 20.>		
나.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다. 수자원의 개발	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라. 관광단지의 개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별표 3] <개정 2024. 6.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경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전
	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중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 시장·군수등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2) 시장·군수등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灰) 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장(貯炭場)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시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태양력·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10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바.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열발생설비 중 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승인 전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 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	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왕복 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6.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7. 철도(도시 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식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식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건설촉진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행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시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2)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용면적의 합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나. 「지역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부칙	「지역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지역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 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자. 삭제 <2017. 3. 29.> 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 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가)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30\text{만 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5\text{만 제곱미터}}$ 나)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용적}}{330\text{만 제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용적}}{25\text{만 제제곱미터}}$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4)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라목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해군기지의 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2)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훼손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2) 광물 채굴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비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러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 주택지 조성사업: 위 표 제1호가목
 -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위 표 제4호나목
 - 도로건설사업: 위 표 제5호
6. 위 표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위 표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5호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8. 위 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개정 2023. 12. 1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경관천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4. 「산지관리법」 적용 지역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5. 「자연공원법」 적용 지역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6. 「습지보전법」 적용 지역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 구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8. 「초지법」 적용지역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9.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승인등 전

비고

1. 삭제 (2014.11.11.)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사업
 -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마.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 2)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시설
-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옥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에서 나지(裸地)로 분류된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약적장, 적치장 등 창고 설치사업
- 2)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 3) 주차시설 설치사업
- 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토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및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3)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 4)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위 표 제1호(가목을 제외한다)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위 표 제1호의 지역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지상충전선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협의한 대상지역 내에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안의 지역·지구·구역·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직전의 면적을 말한다)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한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별표 4의2] <신설 2015.12.30.>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제67조의3제3항 관련)

평가항목	
1. 참여기술자 능력	가. 경력 나. 실적 다. 교육훈련 라. 그 밖의 추가 항목
2. 업체 능력	가. 실적 나. 신용도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3. 이적계수	최근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성실·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 평가방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21. 8. 10.>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제6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마. 동일인이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각각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 인원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총괄	1명 이상	1) 환경영향평가사 2)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구 분	필요 인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립연구소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명 이상	1) 환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환경 분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립연구소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구 분	필요 인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자연 생태 환경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 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소지자 2)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또는 생물분류(동물, 식물)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또는 생물분류(동물, 식물)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구 분	필요 인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토지 환경	2명 이상	1)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토목 또는 응용지질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토양환경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토목 분야(토목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농림토양평가 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생활 환경 · 기타	1명 이상	1) 환경 분야,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예보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 조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구 분	필요 인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명 이상	1) 환경 분야, 조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환경 분야, 조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목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재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구 분	필요 인원	분 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책임 조사원급	2명 이상	육상식물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임업 분야(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농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육상동물	1)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생물분류(동물), 자연생태복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구 분	필요 인원	분 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원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육수생물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전문 조사원급	4명 이상	-	1) 임업 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	1) 관련 전공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구 분	필요 인원	분 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2) 임업 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일반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2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4)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 심화합수를 이수한 후 2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공동	디지털카메라	6대
	GPS	2대
	해부현미경	2대
	쌍안경	2대
	줄자(5m, 50m)	1세트
	표본실	1실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부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루페	1개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목질화된 줄기의 일부를 채취할 때 쓰는 송곳 같은 도구)	1대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포획용 트랩(샤먼트랩)	여러 개
조류	망원렌즈(500mm이상)	1대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계수기	1개
양서·파충류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뜰채 등)	1세트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1세트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모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	1세트
부착조류 및 동식물 플랑크톤	채집장비(술,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siphon 시스템	1대

비고

-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등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등의 작성에 관련된 영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작성·검토·협의 수행만 그 경력을 인정하며, 국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촉된 자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실태조사원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그 경력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업무
 - 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자연생태환경 조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무는 제3호를 준용한다.
- "기술자격의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말한다.
- 구분별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는 필요인원의 1/2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생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 관련 전공은 이수와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인원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총괄	2022. 7. 1. 부터	1명 이상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022. 6. 30. 까지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 2) 기사: 환경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 한다)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자연 생태 환경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 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구분	필요인원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토지 환경	1명 이상	고급 평가자 이상	1) 기사: 환경분야(토양환경 중 목만 해당한다),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중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토목, 응용 지질 중목만 해당한다) 2) 산업기사: 환경분야(농림토 양평가관리 중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토목 중목만 해당한다)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생활 환경 · 기타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 화공분야 (화공 중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분야(기상예보 중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 조경분야, 화공분야(화공 중목만 해당한다), 도시·교통분야(도시 계획 중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분야(기상 중목만 해당한다) 3) 산업기사 : 환경분야, 조경 분야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2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1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목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인원	분야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책임 조사 원급	2명 이상	육상 식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중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중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중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식물보호 중목만 해당한다)	농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육상 동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중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동물), 자연생태복원 중목만 해당한다)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구분	필요인원	분야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육수 생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전문 조사 원급	2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1)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2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2) 산업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공동	GPS	2대
	해부현미경	2대
	표본실	1실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뿌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루페	1개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1대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포획용 트랩(사면트랩)	여러 개
조류	망원렌즈(500mm이상)	1대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계수기	1개
양서·파충류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들채 등)	1세트
	포획용 장비 (들채, 뱀집게 등)	1세트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	1세트
부착조류 및 동식물 플랑크톤	채집장비(술,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siphon 시스템	1대

비고

-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목1) 및 나목1) 표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로 하며, 같은 표의 학력·경력 관련 전공은 각각 이수와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4. 별표 5의2의 기술등급별 자격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을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제1종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의 수행 경력
- 나.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촉된 사람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경력
- 1)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 3)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업무
 - 4)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5. 같은 자격의 기술사 또는 기사는 분야별 필요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6. 제2종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생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개정 2023. 12. 19.>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기술등급\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특급 평가자	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고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기술등급 \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중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초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의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과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과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위 표에서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3] <신설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1. 종류

가.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나. 보수(補修)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시기 및 시간

구분	대상	시기	시간
가. 최초교육	1) 환경영향평가기사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기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70시간
	2) 환경영향평가기사 아닌 사람		40시간
나. 보수교육	환경영향평가기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20시간

비고: 환경영향평가기업 기술인력의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기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환경영향평가기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라 교육과정 및 내용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론·현장학습 및 실습 등을 포함한다.

나. 방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방법 및 교육·훈련 시간의 인정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별표 6] <개정 2022. 8. 9.>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의2.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제1차시험 (필기시험)	환경정책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환경영향평가실무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제2차시험 (면접시험)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별표 8] <개정 2016. 11. 29.>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실무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기술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기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별표 9] <개정 2021. 8. 10.>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제77조제1항18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3.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가.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 나. 별표 2 제2호더목 및 별표 3 제17호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다. 별표 3 제9호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라.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하는 송전선로 관련 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비고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관할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 <개정 2020. 5.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	1,000	1,500	2,000
나.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1호	200	300	500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2호	200	300	500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1호	500	700	1,000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3호	200	300	500
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2호	500	700	1,000
사.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4호	200	300	500
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5호	20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1호	2,000	3,500	5,000
차.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2호	2,000	3,500	5,000
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3호	2,000	3,500	5,000
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6호	200	300	500
파.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2호의2	500	700	1,000
하.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3호	500	700	1,000
거.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4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8호	200	300	500
더. 법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8호의2	200	300	500
러.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9호	200	300	500
머.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5항 제1호	100	200	300
버. 법 제6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76조제5항 제2호	100	200	300
서. 법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5항 제3호	100	200	300
어.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5호	500	700	1,00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5691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5694
[별표 3]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5695
[별표 3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5697
[별표 4]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5698

[별표 1] 〈개정 2022. 12. 20.〉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제19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	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다.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라.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영 별표 3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바. 영 별표 3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사. 영 별표 3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아. 영 별표 3 제1호차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자. 영 별표 3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차. 영 별표 3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카. 영 별표 3 제1호파목의 역세권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타. 영 별표 3 제1호다목1)의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 같은 목 3)의 주차장시설 및 같은 목 4)의 시장 하. 영 별표 3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대상사업		조사기간
2.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영 별표 3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다. 영 별표 3 제3호다목4)·라목4)의 회(灰)처리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라. 영 별표 3 제3호다목5)·라목5)의 저탄장(貯炭場)	
	마. 영 별표 3 제3호바목의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의 설치공사	
	바. 영 별표 3 제3호사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사. 영 별표 3 제3호아목의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아. 영 별표 3 제3호다목1)·라목1)의 발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자. 영 별표 3 제3호마목의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차. 영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카. 영 별표 3 제3호다목3)·라목3)의 옥외변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대상사업		조사기간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영 별표 3 제4호가목1)·나목1)·라목1)·바목1)의 외곽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4호가목2)·나목2)·라목2)·마목2)·바목2)의 계류시설	
	다.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라. 영 별표 3 제4호다목의 준설사업	
	마. 영 별표 3 제4호마목의 항만재개발사업	
	바.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5. 도로의 건설사업	영 별표 3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영 별표 3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7. 철도의 건설 사업	영 별표 3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8. 공항의 건설사업	가. 영 별표 3 제8호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8호2)의 활주로 건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다. 영 별표 3 제8호3)의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영 별표 3 제9호의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대상사업		조사기간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영 별표 3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1호가목의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영 별표 3 제11호라목의 공원사업 마. 영 별표 3 제11호마목의 도시·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바. 영 별표 3 제11호바목의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2호가목1)의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 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나. 영 별표 3 제12호가목2)의 초지조성, 같은 목 3)의 산지 전용허가	
	다. 영 별표 3 제12호나목의 임도설치사업	
	라. 영 별표 3 제12호다목의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3호가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 기간을 준용한다.
	나. 영 별표 3 제13호나목의 지역개발사업 다. 영 별표 3 제1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라. 영 별표 3 제13호바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마. 영 별표 3 제13호사목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바. 영 별표 3 제13호아목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사. 영 별표 3 제13호차목의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대상사업		조사기간
	아. 영 별표 3 제13호자목의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4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공사 나. 영 별표 3 제14호마목의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4호나목의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 라. 영 별표 3 제14호다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마. 영 별표 3 제14호라목의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5. 폐기물처리 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5호가목1) 및 2)의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 나. 영 별표 3 제15호가목3)의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 다. 영 별표 3 제15호가목4)의 시멘트 소성로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영 별표 3 제15호나목1)의 분뇨처리시설 마. 영 별표 3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바. 영 별표 3 제15호나목3)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6호가목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나. 영 별표 3 제16호나목1)·다목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6호나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라. 영 별표 3 제16호다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마. 영 별표 3 제16호라목의 해군기지내 시행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	가. 영 별표 3 제17호가목의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나. 영 별표 3 제17호나목의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 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대상사업		조사기간
	다. 영 별표 3 제17호다목의 채석단지의 지정 라. 영 별표 3 제17호라목의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마. 영 별표 3 제17호바목의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바. 영 별표 3 제17호사목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 영 별표 3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비고

-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할 경우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 영 별표 3 비교10에 따른 복합사업 중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은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적용한다.
- 조사항목 중 보존·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동식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항목별 조사주기는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분기, 반기, 연)

[별표 2]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 나. 경사분석, 동·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벌목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 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환경보전을 위해 관계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누락한 경우
- 바. 영 제21조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 아.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수·정수장, 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 자.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하수종말·분뇨·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누락한 경우
- 차.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차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1) 영업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 2)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4호의2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5호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기술인력 등) 없는 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바. 법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사.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아.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를 재대행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자.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차.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4호	경고	등록 취소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1호	인정 취소			
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 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2호	인정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 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3호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4호	경고	인정 정지 1개월	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마.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격을 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5호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바.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6호	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7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인정 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8호	인정정지(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 4]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4.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5.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나. 1회 적발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6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7.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특별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나. 2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5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6개월

제7편 자원순환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01
0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5811
0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5859
0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5877
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973
06.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6157
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169
08.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6269
0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6681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6735

제7편 자원순환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5710 제2조(정의) 571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715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5715 제5조(발주자의 의무) 5716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5716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5716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개정 2009. 6. 9.〉 제8조 삭제 5716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5717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5717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5718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 6. 9.〉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57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710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5710 제3조(방치폐기물) 5711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5711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5711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5712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5713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5715 제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5715 제2장 삭제 〈2020. 3. 24.〉 제7조 삭제 5716 제8조 삭제 5716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10. 5. 18.〉	제1조(목적) 5710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5710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5716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5718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57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5719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5719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5719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5719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5720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5721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5721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5723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5723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5724 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5725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5725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5725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5725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5725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5726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5726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5726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5727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5728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5730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5727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 5728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5730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 6. 9.) 제20조 삭제 5730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5730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10. 5. 18.)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5732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5733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5733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5733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5735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5737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573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5738 제24조(결격사유) 5738 제25조(허가취소 등) 5739		제13조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5737 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 5737
제2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5742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 5743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5742 제16조 삭제 5743	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5741 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5742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5747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5747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5743 제17조 삭제 5745 제18조(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5745 제19조 삭제 5747 제2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5747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 5749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5749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5750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5751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5747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5748
제34조(보고, 검사 등) 5751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5749 제24조(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5750 제25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5751 제26조(휴업·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5751 제27조(보고서 제출) 5751 제28조(검사 등) 575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5754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5754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5754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5754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5755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5756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5757 제40조 삭제 5757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 6. 9.)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5757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5758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5759 제44조 삭제 5760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5760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5760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5756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5757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5758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 5758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5759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5759	제29조(시험·분석기관) 5753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575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장 벌칙 〈개정 2009. 6. 9.〉 제62조(벌칙) 5769 제63조(벌칙) 5769 제64조(벌칙) 5770 제65조(양벌규정) 5771 제66조(과태료) 5771 부칙 5774	제9장 벌칙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5771 부칙 5774	제33조 삭제 5769 부칙 577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3.12.31 법률 제7043호 개정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12.29 법률 제7782호 2006.12.28 법률 제8115호 2007. 4.11 법률 제8369호 (소음·진동규제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4.27 법률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9. 6. 9 법률 제9769호 2009. 6. 9 법률 제9770호 (소음·진동관리법) 2010. 3.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5.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3. 6.12 법률 제11879호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와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3.18 법률 제12452호 2015.12. 1 법률 제13527호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 4.18 법률 제14781호 2019. 4.16 법률 제16317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재정·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령을 위한 법률) 2021. 3.16 법률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2023. 3.28 법률 제19307호 2023. 9.14 법률 제19718호	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18666호 개정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8호 2007. 6.29 대통령령 제20136호 (농지법 시행령)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7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4호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5.18 대통령령 제22164호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5호 2012. 7. 4 대통령령 제23933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6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 7.16 대통령령 제25478호 (하수도법 시행령) 2016. 5.31 대통령령 제27199호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0.17 대통령령 제28367호 2018. 1.16 대통령령 제2856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3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3.24 대통령령 제30542호 2021. 4. 6 대통령령 제31606호 2021. 9.14 대통령령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2005. 1.19 환경부령 제169호 개정 2005. 7.18 환경부령 제178호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7. 1. 9 환경부령 제226호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7.12.31 환경부령 제2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07.12.31 환경부령 제271호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환경부령 제313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0. 6. 9 환경부령 제372호 2010. 6.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1. 2.25 환경부령 제400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13 환경부령 제529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환경부령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4.12.29 환경부령 제584호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6. 2 환경부령 제656호 2017.10.19 환경부령 제717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4.17 환경부령 제861호 2021. 9.16 환경부령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2.11.29 환경부령 제1005호 2023. 4.17 환경부령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2., 2015. 12. 1., 2019. 4. 16., 2021. 3. 16.>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3.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급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5. 18.>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1., 2019. 7. 9.>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10. 5. 18.]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7. 10. 17., 2021. 4. 6.>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나를 법 제13조제1항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2. 11., 2019. 7. 2.〉 〔전문개정 2010. 5. 18.〕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 5., 2007. 9. 27., 2007. 11. 30., 2007. 12. 28., 2008. 12. 24., 2010. 5. 18., 2011. 11. 16., 2013. 12. 11., 2014. 7. 14., 2014. 7. 16., 2016. 5. 31., 2017. 1. 17., 2018. 1. 16., 2019. 12. 31.〉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3. 12. 1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12.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0. 5. 18.]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18., 2016. 5. 31.> 1. 파쇄·분쇄시설(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0. 5. 18.] 제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09. 6. 9.]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09. 6. 9.]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개정 2009. 6. 9.> 제8조 삭제 <2019. 4. 16.>	제2장 삭제 <2020. 3. 24.> 제7조 삭제 <2020. 3. 24.> 제8조 삭제 <2020. 3. 24.>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2. 최종처리: 매립 [본조신설 2010. 6.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 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 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수요에 관한 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해당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9. 4. 16.>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2., 2019. 4.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 6. 9.>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10. 5. 18.>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제1항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9. 4. 16.>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전문개정 2009. 6. 9.]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5., 2009. 6. 30., 2010. 5. 18., 2013. 12. 11., 2017. 10. 17.> 1. 건설폐기물은 페콘크리트·페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본조신설 2013. 12.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7. 4. 18.)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① 삭제 (2013. 12. 13.)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정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⑤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12. 13.]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본조신설 2013. 12. 13.]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13. 12. 11.>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1. 9., 2008. 12. 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5.>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9., 2016. 6. 2., 2019. 12. 20.>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라 한다)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해당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7.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9., 2016. 6. 2., 2017. 10. 19.>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5. 용역이행능력평가액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7.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5. 31.> [전문개정 2010. 5. 18.]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제목개정 2010. 5. 18.]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②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31.> ⑤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0. 6. 9.> 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영 별표 3 제2호 마목2)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6. 6. 2.]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②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제목개정 2010. 6. 9.]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9.>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6. 12.>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자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9. 12. 20.>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7. 10. 19., 2019. 12. 20.>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에 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9.]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09. 6. 9.]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1. 3. 16.>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09. 6. 9.]		1.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상·하수도관의 파열·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7.>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 6. 9.〉 제20조 삭제 〈2009. 6. 9.〉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10. 5. 18.〉	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9.]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6.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 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 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 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 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 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 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 6. 12., 2015. 12. 1.> ⑥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⑦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2019. 4. 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전문개정 2009. 6. 9.]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2013. 12. 11., 2016. 5. 31., 2017. 10. 17., 2021. 4. 6.> 1. 휴업·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7.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제목개정 2010. 5. 18.]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5. 18., 2013. 12. 11., 2016. 5. 31., 2020. 3. 24.>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10. 6. 9.>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2.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삭제 <2013. 12. 13.>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6. 6. 2.>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 [재무개정 2010. 5. 18.]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3. 12. 13.> ④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 12. 13.>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흡납률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흡납률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추 것. 다만 라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다. 폐기물의 흡납률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라. 바닥포장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 12.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6. 6. 2.>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 삭제 <2016. 6. 2.> ⑧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제목개정 2010. 6. 9.]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10. 19.> 1.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시설의 신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허용보관량의 변경 8.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6. 6. 2., 2017. 10. 19.>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서의 첨부 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 ④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 ⑤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09. 6. 9.]		여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3.> ⑥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 [전문개정 2010. 6. 9.]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 1. 상호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4. 17.>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 6. 9.] 제13조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0. 6. 9.] 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①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 6. 9.]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범인으로서는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2019. 4. 16., 2023. 3. 28.>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15.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또는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1.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을 파악할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12.>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6. 12., 2019. 4. 16., 2020. 5. 26.> [전문개정 2009. 6. 9.] 제2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3. 3. 28.> 1.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 9. 27.>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9. 27.>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0. 6. 9.] 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12. 13.> [본조신설 2010. 6.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2023. 3. 28.> ④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로서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감응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산설 2023. 3. 28.> [전문개정 2009. 6. 9.]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5. 18., 2023. 9. 27.> ④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8., 2023. 9. 27.> 제16조 삭제 <2010. 5. 18.>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 내역서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3.>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또는 신고 사유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6. 12.>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9. 12. 20.>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3. 12. 13., 2019. 12. 20.> 1.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목개정 2010. 6. 9., 2013. 12. 13.] 제17조 삭제 <2007. 1. 9.> 제18조(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 6. 9.]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설 2023. 3. 28.>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산설 2023. 3. 28.> [전문개정 2009. 6. 9.]		2013. 12. 13. >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전문개정 2010. 6.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09. 6. 9.]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12. 13.] 제19조 삭제 <2010. 6. 9.> 제2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제목개정 2010. 6. 9.]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不透水性)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吐出) 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6.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발생되는 분진의 확산을 방지 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 4.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목개정 2010. 6. 9.]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③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했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②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2023. 3. 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3. 삭제 (2009. 6. 9.)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제목개정 2010. 6. 9.]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중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5. 12. 1., 2016. 12.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전문개정 2009. 6. 9.]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 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12.〉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7. 10. 19., 2019. 12. 20.〉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 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제24조(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9.〉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전문개정 2009. 6. 9.]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4조(보고,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 ②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1. 9., 2010. 6. 9.> [제목개정 2010. 6. 9.] 제25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휴업·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9.> 제27조(보고서 제출)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9., 2020. 4. 17.>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9.> 1.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보고서 ③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9.>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2010. 6. 9.> ⑤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9.> 제28조(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25., 2007. 12. 31., 2010. 6. 30.,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분석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2., 2008. 3. 3., 2010. 6. 9., 2013. 3. 23.>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2010. 6. 9.> 6.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12.>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본조신설 2013. 6. 12.]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3. 3. 28.> -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가 되고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16.>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7. 10. 17.>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전문개정 2010. 5. 18.]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제40조 삭제 <2009. 6. 9.>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 6. 9.>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8.>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②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23. 3. 28.>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8.>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8.>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①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④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6. 9.]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4. 6.>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전문개정 2013. 12. 11.]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5. 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44조 삭제 <2009. 6. 9.>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5. 12. 1., 2016. 12. 27.>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분담금 납부, 책임준비금 및 용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24조(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어음만 해당한다)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자의 알선 6. 건설폐기물 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49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 5. 18.> 1. 인·허가 보증 2. 시설·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1.)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영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용자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보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 상황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3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4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공제조합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5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8장 보칙 〈개정 2009. 6. 9.〉 제56조의2(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의2(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 4. 17.〉 ③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9.] 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①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9.] 제30조의4(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9.] 제30조의5(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반기의 교육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내용 가. 처벌 내용: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나. 처분 내용 1) 부과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행정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기간 등 처분 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이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또는 배출자로 구분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날부터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3.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전문개정 2009. 6. 9.]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제2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전문개정 2010. 5. 18.]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 5. 18., 2024. 3. 5.>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출력 및 검색·확인 조치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3.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접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60조(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 업무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1조(허가 수수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6. 9.] 제9장 벌칙 <개정 2009. 6. 9.>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 6. 9.]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2014. 3. 18.>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삭제 <2023. 3. 7.> 1의2. 제5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9장 벌칙	<개정 2010. 6. 9., 2012. 6. 15.> 제3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2.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등 [전문개정 2023. 4. 17.] 제33조 삭제 <2008. 12. 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6. 9.]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2014. 3. 18., 2015. 12. 1.> 1. 삭제 <2013. 6. 12.> 2.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전문개정 2009. 6. 9.]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6. 9.]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2023. 3. 28.>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5. 31.> [전문개정 2008. 12.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3.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3. 6. 12.> 4. 삭제 <2013. 6. 12.> 5. 삭제 <2013. 6. 12.>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3. 6. 12.)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삭제 (2013. 6. 12.)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6. 12., 2019. 4. 16., 2021. 3. 16., 2023. 3. 28.> 1.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6. 9.] 부칙 <제7043호, 200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부칙 <제18666호, 200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구역의 발주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500톤 이상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공사업법	부칙 <제169호, 2005.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5호 라목(1)(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임시보관장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19828호, 2007.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호, 2007. 6. 29.> (농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0244호, 2007. 9.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자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배출신고자가 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발주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82호, 200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 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부터 ③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사용기간이 종료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제1항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9> ③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제8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115호, 2006.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4호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품질인증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8369호, 2007. 4. 11.〉 (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내지 ②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②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477호, 2007.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관거 설치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9조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제21184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중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기물(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나목·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04호, 2007. 4. 27.>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부터 ③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와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호, 2005. 7.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 라목(1)을 삭제한다. 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내지 ②생략 부칙 <제226호, 2007. 1.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 내지 (4) 및 라목 (2)를 삭제한다. 부칙 <제252호, 2007. 10. 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503) 까지 생략 (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69호, 2009. 6. 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70호, 2007. 12.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5조 생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70호,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③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부터 <61> 까지 생략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③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164호, 2010. 5.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271호,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 <제281호, 2008. 3.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2〉까지 생략 〈4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94호, 2013. 5. 22.〉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②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297호, 2011. 11.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23415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33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72호, 2010.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설계등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879호, 2013.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말한다)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년 7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1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②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996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2014년 6월 13일 2.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2014년 3월 1일 3. 별표 3 제2호마목2): 2015년 1월 1일 제2조(신인도반영비용 가점요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받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환경부장관표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순환골재의 재활용응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3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400호, 201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9호, 201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제1의2의 개정규정(제3호다목에 한한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부터 <71>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로 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478호, 2014. 7. 16.>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7199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제2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 2014. 12. 29.>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56호, 2016.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7) 및 별표 2의2 제3호다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이행실적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 실적 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 공시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2452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7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5호사목,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9호·제10호, 제64조제2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하면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영업정지의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8367호, 2017.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17호, 2017. 10. 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 2020. 4. 17.〉 이 규칙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⑦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13호, 2019. 12. 3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2호, 2020. 3. 24.> 이 영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06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호의 개정규정은 중간처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위탁 받은 건설폐기물을 이 영 시행 이후 운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86호, 2021. 9.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1005호, 2022.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4781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7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별해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4조제8항: 2020년 5월 1일 3. 및 4.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02〉까지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1호, 2023. 3. 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75호, 2023. 9. 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93호, 2024. 3. 5.〉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39호, 2021. 3. 16.〉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9307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4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7조제5항·제6항,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사용신고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718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5791
[별표 2] 삭제 <2007.12.28.>	5792
[별표 3]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5792
[별표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1항 관련)	5794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5795

[별표 1] <개정 2019. 7. 2.>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페콘크리트
2. 페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

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2] 삭제 <2007.12.28>

[별표 3] <개정 2016. 5. 3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text{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2. 제1호의 산식 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 \text{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times 70/100$$

- 1)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2)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버린다.
- 3)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자본금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실질자본금 평점} \times 10/100$$

- 1)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고,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 2) 실질자본금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배수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 3) 자본금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순환골재판매액} + \text{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text{평균용역실적액} \times \text{기술능력평점} \times 5/100)$$

- 1)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 3)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4) 기술능력평점은 다음과 같다.

파쇄시설 보유 현황	1차 파쇄시설 만 보유	2차 파쇄시설 까지 보유	3차 파쇄시설 까지 보유	4차 파쇄시설 까지 보유	5차 이상 파쇄시설 보유
평 점	1	1.25	1.5	1.75	2

- 5) 기술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라.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력평가액} =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times \text{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times 10/100$$

- 1)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 가)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 다)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3)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영위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 \text{평균용역실적액} \times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times 10/100$$

- 1)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2)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환경오염방지시설 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 \text{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 \text{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

- 3)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바.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신인도평가액} =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times \text{신인도반영비율}$$

-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 10 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다.
-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가)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2퍼센트
 - 나)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표창 또는 환경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우: +1퍼센트
-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 다)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 라)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 마)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1퍼센트

[별표 4] <개정 2024. 3. 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15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5.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7.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9.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0. 법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나.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1.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2.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5.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	-
16.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 제1항제1호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구분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실한 내용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200	300	500
4)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경우		500	700	1,000
5)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수집·운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2호			
1)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미만인 경우		300	500	700
2)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다.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경우(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 제1항제2호의2	500	700	1,0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4호	500	700	1,000
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5호	500	700	1,000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6호	500	700	1,000
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6호의2	500	7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배출자로 한정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않게 입력한 경우	법 제66조 제3항제1호	50	70	1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6조 제3항제2호	50	70	100
파. 배출자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66조 제3항 제1호의2	50	70	100
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66조 제3항 제1호의3	50	70	100
거.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3항제3호	50	70	100
너.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7호	500	700	1,000
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8호	500	700	1,000
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서. 법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어.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처. 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1호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터.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6조 제3항제5호	50	70	100
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2호	300	300	300
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재개업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1호	100	200	300
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3호	1,000	1,000	1,000
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로. 법 제35조제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모.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 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4호	500	700	1,000
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4호	100	200	300
소.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5호	500	700	1,000
오.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6호	500	700	1,000
조.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5호	100	200	300
초.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7호	500	700	1,000
코.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3항제8호	50	70	10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	5801
[별표 1의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	5801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 관련)	5803
[별표 2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제10조제2항 관련)	5804
[별표 2의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	5805
[별표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	5806
[별표 4]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	5810

[별표 1]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

분류	분류번호	종류	
가연성	40-02-06	폐목재(나무의 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02-07	폐합성수지	
	40-02-08	폐섬유	
	40-02-09	폐벽지	
불연성	40-01-01	건설 폐재류	페콘크리트
	40-01-02		페아스팔트콘크리트
	40-01-03		폐벽돌
	40-01-04		폐블록
	40-01-05		폐기와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40-03-11	폐금속류	
	40-03-12	폐유리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불연성 혼합	40-04-11	폐보드류	
	40-04-12	폐판넬	
	40-04-14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40-90-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개정 2022. 11. 29.>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1. 공통사항

-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건물 등의 철거·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페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분류·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하여야 한다.
-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바.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1의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페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치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페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殘滓物)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2조제5항관련)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건조시설: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추 것(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6. 6. 2.>

(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7)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입력

돼야 한다)

(8) 삭제 <2017. 10. 19.>

(9) 삭제 <2017. 10. 19.>

나. 장비

(1) 굴착기 : 바켓용량 0.6제곱미터 이상인 굴착기 1대 이상

(2)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자차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라.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마.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3. 비교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기술인력 및 계량시설을 증축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장비요건중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마. 제2호가목(1), (2), (6), (7) 및 같은 호 나목 (1) 항목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별표 2의2] <개정 2016. 6.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

(제10조제2항 관련)

1.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2.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한다.
- 라.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 마.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별표 2의3] <개정 2022. 11. 29.>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 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22. 11. 29.>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3)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5조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호	허가 취소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의2호	허가 취소			
6)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5호	허가 취소			
7) 2년에 3회 이상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허가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8)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호	경고	허가 취소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2호				
가)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불연속 함유량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 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수집·운반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0)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4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5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3)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6호의2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7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6)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8호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1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능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9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0)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8) 법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0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가)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9) 법 제21조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0호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가)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22)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2항 제16호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6)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7호	영업정지 1월			
27)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8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비고

23)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1호	승인취소		
2) 반입정지기간에 반입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2호	경고	승인취소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3호	승인취소		
4) 2년 동안 3회 이상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4호	승인취소		
5)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1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6)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2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7)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3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8)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4호	경고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별표 4] <개정 2019. 12. 20.>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

(제7조의2 관련)

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세차시설은 각 목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각 목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시설 구분	방지시설 유형	평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1. 중간처리 시설	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한 경우	2	3
	나. 파쇄·분쇄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옥내화한 경우	1	2
	다.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 공정용 살수시설과 이송 시 분진 방지 덮개를 갖춘 경우	0.5	1
2. 보관시설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을 갖춘 경우	0.1	0.2
	나.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춘 경우	0.1	0.2
	다. 폐기물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를 갖춘 경우	0.1	0.2
	라. 바닥포장을 갖춘 경우	0.1	0.2
	마. 지붕 덮개시설을 갖춘 경우	0.1	0.2

시설 구분	방지시설 유형	평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3. 세륜시설·세차 시설	가. 세륜시설 및 세차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0.5	0.5
	나. 세륜시설, 세차시설 중 하나만 갖춘 경우	0.25	0.25

2.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은 다음 각 호의 등급별 해당 기술인력의 수에 해당 등급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등급	기술인력	가중치
1. 기술사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5
2. 특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5
3. 고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4. 중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0.75
5. 초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0.5

0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817	제1조(목적) 5817	제1조(목적) 5817
제2조(정의) 581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818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581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819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5819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5819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지정) ... 5819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5819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5820	제3조(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 5820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등) 5820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등) 5820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 5822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 5822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5823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5823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5824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5824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5825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5825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5826		
제1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5826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5826	제4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5826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5827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582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임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승인) 5829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5829 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5830 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5831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5831 제19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5832 제2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5832 제21조(세제상의 지원) 5833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5833 제23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 .. 5834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5834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5834 제26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5834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2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및 이주대책) 5834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5836 제29조(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5837 제30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5838 제31조(운영이익금의 배분) 5839 제3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5840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5832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및 이주대책) 5834 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836 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5838 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5838 제17조(운영이익금의 배분) 5839 제1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5840	제5조(매수청구서) 5836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관리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5841 제34조(지역주민의 감시) 5841 제35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5841 제36조(주민복지지원 등) 5842 제37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5843 제3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5843 제6장 보칙 제39조(업무의 위탁) 5844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844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5845 제42조(양벌규정) 5845 제43조(과태료) 5845 부칙 5845	제4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관리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5841 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5841 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5842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5843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5844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844 부칙 5845	부칙 584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20. 6. 9 법률 제17423호 개정 2022. 1.11 법률 제18750호 (수도법) 2022.12.27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31 법률 제1920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4. 3.19 법률 제20385호 (환경보전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1.> 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6호 개정 2022. 5. 9 대통령령 제326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21. 6.10 환경부령 제91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방치폐기물 나. 부적정처리폐기물 다. 재난폐기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2.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폐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설치·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	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설치·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설치·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항이 포함된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②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른 공모	이라 한다)을 관보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③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선정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모기간 2. 부지면적 등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3. 그 밖에 응모방법 등 입지후보지 응모에 필요한 사항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희망부지는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면적을 갖출 것 2. 단층 지형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부적합한 지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에 따른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동의서(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의 선정공모에 참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대상 산업단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3.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입지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공모절차, 구비서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등 입지후보지 선정절차의 상세 및 입지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설치·운영기관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여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따라 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에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⑦ 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한 지역 중에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면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의회에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① 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고해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아 한다.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8조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과정과 결과(제2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말한다)를 해당 입지후보지가 속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공개에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선정된 입지후보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②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인 경우: 관보 및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연구소 6.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해당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접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분쟁조정 및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변경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고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1.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반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③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설치·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 3.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①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민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지 안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입지 안의 무허가 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세입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 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채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 5. 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2. 공사시행계획서 3.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면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해 100분의	제4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개요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바.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가. 국고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특별기금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의 투자금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4.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이란 다음 각 호의 분할 또는 야적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 2. 물건의 야적: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의 야적.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의 야적은 제외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신고·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설치·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그 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설치·운영기관이 제6항에 따라 공고된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 2.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등 폐기물의 처리계획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내에 매립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후관리계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성 조사서 5.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입지선정에 관한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6항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규모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승인) ① 설치·운영 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의 절차와 제14조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의 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입지결정·고시 및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계획 승인·공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4.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간 6.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한다. 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17조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의 출입 및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반입수수료"라 한다)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금액, 납부시기,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 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경비 2.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단가 3.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 ② 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반입수수료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반입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범위의 결정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제목개정 2022. 12. 31.]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11.>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경관법」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2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및 이주대책) ① 설치·운영 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및 이주대책)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명칭 및 관리시설설치·운영 기관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규모 및 명세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면적을 포함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주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 재산권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기급수해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이주지역을 제외한 지역 ④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주지역 안의 거주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 수렴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구성일부터 30일을 말한다) 이내에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환경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이하 “환경상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주민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⑥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급수해지역(이하 “기급수해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 2. 폐기물매립시설이 아닌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기급수해지역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⑤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설치·운영기관에 그 토지·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제5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한 토지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지역 ⑦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등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방진·방음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진입로 등 출입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하 “주민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綠地)의 조성 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의	제5조(매수청구서) 영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주민협의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주민협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연구기관의 선정 2.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협의 3. 제34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추천 4. 그 밖에 주민협회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과 별도로 설치비용(용지비용, 보상비용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이하 “주민특별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설치·운영기관의 출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③ 주민특별기금은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설치·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민특별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기금수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기금수혜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⑥ 설치·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의 전출·전입 등 주민지위의 취득·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대통령	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①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이익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고시일 당시 법 제27조제3항제1호의 이주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기금수혜지역으로 이주한 자로서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은 세대별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기금수혜지역배분금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배분 방법,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주민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읍·면·동”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읍·면·동(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설치·운영기관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투자참여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투자방법, 투자한도, 투자자의 지위 및 투자금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운영이익금의 배분) ① 설치·운영기관은 반입수수료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인건비, 유지·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이익금(이하 “운영이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배분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읍·면·동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임지에 연접한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읍·면·동으로서 주민의 투자가 저조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읍·면·동 ②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1. 주식 또는 채권 발행 2. 그 밖에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결정한다. 1. 투자금의 총한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민특별기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 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④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투자 기간이 만료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7조(운영이익금의 배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관리와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 제30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투자자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 3. 국고지원 회수금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5. 제30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유보금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관리와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	제1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지원기금”은 “지원금”으로, “지원협의체”는 “주민협의체”로 본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채신관사에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지원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 결손의 충당(주민협의체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의 조성 및 사용 실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관리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설치·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설치·운영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인원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등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 설치·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제4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관리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폐기물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현황을 주민협의체에 제 공하여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공공처리대상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실태 3. 운영이익금의 사용내역 ④ 설치·운영기관은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금수혜지역 주민들 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주민들이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제3항 의 운영현황 및 제4항의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측정결과의 기록·보존·공개, 제4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의 조사 주기· 방법 및 조사결과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6조(주민복지지원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 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다만, 희망자에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설치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간의 우선 이용·사용 지원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 법」 제39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 ②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주 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주민협 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제2항 각 호의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주기·방법은 공공폐 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제6조제2항 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이 끝날 때 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 이행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3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공공폐자원관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한다)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2. 허가 취소 3.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이하 “폐기물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지번·지목·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또는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임직원 - 제3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3조제8항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계·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742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0호, 2022. 1.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2. 제2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부칙 〈제31746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호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2호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8호, 2022. 5.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 2021.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⑪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208호, 2022. 12. 3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를 “(「순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0385호, 2024. 3. 19.〉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제7조제1항 관련)	5851
[별표 2]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제14조제1항 관련)	5852
[별표 3]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제17조 관련)	5853
[별표 4] 주민감사요원의 자격 및 인원(제19조제1항 관련)	5854

[별표 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구성한다.

가. 입지후보지가 하나의 지역인 경우

- 1) 입지후보지 관할 시·군·구(이하 이 표에서 “시·군·구”라 한다)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명
- 2) 시·군·구 의회 의원 2명
- 3)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4) 시·군·구 공무원 1명
- 5)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명
- 6)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
- 7)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 임직원 1명(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운영 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지후보지가 둘 이상의 지역인 경우

- 1)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시·군·구별 2명
- 2) 시·군·구 의회 의원: 시·군·구별 1명
- 3)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시·군·구별 1명
- 4) 시·군·구 공무원: 시·군·구별 1명
- 5)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명
- 6)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
- 7)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 임직원 1명(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운영 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비고

1. 주민대표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되,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명(입지후보지가 하나의 지역인 경우에는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거나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 중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전문가는 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나.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으로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다.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라. 환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마. 갈등관리분야 전문가

[별표 2]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제14조제1항 관련)

1. 주민협의체의 정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1명 이내로,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주민협의체 위원의 자격

주민협의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가목에 따른 주민대표가 정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적어 과반수의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때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의회 의원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 2명

3.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비고

1. 위 표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대신 해당 시·군·구 의회 의원 4명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2. 전문가는 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국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으로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라. 환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갈등관리분야 전문가

[별표 3]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제17조 관련)

1. 운영이익금의 산정 방법

운영이익금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 1) “총수익”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2) “총비용”은 인건비, 유지·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운영이익금의 배분 방법

가.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다음 표의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배분 대상(법 제31조제1항 각 호)	배분비율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배분해야 할 금액	100분의 10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투자자에게 배분해야 할 금액	100분의 10 이내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금	100분의 40 × (1-공제율)*
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 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유보금	100분의 20 이내
5) 국고지원 회수금	잔여 운영이익금

* “공제율”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총반입수수료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관할 시·군·구의 방치폐기물·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가목1)부터 3)까지의 배분비율 합계의 범위에서 각각의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배분비율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3. 제2호가목4)에 따라 적립한 유보금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가. 주민투자금의 반환
-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 다. 운영손실금의 보전

4.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별표 4]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및 인원(제19조제1항 관련)

1.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 가. 주민감시요원은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위촉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 나.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3) 및 4)의 경우에는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해야 한다.
 -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3)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 5)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 6)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7) 주민감시요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주민감시요원의 인원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때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린 인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가. 1일 평균 공공처리대상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 나. 가목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	5857
[별표 2]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조 관련)	5858

[별표 1]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1. 소각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일반기계기사 1명

라. 시공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사람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운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립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1명

다. 토목기사 1명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

1) 33,000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의 매립시설

2) 33,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시설(지정폐기물의 매립시설의 경우는 9,9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3. 재활용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사 1명

나. 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기계정비산업기사 1명

라.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재활용시설(설치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과 같은 종류의 재활용시설만 해당한다)의 시공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재활용시설(운영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과 같은 종류의 재활용시설만 해당한다)의 운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각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각 호 라목 또는 마목의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라목 또는 마목 분야의 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고의나 악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제2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6조제2항 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6조제2항 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조제2항 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0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5863	제1조(목적) 5863
제2조(정의) 5863	
제3조(책무) 5863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5863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5864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5864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864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5864	
제8조(사무소) 5865	
제9조(정관) 5865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5865
제10조(설립등기) 5865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5865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5866	
제12조(임원) 5866	
제13조(임원의 직무) 5866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5866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5866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5866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5867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5867	
제16조(직원의 임면) 5867	
제17조(별칭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867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5867	
제18조(이사회) 5867	
제19조(사업) 5867	
제20조(사업 재원) 5868	제5조의2(출자 등) 586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보조금) 5869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5869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5869	제7조(채권의 형식) 5869
제23조(채권의 발행) 5869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5869
	제9조(채권의 응모 등) 5869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5870
	제11조(채권발행총액) 5870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5870
	제13조(채권의 기재사항) 5870
	제14조(채권원부) 5870
	제15조(이권흡결의 경우) 5871
	제16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5871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5871
제24조(운영위원회) 5871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5872
제25조(사업연도) 5872	제19조(결산서의 제출) 5872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5872	
제27조(결산서의 제출) 5872	
제28조(업무의 지도·감독) 5872	
제29조(「민법」의 준용) 5873	
제29조의2(벌칙) 5873	
제30조(과태료) 5873	제20조 삭제 5873
부칙 5873	부칙 587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0. 1.21 법률 제6200호 개정 2005.12.29 법률 제7783호 2007. 4.11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11. 7.28 법률 제10975호 2017.12.12 법률 제1519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정 2000. 7.10 대통령령 제16904호 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위탁 인사규정) 2006. 6.15 대통령령 제19530호 2007.10. 4 대통령령 제2030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7. 6.13 대통령령 제2810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의 정비에 관한 비파과감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6. 15.>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8. 자본금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0조(설립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2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6. 15.)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해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7조(별치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1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다.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 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屬)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 6.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1. 7. 28.] 제21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3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차입사유 2. 빌린 곳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수·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증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 그 분납금액 및 시기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1조(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3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14조(채권원부) ①공사는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 한하여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4.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채권의 취득연월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2.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각 2명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4.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②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이권환결의 경우)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환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옴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 6. 12., 2006. 6. 15., 2007. 10. 4., 2021. 1. 5., 2021. 12. 16.>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기관의 2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경우: 공사의 사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상 및 통장을 포함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에 추천을 의뢰하여 그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주민대표의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계·산업체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기준 및 반입 대상 구역 3.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칭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한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 목에 따른 전문가 중 주민대표가 추천한 사람 ②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첫째달에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 5.>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 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사업별예산·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2019. 7. 2.> 1.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환경부장관이 지칭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목개정 2006. 6.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본조신설 2011. 7. 28.]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부칙 <제6200호, 2000.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 및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정장이 부담한 비용은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부칙 <제16904호, 2000. 7. 10.> 이 영은 200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6>생략 <13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해당기관 소속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을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8> 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30호, 2006. 6. 15.>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이 법 시행일에 동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반입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결정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783호, 200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⑲내지 ㉔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975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92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6호, 2007. 10.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103호, 2017. 6.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북·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23호, 2021. 12. 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으로 한다. ㉑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7편 자원순환

0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883 제2조(정의) 5883 제3조(기본원칙) 588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886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886 제6조(사업자의 책무) 5887 제7조(국민의 책무) 5887 제8조(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 지원) 5887 제9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5888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889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5890 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5892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13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5894 제14조(시·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5895 제15조(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5895 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58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883 제2조(순환원료) 5883 제3조(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5888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889 제5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5890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6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5897	제1조(목적) 5883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5883 제3조(자원순환산업) 5884 제4조(자원순환시설) 5885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5889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5892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5894 제8조(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5894 제9조(시·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 5895 제10조(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 589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5898 제1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5898 제19조(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5901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5901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등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5902 제22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5907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5908 제2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5909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5909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5913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27조(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5913	제7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5898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 5898 제9조(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5899 제10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5900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등 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5902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5903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5906 제1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 5906 제15조(순환자원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 5908 제16조(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5909 제17조(품질인증 절차) 5909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5911 제19조(품질인증 기준) 5911 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 5912 제21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5913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5911 제19조(품질인증 기준) 5911 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 5912 제21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5913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22조(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5913 제23조(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 5915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 5899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5902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5903 제14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5905 제15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5907 제16조(지정·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5908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5909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5909 제1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5910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591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5916	제24조(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5916	제21조(신속처리신청서 등) 5916
제29조(일괄처리) 5917	제25조(일괄처리 신청 등) 5917	제22조(일괄처리신청서) 5917
제3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5918	제26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5918	제2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5918
	제27조(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5921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5922
제31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5923	제28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5923	
제32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5925	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5925	제25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5922
		제2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5925
제33조(임시허가) 5930	제3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5928	제27조(임시허가신청서 등) 5928
제34조(임시허가의 취소) 5930	제3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5932	제28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5931
	제32조(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5933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5930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5934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5934	
	제34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5934	
	제35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 5935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5937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 5938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5938
	제38조(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5939	
	제3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5940	
	제4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5940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용 산정 등) · 5940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5942	
	제42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5942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5941		제32조(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5943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5941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5946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5943		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5944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5944		제34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5945
제40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944		
제4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594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42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5945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5946 제7장 보칙 제44조(사업자단체의 설립) 5946 제45조(보고 및 감사 등) 5948 제46조(청문) 5948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949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952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5952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5953 제51조(양벌규정) 5953 제52조(과태료) 5953 부칙 5954	제44조(협의제) 5946 제7장 보칙 제45조(권한의 위임) 5949 제46조(업무의 위탁) 5950 제47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5951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951 제49조(규제의 재검토) 5952 제8장 벌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953 부칙 5954	제3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5946 제36조(보고서의 제출) 5948 제37조(규제의 재검토) 5952 부칙 595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2016. 5.29 법률 제14229호 전부개정 2022.12.31 법률 제19208호 2023. 9.14 법률 제19721호	제정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2호 전부개정 2023.12.19 대통령령 제34004호 2024. 4.16 대통령령 제34413호 2024. 6. 4 대통령령 제34546호	제정 2017.12.29 환경부령 제 732호 전부개정 2023.12.29 환경부령 제1071호 2024. 4.24 환경부령 제10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가.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나. 분리·선별하는 활동 다. 파쇄·압축·절단·용융·분리·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라. 중화·산화·환원·정제·열분해 등 화학적 처리를 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가.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나. 분리·선별하는 활동 다. 파쇄·압축·절단·용융·분리·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라. 중화·산화·환원·정제·열분해 등 화학적 처리를 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의2에 따른 재생원료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에서 교환하는 중고물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는 활동 마. 사료화·퇴비화·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 소성(燒成)·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순환 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조에서 같다)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른 재활용 산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3에 따른 시설·장비 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재활용 산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설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기술·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기술·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정부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⑤ 위탁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⑥ 위탁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수탁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다.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의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하는 기관(이하 "순환경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⑧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나. 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다.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수분·가연분(可燃分)·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 분석 라.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 분석 마.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용도별 재활용 현황 바. 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 사. 폐기물의 재활용·처분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아. 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발생·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 나.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처분 방법별 현황 다.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라.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업체 현황 마.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바. 시·도 및 시·군·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 현황 사. 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순환경제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13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 가. 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별 현황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이용 가치가 높아 생산, 판매 또는 처리 등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의 현황 1) 순환원료 2)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계조사의 계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그 밖에 순환경제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4. 에너지회수율(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순환경제 여건과 각국의 순환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시·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제9조(시·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사업 규모,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및 그동안의 목표 달성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검토·평가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순환경제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3항에서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제7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5조제6항에서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표 2.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표 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원료·재료·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4.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5.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3. 순환경제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순환경제 목표 설정·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1. 바이오 기반의 원료 등 천연자원 대체원료의 연구개발 2. 순환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3.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기법의 활용 4.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3. 제품등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제품등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5. 1. 1.] 제17조 제1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	제7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자금, 제품 설계,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의 지원 2. 순환원료 사용 촉진에 필요한 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 3. 순환원료 사용 우수사업자 지원 4. 순환원료의 통계 구축 및 정보 공개 5. 순환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인증 기술 지원 6.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환경부장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 제1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적정 처분의 가능성 -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 그 밖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등의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이	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내의 시장 여건 및 기술 개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계획에는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도별 평가 대상 제품등의 유형 및 평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 제품등을 선정 후 해당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선정 절차,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기능 유지, 원료·재료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 제품등의 시장점유율 -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 재질, 구조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 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조에서 “개선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의 개선이 어려운 개선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며,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권고안을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생산자들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생산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생산자들이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들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생산자들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또는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① 환경부장관은 유통 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의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2.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포장재의 표준화 3.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기법의 활용 4.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품의 판매 방식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를 감량하고 이로 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9조제2항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1. 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5. 1. 1.] 제20조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등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의 사용 촉진 등 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양겨, 쌀겨 및 커피 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바이오디젤(메시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5.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폐기물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형태·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맨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지 여부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기준 및 용도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5.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6.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라.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신고·허가·등록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1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재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 실적으로 판매실적을 갈음할 수 있다.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을 인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21조 제8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가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	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2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이 취소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조치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제15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은 그와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제15조(순환자원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해당 폐기물의 발생·처리·사용 현황 - 해당 폐기물의 거래 및 수요·공급 현황 - 해당 폐기물의 성상(性狀),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 해당 폐기물의 순환이용 관련 국내 또는 국제 기준 - 해당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그 밖에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지정·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17조제1호에 따른 순환자원지정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폐기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질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지정·고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업종에서 제품등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질 또는 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유리용기류 3. 고철 제17조(품질인증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별 순환자원 사용 목표의 설정 2.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의 사용방법 3.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 사용계획 수립 및 이행 4. 순환자원의 사용에 관한 기록·관리 및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일정 등을 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 후,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그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인정유효기간 종료일까지 2.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 ⑧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3. 순환자원의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4.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분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인증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 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계획 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인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⑪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19조(품질인증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국가기술자격증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2.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3.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순환자원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하지 않은 경우 6.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 2.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27조(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3. 인증기관의 장 제21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을 확인한 후,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 2. 검토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3.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⑪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할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4조(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28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한다.	제21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통보가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일괄처리) 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제25조(일괄처리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일괄처리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심사기간을 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의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제2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3.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4. 실증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시험·검증의 방법 4. 해당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심의위원회는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회가 정한다. ⑪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급 2.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 통보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갱신하고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③ 하나의 사건으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④ 환경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손해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⑥ 제5항에 따른 손해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⑦ 사업자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1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⑧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⑩ 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⑪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불인 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부여받고 실증하려는 자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져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30조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규제특례의 대상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규제특례의 구역·기간 및 규모 3.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전에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특성과 규제특례의 구역·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2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불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25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이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는 내용에는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3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환경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2.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제27조(임시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 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3조(임시허가) 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신청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및 보험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⑥ 임시허가신청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임시허가신청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하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3.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⑧ 심의위원회는 법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1.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임시허가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신청자가 부담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⑪ 법 제3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제28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야 한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기술 또는 서비스에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⑫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2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2조(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3.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업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6조제3항에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신고증명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감면 기준, 납부 시기·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4.〉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 9. 14.〉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9. 14.〉 ⑧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⑨ 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같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매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사업장폐기물매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폐기물매출자 신고증명서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영 별표 4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한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다.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2023. 9. 14.〉 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9. 14.〉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입력하거나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작성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6.〉 ⑤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24. 4. 16.〉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리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16.〉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영 별표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영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영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영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섬(「섬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 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에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로서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 2.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말한다)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4. 4. 16.>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 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제6항 또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 4. 24.> ⑤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4.> ⑥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제1회분: 5월 20일 2. 제2회분: 7월 20일 3. 제3회분: 9월 20일 4. 제4회분: 11월 20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자료를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정한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징수유예 기간 동안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 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새로운 납부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제38조(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 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 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① 환경부장관은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을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부자에게 함께 통지하고 지급해야 한다. 제4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용 산정 등) ① 영 제40조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나.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소각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용에 100분의 1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교부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부비용을 조정한 교부비용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의 산정 및 교부비용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	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각·매립 처분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소각의 경우: 0.8321 2. 매립의 경우: 1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교부비용의 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시·도지사는 폐기물의 실제 소각·매립 처분량 등 제1항에 따른 소각·매립 처분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제2항에 따른 교부비용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영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교부비용을 매년 7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용은 환경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42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정보 3. 순환자원의 인정 및 지정·고시에 관한 정보 4. 품질인증에 관한 정보 5.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6.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과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4.>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반입수수료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7.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관리·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23. 7. 1.] 제38조제2항제5호, 제38조제2항제6호, 제38조제2항제7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 시·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의 입력 주체 및 시기 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3. 정보 활용의 범위 및 보안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자적 형태의 공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4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3. 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발간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4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4.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4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나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환경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4조(협의체)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3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표자 3. 소재지 4. 설립 목적 5. 사업 범위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순환경제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 명세서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 회원명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 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2. 제18조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들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4.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5. 사업자단체 6.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7.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 신청서에 정관 1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36조(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3.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채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 법 제36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마.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3.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4. 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제4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2.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순환경제성과 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관리, 목표의 재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분부담금(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4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4.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 5. 법 제4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정보 공개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비스의 신속처리 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접수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7.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의 접수 8.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11.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사실 증명 자료의 접수 12.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 자료의 접수 13. 제29조제4항(같은 조 제1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제47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①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2.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시행일: 2023. 1. 1.] 제49조제1항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채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제4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 등의 미제출 또는 이행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치 2. 제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3.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5.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 6. 제34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자 -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9. 14.> - 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제8장 벌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9208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3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순환경제기본계획·시행계획·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순환경제 목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국가 자원순환 목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시·도 자원순환 목표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부칙 〈제34004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분담금 감면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분담금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표지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3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부칙 〈제1071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4항제7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8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9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1호자목6)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제4조(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 권고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로 본다. 제5조(순환자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으로 본다. 제6조(순환자원에 관한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순환경제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원순환특별회계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로 본다. 제8조(순환경제정보체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자원순환정보체계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로 본다. 제9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한다. 별표 제1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34413호, 2024.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납부의무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546호, 2024. 6. 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 2024.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⑦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0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로 한다. 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순환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21호, 2023. 9. 14.〉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8조제7항 관련)	5961
[별표 2]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5962
[별표 3]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5962
[별표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	5963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	5965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5966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8조제7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현재 생산·가공·수입·판매되고 있는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 나. 대상 제품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 제품등과 같은 유형의 제품등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 법 제17조 각 호의 사항은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 라. 제품등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부분품 또는 구성품(이하 “부속품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사항별 세부 평가방법

- 가.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 1) 제품등의 제조 시 순환원료 사용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에 사용된 순환원료의 종류 및 양
 -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에 대한 순환원료 사용 가능성
 - 2) 제품등의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에 사용된 친환경 소재의 종류 및 양
 -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에 대한 친환경 소재 사용 가능성
- 나. 제품등의 내구성(耐久性)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 1) 내구성에 대해서는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부품 보유기간 등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수리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제품등과 부속품등의 재질·구조 등이 부속품등의 교체·수리에 용이한지 여부
- 다. 제품등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 1)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 중 순환이용되는 비율을 분석한다.
 - 2)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별 순환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한다.

- 3) 순환이용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의 사유 및 개선 가능성을 분석한다.
- 라. 제품등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 1) 제품등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단계별 투입물 및 산출물의 물질 수지에 기반하여 산정하되,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2)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단계별 탄소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가능성을 분석한다.
- 마.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적정 처분의 가능성
 - 1)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별 적정 처분방법을 분석한다.
 - 2)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바.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 중 순환이용되는 부분 및 폐기물로 처분되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부피, 재질·성질 등을 각각 분석한다.
- 3. 세부 평가에 따른 시험·분석방법
 - 가. 측정 또는 시험·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나. 가목에서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4. 평가서 작성방법
 - 가.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평가 대상 제품등의 제품명, 제조사 및 제조일 등 일반 현황
 - 2)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가사항별 세부 평가 결과
 - 3) 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종합평가 결과
 - 4)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원인분석, 개선방법 및 평가내용
 - 5) 평가에 참고한 법령, 관련 규격·기준, 참고문헌,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
 - 나.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다. 평가서의 내용 중 법령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근거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근거 등을 간략히 기술해야 한다.

[별표 2]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40,000원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15,000원

[별표 3]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조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품질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인력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기술인력	해당 분야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환경학, 토양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농화학, 농생물학, 보건학, 의학 관련 분야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가목의 기술인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의 기술인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환경 관련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시설

총 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항온·제습시설 및 후드시설을 갖춘,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해당 실험실 내에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4.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기술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장비	수량
가. 이물질 분석	폐기물에서 이물질의 함유량을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나. 유해물질 분석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1대 이상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대 이상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시약 및 초자류(硝子類) 등	1식 이상

비고

- 1. 폐지·고철의 이물질질을 현장에서 측정·분석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장비를 갖추는 대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계량증명업자에게 의뢰하여 측정·분석을 할 수 있다.
-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유해물질의 시험·분석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목의 장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24. 6.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단위: 퍼센트)
1.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나.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100 50
2.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가.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 소각열에너지를 7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 소각열에너지를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라.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마.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바. 소각열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70 65 60 50 30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 90 80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단위: 퍼센트)
라.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70
마.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경우	60
바.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50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6.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섬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나. 가옥 외의 경우로서 부과·징수 대상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00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비고

- 위 표 제2호에서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비율(이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되,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소각시설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 나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2기 이상의

-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소각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
- 위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한다.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건설 폐기물은 제외한다)	가. 불연성	kg당 10원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비고

- 위 표에서 폐기물 유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나.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다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한다), 광채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채류, 폐폐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한다.
나. 가연성폐기물은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배출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본다.
다.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로 본다.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

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가연성폐기물에 한정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700	
4)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나.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	350	700	1,000
다. 법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350	700	1,000
라.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4호	350	700	1,000
마. 법 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호	50	70	10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비율의 산정방법(제8조 관련)	5969
[별표 2] 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0조제1항 관련)	5970
[별표 3]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제4항 관련)	5970
[별표 4]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방법(제20조제2항 관련)	5971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31조제2항 관련)	5972

[별표 1]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비율의 산정방법(제8조 관련)

1. 최종처분율

가. 계산식

$$\text{최종처분율(\%)} = \frac{\text{최종처분량(톤)}}{\text{폐기물 발생량(톤)} + \text{순환자원 인정량(톤)}} \times 100$$

나. 산정기준

- 1) 최종처분량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중화 등의 중간처분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중간처리과정”이라 한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처분(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직접최종처분량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오수 또는 폐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최종처분하는 간접최종처분량을 더하여 산출한다.
- 2)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최종처분시설(이하 이 표에서 “최종처분시설”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3) 간접최종처분량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후의 잔재물 처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최종처분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 4)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재활용과정”이라 한다)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한 양은 제외한다.
- 5)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되,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료·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로 투입되어 그 투입된 원료·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text{추가 발생량} = \frac{A}{B} \times C$$

A: 추가로 투입된 원료·재료 또는 연료의 양

B: 중간처리과정에 투입된 폐기물의 양 + 추가로 투입된 원료·재료 또는 연료의 양

C: 잔재물 발생량

2. 순환이용률

가. 계산식

$$\text{순환이용률(\%)} = \frac{\text{실질재활용량(톤)} + \text{순환자원 인정량(톤)}}{\text{폐기물 발생량(톤)} + \text{순환자원 인정량(톤)}} \times 100$$

나. 산정기준

- 1) 실질재활용량은 재활용 양에서 재활용 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과정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양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순환자원 인정량 및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은 각각 제1호나목4) 및 5)와 같다.

3. 에너지회수율

가. 계산식

$$\text{에너지회수율(\%)} = \frac{\text{에너지화된 폐기물량(톤)}}{\text{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톤)}} \times 100$$

나. 산정기준

- 1)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에 직접 투입하거나 고형연료제품, 정제연료유 등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한다. 다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제외한다.
- 2)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말한다.

[별표 2]

순환경제성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0조제1항 관련)

-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 식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자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별표 3]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제4항 관련)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5호	지정 취소			

[별표 4]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방법(제20조제2항 관련)

1. 도안 모형

〈 '가' 형 〉



〈 '나' 형 〉



00류 00%

2. 도안 요령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 \times H$ 비율로 유지하되,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를 말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은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문자: '나'형 도안 아래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도안 모형과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표시 방법

가. '가'형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제20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나'형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제20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안 하단에 표시하는 순환자원의 종류명은 제20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은 확인서에 포함된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같은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서로 다른 내용의 순환자원사용제품 도안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용 조정방법(제31조제2항 관련)

1. 환경부장관은 영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시·도별 교부비용을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값(퍼센트포인트, 이하 “%p”로 한다)만큼 가감하여 조정한다.

$$\text{조정 값}(\%p) = \frac{10}{100 - Kai} \times [\text{소각률}(\%) - Kai]$$

2. 시·도에 법 제38조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조정된 교부비용에 10%p를 가산한다.

비고

- 제1호에 따른 조정값의 최솟값은 -10%p로 한다.
- Kai: 'Kai'란 전체 시·도의 평균소각률(Average Incineration ratio)을 말한다.
- 소각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소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text{소각률}(\%) = \frac{\text{폐기물소각처분량} \times \text{소각보정계수}(0.8321)}{\text{폐기물소각처분량} \times \text{소각보정계수}(0.8321) + \text{폐기물매립처분량} \times \text{매립보정계수}(1)} \times 100$$

4. 조정값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984	제1조(목적) 5984	제1조(목적) 5984
제2조(정의) 5985	제2조 삭제 5985	
	제3조(지정부산물) 5985	
	제4조(재활용산업) 5987	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5985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5988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5986
	제5조(1 회용품) 5988	제2조(재활용제품) 5986
	제5조의2(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5988	제3조(재활용시설) 5986
제2조의2 삭제 598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989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5988
제4조 삭제 5989		
제5조 삭제 5989		
제6조 삭제 5989		
제7조 삭제 5989	제6조 삭제 5989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 11. 28.〉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신설 2008. 3. 21.〉		
제8조(자원의 절약 등) 5989		
제8조의2 삭제 5989	제6조의2 삭제 5989	
	제6조의3 삭제 598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5989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5989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5991		제3조의3(개선평명령) 5991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5992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5992	제3조의4(개선평명령의 연장 신청 및 승인) 5991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5993		제3조의5(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5992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5995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5995	제3조의6(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5993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5996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5997	제3조의7(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5994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5997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5997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5995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5997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 5998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5997
제12조(폐기물부담금) 5998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 5998	제4조의3 삭제 5997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6000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6001	제5조(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6001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6001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용) 6003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6002
	제14조(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반환) 6004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6002
제12조(폐기물부담금) 6005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6005	제8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6003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 6007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6007	제9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6004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60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신설 2008. 3. 21., 2020. 6. 9.>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6009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6011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6011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6013 제14조(분리배출 표시) 6013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6015 제15조의2(반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6015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6019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6021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6021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6022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신설 2008. 3. 21.>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6023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6008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6009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6009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6010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6012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6013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6015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6022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6023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6008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6009 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6014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6016 제12조의2(자원순환보증금액) 6017 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6017 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6019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6019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6021 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6021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운영) 6022 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60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활용의무율) 6029	업종 및 규모) 6027 제20조(회수·재활용의 위탁) 6028 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6028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6029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6030	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6029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6029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6031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6032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6033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6030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6031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6031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6032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6033 제27조(재활용비용) 6034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6034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6034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6035 제18조의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6036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6035	제2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6036 제28조의3(징수비용의 지급) 6037 제28조의4(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6038 제29조(회수·재활용 실적 조사 등) 6039 제30조 삭제 6040 제30조의2 삭제 6040 제31조 삭제 6040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6038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6039 제21조 삭제 6040 제22조 삭제 6040 제22조의2 삭제 6040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6040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6040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6040 제34조 삭제 6041	
제24조 삭제 60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삭제 6041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6041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6042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6042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6043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6045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6047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6048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6051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6053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 6053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6054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6041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6052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6054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6043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6044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6045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6046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6046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6047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6047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등) .. 6048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6051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6051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6053 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 등) 60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6055 제25조의13(권리·의무의 승계 등) 6055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6055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6057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6057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6057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6058	제20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6055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6056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6057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 5. 22.)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6059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6059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 6060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6060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6060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6061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6061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6061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6062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6063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6063 제29조(분담금 등) 6064 제30조(「민법」의 준용) 6064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6059 제21조의2 삭제 6060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6060 제23조(인가의 취소) 6061 제23조의2(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 606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 11. 28.〉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6065 제32조 삭제 …… 6066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 6066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 6066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 6067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 6069 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6069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 6070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 6070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 6071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 6072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 6072 제34조의9 삭제 …… 6073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 6073 제5장 보칙 〈개정 2008. 3. 21.〉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 6073 제35조의2 삭제 …… 6075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 6065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 6066 제38조 삭제 …… 6066 제39조 삭제 …… 6066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 6067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 6067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 6068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 6069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 6070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 6073 제45조 삭제 …… 6073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 6073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 6074	제23조의3(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 6066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 6067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 6068 제25조의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 6070 제25조의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 6072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 60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3 삭제 6075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6075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6075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6077	제46조의3(보고 및 검사 등) 6075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6077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079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 6078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6080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6079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6080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6081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6081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6081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085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6085	
제38조의2(청문) 6086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6086	제28조(규제의 재검토) 6086
제6장 벌칙 <개정 2008. 3. 21.>		
제39조(벌칙) 6087		
제39조의2(벌칙) 6087		
제40조(양벌규정) 6088		
제41조(과태료) 6088	제50조(과태료의 부과) 6088	
제41조(과태료) 6091		
제42조 삭제 6093		
부칙 6093	부칙 6093	부칙 609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2. 12. 8 법률 제4538호 전부개정 2002. 2. 4 법률 제6653호 2003. 12.30 법률 제7021호 2003. 12.30 법률 제7023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 2004. 12.31 법률 제7296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5. 3.31 법률 제7464호 2005. 12.29 법률 제7778호 2006. 3. 3 법률 제786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2호 2007. 1. 3 법률 제8212호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4.27 법률 제840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07. 5.11 법률 제8427호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환경보전법) 2007. 8. 3 법률 제8611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48호 2008. 3.21 법률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09. 4. 1 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2009. 5.21 법률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0. 7.23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2. 2. 1 법률 제11262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5.22 법률 제11788호 2013. 8.13 법률 제12076호 2014. 1.21 법률 제12319호 2015. 1.20 법률 제13036호 2016. 5.29 법률 제14230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 11.28 법률 제15101호 2018. 12.24 법률 제16083호 2019. 11.26 법률 제16611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426호 2021. 1. 5 법률 제17847호 2022. 12.31 법률 제1920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3. 3.28 법률 제19311호 2024. 1. 9 법률 제19963호 2024. 2. 6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정 1993. 6.24 대통령령 제13915호 전부개정 2002. 12.18 대통령령 제17808호 2003. 6.30 대통령령 제1803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4. 1.29 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유동산업발전법시행령) (전자적민원처리및유한가상자관리규정등 중개정령) 2004. 6.11 대통령령 제18428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2004. 6.25 대통령령 제18442호 2004. 11.30 대통령령 제18593호 2004. 12.30 대통령령 제18611호 2005. 6.13 대통령령 제18863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 8.17 대통령령 제19006호 2005. 12.28 대통령령 제19204호 2006. 5.25 대통령령 제19487호 2006. 5.30 대통령령 제1949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 6.29 대통령령 제19572호 2007. 3.27 대통령령 제19971호 2007. 6.11 대통령령 제20088호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12.28 대통령령 제20479호 2008. 7. 3 대통령령 제20905호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5호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9. 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 12.31 대통령령 제21958호 2010. 9.20 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1.19 대통령령 제2249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10. 12.20 대통령령 제22535호 2011. 3.22 대통령령 제22715호 (역노출관리법 시행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 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3. 1.22 대통령령 제24331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11.20 대통령령 제24869호 2013. 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정 1993. 7.31 대통령령 제429호 전부개정 2002. 12.30 환경부령 제135호 2004. 4.17 환경부령 제155호 2004. 12.10 환경부령 제164호 2005. 12.30 환경부령 제188호 2006. 6.29 환경부령 제211호 2006. 11.10 환경부령 제220호 2007. 3.28 환경부령 제231호 2007. 6.29 환경부령 제234호 2007. 10.25 환경부령 제2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7. 12.31 환경부령 제267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2008. 6.30 환경부령 제292호 2008. 10.21 환경부령 제304호 2009. 4. 7 환경부령 제329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9. 7.13 환경부령 제340호 2009. 12.31 환경부령 제356호 2010. 12.31 환경부령 제390호 2011. 10.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공공자료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11. 1 환경부령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1.31 환경부령 제497호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 11.22 환경부령 제525호 2014. 2.12 환경부령 제545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22 환경부령 제567호 2015. 10.23 환경부령 제617호 2015. 12.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양제 등 유사수신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1.21 환경부령 제638호 2016. 4.29 환경부령 제650호 2016. 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 1.28 대통령령 제2513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14. 2.11 대통령령 제25167호 2014. 7.16 대통령령 제2547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2014. 7.21 대통령령 제25497호 2014.10.22 대통령령 제25664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 2015.11.26 대통령령 제26667호 2016. 1.19 대통령령 제26906호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6호 2017. 1.26 대통령령 제2780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2017. 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12.26 대통령령 제28499호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2호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3호 2019.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9호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4.14 대통령령 제30618호 2021. 2.17 대통령령 제31449호 (주세법 시행령) 2021. 5.25 대통령령 제31701호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5호 2021.11.23 대통령령 제32148호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6. 7 대통령령 제32673호 2023. 8.22 대통령령 제33676호 2024. 3.19 대통령령 제34317호 2024. 5.28 대통령령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45호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29 환경부령 제729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2.31 환경부령 제796호 2018.11.28 환경부령 제777호 2018.12.31 환경부령 제798호 2019. 4.17 환경부령 제805호 (산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4 환경부령 제835호 2020. 5.27 환경부령 제869호 2021. 6.11 환경부령 제919호 2021. 9.16 환경부령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1.12.31 환경부령 제963호 2022. 3.31 환경부령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 7. 1 환경부령 제993호 2022.12. 2 환경부령 제1007호 2023. 1.10 환경부령 제1021호 2023. 4.17 환경부령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4.19 환경부령 제1033호 2023. 8.22 환경부령 제1051호 2023.12.29 환경부령 제107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024. 4.11 환경부령 제108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2023. 3. 28.〉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삭제 〈2007. 12. 28.〉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유리병을 가공·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를 가공·제조한 재생원료 4. 페타이어를 가공·제조한 고무분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본조신설 2024. 4. 1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4. 4. 11.>]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4. 11.>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 7. 22.] [제1조의2에서 이동 <2024. 4. 11.>]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 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전문개정 2009. 4.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업종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 4. 6.]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5조의2(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문개정 2009. 4.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의2 삭제 <2017. 11. 2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8., 2022. 12. 31.> [전문개정 2008. 3. 21.] 제4조 삭제 <2017. 11. 28.> 제5조 삭제 <2017. 11. 28.> 제6조 삭제 <2017. 11. 28.> 제7조 삭제 <2017. 11. 28.>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 11. 28.>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신설 2008. 3. 21.>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8조의2 삭제 <2017. 11. 28.>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본조신설 2009. 4. 6.] 제6조 삭제 <2017. 12. 26.> 제6조의2 삭제 <2017. 12. 26.> 제6조의3 삭제 <2017. 12. 26.>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 8. 6., 2013. 1. 22., 2019. 12. 2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 의약품류 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아.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 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 3.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삭제 <2015. 11. 26.>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사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7. 11. 28.>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사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색상·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	라. 삭제 <2015. 11. 26.> 마. 삭제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4. 6.]	제3조의3(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 <2024. 4. 11.>] 제3조의4(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 3. 19.>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1호의3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7로 이동 <2024. 4. 11.>] 제3조의5(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② 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4. 4.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2023. 3. 28.>]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삭제]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6(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6은 제3조의4로 이동 <2024. 4. 11.>] 제3조의7(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3. 3. 28.>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23. 3. 28.>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7은 제3조의5로 이동 <2024. 4. 11.>]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배달·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 4. 11.>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4.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응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1. 1. 5.>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삭제 <2018. 12. 31.>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2. 11.]	[전문개정 2014. 2.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본조신설 2007. 5. 11.]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화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3. 28.]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자원순환(이하 이 항에서 “자원순환”이라 한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2.	제8조의2(다화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2.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3.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 [본조신설 2024. 3. 19.]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1. 도시의 개발사업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2.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전문개정 2009. 4. 7.] 제4조의3 삭제 <2009. 4.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31.) 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2.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3.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불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8. 3. 21.]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 2017. 1. 17., 2020. 5. 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항만의 건설사업 4. 도로의 건설사업 5. 공항의 건설사업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0.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본조신설 2009. 4. 6.]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0. 12. 20., 2013. 11. 20., 2019. 12. 24., 2021. 5. 25., 2022. 6. 7.)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3. 작제 (2024. 6. 4.)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②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10. 22., 2017. 3. 29., 2018. 12. 31., 2021. 5. 25.>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 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9) 삭제 <2021. 5. 25.> 바.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전문개정 2009. 4. 6.]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산설 2012. 2. 1., 2019. 11. 26.〉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 10. 29.〉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6. 4.〉	제5조(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2. 11. 1., 2013. 1. 31., 2014. 2. 12., 2019. 12. 24.〉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2. 11. 1.]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①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2. 10. 29.]	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 2019. 12. 24.,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로, 제2기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로, 제4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11. 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 2019. 11. 26., 2020. 5. 26.>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제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제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제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2. 1.> ⑥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용)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재료·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 2.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수입실적 및 회수·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2.>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2013. 1. 22.>	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9. 12. 24.,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제8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2. 2. 1.>	제14조(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 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한 경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 3.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재생원료·성형제품·고형원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본조신설 2013. 1. 31.] 제9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6. 12. 30.> 1.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그 밖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본조신설 2013. 1. 31.]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①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게 되어 영 제14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11. 1.> 1. 수입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1.>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 2017. 1. 17., 2020. 5. 26., 2024. 2. 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	2.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한 경우 3.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부과·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5.]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1. 22.>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전문개정 2009. 4. 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4.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산설 2012. 2. 1., 2019. 11. 26.〉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 2019. 11. 26., 2020. 5. 26.〉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채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2. 1.> ⑥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2. 2. 1.> 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1.>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2025. 8. 7.] 제12조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중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4. 2. 11.>]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12.] [중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 2.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3. 8. 13.)] 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신설 2008. 3. 21., 2020. 6. 9.)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2.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본조신설 2008. 3. 21.]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3. 8. 13.>]	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14. 2. 11.>]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2. 10. 29.> 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2., 2014. 7. 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2.,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4. 2.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8. 3. 21.]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2017. 12. 26.>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 제4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본조신설 2013. 5. 22.]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전문개정 2009. 4. 6.]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12. 30., 2021. 11. 23., 2022. 6. 7.>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 3. 21.]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은 받은 제품·포장재 [전문개정 2009. 4. 6.]	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① 영 제16조 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재만 해당한다)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1. 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① 제품의 제조자들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들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로 한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4.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6. 9.)	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23.]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색상·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1.] 제12조의2(자원순환보증금액) 법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2. 7. 1.] 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의2 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7. 1.> 1. 임차료, 인건비 등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이하 "빈용기"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유류비, 인건비 등 빈용기의 운반에 드는 비용 ②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정 2022. 7. 1.) ③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 ④ 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1.>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 1. 임차료, 인건비 등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유류비,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 3. 표준용기 외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0. 6. 9.>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08. 3. 21.] [제목개정 2015. 1. 20., 2020. 6. 9.]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6. 9.> 1. 용기등의 회수를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填) 4의2. 용기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		⑨ 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 [전문개정 2016. 1. 21.] [제목개정 2022. 12. 2.] 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2. 12. 2.>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① 법 제15조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0. 6. 9.> [본조신설 2008. 3. 21.] [제목개정 2020. 6. 9.]		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빈용기의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1. 21., 2022. 7. 1.>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 1. 21., 2022. 7. 1., 2022. 12. 2.> 1.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이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용기등이 회수되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5. 1. 20.] [제목개정 2020. 6. 9.]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부과·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않고 재활용되는 양 2.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유리병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전문개정 2009. 4. 7.]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6. 1. 21.)]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2022. 12. 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목개정 2022. 12. 2.] 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고위공무員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환경·법률·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 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1.]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운영) ① 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신설 2008. 3. 21.)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9. 11. 26.>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19., 2010. 12. 20., 2011. 3. 22., 2013. 11. 20., 2014. 1. 28., 2014. 7. 16., 2015. 11. 26., 2016. 1. 19., 2016. 12. 30., 2017. 1. 26., 2018. 12. 31., 2019. 7. 2., 2021. 11. 23., 2022. 5. 3.>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쉘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②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 1.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사업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3. 조사·연구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공급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 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회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7. 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충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2020. 6. 9.>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9. 곤포(몽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1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12.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전문개정 2009. 4. 6.]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14.]	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매출액·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종전 제13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20. 5.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제20조(회수·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4. 14.>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삭제 <2013. 11. 20.>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삭제 <2013. 11. 20.> 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6. 1. 19.] 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2020. 4. 14.>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6. 1.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 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5.>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2021. 5. 25., 2021. 11. 23.> 1. 전년도에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2.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11. 22.,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제13조에서 이동 <2020. 5. 27.>]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7조의2(재활용의무 이행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를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를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4. 6.]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전문개정 2009. 4. 6.]	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3. 다음 각 목의 서류(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품·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실적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5. 22.]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2020. 6. 9.>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3. 5. 22.]	[제목개정 2013. 11. 20.]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1. 회수·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운반 계획을 말한다) 3.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 2.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2.>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재활용 수탁자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② 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 2023. 8. 22.> 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재활용비용) 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5. 25.>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of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 of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5. 25.>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 사업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명세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2020. 5.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 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 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 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2013. 11. 20.>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013. 11. 20.>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3. 8. 22.> [전문개정 2009. 4. 6.]	[전문개정 2009. 4. 7.]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1. 22., 2023. 8. 22.> 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 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23. 8. 22.>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20. 5. 27.> [본조신설 2012. 1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채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제2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제18조의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 2023. 3. 28.>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후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⑧ 재활용부과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23. 3. 28.> ⑨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23. 3. 28.> ⑩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22.]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23. 8. 22.>] 제28조의3(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11. 20., 2014. 10. 22., 2023. 8. 22.> 1. 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3. 3. 28.> ⑩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08. 3. 21.]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 정수비용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3. 정수비용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전문개정 2009. 4. 6.] [제2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2023. 8. 22.>] 제28조의4(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8.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11. 28.>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본조신설 2021. 11. 23.] [제28조의3에서 이동 <2023. 8. 22.>] 제29조(회수·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 3. 21.] 제21조 삭제 <2007. 4. 27.> 제22조 삭제 <2008. 3. 21.> 제22조의2 삭제 <2008. 3. 21.>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3. 21.]	제30조 삭제 <2007. 12. 28.> 제30조의2 삭제 <2007. 12. 28.> 제31조 [제17조로 이동 <2009. 4. 6.>]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전문개정 2009. 4. 6.]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3.>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삭제 <2007. 4. 27.> 제24조의2 삭제 <2014. 1. 21.>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	가.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34조 삭제 <2007. 12. 28.>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3. 21.]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파쇄·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 다.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대책 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⑦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4. 1. 21.]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1. 모양 및 크기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②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발열량 2. 수은 함유량 3. 염소 함유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발열량 3. 수분 함유량 4. 금속성분 함유량 5.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황분 함유량 ③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分的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5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2020. 5. 27.>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7. 22.]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22.]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4. 1. 21.]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5. 27.> ②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별표 7의2 제2호에 따른 우수등급 이상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전문개정 2014. 7. 22.] [제목개정 2020. 5. 27.]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6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7. 22.]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8.> 1.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1. 28.>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 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나. 화력발전시설 다. 열병합발전시설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 3.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爐)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 4. 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 ④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의,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방법·사항·조건, 변경신고의 절차·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본조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7. 11. 28.]		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18. 11. 28.> 1.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 2.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 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8.>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 11. 28.> ⑦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7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을 특별자치시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3. 3. 28.>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8.> [전문개정 2014. 7. 22.] [제목개정 2018. 11. 28.]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1. 28., 2020. 5. 27.> 1. 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 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나. 제20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변경 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 13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8., 2020. 5. 27.>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본조신설 2014. 1. 21.]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8. 22.> 1.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 4.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도면을 포함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4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2018. 11. 28., 2020. 5. 27.>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8. 22.> [본조신설 2014. 7. 21.]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m³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m³ 이하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 등) ①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은 제2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부분 함유량에 관한 품질기준(이하 “부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 전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연료 공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②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하려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개선명령의 경우 그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조신설 2014. 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4. 1. 21.]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사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사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25조의13(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0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5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8.>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8.> [본조신설 2014. 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2.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 폐자원에너지 생산·사용 시설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나.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다.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도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① 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회원의 명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21.]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③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 5. 22.)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1.]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 11.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④ 삭제 <2013. 11. 22.> ⑤ 삭제 <2013. 11. 22.> [전문개정 2009. 4.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함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20. 6. 9.>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④ 삭제 <2020. 6. 9.> [본조신설 2013. 5. 22.]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1조의2 삭제 <2021. 6. 11.>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②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 [시행일: 2024. 7. 10.] 제28조의4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8. 13.]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시행일: 2024. 7. 10.] 제28조의6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부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및 회수·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4. 7. 10.] 제28조의7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 9.] [시행일: 2024. 7. 10.] 제28조의8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시행일: 2024. 7. 10.] 제28조의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5. 1. 20.]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2021. 1. 5.> [전문개정 2008. 3. 21.]		제23조의2(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 11. 28.〉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앞선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5. 22., 2014. 1. 21., 2017. 11. 28.〉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09. 5. 2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0.〉 1.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기반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2조 삭제 <2004. 12. 31.>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1.]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4. 6.] 제38조 삭제 <2005. 6. 13.> 제39조 삭제 <2005. 6. 13.>	제23조의3(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4.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관한 정보 2.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8.] [시행일: 2025. 3. 29.] 제33조의3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 1. 한국환경공단 2. 삭제 <2009. 12. 24.>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개정 2009. 4. 6.]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4. 6.]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2., 2016. 1. 21.>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1. 시·도지사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09. 12. 24.>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9. 4. 7.]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8. 3. 21.]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 전에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8. 12. 3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 4. 6.]	제25조의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34조의5제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산설 2021. 1. 5., 2023. 3. 28.>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설 2021. 1.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보관·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설 2021. 1. 5.> [본조신설 2008. 3. 21.]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수출용 증고의류 2. 유리 및 유리병류(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한다) 3.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21. 6. 11.]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21. 6.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본조신설 2008. 3. 21.] [제목개정 2017. 11. 28.]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본조신설 2008. 3. 21.] [제목개정 2017. 11. 28.]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3. 21.]		제25조의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9 삭제 (2017. 11. 28.)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5장 보칙 (개정 2008. 3. 21.)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45조 삭제 (2009. 4. 6.)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본조신설 2009. 4. 7.] [제25조의2에서 이동 (2021. 6. 11.)]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의 공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3. 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 6.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 연월일 5. 회원의 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전문개정 2009. 4. 6.]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익인척)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익이 있으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삭제 <2017. 11. 28.> 제35조의3 삭제 <2017. 11. 28.>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4. 1. 21., 2015. 1. 20., 2018. 12. 24., 2019. 11. 26., 2020. 6. 9., 2023. 3. 28.>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1.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0.] 제46조의3(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2014. 2. 12., 2014. 7. 22., 2016. 1. 21., 2019. 12. 24., 2022. 7. 1., 2022. 12. 2., 2024. 4. 11.>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법 제9조의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하는 자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또는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4.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들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2015. 1. 20.> [전문개정 2008. 3. 21.]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의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 4. 7.]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9. 12. 24., 2022. 7. 1.>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4. 1. 21., 2015. 1. 20., 2018. 12. 24., 2019. 11. 26., 2020. 6. 9., 2023. 3. 28.) -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화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제25조의4에 따른 고품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 제25조의7에 따른 고품연료제품 사용자 - 제27조에 따른 조합 -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②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리대장 사본) 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만 해당한다)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 반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 관리대장 -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7.]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1. 1., 2013. 11. 22., 2017. 12. 29., 2020. 5. 27.) -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서 -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삭제 (2012. 1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⑤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24. 1. 9.> ⑥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2015. 1. 20., 2024. 1. 9.>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2024. 7. 10.] 제36조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 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5. 삭제 <2016. 1. 21.> 6. 삭제 <2016. 1. 21.> 7. 삭제 <2016. 1. 21.> 8. 삭제 <2016. 1. 21.> 9. 삭제 <2016. 1. 21.> [전문개정 2009. 4. 7.]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2022. 7. 1., 2024. 4. 11.> 1.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의2.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용기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자료의 제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1. 26.>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1. 납세자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3. 21.]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20. 4. 14.> 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09. 4. 6.]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2. 30., 2022. 5. 3., 2022. 6. 7.>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 2.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1.]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7. 21., 2022. 5. 3.> 1. 법 제25조의4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 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 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같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명령 시 청문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법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 다. 법 제41조제2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24.,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2. 11., 2014. 7. 21., 2017. 12. 26., 2019. 7. 2., 2019. 12. 24., 2021. 5. 25., 2021. 6. 8., 2022. 6. 7., 2023. 8. 22., 2024. 3. 19.> 1.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 1의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 1의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제징수 2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채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공개 4의3.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4의4.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 4의5.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운영 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1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정산 및 반환 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18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 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통보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산설 2013. 11. 20., 2014. 7. 21.〉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 〈산설 2016. 1. 19.,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9. 12.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2.>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보조산설 2015. 11. 26.]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7. 11. 28.>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8. 13.]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전문개정 2009. 4. 6.]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2. 3. 8.> 1.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2014년 1월 1일 1의2. 제8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1의3.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2022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비율: 2022년 1월 1일 2의3.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제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20. 5. 27., 2022. 7. 1., 2024. 4. 11.> 1.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3. 4. 17.>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한: 2014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 4. 17.> 6. 삭제 <2023. 4. 17.> 6의2. 제1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 2016년 1월 1일 7.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과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고�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벌칙 〈개정 2008. 3. 21.〉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4. 1. 21.]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 2021. 1. 5., 2023. 3. 28.〉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제품	3.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015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0. 3. 3.〉 [전문개정 2013. 12. 30.]	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9.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방법: 202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4.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자 1의2.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 3의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4. 1. 21.]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1. 26.>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 2020. 6. 9., 2023. 3. 28.>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 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본조신설 2009. 4.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5. 1. 20., 2019. 11. 26.>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 1. 21.,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1. 26.>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 2020. 6. 9., 2023. 3. 28., 2024. 1. 9.>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5. 1. 20., 2019. 11. 26., 2024. 1. 9.>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 1. 21.,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2024. 7. 10.] 제41조 제42조 삭제 <2014. 1. 21.> 부칙 <제6653호, 2002. 2. 4.>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중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처리된 제품·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부담금”을 “폐	부칙 <제17808호, 2002. 1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필름 포장재에 한한다) 및 제1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6호 바목·사목 및 제30조(제18조제6호 바목·사목의 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은 이 법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리튬전지 및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의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2002년도 제품출고실적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납부시기·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2003년도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31일까지 산정·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135호, 2002.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 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용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소매업종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청량음료의 반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반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 2004.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2004. 12.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21호, 2003. 12. 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3호, 2003. 12. 30.>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296호, 2004. 12. 31.>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2003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39호, 2003. 6. 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호, 2005. 12. 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 2006. 6. 29.>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2·제26조제11호의2 및 별표 6 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 2006. 1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페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기준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페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페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페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8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464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 부칙 <제7778호, 2005.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4호, 2006. 3.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8012호, 2006. 9.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7호, 2004. 1. 29.>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8호, 2004. 6. 1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요건을 갖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31호, 2007. 3. 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 2007. 6. 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 2007. 10. 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212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내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05호, 2007. 4. 2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8442호, 2004. 6. 2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3호, 2004. 11.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항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 항목 내지 항목 및 제18조제6호 항목 내지 항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 ③(재활용의무물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물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물은 2004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2003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합계한 양으로 하는 값으로 한다. 부칙 <제18611호, 2004.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63호, 2005. 6. 1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항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항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67호, 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 2008. 3.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27호, 2007. 5.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611호, 2007. 8. 3.>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9006호, 2005. 8. 17.>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4호, 2005. 12. 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7호, 2006.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4호, 2006. 5. 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72호, 2006. 6. 29.>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92호, 2008.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호, 2008.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 2009.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6> 까지 생략 <5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8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	라목 및 제47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호 마목·바목 및 별표 6 제3호 마목·바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1호, 2007.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100분의 20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 100분의 60 ③(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된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088호, 2007. 6. 11.>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호, 2007. 9.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40호, 2009.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 2009. 12. 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 2010. 12. 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84호, 2009. 4. 1.> (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685호, 2009. 5.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부터 ㉔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 부터 ㉑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79호, 2007. 12. 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5호, 2008.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 2012. 11.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97호, 201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페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페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및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조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의 실시 주기를 적용한다. 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0389호, 2010. 7. 23.〉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생략 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부칙 〈제21415호, 2009.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생략 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6호, 2009. 8.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라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5호, 2013. 11. 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 2014. 2. 12.〉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 2014. 6. 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 2014.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5년 7월 22일까지 제20조의9제1항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262호, 2012. 2.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6〉까지 생략 〈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4조의2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617호, 2015.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보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 2016.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취급수료를 정할 때까지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0호, 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 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원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3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88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6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19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품질제품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품질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품질제품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고품질	2. 한국환경공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958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재활용의무 대상이 되는 포장재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마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395호, 2010. 9.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단서 및 별표 7 제1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품질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3항 단서, 별표 9 제1호바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에 따라 고품질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29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료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36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검사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30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부터 <89>까지 생략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497호, 2010. 11. 1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35호, 2010.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777호, 2018.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보일러시설에 대해서는 제20조의7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보일러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가 전산망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 중인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798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1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7, 제38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3호·제3호의2, 제39조의2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으로 한다. 부칙 〈제16083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질·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611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	부칙 〈제22715호, 2011. 3. 22.〉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 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155호, 2012. 10. 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8조… 〈생략〉…개정규정은 2013년	부칙 〈제805호,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미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 2019. 12. 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채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발적 협약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중인 품목(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품목: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미만인 품목: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제4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 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26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6조, 제18조, 제36조제1항제5호,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나목·라목 및 별표 2 비고 제2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331호, 2013.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수액세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㉓까지 생략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9호, 2021.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 202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호, 2022.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 2023.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던 미반환보증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확인한 반용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그 보증금·취급수수료를 반환·지급한다. 부칙 〈제17847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9조의2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08호, 2022. 12. 3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제4조 생략 부칙 〈제24638호, 2013.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869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8조제1호, 별표 2 제6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별표 4 제12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출하여야 하는 2014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 2023.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 2023.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 2023. 12. 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87호, 2024.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311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5조의8, 제25조의11, 제37조 및 제39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19963호, 2024. 1.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호, 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5133호, 2014. 1. 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167호, 2014. 2. 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6호, 2014. 7. 1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9호의 업종란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③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㉔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497호, 2014. 7. 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4호, 2014.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고 또는 수입된 혈관내투브·카테터, 비이식형혈관 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수비용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88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67호, 2015.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3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06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36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5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806호, 2017. 1. 2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71호, 2017. 3. 29.>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6)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8499호, 2017. 12. 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312호,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기본계획 부칙 〈제2945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의2, 제19조, 제44조제1호,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호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품·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06호, 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259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방법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의무물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2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물을 산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0618호, 2020.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같은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2020년도 매출·수입액 또는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49호, 2021. 2. 17.> (주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주세법」 제4조제2호”를 “「주세법」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세법」 제4조제3호”를 “「주세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701호,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제7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아이스팩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반환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업자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2022년도에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양에 관한 자료를 다음 연도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빈용기 사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를 사용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2021년도분의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745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8호, 202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6일 2. 별표 1 제11호·제1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8조제7호,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호라목 및 별표 6 제7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호나목 및 별표 6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발광다이오드 조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2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2022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2673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따른 적용례) 제10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1회용 컵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76호, 2023.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은 재활용부과금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장한 재활용부과금은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다. 부칙 〈제34317호, 2024. 3. 19.〉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33호, 2024. 5. 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545호, 2024. 6. 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6121
[별표 1의2]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6121
[별표 1의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6122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6123
[별표 3]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	6124
[별표 3의2]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	6125
[별표 4]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6128
[별표 5] 재활용의무를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128
[별표 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	6129
[별표 7]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6131
[별표 7의2]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6131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6132

[별표 1] <개정 2021. 11. 23.>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
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별표 1의2] <개정 2024. 3. 19.>

중단명령을 같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명령을 같음하
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그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중단기간”이라 한다)에 제3호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
로 한다.
2. 중단기간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중단을 명한 기간을 말하며, 중단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3. 중단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포장재·제품의 1일당
출고·수입량에 재활용의무율과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1일당 과징금= 1일당 출고·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단위비용
4.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1일당 출고·수입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360일로 나누어 환산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출고·수입량을 각각 90일 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당 출고·수입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의3] <개정 2022. 5. 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나.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기록매체 복제업(C182)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가. 반도체 제조업(C261)
	나. 전자부품 제조업(C262)
	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C264)
	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바.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C272)
	다.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9. 전기장비 제조업(C28)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나. 철도장비 제조업(C312)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라.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13. 가구 제조업(C32)	가구 제조업(C320)
14. 기타 제품 제조업(C33)	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나. 악기 제조업(C332)
	다.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C333)
	라.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마.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른다.
2. 괄호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21. 5. 25.>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1. 살충제, 유독 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 이하 2) 500㎖ 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나. 유리병 1) 500㎖ 이하 2) 500㎖ 초과	개당 56.2원 개당 84.3원
	다. 금속캔 1) 500㎖ 이하 2) 500㎖ 초과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부동액	부동액	ℓ 당 189.8원
3.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4.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5. 담배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 카트리지를 말한다)당 24.4원
6. 플라스틱제품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7.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전체 중량 kg당 313원

※ 비고

- 위 표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위 표 제3호에 따른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한다.
- 위 표 제6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 투입량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연간 매출액 10억원 또는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이 경우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제조업자의 경우

$$\text{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times 10\text{억원} \div \text{연간 매출액(원)}$$
 - 수입업자의 경우

$$\text{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times 9\text{만달러(미화)} \div \text{연간 수입액[수입항 도착가격(CIF) 기준 미화 달러]}$$
 - 나.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10톤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고,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추가 감면한다.
 -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text{연간 매출액 } 100\text{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times 70\text{퍼센트}) + (\text{연간 매출액 } 100\text{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times 50\text{퍼센트})$$
 - 나.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text{연간 매출액 } 200\text{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times 50\text{퍼센트}$$
-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고,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며,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추가 감면한다.

$$(\text{연간 매출액 } 100\text{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times 60\text{퍼센트}) + (\text{연간 매출액 } 100\text{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times 30\text{퍼센트})$$

7. 제5호 각 목의 구분 및 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나.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연간 매출액 - 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다. 연간 매출액 2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2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8. 위 표 제7호의 제품이 반제품인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3] <개정 2009.12.31>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

1. 계산기 및 전자수첩
2. 면도기,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3. 휴대용 전등
4.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5.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6. 카메라
7. 시계
8. 어린이용 완구
9.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

제품	세부 내용
1. 산업용 필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 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비닐·랩
2. 교체용 정수기 필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교체용 정수기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한다)
3. 안전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포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4. 어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어업·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5. 로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6. 폴리에틸렌 관	폴리에틸렌[가교폴리에틸렌(XLPE)은 제외한다]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 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
7.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갈레받이, 반경관(半徑管)을 포함한다]

제품	세부 내용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평판
8.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과 이들 기구 및 용기·포장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밀폐·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를 포함한다) 2) 공기, 대접, 접시, 식판 3) 물병·물통,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 4) 도마 5) 식기 건조대 나. 목욕, 세탁, 청소, 이·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비누통·비누 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용 의자 2) 휴지통, 쓰레받기 3) 빨래판, 빨래 바구니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 1)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 2) 옷걸이 3) 바구니 4)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
9. 팻렛(pallet)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10. 플라스틱 운반상자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굴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한다)
11. 창틀·문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제품	세부 내용
12. 바닥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膜)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13. 건축용 단열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bead)를 발포·성형한 제품
14. 전력·통신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絶緣物) 또는 피복재
15.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부품 가. 범퍼 나. 몰딩·가니쉬 다. 언더커버 라. 워셔탱크 마. 냉각수탱크

[별표 4] <개정 2022. 5. 3.>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19조 관련)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
4. 반침점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5. 반침점시 등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6.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방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 및 방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8. 합성수지재질의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1.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2.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3.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14. 제18조제3호의2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5. 제18조제11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

※ 비고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의 구분에 따른다.

2.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은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수입액 기준 또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인 설립·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제품의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4.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수축산물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5. 위 표 제6호 및 제7호에서 “반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반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되, 위 표 제1호 및 제2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반침접시와 용기 등은 제외한다.
6. 위 표 제7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한 상자를 말한다.
7. 위 표 제10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한다.
8. 위 표 제10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9. “연간 매출액”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10. “연간 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한 연간 수입액을 말한다.
11. 제1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5] <개정 2021. 11. 23.>

재활용의무물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제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은 환경부장관이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재활용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0.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의 최종 연도까지의 연차별 재활용의무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평균 재활용률} + (\text{장기 재활용목표율} - \text{평균 재활용률}) \times \text{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 + \text{조정계수}$$

※ 비고

- 1) “장기 재활용목표율”이란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란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해당 연도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연도별 반영계수는 다음과 같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1/5	1/4	1/3	1/2	1

- 3) “재활용률”이란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량을 합한 총재활용량(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을 합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의 3분의 2를 줄인다)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제18조제5호에 따른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고,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을 합한 총출고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4) “평균 재활용률”이란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재활용률에 대해 최근 연도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 재활용률을 말하며, 가중치는 최근 연도순으로 0.5, 0.3, 0.2로 적용한다. 다만,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전전년도부터 과거 2년 이내 재활용률을 가중치 없이 평균한 값을 말한다.
- 5) 전전년도 회수·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 재활용률” 대신 “전년도 재활용의무율”을 적용한다.

6) "조정계수"란 재활용요인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재활용 여건의 변화로 해당 연도에 재활용의무율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율을 변경할 수 있다.

4.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용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22. 5. 23.>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기준비용
1. 제18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가. 종이팩	kg당 185원
	나. 유리병	kg당 34원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kg당 87원 kg당 151원
	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발포폴리프로필렌(EPP)·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kg당 317원
	2) 폴리염화 비닐(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kg당 981원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재 가) 단일재질 무색 나) 단일재질 유색 다) 복합재질	kg당 178원 kg당 235원 kg당 360원
	4)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5)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6) 1)부터 5)까지 외의 복합재질 포장재	kg당 327원 kg당 467원 kg당 467원
2. 제18조제2호에 따른 포장재	가.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재 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kg당 317원 kg당 467원
3. 제18조제3호에 따른 포장재 및 같은 조 제3호의 2에 따른 제품	단일·복합재질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재질[폴리염화 비닐(PVC)은 제외한다] 필름류	kg당 467원
4. 제18조제4호에 따른 제품	가. 수은전지	g당 39.6원
	나. 산화은전지	g당 35.5원
	다. 니켈카드뮴전지	g당 0.78원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기준비용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g당 0.8원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g당 0.35원
	바. 니켈수소전지	g당 0.16원
5. 제18조제5호에 따른 제품	타이어	kg당 30원
6. 제18조제6호에 따른 제품	윤활유	ℓ 당 20원
7. 제18조제7호에 따른 제품	가. 형광등	개당 143원
	나. 발광다이오드 조명	
	1) 전구형(電球形)	kg당 1,100원
	2) 직관형(直管形)	kg당 900원
	3) 평판형(平板形)	kg당 600원
8. 제18조제8호에 따른 제품	수산물 양식용 부자	kg당 627원
9. 제18조제9호에 따른 제품	곤포(뭉치) 사일리지용 필름	kg당 527원
10. 제18조제10호에 따른 제품	합성수지재질 김발장	kg당 545원
11. 제18조제11호에 따른 제품	가. 산업용 필름	kg당 527원
	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	kg당 404원
	다. 안전망	kg당 545원
	라. 어망	kg당 545원
	마. 로프	kg당 545원
	바. 폴리에틸렌 관	kg당 527원
	사. 폴리염화비닐 제품	kg당 527원
	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kg당 327원
	자. 파렛트	kg당 427원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기준비용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	kg당 427원
	가. 창틀 · 문틀	kg당 607원
	타. 바닥재	kg당 607원
	파. 건축용 단열재	kg당 645원
	하. 전력 · 통신선	kg당 685원
	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kg당 527원

※ 비고

- 제1호나목의 경우 용기의 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 제1호다목의 경우 뚜껑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 제1호의 포장재의 중량은 뚜껑·마개 등 부분품의 재질과 관계없이 부분품의 중량을 포함한 전체 중량으로 한다.
- 제6호의 윤활유는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기어유만 해당한다.
- 위 표에서 "복합재질"이란 합성수지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 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한다. 다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기준

- 1) 법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고회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은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금지기간”이라 한다)에 3)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2) 금지기간은 법 제25조의10제2항 본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금지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연간 고회연료제품의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4)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연간 고회연료제품의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1년간 총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연간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해당 고회연료제품이 법 제25조의5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 금액의 산출기준

연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
1,000톤 이하	50,000원
1,000톤 초과 2,500톤 이하	100,000원
2,500톤 초과 5,000톤 이하	200,000원
5,000톤 초과 7,500톤 이하	300,000원
7,500톤 초과 10,000톤 이하	400,000원
10,000톤 초과 12,500톤 이하	500,000원
12,500톤 초과 15,000톤 이하	600,000원
15,000톤 초과 17,500톤 이하	700,000원
17,500톤 초과 20,000톤 이하	800,000원
2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	900,000원
25,000톤 초과 30,000톤 이하	1,000,000원
30,000톤 초과 40,000톤 이하	1,500,000원
40,000톤 초과 50,000톤 이하	2,000,000원
50,000톤 초과 60,000톤 이하	2,500,000원
60,000톤 초과 70,000톤 이하	3,000,000원
70,000톤 초과 80,000톤 이하	3,500,000원
80,000톤 초과 90,000톤 이하	4,000,000원
90,000톤 초과 100,000톤 이하	4,500,000원
100,000톤 초과 120,000톤 이하	5,000,000원
120,000톤 초과	6,000,000원

[별표 8] <개정 2024. 3.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2호의2	100	200	300
라.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2호의3	100	200	300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실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	100	200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8)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바.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1호	50	70	10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4호	50	150	3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10	30	50
차.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6호	50	100	300
카.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6호의2	50	150	300
타. 법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6호의3	200	250	300
파.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7호	200	250	300
하.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거.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7호의2	200	250	30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8조에 따른 화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화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2호	30	50	100
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8호			
1) 재활용자정사업자의 경우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		150	200	300
라.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9호	200	250	300
머.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0호	100	200	300
버.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1호	50	150	300
서.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어.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3호	100	200	300
저.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4호	100	150	200
처.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5호	100	200	300
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6호	100	200	30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3호	50	70	1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6139
[별표 1의2] 제조·수입·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6141
[별표 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6141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	6143
[별표 4] 비용기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6144
[별표 5] 비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6144
[별표 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 관련)	6146
[별표 7]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	6148
[별표 7의2] 고품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	6149
[별표 8]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	6150
[별표 8의2]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	6150
[별표 9] 고품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	6151
[별표 10] 고품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	6153
[별표 11] 고품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	6154
[별표 1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6155

[별표 1] (개정 2024. 4. 1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 가. 폐금속류
- 나. 폐산·폐알칼리
- 다. 폐유기용제
- 라. 폐섬유
- 마. 하수·폐수처리 오니(汚泥)
- 바. 공정 오니
- 사. 육가공 잔재물
- 아. 수산물가공 잔재물
- 자. 가죽가공 잔재물
- 차. 식물성 잔재물
-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 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
- 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 하. 폐전지류
- 거. 폐석고류
- 너. 폐석회류
- 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용지
 -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한 중질지(中質紙) 또는 백상지(白上紙)
 -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 4) 1)부터 3)까지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나.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 이상 사용한 백판지(白板紙)
-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Liner)
- 4) 1)부터 3)까지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그 밖의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나. 삭제 <2013.1.31>

4. 페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페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成形)제품

나. 페플라스틱 재생원료(펠릿, 플레이크 등)

다. 페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라. 페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삭제 <2013.1.31>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나. 폐고무를 분쇄한 고무분말

다.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와 매탄올
-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마. 페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 바. 삭제 <2013.1.31>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 나.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업제품
- 다.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 마. 시멘트 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무색병
-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 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 가.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한 비누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및 바이오중유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별표 7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행연료제품
- 가. 일반 고행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행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행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 2)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 3) 폐합성섬유류
 - 4)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 5) 페타이어
 -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행폐기물
- 나. 바이오 고행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행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1) 폐지류
 - 2) 농림폐기물(왕겨, 찻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 3)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받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 4)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굴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 5) 초본류 폐기물
 -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 매스(Biomass) 폐기물
11.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별표 1의2] <개정 2024. 4. 11.>

제조·수입·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구분	중단기간
1. 총 개선기간이 1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3개월
2. 총 개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6개월
3. 총 개선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1년

비고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해당 제품이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중단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4. 4. 11.>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 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 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 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 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 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 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 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삼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나. 1회용 우산 비닐 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교

-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퇴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

(제10조의3제1항 관련)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 밖의 시설
 - 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영 제14조의6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만 해당한다)
 - 1)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지도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

- 1)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 2) 시설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 증질지, 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 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하여야 한다.
- 3)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 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22. 12. 2.>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1.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	190ml 미만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1,000ml 이상	350원/개

2.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대상 품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4항의 제품	300원/개

[별표 5] <개정 2022. 12. 2.>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1.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 1) 지역별로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2)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 3) 회수된 빈용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 파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 4) 표준용기는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용해야 하며, 표준용기가 아닌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제품 출시 후 3개월 내에 수립하여 회수·재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5)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반환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6) 환경부장관이 4)에 따라 수립한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 7)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및 자원순환보증금 환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홍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 8)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용기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9)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출고, 회수, 파손 및 신병 투입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나. 빈용기 취급 도매업자

- 1) 도매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공급한 소매점에서 보관 중인 빈용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매점과 협의하여 회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 회수된 빈용기에 대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전액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매점 등과 협의하여 취급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 3)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빈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
- 4) 회수된 빈용기를 제품의 제조·수입 회사별(표준용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용량별, 회수경로별(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거쳐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품별(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별을 말한다)로 각각 분류하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5) 회수용기 보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
- 6)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 1)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동일일이 1일 30회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 나) 빈용기가 훼손·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2)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4)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해당 빈용기를 제조·수입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하여 도매업자 및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하는 도매업자와 협의하여 분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5)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 6) 반환되는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해야 한다.
- 7)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2.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가.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 2)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과 처리지원금을 제3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 3)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나)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 다)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마)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 바) 환경부장관이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만을 반환받는 매장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4)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5)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이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3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 6) 자원순환보증금 및 처리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판매·반환 수량,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인계한 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나.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 1) 반환된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운반사업자는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제3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2)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회수 주기,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사업자는 1회용 컵의 수거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중단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다.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 1)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또는 수집·운반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1회용 컵을 표준용기와 표준용기가 아닌 1회용 컵으로 구분하여 재질별로 선별해야 하며, 재활용 방법이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 2) 1회용 컵을 재활용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3.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준수사항
- 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 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원순환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다. 1회용 컵을 적절하게 수집·운반할 수 있는 수집·운반사업자와 재질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별표 6] <개정 2023. 4. 19.>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

1. 종이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페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나. 페유리병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다. 페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3. 금속캔: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금속원료를 제조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할 것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다만,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한 것만 해당한다)
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5.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나.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코팅제품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6.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페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영 제18조제1호카목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 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에는 탈유(脫油)만 한 것도 해당한다]

나. 페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페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의 제조[저위발열량은 킬로그램(kg)당 6천킬로칼로리(kcal) 이상이어야 한다]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사.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로 가스화원료, 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한 시설에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제조

7. 전지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시 전지류가 폭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은 제품 생산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것. 다만, 리튬전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따라 회수·재활용한 금속물질을 제외한 잔재물[고철, 합성수지, 전해액, 공정 오니, 분진, 광재(금속을 분리하고 난 찌꺼기를 말한다) 및 리튬전지의 파쇄물 등을 말한다]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溶出)시험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2)에 따른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물질	용출액 기준
납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3밀리그램(3mg/ℓ) 이상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ℓ) 이상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0.3밀리그램(0.3mg/ℓ) 이상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8. 타이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페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나. 페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다. 페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

라. 페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을 제조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

사. 페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遮水材)로 이용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9. 윤활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할 것

10. 형광등: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시 형광등이 파손되어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은 금속수은이나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나.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 수는 함유량이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L) 미만일 것
-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 라.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11.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합성수지 및 유기금속(有機金屬) 등은 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로 제조하고, 그 잔재물은 안전하게 처리
- 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별표 기] <개정 2020. 5. 27.>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

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5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50 이하
발열량		kcal/kg	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			
수분 함유량		wt. %	15 이하		25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1.0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50 이하			
	비소(As)		13.0 이하			
회분 함유량		wt. %	20 이하			
염소 함유량		wt. %	2.0 이하			
황분 함유량 (페타이어만으로 제조한 경우)		wt. %	0.6 이하 (2.0 이하)			

비고

-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주문서 또는 계약서 등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길이를 100mm 초과하여 제조할 수 있다.
- 비성형제품으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mm, 세로 120mm 이하(체 구멍이 원형인 경우 면적이 14,400㎟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할 수 있다.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12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120 이하
발열량		kcal/kg	수입 고형연료제품: 3,1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000 이상			
수분 함유량		wt. % <td colspan="2">10 이하</td> <td colspan="2">25 이하</td>	10 이하		25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0.6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00 이하			
	비소(As)		5.0 이하			
	크로뮴(Cr)		70.0 이하			
회분 함유량		wt. % <td colspan="4">15 이하</td>	15 이하			
염소 함유량		wt. % <td colspan="4">0.5 이하</td>	0.5 이하			
황분 함유량		wt. % <td colspan="4">0.6 이하</td>	0.6 이하			
바이오매스		wt. % <td colspan="4">95 이상</td>	95 이상			

비고

1.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4. 바이오매스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의 함유 성분 중에서 수분과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7의2] 〈신설 2020. 5. 27.〉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

1.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별 평가점수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	단위	평가점수		
		3점	2점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의 경우)	kcal/kg	≥6,000 (≥6,150)	≥5,000 (≥5,150)	≥3,500 (≥3,650)
수은 함유량	mg/kg	≤0.2	≤0.5	≤1
염소 함유량	wt. %	≤0.5	≤1	≤2
황분 함유량 (페타이어마인으로 제조한 경우)	wt. %	≤0.2 (≤1.6)	≤0.4 (≤1.8)	≤0.6 (≤2.0)

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	단위	평가점수		
		3점	2점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의 경우)	kcal/kg	≥3,600 (≥3,750)	≥3,300 (≥3,450)	≥3,000 (≥3,150)
수은 함유량	mg/kg	≤0.1	≤0.3	≤0.6
염소 함유량	wt. %	≤0.1	≤0.3	≤0.5
황분 함유량	wt. %	≤0.05	≤0.1	≤0.6

2.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

품질등급	구분기준
최우수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10점 이상
우수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8점 이상 10점 미만
양호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4점 이상 8점 미만

[별표 8] <개정 2021. 9. 16.>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항 목	산 정 기 준
인건비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중급기술자 2명의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출장비	현지 확인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모든 경비	인건비의 50% 이내로 한다.
검사비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별표 8의2] <신설 2018. 11. 2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구분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개요
 - 사업자명, 대표자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작 예정일 및 운영기간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용량 및 설치 부지면적
 - 일일 가동 시간 및 연간 가동 일수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계획
 -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공급 업체명 및 업체별 공급 계획량, 공급 계약기간
 -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 에너지 이용계획: 사용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용도별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
- 방지시설 설치계획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주변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관련 계획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 계획
 -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또는 주민지원 계획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 등 시설 운영 관련 정보공개 계획

[별표 9] (개정 2020. 5. 27.)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기준

-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 나.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 다. 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 비산(飛散)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라. 시설 전체나 각 설비가 화재 발생에 대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연소감지센서 및 방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마. 해충의 발생이나 유입·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바.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1)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구조물(사일로, 지하퍼트 등)일 것
 - 2) 서로 다른 종류의 고형연료제품이거나 같은 종류라도 서로 다른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획을 나누어 보관하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 3) 시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고형연료제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비활성기체 주입장치 등 발화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4)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환기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록·보관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5) 고형연료제품의 보관량이나 반입량·반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검사기준

가. 제조능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계량시설

제조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반입시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통한 폐기물 반입 작업이 용이한 구조일 것

라. 저장시설

- 1) 제조시설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휴일 및 시설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최소 10일분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제조시설 외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체하중(自體荷重), 적재하중(積載荷重), 지진력(地震力) 및 온도응력(溫度應力)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 3)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마. 투입시설

- 1) 일정량의 폐기물을 시설 내부에 연속적으로 투입·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 투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바. 이송시설

- 1)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이 연속적으로 이송되고, 이송과정에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 시간 당 이송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의 이송과정에서 유기물 부착, 정제, 껌, 탈리(脫離)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사. 파쇄·분쇄·절단시설
- 1) 파쇄·분쇄·절단시설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정량 투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 파쇄·분쇄·절단 규격의 조정 및 소모품(파쇄 칼날 등)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 아. 선별시설
- 1)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선별(입도선별, 풍력선별, 자력선별, 비철금속선별, 광학선별 등)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2) 선별된 후 발생하는 불연물 등의 잔재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자. 건조시설
- 1)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및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2) 시설 내부의 가스온도를 측정·기록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3) 시설 외부의 표면온도를 8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외부를 내열도료(塗料)로 도색하거나 단열처리 하였을 것
- 4) 배기구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차. 성형시설
- 1)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중 모양 및 크기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일 것
- 2) 성형을 마친 고형연료제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카. 포장시설
- 1) 고형연료제품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 고형연료제품의 단위 포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타. 환경오염 방지시설
-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검사기준

- 가.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에너지(열, 전기 등) 전환율을 자동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나.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연소가 가능한 구조이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다. 그 밖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세부 검사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사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10제1항 관련)

1.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가. 성상이 서로 다른 고형연료제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악취가 발생하거나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시간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 다. 고형연료제품 더미는 붕괴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및 화재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 라. 고형연료제품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할 것. 다만, 보관창고를 갖추고 추가로 실외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해야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을 포장하여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마. 고형연료제품을 폐쇄된 장소에서 보관할 경우 보관시설 내부의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주기적으로 측정·기록할 것
- 바. 고형연료제품 운반차량은 차량 옆면에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명 등의 제품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고, 고형연료제품을 밀폐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비산먼지 또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나 악취가 폐기물 저장시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과정에서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다. 삭제 <2015.12.22.>

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 각 호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즉시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마. 라목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고형연료제품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라목에 따른 측정기관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별표 11] <개정 2020. 5. 27.>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

(제20조의11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금지명령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의 기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의10 제2항			

위반사항	근거법령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5호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고	금지명령 1개월	금지명령 3개월
2) 법 제25조의5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 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별표 12] <신설 2024. 4. 1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사용되는 재생원료	적용대상	사용비율
1. 제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가.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퍼센트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20퍼센트
	다. 그 밖의 제품·용기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용기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06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6161
제2조(적용범위)	6161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6161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6161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6161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6161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6162
제7조 삭제	6162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6162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6162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6162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6162
제12조(규제의 재검토)	6162
부칙	616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	1993. 8.17	총 리 령	제430호
전부개정	2003. 4. 3	환경부령	제137호
개정	2006. 3.14	환경부령	제202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12.31	환경부령	제355호
	2011. 1. 6	환경부령	제392호
	2011.11.17	환경부령	제430호
	2012. 9.28	환경부령	제477호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 9.17	환경부령	제518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3.16	환경부령	제644호
	2016.10.10	환경부령	제676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병명용어 장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1.29	환경부령	제846호
	2021. 9.10	환경부령	제933호
	2022. 4.29	환경부령	제984호
	2023. 4.17	환경부령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장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2조(적용범위) 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송수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 4. 29.]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철탍(레이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메추리알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전문개정 2011. 11. 17.]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16.]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9. 10.>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들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7조 삭제 (2009. 12. 31.)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들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1. 17.]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들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크기·형태 및 포장재질·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 11. 17.]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화장·분장)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③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전문개정 2011. 11. 17.]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전문개정 2020. 1. 29.]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4. 17.>

1. 제3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3. 4. 17.>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제137호, 2003.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02호, 2006. 3.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 2009. 12. 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 2011.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 2011.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 2012. 9. 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518호, 2013.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축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 2016.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6호, 2016.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3호, 2021.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 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6167
[별표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6168
[별표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 관련)	6168

[별표 1] (개정 2022. 4. 29.)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1. 단위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decoration cake)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나.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다.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라.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마. 의약품류	의약품류	20% 이하	2차 이내
	바.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사.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2.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06.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2] <개정 2011.11.17>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검사결과	포장재질	1차:	2차:
	포장공간비율	%(기준: % 이하)	
	포장횟수	차(기준: 차 이내)	
검사성적서 발행번호			
검사일 등			
전문검사기관명			

비고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 또는 내부·외부 포장재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 표의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표시 내용을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6.3.16.>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 이후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비고

1.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 중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의 감소율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제7편 자원순환

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177 제2조(정의) 617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17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178 제5조(사업자의 책무) 6179 제6조(국민의 책무) 6180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6180 제8조 삭제 6180 제2장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함유기준 등) 6180 제10조(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6181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6182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6183	제1조(목적) 6177 제2조 삭제 6180 제3조 삭제 6180 제4조 삭제 6180 제5조 삭제 6180 제6조 삭제 6180 제7조 삭제 6180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6180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6181 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6181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 6182 제12조(재활용사업자) 6183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6183	제1조(목적) 6177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6178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618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6184		
제14조(재질·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6184		
제3장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절 폐전기·폐전자제품		
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6185	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6185	
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6186	제14조의2(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6185	
제16조의2(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6188	제15조(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6186	
제16조의3(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6188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6186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6187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6189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6187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6188
	제15조의4(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6188	제5조의2(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6188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6189	제5조의3(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6189
	제15조의6(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6189	
	제15조의7(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6189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6191	제1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6191	제5조의4(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6190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 6192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6190
	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6192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6191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6192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619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6194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6194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6194
제18조의2(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6195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6194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6195
제18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6196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6195	
	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6196	
	제21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6197	
제18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6197	제2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6197	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6198
제18조의5(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6198	제21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6198	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6199
	제21조의4(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6199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6200
	제21조의5(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6200	
	제21조의6 삭제 6200	
	제22조(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6200	
제19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 6201		제11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6202
제20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6202		제11조의2 삭제 6202
제20조의2 삭제 6202		
제20조의3 삭제 6202		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6202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 6202		
제21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6203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6203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6203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6205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6205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6205		
제23조(분담금 등) 6205		
제24조(「민법」의 준용) 62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폐자동차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용의 준수 등) 6206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6208 제27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보관 등) 6208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충당) 6208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6209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6209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와 보고 등) 6210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6212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6213 제33조(결격사유) 6213 제33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6213 제33조의3(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6214 제34조(등록취소 등) 6215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6215	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용) 6206 제24조(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재활용비용 산정) 6207 제25조(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6207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6208 제27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등) 6208 제27조의2(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충당) 6208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6209 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와 제출 등) 6210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6212 제31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6212 제31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6212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212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6209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6210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6212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6214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621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6217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6217	제32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6219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6218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6219
제5장 보칙		
제36조(장부의 기록·보존) 6219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6220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222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 6223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6223 제41조(청문) 6223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6224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6220 제34조(운영관리 정보) 6222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6224 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6226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227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6227	 제20조(규제의 재검토) 6227
제6장 벌칙		
제43조(벌칙) 6228 제44조(양벌규정) 6228 제45조(과태료) 6228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6231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228	
부칙 6231	부칙 6231	부칙 623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7. 4. 27 법률 제8405호 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10. 1. 13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 2. 4 법률 제10032호 (환경정책기본법) 2010. 2. 4 법률 제10033호 2010. 3. 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 7. 23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2010. 7. 23 법률 제10390호 2011. 4. 5 법률 제10549호 2011. 7. 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 16 법률 제11913호 2015. 1. 20 법률 제13037호 2015. 1. 20 법률 제13038호 (폐기물관리법)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8. 10. 16 법률 제15842호 2018. 6. 12 법률 제15657호 2018. 10. 16 법률 제15842호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48호 2022. 6. 10 법률 제18912호 2023. 8. 16 법률 제19665호	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0호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3호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69호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3호 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6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력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5. 7. 13 대통령령 제26400호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9호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43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장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3호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4호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4호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 6 대통령령 제33026호 2022.12.30 대통령령 제33187호	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68호 개정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 1. 3 환경부령 제442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공공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1. 1 환경부령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3. 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31 환경부령 제534호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9 환경부령 제584호 (규제장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 7. 20 환경부령 제607호 2016. 3. 22 환경부령 제643호 2019. 6. 12 환경부령 제811호 2019.12.31 환경부령 제845호 2021. 7. 6 환경부령 제928호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12.30 환경부령 제1018호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에 관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21. 1. 5.)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폐 전기·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수거된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8. 10. 16.>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기술의 개발 2.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 제조·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②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전문개정 2013. 7. 16.]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물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 삭제 (2010. 2. 4.) 제2장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합유기준 등) ①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	제2조 삭제 (2011. 12. 30.) 제3조 삭제 (2011. 12. 30.) 제4조 삭제 (2011. 12. 30.) 제5조 삭제 (2011. 12. 30.) 제6조 삭제 (2011. 12. 30.) 제7조 삭제 (2011. 12. 30.)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 1.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②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해물질의 분석 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①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하는 전기·전자제품 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4.>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3. 12. 30.]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4.> 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④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⑤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8. 16.> ⑥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활용가능물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8. 16.>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2. 2010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한 등) ①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0. 7. 23., 2013. 3. 23., 2013. 7. 16., 2018. 6. 12.) ②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3. 12. 3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삭제 (2016. 3. 22.)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삭제 (2016. 3. 22.)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2019. 6. 11.)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2.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2018. 6. 12.>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8. 16.> 제14조(재질·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2.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3.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제3장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절 폐전기·폐전자제품 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 6. 12., 2020. 5. 26.>	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13. 12. 30.] 제14조의2(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본조신설 2013. 12. 3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3. 7. 16.] 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 6. 11.> $\text{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text{연도별 재활용목표량} \times \text{인구수} \times \text{의무이행 전년도}의 \text{모든 법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text{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다.	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산설 2015. 7. 13.〉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산설 2016. 3. 22., 2022. 12. 30.〉 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에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에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16. 3. 22., 2022. 12. 30.〉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에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16. 3. 22.〉 [본조산설 2013. 12. 30.]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하 “특정관리제품”이라 한다)이란 별표 3 제5호의 태양광 패널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정관리제품의 연간 출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이라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에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2016. 3. 22.〉 1. 삭제 〈2013. 12. 31.〉 2.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3.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산설 2013. 12. 31., 2022. 12. 3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3. 7. 16.] 제16조의2(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3(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본조신설 2013. 7. 16.]	한다)의 총량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에서 의무이행 전년도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22. 12. 30.>] 제15조의4(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₆)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 3. 22., 2022. 12. 30.> 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제목개정 2013. 12. 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3. 12. 31.>]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31.> [제목개정 2013. 12. 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 12. 31.>] 제5조의2(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 6. 12.> [본조신설 2015. 7. 20.] [제목개정 2019. 6. 12.]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 의무 등) 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18. 6. 12.> 1.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4.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본조신설 2019. 6. 11.] [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2022. 12. 30.>]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의6(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9. 6. 11., 2022. 12. 30.>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7로 이동 <2022. 12. 30.>] 제15조의7(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별표 3의4의 산출기준에 따른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5조의3(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③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매입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의6에서 이동 <2022. 12. 30.>]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 2019. 6. 12., 2022. 12. 30.>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 대상 전기·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2. 12. 30.> [본조신설 2012. 1. 3.]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5. 7. 20.>] 제5조의4(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 [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5. 7. 20.>]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제5조의4에서 이동 <2015. 7.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제목개정 2011. 4. 5.]	제1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매입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제목개정 2011. 12. 30.]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2021. 7. 6.>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운반계획서 1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③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제목개정 2011. 12. 30.] 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	다) 사본 1부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목개정 2012. 1. 3.]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3.>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9. 6. 12., 2021. 7. 6.> 1.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2.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 3. 폐기물 재활용업자 [제목개정 2012. 1. 3.]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11. 12. 30.]	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1.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목개정 2012. 1.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7. 16.> ②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3. 7. 16.> ④ 삭제 <2013. 7. 16.> ⑤ 삭제 <2013. 7. 16.> ⑥ 삭제 <2013. 7. 16.> [제목개정 2013. 7. 16.]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에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6에서 같다)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 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2013. 12. 30., 2016. 3. 22.>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016. 3. 22.> ⑤ 삭제 <2019. 6. 11.> ⑥ 삭제 <2019. 6. 11.> [제20조에서 이동 <2013. 12. 30.>]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	[제목개정 2013. 12. 31.]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 ③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 [본조신설 2012. 11. 1.] [제목개정 2013. 12. 3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8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제2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의2로 이동 <2013. 12. 30.>] 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회수부과금은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은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 회수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회수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④ 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⑤ 삭제 <2019. 6. 11.> ⑥ 삭제 <2019. 6. 11.> [본조신설 2011. 12. 30.] [제21조의5에서 이동 <2013. 12. 3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에 그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된 자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8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① 전기·전자	제21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2. 30., 2013. 12. 30.>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12. 30.> [제목개정 2013. 12. 30.] 제2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① 법 제18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 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8조의5(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분할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1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분할 납부 등)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1조의4(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①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1조의5(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3.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1조의6 삭제 (2013. 12. 30.) 제22조(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매입량·판매량,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 6. 11., 2022. 12. 30.)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또는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출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나 차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6. 3. 22.> [제목개정 2011. 12. 30., 2013. 12. 3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처리의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제목개정 2011. 4. 5.] 제20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0조의2 삭제 (2013. 7. 16.) 제20조의3 삭제 (2013. 7. 16.)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		제11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11조의2 [제11조의2는 제5조의2로 이동 (2013. 12. 31.)] 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포함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보관·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1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목개정 2013. 7. 16.]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명세 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15. 1. 20.> 1.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 20.] 제23조(분담금 등) 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만 해당한다)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제조합이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재활용의 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제2절 폐자동차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용의 준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용(이하 “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	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용)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④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제24조(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재활용비용 산정)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제25조(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①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용을 지켜야 한다.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보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해체재활	1.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한다)가 없는 자동차 2.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②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자에게 무상으로 회수하는 장소 및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구성된 법인 3.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제27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9. 6. 11.] 제27조의2(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충당) 법 제28조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용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사업범위 및 법인의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하려는 경우 그 비용 및 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 제3항”은 “법 제28조”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와 보고 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12.>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호·생태계 변화유발 물질의 양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와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9. 6. 11.>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4.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체만 해당한다)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2.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③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⑤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료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1.)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	4.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위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12.>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삭제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3조 각 호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용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6. 11.] 제31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19. 6. 11.>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처리·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11.>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 6. 11.]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영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4.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6. 변경등록·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변경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우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 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본조신설 2013. 7. 16.]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2020. 5. 26.>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		기록·유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및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본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33조의3(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营业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감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제31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을	한다. [전문개정 2019. 6. 12.]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인계·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제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3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의4와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2. 6.]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34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3. 7. 16.>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하여 제	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6., 2021. 1. 5.>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제목개정 2013. 7. 16.]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21. 7. 6.>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3. 12. 3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36조(정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4. 공제조합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의2.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제32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9. 6. 11.>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다.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1의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 관리대장 나.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3.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4. 공제조합: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9. 6. 12.> 1.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별지 제22호서식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관리대장: 별지 제22호의2서식 2. 회수·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3호서식 3.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8호서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12.,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환경관리대장(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6. 파쇄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7.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8. 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수·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 매체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 6. 11., 2022. 12. 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기준의 준수 5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7.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8. 삭제 <2013. 12. 30.> 8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용의 준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비용 달성을 위한 이행 사항 10.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11. 법 제27조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 등의 준수 12.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 13.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13의2.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14.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가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는지 여부 14의3.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 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15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15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인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6. 12.>	15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15의5.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적정 여부 16. 제24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및 폐자동차의 가격 제34조(운영관리 정보)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9. 6. 11., 2020. 11. 24., 2022. 12. 30.> 1.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3.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4.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4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출·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5.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의 보고 6. 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6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7.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작성·제출 8.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8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8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폐 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 (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12.,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8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9. 그 밖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5. 1. 20.]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3. 29., 2011.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 6. 11., 2020. 11. 24., 2021. 7. 6., 2022. 12. 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제공 여부의 확인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6.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강제 징수 7의2.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변경된 납부기한 등의 고지 7의3.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8. 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비용의 준수 여부 확인 9.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인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분리·배출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 13. 법 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1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13의3. 법 제33조의2에 따른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13의4.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13의5.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13의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의 요구 및 검사(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접수 1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에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확인 15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에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에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확인 15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의 접수·확인 1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 이행계획서의 접수 17.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 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자료의 접수·확인 18.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확인 19. 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 고지 19의2. 삭제 (2013. 12. 30.) 19의3. 삭제 (2013. 12. 30.) 19의4.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20.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22.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소 사실의 통지 23. 제2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 결과의 통지 24.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제목개정 2020. 11. 24.] 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① 공단의 이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2. 30.>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제목개정 2011. 12. 30.]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 7. 13.]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5. 7. 13.>]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2022년 1월 1일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4. 17.> 1. 삭제 <2023. 4. 17.> 2.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3. 4.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45조(과태료) ①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2021. 1. 5.>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물을 지키지 아니	3.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2022년 1월 1일 5. 제27조 및 별표 7의2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방법: 2020년 1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사항: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 3. 8.]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 7.]	4.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서식: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자 1의3.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용을 지킴지 아니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5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5의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의4.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2020. 5. 26.>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성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 및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18. 6. 12.> 1. 삭제 <2021. 1. 5.> 2.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니하거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7. 23.] 부칙 〈제8405호, 2007. 4.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부칙 〈제20480호, 2007.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전기·전자제품으로서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자동차 중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 2008년 7월 1일	부칙 〈제268호,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로 본다. 제3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본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본다. 제4조(폐자동차재활용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해당되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③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용도에 한하여”를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출시(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시험하기 위하여 출시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되어 2008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 2011년 1월 1일 제3조(재활용의무물의 산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고시된 재활용의무물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고시된 재활용의무물로 본다. 제4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호, 2008. 3.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442호, 2012. 1. 3.〉 이 규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 2012. 11.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한다. 7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7> 까지 생략 <5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⑱ 부터 ⑳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983호, 201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34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 2014. 12. 29.> (규제정보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931호,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0032호, 2010. 2. 4.>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2769호, 2011.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63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적용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643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1호, 2019. 6. 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 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0033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89호, 2010. 7. 23.>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155호, 2012. 10. 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46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의 준수 여부 공표 기간에 관한	부칙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0390호, 2010. 7.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9호, 2011. 4. 5.〉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⑯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그 재활용의무량·회수의무량의 산출 및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6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활용·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의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회수 부과금의 산정·부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 〈50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13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400호, 2015.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5제1항·제3항 및 별표 3의 3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실적·회수실적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의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49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회수의무량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회수의무량의 산출, 그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43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서 폐가스류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6호 중 “재활용부과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3037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7의3 제2호가목1)가)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2)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93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 및 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출고하는 전기·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 및 인계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전기·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3038호, 2015. 1. 20.〉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657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2020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서를 2020년 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31184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74호, 2021. 7. 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26호, 2022. 12. 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842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8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 제45조 제2항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4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12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65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87호, 2022. 12. 30.〉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6243
[별표 1의2]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6245
[별표 2]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6245
[별표 3]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4 본문 관련)	6250
[별표 3의2]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6251
[별표 3의3]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6252
[별표 3의4]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6252
[별표 4]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6253
[별표 5]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6253
[별표 6]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6254
[별표 6의2] 삭제 <2013.12.30.>	6254
[별표 7]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	6254
[별표 7의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	6256
[별표 7의3]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	6257
[별표 7의4]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	6258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6259

[별표 1] (개정 2020. 11. 24.)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1. 냉장고: 김치냉장고·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한다): 냉온수기·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 자동차판매기: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5. 제습기: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6. 텔레비전: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의 종류와 관계없이 영상재produksi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7.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데스크톱형·노트북형·랩톱(lap top)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8.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9.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컬러식·양화(diazo)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복사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0.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와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잉크젯·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1.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프린터·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2.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3.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브라운관,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상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4. 무무선공유기: 유선·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5.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6.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세탁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7. 전기오븐: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복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8.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9. 음식물처리기: 건조식·분쇄식·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처리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0.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소독·살균·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1. 전기비데: 욕실·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2. 공기청정기: 정화 방식과 가습·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3. 전기히터: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4.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전축·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5. 전기밥솥: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6. 연수기: 경수(센물)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단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가습기: 기화식·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8. 전기다리미: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섬유의 구겨진 주름을 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9.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0.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1. 청소기: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2. 비디오 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 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3. 토스트기: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 등 빵을 굽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4. 전기주전자: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5. 전기온수기: 저장식·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6. 전기프라이팬: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7. 헤어드라이어: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8. 러닝머신: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9. 감시카메라: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0. 식품건조기: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1. 전기안마기: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의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2. 족욕기: 물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발을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3. 재봉틀: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4.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5. 제빵기: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6. 튀김기: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7. 커피메이커: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8. 약탕기: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9. 탈수기: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비고

이 표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은 직류(DC) 1,500V 이하 또는 교류(AC)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1의2] <개정 2020. 11. 24.>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전기·전자제품

종류	함유기준
가.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나. 수은	
다. 육가크롬	
라. 폴리브롬화비페닐	
마.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아. 디부틸프탈레이트(DBP)	
자.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차.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2. 자동차

종류	함유기준
가.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나. 수은	
다. 육가크롬	
라.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비고

"동일물질"이란 나사를 풀거나 절단·압착·파쇄·연마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종이, 합성수지 및 이러한 물질을 코팅한 것 등 단일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2] <개정 2020. 11. 24.> [시행일 : 2021. 7. 1.] 제1호바목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1. 전기·전자제품

가. 납

- 1) 형광튜브 유리에 함유된 중량기준 0.2%를 초과하지 않는 납
- 2)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 가)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나) 아연도금강(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다) 알루미늄에 함유된 중량기준 0.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라) 동합금(銅合金)에 함유된 중량기준 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3) 고온에서 녹는 땀납[solders: 중량기준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lead-based alloys)]에 함유된 납
- 4) 전자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 가) 축전기(capacitors) 내 비유전체(非誘電體) 세라믹 또는 유리 부분에 납이 함유된 전기·전자부품[예: 압전(壓電) 전자 장치(piezoelectronic devices), 유리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
 - 나)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이상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 다)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미만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spare parts)으로 한정한다.
 - 라)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나 독립된 반도체(discrete semiconductor)의 일부인 축전기용으로서 유전체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티탄산 지르콘산 연(PZT)에 함유된 납
- 5)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C-press compliant pin connector system) 등에 사용되는 납

- 가)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나)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 외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6) 열전도 모듈 링(thermal conduction module C-ring)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7) 광학유리 및 필터유리에 사용되는 납
 - 가) 광학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된 백(白)유리에 함유된 납
 - 나) 이온 착색된 광학필터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된 유리에 함유된 납
- 8)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과 패키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2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는 땀납(중량기준 80% 이상 85% 미만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납이 납인 합금에 함유된 납: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9) 통합회로 초소형 반도체 소자(플립 칩(flip chip) 패키지] 내 반도체 다이(semiconductor die)와 반송자(carrier)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 10) 비에스피(BSP(BaSi2O5: Pb))와 같은 인광체가 포함된 선램프로 사용되는 방전램프를 채우는 형광 파우더 내의 활성제로 사용되는 납(중량기준 1% 이하)
- 11) 불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납
- 12) 0.65mm 이하인 연결자(connectors)를 제외한 미세 피치(pitch) 부품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13) 원반형 및 평면형 배열(array) 세라믹 적층 축전기의 구멍을 통하여 기계를 납땀(soldering)하기 위한 땀납에 함유된 납
- 14) 난방, 환기, 공조 및 냉각(HVACR: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적용을 위한 냉매 포함 압축기(refrigerant-containing compressors) 내의 베어링 셸(bearing shells, 베어링의 외각 부분)과 부시류(bushes, 절연체류)에 함유된 납
- 15) 크리스털유리에 함유된 납

- 16) 아르곤과 크립톤 레이저 튜브의 유리 판막 조립(window assemblies)에 사용되는 봉합 프릿(seal frit)에 함유된 산화납
- 17) 도성합금(陶性合金)을 기반으로 한 트리머 퍼텐쇼미터(cermet-based trimmer potentiometer)에 함유된 납
- 18) 아연봉산염 유리체를 기본으로 한 고전압 다이오드(high voltage diodes)의 평판층에 함유된 납
- 19) 연소 엔진의 실린더 또는 크랭크케이스 내외부에 직접 장착된 점화모듈에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 20) 전기·전자 엔진 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의 내외부 마감재에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나. 수은

- 1)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튜브가 씌워진(콤팩트형)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 가) 일반전구용 30W 미만: 2.5mg
 - 나) 일반전구용 30W 이상 50W 미만: 3.5mg
 - 다) 일반전구용 50W 이상 150W 미만: 5mg
 - 라) 일반전구용 150W 이상: 15mg
 - 마) 일반전구용 원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의 튜브 지름 17mm 이하: 7mg
 - 바) 특수용도용: 5mg
- 2)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목적의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 가)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이중튜브가 씌워진 일반용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 (1)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tri-band phosphor) 및 튜브 지름 9mm 미만(예: T2): 4mg
 - (2)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9mm 이상 17mm 이하(예: T5): 3mg
 - (3)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17mm 초과 28mm 이하(예: T8): 3.5mg
 - (4)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28mm 초과(예: T12): 3.5mg
 - (5) 긴 수명(25,000시간 이상)의 3파장 인광체: 5mg

나)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형의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1) 튜브 지름 17mm 초과인 비직선형 3파장 인광체 램프(예: T9): 15mg

(2) 그 밖의 유형의 일반용 또는 특수용 램프(예: 유도전구): 15mg

3)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특수용 냉음극형 형광램프(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s)와 외부전극형 형광램프(EEFL: external electrode fluorescent lamps) 등에 함유된 수은

가) 짧은 길이(500mm 이하): 3.5mg

나) 중간 길이(500mm 초과 1,500mm 이하): 5mg

다) 긴 길이(1,500mm 초과): 13mg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램프에 함유된 수은

가) 저압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15mg

나) 일반용으로서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고 연색성 지수(colour rendering index)가 60Ra를 초과하는 고압나트륨(증기) 램프[high pressure sodium(vapour) lamp]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1) $P \leq 155$ W: 30mg

(2) 155 W < $P \leq 405$ W: 40mg

(3) $P > 405$ W: 40mg

다) 그 밖에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용 고압나트륨(증기) 램프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1) $P \leq 155$ W: 25mg

(2) 155 W < $P \leq 405$ W: 30mg

(3) $P > 405$ W: 40mg

라) 메탈할라이드 램프(MH)에 함유된 수은

마) 그 밖의 특수용 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

다. 욕가크롬

냉각액(cooling solution)의 중량기준 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흡수식 냉각기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 사용되는 욕가크롬

라. 카드뮴

1) 전기접촉용 및 도금용 도료의 카드뮴과 그 화합물

가) 원샷펠릿(one shot pellet) 타입의 열 차단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나) 전기접촉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열처리(striking) 광학필터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되는 유리에 함유된 카드뮴

3) 봉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카드뮴

마. 납, 수은, 욕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및 카드뮴

1)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된 전기·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된 전기·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수리에도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사.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에 함유된 납, 수은, 욕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카드뮴

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및 부품

2. 자동차

가. 납

1)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가) 가공 목적의 철과 아연도금 철

(1)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 비연속식 용융아연도금 강(batch hot dip 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3) 연속 아연도금강판(continuously galvanized steel sheet)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나) 알루미늄에 함유된 중량기준 0.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다) 엔진, 변속기, 공조 압축기(air conditioning compressors) 내의 베어링 셀에 함유된 납: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라) 구리합금에 함유된 중량기준 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2) 부품에 함유된 납과 납 혼합물
 - 가) 축전지(batteries)에 함유된 납: 직류 75V 이상의 고전압 시스템에 사용되는 축전지에 함유된 납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나) 진동감쇄장치(vibration dampers):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다) 동력전달계통용 고무류(powertrain elastomers)의 접착제에 함유된 중량기준 0.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라) 전자회로기판에 전기 또는 전자부품을 접합하는 땀납에 함유된 납과 전해질 알루미늄 축전기(electrolyte aluminium capacitors)가 아닌 부품, 부품 핀 및 전자회로기판에 적용하는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마) 전기회로기판 또는 유리의 납땀이 아닌 다른 전기적 용도로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바) 전해질 알루미늄 축전기의 터미널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

으로 한정한다.

- 사) 대량 기류감지기(mass airflow sensors)의 유리 납땀에 사용되는 납: 2015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아) 고 용융점 땀납(중량기준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에 함유된 납
- 자)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에 함유된 납: 차량 하네스 커넥터 결합부에 함유된 납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차) 통합회로 초소형 반도체 소자 내 반도체 다이를 반송자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 카) 전력 반도체 어셈블리(assembly)에서 열분산기(heat spreader)를 방열체(heat sink)와 접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실리콘 칩의 투시면적이 1cm² 이상, 명목 전류밀도가 단위 실리콘 칩 면적(mm²)당 1A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타) 접합유리(laminated glazings)의 납땀이 아닌 경우로서 유리부품에 전기 장치(electrical glazing applications)를 접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파) 접합유리의 납땀에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 (1) 접합유리용 두께 2.1mm 이하의 단일 판유리(single panes)에 열전류 0.5A 이상의 발열장치(heating applications)를 설치하기 위하여 납땀하는 경우[중간체 폴리머(intermediate polymer)와 맞닿는 부분의 납땀의 경우는 제외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하) 다음의 부분에 납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 다만, 전구용 유리나 접화플러 그용 유약 또는 거)부터 더)까지의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은 제외한다.

(1) 유리 또는 세라믹

(2) 유리 매트릭스 콤파운드(glass matrix compound)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ceramic matrix compound)

(3) 유리-세라믹 재료(glass-ceramic material)

(4) 유리-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glass-ceramic matrix compound)

거) 집적회로나 독립된 반도체의 일부인 축전가용으로서 유전체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티탄산 지르콘산 연에 함유된 납

너)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미만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더) 초음파탐지시스템(ultrasonic sonar systems) 내 감지기의 온도편차를 보정하는 축전기의 유전체 세라믹 재료에 함유된 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러) 배기열 회수를 통한 이산화탄소(CO2) 저감 목적의 자동차용 열전(熱電) 재료에 함유된 납: 2019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나. 수은

- 1) 전조등에 사용되는 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2) 계기판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형광튜브에 함유된 수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다. 육가크롬

냉각액의 중량기준 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냉각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캠핑용 차량의 흡수식 냉각기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 사용되는 육가크롬(환경, 보건 및 소비자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카드뮴

전기자동차용 축전지에 함유된 카드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마. 납, 수은, 육가크롬 및 카드뮴

- 1)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2)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서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시된 자동차의 수리에도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및 부품

[별표 3] <개정 2020. 11. 24.> [시행일 : 2023. 1. 1.] 제5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

(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4 본문 관련)

제품군	대상 제품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가. 냉장고 나.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한다) 다.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에어컨디셔너 마. 제습기
2. 디스플레이기기 (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가. 텔레비전 나.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다. 내비게이션
3. 통신·사무기기	가.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다.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와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라.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마.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바.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사. 유무선공유기 아.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4. 일반 전기·전자제품	가.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나. 전기오븐 다. 전자레인지 라. 음식물처리기

제품군	대상 제품
	마.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바. 전기비데 사. 공기청정기 아. 전기히터 자.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차. 전기밥솥 카. 연수기 타. 가습기 파. 전기다리미 하.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거.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너. 청소기 더.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러. 토스트기 머. 전기주전자 버. 전기온수기 서. 전기프라이팬 어. 헤어드라이어 저. 러닝머신 쳐. 감시카메라 커. 식품건조기 터. 전기안마기 퍼. 족욕기 하. 재봉틀 고.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제품군	대상 제품
	노. 제빵기 도. 튀김기 로. 커피메이커 모. 약탕기 보. 탈수기 소. 자동판매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비고

1. 위 표는 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으로서 별표 1로 정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2. "태양광 패널"이란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하여 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별표 3의2] <개정 2019. 7. 2.>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1차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수입량·판매량,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예상발생량·분리수거량·재사용량, 분리수거 체계, 회수실적 및 재활용실적, 재활용시설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 상황 등 회수 및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text{장기 재활용목표량} - \text{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times \text{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 \times (1 + \text{조정계수})$$

※ 비고

1) "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란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다음 표와 같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	1/4	1/3	1/2	1

2) "조정계수"란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을 고려하여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 상황의 변동, 천재지변 등 회수 및 재활용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줄일 수 있다.

[별표 3의3] 〈신설 2015.7.13.〉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

(제15조의2제2항 관련)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 비율

※ 비교

1. 제품군별 가중치는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군별로 0.5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은 제품군별 출고량에 제품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3의4] 〈신설 2022. 12. 30.〉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1.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frac{\text{연도별 재활용목표량} \times \text{인구수} \times \text{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times \text{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매입량}}{\text{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매입량}}$$

2. 별표 3 제5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frac{\text{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times \text{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times \text{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text{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관리제품 총매입량}}$$

비고

1.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2. 별표 3 제5호의 제품군은 위 표 제1호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매입량”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별표 4] <개정 2022. 12. 30.>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

(제18조제2항 관련)

1.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은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2.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경우 그 제품군의 초과된 재활용량 또는 회수량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적의 인정 범위는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관리제품의 재활용실적은 해당 제품을 재활용한 경우만 인정한다.
4.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또는 회수체계 구축 관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수량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22. 12. 30.>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제품군		재활용 단위비용	회수 단위비용
가. 온도교환기기(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kg당 470원	kg당 155원
나. 디스플레이기기(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kg당 611원	kg당 174원
다. 통신·사무기기	이동전화단말기	kg당 4,123원	kg당 3,413원
	그 밖의 통신·사무기기	kg당 811원	kg당 166원
라. 일반 전기·전자제품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kg당 480원	kg당 122원
	그 밖의 일반전기·전자제품	kg당 950원	kg당 156원
마. 태양광 패널		kg당 727원	kg당 94원

[별표 6] 〈개정 2019. 6. 11.〉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구분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회수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 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15/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 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20/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 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25/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 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30/100

[별표 6의2] 삭제 〈2013.12.30〉

[별표 7] 〈개정 2020. 11. 24.〉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의 해체, 부품의 회수, 회수한 부품의 수리·세척 및 보관은 지붕과 벽으로 차단된 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油類)의 누출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축전지 및 액화 가스탱크는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잠재적 폭발 가능 부품(에어백 등)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한다.

라. 연료, 오일류, 부동액(냉각수 포함) 등 액상물질 및 그 폐기물은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분리·보관 및 인계해야 한다.

바. 촉매장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사. 타이어, 연료통 및 범퍼 등 대형 합성수지제품은 제거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최대한 회수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자.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액상물질은 제거·회수하여야 하며, 빗물 등으로 인하여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고 작업장 바닥은 포장하여야 한다.

차.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해야 한다.

2. 파쇄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는 파쇄하여 철, 비철금속류와 파쇄잔재물을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파쇄잔재물은 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위하여 폐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파쇄잔재물은 재활용 용도와 에너지회수 용도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라. 분리된 파쇄잔재물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이 포장되고 파쇄잔재물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마.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가. 파쇄잔재물은 단위 중량기준으로 전력·증기·가스·금속·고형연료제품 등의 에너지회수 및 철·비철금속 등의 재활용을 하는 경우 그 에너지회수율 및 재활용률(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쇄잔재물 재활용률 = (회수물질 + 회수에너지)/(투입물질 + 투입에너지)

※ 비고

- 1) 회수에너지는 전력, 증기, 가스, 고형연료제품 등이 있으며, 총 회수에너지의 저위 발열량을 환산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2) 환산지수는 "파쇄잔재물의 저위 발열량/[1 - 파쇄잔재물의 회분(灰分)]"으로 산정한다.
- 3) 회수물질은 슬래그, 금속,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등이 있으며, 회수중량 그대로 산정한다.
- 4) 투입에너지는 파쇄잔재물과 그 밖의 투입에너지의 총 저위 발열량을 환산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5) 투입물질은 파쇄잔재물의 불연분 등이 있으며 투입중량 그대로 산정한다.
- 6) 파쇄잔재물을 에너지회수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삭제 (2019. 6. 11.)
나) 삭제 (2019. 6. 11.)
- 7) 파쇄잔재물 에너지회수 후 발생하는 재 등은 환경적으로 무해한 형태로 안정화하여 배출해야 한다.

나.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4. 폐가스처리업자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충전용 용기에 보관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인수할 때에는 회수용기의 상태, 회수중량 및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누출 시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들어있는 충전용 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면서 보관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운반, 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충전된 충전용 용기를 인수한 후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용기를 다시 제공할 때에는 용기 내에 잔류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소각 또는 산화·분해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율(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99.9%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분해율(%)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 × 100

※ 비고

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은 처분을 위하여 시설에 투입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을 말한다.

-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생냉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규정 또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잔여분은 처분시설에서 파괴되도록 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KS I 3004)에 따른 회수재생냉매 품질규정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바.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 7의2] 〈신설 2019. 6. 11.〉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제27조 관련)

1. 회수 기준

- 가. 폐자동차에 남아있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회수기 및 회수용기를 이용하여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
- 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동일한 회수용기에 다른 종류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할 때에는 용기밸브를 이용하여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압력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압력(게이지 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 압력)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MPa) 미만	음압 0.07메가파스칼(MPa)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MPa) 이상	0메가파스칼(MPa)

- 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할 때에는 기후·생태계 변화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용기의 밀봉(密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가 끝난 후에는 폐자동차별로 회수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측정·기록해야 한다.

2. 보관 기준

- 가. 회수용기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충전 여부에 따라 충전이 완료된 회수용기, 사용 중인 회수용기 및 빈 회수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나. 충전이 완료된 회수용기 및 사용 중인 회수용기는 충전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다. 보관장소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지붕과 벽면을 갖춘 구조일 것
 - 2)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 3) 보관장소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어 있을 것
 - 4)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누출이나 체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지닌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開口部) 또는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환기가 가능할 것
- 라.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고,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마. 보관장소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장소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경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 인계 기준

- 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회수용기가 전도(顛倒) 등으로 충격을 받거나 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나.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기록해야 한다.

[별표 7의3] <신설 2019. 6. 11.>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

1. 공통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가. 이송·투입시설 또는 장비	
나. 보관시설	하루에 재활용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일 것
다. 계량시설	파쇄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0톤 이상 계량할 수 있을 것

2. 폐자동차재활용업

가. 파쇄재활용업: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1) 파쇄시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25센티미터 이하의 파쇄잔재물로 파쇄할 수 있을 것
2) 선별시설	철금속과 비철금속을 선별할 수 있을 것
3) 투입장비	

나. 파쇄잔재물재활용업: 1)의 선별시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2)부터 4)까지의 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1) 선별시설	금속조각, 토사 등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을 것
2) 에너지회수시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을 충족하는 소각열회수 시설 또는 소각시설일 것
3) 유류제조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4) 기타 시설	환경부장관이 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활용 방안 및 기술을 활용한 시설일 것

3. 폐가스류처리업: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가. 처분시설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1) 처분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	
3) 수집·운반차량	
나. 재활용시설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1) 재활용시설	
2)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3) 검사설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 및 품질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산업표준(KS I 3004)의 시험방법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방법
4) 수집·운반차량	

비고

- 1.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3) 및 나목4)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7의4] 〈신설 2022. 12. 6.〉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31조의2제3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했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법 제45조 제1항	2,000	2,500	3,000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물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법 제45조 제2항제1호	2,000	2,000	2,000
다.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않거나 재활용가능물을 평가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법 제4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5조 제3항제1호	1,000	1,000	1,000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1호	50	80	100
1) 고의로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표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2호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사.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인계한 경우	법 제45조 제2항제1호의2	600	1,000	2,000
아. 법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보관 및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3항제2호의2	300	500	1,000
자. 법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2항제1호의3	600	1,000	2,000
차. 법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거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3호			
1)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30	50	80
카.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4항제2호	100	200	3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법 제17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 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4호			
1)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파.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2항제2호	2,000	2,000	2,000
하.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2항제3호	2,000	2,000	2,000
거.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2항제4호	500	1,000	2,000
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 및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3항제3호	300	500	1,000
더.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3항제4호	300	500	1,000
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5호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며.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 제2항제5호	500	1,000	2,000
버. 법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4항제3호	100	200	300
서.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 제2항제5호의2	500	1,000	2,000
어.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4항제4호	100	200	300
저.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45조 제2항제5호의3	500	1,000	2,000
처.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45조 제2항제5호의4	500	1,000	2,0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커. 법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4항제5호	100	200	300
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 제2항제6호	500	1,000	2,000
퍼.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4항제6호			
1)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80	150	200
3) 그 밖의 경우		50	80	100
허.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6호			
1)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고.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7호			
1) 고의로 보고·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노.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8호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고의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6265
[별표 1의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	6266
[별표 2]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	6266
[별표 2의2]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6267
[별표 3] 삭제 <2019. 6. 12.>	6268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6268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영 제15조의3 각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디스플레이기기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통신·사무기기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일반 전기·전자 제품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5. 태양광 패널	해체·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크롬, 6가 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9. 6. 1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관련)

1. 회수·분리 기준

-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및 전기정수기 등의 회수 동관에 회수구를 접합할 경우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같은 회수 용기에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은 회수구의 압력 값이 음압 이하가 되도록 흡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다. 회수 후에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회수 용기의 밀봉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종류별 회수량을 재활용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관 기준

- 가.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용기는 충전 완료된 용기, 충전 중인 용기, 빈 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 및 충전 중인 용기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명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 물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나.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는 보관 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충분한 면적을 가진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에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보관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되,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 기준

- 가.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에 게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용기가 진도 등에 의한 충격을 받거나 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5.7.20.>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제5조의5 관련)

-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한다.
-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지원 대상 사업자: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삭제 <2016.3.22.>
 -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 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 라. 법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2.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감경 기준

감경 사유	감경금액
가. 삭제 <2016.3.22.>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해당 회수체계의 구축·운영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수체계 구축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라.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신규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시설 지원 등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감경 사유	감경금액
마.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 수행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비고

1. 폐전기·폐전자제품 수거 활성화 또는 재활용촉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2.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3. 감경 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에서 감경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각 목의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금액의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삭제 <2019. 6. 12.>

[별표 4] <개정 2021. 7. 6.>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제7편 자원순환

08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285	제1조(목적) 6285	제1조(목적) 6285
제2조(정의) 6285	제1조의2(정의) 6285	
	제2조(사업장의 범위) 6285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6286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6286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6286	제2조의2 삭제 6286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6287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6287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6287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6289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6288
제3조(적용 범위) 6289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6289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629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290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6291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6291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6293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6292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6292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6293		
제7조(국민의 책무) 6293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6293		
제9조 삭제 6294	제6조의2 삭제 6294	
제10조 삭제 6294		
제11조 삭제 6294		
제12조 삭제 6294		제7조 삭제 6294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6294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6294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6295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6295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6297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6301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6303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6304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6305 제14조의2 삭제 6305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 6306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6305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6306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6307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6307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6310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6311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6312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6312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6307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6311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6313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6313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6314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6315 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6315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6316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6317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6317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6318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6318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6318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6319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6323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6323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6320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6324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6324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6321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6325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6322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6326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6324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6328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6325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6326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신고) 6332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6327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6332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6328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6333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6333	제16조의6(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6329
		제16조의7(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6330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6331
		제16조의9(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6332
		제16조의10(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6333
		제16조의11(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6334
		제16조의12(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6335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6336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633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협약의 체결) 6339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6339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6339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6340
	제9조(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 의무 대상사업자) 6346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6343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6346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6346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6350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6350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6350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6351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6351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6351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6352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6352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6352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6353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6353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6355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6356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6356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6356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6357
		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6358
		제25조의2 삭제 6358
		제25조의3 삭제 6358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6358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6358
제20조 삭제 6359		
제21조 삭제 6359		
제22조 삭제 6359		
제23조 삭제 6359		
제24조 삭제 6359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6379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6379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6382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6383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6383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6385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384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6385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6384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 대상 등) 6385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6385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6386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6387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6390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6391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6392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6396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 6397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 6397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 6397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6399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6400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6400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6401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6401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6401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6402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6401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6403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6402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의 이행기간) 640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6404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6404 제46조의2(허가·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6404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6405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6405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34조(기술관리인) 6408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6408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6409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6410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6410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6410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6410	제17조(교육대상자) 6410	제51조(교육과정 등) 6412 제52조(교육계획) 6413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6413 제54조(교육결과 보고) 6414 제55조(지도) 6414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6414 제57조(교육경비) 6414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6415 제5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6417 제59조의2(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6418 제60조(보고서의 제출) 6418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6420 제62조 삭제 6421 제63조(시험·분석기관) 6421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6415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6417		
제38조(보고서 제출) 6418 제39조(보고·검사 등) 6420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6422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6422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6422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6422 제19조 삭제 6423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6423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6424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6424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6425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6422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6425 제42조(조합의 사업) 6426 제43조(분담금) 6426 제44조(「민법」의 준용) 6426		
제6장 보칙	제5장 보칙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6426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6427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방법 등) 6427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6428 제65조 삭제 6428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6428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6430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6431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6428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6432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6432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643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6433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6433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6434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6435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6435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6435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6435		
제48조의2(의견제출) 6437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6437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6437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6438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6439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6438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6440	
제48조의5(과징금) 6440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 6441
제49조(대집행) 6440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6443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6441	제24조(사후관리 대상) 6444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6444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 6445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6445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6445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6446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6446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6446
		제73조(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6446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6447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6446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6447	
	제29조(담보물의 제공) 6447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6449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6448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6449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6449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6449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6449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6449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6451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6450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6450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6451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6450	제78조(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6450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6451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6451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6451
제56조(국고 보조 등) 6452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6452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6451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6453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6453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6452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6453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6453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6453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6453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6454	
제59조(수수료) 6455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6454	제82조(수수료) 6455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6456	제37조(권한의 위임) 6457	제82조의2 삭제 6456
제61조(청문) 6457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6464	제83조(행정처분기준) 6456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6457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6464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6466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465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6466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6466	제84조(규제의 재검토) 6466
제7장 벌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벌칙) 6467		
제64조(벌칙) 6467		
제65조(벌칙) 6468		
제66조(벌칙) 6470		
제67조(양벌규정) 6473		
제68조(과태료) 6473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6473	
제68조(과태료) 6477	제39조 삭제 6477	
부칙 6481	부칙 6481	부칙 648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 4. 11 법률 제8371호 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 5. 25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2007. 8. 3 법률 제8613호 2007. 12. 21 법률 제8789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2009. 6. 9 법률 제9770호 (소음·진동관리법) 2010. 1. 13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 3. 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 7. 23 법률 제10389호 2011. 4. 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 7. 21 법률 제10888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 2011. 7. 25 법률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2. 6. 1 법률 제11465호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11914호 2013. 7. 30 법률 제11965호 (산에나지 및 재생에나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3. 7. 30 법률 제11980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 2015. 1. 20 법률 제13038호 2015. 7. 20 법률 제13411호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7. 1. 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 4. 18 법률 제14783호 2017. 11. 28 법률 제15103호 2019. 4. 16 법률 제16318호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 2019. 12. 3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피해물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재정·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51호 2021. 7. 20 법률 제18318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2. 4. 26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2022. 12. 27 법률 제19126호 2023. 8. 16 법률 제19666호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78호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6호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육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12. 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연지니아러업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 1. 21 대통령령 제22631호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9호 2011. 9. 7 대통령령 제23126호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2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9. 24 대통령령 제24119호 2012. 12. 27 대통령령 제24266호 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3호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82호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1호 2015. 6. 1 대통령령 제26297호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7호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7호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7호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0호 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5호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498호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3. 27 대통령령 제28722호 2018. 5. 21 대통령령 제28898호 2018. 12. 18 환경부령 제29386호 2019. 7. 2 환경부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전부개정 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 2007. 12. 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12. 31 환경부령 제266호 2007. 12. 31 환경부령 제27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1. 28 환경부령 제27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008. 2. 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8. 4 환경부령 제295호 2008. 10. 21 환경부령 제305호 2008. 12. 31 환경부령 제31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09. 6. 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 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8. 7 환경부령 제346호 2010. 1. 15 환경부령 제359호 2010. 6. 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 10. 18 환경부령 제382호 2011. 1. 21 환경부령 제394호 2011. 3. 31 환경부령 제406호 2011. 9. 27 환경부령 제422호 2011. 10. 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1. 12. 30 환경부령 제437호 2012. 5. 1 환경부령 제454호 2012. 7. 3 환경부령 제464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20 환경부령 제4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2. 9. 24 환경부령 제478호 2012. 11. 1 환경부령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12. 12 환경부령 제488호 2012. 12. 31 환경부령 제4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3. 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 5. 31 환경부령 제508호 2013. 7. 19 환경부령 제513호 2013. 12. 31 환경부령 제532호 2014. 1. 17 환경부령 제542호 2014. 4. 17 환경부령 제552호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9. 7. 9 환경부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29 환경부령 제30173호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20. 5.19 대통령령 제30684호 2020. 7.21 대통령령 제30861호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3호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1호 2021. 6.15 대통령령 제31778호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 6.14 대통령령 제32698호 2022.11.29 대통령령 제33011호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6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환경부령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12.29 환경부령 제584호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환경부령 제589호 2015. 3. 3 환경부령 제595호 2015. 6.10 환경부령 제602호 2015. 7.29 환경부령 제610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8호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1.21 환경부령 제637호 2016. 4.28 환경부령 제649호 2016. 5.25 환경부령 제653호 2016. 7. 1 환경부령 제661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7.21 환경부령 제664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3호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0.19 환경부령 제715호 2017.12.27 환경부령 제726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3.30 환경부령 제752호 2018. 4.13 환경부령 제755호 2018. 5.17 환경부령 제757호 2018. 5.28 환경부령 제759호 2018.12.31 환경부령 제796호 2019. 7. 8 환경부령 제815호 2019. 7.24 환경부령 제819호 2019.10.29 환경부령 제830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31 환경부령 제843호 2020. 5.27 환경부령 제868호 2020. 8.31 환경부령 제881호 2020.11.27 환경부령 제891호 2021. 4.30 환경부령 제913호 2021. 7. 6 환경부령 제929호 2021. 9.16 대통령령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2. 1. 7 대통령령 제965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9. 7.]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022. 3. 31 대통령령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 5. 3 대통령령 제9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2. 5. 30 대통령령 제987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2022. 11. 29 대통령령 제1006호 2023. 4. 17 대통령령 제10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5. 31 대통령령 제1037호 2023. 8. 11 대통령령 제1048호 2023. 12. 28 대통령령 제1069호 2023. 12. 29 대통령령 제1071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024. 2. 6 대통령령 제107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2. 28.> [제목개정 2007. 12. 28.]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2008. 8. 4.) 제2조의2 삭제 (2016. 7. 2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7. 3., 2018. 5. 17., 2019. 12. 20.>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폐기물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다. 폐목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삭제 (2011. 9. 2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9. 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 1. 15., 2011. 9. 27.>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체연구원(이하 “한국기체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목개정 2011. 9. 27.]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7., 2007. 12. 21., 2010. 7. 23., 2011. 7. 21., 2011. 7. 25., 2015. 1. 20., 2017. 1. 17., 2022. 4. 26.>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 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9. 12. 3.)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7. 20.>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7. 21.>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4. 12. 28.] 제5조의2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산설 2022. 12. 27.] [시행일: 2024. 12. 28.] 제5조의3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9조 삭제 <2017. 11. 28.> 제10조 삭제 <2017. 11. 28.> 제11조 삭제 <2017. 11. 28.> 제12조 삭제 <2015. 1. 20.>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제6조의2 삭제 <2017. 12. 26.>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제7조 삭제 <2017. 12.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流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 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9. 24., 2017. 12. 27.>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9. 24., 2013. 7. 19., 2018. 5. 17., 2022. 1. 7., 2022. 11. 29.>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가전제품을 분리·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자 3.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4. 제66조제6항제9호에 따른 동·식물성 잔재물 중 동물성 잔재물과 커피찌꺼기에 해당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4의2. 제66조제6항제10호에 따른 1회용 컵을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하는 자 5. 그 밖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7. 12. 27.>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이나 폐기물처리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9. 24.> [제목개정 2012. 9. 24.]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 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09. 8. 7., 2010. 1. 15., 2011. 9. 27., 2012. 5. 11., 2012. 7. 3., 2012. 9. 24., 2012. 12. 12., 2013. 5. 31., 201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 19., 2013. 12. 31., 2014. 1. 17., 2015. 3. 3., 2016. 1. 21., 2016. 7. 21., 2017. 12. 27., 2018. 1. 17., 2018. 3. 30., 2019. 12. 20., 2020. 11. 27., 2022. 1. 7., 2022. 11. 29.〉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 쌀겨 또는 조목류를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 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지·고철·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를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또는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 제조를 위하여 혼합하여 사용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 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5.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줄기·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줄기·가지 7.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용기(페트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압수물 또는 몰수물 10. 제조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조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뜻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10의2. 폐기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4의2 제2호가목5)에 따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거나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라 재생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다.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중화하여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마. 폐산 또는 폐알칼리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른 시설에서 수처리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재활용 유형에 따라 승인 장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의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보관·재활용하는 경우 10의4.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반납 받은 폐배터리를 회수·보관·재활용하는 경우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3. 7. 19., 2019. 12. 20.> 1.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배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계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덮개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7. 19.>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임시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27.>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1. 삭제 <2011. 9. 27.> 2. 삭제 <2011. 9. 27.> [전문개정 2008. 8. 4.] [제목개정 2011. 9.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영 제7조제1항 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8. 5. 17.> 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 연소 잔재물 중 연탄재 및 석탄재 나. 폐유리 다.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패각 라.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기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폐석화·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廢沙)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	다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장치 등을 갖추는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재 약품·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7.>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료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9. 7.>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완료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9. 7.>	2011. 9. 27., 2018. 5. 17.) [제목개정 2011. 9. 27.]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9. 27.> 제14조의2 삭제 <2016. 1. 2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 5. 26.) 1. 폐석면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19.]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30.)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19.]	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6. 7. 21.]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현황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5.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중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13으로 이동 (2016. 7. 21.)]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 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	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2. 재활용하려는 용도·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 7. 19.]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을 말한다)에게 발급해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마. 재활용 유형 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15. 7. 20.)]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다. 재활용 유형 라. 재활용 공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 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본조신설 2016. 7. 2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6. 7. 19.]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분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 현황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평가 3. 환경위해성의 예방·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2.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3.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방법·주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		및 기간 등을 정할 것 ②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평가 및 기준 설정 2. 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저감 방안 3.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 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7. 2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1. 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2. 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3. 조치명령의 내용 4. 조치명령의 사유 5. 조치기간·방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7. 29.,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5. 7. 24., 2016. 1. 19., 2017. 12. 26., 2018. 3. 27.>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27.] [제14조의4에서 이동 <2016. 7. 21.>]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4. 1. 1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3., 2016. 4. 28., 2018. 5. 17., 2022. 11. 29.>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설유(붕제공장에서 붕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6. 폐의류 7. 동·식물성 잔재물 8.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4. 1. 17.>]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 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27.)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4. 1. 17.>]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 17., 2023. 12. 28.> 1. 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이하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2. 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특정 품목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5. 특정 품목의 물량, 운반·수집비용 및 매각단가와 영업구역 내 세대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특정 품목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본조신설 2011. 9. 27.]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본조신설 2011. 9. 27.] [제15조의3에서 이동 <2014. 1. 1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14. 1. 14., 2016. 7. 19.>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본조신설 2011. 9. 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4.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본조신설 2014. 1. 14.]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1. 17.]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30.>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5. 28.>]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다.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전개(壓搾)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 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3. 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1.>]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중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9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6(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조정계획을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처리비용(계약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이 입찰일(중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2.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를 말한다)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말한다)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특정품목대행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 경우 4. 최근 3개월 간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의9서식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서에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 조정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7(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지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수·구청장이 특정품목대행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그 수익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급 주기를 반영하여 균분하고,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의 액수, 산정 근거,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수익금 지원계획을 수익금을 지급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하여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② 제16조의6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수익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익금 지원계획에 그 변동내역과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수익금 내역 및 지급·사용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11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계약금액·조정금액, 계약일·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2.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8.] [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12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9(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2022. 6. 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16조의5에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10(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신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6에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11(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7에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12(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 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본조신설 2020. 5. 27.] [제16조의8에서 이동 (2023. 12. 28.)]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7. 16.]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4.]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8. 31., 2021. 4. 30., 2022. 1. 7.>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배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별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수은폐기물 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자.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26., 2023. 8. 16.>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3. 7. 16.] [시행일: 2024. 8. 17.] 제15조의2 제16조(협약의 체결) ①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 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을 말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제18조제4항제2호·제5호(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 2.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21.] [제16조의7에서 이동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찻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6. 30., 2011. 9. 27., 2014. 1. 17., 2018. 1. 17., 2022. 11. 29.>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 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4. 4.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2023. 12. 29.>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5. 1. 20., 2017. 4. 1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8., 2011. 9. 27., 2013. 5. 31., 2015. 7. 29., 2017. 10. 19., 2020. 8. 31., 2021. 4. 30., 2022. 11. 29.>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조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레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감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9.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9.> ③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과정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7. 10. 19.>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하지 확인하기 곤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		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9.>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7. 10. 19., 2018. 5. 17., 2020. 5. 27.> 1. 삭제 <2018. 5. 17.> 2. 삭제 <2018. 5. 17.> 3. 삭제 <2018. 5. 17.> 4. 삭제 <2018. 5. 17.> 5. 삭제 <2018. 5. 17.> ⑧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 1. 21., 2017. 10. 19.> 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19. 11. 26.>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 8. 3., 2010. 3. 31., 2010. 7. 23., 2016. 12. 27., 2017. 4. 18.> ⑩ 중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	제9조(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 의무 대상사업자)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과 규모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2. 12. 27., 2017. 10. 17.>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본조신설 2008. 8. 4.]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 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3. 5. 31., 2017. 10. 19.>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2023. 8. 16.>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 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5. 1. 20., 2017. 4. 1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삭제 <2023. 8. 16.>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19. 11. 26.>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 8. 3., 2010. 3. 31., 2010. 7. 23., 2016. 12. 27., 2017. 4. 18.>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시행일: 2024. 8. 17.] 제17조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		[본조신설 2016. 1. 21.]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7조의2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3. 대표자 4. 기기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 기술능력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 시험·분석 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8과 같다. <개정 2016. 7. 21., 2020. 5. 27.> [본조신설 2016. 1. 21.]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9와 같다. <개정 2016. 7. 21., 2020. 5. 27.> [본조신설 2016. 1. 2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9. 12. 3.> ② 삭제 <2015. 7. 20.>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5. 3. 3., 2021. 7. 6., 2022. 11. 29.>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1. 21.)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1. 7.>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 5. 27., 2022. 1. 7.> [전문개정 2008. 8. 4.] [시행일] 제20조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제3호,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⑥ 삭제 <2007. 8. 3.>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3. 5. 31., 2022. 1. 7.>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만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2017. 10. 19.>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본조신설 2018. 3. 30.]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4. 30.> 1. 한국환경공단 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비산재 및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방사능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 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본조신설 2018. 3. 30.]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 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23.>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변경내용 및 사유 3.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중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 3. 30.>] 제25조의2 삭제 <2017. 10. 19.> 제25조의3 삭제 <2017. 10. 19.>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0조 삭제 <2007. 8. 3.> 제21조 삭제 <2007. 8. 3.> 제22조 삭제 <2007. 8. 3.> 제23조 삭제 <2007. 8. 3.> 제24조 삭제 <2015. 7. 20.> 제24조의2 삭제 <2017. 4. 18.> 제24조의3 삭제 <2017. 4. 18.> 제3장 삭제 <2007. 8. 3.>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8. 4.] [제25조에서 이동 <2018. 3. 30.>] 제27조 삭제 <2008. 8. 4.>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8. 5. 17.>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된다. <개정 2011. 9. 27.>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8. 1. 17., 2020. 5. 27.>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 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 2)가)(1)·(2), 나)(1)·(2), 다)(2)·(3), 라)(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 목13)·14) 또는 사목11)·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6. 7. 21.>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제·보조기층제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의,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22. 12. 27.>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27.>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⑦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7. 삭제 <2011. 9. 27.> 8. 삭제 <2011. 9. 27.> 9. 삭제 <2011.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6. 7. 21.>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1. 9. 27., 2020. 5. 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본조신설 2016. 1. 21.]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2. 9. 24., 2016. 1. 21., 2016. 7. 1., 2016. 12. 30., 2018. 5. 17., 2018. 12. 31., 2019. 12. 20., 2022. 1. 7., 2023. 12. 28.>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 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폐전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석탄재, 리튬이차전지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나,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 7. 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할 것 가. 영상정보 수집장치,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및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것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에 설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금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집·보관할 것 가.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수집할 것 나. 촬영·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보관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화재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6. 1. 21., 2020. 5. 27., 2022. 1. 7.>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1. 12. 30., 2016. 7. 21., 2018. 5. 17., 2023. 5. 31.>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본다. <신설 2017. 4. 18.>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⑯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8., 2014. 4. 17., 2016. 7. 21., 2018. 12. 31.>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7. 10. 19.>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 조제2항의 서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인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신고) ① 법 제25조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의 소재지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 계약을 포함한다)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9.>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1.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3.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사 일정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용용기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자료와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9.>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 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5. 1. 20.]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은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 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들에게 업무집행을 지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들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들”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들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본조신설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제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 20.]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 5. 19.>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5. 19.>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10. 7. 23.]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5. 19.> ④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2022. 6. 14.> [본조신설 2008. 7. 29.]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1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2.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처리한 폐기물 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나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위해(危害)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3.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 2013. 5. 31., 2013. 12. 31., 2022. 11. 29.>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6의2.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항 제3호의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22. 11. 29.>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 소각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열분해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다) 8.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서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6. 4. 28.>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 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 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 되는 경우 다.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라. 별표 9 제2호 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 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 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 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2. 9. 24., 2014. 4. 17., 2015. 7. 29., 2018. 3. 30., 2019. 12. 31., 2020. 11. 27., 2022. 11. 29.>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총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각열회수시설 사.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1. 26.>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4. 28., 2012. 6. 1.>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19. 11. 26.>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2. 9. 24., 2022. 11. 29.>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열분해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7. 열분해시설 ③ 삭제 <2020. 11. 27.> ④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열분해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5. 6. 10., 2015. 7. 29., 2016. 4. 28., 2016. 12. 30., 2018. 3. 30., 2022. 5. 3., 2022. 11. 29.>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종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⑥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3. 5. 31., 2020. 11. 27., 2022. 11. 29.> 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서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 성질·상태, 양, 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1. 27.> 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1. 27.> 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7.> 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 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국·공립연구기관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표 10의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검사 업무 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 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4.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사업장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 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항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 2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본조신설 2020. 11.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7. 29.]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6. 1. 21.〉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10. 1. 15.〉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9. 7., 2012. 9. 24.> 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1. 삭제 <2008. 8. 4.> 2. 삭제 <2008. 8. 4.>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 삭제 <2016. 1. 21.>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증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증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증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증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⑦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5. 1. 20.> ⑧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와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 1. 19.]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증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②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⑨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⑩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7. 23., 2017. 1. 17., 2024. 1. 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6. 1., 2024. 1. 30.>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 1. 21.> 제46조의2(허가·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혐기성 분해시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3. 5. 3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③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10. 7. 23., 2012. 6. 1., 2017. 1. 17., 2024. 1. 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삭제 <2009. 6. 9.> ④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 1. 30.> [제목개정 2010. 7. 23.]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9. 11. 26.>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 11. 26.>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은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9. 11. 26.>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2019. 11. 26.>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2020. 5. 26.>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34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9. 7., 2012. 9. 24.>	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전문개정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매립시설의 경우 -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 열분해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 17., 2016. 1. 19.> - 한국환경공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2017. 10. 17.> 1.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3. 7. 19., 2016. 4. 28., 2017. 10. 19., 2023. 5. 31.> 1.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5.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2023. 5. 31.>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2의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5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6. 30., 2023. 5. 31.> ⑤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 2023. 5. 31.>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과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8. 4., 2016. 1. 21., 2016. 7. 21., 2023. 5. 3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12. 11. 1.> 제52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③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5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2016. 7. 21.>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정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 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 삭제 <2007. 8.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		수 있다.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1. 12. 30., 2014. 1. 1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의2. 삭제 <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 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신설 2018. 5. 28., 2020. 5. 27.> 제5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6. 1. 21.>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2016. 7. 21.> 1. 휴업·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시험·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의2. 삭제 (2017. 4. 18.)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1.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제59조의2(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27.]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2016. 1. 21., 2017. 10. 19., 2023. 5. 31., 2023. 12. 28.>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는 제외하되, 중가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 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가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의2. 삭제 <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4.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 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39조(보고·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		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④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⑤ 삭제 <2017. 10. 19.>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8. 4.,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7. 23.)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6. 삭제 (2018. 1. 17.) 7. 삭제 (2018. 1. 17.) 8. 삭제 (2018. 1. 17.) 9. 삭제 (2018. 1. 17.) 제62조 삭제 (2008. 8. 4.) 제63조(시험·분석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 15., 2013. 3. 23., 2013. 5. 31., 2016. 1. 21., 2021. 4. 30.>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석유관리원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9.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0. 7. 23.]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① 법 제40조제1항	협·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 분석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중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동 <2014. 1. 1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 <2007. 8. 3.>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산설 2010. 7. 23., 2013. 7. 16., 2019. 11. 26.>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8. 7. 29.>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 12. 28.> 1.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개월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 <2007. 8. 3.> ⑤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⑥ 삭제 <2007. 8. 3.> ⑦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21. 6. 15.>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08. 7. 29.]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①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⑧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⑨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⑪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 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9. 11. 26.>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 폐기물 처리사업에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③ 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 7. 29.> [제목개정 2008. 7. 29.]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 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7., 2021. 6. 15.>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7. 11. 28.>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금금보증 업무 [전문개정 2013. 7. 16.] 제43조(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7. 23., 2012. 6. 1.> 제44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로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9. 7., 2014. 1. 14., 2017. 10. 17.> 1. 법 제17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확인 서류의 제출 2. 삭제 <2017. 10. 17.> 3.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 8. 4.] [제63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⑤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08. 7. 29.]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제65조 삭제 <2008. 8. 4.>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 7. 3.> 1. 삭제 <2012. 7. 3.> 2. 삭제 <2012. 7. 3.>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2023. 12. 28.>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법"이란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7. 19., 2018. 5. 17.>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2022. 11. 29., 2023. 12. 28.>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페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페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1회용 컵 [전문개정 2011. 9. 27.]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4. 1. 17., 2016. 7. 21.> 1.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2.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⑦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1. 폐기물 수집·운반 변경신고의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 2.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의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라. 재활용시설의 종류 마. 재활용시설의 용량[폐기물처리 신고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다만,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사.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 [제목개정 2011. 9. 27.]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8. 4.]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 -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같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제목개정 2011. 9.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목개정 2010. 7. 23.]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용기·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 9. 7.> ②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증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증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9. 7.>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7. 29.]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7.> 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본조신설 2008. 7. 29.]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절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용기·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2024. 2. 6.>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절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5. 8. 7.] 제47조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치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실적 2. 조치 미이행량·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9. 11. 26.]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 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 법 제48조의4 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7조 및 별표 5의7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의 연계·분석 및 평가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 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해야 한다.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그 내용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본조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6.>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50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7. 4. 18.>		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 2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서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만 해당한다)를 한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016. 1. 21., 2017. 10. 19.〉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사용종료 검사 2. 폐쇄 검사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제2호만 해당한다)과 같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중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④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6. 1. 21., 2016. 4. 28., 2017. 10. 19.〉 1. 최초 정기검사: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0. 17., 2018. 3. 27.>	2. 2회 이후의 정기검사: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⑤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⑥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1. 27.> ⑦ 제2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세부 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1. 27.> [본조신설 2013. 5. 31.]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 및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⑦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⑧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항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2.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3.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7. 10. 17.>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 21.>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 21., 2017. 10. 19.>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시행일: 2024. 8. 17.] 제50조의2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감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2020. 5. 26.>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②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삭제 <2011. 9. 7.>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1. 연도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 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제목개정 2016. 1. 21.]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11. 9. 7.> [제목개정 2016. 1. 19.]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①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1. 19.>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6. 1. 19.]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제29조(담보물의 제공) 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감정평가 및 감정평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 시기·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2016. 8. 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1.,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다. 삭제 <2011. 1. 2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	라. 삭제 <2011. 1. 21.>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9.> 1.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6. 1. 21.>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 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 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 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 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③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29., 2011. 9. 7.>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립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영 제34조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1. 20.>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저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30., 2015. 1. 20., 2017. 4. 18.>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 21., 2013. 5. 28.> ②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2.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 지적도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 서식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16.>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 2.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3. 그 밖에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경제성·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9. 7., 2016. 1. 19.> 1.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2.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 [제목개정 2011. 9. 7.]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법 제4조·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공단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8. 4.]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7. 16.>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연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3. 7. 16.>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16.> [본조신설 2007. 8. 3.]	5.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4.] [충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4. 1. 14.>]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① 법 제58조의2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1. 14.> 1.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 1. 14.>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 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본조신설 2008. 7. 29.] [제36조의2에서 이동, 충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14. 1. 14.>]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7. 4. 18., 2022. 12. 27.>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7. 29.] [제36조의3에서 이동 <2014. 1. 14.>]	제82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3. 30.> ③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8. 3. 30.>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 3. 30.> 1. 허가·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⑤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3. 30., 2020. 11.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제목개정 2015. 7. 20.]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3. 30.>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⑦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3. 30.> ⑧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6. 7. 21.] 제82조의2 삭제 <2016. 7. 21.>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법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7. 29., 2010. 6. 28., 2011. 1. 21., 2011. 9. 7., 2013. 5. 28.,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2018. 1. 16., 2020. 5. 19., 2022. 6. 14.>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법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와 접수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마.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바. 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사.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아.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 자.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차.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카.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파.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하.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가.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나.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러.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머.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버.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어.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저.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처.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커.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립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6. 7. 19., 2017. 10. 17., 2020. 5. 19.>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의4. 삭제 <2013. 5. 28.> 1의5. 삭제 <2017. 10. 17.> 1의6. 삭제 <2017. 10. 17.>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나. 법 제25조제3항·제4항·제7항·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마.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바.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자.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차.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카.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 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명령 파.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하.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거. 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여부의 통보 너. 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 더. 삭제 (2008. 7. 29.)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 신고의 수리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 14., 2016. 1. 19., 2016. 7. 19., 2020. 11. 24.>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분석 등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 나.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의 평가 다. 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 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분석 수수료의 고시 사. 삭제 (2016. 7. 19.)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9. 10. 29.> 1. 삭제 <2017. 12. 26.>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 10. 29.> [본조신설 2011. 9. 7.]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②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그 내용과 조치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7. 19., 2020. 5. 19.)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5. 7. 20.]	8.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12. 1. 6.>]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2022년 1월 1일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지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제8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14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 3.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기준 및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8.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 3. 8.]	- 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 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 - 제59조의2에 따른 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폐기물의 처리 [전문개정 2023. 4. 1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 (2017. 4. 18.) 13. 삭제 (2017. 4. 18.)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 8. 3.)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2015. 1. 20.)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는 증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2010. 7. 23.) 16. 삭제 (2010. 7. 2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삭제 <2019. 11. 26.>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확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 4. 6.]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 12. 30.>]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삭제 <2019. 11. 26.>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 7. 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9. 11. 26.>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 7. 20.> 4. 삭제 <2010. 7. 23.>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 8. 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 11. 26.> 11. 삭제 <2019. 11. 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⑤ 삭제 <2010. 7. 23.> ⑥ 삭제 <2010. 7. 23.> ⑦ 삭제 <2010. 7. 23.>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2023. 8. 16.> 1. 삭제 <2019. 11. 26.>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 삭제 <2012. 12.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삭제 <2019. 11. 26.>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 7. 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9. 11. 26.>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3. 8. 16.> 3. 삭제 <2015. 7. 20.> 4. 삭제 <2010. 7. 23.>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 8. 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 11. 26.> 11. 삭제 <2019. 11. 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⑤ 삭제 <2010. 7. 23.> ⑥ 삭제 <2010. 7. 23.> ⑦ 삭제 <2010. 7. 23.> [시행일: 2024. 8. 17.] 제68조 부칙 <제8371호, 2007.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부칙 <제20244호, 2007.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2호, 2007.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항,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 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9항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1년 9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2.28) 제4조(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5 제4호 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라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㉔와 제6호 다목(나)①㉔,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7월 19일 전에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6조(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별표 5 제5호 다목1)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 다목1)나) 부터 마)의 개정규정에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및 제68조”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 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8호”로 한다.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5 제5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이옥신 측정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2006년 1월 1일 2.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 : 2007년 1월 1일 제8조(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 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특례) 환경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⑦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⑪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로 한다.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⑮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제29조”로 한다. ⑯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일인 2007년 2월 1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월14일 전에 법 제25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 연료 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12월31일까지, 각각 별표 7 제2호마목 (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⑫무역거재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1조”로 한다. 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각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⑮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⑯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⑰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제12조 및 제24조”를 “제13조 및 제17조”로 한다. ⑱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각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⑰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78호, 2007. 12. 28.〉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향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⑫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1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⑮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 부칙 <제20946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㉔유동산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제30조의2제1항"을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㉔유동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㉔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 제3항"으로 한다. ㉔전자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㉔ 부터 ㉔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224호, 2010. 6. 2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㉔ 및 ㉔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626호, 2011.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③부터 ③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④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⑤주한미군기지가이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⑥집단지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⑦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⑧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631호, 2011.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전에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889호, 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3126호, 2011. 9.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산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66호,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3호다목4)·라목2)가), 같은 표 제4호가목1)·나목3)·다목2)바) 및 별표 9 제2호나목2)자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나목,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5호다목1)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하여 합격한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table><tr><th>종류</th><th>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용기의 도형색상</th></tr><tr><td>인체조직물 중 태반 (재활용하는 경우)</td><td>녹색</td></tr><tr><td>격려의료폐기물</td><td>붉은색</td></tr><tr><td>위해의료폐기물</td><td>노란색</td></tr><tr><td>일반의료폐기물</td><td>오렌지색</td></tr></table> 제4조(폐기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표 4 지정폐기물 분류번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용기의 도형색상	인체조직물 중 태반 (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격려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	노란색	일반의료폐기물	오렌지색
종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용기의 도형색상											
인체조직물 중 태반 (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격려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	노란색											
일반의료폐기물	오렌지색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㉔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㉔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㉔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를 “제40조·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2 중 “제43조의2제3항제3호”를 “제4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9조의2”를 “제53조”로 한다. ㉔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던 자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시설로, 최종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처리시설로 본다. 부칙 〈제23462호, 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119호, 2012.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 조사의 기산일은 해당 시설의 마지막 주변지역 영향 조사일로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부칙 〈제271호, 2007. 12. 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 〈제275호, 2008. 1. 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 2008. 3.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보되, 해당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4266호, 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평균 배출량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2013년은 2012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2014년은 2012년과 2013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처음 적용하는 해에는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직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95호, 2008.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3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호, 2008.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 2008. 12. 3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86호, 2007. 5. 25.> (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613호, 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89호, 2007. 12. 21.>	부칙 <제24543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82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5951호, 2014. 12.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46호, 2009.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 2010. 1. 15.>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부칙 〈제9770호,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③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31호,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6297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표 비교에 따라 통보 또는 변경통보된 시설은 2017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부칙 〈제26447호, 2015.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47호, 2015. 1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0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입 실적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수출입 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②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82호, 2010.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계·인수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게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89호, 2010. 7.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2호 및 제15호,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호, 제68조제2항제9호의2, 제6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6년 5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7299호,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50호, 2016.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7조의3,	부칙 <제394호, 2011.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9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기간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간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보고, 같은 목 10)나(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제406호, 201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 2011.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table><tr><th>폐기물 수집·운반업</th><th>폐기물 수집·운반업</th></tr><tr><td>폐기물 중간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제외한다)</td><td>폐기물 중간처분업</td></tr><tr><td>폐기물 최종처리업</td><td>폐기물 최종처분업</td></tr><tr><td>폐기물 종합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합 처리업은 제외한다)</td><td>폐기물 종합처분업</td></tr></table>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제외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합 처리업은 제외한다)	폐기물 종합처분업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8365호, 2017. 10. 17.>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최초 정기검사는 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제5조(휴업·폐업의 신고 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폐업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로 본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다목1다)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던 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중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제외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합 처리업은 제외한다)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 중 “배출·운반 및 처리과정”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98호, 2017. 12. 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8722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부속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7호, 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 2012.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는 2013년 7월 23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⑨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88호, 2011. 7. 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4조(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98호, 2018. 5. 21.〉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6호, 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여러한 법령용어 정비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3호, 2019.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부칙 〈제464호, 2012.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생략 부칙 <제10911호, 2011. 7. 25.> (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465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684호, 2020. 5. 19.>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1호, 2020. 7. 21.>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3호, 2020. 11. 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21호, 2021. 3. 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78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	부칙 <제478호, 2012.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3호가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변경승인 사유 등) 대통령령 제24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3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결과서를 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각시설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는 제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열회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4호, 2012. 11.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 물질”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14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8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5조, 제50조, 제63조 및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6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65호, 2013. 7.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 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8호, 2022. 6.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11호, 2022. 1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86호, 2023. 11. 21.〉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생략〉…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88호, 2012.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3호, 2012. 12.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508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980호, 2013. 7. 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부터 <71>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3호, 2013.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 2014.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 2014.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간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2321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38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84호, 2014. 12. 29.>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9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층차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기 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부칙 <제13411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하여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595호, 2015.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시설의 복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2호, 2015.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 2015.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및 별표 8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 2015. 12. 22.>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 2016.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7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 및 폐기물의 시험·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용용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전용용기는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49호,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3호, 2016.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6) 또는 제4호나목11)·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4783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2항·제13항, 제25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제6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0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분업·최종처리분업 또는 종합처리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려거나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6) 또는 제4호나목11)·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분업 또는 종합처리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661호, 2016. 7.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64호, 2016.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 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부칙 〈제15103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도지사나 세위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위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5조(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규모 및 용도 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부칙 〈제683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 2017. 1. 19.〉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부칙 〈제16318호, 2019. 4.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4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0호, 제61조제5호의2, 제65조제19호의2·제19호의3, 제66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2·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 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715호, 2017. 10. 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2017. 12. 2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6699호, 2019. 12.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의2제3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 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51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하용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8318호, 2021. 7. 2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교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8853호, 2022. 4. 26.〉 (동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7조 생략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교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교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9126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외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2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82조, 별표 20,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8)까지, 같은 목 비교,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9666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부칙 〈제755호, 2018.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 2018. 5. 1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양수 또는 인수한 자,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하거나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20231호, 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부터 ㊱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광채류 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매립시설로서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광채류 중 고로슬래그 또는 제강슬래그만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59호, 2018. 5. 28.〉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 2019.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 2019.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 2019. 10. 29.〉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칙 <제868호, 2020. 5. 2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 2020. 8. 31.> 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 202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이를 내줘야 한다. 부칙 <제913호, 2021.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929호, 2021.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제2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부칙 제1조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 2022.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 규정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부칙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 2022. 5.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계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계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계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계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 관계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계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 관계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계센터”로 한다. 부칙 〈제987호, 2022. 5. 30.〉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다)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1006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 제3호가목7)가)·나)·마) 및 별표 11 제1호거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별표 9 제3호가목7)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제2조(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량이 해당 호에 따른 날 이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공포한 날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024년 10월 1일 제3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가목7)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2023. 5. 3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2호나목·라목 또는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048호, 2023.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1 제2호라목 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별표 제5의4제1호나목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종전의 같은 표 제2호라목 1)가)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제1071호, 2023. 12. 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4항제7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8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9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6)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2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74호, 2024.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6523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6524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6525
[별표 4]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6526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6527
[별표 4의3]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6527
[별표 4의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6528
[별표 5]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제9조 관련)	6528
[별표 5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6529
[별표 5의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6532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6532
[별표 7]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6533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6534

[별표 1] (개정 2021. 3. 9.)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탁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 폐수처리 오탁수(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 공정 오탁수(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괴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자. 삭제 <2020. 7. 21.>

4. 폐유기용제

- #####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 #####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페페인트 및 페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 가.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

- #####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 ##### 다. 페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 #####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것

- #####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제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 제4호의 폐유기용제,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제11호의 수은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0의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가 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11. 수은폐기물
-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페렴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촉매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 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개정 2019. 10. 29.>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별표 3] <개정 2022. 11. 29.>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 1) 일반 소각시설
- 2) 고온 소각시설
- 3) 열분해 소각시설
- 4) 고온 용융시설
-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증발·농축 시설
- 6)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7) 유수 분리시설
- 8) 탈수·건조 시설
-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 1) 고형화·고화·안정화 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 1) 차단형 매립시설
-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연료화시설
- 6) 증발·농축 시설
-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8) 유수 분리 시설
- 9) 탈수·건조 시설
-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반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 1) 고형화·고화 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 시설
-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마) 부숙토(腐熟土: 썩혀서 익힌 흙) 생산시설
-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3) 버섯재배시설
 - 라. 시멘트 소성로
 -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탄화 시설
 - 사. 골재가공시설
 - 아. 의약품 제조시설
 -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차. 수은회수시설
 - 카.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4] <개정 2013.5.28>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1. 공정 개선시설
물질경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시설
2. 폐기물 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3.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재활용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4의2] 〈신설 2016. 7. 19.〉

[시행일:2018.1.1] 제1호다목, 제1호라목, 제1호마목, 제1호자목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1. 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물리·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이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해특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가. 폭발성

나. 인화성

다. 자연발화성

라. 금수성(禁水性)

마. 산화성

바. 용출독성

사. 감염성

아. 부식성

자. 생태독성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3] 〈개정 2021. 3. 9.〉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2.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3.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5.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별표 4의4] <개정 2016. 7. 1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별표 5] <개정 2019. 7. 2.>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제9조 관련)

-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규모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별표 5의2] <개정 2023. 11. 2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해당 기관의 다른 전문분야를 포함한다)이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외의 업체 등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 라. 시설기준 중 사무실, 실험실 및 기기실은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마. 시설 및 장비는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중 사무실과 실험실 및 기기실은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 중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된 임차계약서를 지정권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일반 분야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동일한 소재지에서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페닐(PCBs) 분야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페닐 분야의 시설 기준에 따른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 시설별로 각각 50퍼센트 이상의 면적과 책임자 1명 이상 및 담당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동일한 소재지에서 일반 분야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페닐 분야의 폐기물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분야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가. 일반 분야

1) 분석항목

구분	분 석 항 목
일반항목	수소이온농도, 수분 및 고형물,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 기름성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유해물질	납 또는 그 화합물, 구리 또는 그 화합물, 비소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휘발성저급염소화탄화수소류, 노말핵산추출물질, 페놀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용해성철 또는 그 화합물, 아연 또는 그 화합물, 용해성망간 또는 그 화합물, 불소화합물, 총대장균군수,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무기성질소, 총인
유기용제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메탄,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모노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 1,1-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펜,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 및 그 밖의 유기용제류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 것 가)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40제곱미터 이상 나) 항온·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40제곱미터 이상
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추 것. 다만, 가)부터 바)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1대 이상 나) 구테르나다니쉬(K.D.) 농축기 또는 회전증발농축기 1대 이상 다) 정제용컬럼 10개 이상

구분	시설 및 장비명
	라) 수욕조(water bath) 1대 이상 마) 증류수 제조기 1대 이상 바) 0.1mg 단위의 저울 1대 이상 사) 4℃ 이하의 보관이 가능한 시료냉장보관실 1대 이상 아) 용출용 왕복진탕기(수평인 것으로 200rpm 이상인 것) 1대 이상 자) 다음에 해당하는 체 각 1대 이상 (1) 재질이 철인 0.5mm의 체 (2) 재질이 철인 5mm의 체 (3) 재질이 비철인 0.5mm의 체 (4) 재질이 비철인 5mm의 체 차) 온도범위가 50℃부터 200℃까지인 건조기 1대 이상 카) 온도범위가 200℃부터 700℃까지인 회화로 1대 이상 타) pH 미터 1대 이상 파) 증류장치 세트(시인용) 1대 이상 하)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ICP) 1대 이상 거) 자석교반기 1대 이상 너) 전기열판 1대 이상 더) 자외선 및 가시선 분광계 1대 이상 러) 배양기(BOD 분석용) 1대 이상 머) 시료추출용 장치(분액깔대기 진탕추출기로서 200rpm 이상인 것) 1대 이상 버) 속슬렛 추출장비 1대 이상

3) 기술능력

구분	자격기준
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춘 것 가)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폐기물, 수질 또는 토양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구분	자격기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담당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춘 것 가)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 석사학위 또는 폐기물, 수질 또는 토양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분야

- 1) 분석항목: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춘 것 가) 후처리시설을 갖춘 실험실: 40제곱미터 이상 나) 항온·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40제곱미터 이상
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것. 다만, 가)부터 다)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1대 이상 나) 구데르나다니쉬 농축기 또는 회전증발농축기 1대 이상 다) 정제용컬럼 10개 이상 라) 수욕조 1대 이상 마) 증류수 제조기 1대 이상 바) 0.1mg 단위의 저울 1대 이상 사) 4℃ 이하의 보관이 가능한 시료냉장보관실 1대 이상 아) 용출용 왕복진탕기(수평인 것으로 200rpm 이상인 것) 1대 이상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자) 다음에 해당하는 체 각 1대 이상 (1) 재질이 철인 0.5mm의 체 (2) 재질이 철인 5mm의 체 (3) 재질이 비철인 0.5mm의 체 (4) 재질이 비철인 5mm의 체 차) 시료추출용 장치(수직 진탕추출기로서 200rpm이상인 것) 1대 이상 카) 속슬렛 추출장치 1대 이상 타) 환류냉각기 1대 이상

3) 기술능력

구분	자격기준
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춘 것 가)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폐기물, 수질 또는 토양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담당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춘 것 가)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폐기물, 수질 또는 토양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석면 분야

- 1) 분석항목: 석면류
-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춘 것 가)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30제곱미터 이상 나) 항온·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30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
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것. 다만, 가)부터 라)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편광현미경(PLM) 1대 이상 나) X선 회절분석기(XRD) 1대 이상 다)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1대 이상 라) 석면 시료 채취 및 전처리(前處理) 장비 1대 이상

3) 기술능력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전공,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전공, 또는 화학·화공 분야·전공에서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확보할 것

구분	자격기준
책임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갖춘 것
담당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춘 것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석면 관련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석면 관련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별표 5의3] 〈신설 2020. 5. 19.〉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업종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폐기물 수집·운반업	5년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비고

2020년 5월 26일 이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27일을 최초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기산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별표 6] 〈개정 2022. 11. 29.〉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5.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6.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않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
7.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9.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0.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2.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3.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6.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7.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	-
19.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별표 7] <개정 2016. 7. 19.>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3조의3제1항 관련)

위반행위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별표 8] <개정 2020. 11.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삭제 <2020. 5. 19.>				
라. 삭제 <2020. 5. 19.>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0 20 50	20 30 70	30 50 100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2	300	500	1,000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300	600	1,000
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4	300	600	1,000
하.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거.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3	100	200	300
너.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더.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5	500 500 500	700 700 700	1,000 1,0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 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 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300	500	700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러. 삭제 <2020. 5. 19.>				
며.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 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	50	70	100
버.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 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6	500	700	1,000
서.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 2	100	200	300
여.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7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 항제12호의3	100	200	300
처.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 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 항제12호의4	100	200	300
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퍼. 삭제 <2020. 5. 19.>				
허. 삭제 <2020. 5. 19.>				
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	200	400	600
노.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 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3	500	700	1,000
1) 등록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 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 한 경우		300	500	7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로.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의4	500	700	1,000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모.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200	500	1,000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700	1,000	1,000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200	500	1,000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량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조.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7호의2	50	70	100
초.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300	300	300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호.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3	100	200	300
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누.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4	100	200	300
두. 삭제 <2020. 5. 19.>				
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수.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주.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6543
[별표 2] 폐유기용제중화로잔속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 관련)	6544
[별표 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6544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6545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6552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6553
[별표 4의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6570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6571
[별표 5의2] 삭제 <2016. 7. 21.>	6590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6590
[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6605
[별표 5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6607
[별표 5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6608
[별표 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 관련)	6609
[별표 5의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6610
[별표 5의9]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6611
[별표 6]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6612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6613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6620
[별표 8의2]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6623
[별표 8의3]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6624
[별표 8의4]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6625
[별표 8의5]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6626
[별표 8의6]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6626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6627
[별표 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6641
[별표 10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6647
[별표 10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6649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6649
[별표 1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6658
[별표 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6659
[별표 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6660
[별표 15]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6660
[별표 15의2]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	6663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6663
[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6665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6665
[별표 18]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 관련)□	6666
[별표 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6667
[별표 20] 허가·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6669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6669

[별표 1] (개정 2021. 4. 30.)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바.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사.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아.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차.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카.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0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2.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천연방사성핵종(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제2조제2항 관련)

1.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2.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3. 테트라클로로메탄(Tetrachloromethane)
4.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5.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Trichlorofluoromethane)
6. 디클로로에탄(Dichloroethane)
7.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
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2. 디클로로벤젠(Dichlorobenzene)
13. 모노클로로페놀(Monochlorophenol)
14. 디클로로페놀(Dichlorophenol)
15.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16. 1,3-디클로로프로펜(1,3-Dichloropropene)
17.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루오로에탄
(1,1,2-Trichloro-1,2,2-trifluoroethane)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5퍼센트 이상 함유한 물질

[별표 3] <개정 2013.5.31>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별표 4] <개정 2023. 12. 28.>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에틸렌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페아크리로나이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 부식성폐기물

0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02-01-06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 03-05 소각재
-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03-05-0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
-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03-06-01 안정화처리물
 -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 03-06-03 고화처리물
 -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 03-07 폐촉매
- 03-07-01 금속성폐촉매
 -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03-08-01 폐흡착제
 - 03-08-02 폐흡수제
- 04 폐유기용제
-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 05 폐페인트 및 페락카
- 05-01-00 폐유성페인트
 - 05-02-00 폐수성페인트
 - 05-03-00 페락카

06 폐유

06-01 폐광물유

-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 06-01-04 폐연료유
- 06-01-05 폐오일필터
-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 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 06-02-00 폐동식물유
- 06-03-00 그 밖의 폐유

07 폐석면

- 07-01 제품·설비(뿔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폐석면
- 07-01-01 훔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 07-01-02 훔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 필터 등

08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유
-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 09 폐유독물질
 -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 10 의료폐기물
 -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 10-12 위해의료폐기물
 -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12-02 병리계폐기물
 - 10-12-03 손상성폐기물
 -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 11 수은폐기물
 - 11-01 수은함유폐기물
 - 11-01-01 수은함유 페랩트
 - 11-01-02 수은함유 폐제측기기
 - 11-01-03 수은함유 폐전지
 - 11-01-99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12-00-00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 30-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 51-01 유기성오니류
 - 51-01-01 정수처리오니

0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51-01-02 하수처리오니
- 51-01-03 분뇨처리오니
-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 51-02 무기성오니류
 - 51-02-01 폐수처리오니
 - 51-02-02 정수처리오니
 - 51-02-03 하수처리오니
 - 51-02-04 하수준설토
 - 51-02-05 건설오니
 -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로 한정한다)
 -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페플라스틱 필름·시트 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페플라스틱 필름·시트 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 51-03-02 폐합성고무류
 -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5 양식용폐부자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3-08 폐어망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 광재류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4-01 고로슬래그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4-02 제강슬래그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9-03 고화 처리물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 하는 것은 제외한다)	51-10 폐촉매
51-05-01 제철공정분진	51-10-01 금속성폐촉매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51-05-03 발전시설분진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05-04 폐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05-99 그 밖의 분진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11-01 폐흡착제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11-02 폐흡수제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11-03 폐활성탄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06-04 폐여과사	51-12-01 폐석고
51-06-99 그 밖의 폐사	51-12-02 폐석회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51-13 연소잔재물
51-07-01 폐내화물	51-13-01 연탄재
51-07-02 폐도자기조각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08 소각재	51-13-03 석탄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5 커피찌꺼기

51-17-26 버섯폐배지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21 임목폐목재(건설공사·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가지·줄기 등을 말한다)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 껍질·톱밥·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23 폐가구류·폐도장목·폐목재포장재·폐전선드럼·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24 접착제·페인트·기름·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51-20-25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51-22-02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 51-26-00 폐기와
- 51-27 폐섬유류
- 51-27-01 폐천연섬유
- 51-27-02 폐합성섬유
- 51-27-03 폐의류
- 51-27-0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과 영 별표 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51-27-99 그 밖의 폐섬유
- 51-28 폐지류
-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28-02 폐종이류
- 51-28-03 폐벽지
- 51-29 폐금속류
- 51-29-01 고철
- 51-29-02 비철금속
-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 51-30 폐유리류
- 51-30-01 폐유리
-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30-03 페스마트유리
- 51-30-04 폐유리섬유
- 51-30-05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 하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라 한다)]

- 51-30-99 그 밖의 폐유리
- 51-31-00 페타일
- 51-32-00 폐보드류
- 51-33-00 폐판넬
-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 51-36 폐가스포집물
-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 51-37 폐냉매물질
-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역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 51-39-00 폐사료
- 51-40 폐소화기류
- 51-40-01 폐분말소화기
-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51-41 폐전지류
-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41-02 2차폐전지
- 51-41-03 2차폐촉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촉전지는 제외한다)
-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태양광 폐패널

51-41-0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51-42-00 폐의약품류
 51-43-00 폐흑연가루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의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51-45-02 폐차부품류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51-47 조명폐기물
 51-47-01 폐형광등
 51-47-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51-99-00 그 밖의 폐기물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91-06-03 폐합성고무류
 91-07-01 유리병
 91-07-02 폐유리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91-10-0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91-13 조명폐기물
 91-13-01 폐형광등
 91-13-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91-14-00 폐전지류
 91-15-00 연탄재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찌꺼기
 91-17-02 버섯폐배지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91-19-00 폐소화기류
 91-20-00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91-21 1회용 컵
 91-21-01 종이 컵
 91-21-02 합성수지 컵
 91-21-03 금속 컵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별표 4의2] <개정 2022. 11. 29.>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 나. R-2: 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 1) R-2-1: 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 2) R-2-2: 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고상(固狀)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3, R-4)
 - 가. R-3: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 1) R-3-1: 단순 해체, 분리, 파쇄, 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 2) R-3-2: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 3)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 4) R-3-4: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 5) R-3-5: 금속제품 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로 제조하는 유형
 - 나. R-4: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1) R-4-1: 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2) R-4-2: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3) R-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4) R-4-4: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 5) R-4-5: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
 - 6) R-4-6: 재생유기용제, 재생생활유 등 석유정제물을 제조하는 유형
 - 7) R-4-7: 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나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8) R-4-8: 동·식물성 유지나 비누 등 유지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9) R-4-9: 수처리제나 유기탄소원, 응집제 등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10) R-4-10: 의약품을 제조하는 유형
3.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R-5, R-6)
 - 가. R-5: 유·무기물질을 농업의 생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 1)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 2) R-5-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 3) R-5-3: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 4)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 나. R-6: 유기물질을 토질개선의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 1)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제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 2) R-6-2: 비탈면 녹화토[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4.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제·복토제·도로기층제·채움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
 - 가. R-7-1: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제·보조기층제·복토제·도로기층

재·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 나. R-7-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뒷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다. R-7-3: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또는 바다와 인접한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차수재로 사용하는 유형
라. R-7-4: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마. R-7-5: 석유저장 옥외탱크, 지하매설관로 주변의 방식사로 사용하는 유형
바. R-7-6: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

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가. R-8: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유형

- 1) R-8-1: 시멘트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2) R-8-2: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

나.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 1) R-9-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
2) R-9-2: 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들거나 유화정제연료유로 사용하는 유형
3) R-9-3: 열분해, 탄화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수소 등의 기체, 액체 및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4) R-9-4: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5) R-9-5: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6.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R-10)

R-10-1: R-3부터 R-9까지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7.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R-11)

- 가. R-11-1: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나. R-11-2: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0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4의3] <개정 2023. 5. 31.>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1. 지정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페폴리에틸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2	페폴리프로필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3	페폴리염화비닐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4	페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5	페페놀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6	페폴리우레탄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7	폐합성고무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8	페폴리스티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9	페아크리로나이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01-02-03	제지공정오니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R-3-1, R-3-2, R-3-4, R-10	해당 없음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01-02-99	그 밖의 공정 오니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99	그 밖의 폐농약	재활용 금지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페염산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촉전지는 제외한다)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5-1, R-10	해당
02-01-03	폐질산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R-4-7, R-10	
		R-4-9, R-10	해당
02-01-06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촉전지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5-1, R-10	해당
02-01-99	그 밖의 폐산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2	폐암모니아수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2	납 열처리·아금(冶金) 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99	그 밖의 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2-00	분진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3-02	화학적점결폐주물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R-1-1	해당 없음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R-2-1,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R-2-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03-08-02	폐흡수제	R-2-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R-2-1, R-3-2, R-4-6, R-10	해당 없음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R-2-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5	페페인트 및 페락카		
05-01-00	페유성페인트	R-2-1, R-9-2, R-10	해당 없음
		R-3-2, R-4-6, R-4-7, R-10	해당
05-02-00	페수성페인트	R-2-1, R-3-2, R-4-7, R-10	해당 없음
05-03-00	페락카	R-2-1, R-9-2, R-10	해당 없음
		R-3-2, R-4-6, R-4-7, R-10	해당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함)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	R-3-3, R-4-6, R-9-2,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예유·냉동기유·터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4	폐연료유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5	폐오일필터	R-3-1, R-3-2, R-9-2, R-10	해당 없음
06-01-06	기름 함유 폐전선·폐케이블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 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2-00	폐동식물유	R-9-2, R-10	
06-03-00	그 밖의 폐유	R-2-1, R-4-6, R-9-2, R-10	해당 없음
07	폐석면		
07-01	제품·설비(뽕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폐석면		
07-01-01	흠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재활용 금지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7-01-02	흠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재활용 금지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재활용 금지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바닥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집진필터 등	재활용 금지	
08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유	재활용 금지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재활용 금지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재활용 금지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재활용 금지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재활용 금지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재활용 금지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R-2-1, R-3-2, R-3-3, R-10	해당 없음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10-12	위해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활용 금지	
10-12-02	병리계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3	손상성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R-4-10	해당 없음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1	수은폐기물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 첨가 페램프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02	수은 첨가 폐계측기기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03	수은 첨가 폐전지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99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R-4-7	해당 없음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2.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7-3, R-8-2, R-10	해당
51-01-02	하수처리오니	R-3-1, R-3-2, R-3-4, R-4-9,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3	분뇨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5	펠프·제지공정오니	R-3-1, R-3-2, R-3-3, R-3-4, R-4-3, R-9-3, R-9-4,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5-4, R-6-1, R-7-3, R-8-2,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6-1, R-7-3, R-8-2, R-10	해당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3-4, R-4-3, R-9-3, R-9-4,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5-4, R-6-1, R-7-3, R-8-2, R-9-5, R-10	해당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7-3, R-8-2, R-9-5, R-10	해당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7-3, R-8-2, R-10	해당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2	정수처리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2-03	하수처리오니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4	하수준설토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5	건설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6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석재·골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로 한정한다)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R-3-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9	보크사이트 잔재물	R-3-1, R-3-2, R-4-7,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 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 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 한다) 폐수처리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 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 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 한다) 공정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 수지류는 제외한다)	R-1, R-2, R-3-2,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2	폐합성고무류	R-1-1, R-2-1,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R-1-1, R-2-1,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9-1, R-10	해당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5	양식용폐부자	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R-1-1, R-2-1,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R-8-1, R-8-2, R-9-1, R-10	해당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R-1, R-2,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3-5, R-8-1, R-8-2, R-9-1, R-10	해당
51-03-08	페어망	R-1, R-2, R-3-3, R-4-4, R-9-3, R-9-1,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 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 전선을 포함한다)	R-1, R-2, R-3-1,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2	제강슬래그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R-7-2, R-7-3, R-7-6, R-10	
51-04-04	선광공정광재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99	그 밖의 광재류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R-4-2, R-7-3, R-8-1, R-10	해당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03	발전시설분진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04	폐실리카 품(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99	그 밖의 분진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8-1,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R-1-1, R-4-1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5, R-7-6, R-10	해당
51-06-02	화확점결폐주물사	R-1-1, R-4-1	해당 없음
		R-3-5, R-4-2, R-7-5, R-10	해당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R-1-1, R-3-1, R-3-2, R-10	해당 없음
		R-3-5, R-4-2, R-10	해당
51-06-04	폐여과사	R-1-2	해당 없음
		R-2-2, R-4-2, R-10	해당
51-06-99	그 밖의 폐사	R-1-1, R-3-1, R-3-2, R-7-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7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7-02	폐도자기조각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산재	R-4-2, R-10	해당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3, R-10	해당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03	고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9-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	폐촉매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10-01	금속성폐촉매	R-1-1,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03	페멤브레인수지	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99	그 밖의 폐촉매	R-1-1, R-3-1, R-3-2, R-3-4, R-4-1, R-4-7,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R-1-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02	폐흡수제	R-1-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03	폐활성탄	R-1-1, R-3-4, R-4-5, R-10	해당 없음
		R-3-5, R-4-2, R-8-2, R-10	해당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R-1-1, R-3-2, R-3-3,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R-3-4	해당
		R-4-2, R-5-1, R-7-2, R-7-3, R-10	
51-12-02	폐석회	R-1-1	해당 없음
		R-3-3, R-4-2, R-5-1, R-7-2, R-7-3, R-10	해당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R-4-5, R-10	해당 없음
		R-4-2, R-8-2, R-10	해당
51-13-03	석탄재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R-3-1, R-3-2, R-4-7,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10	해당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14-02	폐석재	R-1-1, R-2-1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15	페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R-1-2, R-2-1, R-2-2, R-3-3, R-3-4, R-4-4, R-4-5,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8-1, R-8-2, R-10	해당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R-1-2, R-2-1, R-2-2, R-3-3, R-3-4, R-4-4, R-4-5,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8-1, R-8-2, R-10	해당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R-4-8, R-9-2,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R-3-4, R-4-8, R-9-4, R-4-2,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R-3-4,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17-04	폐패각	R-1-2, R-2-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7-2, R-10	해당
51-17-05	폐모피류	R-1-1, R-2-1, R-4-8,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6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R-1-1, R-2-1, R-2-2, R-3-4,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7	동물털	R-2-1, R-4-8, R-10	해당 없음
		R-5-1, R-5-2, R-10	해당
51-17-08	동물성유지류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1	주정박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2	맥주박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3	유박유잔재물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4	초본류	R-1-2, R-5-3, R-6-1,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R-9-1, R-9-3, R-10	해당
		R-5-1, R-5-2, R-5-4, R-8-2, R-10	
51-17-25	커피찌꺼기	R-4-5, R-4-8, R-5-1, R-5-2,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2-2, R-4-2, R-5-4, R-6-1, R-8-2, R-9-1, R-9-5, R-10	해당
51-17-26	버섯폐배지	R-4-8, R-5-1, R-5-2, R-9-3, R-9-4, R-10	해당 없음
		R-5-4, R-6-1, R-8-2, R-9-1, R-9-5, R-10	해당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R-4-5, R-5-1, R-5-2, R-5-4, R-6-1, R-8-2, R-10	해당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R-4-8,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8-2, R-10	해당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18-03	프린트토너 및 페가트리지 폐부속품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9-00	왕겨 및 쌀겨	R-1-2, R-4-5, R-5-3, R-6-1, R-8-2,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10	해당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부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21	임목폐목재(건설공사·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부리·가지·줄기 등을 말한다)	R-1-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 껍질·톱밥·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1-1, R-1-2,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51-20-23	페가규류·페도장목·폐목재포장재·폐전선드럼·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20-24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5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R-1-2, R-2-2, R-3-4, R-4-2,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R-3-4, R-4-2, R-4-5, R-5-1,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R-3-1, R-3-2,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21-02	건설폐토석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R-4-2,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22	페콘크리트류		
51-22-01	페콘크리트	R-1-2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22-02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	R-1-2	해당 없음
		R-2-2, R-4-2, R-10	해당
51-23-00	페아스팔트콘크리트	R-4-2, R-10	해당
51-24-00	페벽돌	R-1-1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5-00	페블록	R-1-1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6-00	폐기와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R-1-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7-02	폐합성섬유	R-1-1, R-2-2, R-3-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27-03	폐의류	R-1-1, R-2-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7-99	그 밖의 폐섬유	R-1-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3, R-4-3, R-9-1,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8-02	폐종이류	R-3-3, R-4-3, R-9-1,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8-03	폐벽지	R-3-3, R-4-3, R-9-1,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2	비철금속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3, R-4-1,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29-04	폐금속 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R-2-1,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2-1,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3	페스마트유리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4	폐유리섬유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5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1, R-4-2, R-10	해당
51-30-99	그 밖의 폐유리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1-00	페타일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2-00	페보드류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3-00	폐판넬	R-3-1,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R-4-2, R-10	해당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R-3-1,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36	폐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R-4-7, R-10	해당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R-4-7, R-10	해당
51-37	폐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R-4-9,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6-1, R-10	해당
51-38-02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6-1, R-10	해당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R-4-9,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R-8-2, R-9-2,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39-00	폐사료	R-3-4, R-5-3, R-10	해당 없음
		R-5-1, R-9-4, R-10	해당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 소화기	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5-1, R-10	해당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R-4-1, R-10	해당 없음
		R-4-4, R-10	해당
51-41	폐전지류		
51-41-01	1차폐전지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2	2차폐전지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태양광 폐패널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R-2-1, R-2-2,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2-00	폐의약품류	재활용금지	
51-43-00	폐흑연가루	R-1-1, R-2-1,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말한다)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R-3-1, R-3-2, R-3-3, R-9-2,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45-02	폐차부품류	R-1-1, R-2-1	해당 없음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재활용 금지	
51-47	조명폐기물		
51-47-01	폐형광등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47-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99-00	그 밖의 폐기물		

3. 생활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R-3-3, R-9-1,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R-5-1, R-5-2, R-5-4, R-6-1, R-9-3, R-9-4, R-10	해당 없음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R-4-8, R-9-2,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해당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R-3-3, R-4-3,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R-3-3, R-4-1, R-10	해당 없음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R-3-3, R-3-4,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10	해당
91-06-03	폐합성고무류	R-3-3, R-3-4,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7-01	유리병	R-2-1, R-3-3, R-4-2, R-10	해당 없음
91-07-02	폐유리	R-3-3, R-4-2, R-10	해당 없음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R-1-1, R-2-1, R-2-2,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	R-3-3, R-4-4, R-9-1, R-9-2, R-9-3, R-10	
		R-8-1, R-8-2, R-10	해당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R-1-1, R-2-1,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R-1-1, R-2-1, R-5-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5, R-8-1, R-8-2, R-9-1, R-10	해당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 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 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 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2, R-4-5, R-8-1, R-8-2, R-9-1, R-10	해당
91-10-0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 부제가 사용된 목재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 을 말한다)	R-4-2, R-10	해당 없음
		R-7-1, R-7-2, R-7-3, R-10	해당
91-12-00	페타일 및 도자기류	R-4-2, R-10	해당 없음
		R-7-1,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91-13	조명폐기물		
91-13-01	폐형광등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91-13-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91-14-00	폐전지류	R-3-1, R-3-3, R-10	해당 없음
91-15-00	연탄재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 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찌꺼기	R-4-5, R-4-8, R-5-1, R-5-2,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2-2, R-4-2, R-5-4, R-6-1, R-8-2, R-9-1, R-9-5, R-10	해당
91-17-02	버섯폐배지	R-4-8, R-5-1, R-5-2, R-9-3, R-9-4, R-10	해당 없음
		R-5-4, R-6-1, R-8-2, R-9-1, R-9-5, R-10	해당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R-4-5, R-8-2, R-9-1, R-10	해당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R-3-3,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R-3-3, R-3-4,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19-00	폐소화기류	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4-1, R-4-4, R-5-1, R-10	해당
91-21	1회용 컵		
91-21-01	종이 컵	R-3-3, R-4-3, R-10	해당 없음
91-21-02	합성수지 컵	R-3-3, R-4-4, R-10	해당 없음
91-21-03	금속 컵	R-3-3, R-4-1, R-10	해당 없음

비고

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이 표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이 표에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
3.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가 “해당”인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하여 해당 폐기물이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활용 유형 중 R-10은 동일한 사전 분석·확인 필요 대상(“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각각의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제5조제4호 관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일반기계기사 1명

라.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처분시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매립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다. 토목기사 1명

라. 매립시설(9,900 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 또는 33,000 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사 1명

나. 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기계정비산업기사 1명

라. 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각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각 호 라목 또는 마목의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공 또는 운전 분야의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 1)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물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가) 폐전기전자제품류,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최대적재량 2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고체상태의 폐기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4) 액체상태(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가목3)부터 6)까지 및 9)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나목1), 4), 5), 9) 및 13)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료·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3) 페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가) 삭제 (2011.9.29)
- 나) 삭제 (2011.9.29)
-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 5) 폐의약품과 폐농약은 소각하여야 한다.
- 6)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다목1) 및 2)리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삭제 (2014.1.17)
- 3)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부숙,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2011.9.29>

7) 삭제 <2011.9.29>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압축·파쇄·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은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폐기물은 제외한

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페레미콘·페콘크리트·페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해야 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체상태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전기·전자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기름성분이나 내부에 포함된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폐지·고철·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나 폐내화물, 폐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흘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흘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폐전주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
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흘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5)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라 한다)의 경우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하며,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차량에 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제외한다.

7)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운반
해야 한다.

8)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배터리 단위,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불연성·
비전도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 상자에 담아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
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
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
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
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
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 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 라)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 4) 3)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설시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 6)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처리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기록 내용은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발생일시 (연/월/일)	발생량 (kg)	자가처리		위탁처리			
		처리 일시	처리량	처리 일시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 7)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증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9) 삭제 <2021. 7. 6.>
- 라. 처리의 경우
 - 1) 공통기준
 -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나) 오니
 -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 (바) 삭제 <2011.9.29>
-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가) 소각하여야 한다.
-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와 늪·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삭제 <2011.9.29>
- (3) 삭제 <2011.9.29>
-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하) 폐의약품은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폐의약품 중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맞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물질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할 수 없고 가연성이 아닌 고상의 물질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침전, 증발·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먼저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설(자가 수질 오염방지사설만 해당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너) 도자기조각, 폐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더)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의로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 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다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나) 액상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다) 가) 또는 나)에도 불구하고 폐면압기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흘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폐유독물질의 수집·운반차량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 배관을 통해 폐유독물질을 보관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배관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2) 사고 시 폐유독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품 또는 응급조치 장비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 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6)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

지 아니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박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서로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실어야 한다.

7) 폐유독물질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 가) 폐유독물질은 해당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운반해서는 안 된다.
-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기구·포크리프트 포크 등이 있는 구조를 말한다)로 된 폐유독물질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폐유독물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용기 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해야 한다.
 - (2)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유독물질이 담긴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거나 도전(導電)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3) 고온 등 온도변화로 인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될 수 있는 폐유독물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다) 폐유독물질을 보관시설, 탱크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된 물질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8)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운반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집·운반해야 한다.
- 가) 수은함유폐기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고, 용기의 바닥 및 벽면 등에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삽입해 운반해야 한다.
-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이하 "수은전용용기"라 한다)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수집·운반해야 한다.

9)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가) 폐기물 중에서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수집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 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수집해야 한다.

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전에 포장한 상태에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폐기물의 종류	
수거일자	
배출자명	
운반자명	
처리자명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뽀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흡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흡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흡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탱크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 10) 폐유독물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 가) 종류가 다른 폐유독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유독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나) 폐유독물질을 혼합하여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혼합 전에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
- 다) 폐유독물질 보관시설에는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 등을 설치하여 보관시설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원활히 배출 및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 보관시설에는 75룩스(lux) 이상의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채광설비 또는 조명설비를 갖추야 한다.
- 마) 자연발화성 폐유독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습도와 온도를 낮추거나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1)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 가)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 11) 삭제 <2021. 7. 6.>
- 12) 삭제 <2021. 7. 6.>
- 1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 가)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 나) 보관장소는 지붕과 벽면이 있고, 통풍이 잘 되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외에 보관할 수 있다.
- 다)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보관장소를 출입하는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폐산·폐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나목9)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에 해당 폐기물에 함유된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붙여야 한다.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해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폐산·폐알칼리, 폐농약,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독물질을 싣거나 내릴 때 및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다른 보관시설로 옮길 때에는 업무책임자,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영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감독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이나 폐알칼리의 경우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2)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3) 폐산이나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분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다) 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마)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바) 삭제 <2011.9.29>

(2) 고체상태의 것[타르·피치(pitch)류는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타르·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9.29>

(5) 삭제 <2011.9.29>

(6) 삭제 <2011.9.29>

(7) 삭제 <2011.9.29>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분하여야 한다.
 - (2) 할로겐족으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3)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4)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가) 소각하여야 한다.
 -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마) 삭제 <2011.9.29>
 - (바) 삭제 <2011.9.29>
 - (5)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마) 폐페인트와 페레커의 경우

- (1) 폐페인트와 페레커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2) 삭제 <2011.9.29>
- 바) 폐석면의 경우
-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2) 고형화되어 있어 흘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 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뽕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층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3.3.>

아) 폐흡수제와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고온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포함된 것은 포함된 기름을 추출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1)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아닌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나) 안정화처분해야 한다.

(다)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해야 한다.

(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반하여 지체 없이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다)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고,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6)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5)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하) 안정화·고형화·고화처리물의 경우

-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2)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고형화처리물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거) 폐유독물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너) 폐오일 필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소각하여야 한다.
- (2) 파쇄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 필터를 파쇄처분한 후 폐유·고철은 별도로 회수·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 (3) 증류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회수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한다.

더) 수은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1) 수은함유폐기물은 회수하여 처리하되, 그 처리 결과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을 함유해야 한다.
- (2)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영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에 관한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저장·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 (3)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하거나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분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 (1)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비산재를 포집할 수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되, 포장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
-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나)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1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각해야 하며,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 (2)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나)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말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가) 인체조직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묻거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
- 나)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 2)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호 다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㉔)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 1) 삭제 <2011.9.29>
- 2)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 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 6) 5)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 8)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두경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 11) 전용용기 및 3) 단서에 따른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검정색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비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6)에 따라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9)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 12)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㉔),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 13)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제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마)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긴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중 의원, 제2호 중 보건지소, 제3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⑥ 운반장소:		

(처리업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업소별 수탁량		
	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설치요령)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5) 삭제 <2008.8.4>

6) 삭제 <2008.8.4>

7) 삭제 <2008.8.4>

8) 삭제 <2008.8.4>

9) 삭제 <2008.8.4>

라. 수집·운반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장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장용기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의료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료폐기물은 홀날림·유출 및 악취의 새어 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의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7)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 처리의 경우

- 1)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
 - 가)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 나)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 3)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의료폐기물배출자는 멸균 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검사인력: 임상병리사나 위생사 중 1명 이상
 - 나) 시설·장비: 검사실,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 4)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 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분할 수 있다.
- 5) 다음의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생물·화학폐기물
 - 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최종처분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
- 6) 5)외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분 하여야 한다.
- 7)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
- 8)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 9) 멸균분쇄처분 시 별표 11 제2호가목2)바)②에 따른 검사 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10)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11)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하여야 한다.

6. 폐기물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

반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3)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8)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업체명: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 · 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비고

1.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용기·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2)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그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같은 항에 따라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4)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입동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수입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2)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3)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 4)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가) 제10조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 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 마.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차량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바.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 사.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가목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 2) 철도차량이나 선박
 -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으로 등록된 차량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 6)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제66조제3항·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아.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 1) 가목1)·2)·4)·8) 또는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도(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도를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도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 3)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
- 4)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제66조제3항·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별표 5의2] 삭제 <2016. 7. 21.>

[별표 5의3] <개정 2023. 5. 31.>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가.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재생한 원료나 중간가공 폐기물이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별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
- 나. 재활용 과정에서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재활용을 위해 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 일자와 양,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다.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라.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규격 이외에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 비료의 규격 등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가전제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는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1)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 2) 폐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 방법 및 기준

3) 폐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바. 별표 4의2 제2호나목2)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골재 제품을 제조해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유형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다.

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가.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1) R-1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1-1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 이후 재사용해야 하며, 대상 폐기물 이외의 다른 물질을 혼합해 재사용할 수 없다.
- (3) 반드시 동일한 용도 및 공정에 재사용되어야 하며, 본래 용도와 다른 폐기물 특성을 이용해 재사용할 수 없다.

나) R-1-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일정한 형태를 갖춘 제품으로 재사용해야 하며, 별표 4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활용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 (2)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 이후 재사용해야 하며 대상 폐기물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폐기물을 혼합해 재사용할 수 없다.
- (4) 폐철도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가) 폐철도목재받침목은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

용,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한다.

(나)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은 표면에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하며, 야의 계단용 및 바닥재용, 노반·경사면 등 보강용, 산업시설·선박제조시설·중장비 등 받침용, 기초석·제방 및 인공어초용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5) 폐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구조물의 평가를 위해 제조된 공시체(供試體: 재질 시험을 위한 콘크리트 조각)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R-2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2-1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동일한 용도 및 공정에 재사용되어야 하며, 본래 용도와 다른 폐기물 특성을 이용해 재사용할 수 없다.
- (3) 재활용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페드럼 등의 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회수해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해야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4) 폐황산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황산이 함유된 폐축전지를 수리·수선해 관련 품질 규격과 성능에 적합한 축전지로 재사용해야 한다.
- (5) 삭제 <2020. 5. 27.>

나) R-2-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기물을 일정한 형태를 갖춘 제품으로 재사용해야 하며, 별표 4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활용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 (2)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재활용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페드럼 등의 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회수해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해야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4) 폐철도반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 (가) 폐철도목재반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 을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계단용 또는 조정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계단용 또는 조정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한다.
 - (나) 폐철도콘크리트반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을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노반·경사면 등 보강용, 산업시설·선박제조시설·중장비 등 받침용, 기초석·제방 및 인공어초용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 (5) 커피찌꺼기를 축사 깔개 또는 분뇨처리장 등의 수분조절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수분함량 2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

나.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1) R-3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3-1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가) 폐가전제품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량 및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이용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회수 및 보관해야 하며, 냉매압축기에 들어 있는 폐유는 냉매물질과 분리해 별도로 회수해야 한다.
 - (나) 텔레비전 및 컴퓨터의 모니터는 앞면 유리 및 뒷면 유리를 분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형광물질은 밀폐된 장소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수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 (다) 냉장고에서 회수된 발포단열재는 파쇄·절단 등을 거쳐 발포단열재 등의 제품 원료로 재활용해야 한다.
 - (라) 폐가전제품 중 인쇄회로기판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 (2)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산물 및 잔재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가) 회수된 금속을 고품위의 금속 생산원료로 다시 사용(회수된 금속이 중·저품위 금속 또는 금속의 농축물인 경우로서 고품위의 금속 정련·정제 등을 위해 공급·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합금 또는 제품 생산원료 등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산업소재 원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 (나)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재활용하는데 필요한 탈수·건조·절단, 파쇄·분쇄 및 선별 등 기계적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 (3) 폐촉매로 오산화바나듐, 삼산화몰리브덴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 중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산화물 중 오산화바나듐(V_2O_5)의 경우

- ① 바나듐: 무게비율 15.0퍼센트 이상
- ② 기름성분: 불검출

(나) 산화물 중 삼산화몰리브덴(MoO_3)의 경우

- ① 몰리브덴: 무게비율 30.0퍼센트 이상
- ② 기름성분: 불검출

나) R-3-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폐가전제품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량 및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이용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회수 및 보관해야 하며, 냉매압축기에 들어 있는 폐유는 냉매물질과 분리해 별도로 회수해야 한다.

(나) 텔레비전 및 컴퓨터의 모니터는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형광물질은 밀폐된 장소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수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다) 냉장고에서 회수된 발포단열재는 파쇄·절단 등을 거쳐 발포단열재 등의 제품 원료로 재활용해야 한다.

(라) 폐가전제품 중 인쇄회로기판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2)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산물 및 잔재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회수된 금속을 고품위의 금속 생산원료로 다시 사용(회수된 금속이 중·저품위 금속 또는 금속의 농축물인 경우로서 고품위의 금속 정련·정제 등을 위해 공급·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합금 또는 제품 생산원료 등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산업소재 원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나)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재활용하는데 필요한 탈수·건조·절

단, 파쇄·분쇄 및 선별 등 전처리 공정에 필요한 기계적 처리시설과 금속의 추출 및 정련·회수 등에 필요한 용융·용해·고로 시설 및 정련·정제·회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폐촉매에서 오산화바나듐, 삼산화몰리브덴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이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다) R-3-3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를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재활용 대상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 외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리·제거해야 한다.

(나) 폐유·폐유기용제·페인트·페락카·폐농약·폐유독물·폐석면·페폴리염화비닐(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제거해야 한다.

(다) 폐지 또는 고철을 종이·판지, 포장용 완충재,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에 따라 폐유 등을 담았던 용기 등을 제거한 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다음의 이물질(폐지 또는 고철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함량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의 결과를 폐지 또는 고철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①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

② 폐지를 종이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 폐지를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3퍼센트

이하

④ 폐지를 ㉗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5퍼센트 이하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열분해하여 생산한 열분해유는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0.15퍼센트 이하

(나)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

(다) 회분(灰分: 유기질을 연소시켜 재로 만든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무게비율로 0.05퍼센트 이하

(라) 황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 무게비율로 0.2퍼센트 이하

(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바)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사) 크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3) 폐합성수지류를 식품 용기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오염 방지를 위해 보관·선별·투입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폐운활유 또는 정제연료유(폐유를 별표 4의2 제5호나목2)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를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폐운활유는 제2호마목2)가)2)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정제한 후 용제추출 또는 수침반응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나) 정제연료유는 용제추출 또는 수침반응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다) (나)에 따라 처리되는 정제연료유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라) R-3-4 유형의 재활용 기준

재활용된 원료물질은 제품의 제조를 위한 용도로 한정하되, 별도의 추가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밖에 해당 원료물질을 관리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 또는 규격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마) R-3-5 유형의 재활용 기준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R-4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시멘트 제조 또는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급냉, 수쇄·풍쇄 등을 통한 파쇄 공정을 거쳐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시멘트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동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㉗ 납: 킬로그램 당 3,200밀리그램 미만

㉘ 구리: 킬로그램 당 10,000밀리그램 미만

㉙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미만

㉚ 비소: 킬로그램 당 900밀리그램 미만

㉛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② 아연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㉗ 납: 킬로그램 당 7,000밀리그램 미만

㉘ 구리: 킬로그램 당 14,000밀리그램 미만

㉙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㉔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㉕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 ③ 그 외의 경우
 - ㉖ 납: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 ㉗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 ㉘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㉙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㉚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나) 콘크리트용 골재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용도별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입도(粒度)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한국산업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용도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비산재, 바닥재 등 소각재와 그 잔재물이나 보크사이트 잔재물(적토(赤土),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처리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가) 강열감량(強熱減量)은 5.0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 용출기준

(단위: mg/L)

항목	용출농도
납과 그 화합물	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1.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3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1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10 이내
시안화합물	0.20 이내
염소화합물	250.0 이내

비고

1. 염소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 등의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중금속 측정을 위한 용출조작을 한 후 해당 용출용액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염소이온 농도값을 따른다.
2. 고화제 제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는 소각재 및 그 화합물과 다른 원료물질을 혼합하여 재활용하는 단계에서 실험한 결과 기준 농도 이내이면 용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수산화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보크사이트 잔재물 등을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다음의 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따른 요업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충족하도록 소각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용출 또는 함량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용출기준

(단위: mg/L)

항목	용출농도
납과 그 화합물	0.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0.5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1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3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050 이내
시안화합물	0.050 이내

비고: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나) 중금속 등 함량 기준

(단위: mg/kg)

항목	함량기준(바닥재 재활용제품 1kg당)
카드뮴	12.0 이내
구리	200.0 이내
비소	20.0 이내
수은	16.0 이내
납	400.0 이내
6가크롬	12.0 이내
시안	120.0 이내

비고: 각 항목은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 (7) 정수처리오니로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료로 사용하는 정수처리오니는 (11)(나)②에서 정한 철 외의 대체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조된 요업제품은 (6)(가)의 용출기준과 (나)의 중금속 등 함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8) 소성과정을 거쳐 폐패각을 가공한 폐패각 분말을 황토포장, 황토미장, 황토블록 등 시멘트 대체용 경화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패각 분말은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함량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화합물: (6)(나)의 바닥재를 이용한 요업제품의 중금속 등 함량 기준 이내
- (나) 수소이온농도(pH): 12.4 이하
- (9)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재생주물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 수소이온농도(pH): 6.0 이상 11.0 이하
- (나) 비중: 2.3 이상 2.8 이하

(다) 이물질: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

(라)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및 6가크롬화합물: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일 것

(10) 폐석고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시멘트 응결지연제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무수황산: 무게비율 38.0퍼센트 이상

(나) 수용성 인산: 무게비율 0.1퍼센트 미만

(다)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일 것

(11)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품 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철 대체원료의 경우

- ㉠ 납: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 ㉡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 ㉢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② 철 외의 대체원료의 경우

- ㉠ 납: 킬로그램 당 150밀리그램 미만
- ㉡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 ㉢ 카드뮴: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 ㉣ 비소: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다) (나)에도 불구하고 철 대체원료 중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 ㉔ 납: 킬로그램 당 3,200밀리그램 미만
- ㉕ 구리: 킬로그램 당 10,000밀리그램 미만
- ㉖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미만
- ㉗ 비소: 킬로그램 당 900밀리그램 미만
- ㉘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② 아연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 ㉔ 납: 킬로그램 당 7,000밀리그램 미만
- ㉕ 구리: 킬로그램 당 14,000밀리그램 미만
- ㉖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㉗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㉘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③ 제철소의 폐기물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분진(철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한다) 및 오니(습식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서 철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한다)

- ㉔ 납: 킬로그램 당 4,000밀리그램 미만
- ㉕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 ㉖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미만
- ㉗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㉘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12) 규소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실리카폼)을 콘크리트용 혼화제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만을 재활용 할 수 있다.

(13) 무기성오니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유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골재제품으로 재활용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 라목1)가)(3)의 기준에 적합한 무기성오니만 사용해야 한다.

(14) 커피찌꺼기를 점토로 재활용하여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제2호나목2)가)(6)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커피찌꺼기의 사용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나) R-4-5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철도목재반침목의 경우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나)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다)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라)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

(2) 성형탄(成型炭)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성형목탄의 사용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폐목재만 사용해야 한다.

(3) 톱밥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폐목재·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만 사용해야 한다.

(4) 커피찌꺼기를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 R-4-6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생윤활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고시된 윤활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생윤활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2) 페이소프로필알콜을 제외한 폐유기용제와 폐페인트 등을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공업용으로만 제조할 수 있으며,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납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나) 비소와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다) 수은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라) 카드뮴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 (마) 크롬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바) 증발찌꺼기: 무게 비율로 0.1퍼센트 이하
- (3) 폐유기용제 중 페아이스프로필알콜(프로판-2-올)을 가공하여 정제아이소프로필알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공된 정제이소프로필알콜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 함량: 무게비율로 70.0퍼센트 이상
 (나) 수분: 무게비율로 10.0퍼센트 이하
 (다) 증발찌꺼기: 무게비율로 0.1퍼센트 이하
- 라) R-4-7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재생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제2호나목4)의 공업용 도로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 용도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 수은구성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순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금지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마)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산, 폐알칼리를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산, 폐알칼리에 함유된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다)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 (2) 폐산·폐알칼리를 수처리제로 제조한 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처리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오염물질 중 수처리제에 함유된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수소이온농도는 제외한다)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 (3) 폐산·폐알칼리를 수처리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마) 침출수처리시설
- (4)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식물유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폐기물을 분리, 혼합, 발효 등의 과정을 거쳐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을 제조하거나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유기탄소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부유물질(SS) 5,000mg/L 이하
 (나) 노르말렉산(N-Hexan) 1,000mg/L 이하
 (다) 총질소(T-N) 1,000mg/L 이하
 (라) 총인 400mg/L 이하
 (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20,000mg/L 이상
 (바) 구리·수은·납 및 카드뮴과 그 밖의 오염물질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나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이하
- (사) 유기탄소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균등하게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제지슬러지를 소각한 분말형태의 소각재를 산성폐수응집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량기준 40퍼센트 미만의 산화칼슘, 산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등 알칼리성 분말과 혼합하여 pH 12.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6) 하수처리오니를 오·폐수 처리용 담체(擔體)로 재활용하는 경우 소성·소결과정을 거쳐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 바) R-4-10 유형의 재활용 기준
-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만 재활용 할 수 있다.

다.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

- 1) R-5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5-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R-5-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어류 등 중 반추(反芻) 동물을 제외한 동물·어류 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료제조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다) R-5-4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3)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금지 사실 및 금지 시작일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4) 제조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는 제조한 곳에서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이 없이 뜻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R-6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6-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나) R-6-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녹화토를 생산하는 경우 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 부속공정을 거쳐야 한다.
- (2) 가공된 비탈면녹화토는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수소이온농도(pH): 5.5 이상 8.0 이하
 - (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무기성오니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가)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경우 75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석탄재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이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혼합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무기성오니는 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재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을 포함한다), 토사세척시설, 또는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염 및 건설오염(건설공사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재활용할 수 있다.

- (4) 폐석재의 경우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것만 재활용할 수 있다.
- (5) 철강슬래그·석탄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는 제2호나목2)가)(5)나)의 기준(염소화합물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다.
- (7) 성토재 등(제14조의5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기간 및 성토재 등의 매립 종료 후 2년(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까지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또는 해수의 수질 등을 측정(석탄재에 일반토사류 등을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2018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의 수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R-7-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가)에 따른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공유수면은 바다만 해당하며,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과 매립면허 또는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한다.
- (3) 폐패각을 재활용하는 경우 최대 길이 20밀리미터 이하로 분쇄하고,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해야 하며,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이 부피기준으로 70퍼센트

트 이상이어야 한다.

- (4) 폐석고·폐석회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 후 일반토사류 등과 적절하게 혼합·중화하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가) 혼합·중화하는 경우에는 지형 여건, 환경 위생성 여부, 공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는 80퍼센트, 폐석고는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여야 한다.
- (5) 공유수면의 성토재나 뒷채움재로 재활용한 지역의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에 따른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7)의 기준은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 또는 일반토사와 혼합한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2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다) 유기성 오니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고화처리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생산된 고화처리물은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2322, KS F 2314)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㉓ 수소이온농도(pH): 12.4 이하

㉔ 수분함량: 50퍼센트 이하

㉕ 투수계수: $1.0 \times 10^{-7} \text{cm/sec}$ 이상 $1.0 \times 10^{-3} \text{cm/sec}$ 이하

㉖ 일축압축강도: 0.10MPa 이상

㉗ 유해물질 함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2지역 기준 이내

② 그 밖에 복토재료의 재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료 재활용하는 경우 (최종복토재료의 재활용은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소이온농도(pH)가 7.0 이상 10.0 이하가 되도록 중화하고 수분함량을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하는 보크사이트 잔재물의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와 수소이온농도를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당 폐기물매립시설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승인·신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바다와 인접한 폐기물매립시설에 폐석회, 폐석고를 복토재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여야 한다.

(나) 선별·파쇄 등의 중간 처리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중화하여 다지는 등의 적절한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한다.

① 혼합·중화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폐석고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가) 석산에서 채석 시 또는 골재[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생산하는 골재(바다골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및 폐석분토사

(나)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

(다) (가) 또는 (나)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를 재활용한 골재

(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가) 또는 (나)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와 비슷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기준 및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1)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4)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오염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입폐기물 및 지하수, 지표수 등에 대한 유해물질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기관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석산의 토석채취 허가 또는 신고 기관에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분기마다 1회 이상 (3)에 따른 유해물질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하는 기간에는 매분기별 1회, 재활용이 완료된 이후에는 5년간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의 수질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 수질 등을 분석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5) (3) 및 (4)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살수(撒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R-7-5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지하 매설관로 주변의 방식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점토점결 폐주물사나 단일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하는 폐주물사로서 하수도관, 가스관 및 전선관 등 지하매설관의 방식용으로만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주물사는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려는 지역에 1지역, 2지역과 3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가장 엄격한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옥외석유저장탱크의 하부 방식사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옥외 석유저장탱크의 하부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사에 한정한다.

(나) 옥외석유저장탱크의 하부 방식사로만 재활용하여야 한다.

바) R-7-6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2)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1)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마.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1) R-8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8-1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시멘트 보조연료로 사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 시멘트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저위발열량 외의 항목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납: 킬로그램 당 200밀리그램 미만
- ②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 ③ 카드뮴: 킬로그램 당 9밀리그램 미만
- ④ 비소: 킬로그램 당 13밀리그램 미만
- ⑤ 수은: 킬로그램 당 1.2밀리그램 미만
- ⑥ 염소농도: 무게의 2퍼센트 미만
- ⑦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4,500킬로칼로리 이상

(나) (가)에도 불구하고 폐목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① 납: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이하
- ②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 ③ 카드뮴: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이하
- ④ 비소: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이하
- ⑤ 수은: 킬로그램 당 1.0밀리그램 이하
- ⑥ 염소농도: 무게의 2퍼센트 이하
- ⑦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나) R-8-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지정폐기물이 아닌 가연성 고품폐기물(폴리염화비닐(PVC)은 제외한다)만 재활용할 수 있다.

2) R-9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9-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유를 이용하여 유화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유화정제연료유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가) 정제연료유 등에 적당량의 물과 유화제(乳化劑) 등을 첨가·혼합하여 기계적·화학적·초음파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화시켜야 한다.
- (나) 유화정제연료유(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으로 정제된 정제연료유에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키거나 폐유 중 증기속·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후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킨 것을 말한다)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다) 유화정제연료유의 함수율은 부피비율로 1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2) 폐유나 폐식유를 이용하여 정제 연료유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 (가) 재활용한 정제연료유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4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15퍼센트 이하)
 - ②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2.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 ③ 회분: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 ④ 황분: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 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⑥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⑦ 크롬 및 그 화합물: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⑧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⑨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열분해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30도 이상)
- (3) 폐유나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流動性)이 있는 폐기물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熱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시켜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상태이거나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은 페인트 및 페락커 혼합물,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로 한정하며, 재생연료유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①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 ② 소각시설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
- (나) 재활용한 재생연료유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저위(低位)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 ② 황: 무게비율로 2.5퍼센트 이하
 - ③ 납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이하
 - ④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밀리그램 이하
 - ⑤ 비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밀리그램 이하
 - ⑥ 크롬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이하
 - ⑦ 수은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밀리그램 이하
 - ⑧ 염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 (4) 폐식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디젤(BD100)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R-9-3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페타이어 및 폐목재류 등을 이용하여 열분해 등의

방법으로 가스·유류 등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유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한 유류는 2)가)(2)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3) 폐철도목재반침목은 절단,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가공된 것만 사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①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②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③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④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
- (4) 음식물류폐기물은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을 거쳐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R-9-5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연료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 분뇨 또는 가축분뇨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니류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2) 유기성 오니, 커피찌꺼기 및 버섯폐배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품질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 (3) 연료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과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목 상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가공하여 혼합할 수 있다.

- (4) 가공된 연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0.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5)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1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5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분 함유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 (6)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기성 오니, 커피찌꺼기 및 버섯폐배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품질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

(나)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

(다) 납: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라) 비소: 킬로그램 당 13.0밀리그램 이하

바. 제품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R-10-1 유형의 재활용 기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적합한 폐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제14조의3제5항 관련)

1.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가.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 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가)부터 라)까지의 방법은 해당 오염에 대한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 나)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 다)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 라)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것
 - 마) 침출수: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을 통해 침출수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고화·고형화·안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 바) 토양오염물질: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할 것
 -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게 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1)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이외의 필요한 오염예방 및 저감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오염예방 및 저감의 정도

- 1)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
- 2)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내
- 3)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
- 4)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
- 5) 침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
- 6)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별표 4의2 제4호가목, 나목 및 바목의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 부지는 제외한다)

2.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취급기준과 방법

가. 공통사항

- 1) 영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이하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이 지하로 침투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유해폐기물을 보관·저장·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바닥 포장, 유출방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 분발·미립자 형태의 고상상태 또는 액체상태인 폐기물은 비산되거나 외부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기나 탱크, 상자(별크백을 포함한다)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 3) 재활용 대상 유해폐기물을 탱크나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 성상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춘 탱크나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탱크나 용기 등이 부식·손상·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4) 재활용 대상 유해폐기물은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별도의 분리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유해폐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특성, 취급 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보관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5) 유해폐기물은 보관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폭발, 유해가스 발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기·물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유해가스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화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6) 그 밖에 폐기물의 보관·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 7) 별표 4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 등을 사전 분석·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확인 결과를 배출자(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 배출자가 재활용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개별사항

- 1) 폭발성이 있는 폐기물은 소량으로 분리·보관하고, 다른 폐기물이나 산화제와 혼합·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불티·불꽃·정전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충격·마찰을 피하고, 폐기물을 보관·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가 폭발이 유발되는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인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불티·불꽃·정전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충격·마찰을 피하고, 폐기물을 보관·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가 화재가 유발되는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자연발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불티·불꽃·정전기 또는 고온체 등 발화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및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금속성이 있는 폐기물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등 물이나 증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산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가연물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과열·충격·마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용출독성 또는 생태독성이 있는 폐기물은 유해물질이 누출·유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 7) 부식성이 있는 폐기물은 내부식성을 갖는 용기에 보관하고, 누출·유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8)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대상폐기물과 재활용 할 수 없는 다른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을 혼합하여 재활용 대상 부지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하기 전에 이물질 등을 최대한 분리·제거해야 한다.
 - 나) 혼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폐기물의 비산 또는 유·누출 등으로 인한 오염이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에서 혼합해야 한다.
 - 다) 재활용 과정 또는 재활용한 후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 이후 지반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재활용 대상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토양 등과의 혼합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사업 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비산, 누·유출 등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해야 하며, 바닥포장, 덮개설치 등을 통해 폐기물의 비산, 누·유출 등을 방지해야 한다.
 - 마)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파쇄·혼합·중화 등의 재활용과정에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대상 폐기물과 부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오염 등의 영향이 없도록 혼합·중화해 사용해야 한다.
 - 바) 고화제 등을 혼합하여 처리한 고화처리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된 고화처리물의 건조·양생 등 안정화기간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오염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5의5] 〈신설 2016. 7. 21.〉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1. 공통 사항

-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의 시료 채취, 재활용 시설 및 공정, 재활용 대상 부지(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가목에 따른 현장조사 시에 채취한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 등 시료에 대하여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여부 및 유해물질의 함유 농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해당 재활용의 환경위해성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자와 협의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 방법 외의 평가 방법을 추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평가 방법

- 가. 제품 또는 원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량·용출농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 나. 가목 외의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시연공정 또는 대체공정을 포함한다)에서 대기·수질·악취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3.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평가 방법

- 가. 재활용 대상 부지가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5)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7)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 8) 그 밖에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다른 법률에서 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또는 지역

- 나.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량·용출농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 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출시험 및 대상 부지의 조사 등을 통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과 대상 부지 토양과의 반응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 라.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 및 대기·수질·토양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수질·토양 등의 환경 영향에 대한 시험·분석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관련 장비를 갖추어 직접 시험·분석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마.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바. 재활용하려는 부지의 생물생장 및 재활용 기술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적용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바목에 따라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대상 부지의 지질 현황, 재활용 이후 토지 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통보해야 한다.
- 아.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활용하려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이 20,000톤 미만이거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대상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5의6] <개정 2023. 5. 3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1. 시설·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총 바닥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항온·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40제곱미터 이상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장비 기준

1)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련 장비: 다음의 장비·장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장비명	수량
폭발성	시간·압력 시험장비 또는 열·충격·마찰 등의 민감도 시험장비	1식 이상
인화성(액상)	태그 밀폐식 시험장비, 펜스키마텐스 시험장비 또는 클리브랜드 인화점 측정장비	1식 이상
인화성(고상)	작은불꽃착화 시험장치, 연소속도 시험장비 또는 인화점 측정장비	1식 이상
자연발화성	공기접촉에 의한 자연발화여부 관찰 시험장비 등의 자연발화성 시험장치	1식 이상
금수성	물과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가스포집 시험장비 등의 금수성 시험장치	1식 이상
산화성(액상)	시간·압력 시험장비	1식 이상
산화성(고상)	연소시험장비	1식 이상
용출 독성	무기 물질류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1대 이상
	유기 물질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대 이상
부식성	강판부식성 시험장비	1식 이상
생태독성	물벼룩을 이용하는 생태독성 시험장비	1식 이상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유해특성(용출독성은 제외한다)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6호에 따라 위험물의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유해특성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생태독성에 대한 시험·분석이 가능한 자만 해당한다)

2) 환경영향 예측 관련 장비

장비명	수량
유리재질의 컬럼, 액체정량펌프, 시료충진도구 등 상항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세트	1식 이상
오염물질 등의 이동·흡착·확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	1식 이상

2.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력	해당 분야	
	전공 분야	자격 분야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보건, 환경과학, 환경위생, 환경화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화공, 화학분석, 토목, 위험물관리	대기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화공, 화학분석, 토목, 위험물관리
나. 기사 1명 이상	환경과학, 화학, 안전공학, 공업화학, 토목, 토목시공, 응용지질 관련 분야	대기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화공, 화학분석, 토목, 위험물관리
다. 산업기사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미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관련 학과	대기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화공, 화학분석, 토목, 위험물관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미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관련 학과	대기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화공, 화학분석, 토목, 위험물관리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외의 업체 등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7.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해야 한다.
8.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3명 이상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5의7] <개정 2023. 12. 28.>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 관련)

1.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제2호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지급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별표 5의8] <개정 2020. 5. 2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9조의4 관련)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의뢰받은 폐기물 분석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폐기물 관련 인·허가기관의 공무원이 폐기물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 나.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 다. 폐기물 배출자 등이 자체 관리 및 위탁 처리 참고용으로 폐기물 정보를 파악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시료채취기록부
 - 나. 시험항목, 시험일자, 분석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조작 조건, 측정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기록부
 - 다. 시약소모대장
 - 라. 폐기물분석결과서 발송대장
 - 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절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등록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소재지에서 일반 분야와 폴리클로리네티드비페닐 분야를 중복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두 분야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5.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한다.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분석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분석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분석 의뢰를 거부하거나 분석 업무를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석을 의뢰한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해당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5의9] <개정 2020. 5. 2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

(제19조의5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 가. 폐기물 시험·분석 숙련도
- 나. 폐기물 시험·분석 운영·관리

2. 평가기준

- 가. 폐기물 시험·분석 숙련도

평 가 기 준	배점
1) 전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15
2)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10
3) 검량 및 정량방법에 대한 평가	20
4)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15
5) 평가용 시료의 분석결과 오차율 평가	40

- 나. 폐기물 시험·분석 운영·관리

평 가 기 준	배점
1) 기술인력의 운영·관리	20
2) 보유시설의 운영·관리	15
3) 측정분석 장비의 운영·관리	15
4) 시료채취 및 보관의 운영·관리	10
5) 표준물질 및 시약의 운영·관리	20
6) 자료의 보관 및 운영·관리	20

3. 평가방법

-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련 공무원 2명 이상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나.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평가항목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세부 평가기준별로 5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량, 매우 불량)로 평가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별로 주어진 배점을 배분한다.
 - * 매우 좋음: 100%, 좋음: 80%, 보통: 60%, 불량: 40%, 매우 불량: 20%
- 다. 나목에서 구한 개별 평가팀원의 평가 점수를 합하여 전체를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 평점으로 한다.
- 라. 평가항목별 각각의 평점이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하며, 두 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를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22. 11. 29.>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1.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가. 컴퓨터
 - 나. 이동형 통신수단
 -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장애복구 후 입력·전송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

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다.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 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 가. 수집·운반하는 자: 수집·운반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
- 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5.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4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개정 2023. 12. 28.)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 나)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다만,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만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 라) 세차시설: 30세제곱미터 이상
- 마)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바)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능력

-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 1) 실험실
- 2) 실험기기·기구: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3) 시설 및 장비
- 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 나)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세차시설: 30세제곱미터 이상
- 라)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마)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 사)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 4) 기술능력
-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 나)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0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와 최종처분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및 기구

다. 장비

- 1)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 2)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시설

- 1)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세차시설: 30세제곱미터 이상
-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5)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 6)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 7)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고화 또는 안정화 시설
- 8)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분시설
-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 1)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명 이상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 1) 공통기준
- 가) 시설 및 장비

-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 (나)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폐목재,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
- (다)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석탄재, 리튬이차전지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
-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기술능력
-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 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 가)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 (1) 공통시설 및 장비
- (가) 보관시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 (2) 개별시설 및 장비
- (가)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료화시설 1식 이상
- (나)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
용해시설	동물성 잔재물을 열원으로 가열하여 용해시키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분리시설	용해 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기름성분을 분리하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원심분리시설	유지 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합계 15kW 이상인 것 1식 이상

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 (1) 공통시설 및 장비
- (가) 보관시설: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재활용하는 경우

- ① 분리시설: 냉매물질과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냉매물질의 회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 ③ 선별시설: 철과 비철을 90퍼센트 이상 선별할 수 있는 시설
- ④ 냉매물질 보관시설: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를 함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에서 회수되는 냉매물질을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세탁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 ①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 ① 분리시설: 앞면 유리라 뒷면 유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
 - ② 형광물질 보관시설: 형광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밀폐용기
- (라)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경우

- ① 파쇄시설: 휴대폰과 휴대폰에서 분리한 인쇄회로기판 등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파쇄할 수 있는 시설

(마)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 ① 분리시설 : 카트리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춘 시설

다)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가연성 고형폐기물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1) 실험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종이류, 섬유류 또는 접착제·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다)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팩(pack), 모듈(module) 또는 셀(cell) 단위로 재구성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SOC; State of Charge),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정격출력 30kW 이상으로 한정한다) 1식 이상
-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포함된 코발트, 리튬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방전(放電)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축매, 리튬이차전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나)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어야 한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1)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파쇄시설 : 시간당 재활용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나) 압축시설 : 폐종이를 11.25kW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2)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증류시설 : 내부용적 5.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나) 응축시설 : 내부용적의 합계 3.0세제곱미터 이상

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2)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시설	기준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회져어 섞는 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증발장치	응축 또는 폐가스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3)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시설(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시설	기준
유량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혼합장치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다)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유량 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여과(정제)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2) 개별시설: 원료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혼합시설: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폐유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 :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 재활용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증류를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수은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수은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계량시설 1식 이상

(2) 파쇄·분쇄·절단시설: 수은이 외부로 휘발·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쇄·분쇄·절단을 통해 수은과 그 외의 유리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3) 수은회수시설: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응축장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나) 재활용시설 1식 이상

다) 수집운반차량 :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그 밖에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비고

1.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둘 이상의 다른 분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

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능력 중 기사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업종 또는 영업대상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실험기기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춘 측정대행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실험기기·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 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허가요건 중 1일 처리능력은 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준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16시간, 비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허가요건 중 폐기물매출사업장으로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고온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의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하여 고온소각시설을 갖춘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매출시설에 폐기물 중 폐목재류(절삭재,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
10.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1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제10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23. 12. 2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12제1호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지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12 및 제17조 각 호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 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건설현장이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소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제3호 바목의 위탁기준을 준수한 폐기물만을 위탁받아야 한다.
-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라. 유기성 오일을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페인트 및 페레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가)(3)(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 또는 운환기유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 운환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또는 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이 포함 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자. 페플라스틱 및 페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

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폐기물을 운반·보관·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 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 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 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 및 잔존수명 등을 측정해야 한다.

별표 8의2] 〈신설 2016.1.21.〉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1. 시설: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갖춘 것(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장비
 - 가. 봉투형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 1) 인쇄설비
 - 2) 재단·접합가공설비
 - 나. 골판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 1) 절단설비
 - 2) 접합설비
 - 3) 인쇄설비
 - 4) 포장설비
 - 다. 합성수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 1) 용융·사출·성형설비
 - 2) 인쇄설비

비고: 인쇄설비를 전용용기의 인쇄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쇄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이를 공증한 서류를 등록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1. 종류: 봉투형 용기(합성수지류 재질)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고, 상자형 용기는 상자의 재질에 따라 골판지류 용기와 합성수지류 용기로 구분한다.
2. 구조
 - 가.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의 내부주머니(이하 “내부주머니”라 한다)는 사용 후 용기 자체를 묶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골판지류 용기는 직육면체 형태로 내부 주머니를 갖추어야 하고, 각 면의 절단부 및 꺾임부는 각각 직각이며 용기의 외부 표면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다. 합성수지류 용기는 원통형 또는 직육면체 형태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용기의 뚜껑은 겹뚜껑과 속뚜껑으로 구성되고, 겹뚜껑은 밀폐가 가능하여 완전히 닫은 후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열 수 없어야 한다.
 - 2) 용기의 용량이 5L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 외부에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용기의 모서리와 모서리각은 충돌 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둥글어야 한다.
3. 규격
 -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두께는 1점의 필름으로 0.03mm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내부주머니의 크기는 외부용기의 너비 및 길이보다 각각 더 커야 한다.
 - 다. 합성수지류 용기(내부주머니를 제외한다)의 두께는 0.6mm 이상이어야 한다.
 - 라. 전용용기의 실제 용량은 호칭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품질
 -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는 폴리에틸렌의 합성수지계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음 부분, 구멍, 찢어짐 및 접착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 나. 골판지류 용기는 양면골판지 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되 용량이 100L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절단 부위는 일그러짐이 없이 고르게 재단되어야 하고, 골판지는 품질이 균일하고 접착 불량 및 골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 다. 합성수지류 용기는 변형이 생기지 않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용기에 흠, 갈라짐, 기포 등이 없도록 잘 다듬질되어야 한다.
- 라.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필름 인장강도는 재질에 따라 270kgf/cm² 이상, 신장률은 360% 이상, 인열강도는 재질에 따라 90kgf/cm 이상이어야 한다.
- 마. 골판지류 용기의 전상파열강도는 용량별로 6kgf/cm² 이상, 수직압축강도는 20kgf/50mm 이상, 발수도는 R6 이상이어야 하고, 품질검사(적재, 전도, 낙하) 시 용기가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으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 바. 합성수지류 용기는 품질검사(낙추, 관통, 적재, 전도, 낙하, 누수) 시 용기가 쓰러지거나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관통시험 시 1.5kgf 이상(관통시험 지점을 모두 평균한 값을 말한다)의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색상 및 표시
 -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색상은 옐로우색, 상자형 용기의 외부는 흰색이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는 태반을 보관하기 위한 내부주머니는 흰색으로 투명하여야 한다.
 - 나.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글씨는 용기 규격에 맞는 크기로 지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인쇄하거나 탈착이 되지 않는 재질로 부착하여야 한다.
 - 다.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의 크기(도형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의 지름)는 용기 표기 면의 대각선 길이 또는 용기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 라.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앞면과 뒷면, 상자형 용기 외부의 앞면, 뒷면,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 제조업 등록사항, 생산연월일 등 검사관련 사항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재활용하는 태반을 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인쇄하여 표시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용용기의 검사방법 (제34조의8 관련)

1. 검사 방법

가. 공통사항

- 1) 두께, 치수, 용량, 재질은 용기종류별로 메스플라스크, 다이얼 게이지,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다.
- 2) 봉투형 용기 및 내부주머니의 두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열강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 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용기의 구조도 및 원료·재질 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개별사항

1) 골판지류 용기

- 가) 진상파열강도, 수직압축강도, 발수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 나) 용기 날개의 내구도는 날개의 꺾임부를 꺾는 방향의 면에 밀착하도록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 다)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정성시험, 낙하안정성시험은 상온(15~30℃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내부주머니에 일정량의 모래를 넣어 적재, 전도, 낙하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2) 합성수지류 용기

- 가) 용기의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다.
- 나) 누수시험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뚜껑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다) 뚜껑파손시험은 속뚜껑과 겉뚜껑을 닫아 잠가진 상태로 시험한다.
- 라)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정성시험은 상온에서 일정량의 물을 넣어 적재, 전도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마) 저온낙하안정성 시험은 용기에 부동액을 가득 채워 마개를 닫고 저온(-18±2℃) 상태 유지 후 낙하하는 것을 확인하여 실시한다.

바) 손잡이강도시험(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손잡이 중앙부위에 고리를 걸어 들어 올린 상태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사) 낙추충격시험은 상온에서 용기를 거꾸로 세우고 일정 높이에서 용기 중앙에 강제추를 낙하시킨 후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아) 관통시험은 상온에서 의료용구 기준규격의 멸균 주사침을 용기에 수직으로 대고 관통한 시점의 힘을 측정하여 실시한다.

자) 잠금장치시험은 뚜껑을 닫아 잠긴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최대한 힘을 가했을 때 뚜껑의 풀림 또는 빠짐 또는 용기의 깨짐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2. 그 밖에 세부적인 검사방법과 용기의 검체기준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 합성수지류 용기의 누수시험,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정성시험, 저온낙하안정성시험은 내부주머니를 제거한 상태로 검사하여야 한다.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1.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된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여야 한다.
2.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검사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조된 전용용기를 출고하기 전에는 등록된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는 과정에서 햇빛이나 습기 등으로 인하여 전용용기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보관창고에는 검사 결과 합격된 용기와 불합격된 용기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합격된 용기는 용기 외부에 불합격된 제품임을 표시하여 검사일부터 90일 이내에 전량 폐기하고 그 내용을 2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표 8의3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전용용기의 품질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용용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료가 골고루 채취될 수 있도록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만을 유통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전용용기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제34조의11 관련)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이하 "특례에 따른 처리"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례에 따른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과 보관장소 등 현황
나.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
다.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양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처리계획을 특례에 따른 처리 예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처리 승인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 배출자, 수집·운반하는 자(사업자번호 및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사업자번호를 포함한다),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여 특례에 따른 처리를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 각 목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 환경부장관
나. 특례에 따른 처리를 담당할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례 처리업자"라 한다)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다.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한국환경공단
마.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
바. 특례 처리업자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환경공단 에 통지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12. 31.] 제3호가목7)가), 제3호가목7)나), 제3호가목7)마)

[시행일: 2025. 12. 31.] 제3호가목7)다), 제3호가목7)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분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 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3) 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와 영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4) 처분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의 회수·이용률의 검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소각시설

1) 공통기준

- 가)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라)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마) 시설규모,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바)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

록계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자)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색칠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12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하여야 하는 소각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파)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처분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 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거) 시간당 처분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시설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네)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처분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터)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체상 폐기물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고 연소실·열분해실·고온용융실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일반소각시설

- (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이상,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목재류 및 마늘피 등 초근목피류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3) 바닥재의 강열감량(強熱減量)이 10퍼센트 이하(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4)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소실은 출구기준 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5) 폐기물을 일괄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 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할 때에 연소실로 보지 아니한다.
- (6)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고온소각시설

- (1)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이어야 한다.
- (2)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1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3) 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4)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 (5) 폐유독물질을 처분하는 소각시설의 배관설비(저장 또는 보관 시설에서 소각시설로 연결된 배관설비로 한정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 (가) 배관의 재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나) 배관이 부식되어 폭발·화재 또는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유독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다) 배관의 덮개·플랜지(flange)·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폐유독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이 서로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 (라)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 (마)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및 폭발성 폐유독물질을 연소실로 이송하는 배관설비는 긴급 시 물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류방지밸브 등의 장치를 갖춰야 한다.
 - (바) 배관 내 폐유독물질의 종류와 이송 방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폐유독물질의 종류와 이송 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폐유독물질이 혼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폐유독물질의 보관탱크에는 내부물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습도계, 액위(液位)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열분해 소각시설

- (1)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3)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4)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온용융시설

- (1)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2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3)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계적 처분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

-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나)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파쇄·분쇄·절단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반입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 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용융시설
-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증발·농축 시설
- 가) 증발·농축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나) 연소가스로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로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증발·농축처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분리시설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마)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수시설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건조시설

가) 진공식이나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멸균분쇄시설

- 가)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분방식이어야 하며, 처분일자·처분온도·처분입력 및 처분시간 등의 운전내용과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함께 자동기록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라)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증기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2)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열관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3)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하는 시설(이하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천4백50㎾의 주파수와 출력 1천2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照射)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고화 시설

- 가) 시멘트·물·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안정화시설

- 가) 폐기물을 화학물질이나 생물 등을 이용하여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안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반응시설

- 가) 반응조, 폐기물공급량 조절장치,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반응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 다)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기체상 폐기물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응집·침전시설

- 가) 응집·침전조는 적절한 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나) 응집·침전조, 교반(攪拌)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라) 응집·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마) 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마.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

-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삭제 <2011.9.27>
- 다) 삭제 <2011.9.29>
- 라) 삭제 <2011.9.29>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혐기성 분해시설

-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가. 매립시설의 공통기준

- 1)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이 사람 등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사업장 안에 있는 경우와 그 주위가 사람 등의 출입이 곤란한 해변·하천·절벽 등의 지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매립시설 입구에 폐기물매립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매립시설명, 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설계·시공·관리자명 등을 적어야 한다.
- 3) 폐기물의 흘러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축대벽 및 독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무게, 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대벽은 저면(底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5 이상, 쓰러짐에 대한 안전율이 2.0 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독은 사면(斜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3 이상이어야 한다.
- 4) 매립시설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지반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암반이 드러난 경우 암반의 요철 등으로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 중인 구역에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폐기물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처분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검사정을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까지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흐름측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 검사정은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재질은 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 검사정의 지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이 있어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어려운 시설로서 해수면 가까운 지역에 지하수 검사정 대신 해수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을 2개소 이상 선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매립시설은 해당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매립시설 지반의 연약정도, 매립높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다.
- 10)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매립시설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바닥과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된 압축강도(이하 "압축강도"라 한다)가 210kg/cm² 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되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나) 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내부막의 두께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kg/cm²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측면은 폐기물의 성질·상태, 매립 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 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무게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항복인장강도(降伏引張強度)의 안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이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증(이하 "환경기술검증"이라 한다)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 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침출수유출 방지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 ㄱ. 두께 2.0밀리미터(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1겹 이상 포설(鋪設)할 것
 - 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는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透水)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50센티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다만, 매립시설 측면 및 내부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점토류 라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토목합성수지 점토라이너 등으로 포설할 수 있다.
 - ㄷ.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 중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고밀도폴리에틸렌 라이너 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2)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1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 (3) 그 밖의 차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이나 (2)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지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할 것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항목		단위	기준	비고
용융지수		g/10min	1.0 미만	
밀도		g/cm ³	0.940 이상	
카본블랙함량		%	2.0~3.0	
카본블랙분산도		급	모두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되고, 그 중 80% 이상이 1급 이하 2급에 해당되어야 함	
인장성능	항복인장강도	kgf/cm ²	150 이상	
	파단인장강도	kgf/cm ²	270 이상	
	항복인장변형률	%	12 이상	
	파단인장변형률	%	700 이상	
인열강도		kgf/cm	130 이상	
궤뿔림강도		kgf/cm	320 이상	
저온취약성		-	-40℃에서 파괴되지 않음	
차수안정성		%	각 방향 ±2 이하	
내환경응력균열성		hr	1,500 이상	
산화유도시간 (OIT)	표준조건	min	100 이상	표준·가압조 건 중 택일
	가압조건	min	400 이상	
열노화후OIT 유지율	표준조건	%	55 이상	표준·가압조 건 중 택일
	가압조건	%	80 이상	
자외선처리후 OIT유지율	가압조건	%	60 이상	
접합부강도	전단강도	kgf/cm ²	135 이상	
	박리강도	kgf/cm ²	97 이상	

비고

- 이 기준은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적용한다.
-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시험은 고밀도폴리에틸렌차수막 단체표준(KPS M6000)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 내환경응력균열성은 내하중응력균열성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준은 시험편 5개 중 4개 이상이 200시간 내에 파단(破斷)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매립시설 바닥의 차수시설 위(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차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지오킴포지트·지오텍스타일 등을 설치한 후 그 위를 말한다)에는 침출수 집배수층(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집배수관로 등 수평 집배수시설 및 수직집수정 등의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2) 매립시설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매립무게 상태에서 투과능(透過能)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인 지오킴포지트·지오텍스타일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 토목합성수지 배수층을 설치할 것
 - (3) 매립시설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점토류 라이너 위에 투수계수(透水係數)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인 모래 등을 포설할 것
 - (4) 집배수관로의 주변에는 집배수관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극(空隙)을 가지는 골재(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등을 설치할 것
 - (5) 침출수집 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는 2퍼센트 이상(침출수집 배수시설이 매립지 내외부의 침출수 이송시설과 연결되어 있어 침출수의 수위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되도록 할 것
 - (6)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배수층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부터 (5)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매립시설 바닥과 측면의 라이너 밑에는 주변에서 집수된 빗물 또는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거나 지하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 또는 지하수배제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침출수량 등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출수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유량조정조는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되, 유량조정조 내부를 방수처리하고 유량조정조 유입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침출수를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인근에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 (2) 매립시설의 인근에 위치한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
- 바) 매립시설의 주입관로[침출수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생물학적 처리 등을 거친 처리수(이하 "침출수 등"이라 한다)를 매립시설에 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는 각각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 사)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아)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 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 매립시설 중 일부구역을 정하여 폐색면을 매립할 때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제방 등 적절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카)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층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층의 적정 함수율(含水率)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입관로, 주입펌프, 함수율 측정기 등 침출수 등을 매립시설에 주입할 수 있는 설비(이하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1)부터 (4)까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입관로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에 골고루 주입할 수 있도록 최종복토층 아래의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연료화처리시설용 가스배제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입관로로 활용할 수 있다.
- (2) 매립층에는 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매립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매립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침출수 등의 주입에 따라 매립가스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립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매립가스 포집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매립시설 상부는 시설물 등으로 덮는 형태로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매립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위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주변 환경 여건 등으로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재활용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 1) 폐기물이 흘러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와 영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활용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우레탄·에폭시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재활용시설은 지붕과 벽면이 있고 집진설비를 갖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가전제품 중에 포함된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량 및 보관량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앞면 유리나 뒷면 유리를 분리 시 발생하는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

되어야 한다.

- 6) 소각열회수시설 및 수온회수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에 설비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재활용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7)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나)부터 라)까지의 기준은 선별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보관시설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나) 오염물질의 유출 방지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해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해야 한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반의 침하·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라)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광학(光學)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갖춰야 한다.
 -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계적 재활용시설

- 1) 파쇄·분쇄·절단시설
 -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폐철도목재반침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절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파쇄·분쇄·절단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반입 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 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용융·용해시설은 용융·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증발·농축 시설
 - 가) 증발·농축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연소가스로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 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로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벨트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증발·농축재활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마)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4) 정제시설
 -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유수분리시설
 -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마)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탈수시설
 -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건조시설

가) 진공식이나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세척시설

가) 고압의 공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폐철도목재받침목에 함유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을 별표 5의3 제2호나목2)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세척 과정에 사용한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힐화·고화시설

가) 시멘트·물·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반응시설

가) 반응조, 폐기물공급량 조절장치,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반응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다)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응집·침전시설

가) 응집·침전조는 적절한 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응집·침전조, 교반(攪拌)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응집·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4) 열분해시설

가)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 응축설비,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또는 배기가스 처리설비, 유류저장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응축성 열분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및 배기가스 처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열분해실·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예열 및 온도 조절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에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라) 열분해시설은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춰야 하며, 시설 내에 소화기 등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 열분해실·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 측정계를 설치해야 한다.

바) 열분해실·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해야 한다.

사) 열분해실은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반응 온도·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 폐기물 투입구·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자) 열분해시설은 열분해 후 발생한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차)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투입한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열분해유를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카) 시설규모,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열분해 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한 표지를 쉽게 지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붙여야

한다.

라.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1) 사료화·퇴비화·부숙시설 및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부숙·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렁이분변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부숙토 생산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동애등에분변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잉여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

- 1) 연소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3)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5) 연소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9)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0)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1)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총탄화수소(THC)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3)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 14)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15)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6)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용해로

- 1) 연소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3)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5) 연소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0)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1)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호가목·제2호가목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소각열회수시설

- 1)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연소실·열분해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진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여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6) 연소실·열분해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폐기물의 무게를 계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연소실·열분해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9) 연소실·열분해실의 외부는 철판을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칠하거나 단열처리 또는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 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회전식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 섭씨 250도 이하)여야 한다.
- 1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류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 1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종이류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도 이상)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13)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재활용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14)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여야 하며, 이 경우 연소실은 출구기준 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기준에 따라 굴뚝 자동측

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6)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17)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소각재를 제거할 때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18)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열 또는 전기 등의 형태로 회수할 수 있는 설비(생산되는 에너지를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와 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설비(에너지 이용자별로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21) 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설비에는 내부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압력측정계 및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2)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수은회수시설

- 1) 섭씨 600도 이상인 상태에서 수은폐기물을 배소(焙燒)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수은 회수과정에서 감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압력조절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인 상태에서 배소할 수 있는 가열장치를 말한다)를 갖춰야 한다.
- 2) 기화된 상태에서 수은을 회수하는 응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3) 수은회수 공정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4) 수은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5) 수은회수 과정에서 수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유출 시 필요한 수은회수통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비고

1.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소 잔재물 중 연탄재·석탄재, 폐유리,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패각,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폐기물로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착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기분해 반응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다목3)가) 및 다)에 따른 장치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제3호다목 중 (1), (5), (7)부터 (9)까지 및 (12)부터 (1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0] <개정 2024. 2. 6.>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1. 소각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소각능력의 적절성 및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 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강 적절 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나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자 여부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투입장치(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연소실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 여부 ○소각재의 흘날림 방지조치 여부 ○표지판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에너지 회수설비의 계측장비 설치 여부(소각열을 회수·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정기검사	공통사항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구분		검사항목
		○바닥재 강열감량 ○연소실 출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고온소각시설 (폐유독물질을 처분하는 시설 로 한정한다)	○배관의 재료, 강도, 두께 ○배관의 마감처리 상태 ○역류 차단장치

2. 매립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공통사항	○외곽시설 설치상태 ○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축대벽과 독의 안정성 ○기초지반 처리내용 및 상태 ○빗물배제시설 설치내용 ○계량시설 작동상태 ○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차단형 매립시설	○바닥과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내부막의 구획면적, 매립가능 용적, 두께, 압축강도 ○빗물유입 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역
	관리형 매립시설	○ 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 도목합성수지 라이너의 항목인장강도의 안전율 ○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적합 여부 ○ 침출수 집배수층의 재질·두께·투수계수·투과능계수 및 기율기 ○ 지하수배제시설의 설치내용 ○ 침출수 유량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용,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구분		검사항목
		○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및 처리용량 ○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내용 ○ 침출수 이송·처리 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처리능력 ○ 매립가스의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설치계획 ○ 내부진입도로의 설치내용 ○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구조안정성
정기검사	차단형 매립시설	○소화장비 설치·관리상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사용종료매립지 밀폐상태
	관리형 매립시설	○ 소화장비의 설치·관리상태 ○ 축대벽의 안정성 ○ 빗물·지하수의 유입방지 조치 ○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상태 ○ 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 미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상태 ○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의 누출 여부 ○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내용 ○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 ○ 매립작업 설계도서에 따른 매립·복토·빗물배제 상태 ○ 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 정도 ○ 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설치의 적정 여부 ○ 복토두께 ○ 침출수위 ○ 매립층의 함수율 ○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구분		검사항목
사용종료·폐쇄 검사	차단형 매립시설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사용종료 또는 폐쇄에 따른 밀폐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관리형 매립시설	○최종복토층(가스배제층·차단층·배수층·식생대층) 설치상태 ○침하에 대한 안정성 ○축대벽과 독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빗물 배제시설의 설치상태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매립층 함수율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사후관리 정기검사	차단형 매립시설	○소화장비 설치·관리 실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밀폐시설 관리 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관리형 매립시설	○소화장비 설치·관리 실태 ○최종복토층 관리 실태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실태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구분		검사항목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매립층 함수율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지표수 및 주변 토양조사 등을 통한 주변오염 관리의 적절 여부 ○방역 실태

비고: 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에 대한 검사항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멸균분쇄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멸균능력의 적절성 및 멸균조건 적절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인지 여부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자동투입장치와 투입량 자동계측장치의 작동상태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의 작동상태
정기검사	○멸균조건 적절유지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의 적절유지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작동상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공통사항	○처리능력의 적절성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투입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이송시설의 적절성 및 안정성 ○선별시설의 설치 여부 및 선별효율 ○파쇄시설의 설치 여부 및 파쇄능력 ○악취제거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수질오염물질의 적절처리 여부 ○포장시설의 설치 및 표시의 적절성
	사료화시설	○혼합시설의 적절 여부 ○가열·건조시설의 적절 여부 ○사료 저장시설의 적절 여부 ○사료화 제품의 적절성
	퇴비화시설	○탈수·혼합시설의 기능 및 적절 여부 ○발효시설의 구조·기능 및 적절 여부 ○후부숙(後腐熟)시설 및 저장시설의 적절 여부 ○퇴비화 제품의 적절성
	혐기성소화 시설	○산발효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메탄발효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최종생산물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메탄가스의 적절처리 여부
	감량화시설	[부숙방식] ○부숙장치의 구조·기능 및 적절성 ○부숙장치의 성능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건조방식] ○탄화·건조장치의 기능 및 적절성 ○탄화·건조장치의 성능

구분		검사항목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부숙도 생산시설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성 ○부숙공정의 적절 여부 ○부숙도의 적절성
	지령이 분변토 생산시설	○먹이저장시설의 적절성 ○지령이 사육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먹이저장시설의 적절성 ○동애등에 사육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생석회처리)	○혼합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절성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버섯재배)	○버섯재배용 배지배합시설(培地配合施設)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입병(入瓶)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살균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접종기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무균배양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폐배지(廢培地)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정기검사	공통사항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 유지 여부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투입시설의 작동상태 ○이송시설의 작동상태 ○선별시설의 작동상태 ○파쇄시설의 작동상태 ○악취제거시설의 작동상태 ○수질오염물질의 적절처리 여부 ○포장시설의 작동상태 및 표시의 적절성

구분	검사항목
사료화시설	○가열·건조시설의 작동상태 ○사료저장시설의 작동상태 ○사료화제품의 적절성
퇴비화시설	○탈수·혼합시설의 작동상태 ○발효시설의 작동상태 ○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작동상태 ○퇴비화 제품의 적절성
혐기성 소화시설	○산발효시설의 작동상태 ○메탄발효시설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메탄가스의 적절처리 여부
감량화시설	[부숙방식] ○부숙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건조방식] ○탄화·건조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부숙토생산 시설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성 ○부숙공정의 작동상태 ○부숙토의 적절성
지렁이분변 토생산시설	○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지렁이 사육시설의 작동상태 ○분변토의 적절성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동애등에 사육시설의 작동상태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혼합시설의 작동상태

구분	검사항목
(생석회처리)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절성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버섯재배)	○버섯재배용 배지배합시설의 작동상태 ○살균시설의 작동상태 ○무균배양실의 작동상태 ○폐배지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5. 시멘트 소성로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 재활용능력의 적절성 및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온도 유지 여부 ○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 여부 ○ 연소실 공기나 산소 공급장치 작동상태 ○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자 여부 ○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 표지판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정기검사	○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연소실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가스 온도 ○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6. 소각열회수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재활용능력의 적절성 및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의 유지 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의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의 적절 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나 산소공급장치의 작동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연소실 압력측정계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료의 적절성 ○연소실의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 여부 ○소각재의 흠날림 방지조치 여부 ○에너지 회수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에너지 회수 설비의 온도지시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에너지 회수 설비의 계측장비 설치 여부 ○에너지 이용 또는 공급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에너지 회수기준의 준수 여부 ○표지판의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정기검사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소방장비의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의 적절 여부 ○바닥재의 강열감량

구분	검사항목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에너지 회수기준 준수 여부

7. 열분해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 열분해(가스화를 포함한다) 능력의 적절성 및 열분해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굴뚝 높이 및 구조의 적절성 여부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 ○ 압력측정계 및 출구온도 측정공 설치·작동 여부 ○ 열분해실의 공기유입·유출 방지 및 반응 온도·압력의 적정성 유지 여부 ○ 배출가스 연속측정·기록 장치 작동상태 ○ 폐기물 투입구·청소구의 내열성 및 공기유입·유출 방지 여부 ○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 ○ 표지판 부착 및 기재 사항·방법 준수 여부 ○ 열분해유의 회수 기준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정기검사	○ 열분해(가스화를 포함한다) 능력의 적절성 및 열분해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상태의 적절성 여부 ○ 열분해실의 공기유입·유출 방지 및 반응 온도·압력의 적정성 유지 여부 ○ 열분해유의 회수 기준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비고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 법령(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규정상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시 별표 9 비고 제4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 검사가관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등 검사항목 외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설 승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 설비의 온도지시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검사나 사후관리 정기검사 시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부지 내에서 운영 중인 다른 매립시설과 사용종료·폐쇄한 매립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침출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법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검사[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기간(사용종료·폐쇄 검사의 경우는 검사일 이전 1년) 내에 실시한 검사에 한정한다]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검사 항목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신설 2020. 11. 2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

(제41조의3 관련)

1. 기술인력 요건

구 분	자격기준
가. 책임자급 1명 이상	1) 해당 기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담당자급 2명 이상	1) 해당 기술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해당 기술분야"란 대기·수질 등 환경분야 또는 폐기물처리, 토목공학, 환경보전,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안전공학 등 관련 기술분야를 말한다.
2.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처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3.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을 중복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제2호다목을 검사대상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급 인력을 1명 이상으로 갖추도록 할 수 있다.

2. 시설·장비 요건

- 가. 검사대상시설이 소각시설·시멘트 소성로·소각열회수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감사용 장비 (1)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2) 표면온도측정기 (3) 동압측정기 (4)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5) 가스(총탄화수소) 측정기(시멘트 소성로만 해당한다)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나. 검사대상시설이 매립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나) 사무실
2) 장비	가) 광파측량기 나) 레벨측량기 다)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슈미트해머) 라) 수위측정기 마) 관조사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바) 가스(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측정기

다. 검사대상시설이 멸균분쇄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구분	시설·장비 요건
2) 장비	가) 현장감사용 장비 (1) 아포균검사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라. 검사대상시설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감사용 장비 (1) 거리측정기 (2) 소음측정기 (3)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4) 표면온도측정기 (5) 가스(메탄)측정기 (6) 가스(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측정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비고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가. 두 개 이상의 검사대상시설에 대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중 사무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나. 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실험실 및 장비·시료 보관실에 대해서는 시험·분석 항목 및 검사장비의 수량을 고려하여 검사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시설 중 사무실과 실험실은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도검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1.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의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 중 가목 및 나목 또는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연속하여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검사
 -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 다.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시 검사
 - 라.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검사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항상 지정기준에 맞게 확보·유지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휴업, 업무의 정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외의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9 제1호가목 3) 단서 또는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붙여진 온도저지제·자동온도기록계·유량계·운전내용자동기록지 등의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보수·정전·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장치에 기록·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정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과 온도를 낮추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아. 매립시설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대상 폐기물 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파낼 수 있다.
-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매립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파내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되지 않아야 한다.
 - 2) 폐기물을 파내는 과정에서 매립시설의 제방, 차수설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적절한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파낸 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누출·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악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차.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는 별표 8 제4호다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타.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가전제품 등의 보관·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냉매물질, 형광물질 등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 파.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매립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하.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매립시설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목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해도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고 폐기물 매립에 지장이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중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은 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 (1) 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 (2)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불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섭씨 6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 (3) 삭제 <2008.1.28>
- (4)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

리하여야 한다.

- (5)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 (6)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홀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8)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체상 폐기물을 연소실·열분해실·고온용융실로 직접 투입하여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9)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한 처분용량 이내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승인·신고(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으며, 추가로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처분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개별기준

(1) 일반소각시설

- (가)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 또는 접착제·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5초,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이 시작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시설

- (가)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3) 열분해 소각시설

- (가)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4) 고온용융시설

(가)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용융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처분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처분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처분을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1)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올 때에 덮개로 덮여야 한다.

바) 멸균분쇄시설

(1)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증기멸균분쇄시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나) 열관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천4백50메가헤르츠의 주파수와 출력 1천2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2) 가동 시마다 아포균검사·세균배양검사 또는 멸균테이프검사를 하되, 1일 3회 이하 가동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1일 3회를 초과하여 가동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아포균검사나 세균배양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5) 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3) 화학적 처분시설

가) 고형화·고화 시설

(1) 시멘트·물·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양생(養生)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반응시설

(1) 폐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기체상 폐기물이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되는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4) 생물학적 처분시설

가) 소멸화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1)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작제 <2011.9.27>
- (3) 소멸·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挾雜物) 또는 잔재물을 적절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 가) 매립시설의 측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밀폐시켜야 한다.
- 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통하여 매립시설로 주입되는 침출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200	30
가지역	50	300	50
나지역	70	400	70

비고

1.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적용한다.
2.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지역	항목	노말핵산추출물질 함유량		페놀류 함유량 (mg/L)	시아 함유량 (mg/L)	크로뮴 함유량 (mg/L)	용해성 철 함유량 (mg/L)	아연 함유량 (mg/L)	구리 함유량 (mg/L)	카드뮴 함유량 (mg/L)	수은 함유량 (mg/L)	유기인 함유량 (mg/L)	
		광유류 (mg/L)	동식물 유지류 (mg/L)										
청정 지역	수소 이온 농도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가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나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지역	항목	비소	납	6가	용해성	플루	폴리클	총대장	색도	총 질소	디에틸	셀레늄	총인	트리	테트라
		함유량 (mg/L)	함유량 (mg/L)	크로뮴 (Cr ⁶⁺) 함유량 (mg/L)	망간 함유량 (mg/L)	오린 (불소) 함유량 (mg/L)	로리네 이티드 비페닐 (PCB) 함유량 (mg/L)				핵심 프탈 레이트 (mg/L)			클로로 에틸렌 (mg/L)	클로로 에틸렌 (mg/L)
청정 지역	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100 이하	0.02 이하	0.1 이하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가 지역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150 이하	0.2 이하	1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나 지역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200 이하	0.2 이하	1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비고

1.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청정지역은 30mg/L이하를, 가지역 및 나지역은 60mg/L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4.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셀레늄의 배출허용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나)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
- 다)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기준항목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항목을 측정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역)기준항목을 적용하며, 측정 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사용 전보다 사용 중의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연직차수벽설치 및 오염된 지하수 이송처리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 라) 침출수 집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나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 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끝난 시설은 2미터(침출수매립 시설환원정화설비가 설치된 매립시설은 5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바) 매립시설의 측대벽 및 독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 상부의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자루에 모래, 폐주물사 또는

- 폐사를 채워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쌓거나(이 경우 자루의 내부에는 날카로운 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아니 된다) 페타이어에 모래·폐주물사 또는 폐사 등을 채워 쌓은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 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이 본문의 방법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법이나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매립시설의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폐기물의 매립은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단계별 매립·복토·우수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자)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하여야 한다.
- 차)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1)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투수성이 낮은 흙만을 사용하여야 한다)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폐폐자·석탄재·연탄재·폐유리·폐석분토사·폐석재·석재 또는 골재폐수처리오니 등 악취의 발생이나 확산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확산되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3)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 (4) 오히려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 (5)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9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립시설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굴착하여 폐기물을 제거한 후 다른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매립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1)에 따른 중간복토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다만, 제2호나목2)에 따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기 위한 가스배제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 (다)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개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펜포지트·지오토크스탈일 등의 투과합성수지를

설치

(라)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 카)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과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타) 해충의 발생 및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을 하여야 한다.
- 파) 폐석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석면 매립량, 매립위치 및 깊이 등 매립구역에 대하여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석면이 매립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인계받아 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하)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는 다음 (1)부터 (6)까지의 기준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 매립시설로 주입하는 침출수 등의 함수율은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2) 침출수 등이 매립시설의 제방 사면이나 복토층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침출수 등의 주입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매립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 (4)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는 매립층 함수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5)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층 함수율 또는 매립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침출수 등의 주입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 (6) 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 및 매립가스 포집량,

악취 농도 등을 별지 제43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가)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해야 한다.

다. 재활용시설의 경우

1) 기계적 재활용시설

-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재활용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재활용을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 (1)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한다.
- (2)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울 때에 덮개로 덮어야 한다.

바) 세척시설

- (1) 세척 과정에 사용된 세척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세척에 사용된 세척수에 혼입된 폐목재 찌꺼기와 기름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2) 화학적 재활용시설

가) 고형화·고화 시설

- (1) 시멘트·물·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 (2) 혼합물은 양생(養生)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열분해시설

- (1) 열분해실은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반응 온도·압력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 (2)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열분해유의 회수량이 투입한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3)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저장탱크에 저장되는 열분해유의 양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3)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가) 사료화·퇴비화·부숙시설,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1) 사료화·퇴비화시설,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사료화·퇴비화·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비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사료화·퇴비화,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 및 부숙·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혐잡물(挾雜物) 또는 잔재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소성로

가)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라)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마) 연소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 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아) 충전화수소(THC)를 4시간 평균 6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3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5) 용해로
- 가)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 다) 연소실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마)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소각열회수시설
- 가)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로서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만을 같은 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섭씨 600도, 종이류 또는 접착제·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 다)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마)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종이류 또는 접착제·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않은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다.

바)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사)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 온수·증기 등의 회수열을 열원 또는 전기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한 재활용용량 이내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승인·신고(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재활용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7) 수은회수시설

가) 수은회수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수은함유폐기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폐기물을 투입해야 한다.

나) 수은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도 및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

다) 수은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제2호다목4)나)부터 바)까지 및 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2] <개정 2008.8.4>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1.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

2. 측정주기

가.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화학적 산소요구량: 매일 1회 이상

2) 화학적 산소량 외의 오염물질: 주 1회 이상

나.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 1회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1. 조사분야 및 항목

가. 매립시설

- 1) 대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10)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2) 지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 3) 지하수: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생활용수수질기준 항목
- 4)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나.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 1) 대기: 다이옥신, 푸란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2) 지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 항목(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방법

가. 조사횟수: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1회 이상, 토양은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나. 조사지점

- 1)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3개소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 2) 악취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가장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가 가장 심한 곳으로 한다.
- 3) 지표수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하여 폐수, 침출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 4) 지하수 조사지점은 별표 9 제2호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3개의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으로 한다.

5)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와 심토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다. 측정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지점 등이 제2호에 따른 조사 시기, 조사 지점 및 측정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제1호나목1)에 따른 다이옥신에 대한 1회 측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4] <개정 2023. 5. 31.>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가. 매립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
	나. 소각시설(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 회수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중 1명 이상
	다.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명 이상
	마. 그 밖의 시설	○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별표 15] <개정 2012.9.24>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제49조제2항 관련)

시설명	점검항목
1. 중간처분시설	
가. 공동사향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보관시설바닥·주요처분시설 등의 변형·파손 여부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시설·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여부 ○소화장비의 구입 여부
나. 소각시설 및 고온 열분해시설	○내화물의 파손 여부 ○연소버너·보조버너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방지사설의 정상가동 여부 ○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연소실 등의 청소실시 여부 ○냉각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연도 등의 기밀유지상태 ○정기성능검사 실시 여부 ○시설가동개시 시 적절온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투입 여부 및 시설가동 중단방법의 적절성 여부 ○온도·압력 등의 적절유지 여부
다. 파쇄시설	○파쇄·분쇄·절단장치의 파손 여부 ○분진의 흡날림 방지상태
라. 용융시설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유해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마. 증발·농축시설·정제시설·반응시설	○증발·농축조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명	점검항목
바. 유수분리시설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주기적인 청소 실시 여부
사. 응집·침전시설	○분리수이동설비의 파손 여부 ○회수유저장조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
아. 탈수시설	○폐유투입량 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정기적인 여과포의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자. 건조시설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응집·침전된 오니의 적절제거 여부
차. 고회화·고화시설	○탈수성능의 정상 여부 ○액체상태 폐기물과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출 여부 ○여과포의 정기적인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이물질의 제거 여부
카. 안정화시설	○건조온도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빗물유입방지용 덮개 등의 구비 여부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타. 멸균분쇄시설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배합비율(시멘트·물 및 고회제 등)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 ○혼합기 등의 청소 실시 여부
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멸균조건의 적절유지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자동기록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가동 여부
	○혼합·저장·분쇄장치의 파손 여부 ○가열·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명	점검항목
	○사료·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 여부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발효시설·후부숙시설 정상가동 여부(퇴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2. 최종 처분시설	
가. 공동사항	○철망 등 외곽시설의 파손 여부 ○매립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내용 기재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매립시설 지반의 침하 여부
나. 차단형 매립시설	○지하수 검사정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바닥·외벽 및 내부막의 파손 여부
다. 관리형 매립시설	○빗물차단용 덮개의 구비 여부 ○하단벽체의 콘크리트 파손 여부
3. 재활용시설	
가. 공동사항	○차수시설의 파손 여부 ○침출수집수정·이송설비 등의 정기적인 청소 실시 여부 ○유량조정조의 파손 여부 ○침출수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의 수질 ○발생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나.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소각열회수 시설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보관시설 바닥·주요 재활용시설 등의 변형·파손 여부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시설·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여부 ○소화장비의 구입 여부
	○내화물의 파손 여부 ○연소버너·보조버너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명	점검항목
	○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연소실 등의 청소실시 여부 ○냉각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연도 등의 기밀유지상태 ○정기성능검사 실시 여부 ○시설가동개시 시 적절온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투입 여부 및 시설가동 중단방법의 적절성 여부 ○온도·압력 등의 적절유지 여부
다. 파쇄시설	○파쇄·분쇄·절단장치의 파손 여부 ○분진의 흘날림 방지상태
라. 용융·용해시설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유해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마.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반응시설	○증발·농축 등 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주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바. 유수분리시설	○분리수이동설비의 파손 여부 ○회수유저장조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 ○폐유투입량 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정기적인 여과포의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사. 응집·침전시설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응집·침전된 오니의 적절제거 여부
아. 탈수시설	○탈수성능의 정상 여부 ○액체상태 폐기물과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출 여부 ○여과포의 정기적인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이물질의 제거 여부
자. 건조시설	○건조온도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빛물유입방지용 덮개 등의 구비 여부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명	점검항목
차. 고형화·고화시설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배합비율(시멘트·물 및 고화제 등)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 ○혼합기 등의 청소실시 여부
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혼합·저장·분쇄장치의 파손 여부 ○가열·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사료·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 여부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발효시설·후부숙시설 정상가동 여부(퇴비화 시설의 경우만 해당 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항목

비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별표 9 비고 제4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점검항목은 제외한다.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할 대상과 장부는 각 목과 같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다.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2. 폐기물 배출자에게 위탁받은 내용을 폐기물의 종류별로 입력하되, 폐기물 처분업자인 경우에는 운반업체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3.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4.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잔재폐기물이 발생되거나 처리된 경우에는 잔재폐기물의 종류,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입력해야 한다.
5.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종류는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물질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되, 공급처, 공급량 등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다)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장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폐기물 처리상황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장애복구 후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7.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66조제2항 관련)

1.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3. 폐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매립시설의 차수제로 사용하는 자
4.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 4의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냉매물질이 포함된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제외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다만, 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오염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어망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자
6. 폐철도반침목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7. 다른 사람의 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표 제1호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8.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자

9. 폐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10.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11.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일 5톤 미만인 자
12.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3.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선별·포장한 후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도록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 나.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 다.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라.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폐패각(廢貝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나전재료, 귀걸이 및 자개 보석함 등의 장식품, 어항 장식용 등의 장식품의 용도와 어업용 도구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왕겨, 제재부산물 중 톱밥·대패밥, 식물성 잔재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 또는 같은 호 나목2)(식물성 잔재물 중 커피찌꺼기만 해당한다)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16. 폐콘크리트 공시체(供試體)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자
1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또는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18.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19.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또는 노끈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나. 폐섬유, 폐의류 또는 폐원단을 의복, 침구 또는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다.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을 가방, 신발 또는 문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2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

[별표 17] <개정 2017. 10. 19.>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제66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기준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다.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별표 17의2] <개정 2022. 1. 7.>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재활용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나. 위탁계약기간

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장소 및 재활용방법

마.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

사. 삭제 <2011.9.27>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

다. 천재지변, 처리금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0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9.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처리금지,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생활폐기물이나 직접 배출자로부터 수거한 생활폐기물만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3. 삭제 <2011.9.27>

[별표 18]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등**(제68조 관련)

1. 비소 또는 그 화합물
2.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3. 수은 또는 그 화합물
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5. 납 또는 그 화합물
6. 시안화물
7.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독물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1. 사후관리 기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2. 사후관리 인원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가. 빗물 배제방법

별표 9 제2호가목5)에 따라 설치된 빗물배제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 관리방법

1)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별표 9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처리수(2) 단서에 따른 이송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의 측정결과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침출수는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2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에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하)의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층의 안정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침출수 등의 주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6) 별표 9 제2호나목2)자)에 따라 설치된 침출수 수위 측정시설에서 측정된 침출수 수위와 같은 목 2)라) 및 바)에 따라 유량조정조 유입구에 설치된 유량계와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 설치된 유량계에서 각각 측정된 유량은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 지하수 수질 조사방법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항목을 같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종료 후 3년까지는 월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별표 9 제2호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기존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을 이용하여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되 반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해수 수질 조사방법(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운 매립시설만 해당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수질(해역)환경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별표 9 제2호가목8) 단서에 따라 선정된 지점으로 한다.

마.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한다)

1) 외기온도, 가스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조사항목을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방법

1) 축대벽, 둑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검토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물리적인 압축과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작용에 의한 침하현상으로 매립시설의 사면이나 최종 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매립시설 주변의 안전한 부지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침하 여부를 관측하려는 지점에 측정점(매립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당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조사하고 지표면이 항상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측정점의 수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타당성보고서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 지표수 수질 조사방법

- 1)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하천·계곡이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환경기준항목을 반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2)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각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아. 토양 조사방법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2)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 염소이온, 벤젠 등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초과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토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 3) 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자. 방역방법(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1) 파리, 모기 등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방역은 매립종료 후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필요시에, 6월부터 9월까지의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더 이상의 방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 가. 제3호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후 5년마다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20] <개정 2018. 3. 30.>

허가·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수수료는 신규허가의 경우 40,000원, 변경허가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 2. 삭제 <2011.3.31>
- 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수수료는 신규등록의 경우 25,000원, 변경등록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별표 21] <개정 2023. 12. 28.>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3호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시설·장비의 기준 일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기술인력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기술요원 기준의 2분의 1 미만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4) 법 제13조의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작성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1항제3호	지정취소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1호	지정취소			
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 각 호의 결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의5 제1항제2호	지정취소			
6)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3호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 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사)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별표 5의8의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 제1호의2	허가취소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 제1호의3	허가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5)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 소			다)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6)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가)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시설 폐쇄		(가)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유출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2)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 가연성·불연성을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다만, 16)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1)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유출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2)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정한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마)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여야 하는 자가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사) 의료기관 일회용 기자재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독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의 폐 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 월	해당 업체의 폐 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 월	영업 정지 1개 월	영업 정지 3개월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그 밖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7)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8)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4조 제8항 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9)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3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8호				
10)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여 화재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라) 법 제25조제9항제5호를 위반하여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마)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9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1호라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 바목의 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의 소각을 위탁받은 경우		경고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8)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0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9)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1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0)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 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2호				
2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2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4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24)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5)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5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6)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7)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7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30)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31) 법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3항 또는 제47조	법 제27조 제2항제1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의2,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0호	경고	허가취소		

비고

- 6)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21)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다만, 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나) 별표 5의4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다) 가) 및 나) 외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가) 신고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3호	등록취소			
3)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				
가)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5호				
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7)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				
가)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	법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등록취소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후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법 제39조에 따른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의2 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30조의2 제7항제2호	지정 취소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3호	지정 취소			
4)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4호	지정 취소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7)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로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7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8)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8호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의뢰받은 폐기물처리 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폐기물처리 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하거나 법 제5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와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제7편 자원순환

0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13. 7.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687	제1조(목적) 6687
제2조(정의) 6688	제2조(폐기물의 종류) 6688
제3조(적용 범위) 6689	
제4조(국가의 책무) 6689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6689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6689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 7. 30.)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6690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6690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6693	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6692
제8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6693	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6693
제9조 삭제 6693	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6693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6693	제7조 삭제 6693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6696	제8조 삭제 6693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소지임무 등) 6696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6693
제13조 삭제 6697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6695
제1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6697	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6695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6697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6696
제1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등의 등) 6698	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6696
	제14조 삭제 6697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6697
	제16조 삭제 669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6698	제17조(포장·표지부착방법) 6698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6698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6698	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6698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6701	제17조의3 삭제 6701
제18조의4(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6702	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6702
제18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6703	제17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6703
제18조의6(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6703	제17조의6(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6703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6703	
제19조(수출입 금지) 6704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6704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6704
제20조(반입명령 등) 6705	
제21조(대집행) 6705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6706	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 6706
제21조의3(보고서의 제출) 6706	제19조의2(보고서의 제출) 6706
제22조(보고·검사 등) 6706	제19조의3(보고·검사 등) 6706
제22조의2(위반사실 공표) 6707	제1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6707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6707	제19조의5(과징금의 부과) 6707
제22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채납처분 등) 6708	제19조의6(과징금의 징수 및 채납처분 등) 6708
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운영) 6708	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6708
제3장 보칙 (개정 2013. 7. 30.)	제3장 보칙
제23조(수수료) 6709	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6709
	제21조(수수료의 반환) 6710
제24조(관계 기관의 협조) 6710	
제25조(주무관청 등의 지정) 6710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6710
제26조 삭제 6710	제23조(청문) 6710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6711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6711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712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671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벌칙 (개정 2013. 7. 30.) 제28조(벌칙) 6712 제29조(벌칙) 6713 제29조의2(벌칙) 6713 제30조(벌칙) 6713 제31조(양벌규정) 6714 제32조(과태료) 6714 부칙 6715	제4장 벌칙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714 부칙 671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2.12. 8 법률 제4534호 개정 1994. 1. 5 법률 제4714호 (환경개선헌별회계법) 1997. 8.28 법률 제5391호 19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1998. 2.28 법률 제5529호 (정부조직법) 1999. 2. 8 법률 제5872호 2001. 1.16 법률 제6361호 2007. 1.19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2007. 5.17 법률 제8470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10. 3.22 법률 제10153호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7.25 법률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30 법률 제11980호 2014. 3.18 법률 제12465호 2016. 1.27 법률 제13887호 2017. 4.18 법률 제14784호 2019.12. 3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피해를 관리법) 2020. 3.31 법률 제17179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 2021. 4. 1 법률 제17984호	제정 1994. 5.28 대통령령 제14272호 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환경부와고속기관직제)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5호 1998. 2.28 대통령령 제15734호 (환경부와고속기관직제)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5호 1999. 6.21 대통령령 제16406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관세법시행령) 2001. 7.16 대통령령 제17307호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고속기관직제)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중개정령)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7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12.31 대통령령 제21959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 9.17 대통령령 제22385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28 대통령령 제25126호 2016. 7.19 대통령령 제27351호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 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10.17 대통령령 제28366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1호 2020. 3.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9.29 대통령령 제31071호 2021. 3.30 대통령령 제31580호 2021.10. 1 대통령령 제32019호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 9.27 대통령령 제32926호
제1장 총칙 <개정 2013. 7.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0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중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12. 31.)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 7. 16., 2007. 11. 15., 2017. 10. 17., 2019. 12. 31.>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 11. 15.,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海域) 배출 폐기물과 선박의 항행(航行)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3. 7. 30.]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국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① 폐기물을 수출·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폐기물을 수출·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본조신설 2020. 3. 31.]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 7. 30.>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②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07. 11. 15., 2009. 12. 31., 2016. 12. 30., 2017. 10. 17., 2019. 12. 31., 2021. 3. 30., 2022. 9. 27.>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 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2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4. 삭제 <2009. 12. 31.> 5.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보증금예탁서류"라 한다) 나. 법 제1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보증보험가입서류"라 한다)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8.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6., 2009. 12. 31.> ③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개정 2001. 7. 16., 2017. 10. 17., 2019. 12. 31.> ④ 삭제 <2001. 7. 16.> ⑤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7. 12. 31., 1999. 6. 21., 2007. 11. 15., 2017. 10. 17.> 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2.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07. 11. 15.> ⑥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⑦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	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⑧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 9. 29., 2022. 9. 2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출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약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일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약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같은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일의 수출량에 대한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항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 10. 17.] 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7., 2019. 12. 31., 2020. 9. 29.>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6. 12. 30., 2017. 10. 1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8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 제9조 삭제 <1999. 2. 8.>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제목개정 2017. 10. 17.] 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10. 17.>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6. 21.> ③ 삭제 <1999. 6. 21.> [제목개정 1999. 6. 21.] 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 삭제 <1999. 6. 21.> 제8조 삭제 <1999. 6. 21.>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07. 11. 15., 2009. 12. 31., 2016. 7. 19., 2016. 12. 30., 2017. 10. 17., 2019. 7. 2., 2019. 12. 31., 2020. 9. 29., 2021. 3. 30., 2022. 9. 2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4. 18.) 1.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법 제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일별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4의2.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일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6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이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라 한다)의 사본 7.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8.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9. 삭제 (2009. 12. 31.) 10.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2. 31., 1998. 2. 28., 1998. 12. 31., 2001. 7. 16., 2007. 11. 15., 2009. 12. 31.) ③ 삭제 (2001. 7. 16.) ④ 삭제 (2001. 7. 16.)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⑦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⑦ 포괄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신설 2020. 9. 29., 2022. 9. 2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입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약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항제4호의2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약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같은 경우 나. 제1항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항 제4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 10. 17.]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2. 31., 1999. 6. 21., 2001. 7. 16., 2007. 11. 15., 2017. 10. 17.> [제목개정 2017. 10. 17.] 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①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8조의5에 따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개정 2017. 10. 17., 2019. 12. 31., 2020. 9. 29.〉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9. 6. 21., 2001. 7. 16., 2016. 12. 30., 2017. 10. 17.〉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목개정 2017. 10. 17.]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법 제11조 전단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10. 17.〉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의 장치를 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7. 16., 2007. 11. 15.,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6. 21.] [제목개정 2017. 10. 17.] 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 운송 수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②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출명령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 제13조 삭제 <2013. 7. 30.> 제1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의2. 제6조제6항(제10조제6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2의3.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2의4. 제6조제8항 또는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3.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 삭제 <2014. 1. 28.>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전문개정 2001. 7. 16.] [제목개정 2017. 10. 17.] 제16조 삭제 <1998. 12. 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9.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 제1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등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경유의 동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국내를 경유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내를 경유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船積) 또는 하역(荷役) 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경유에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5., 2009. 12. 31., 2010. 9. 17., 2017. 3. 29., 2017. 10. 17.> 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29., 2021. 3. 30., 2022. 9. 27.> -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7.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 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2., 2019. 12. 31., 2020. 9. 29., 2021. 3. 30., 2022. 9. 27.>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삭제 <2019. 12. 31.>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1.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0호에 따른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질·상태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⑦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한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신설 2020. 9. 29., 2022. 9. 27.> 1.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3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본조신설 2017. 4. 18.]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삭제 <2020. 3. 31.> ③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제1항제7호에 따라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같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10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제2항제11호에 따라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같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17조의3 삭제 <2021. 3. 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0. 3. 31.> [본조신설 2017. 4. 18.] 제18조의4(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가 수출하는 폐기물(이하 “수출입폐기물”이라 한다)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3. 7. 30.] [제11조의3에서 이동 <2017. 4. 18.>] [제목개정 2020. 3. 31.]	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 신고 서류의 제출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4. 삭제 <2014. 1. 28.> 5.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 제출 5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5의3.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처리 상황 등의 입력 6.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8.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의 제출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제1항 각 호의 내용의 확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본조신설 2010. 9. 1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국외로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된 이후의 처리정보는 입력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경우 그 폐기물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8조의6(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제12조의3에서 이동 (2017. 10. 17.)] 제17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가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계량한 값(이하 “계량값”이라 한다) 2. 폐기물의 현장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집 및 입력하는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②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3. 30.] 제17조의6(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1. 3. 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5. 수출신고·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제한방법·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0. 3. 31.>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2.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목개정 2001. 7. 16.]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제2항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폐기물 및 제3항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0조(반입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4. 18., 2020. 3. 31.>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출국의 수입 동의 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3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 취소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수입신고 수리 취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였을 때 3의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22조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반출 또는 반입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1조(대집행)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 9. 27.>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본조신설 2001. 7. 1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21조의3(보고서의 제출) ①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	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17.] 제19조의2(보고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전문개정 2017. 10. 17.] 제19조의3(보고·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수입한 자 또는 수출·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검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대상 폐기물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대상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전문개정 2013. 7. 30.] 제22조의2(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9조의5(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자가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2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의 파기 또는 미제출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전신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수납기관은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9조의6(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이하 “수출입안전관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검사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확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31.]	센터"라 한다)는 매년 12월 10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업무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30.]
제3장 보칙 (개정 2013. 7. 30.)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 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1. 수출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2. 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0. 9. 17., 2017. 10. 17.) ③ 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해당 수출입규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5조(주무관청 등의 지정)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6조 삭제 <1997. 12. 13.>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제21조(수수료의 반환)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 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0. 9. 17., 2017. 10. 1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9. 17.> ④ 삭제 <2001. 7. 16.>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2. 31., 1998. 2. 28., 1999. 6. 21., 2001. 7. 16., 2009. 12. 31.> 제23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 2.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 [본조신설 2020. 9. 2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8. 8., 2007. 11. 15., 2010. 9. 17., 2017. 10. 17.> 1. 법 제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계획 취소신고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동의여부의 결정 및 통지 6. 삭제 <2014. 1. 28.> 7.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결과 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 결정 및 통지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반출 또는 관리의 명령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 및 결과통보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1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6.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7의2.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5항 후단 및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 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0. 9. 17., 2017. 10. 17., 2021. 3. 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4장 벌칙 〈개정 2013. 7. 30.〉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4. 18., 2020. 3. 31.〉 -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 제3조제7항, 제9조제6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입력 및 확인 [전문개정 2001. 7. 16.] [제목개정 2010. 9. 17.]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22. 3. 8.〉 - 제3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2014년 1월 1일 -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2014년 1월 1일 - 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2022년 1월 1일 - 제17조의5에 따른 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2022년 1월 1일 - 제17조의6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2022년 1월 1일 - 제18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 대상품목·제한방법·제한기간등: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4장 벌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7. 4. 18., 2020. 3. 31.> 1.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자 1의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6.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자 7. 제1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8.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본조신설 2017. 4. 18.]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4. 18., 2020. 3. 31.>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의2. 삭제 (2020. 3. 31.)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삭제 (2020. 3. 31.)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4. 18.)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1. 4. 1.)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 9. 17.) [전문개정 2009. 12. 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를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부칙 <제4534호, 1992. 12. 8.> ①(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그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4714호, 1994. 1. 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272호, 1994. 5. 28.> 이 영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0호, 1994. 12. 23.> (환경부와고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2조, 제24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68>생략 부칙 <제15585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391호, 1997. 8. 28.>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529호, 1998. 2. 2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③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5872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61호, 2001.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5734호, 1998. 2. 2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본문·제3호 및 제2항·제4항·제6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 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16조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22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15965호, 199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06호, 1999. 6.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48호, 2000. 12. 29.> (관세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260호, 2007. 1. 19.〉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⑦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8470호, 2007.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수출·입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6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9〉 까지 생략 〈5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07호, 2001. 7. 16.〉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수출금지국가에 관한 경과조치)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부속서 7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제18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을 “협약 당사국가”로 본다. ③(진행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및 보고 등은 이 영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24호, 2002. 12. 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53호, 2010. 3.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③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911호, 2011. 7. 25.〉 (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7호, 2007. 11. 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⑳ 및 ㉑ 생략 부칙 〈제21215호, 2008. 12. 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9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수입·양수 관련 보고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식식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80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적은 2009년도 하반기 실적만을 종전의 서식에 따라 2010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수입·경유 등의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수입·경유 등의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대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의 발급과 반환결정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85호, 2010. 9. 17.>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2465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7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4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478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99호, 2019. 12.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179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2조제1항, 제18조의3제2항·제6항,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6까지, 제22조의5, 제27조의2, 제29조의2, 제30조제1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폐기물의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6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51호, 2016.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수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 수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폐기물의 수입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6항, 제10조제6항 및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에 관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84호, 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71호, 2017. 3. 29.>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⑰부터 ㉔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366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여러문 법령용어 정비에 관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91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2항,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88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71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0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2, 제9조 제1항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수출입안전관리센터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은 제1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2019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26호, 2022. 9.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	6727
[별표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5제2항 관련)	6728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6729
[별표 4]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제17조의6제3항 관련)	6732

[별표 1] <개정 2017. 10. 17.>

수출입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

1. 포장방법

- 가. 수출입대상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각각 포장하여야 한다.
- 나. 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누출위험이 없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다. 외부포장재는 충격 등에 잘 찢어지거나 포장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튼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출입폐기물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표지부착방법

- 가. 수출입폐기물표지는 외부포장재에 부착하되 포장된 수량 전부에 대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수출입폐기물표지는 다음과 같이 하되 크기는 20cm, 세로 30cm로 하며, 국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입폐기물표지 Export-Import Mark of the Waste		
○폐기물명 : Name of the Waste :	30cm	
○UN분류번호 : UN Classification No. :		
○허가번호 : Authorization No. :		
○수출국 : Country of Export :		
○수입국 : Country of Import :		
○경유국 : Expected Country of Transit		
○수출자 : Exporter of the Waste : • 주소 : Address : • 전화번호 : Tel :		
○수입자(수하인) : Consignee of the Waste : • 주소 : Adress : • 전화번호 : Tel :		
○선적일자 : Shipping Date		
20cm		

※ 바탕색 : 황색, 글씨 : 흑색

[별표 2] <개정 2021. 10. 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

(제17조의5제2항 관련)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거나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거나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운반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처분하는 자(이하 “재활용·처분자”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가. 수출의 경우

- 1) 수출자가 수출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운반자에게 인계하여 위탁운반하는 경우, 수출자는 운반 또는 인계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인계일, 운반차량번호, 그 밖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해야 하고, 예약 입력했을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확정 입력해야 한다.
- 2) 운반자는 수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출자명, 운반차량번호 및 인수량, 인수일, 그 밖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 3) 수출폐기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국으로 선박을 통해 운반하는 경우 수출자는 선적을 완료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적일, 선박번호, 선사명, 선적량, 선하증권사본 및 수입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역항 및 하역일자를 입력해야 한다.

- 4) 수출자는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절차가 완료되면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관량 및 통관일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나. 수입의 경우

- 1) 수입자가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운반자에게 인계하여 위탁운반하는 경우, 수입자는 운반 또는 인계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인계일, 운반차량번호, 그 밖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해야 하고, 예약 입력했을 때에는 재활용·처분자가 수입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해야 한다.
 - 2) 운반자는 수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입자명, 운반차량번호, 인수량 및 인계량, 인수일 및 인계일, 그 밖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처분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 3) 재활용·처분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수입자가 직접 운반, 재활용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부터 2일 이내에 인수일자, 인수량 및 계량값, 그 밖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계량값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가 입력한다)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2. 수출자, 수입자, 운반자 또는 재활용·처분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가. ARS, 유선·무선 전화 등 대체입력방법을 사용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고, 한국환경공단에 대체입력 사유, 대체입력 기간 등을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나. 대체입력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상입력이 가능해진 때에는 기간연장 사유나 정상가동 사실을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비고

1. “확정 입력”이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폐기물의 종류, 양 등 폐기물의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약 입력”이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계량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등의 사유로 인계하려는 폐기물의 양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중 폐기물의 양을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정보”란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별표 3] <개정 2021.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을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3항제1호	100	150	2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3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3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3항제4호	100	150	200
마.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3항제5호			
1)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별표 1에 따른 포장·표지부착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0	80	100
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사. 삭제 <2021. 3. 30.>				
아.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2호	300	300	300
자. 법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법 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 제1항제2호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2) (1)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1)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차.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32조 제3항제6호	100	150	200
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3항 제6호의2	100	150	200
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3항제7호	100	150	200

[별표 4] <개정 2022. 9. 27.>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

(제17조의6제3항 관련)

1.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구분	품목	내용
가.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1) 수출입규제폐기물	(국내 처리단가 + 해상 운송단가)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 1.2
	2) 수출입관리폐기물 (지정폐기물)	(국내 처리단가 + 해상 운송단가)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 1.3
	3) 수출입관리폐기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국내 처리단가 + 해상 운송단가)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 1.5
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1) 수출입규제폐기물	국내 처리단가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 1.2
	2) 수출입관리폐기물 (지정폐기물)	국내 처리단가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 1.3
	3) 수출입관리폐기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국내 처리단가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 1.5

비고

- "국내 처리단가"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말한다.
- "해상 운송단가"란 「해운법」 제28조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최대 21.7톤의 화물이 선적되는 20피트 일반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공표한 전년도 운임 및 요금의 평균단가를 말한다. 다만,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항로에 대한 해상 운송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운송단가를 적용한다.

2. 보증기간

구분	요건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통관일을 보증·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하역일을 보증·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

3. 보증금의 예탁방법

보증금은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예탁하되, 환경부장관이 보증금을 수령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 위탁기관이 보증금 전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직접 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7.> 제1조(목적) 6742 제2조(정의) 6742 제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6743 제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6743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6743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6747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6748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6751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6751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개정 2007. 12. 27.>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6752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6755	제1조(목적) 6742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6743 제3조(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6743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6747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6748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6751 제6조 삭제 6752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6752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6753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6753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6753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6756	제1조(목적) 6742 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6743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6745 제4조(관련 비용의 청구 등) 6745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67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6758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6756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6759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 6758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6759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의 통지) .. 6759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6760	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6759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6762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6760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6764	제13조 삭제 6762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6764	제14조 삭제 6762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6765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6765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설에 따른 지원기준 등) 6765	
제16조 삭제 6766	제16조 삭제 6766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07. 12. 27.〉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6766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6766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6767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6767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6768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6768	
	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6768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6769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6769	
제18조(이주대책) 6769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6769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6769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6770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6770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6770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677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5. 1. 5 법률 제4907호 개정 1997. 8.28 법률 제5396호 1997. 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 2. 8 법률 제5867호 1999. 2. 8 법률 제5893호 (하천법) 1999. 2. 8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 1999. 2. 8 법률 제5914호 (공유수면관리법) 2002. 2. 4 법률 제6654호 (국토기본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4. 2. 9 법률 제7169호 2005. 1.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005. 3.31 법률 제7428호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1. 3 법률 제8214호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11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5.11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 2007.12.27 법률 제8810호 2007.12.27 법률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2. 2. 1 법률 제11267호 (환경영향 조정법) 2013. 8.13 법률 제12077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1.21 법률 제12322호 2014. 5.20 법률 제12622호 2015. 2. 3 법률 제13170호 2016.12.27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20. 1.29 법률 제16902호 (환경법) 2020. 6. 9 법률 제17427호 2021. 1.12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 4.13 법률 제18032호	제정 1995. 6.30 대통령령 제14688호 전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6호 개정 1999. 6.30 대통령령 제16459호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소속기관직제) 2002.12.18 대통령령 제17809호 (국토기본법시행령)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6.11 대통령령 제18428호 (한국환경자연공사업시행령) 2004. 8.10 대통령령 제18514호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6. 2.22 대통령령 제19352호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4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6.16 대통령령 제21543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에너지이용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 4. 5 대통령령 제22874호 2012. 3.30 대통령령 제23700호 2012. 4.10 대통령령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4. 2.11 대통령령 제25165호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8. 3 대통령령 제26468호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 8 대통령령 제31238호 2021. 7.13 대통령령 제31888호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2. 2. 8 대통령령 제32402호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 5. 9 대통령령 제326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대통령령 제34004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정 2024. 3. 7 대통령령 제108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2. 27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9. 14 법률 제19722호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3. 19 법률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7.>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	2024. 3. 5 제3429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기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중합하여 그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3. 8. 13.]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1.>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전문개정 2009. 6. 16.] 제3조(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5조제1	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3. 9. 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삭제 <2015. 2. 3.>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5.>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3. 삭제 <2015. 8. 3.>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2. 8., 2024. 3. 5.> 1.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확보된 매립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가. 제1호에 따른 부지 면적이 확보될 것 나. 가목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그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중 한 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 1) 소각시설 2) 폐기물을 열분해(熱分解)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 3) 그 밖에 폐기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다. 나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 매립시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발·설치·증설 개요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추진 이력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 5.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예정 금액 및 그 산출 명세 6. 그 밖에 분양 또는 매각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9. 1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처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는 경우(매수신청한 자에게 해당 부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에게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3. 9. 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	을 설치할 것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8. 3., 2024. 3. 5.> 1.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2.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 분양 또는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련 비용의 청구 등)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분양 또는 매각 광고 비용 2. 분양 또는 매각 관련 설명회 개최 비용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3. 9. 14.> 1. 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8. 3., 2024. 3. 5.>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2. 제3항제2호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⑤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폐기물 배출량(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모를 각각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만 해당한다)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15. 8. 3., 2024. 3. 5.> ⑥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2023. 9. 14.> [전문개정 2007. 12. 27.]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	도시사·특별자치도시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4. 2. 11., 2015. 8. 3., 2024. 3. 5.> 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첨부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6.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⑦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사·특별자치도시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등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4. 2. 11., 2015. 8. 3.> ⑧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8. 3., 2020. 12. 8., 2024. 3. 5.>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22. 2. 8.]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공고를 2회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부지가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않은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또는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본조신설 2024. 3. 5.]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3. 12. 19.>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같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같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법 제7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설치·증설 계획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개정 2007. 12. 27.〉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4. 8. 10.)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 17., 2012. 7. 20.>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개정 2009. 6. 16.]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1. 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1. 1. 12., 2021. 4. 13.> 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⑪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시·군·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2021. 12. 16.> [전문개정 2009. 6.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9. 14.) 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전문개정 2009. 6. 16.]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1. 1. 12., 2021. 4. 13.> 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2024. 3. 19.> ⑪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2025. 1. 1.] 제9조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గు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 ② 삭제 <1999. 2. 8.> ③ 삭제 <1999. 2. 8.>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2013. 8. 13.>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07. 12. 27.]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	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 [전문개정 2009. 6. 16.]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 3.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전문개정 2009. 6. 16.] 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3.>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4. 2. 11., 2021. 7. 13., 2021. 12. 16.>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5. 사업비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입점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10.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제11조의 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고시·공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3. 8. 13., 2014. 1. 14., 2016. 12. 27., 2020. 1. 29., 2022. 12. 27., 2024. 1. 30.>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	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1999. 6. 30.>] 제14조 [종전 제14조는 제11조의4로 이동 <1999. 6.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조지법」 제23조에 따른 조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7. 삭제 (2010. 4. 15.)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4. 1.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4. 3. 19.>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24. 3. 19.>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2025. 1. 1.] 제13조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삭제 <1999. 2. 8.>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07. 12. 27.>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	3. 세입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 5. 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6조 삭제 <1999. 6. 30.>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의2(자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자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전문개정 2009. 6. 16.]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5.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 3. 30.> [전문개정 2009. 6. 16.] 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성명·주소 2.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면적(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전문개정 2009. 6. 16.]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6. 16.]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20조(주민편의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의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6. 16.] 제24조(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7. 12. 27.]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5.) 1. 조성 재원 및 규모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용 실적 가. 지원 목적 나. 지원 기간 다. 지원사업의 내용 라. 지원 금액 마. 지원 대상지역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전문개정 2009. 6.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4조 삭제 <1997. 8. 28.>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 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제28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9조 삭제 <1999. 6. 30.>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급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09. 6. 16.]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 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전문개정 2009. 6. 16.]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전문개정 2009. 6. 16.]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 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전문개정 2009. 6.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개정 2007. 12. 27.〉 제27조(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압축·파쇄(破碎)·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2.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3.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4.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전문개정 2007. 12. 27.] 제29조(연구·개발 등)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개정 2009. 6.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시정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이하 “설치의 무미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의무미이행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설치의무미이행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본조신설 2023. 9. 14.]	제34조의2(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2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면적 등의 현황 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면적 등의 현황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결과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29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제3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여부 및 공정률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5.]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 2020. 12. 8., 2024. 3. 5.> 1.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29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5장 벌칙 <개정 2007. 12. 27.> 제31조(벌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20. 12. 8.]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삭제 <2020. 3. 3.> 2.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3. 제11조의4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7. 12. 27.]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0. 6. 9.] 부칙 <제4907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 ③(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임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부칙 <제5396호, 1997. 8. 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	부칙 <제15586호, 199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 또는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산업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자 2.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8만제곱미터이상인 자 3.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광광지 또는 광광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자 제3조(고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4호 및 제3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고등교육법”은 1998년 2월 28	부칙 <제1081호, 2024. 3. 7.>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부칙 〈제5867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입지협의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③(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93호, 1999. 2. 8.〉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일까지 이를 “교육법”으로 본다. 제4조(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신청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인 경우에 한한다)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한다. 부칙 〈제16459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 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㉔내지 ㉔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911호, 1999. 2. 8.>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 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 로 한다. ㉔내지 ㉔생략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전의 규정에 같음 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14호, 1999. 2. 8.>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㉔생략 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㉔내지 ㉔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09호, 2002. 12. 18.> (국토기본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 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중 합계획”으로 한다. ㉔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㉔내지 ㉑생략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54호, 2002. 2. 4.> (국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시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4조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65>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854호, 2002. 12.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이사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428호, 2004. 6. 1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 <6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3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⑤및 ⑥생략 부칙 <제18514호, 2004. 8. 1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임 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736호, 2005. 3.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169호, 2004. 2. 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특례)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86호, 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2호, 2006. 2.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1호 가목·다목,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얻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 또는 증설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7.4> 부칙 <제20164호, 2007.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분부터 적용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환경상영향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24>생략 <1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9>생략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⑰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제21098호,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⑳ 부터 ㉘ 까지 생략 부칙 <제21185호, 2008. 12.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상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㉑ 부터 ㉒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⑤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14호, 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지선정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입지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승인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	부칙 <제121215호, 2008. 12. 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3호, 2009. 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공장·관광지·관광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㉔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34호, 2007. 4. 11.〉 (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 흥법」”으로 한다. ㉔및 ㉔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35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 략〉... ,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 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㉔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 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㉔내지 ㉔생략 제15조 생략	〈178〉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626호, 2011.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 지니어링사업자 ㉔ 및 ㉔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74호, 2011. 4.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7>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생략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23700호, 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718호, 2012.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군관리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군관리계획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를 “도시·군관리계획도”로 한다. <79>부터 <85>까지 생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23호, 2007. 5. 11.> (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2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8810호, 2007.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제12조제1항제15호의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8819호, 2007. 12. 27.>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⑤ 부터 ④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부터 ③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65호, 2014. 2. 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2호, 2014. 12. 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468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생산물산지”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물산지”로 한다. ㉖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설치된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설치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내용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대상지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8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편익시설의 설치에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888호, 2021. 7. 13.>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3호, 2021. 12. 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402호, 2022.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설치·증설이 완료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설치·증설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나 공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1267호, 2012. 2. 1.〉 (환경분쟁 조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각각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077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8호, 2022. 5.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4004호, 2023. 12. 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34292호, 2024. 3. 5.〉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인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2322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22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명 또는 재임명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70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427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8032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7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8〉 및 〈69〉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032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722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준공인가·사용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못하거나 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385호, 2024. 3. 19.〉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13조 생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6805
[별표 1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6806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6807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6808
[별표 4]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6809
[별표 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6809

[별표 1] <개정 2020. 12. 8.>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	소요면적
50톤/일 미만	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	11,000㎡ + 5㎡ × (시설용량 - 500)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설치비 = 1) ÷ 2) × 3) × 4) × 5) × 6) × 7)

-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1) ÷ 2) × 3) × 4) × 5) × 6) × 7)

-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별표 1의2] 〈신설 2020. 12. 8.〉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2)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3.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의 협의를 거쳐 구성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

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24. 3. 5.>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물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물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비교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별표 4] <개정 2009.6.16.>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구분	부대시설
1. 폐기물매립시설 ○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2. 폐기물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 비고 : 폐기물처리시설 부대시설의 주변 녹지대에는 주민편의시설, 공원(공원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경비시설, 관리동, 직원숙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5] <신설 2023. 3. 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위반행위	금액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경우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경우	3천만원 2천만원
2.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경우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경우	3천만원 2천만원

제8편 환경보건

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6813
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877
03.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7011
04.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시행규칙	7107
0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7179
0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7251
07.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7277
0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477
09.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7613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701

제8편 환경보건

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819	제1조(목적) 6819	제1조(목적) 6819
제2조(정의) 6819		
제3조(국가의 책무) 6820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6820
제4조(손해배상책임) 6820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6821	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6821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6820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6821	제3조(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6822
제6조(정보청구권) 6821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6822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6823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6824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6824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6825	
	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6825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826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6827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6827	
	제11조(간사) 6827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6827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828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6829	제13조(수당과 여비) 6829	
제9조(피해자단체) 6830	제14조(피해자단체) 6830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68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6832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6830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6830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6832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6832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6832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6832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6832
	제1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6834	제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6834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6835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6835	
제10조의2(의견진술권) 6836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6836		 6836
제11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6836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6836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6836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6837		
제13조(요양급여) 6838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6838	
제14조(요양생활수당) 6839		
제15조(장의비) 6839	제20조(장의비) 6839	
제16조(간병비) 6839	제21조(간병비) 6839	
제16조의2(장해급여) 6840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6840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6840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6840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6841		
제19조(특별유족인정) 6841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6841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6841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6842		
제21조 삭제 6843	제24조 삭제 6843	제9조 삭제 6843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6843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6843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6843
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6844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6844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6844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6844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684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6845 제27조(수급권의 보호) 6845 제28조(공과금의 면제) 6846 제29조(재심사 청구) 6846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6846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6845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6846	제10조(재심사 청구) 6846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 3. 24.〉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 9. 22.〉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 6847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6848 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 6850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6851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6852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6856 제36조(이의신청) 6857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 .. 6847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847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6849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 .. 6851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6852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6854 제36조(가산금) 6855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6856	제11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6849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6851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용 변경신청) 6854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6856 제15조(이의신청) 6857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37조(조사, 보고 등) 6858 제38조(진찰요구 등) 6859 제39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6859 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6860	제38조(조사, 보고 등) 6858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6859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6859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 6860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6858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686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6862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6862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6862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863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864		
제44조(비밀유지 의무) 6864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45조(벌칙) 6865		
제46조(양벌규정) 6865		
제47조(과태료 등) 6866		
	제44조(이행강제금) 6866	
부칙 6867	부칙 6867	부칙 686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17. 2. 8 법률 제14566호 개정 2018. 8.14 법률 제15717호 2020. 3.24 법률 제171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2. “독성 화학물질”이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2020. 3. 24.〉 나. 삭제 〈2020. 3. 24.〉	제정 2017. 8. 9 대통령령 제28239호 2019. 2.12 대통령령 제29546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여러온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 3 대통령령 제30221호 (피한정후견인 결정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5.19 대통령령 제3068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9.22 대통령령 제31027호 2021. 2.17 대통령령 제3145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17. 8. 9 환경부령 제710호 개정 2019. 2.14 환경부령 제800호 2020. 9.25 환경부령 제8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 7.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및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제4조(손해배상책임)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 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9. 25.>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9. 2. 1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제6조(정보청구권)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란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연구를 말한다. 1. 역학조사 2.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2.]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이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 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로 본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0. 9. 25.)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사본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노출확인자단체: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3조제2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이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제3조(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1.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와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피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2018. 8. 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 9. 22.> 1. 보건복지부장관 2. 환경부장관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2. 3.>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② 삭제 <2019. 2. 12.>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 9. 22.>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2.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 3.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 원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9.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9. 22.> [제목개정 2019. 2. 12.]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9. 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 3. 24.) 7.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8.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③ 피해자단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0. 3. 24.)	제14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은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2.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단체 구성원 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환경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단체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다른 피해자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 2. 국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단체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3.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등 지원 신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본조신설 2019. 2. 1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④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청구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정보 제공·열람 의무,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 정보의 목적 및 사용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 지원받은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9. 2. 12.]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③ 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19. 2. 12.]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단체 구성원의 가임 동의서 2. 단체 구성원 명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14.]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10조제7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③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④ 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2020. 9.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제목개정 2020. 9. 22.]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라 한다) 나.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영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다.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3. 구제급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급여 1)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2)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의비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간병비 1)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 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2)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제1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 2. 12.>]	라. 장해급여 장해급여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및 진단서 등 장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구제급여조정금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제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0. 9. 25.> 1.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2020. 3. 24.>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2.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3.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4. 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제목개정 2020. 9. 22.]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2. 12.>]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람 또는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3.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신청자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4., 2020. 9. 2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과 진찰·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제목개정 2020. 3. 24.]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2.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1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올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	[본조신설 2020. 9. 22.]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제목개정 2020. 3. 24.]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 4의2. 장해급여 5. 특별유족조위금 6. 특별장의비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2.>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해당 구제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0. 9. 22.]	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0. 9. 25.> 1. 삭제 <2019. 2. 14.> 2. 삭제 <2019. 2. 1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4.>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목개정 2020. 9. 25.]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7. 구제급여조정금 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0. 3. 24.> 제13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② 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개별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2.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인공 호흡기 나. 산소 공급장치 다. 흡인기(吸引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개정 2020. 3. 24.>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은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15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16조(간병비) ① 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②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라.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리기기 및 의료 소모품 제20조(장의비)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제21조(간병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④ 간병비의 지급결정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 3. 24.> 제16조의2(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가슴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1.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2.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제14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3천8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치료비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9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사망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유산·사산 또는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록요약지 나. 태아의 진단·출생 관련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①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	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2.]	라. 출생아의 사망진단서 2. 제1호 외의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나. 사망 당시 의무기록 다.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조위금등 지급요청서에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정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②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 위금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신청은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 제21조 삭제 <2020. 3. 24.>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제24조 삭제 <2020. 9. 22.>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2020. 9.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9조 삭제 <2020. 9. 25.>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2. 14.]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 3. 24.> ②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요양급여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구제금	제외한다. <신설 2019. 2. 12., 2020. 9. 22.> [제목개정 2019. 2. 12.]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② 환경부장관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에는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 날까지의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9. 7. 2.>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제31조에 따른 피해 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제17조의 특별유족조위금과 제20조의 구제급여조정금은 「민법」에 따른 위자료로 본다. ④ 이 법이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② 부당이득의 환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 9. 22.> [제목개정 2020. 9. 22.]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삭제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8.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 재심사 청구 사항 -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결정 내용 및 이유 - 결정 연월일	제10조(재심사 청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8. 14.>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 3. 24.>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0. 3. 24.]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 9. 22.>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2조제8호에 따른 피해구제자금 지원 신청의 접수·검토 및 확인 2. 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구제급여·경비·비용·지원금의 지급 및 차입금·이자 상환 3.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관리 및 운용 [전문개정 2020. 9. 22.]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	다.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사회학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마. 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9. 2. 12.> 4. 삭제 <2019. 2. 12.> 5. 삭제 <2019. 2. 12.> ②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③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지명 철회, 결격 사유, 제척·기피·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제목개정 2020. 9. 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2. 삭제 <2020. 3. 24.>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6.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7. 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가. 지급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격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목개정 2020. 3. 24.]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2.]	제11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이하 “긴급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제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4.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예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예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③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0. 3. 24.> ④ 기술원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⑤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⑥ 삭제 <2020. 3. 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9. 2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금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구제자금 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제목개정 2020. 3. 24.]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의 판매량이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천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text{분담금} = 1\text{천억원} \times \frac{(\text{가습기살균제사용비용} \times 2.5 + \text{가습기살균제판매량} \times 1)}{3.5}$ ②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용”이란 지급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용의 산정 시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용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22. 8. 2.>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 2.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3. 제33조 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4. 제33조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용을 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이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개정 2022. 8. 2.>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2.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 8. 2.> 1.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2. 2017년 8월 9일부터 추가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④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사업의 기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8. 2.]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④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영 제3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장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장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장수기관의 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⑥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분담금의 분할납부,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36조(가산금)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37조(조사, 보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슴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2.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와 가슴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8조(조사,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5. 19., 2020. 9. 22.> 1. 통계청장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5. 가슴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슴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2.> 1.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인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 2.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제4장 보칙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 변동 신고서에 수급권의 변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②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39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9. 22.)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4.) [제목개정 2019. 2. 14.]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가슴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슴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른 가슴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8. 14.> 1. 가슴기살균제,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4. 가슴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한다. ⑤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41조(가슴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슴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가슴기살균제,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을 위한 의료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나.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요청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라.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 3.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 적응 등의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④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8. 14.>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연구 ⑤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④ 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본인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구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3.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병원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사·연구 인력 현황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환경보건 분야의 조사·연구 실적 4.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5. 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업무 수행 실적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참여인력·조직·시설·장비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 4.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0. 3. 24.〉 ②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8. 8. 14.〉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로 정한다. 〈신설 2019. 2. 12.〉 [제목개정 2019. 2. 12.]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게 위임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법 제5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5.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평가 및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1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정 취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가정 2020. 9. 22.>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요청의 접수와 신청 및 요청 내용의 검토·확인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 등급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검사 비용 지원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 4. 법 제1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통지 5.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 6. 법 제19조제1항 및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 인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 7.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 및 구제급여조정 신청의 접수와 그 내용의 검토·확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 및 청구 내용의 검토·확인 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 법 제37조제5항 및 이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변동 신고의 접수 및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접수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제44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피해자단체와 노출확인자 단체의 신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구제급여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급여, 경비, 비용 등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2. 제4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제5장 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8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3.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1.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제5장 벌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課)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제44조(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1.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4566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6조(제4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지원 및 인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지원 및 인정된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지원 및 인정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까지 「환경보건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3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제32조제1호에 따른 급여를 대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5717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2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28239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546호, 2019. 2. 12.>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21호, 2019. 12. 3.> (피한정후견인 결정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83호, 2020. 5. 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710호, 2017. 8. 9.>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 2019.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유족인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인정을 받기 위하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통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2호, 2020.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구제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특별구제계정에서 지급한 급여 및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1027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유족조위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은 받았으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장의비의 100분의 2천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4조(구제급여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후 그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구제급여의 지급신청 의사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유효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일로 한다. 부칙 〈제31453호, 2021. 2. 1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2843호, 2022. 8.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제17조제1항 관련)	6873
[별표 2]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6874
[별표 3] 간병비(제21조 관련)	6875
[별표 4]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제21조의2 관련)	6875

[별표 1] <개정 2020. 9. 22.>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제17조제1항 관련)

1.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가.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가슴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가슴기살균제에 노출된 기간 및 노출 정도 등 노출 양상,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노출 전후의 건강상태 및 진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법 제37조 및 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자료 등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진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2.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

가.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은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한 날,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요청을 한 날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중 다음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 노력성 폐활량(FVC)
- 2) 1초량(FEV1)
- 3) 폐확산능(DLco)

나. 가목 1)부터 3)까지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피해등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검사 결과에 따른 피해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장해 정도가 가장 높은 검사 결과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검사방법 피해등급	노력성 폐활량 (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초고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고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중등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경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경미한 피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등급 외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비고

1. 1초량은 노력성 폐활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정상 예측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폐기능 정상 예측식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0. 9. 22.>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피해등급	요양급여 금액	요양생활수당 금액
1. 초고도 피해	가슴가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슴가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금액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슴가살균제 피해자 본인인 부담하는 금액 나.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57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3) 응급상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2. 고도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411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3) 응급상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중등도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74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3) 응급상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등급	요양급여 금액	요양생활수당 금액
4. 경도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37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5. 경미한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6. 등급 외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3]

간병비(제21조 관련)

간병 필요등급 \ 간병인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간병 4등급
전문 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미지급
가족, 전문 간병인 외의 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미지급

비고

1. 간병 필요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다.
2. 전문 간병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4] <신설 2020. 9. 22.>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제21조의2 관련)

장해등급	장해내용	노동력 상실률	급여금액
1. 초고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57,600에 해당하는 금액
2. 고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34,560에 해당하는 금액
3. 중등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 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4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3,040에 해당하는 금액
4. 경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은 사람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1,520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장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근거로 결정하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편 환경보건

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887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 6887 제3조(정의) 6888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6889 제5조(적용 범위) 6890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6892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6893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7조(실태조사) 6896 제8조(위해성평가 등) 6897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6898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6899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 6905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69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887 제1조의2(적용범위) 6891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6892 제3조(위원의 해임·해촉) 6895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895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6899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6902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69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887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893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6896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6897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6899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6902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6904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690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6906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6908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6910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6911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6912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6914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6915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6917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6920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8조 삭제 6906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6907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6909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6911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6911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6912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6916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6918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16조 삭제 6920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6908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6908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6909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6911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6912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6912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6915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6917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6918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6918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6919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6921 제20조 삭제 69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6922	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6921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6922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6923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6923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6925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6925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6925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6926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6927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6925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6927 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6928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6928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6926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6932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6931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6932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6928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6930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6931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6932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6933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6934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 6933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6934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6934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6935 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6936 제33조(취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6938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6934	제25조(자료의 보호) 6935 제25조의2(취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6936 제26조(취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6938	
제31조(자료의 보호) 6935		
제32조(자료 사용동의) 6936		
제32조의2(취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6936		
제33조(취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6937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6939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6940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6939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 6941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6942 제37조(회수명령 등) 6943 제38조(과징금의 부과) 6943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6941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6943 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6943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6945 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6945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6946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6941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6942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6942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6943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6943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6946	제3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6947 제34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6948	제39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6948 제40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6949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 6950 제4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6950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6951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6951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6951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6950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6951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6952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6952 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6954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6952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6952 제37조의2(포상금) 6954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6952 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6952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695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 5. 18.)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6955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6956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6957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6957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6958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6961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6962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6962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6963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6963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6963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 6964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6965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6965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6966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6966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6966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6967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6967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6968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6970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 12. 31.) 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6957 제37조의4(자료제출의 요청) 6957 제37조의5(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6962 제37조의6(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운용) .. 6967 제37조의7(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6969 제37조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 12. 31.)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6958 제45조의3(조사·감정 등의 절차 등) 6960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6960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6960 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6962 제45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 6963 제45조의8(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6963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 6964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6966 제45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697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6973	제37조의9(가산금) 6971	제45조의12(이의신청) 6971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6973	제37조의10(이의신청) 6971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6972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6973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6972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6974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6973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49조(기록 및 보고) 6974	제37조의13(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6973	제46조(기록 및 보고) 6974
제50조(출입·검사·수거 등) 6975		제47조(출입·검사·수거 등) 6975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6976		제48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6976
제52조(수수료) 6977		제49조(수수료) 6977
제52조의2(포상금) 6977		
제53조(청문) 6978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6978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6978	제38조(권한의 위임) 6978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6983	제39조(업무의 위탁) 6981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6984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6984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6984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985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985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98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6986 제57조(벌칙) 6988 제58조(벌칙) 6990 제58조의2(벌칙) 6991 제59조(양벌규정) 6991 제60조(과태료) 6991 부칙 6992	제7장 벌칙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991 부칙 6992	부칙 699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8. 3.20 법률 제15511호 2020. 3.24 법률 제17103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5.18 법률 제18170호 2024. 1.30 법률 제20172호(행정안전부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2024. 3.19 법률 제20382호	제정 2018.12.24 대통령령 제29412호 2020.12.29 대통령령 제31323호 2021.12.31 대통령령 제32300호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행정안전부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6호	제정 2018.12.28 환경부령 제794호 2019. 4.17 환경부령 제805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020.12.31 환경부령 제901호 2021.12.31 환경부령 제960호 2022. 2.10 환경부령 제972호 2022. 3.31 환경부령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4. 4. 9 환경부령 제10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8.>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 2021. 5. 18.〉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5. “유해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 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10.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11. “물질동등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화학적 조성(組成),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말한다. 12. “제품유사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이 들어있고,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말한다. 1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 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3. 24., 2021. 5. 18.>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 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3. 24.)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3. 24., 2021. 5. 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8. 제48조의2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금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 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살생물처리제품 [본조신설 2020. 12. 29.]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5. 18.>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3. 24., 2021. 5. 18.>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4.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5.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 3. 19.)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5. 18.)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환경·보건·의학·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4. 3. 19.) 5. 삭제 (2024. 3. 19.)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6조	제3조(위원의 해임·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수입·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등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3. 24.>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3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사유 2.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 방법 및 장소 3.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내용 4.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1.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 확인 2.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수준의 설정 3.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수준의 평가 4.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도 결정 5.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도출(제4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 위해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의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다. 살생물물질 2. 생활화학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2. 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명칭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유해화학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이라 한다) 나. 중점관리물질 다. 살생물물질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마치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4.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4.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1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5.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0. 12. 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전본 5.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2. 31.> 1.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 등의 유효성 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방법·기준 및 결과 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화재·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③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②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2.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및 제조·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⑥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화학물질안전원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⑨ 화학물질안전원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⑩ 화학물질안전원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	90일 2.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⑪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⑫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⑬ 화학물질안전원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の方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제조연월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8조 삭제 <2020. 12. 29.>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20. 3. 24.) 2. 삭제 (2020. 3. 24.) 3. 삭제 (2020. 3. 24.) 4. 삭제 (2020. 3. 24.)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3.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耐性)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4.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③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2.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④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2.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⑤ 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 4.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라. 효과·효능 마. 분류 및 표시 5.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제외한다): 7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1.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2.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12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물질의 국내의 사용 및 규제정보 4.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법 제12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그 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물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데	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1년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9.> ⑥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살생물물질이 유지하여야 하는 순도(純度) 범위 2. 살생물물질에 들어있는 것이 허용되는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 5.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6. 그 밖에 물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물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2.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 3. 살생물물질의 명칭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7. 법 제14조제6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기준살생물물질이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로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유사할 것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에 관한 효과·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할 것 3. 그 밖에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서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16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질승인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5.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물질동	2.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된 범위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 1. 삭제 <2020. 3. 24.> 2. 삭제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0.>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2.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3. 삭제 <2020. 12. 31.>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 제품유형 3. 승인유예기간 ④ 제3항제3호의 승인유예기간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존살생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 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질질의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기존살생물물질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따라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 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물질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신고를 한 자 모두에게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에 대하여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되,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개별로 제출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3. 그 밖에 개별제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2020. 12. 31.)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명칭, 화학적 조성, 살생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제품유형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료 나.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가목·다목(유해성 정보만 해당한다)·마목, 제5호 및 제7호의 자료 2.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및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제출·개별제출 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살생물물질의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삭제 (2020. 3. 24.) 2. 삭제 (2020. 3. 24.) 3. 삭제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16조 삭제 (2020. 12. 29.)	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살생물제품 위해성의 최대 정도 2.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물질 및 화학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4.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의 적정성 ④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⑤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⑥ 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제외한다): 5년 2. 법 제20조제5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년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 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2.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3.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4. 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삭제 (2020. 3. 24.)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4.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라. 효과·효능 마. 분류·표시 및 포장 5.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제20조 삭제 (2020.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20조제6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3. 살생물제품의 국내의 사용 및 규제정보 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6.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그 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4. 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신청자가 물질승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4개월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9.> ⑦ 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3.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4.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5. 살생물제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공급자의 주소 7.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형(劑形) 나.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다. 유통기한 라. 사용상 주의사항 마. 용도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23조 본문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2.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3. 법 제22조제6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①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 1.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가. 살생물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5.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법 제21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9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라 한다) 나. 나노물질 다.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품승인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환경부령에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 4. 17.>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2020. 5. 26.> 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2024. 4. 9.> 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나.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성분,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효과·효능 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당 제품의 시료 나. 노출정보 다.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2024. 4. 9.>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유사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기준살생물제품이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가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2.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제형, 유해성·위해성, 효과 및 효능이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3. 그 밖에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정한다.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25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6.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범위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의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 비율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중량 또는 용량 3.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4.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6.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2. 그 밖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다.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살생물물질 2.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을 것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5. 그 밖에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의 명칭 및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5. 그 밖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을 사용하지 않을 것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 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 비율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4. 살생물제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그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열람청구서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려는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에 거부 사실 및 거부 사유를 적어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6. 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 및 포장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③ 화학물질안전원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4. 4. 9.)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청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을 신청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신청자, 제품승인신청자,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물질승인등, 제품승인등,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15년	제25조(자료의 보호)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1회에 5년씩 총 2회로 한정한다)을 요청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료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까지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자료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3. 그 밖에 자료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나 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자료의 공개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료 사용동의)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 인등의 신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3. 제21조제1항·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 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신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사용동의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착취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① 생활화학제품 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에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사실이 있으면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 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2조의2(착취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① 생활화학제품 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제25조의2(착취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32조의2제1 항에서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시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위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자료(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라 한다)만으로는 위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만으로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위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국내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위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이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2.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에게 척추동물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이 조에서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신청자료로 제출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④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②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④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 함께 통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 2. 10.> 1. 무독성 2. 환경·자연친화적 3. 무해성 4. 인체·동물친화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2. 10.>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3. 제품의 효과·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증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번호 또는 승인번호 -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증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증가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물질승인·제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위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 2.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사진 등의 기본정보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3.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4. 권고 수용 여부 통지 기한 5. 권고 수용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권고의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3. 권고의 수용 여부 4. 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 수용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명령,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시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제10조제1항·제6항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	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한 시점(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나 중지명령을 받은 시점을 말한다)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제2항에 따른 판매기간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를 시작하지 않거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점 또는 수량을 확정할 수 없어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금액 산정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법인이자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2.> ⑥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2.> ⑦ 삭제 <2023. 12. 12.>	②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시험·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분야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업무의 대행	제3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시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또는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을 갖추는 것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장비와 분석 기기를 갖추는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시험·검사 경력에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시험·검사 경력에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②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검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	무의 대행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분야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29.) 제34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시험·검사기관의 명칭 2.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3. 시험·검사기관의 소재지 4.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5. 시험·검사 분야 ④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검사기관 지	제39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검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서 2.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서의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어 변경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호서식과 같다. 제40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 4. 9.> 1. 정기평가: 시험·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2. 수시평가: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내용 및 시험·검사결과의 적정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운영의 적절성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숙련도 3.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여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설 2020. 12. 31., 2024. 4.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검사업무를 한 경우 4.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7.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휴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 소비자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 4. 물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5.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6. 제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7.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8.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의 신청, 제36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2.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3.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5. 법 제47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활용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2. 삭제 <2020. 12. 31.> 3. 삭제 <2020. 12. 31.> 4. 법 제48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1.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화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변경신고,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9의2.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9의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14.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보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군·자치단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명칭, 성분, 함량 나. 사용 용도, 용법·용량, 효과·효능 다. 유해성·위해성 정보 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2.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명칭 나. 유해성·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다.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제품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제37조의2(포상금)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장·군·자치단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 2.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3.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자료 수집 및 신고 4.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 5. 18.〉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원인자가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는 3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 12. 31.〉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원인자가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5. 1. 1.] 제48조의2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의료기록·건강보험·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람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④ 환경부장관은 전문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소속으로 비상임의 조사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37조의4(자료제출의 요청)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법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통계청 2. 지방자치단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의료기록·건강보험·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5. 1. 1.] 제48조외3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3.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과 그 유족,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대상자”라 한다)과 그 유족 4.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살생물제품 판매·유통업자 5.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감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②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의료기록·건강보험·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통 제출자료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3.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4.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 5.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기록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6. 살생물제품의 성분, 배합비율, 유효성, 제조·수입량 및 판매량 등 제품 및 판매에 관한 자료 7. 「통계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중 사망원인통계에 관한 자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감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1. 12. 31.]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별 제출자료 가. 진료비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이 표시된 진단서 라.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신청의 경우 1)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3(조사·감정 등의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감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정 등의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감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지할 경우 그 결정의 내용 및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 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⑤ 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4. 3. 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5. 1. 1.] 제48조의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 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 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4. 3. 1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7조의5(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구제급여 대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법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5. 1. 1.] 제48조의5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① 진료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제45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8(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진료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의 구제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5. 1. 1.] 제48조의9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①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청구를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13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 청구 사유 3. 재심사 결정 내용 및 이유 4. 재심사 결정 연월일 [본조신설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5. 1. 1.] 제48조의13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구제급여의 지급 -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제37조의6(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2.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3.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4.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5.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	②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5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37조의7(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15제5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자산운용, 재무관리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16(살생물제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text{분담금} = 1\text{인당 지원예산액} \times \text{피해자수} \times \frac{(\text{원인제품사용비용} \times 2.5 + \text{원인제품판매비용} \times 1)}{3.5}$ ③ 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용”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구매처에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 제조·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용”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제37조의8(살생물제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제3항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7조의10 및 제37조의11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라 살생물제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분담금 납부고지서에 적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사용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한 원인제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원인제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원인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2. 제7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사람의 수는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의 수에 제7항에 따른 분담금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판매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 원인제품의 총판매량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된 원인제품의 판매량으로 할 것 2. 제7항의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의 판매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량은 제외할 것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제45조의11(살생물제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	호의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 [본조신설 2021. 12. 31.] 제37조의9(가산금) 법 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37조의10(이의신청) ①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45조의12(이의신청)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 1. 30.> ⑪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30.> [본조신설 2021. 5. 18.]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7조의9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0항에 따라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제2호의 제조·수입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의11제2항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법 제48조의16 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5. 1. 1.] 제48조의17 제48조의18(규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1.]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7에 따라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37조의13(규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법 제48조의18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제급여대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	장은 영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46호의9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진료비를 받 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19.> 1. 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5. 1. 1.] 제48조의18 제6장 보칙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 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 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 과 수량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제품명 및 수량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에 관한 사항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 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 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으려는 사람 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④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항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시정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46조(기록 및 보고)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기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5. 26.) 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③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시기 및 방법 등 기록·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성, 용기, 포장 및 제조·보관시설 등에 대한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의 무상 수거 3.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또는 시험·검사업무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야 한다. 1. 최초보고: 2020년 3월 31일 2. 그 이후의 보고: 제1호에 따른 보고일이 속한 연도에서 매 2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제47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제조자·수입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4. 9.>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여 주어야 한다.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한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4.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화학물질안전원 2. 시험·검사기관 제48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나. 법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 법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1조제1항·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5.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 제52조의2(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		확인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1.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4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53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4. 2.) - 법 제10조제6항·제7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의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고시 1의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물질승인 3.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5. 법 제17조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취소 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취소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접수 6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고시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 7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8.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품승인 9.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10.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12. 법 제26조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취소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13.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 공개 14.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및 공개 15. 법 제33조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의 접수 및 확인 결과의 통지, 척추동물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협자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및 제출명령 16.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및 평가 17. 법 제4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 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화학물질안전원 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8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9. 법 제5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 1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 접수 19의3. 법 제60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0.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1.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 및 평가 방법의 고시 22의2.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2의3.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3.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24.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변경지정·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2. 29.) 1.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의 금지명령 - 법 제17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의 중지명령 -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의 금지명령 - 법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의 중지명령 - 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 -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채납처분 -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법 제53조제3호에 따른 청문 -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31.> -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 법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7.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접수와 신청 내용의 검토 8.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감정 등 9.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결과의 통지 10. 법 제48조의7 및 법 제48조의8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과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11. 법 제48조의9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여부의 검토지원 12.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와 청구 내용의 검토 13.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검사·조사 등의 요구 14.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여부의 검토지원 15.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6.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2. 29.>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0. 12. 29.> 1.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제2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④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17 및 제48조의18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24. 3. 19.> ④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업무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021. 5. 18., 2024. 3. 19.) 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54조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2.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3.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4.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5.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6.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7.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8.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2.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 ② 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4. 4. 9.>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5. 18.> 1.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 3. 조사단의 단원 4.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5. 18., 2024. 3. 19.> 1.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 3. 조사단의 단원 4.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시행일: 2025. 1. 1.] 제55조	1. 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2.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그 밖에 살생물제의 명칭, 용도,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20. 12. 29.]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1. 12. 31.]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8.] 제7장 벌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4.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 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 제37조를 위반하여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승인·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3. 24.>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2.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3.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동등성을 인정받거나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제16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유사성을 인정받거나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제25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검사업무를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3. 24.)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7.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증대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5. 18.> 부칙 <제15511호, 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 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검사기	부칙 <제29412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23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살생물처리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	부칙 <제794호, 2018. 12. 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 2019. 4. 17.> (친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과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칙 제3조제	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서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에 관한 자료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300호, 2021. 12. 31.)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01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960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7103호, 2020. 3. 24.〉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13조 중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6항,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일 3.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제18170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6호, 2024. 4. 2.〉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 2022.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 2024. 4. 9.〉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382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 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일 해촉된 것으로 본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6999
[별표 1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관련)	7000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7000

[별표 1] <개정 2020. 12. 29.>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가. 살균제 나. 살조제[殺藻劑: 물놀이시설, 수족관 등의 조류(藻類)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살서제(殺蟻劑: 쥐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라. 살충제 마. 기피제(기피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바. 목재용 보존제 사.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아.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 제품보존용 보존제 차.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카.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타. 건축자재용 보존제 파. 재료·장비용 보존제 하. 사체·박제용 보존제 거.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2.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유해성·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유예기간의 만료일은 2029년 12월 31일을 넘을 수 없다.

[별표 1의2] 〈신설 2020. 12. 29.〉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0만원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다.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처리제품	10만원 이하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별표 2] 〈개정 2021.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호	300	500	1,000
나.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2호	300	500	1,000
다. 법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3호	300	500	1,000
라. 법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법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법 제60조제1항 제4호	300	500	1,000
마. 법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5호	600	800	1,000
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6호	600	800	1,000
사.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7호	600	800	1,000
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8호	600	8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9호	600	800	1000
차.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0호	600	800	1,000
카.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	300	400	500
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1호	300	500	1,000
파.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2호	300	500	1,00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	7005
[별표 2]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 (제36조의2제1항 관련)	7006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7007
[별표 3의2] 피해등급의 기준(제45조의5 관련)	7008
[별표 3의3]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제45조의7 관련)	7009
[별표 4] 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	7010

[별표 1]

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설명
1. 살균제류 (소독제류)	가. 살균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향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살조제(殺藻劑)	수영장 등 실내·실외 물놀이시설, 수족관, 여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구제제류	가. 살서제(殺鼠劑)	쥐 등 설치류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설치류를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척추동물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살충제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등 곤충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곤충을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무척추동물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마. 기피제	기피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無害)하게 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설명
3. 보존제류 (방부제류)	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제품표면 처리용 보존제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 표면 또는 코팅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섬유, 가죽, 고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목재용 보존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목재를 제외한 다른 건축자재, 석조, 복합 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다음의 재료·장비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 산업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장비·구조물 2) 냉각 또는 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담수 등의 액체 3) 금속·유리 또는 그 밖의 재료를 가공하거나 자르거나 깎는 데 사용되는 유체(流體)
4. 기타	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나 그 일부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별표 2] <개정 2020. 12. 31.>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
(제36조의2제1항 관련)

1. 제조시설 기준

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작업대, 장비 및 멸균시설(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오염 및 교차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습도 등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라. 작업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기시설 및 보호장비 등을 갖춘 것

마.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갖춘 것

바. 부적합 제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구획을 설정할 것

* 비고: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보관시설 기준

가. 오염 및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

나.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습도 등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다. 폭발 또는 발화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보관할 것

라. 부적합 제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구획을 설정할 것

3. 안전관리 기준

가. 시험·검사시설 기준

1)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위한 시약, 기구 및 시설·장비를 갖춘 것

2) 미생물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구획되어 있을 것

3) 제품의 유효기간 평가를 위한 안전성 시험용 시료를 별도의 구획을 설정하여 보관할 것

* 비고: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인력 기준

1)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할 것

2)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3)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 비고: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인력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문서 및 기록관리 기준

1)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보존할 것

2) 모든 문서의 기록을 개정 및 수정 이력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며, 보존기간 등을 설정하여 보관·관리할 것

3)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로 하되, 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보존할 것

4) 제품표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가) 제품명, 제형 및 성분

나) 제품승인 연월일 및 승인사항 변경 연월일

다) 제품의 효과·효능,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라) 승인받은 원료의 양 및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양

마) 제조공정흐름도, 상세 제조방법 및 작업 중 주의사항(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공정의 범위를 포함한다)

바)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사) 제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약, 기구 및 시설·장비

아) 제품의 보관조건 및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자) 제품 및 제품표준서의 이력 관리

5) 제조관리기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가) 제품의 제조기록에 관한 사항

나)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판정의 확인 방법

다) 제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청량과 멸균작업 등 중요 공정의 이중 점검 방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라) 원료, 자재 및 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 6) 품질관리기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가) 제품의 시험 항목 및 기준 등이 포함된 시험지시서
- 나) 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시약, 기구 및 시설·장비 명세 및 점검방법
- 다) 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보관 방법 및 주의사항
- 라) 제품의 유효기간 평가를 위한 안정성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
- 마) 제조를 위탁하거나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송부 및 시험결과 판정 방법

[별표 3] <개정 2022. 2. 10>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나 악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거나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6호	업무 정지 1년	지정 취소		
사.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별표 3의2] 〈신설 2021. 12. 31.〉

피해등급의 기준(제45조의5 관련)

피해등급	장애내용	전신 장애율
사망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	
1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최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80 % 이상
2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60 % 이상
3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	40 % 이상
4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20 % 이상
등급 외	1.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2. 장애가 고정되지 않은 사람	20 % 미만 또는 판정불가

비고

1. 피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애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2. 피해등급 산정을 위한 전신 장애율의 산정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3] <신설 2021. 12. 31.>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제45조의7 관련)

유형	지급 기준·범위
가.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나. 장애일시 보상금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다음의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1) 피해등급 1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기준중위소득”이라 한다) 1천분의 28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피해등급 2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20천520에 해당하는 금액 3) 피해등급 3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13천680에 해당하는 금액 4) 피해등급 4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6천84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망일시 보상금	구제급여 지급 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라목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장례비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다목의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사망일시보상금을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별표 4]

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200,000원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100,000원
나.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50,000원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50,000원
라. 법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200,000원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100,000원
마.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50,000원
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50,000원
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50,000원
아.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신청	20,000원

2.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를 감면한다.

제8편 환경보건

03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019	제1조(목적) 7019	제1조(목적) 7019
제2조(정의) 7019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7020	제2조(석면의 종류) 7019
제3조(국가 등의 책무) 7021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702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021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7022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7022	
	제4조 삭제 7022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7022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7022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7022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7023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7023	
제7조(실태조사) 7023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7023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7024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7024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7024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와 제출) 7025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7025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7025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7026
제9조(자가 측정) 7026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고시 기준) 7027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 7026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석면합유가능물질의 관리) 7027	제13조(석면합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7027	제8조(석면합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7027
	제14조(석면합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7028	제9조(석면합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7027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7029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7028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7029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7029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7030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합유가능물질의 공개) 7030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2조(지질도 작성) 7031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7031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7031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7031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7031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7031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7032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7033	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7032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7033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 .. 7033	
	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7033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7034	
	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7034	
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7034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7034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7034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7035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7034	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7034
	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7036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7035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 7035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7036
		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7036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7036 제19조(지정 해제 등) 7036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 7037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7037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7036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7038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7038 제30조(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7039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7039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7039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7038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7039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7041	제24조(석면건축자재) 7040 제25조 삭제 7040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7040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7040 제27조의2(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 7040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7041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7042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7043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7043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7044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7044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7043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7045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7045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7046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7046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7046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7046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7047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7045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7046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7048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7048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7046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7048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7048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7048 제39조(소규모 건축물) …… 7048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 7050 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 7051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7048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 7050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7050 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 7051
제29조(작업중지 등) …… 7051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7052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 7054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 7054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7052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 7054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 7054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 7055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 7056	제42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 7057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 7056 제4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 7057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 7057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 7058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 7058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7059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 7059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 7059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7059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 7060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 7060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 7061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 7061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 7062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 7062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 7060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 7061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 7062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 7062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7063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7062 제48조(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7063 제49조(정보망의 구축·운영의 위탁) 7063	제47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7063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7064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7064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7065		
제39조(대집행) 7065		
제40조(보고 및 검사) 7066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7066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7066
제41조(청문) 7066		
제42조(위임 및 위탁) 7067	제51조(권한 위임 및 업무의 위탁) 7067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068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44조(벌칙) 7068		
제45조(벌칙) 7068		
제46조(벌칙) 7068		
제47조(벌칙) 7068		
제47조의2(벌칙) 7069		
제48조(양벌규정) 7069		
제49조(과태료) 7069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069	
부칙 7071	부칙 7071	부칙 7071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11. 4.28 법률 제10613호 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 3.18 법률 제12460호 2016. 1.27 법률 제1385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6. 1.27 법률 제13877호 2016. 5.29 법률 제14232호(환경영향평가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11.28 법률 제15097호 2018.12.24 법률 제16081호 2019. 1.15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2019.11.26 법률 제16606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2. 6.10 법률 제18907호	제정 2012. 4.27 대통령령 제23754호 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 7.24 대통령령 제264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7.19 대통령령 제27348호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12.20 대통령령 제2767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7. 2.28 대통령령 제27919호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 5.21 대통령령 제28897호 2019.12. 3 대통령령 제30230호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3호 (지방법원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9.14 대통령령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 6 대통령령 제33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2022.12. 6 대통령령 제33027호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2012. 4.27 환경부령 제452호 개정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2.29 환경부령 제736호 2018. 5.29 환경부령 제761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4 환경부령 제834호 2021. 6.28 환경부령 제920호 2022.12. 9 환경부령 제10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 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11.> 1.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6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 7. 24.> 1.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삭제 <2015. 7. 24.>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계획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 시·도지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상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7. 19.> 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9., 2018. 5. 21.>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등의 실패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패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포함 여부를 스스로 확인·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거조사기관 2. 화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화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4. 화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개정 2018. 5. 29.>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생산·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5. 26.]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고시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2. 해당 광물질의 수입·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수입 신고일 2.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⑤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증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2. 6. 10.> ⑦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0.>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7항에 따른 석면	제15조(작업증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증지를 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증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5. 21., 2022. 12. 6.>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증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가공·변형 계획서(가공·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9.> 제11조(작업증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증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증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증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작업증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2. 6.>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6.>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2조(지질도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2.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자연발생 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2.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된 조사 결과를 말한다) 4.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예비조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2. 본조사: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지역의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 또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2. 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관리지역에서의 석면비산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석면 제거, 복토(覆土)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안전 관리계획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3.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2. 9.>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정 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지역이 최초로 승인받은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또는 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그 지역의 축소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및 그 지역의 축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9., 2016. 8. 11.> 1.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2020. 5. 26., 2022. 6. 10.>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날 3.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가능하게 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 12. 6.> [전문개정 2017. 2. 28.]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6. 28.>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6. 10.>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하는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2022. 6. 10.>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제30조(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5. 11., 2022. 12. 6.> [제목개정 2022. 12. 6.]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5. 21., 2022. 12. 6.> 1.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2.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25조 [종전 제25조는 제27조의2로 이동 <2018. 5. 29.>]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자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자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제27조의2(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8., 2022. 6. 10.>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3., 2021. 5. 11.>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계gesundheitsorganisation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 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3과 같다. <개정 2018. 5. 29.> [제25조에서 이동 <2018. 5. 29.>]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2021. 6. 28., 2022. 12. 9.>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2021. 6. 28.>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폐업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험이 우려된다고 인정 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증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⑦ 제5항에 따른 사용증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 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제출방법, 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2022. 6. 10.>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증지 명령의 이행계 획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증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증지 명령서 사본 2.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증 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증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 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제1항에 따른 사용증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증지 명령의 이행계 획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증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증지 명령서 사본 2.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증 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증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 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제1항에 따른 사용증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28.>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 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 <2018. 5. 2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 5. 29., 2021. 6. 28.> 1. 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 [제목개정 2018. 5. 29.]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2019. 1. 1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 직무교육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과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 6.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 5. 29.]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7. 2. 28.)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4.>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21. 6. 22.>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 7. 19.>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제거하려는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21. 6. 28.>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19. 12. 24., 2021. 6. 28.>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다.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말한다)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21. 6. 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7. 11. 2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 및 측정결과와 제출·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2018. 5. 21.>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6. 28.> [제목개정 2021. 6. 28.]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 정결과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작업중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면	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제목개정 2018. 5.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18. 5. 29.] 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1조 제1항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 5. 29.]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사업장 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8.>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4.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1. 28., 2018. 12. 24., 2022. 6. 10.〉		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6.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각 1부 ②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8.)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석면해제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중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4로 이동 (2018. 12. 24.)]	제42조(석면해제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제·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 2와 같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본조신설 2018. 5. 29.] 제41조의3(석면해제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본조신설 2019. 12. 24.] [중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5로 이동 (2019. 12. 24.)] 제41조의4(석면해제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제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5(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42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9. 12. 3.)]	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42조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록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8. 12. 24.]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 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다.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라.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4.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5. 21., 2019. 12. 3.>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요청서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9.] [제41조의3에서 이동 <2019. 12. 24.>] 제4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19. 12. 24.> 1.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법 제3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7. 11. 28.]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8. 12. 24.)]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 5. 21.> [제42조에서 이동 (2019. 12. 3.)]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제7장 보칙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5. 29., 2022. 12. 9.>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삭제 <2018. 5. 29.>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계획 및 일정 2. 지정 요건 3. 비용 지원계획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2. 석면 분야의 조사·연구·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5. 재원 조달계획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4. 삭제 <2022. 12. 9.> 5. 삭제 <2019. 12. 24.>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평가·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영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공고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석면 분야의 조사·연구·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환경부장관이 법 제34	② 영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4. 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6.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현황 9.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1.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제49조(정보망의 구축·운영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이 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居所(居所)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중정 2017. 11. 28.)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청문) ① 시·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②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자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7의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 석면해체·제거업자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자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제4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권한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5. 21., 2022. 12. 6.>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 승인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화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화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3.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인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19. 12. 3.>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1의2.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3. 법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3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3의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4.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 [제목개정 2022. 12. 6.]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별칙 제44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 함유가 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제45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11. 28., 2022. 6. 10.> 1. 제8조 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 제22조 제5항에 따른 사용증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증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46조(별칙)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작업증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22. 6. 10.> 제47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11. 28., 2018. 12. 24.>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제8장 별칙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증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증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의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증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7. 11. 28.]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22. 6. 10.> -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2022. 6. 10.> -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부칙 <제10613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부칙 <제23754호, 201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기준 등)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부칙 <제452호, 2012.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 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도를 포함한다)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시설물 등은 그 제품·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과 유사한 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2.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 외의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영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한 건축물 2.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1호 외의 건축물 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736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60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9호, 2016. 1.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3877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32호,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32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35호, 2015. 7. 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조(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12월 31일(영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첫 번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이 규칙 제 28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로 보고, 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761호, 2018.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3.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567호, 2017. 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5097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48호, 2016. 7. 19.〉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4호,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⑩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675호, 2016. 12.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919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의 작성기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석면 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최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2.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제·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81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제2조(석면해제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제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시행일: 2019. 12. 25.] 제2조	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3호너무, 별표 5 제2호바목2) 및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3호너무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8628호,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⑫부터 ⑬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897호, 2018.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부칙 〈제834호, 2019. 12. 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 2021.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호, 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6272호,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하여야 한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2. 2017년 2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별표 1의2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018년 5월 2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석면조사가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의 비상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230호, 2019. 12. 3.〉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6606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07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3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고급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⑪부터 ④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0313호, 2019. 12. 3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79호, 2021. 1. 5.〉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82호, 2021.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3호, 2021. 6. 22.〉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986호, 2021. 9.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2686호, 2022. 8. 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23호, 2022. 12. 6.>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사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027호, 2022. 12. 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2호, 2022. 12. 30.>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석면안전관리법 별표

[별표] 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7083

[별표] <개정 2017. 11. 28.>

**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법령명	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석면등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다. 삭제 <2017. 11. 28.>
2. 「식품위생법」	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나.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다. 제6조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 또는 기준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3. 「약사법」	가.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나. 제51조에 따른 대한약전(大韓藥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다. 제5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한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관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4. 「의료기기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기준규격을 정한 경우 그 기준규격에 따라 석면등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령명	규정내용
5.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5호에 따라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6.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다. 제14의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나.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허용된 경우 라. 제19조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면제받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안정성 시험·검사를 면제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마.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바. 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8. 「화장품법」	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 나.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의 효능·효과, 품질등에 관한 규격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다.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제21조 관련)	7087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7087
[별표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7089
[별표 3]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7089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7091
[별표 3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	7092
[별표 4]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7093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7094

[별표 1]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제21조 관련)

지정·고시 기준	세부 고려사항
1. 환경매체 중 석면 농도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단, 공기의 석면 농도는 계절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가능성	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석면질환자 발생 현황 나.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실외활동 시간) 분석 결과 라.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 중 석면 농도에 근거한 석면 노출량 평가[활동근거 시료채취법(ABS:Activity Based Sampling)을 이용한 위해성 평가를 의미한다] 결과
3. 그 밖의 참고 사항	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경작지, 주거지역 분포) 현황 나. 해당 지역의 인구 분포(나이, 거주기간) 현황 다. 해당 지역의 기상(풍향, 풍속)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현황 라. 과거에 광물이 채취되었거나 현재 광물채취 작업이 진행 중인 석면 광산,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또는 채석장이 주변지역에 존재하는지 여부

[별표 1의2] <개정 2022. 12. 6.>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사.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타. 삭제 <2018. 5. 21.>
- 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 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 한 개의 동(棟)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 또는 교육기관 운영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폐기물, 예방의학 등 석면 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학사학위 소지자

2) 5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환경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건축·산업위생·환경(대기)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교육용 장비 및 프로그램, 의자, 탁자 등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비고: 가목과 나목의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1. 슬레이트 해체·제거의 조치기준

가.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홀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라.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장소에서 인접한 곳에 탈의실, 경의실(更衣室)을 겸한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0.3㎛ 이상의 입자를 99.97퍼센트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라목의 위생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장의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는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해체·제거한 페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페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에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페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공장에서 발생하는 페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페슬레이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

- 나) 위의 가)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위의 1)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보관의 경우
-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슬레이트 해체·제거 후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폐슬레이트 발생장소 이외에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업체 소유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량, 보관기간 등을 승인받아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4)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처리의 경우
-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

- 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覆土)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 작업 과정에서 폐슬레이트 부스러기 등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포장된 상태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슬레이트 매립구역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6) 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지점·방법·주기 등과 측정 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 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 아.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2.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추 것

감리원 등급	자격기준
고급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감리원 등급	자격기준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일반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건축분야로 한정한다)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가. "직무교육기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나. "직무교육과정"이란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석면조사·분석 방법, 석면작업 안전보건 관리 등 감리원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교육이수시간 등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3. 시설·장비 기준

가. 시설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 것

나. 장비기준

종류	수량
1)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소속 고급감리원 수 이상
2) 방진마스크 3) 음압측정기 4) 두께측정기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6) 고글형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모	소속 감리원 수 이상
7) 방진마스크 필터,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덧신	소속 감리원 1명당 30개 이상

비고

- 가. 2) 및 7)의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특급 마스크만 해당한다.
- 나. 5)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크기·모양·재질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3] <개정 2022. 12. 30.>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 사유
 -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석면해체작업감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3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개월
라. 법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꿔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의6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마.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바. 법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2항제2호	6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	
사.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별표 4]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1. 전문인력 확보기준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학과),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학과), 또는 화학·화공 분야(학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모두를 확보할 것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나. 기사 1명 이상

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가. 시설기준: 80제곱미터 이상의 연구실과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할 것

나. 장비기준: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1) 편광현미경(PLM)

2) X선 회절분석기(XRD)

3)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4) 석면 시료 채취 및 전처리(前處理) 장비

5) 그 밖에 석면 조사·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별표 5] <개정 2022.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1호			
1)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한 경우		100	200	300
2)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3) 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1호	50	100	150
다.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1)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300	500	1,000
2)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	700	1,500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2호	50	100	150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 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2호	150	200	300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1호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와 건축물석면지도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4)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사.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3호	300	400	500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2호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200	350	500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석면농도 초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4)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5)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자.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3호	50	100	15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4호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카.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4호	50	100	150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5호	100	200	300
파.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하.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6호	200	300	500
거.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5호	50	150	200
너.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7호	150	200	300
더.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6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러.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며.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500	700	1,500
버.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8호	300	400	500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9호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100	200	300
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	300	50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	7099
[별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7100
[별표 3]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7101
[별표 4]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7103
[별표 5]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7103
[별표 5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제43조의2 관련)	7104
[별표 6]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7104

[별표 1] <개정 2018. 5. 29.>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요약문

- 가. 개발사업 개요, 지역 개황(概況),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결론의 순서로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 나. 기재 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해당 항목과 내용은 생략이 가능함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1)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배경 등을 제시
- 2) 사업 추진 근거 법령 및 관계 기관, 절차별 추진 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

나. 사업의 내용

- 1) 시간적 범위: 공사기간, 운영기간(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기간이 제한된 경우)
- 2) 공간적 범위: 위치, 계획도면, 위치도(축척 1:25,000) 등
- 3) 내용적 범위: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공정별 작업방법, 주요 시설 설치 또는 운영 현황 등

3. 지역 개황

가. 사업부지 일반 현황

- 1) 관할 행정구역(특별시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지리적·지형적 여건, 기상 자료, 주변지역 토지 이용 현황 등
- 2) 주변지역의 주거 및 인구 분포 현황, 민감시설 분포 현황
- 3) 지역 개황도 작성(A4 용지 또는 A3 용지 크기에 도면화, 축척 1:25,000 또는 적정 규격, 동심원 설정)

나. 지형 및 지질분포 현황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암석·지질 분포 현황(출처 또는 근거 명시)
- 2) 석면 광산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초염기성암 또는 염기성암 분포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4.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 방안

가. 환경영향 예측

- 1) 석면 발생원(發生源), 사업 및 작업 공정, 기상 현황 등에 따른 석면비산 영향권역 설정·제시
- 2) 환경영향 예측[가급적 정량적(定量的)으로 제시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성적(定性的)으로 예측하고 근거 제시]
- 3)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 조사·분석 결과(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되, 토양 시료는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

나. 석면비산 저감 대책

- 1) 석면 발생원별 관리 방안, 작업 공정별·장비별 석면비산 방지 대책 제시
- 2)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 3) 그 밖의 석면비산 방지 대책

다. 석면비산 모니터링 계획

- 1) 석면비산 모니터링 기본계획(조사기간, 조사기관 포함)
- 2) 모니터링 상세 계획(측정 지점, 시료 채취 시기 및 주기, 분석방법 등 포함)

5.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 개요, 지역 개황, 환경영향 예측 결과를 토대로 석면비산 저감 대책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

6. 부록

- 가. 작성자(또는 작성 대행자)의 인적사항, 석면조사·분석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 나. 석면비산방지시설 상세 명세 및 설치·운영비용
- 다. 석면비산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운용계획
- 라. 석면 관련 각종 조사·분석 결과(시료별 석면조사·분석 결과 제시), 문헌조사 또는 통계자료
- 마. 용어 해설(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
-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별표 2] <개정 2019. 12. 20.>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자는 아래의 작업 내용 및 과정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작업 내용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구 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1. 모든 작업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	1) 살수(撒水) 시설 2) 저수(貯水) 시설 3)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4) 방진(防塵) 시설(방진벽과 방진막을 포함하며, 방진막은 가급적 석면 투과를 방지할 수 있는 고밀도 내수성(耐水性) 재질을 사용한다)
2. 작업 과정별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 가. 굴착(掘鑿)	1)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 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물을 뿌릴 것 2) 필요한 경우 공기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 3) 굴착 장비는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이 끝난 장비는 세척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할 것 4) 모든 굴착과정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공정을 계획·관리할 것
나. 토양의 제거	1) 토양 제거과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2) 토양의 제거는 작업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한 방향으로 수행하며, 방향은 석면비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할 것
다. 야적(野積)	1) 야적물질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2)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 되는 방진망(방진막)을 설치할 것 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 시설을 설치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4) 작업장 내에서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련 분체상(粉體狀) 물질(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할 경우, 3면 이상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보관하고 보관시설의 출입구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구 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라. 가공·변형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채취한 토석의 가공·변형 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옥외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공·변형 시설 또는 장비 주위로 방진막을 설치할 것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급적 가공·변형 작업을 중지할 것 3) 가공·변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4) 가공·변형 작업 중에 작업장 부지 경계에서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마. 싣고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석면이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과 관련한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릴 때는 가급적 밀폐된 시설에서 실시할 것
바. 수송	1) 적재함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흘러내림이 없도록 할 것 2)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 이하까지만 싣고, 적재물이 적재함 옆면에 닿도록 실을 것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라목에 따른 자동식 세륜 시설 또는 수조(水槽)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4) 수송 차량은 바퀴를 세척하고 옆면에 물을 뿌린 후 운행하도록 할 것 5) 사업장 안의 통행 차량은 저속(低速)으로 운행할 것 6) 통행 차량의 운영기간 중에는 통행 도로에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사. 야외 절단, 야외 연마, 야외 도장(塗裝), 건축물 축조, 토목공사, 건물 해체 작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따를 것. 다만, 승인기관의 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8. 5. 29.>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1. 석면지도 그리기

- 가. 환경부의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의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품질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층별로 도면을 작성한다.
- 나.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위치 및 균질부분(동일 물질 구역)은 붉은색 실선으로 굵게 지도에 표시한다.
- 다. 석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채취한 시료의 위치 및 자재 종류, 석면 함유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건축자재 인식표를 제2호 및 제3호의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 라. 석면확인물질 시료인 경우, 시료 채취 지점 등에 대한 사진을 결과에 첨부한다.

2. 채취시료 관련 정보 작성

제3호에 따른 석면지도 구성의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 다음과 같이 채취시료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시료 번호	시료 채취 위치	건축 자재	동일 물질 구역	길이(m)/ 면적(m²)/ 부피(m³)	석면 종류	석면 함유량 (%)	위해성 평가 점수	위해성 등급	관리 방안

비고

1. “시료 채취 위치”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 가. 지붕
 - 나. 천장
 - 다. 벽
 - 라. 바닥
 - 마. 배관
 - 바. 칸막이
 - 사. 문(출입, 창)

- 아. 건물 외부
- 자. 그 밖의 위치

2. “건축자재”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 가. 슬레이트
- 나. 아스팔트 싱글
- 다. 타르
- 라. 분무재
- 마. 내화피복재
- 바. 텍스
- 사. 밤라이트
- 아. 큐비클
- 자. 단열재
- 차. 보온재
- 카. 바닥타일
- 타. 비닐장판
- 파. 파이프
- 하. 덕트
- 거. 개스킷
- 너. 유리섬유
- 더. 회반죽
- 러. 석면사·석면포
- 머. 이음재
- 버. 접착제
- 서. 실링제
- 어. 페인트
- 저. 콘크리트
- 쳐. 석고보드
- 커. 그 밖의 물질

3. “위해성평가 점수” 및 “위해성 등급”은 건축자재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산정하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氣流), 누수(漏水)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3. 석면지도 구성

	일러두기
	건축자재 인식표
채취시료 관련 정보	지도개요

비고

[별표 4] <개정 2018. 5. 29.>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1. 슬레이트 해체·제거의 조치기준

가.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계획의 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개인 보호구(保護具)의 지급·착용,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수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개인 보호구의 지급·착용에 있어 작업 시 많은 양의 분진이 흩날려 근로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의 지급·착용은 의무로 하지 않는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2. 페슬레이트 보관의 기준 및 방법

페슬레이트의 보관창고, 보관기간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6) 및 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및 6)의 규정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별표 5] <개정 2018. 5. 29.>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1. 양식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업체명: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시·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연락처 : 000-000-0000

※ 작업장 위치: 건물명과 함께 주소지를 번지까지 자세하게 기재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함유건축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을 명시

2. 규격

규 격

300cm²(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별표 5의2] 〈신설 2019. 12. 24.〉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제43조의2 관련)

1. 평가의 기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나. 업무수행 체계	1) 감리업무 수행체계의 적절성 2) 감리원료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다. 업무수행 성과	1) 감리실적 2) 행정처분이력

비고: 평가점수의 합계가 총 100점이 되도록 하고, 점수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등급	점수구간
매우 우수	합계 평점 90점 이상
우수	합계 평점 80점 이상 89점 이하
양호	합계 평점 70점 이상 79점 이하
보통	합계 평점 60점 이상 69점 이하
미흡	합계 평점 60점 미만

2. 평가 방법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별표 6] 〈개정 2022. 12. 9.〉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3)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다. 영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 매우 부진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제8편 환경보건

04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115	제1조(목적) 7115	제1조(목적) 7115
제2조(정의) 7115		제2조(석면의 종류) 7115
제3조(적용범위) 7116	제2조(정의) 7115	
제4조(국가 등의 책무) 7116	제3조(적용범위) 7116	
제2장 구제급여 등	제2장 구제급여 등	제2장 구제급여 등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7116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7117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7117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7118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7118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7118
		제6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서식) 7118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7119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관리) 7120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7120
	제5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7120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7120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7120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7122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7122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7122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7123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7124		제1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 7124
제8조 삭제 7124		제13조(판정위원회의 운영) 7124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7125
제9조(요양급여) 7125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7125	
제10조(요양생활수당) 7125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1조(장례비) 7126	제8조(장례비의 금액) 7126	제15조 삭제 7126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7126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7126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7127		
제14조(특별유족인정) 7127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7127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7127
제14조(특별유족인정) 7127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7128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7128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7128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7129
		제19조(장례비 지급 신청) 7129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 7129
		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7130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7130	
	제12조(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 7131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7131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7131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7131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7132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7132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7132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7133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7133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7133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7134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7134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7134		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7134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7134		
제22조(수급권의 보호) 7135		
제23조(공과금의 면제) 7135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7135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7136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5조(기금의 용도) 7136	제16조(기금의 용도) 7136	
제26조(기금의 관리·운용) 7136	제17조(기금의 운용) 7137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7137	제18조(기금운용계획) 7137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7137		
제29조(차입금) 7137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7138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7137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7138	
	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7138	
	제22조(기금의 지출절차) 7139	
	제23조(현금 취급의 금지) 7139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7139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7139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7139	
	제26조(상사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7140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7140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을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7141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7141	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 7141	
제34조(준용) 7141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 3. 19.>	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3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35조(재심사청구의 제기) 7142	제29조(심사청구의 신청) 7142	제25조(심사청구) 7142
제35조(재심사청구의 제기) 7143		
제36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7143	제3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7143	
제36조 삭제 7144	제3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7144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7145	제32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7145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7145	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7145	
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7146	제34조(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7146	제26조(재심사청구) 7146
제38조 삭제 7146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7146	제35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7146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9조 삭제 7147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7147	제27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의 자격기준) 7147 제28조(조사연구원의 보수) 7147
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148		
제40조 삭제 7148		
제4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7148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등) 7148	
제41조 삭제 7149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149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149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4장 보칙
제43조(보고 등) 7150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7150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7150
제43조(보고 등) 7150		
제44조(진찰요구 등) 7151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7151	
제44조(진찰요구 등) 7152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7151	
	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7152	제30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7152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7152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7153	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7153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7153	제43조(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7153	
제46조(비밀의 유지) 7154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7154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7154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7155 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7155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7156
제46조(비밀의 유지) 7154		
제47조(조사 및 연구) 7154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7155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7156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7156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7157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7157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7158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7158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7159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7159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7159 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7159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7159 제38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 7159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7160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7160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7160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7161 제50조(기간의 계산) 7161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7161	제45조(업무의 위탁) 7161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62	제40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7161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163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163 제53조(벌칙) 7163 제54조(과태료) 7163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163	
부칙 7163	부칙 7163	부칙 7163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정 2010. 3.22 법률 제10155호 개정 2010. 3.31 법률 제10193호(부담금관리기본법) 2011.12.31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14. 3.18 법률 제12461호 2015. 2. 3 법률 제13165호 2016.12.27 법률 제14488호 2017.11.28 법률 제15098호 2019. 1.15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2020. 5.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법)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42호 2022. 6.10 법률 제18913호 (진행유에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3.19 법률 제203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석면”(石棉)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제정 2010.11.19 대통령령 제22500호 개정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 5.22 대통령령 제24541호 2014.12.31 대통령령 제25949호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7. 7.17 대통령령 제28184호 2018. 5.15 대통령령 제28887호 2018. 9.18 대통령령 제2918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0. 6. 9 대통령령 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정 2010.12. 7 환경부령 제388호 개정 2013. 7.15 환경부령 제512호 2014. 1. 8 환경부령 제536호 2014.12.31 환경부령 제588호 2018. 5.24 환경부령 제758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1. 7. 6 환경부령 제9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원발성(原發性) 악성종괴증,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 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구제급여 등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요양급여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 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 5. 22.>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20. 6. 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5., 2018. 5. 24.>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레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애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면질병(이하 “석면질병”이라 한다)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술원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④ 기술원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⑤ 기술원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② 기술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기술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제6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서식) ① 석면피해의료수첩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 석면질환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4. 유효기간 5. 발행기관 6.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1.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2. 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③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⑤ 기술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제5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24.>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관리) 기술원은 제5조, 제7조 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1. 석면질병이 나은 경우 2.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3.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기술원이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5.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1.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피인정자만 해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만 해당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11. 28., 2020. 5. 26., 2024. 3. 19.)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⑤ 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2024. 3. 19.>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8. 5. 24.>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26., 2024. 3. 19.)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6조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환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환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환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1. 1. 5.>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 7. 6.> 1. 악성종괴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2. 암성(癌性) 흉막염 3. 암성 림프관증 4.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애단계의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증 5.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Hg) 이하인 후유증 6. 석면질환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 5. 24., 2021. 7. 6.> 1.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2.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후유증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나. 영 제6조제2항제4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 영 제6조제2항제5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2024. 3. 1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④ 위원회는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1. 1. 5., 2024. 3. 19.>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7조	<개정 2021. 7. 6.>	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①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2.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3.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람이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8.> 1.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환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및 사회보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8조		제1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5. 24.> 제13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위원장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9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환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환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환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 1. 5.〉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환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석면질환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되되,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원발성 악성종괴,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② 원발성 악성종괴중,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2. 31.〉	④ 기술원의 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전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 5.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종괴중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제1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 5.>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제8조(장례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1. 7. 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21. 7. 6.> [제목개정 2021. 7. 6.]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7. 6.> 1. 원발성 악성종괴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제15조 삭제 <2013. 7. 15.>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위금등”으로 본다.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2024. 3. 19.)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5. 15.]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15.]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5., 2018. 5. 24.)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종괴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이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라 한다),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애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4조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		검사 서류(폐기능 장애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 5. 24., 2021. 7. 6.> 1.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2.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1회만 제출한다)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제19조(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례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 5. 24., 2021. 7. 6.>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21. 7. 6.]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 5. 24., 2021. 7. 6.>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기술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삭제 <2018. 5. 15.> ② 기술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	[제목개정 2021. 7. 6.] 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③ 기술원은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④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2024. 3. 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③ 삭제 <2024. 3. 19.>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제목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16조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장·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제12조(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21. 7. 6.> 1. 법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와 법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 조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용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 11. 28.>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7조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5. 15.>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1. 요양급여등의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술원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기술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4.)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기술원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영 제13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기금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8. 5. 24.)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술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4.) ② 기술원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4.)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일까지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1. 7.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24.)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져 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9조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3.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산설 2017. 11. 28., 2020. 5. 26.> 4.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삭제 <2018. 5. 24.> ② 기술원의 원장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제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③ 기술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④ 삭제 <2018. 5. 24.> ⑤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영 제13조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제급여 부담액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8. 5. 24., 2021. 7. 6.>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2024. 3. 19.>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20. 5. 26., 2024. 3. 19.> 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시행일: 2025. 1. 1.] 제19조 제22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3.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적립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9. 차입금 10. 그 밖의 수익금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1. 1. 5.>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2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관리·운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21. 7. 6.>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4.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예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예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1. 피인정자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에 대한 후생 복지 사업을 위한 용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용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8. 5. 15.>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 주어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금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 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채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기금 결산 상황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 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제26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4. 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중 “공단”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 15.> ②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③ 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② 특별분담금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술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9조(심사청구의 신청) 법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제3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5조(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③ 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2024. 3. 19.>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19.> [제목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35조 제36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①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 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8.>	제3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제3호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36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21. 7. 6.> 1.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5. 15.> 제3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기술원은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② 기술원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2024. 3. 19.>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항 2.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결정 연월일 ③ 기술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제목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37조 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제38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38조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제34조(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법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장”은 “재심사위원장”으로,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26조(재심사청구) 영 제34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 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0. 5. 26., 2022. 6. 10.>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39조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등에 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와	제27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28조(조사연구원의 보수) ① 삭제 <2014. 12. 31.>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는 예산의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5. 26.> 1.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0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40조 제4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재심사위원회”로,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7. 11. 28.>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심사청구 사항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범위에서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6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8., 2014.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41조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②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개정 2024. 3. 19.) ②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개정 2024. 3. 19.) ③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42조	3. 주문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 연월일 ③ 환경부장관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기술원 및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④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43조(보고 등)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술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제43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2024. 3. 19.>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제5장 보칙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 1.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석면질환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기술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24.>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2024. 3. 19.>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43조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1. 28., 2020. 5. 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3. 삭제 <2016. 12. 27.>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17., 2019. 12. 24.>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 4.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5.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별 지역 암센터 6.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자격·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1. 28., 2020. 5. 26., 2024. 3. 1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3. 삭제 <2016. 12. 27.>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4. 3. 19.>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자격·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44조	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석면광산 인근지역 2.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또는 석면 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30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영 제41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생겨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 분포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받은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여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 5. 24.>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	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 기술원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인정자 또는 영 제5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2024. 3. 19.> 1.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45조 제46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1.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 2. 판정위원회의 위원 3.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제46조(비밀의 유지) 기술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46조 제47조(조사 및 연구)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	말한다. ④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면·동·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 정보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 받은 정보·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제목개정 2017. 11. 28.]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7. 6.>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라 한다)에 대한 수행계획 1부 2.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삭제 (2021. 7. 6.) ③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4.]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2. 석면질환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석면피해판정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8. 5. 24.]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연 1회 전년도 사업 실적 등 평가.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중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 나. 석면환경보건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다. 그 밖에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종합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해당 유효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 나. 석면 관련 건강피해와 건강영향의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기여도 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5. 15.]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판보 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5.]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2.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5.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① 기술원은 석면 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석면 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2025. 1. 1.] 제47조의5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 위원회는 석면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②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4. 3. 19.>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48조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이 의심형인 사람 2. 그 밖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기술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4.>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환경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4.>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③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 또는 검사 내용을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환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5. 24.> 제38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 번호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3. 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4. 발행기관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5. 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③ 삭제 <2018. 5. 24.>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1.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석면피해 의료수첩을 교부받은 경우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4. 12. 31.]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49조 제50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기술원 2. 제21조에 따른 부당이익의 징수에 관한 사무: 기술원 3.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분담금 부과·징수 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40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환경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분담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51조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기술원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7. 7. 17., 2018. 5. 15.> 1.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에 따른 재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10.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금의 부과·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6장 벌칙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52조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4. 3. 18.]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 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155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7. 7. 17.] 부칙 〈제22500호, 201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 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별표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f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5월 31일까지는 제40조제4호 중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암관리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호 중 “암관리법” 제27조”는 “국립암센터법”으로 본다. 부칙 <제234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54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석면폐증의 병형을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4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인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로 한다. 제3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조(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의 특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2012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인정 등의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환에 대한 진단,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폐기능 장애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의 신청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512호, 2013. 7. 1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 2014.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 2018.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8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10193호, 2010. 3. 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유효기간 동안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26683호, 2015. 11. 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184호,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출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 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87호, 2018.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능 장애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80호, 2018. 9. 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 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⑰부터 ㉔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461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5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88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외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외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장외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외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한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외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외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제47조제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㉔부터 ㉔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장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㉔부터 ㉔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760호, 2020. 6. 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본다. 부칙 〈제1509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한국환경공단 등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는 기술원의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판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 재해보상법」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1876호, 2021. 7. 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부칙 〈제16272호,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2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13호, 2022. 6. 1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정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등보통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3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제5조(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7173
[별표 2]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7176
[별표 3]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7176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7177

[별표 1] <개정 2021. 7. 6.>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1. 원발성 악성종괴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종괴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종괴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露出歴)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1)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

2)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호나목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기준에 따른 병 유형(이하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라 한다)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2)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3)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μ m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μ m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라) 기관지 폐포 세정액 1ml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3. 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가. 석면폐증 피해등급

석면폐증의 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병 유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한다.

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다음의 의심형, 초기형 또는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병 유형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영상	
의심형	폐섬유화 소견은 있으나, 그 소견이 석면에 의한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초기형	다음 가)부터 아)까지의 폐섬유화 소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가) 가슴막 밑 점 또는 분지형 음영(subpleural dotlike or branching opacities) 나) 가슴막 밑 곡선 음영(subpleural curvilinear opacities)	해당 폐섬유화의 침범 정도가 폐야(肺野, lung field) 외측으로부터 3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형	다) 폐실질 밴드(parenchymal bands) 라) 폐소엽 내 간질비후(intralobular interstitial thickening) 마) 폐소엽 간 중격비후(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바) 견인 기관지확장증과 세(細)기관지확장증(traction bronchiectasis and bronchiolectasis) 사) 간유리 음영(ground-glass opacities, GGO) 아) 벌집모양 음영(honeycombing)	해당 폐섬유화의 침범 정도가 폐야 외측으로부터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촬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구분	촬영기준
촬영 범위	전체 폐야가 포함되도록 경부 하부부터 상복부까지 촬영해야 한다(폐첨부가 보이지 않는 폐 상부 사진이 적어도 한 장 이상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횡격막과 갈비가로막 각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폐 하부 사진이 한 장 이상 더 포함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호흡과 자세, 방사선 조사량 및 조영제	가)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페어초(mAs) 전후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mm), 간격은 5밀리미터(mm) (3) 표준연산(Standard algorithm)을 사용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로 촬영 나)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페어초(mAs) 전후(150밀리암페어초(mAs) 이상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1.5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3)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Bony algorithm or High spatial frequency algorithm)을 사용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와 옆드린 자세로 각각 촬영 다)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모든 촬영은 정상 방사선 조사량(저선량이 아님)을 이용하며, 16채널 다중검출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이상의 기종으로 촬영할 경우에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과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의 영상작업이 누운 자세 1회 촬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영상 작업	아래의 세 종류 영상(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옆드린 자세)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mm), 간격은 5밀리미터

구분	촬영기준
	(mm) (2) 표준연산 사용 (3) 창 중심은 35하운스필드 단위(HU, Hounsfield Unit), 창 간격은 350하운스필드 단위(HU) 전후를 사용(폐 창조절로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나)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3) 창 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다) 폐 창조절-옆드린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3) 창 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다. 폐기능 장애의 판정기준

- 폐기능 장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한다. 다만, 폐기능 장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능 장애단계를 정상으로 본다.
 - 노력성 폐활량(FVC)
 - 1초량(FEV1)
 - 폐확산능(DLCO)
- 폐기능 장애단계는 정상, 경도장애 및 고도장애로 구분한다.
- 1)에 따른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애단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검사방법별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가장 심한 결과에 따른다.

폐기능 장애 단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1초량/노력성 폐활량이 70% 미만인 경우)	폐확산능
정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75% 이상
경도장애	정상 예측치의 5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75% 미만
고도장애	정상 예측치의 5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

라. 석면폐증(제1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고도장애인 경우
-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경도장애인 경우

마. 석면폐증(제2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정상인 경우
-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경도장애인 경우

바. 석면폐증(제3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정상인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4.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가 5cm 이상, 상하(craniocaudal) 방향의 길이가 8cm 이상, 두께가 3mm 이상인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 나. 폐기능 장애단계가 고도장애인 경우

[별표 2] <개정 2015.11.30.>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석면질환의 종류 및 피해등급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1. 원발성 악성종피종 및 원발성 폐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 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 한다)의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요양급 여 비용 중 같은 법 제 44조에 따라 피인정 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 과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 한다)의 1000분의 342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나. 「의료급여법」 제7조 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 한다)의 1000분의 228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 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 한다)의 1000분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3] <개정 2021. 7. 6.>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제2호라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법 제47조의4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7조의4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7조의4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법 제47조의4 제1항제4호	시정 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마.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7조의4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별표 4] <개정 2017. 7.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다. 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제8편 환경보건

0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185	제1조(목적) 7185	제1조(목적) 7185
제2조(정의) 7185	제2조 삭제 7185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7186
제3조(적용범위) 7186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7186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718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186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7186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7186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7187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7187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7187	
제7조 삭제 7187	제7조 삭제 7187	
제8조 삭제 7187	제8조 삭제 7187	
	제9조 삭제 7187	
	제10조 삭제 7187	
	제11조 삭제 7188	
	제12조 삭제 7188	
	제13조 삭제 7188	
	제14조 삭제 7188	
제9조(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7188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7188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7188	제16조(환경기준) 7188	
제11조(측정망의 설치·운영) 7188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7189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718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6. 1. 27.>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7189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7. 3. 27.> 제17조 삭제 7189 제18조(관리기준) 7189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 4. 17.> 제5조(관리기준) 7190 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7191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 1. 27.> 제14조(배출허용기준) 7193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7194 제16조(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7194 제17조(과징금처분) 7197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7198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7198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 3. 27.>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7197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7198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7199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개정 2019. 4. 17.> 제7조(배출허용기준) 7193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7194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7195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7195 제10조의2(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7196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7197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7197 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7197 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 7197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7198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7198 제14조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7199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범위 등) 7200 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720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7201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신고 및 재발방지 조치 등) 7203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6. 1. 27.)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 .. 7203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7203 제23조(재활용의 제한) 7204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6. 1. 27.)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7204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7205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7206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7206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7207 제6장 보칙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7207 제28조(국제협력) 7207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7207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7209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7201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7202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7202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7. 3. 27.) 제22조(오염기기등) 7203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7205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7206 제5장 보칙	제17조(사고처리기준) 7201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9. 4. 17.)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7203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7204 제20조(행정처분기준) 7204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9. 4. 17.)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7205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7206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7207 제6장 보칙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7207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720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청문) 7209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7209	제24조(권한의 위임) 7209	
	제25조(보고) 7211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7211
	제26조(위탁) 7211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211	제26조의2 삭제 7211	제24조 삭제 7211
제7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7212		
제32조의2(벌칙) 7212		
제33조(벌칙) 7212		
제33조의2(벌칙) 7212		
제34조(벌칙) 7213		
제35조(벌칙) 7213		
제36조(양벌규정) 7213		
제37조(과태료) 7214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214	
부칙 7215	부칙 7215	부칙 721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07. 1. 26 법률 제8292호 개정 2007. 4. 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4. 27 법률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 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10. 2. 4 법률 제10032호 (환경정책기본법) 2010. 2. 4 법률 제10034호 2011. 7. 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2. 2. 1 법률 제11263호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4. 3. 18 법률 제12464호 2017. 1. 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8. 10. 16 법률 제15841호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2. 6. 10 법률 제18911호	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1호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육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8. 25 대통령령 제21705호 2011. 4. 5 대통령령 제22877호 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0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23 대통령령 제25878호 2017. 3. 27 대통령령 제27965호 2018. 1. 22 대통령령 제2859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4. 9 대통령령 제29682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7호 2023. 6. 7 대통령령 제33514호	제정 2008. 1. 28 환경부령 제275호 개정 2009.11.30 환경부령 제352호 2011. 4. 18 환경부령 제412호 2012. 8. 2 환경부령 제472호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축법 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5. 2. 2 환경부령 제593호 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2.13 환경부령 제785호 2019. 4. 17 환경부령 제805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12.17 환경부령 제895호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6. 12 환경부령 제104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및 「수문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2022. 6. 10.) 1.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기간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협하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문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7.) 제2조 삭제 (2023. 6.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연소재·오니(汚泥)·폐유·폐산·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6. 4., 2016. 1. 27., 2020. 5. 26.> ②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6. 1. 27., 2018. 10. 16.>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7.> [제목개정 2017. 3. 27.]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1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 27.]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①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 27.] 제7조 삭제 (2010. 2. 4.) 제8조 삭제 (2010. 2. 4.)	기본계획을 확정후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3. 27.]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19. 4. 9.)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7. 20.) 제7조 삭제 (2011. 4. 5.) 제8조 삭제 (2011. 4. 5.) 제9조 삭제 (2011. 4. 5.) 제10조 삭제 (2011. 4. 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인간이 호흡·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2. 6. 10.> ②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인체노출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측정망의 설치·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물·토양·하천퇴적물·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안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구	제11조 삭제 <2011. 4. 5.> 제12조 삭제 <2011. 4. 5.> 제13조 삭제 <2011. 4. 5.> 제14조 삭제 <2011. 4. 5.>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 4. 9., 2023. 6. 7.> [제목개정 2023. 6. 7.] 제16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역·측정항목·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6. 1. 27.)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3. 6. 4., 2016. 1. 27.)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7. 3. 27.) 제17조 삭제 (2017. 3. 27.) 제18조(관리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3. 27.)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산설 2012. 2. 1., 2016. 1. 27.) 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미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	2.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사용·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2.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니도록 할 것 가. 운반물질 및 운반량 나. 운행 예정 노선 다.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 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27.>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수출입하는 경우 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④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6. 4., 2016. 1. 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20. 7. 14., 2023. 6. 7.>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수계(水界)·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7. 3. 27.> 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 3. 27.> [전문개정 2012. 7. 31.]	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6. 10.> [제목개정 2016. 1. 27.]		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수출자 책임보증서 2. 수출통보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수입국에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통보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해야 한다. <신설 2019. 4. 17.> ④ 제3항에 따라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 4. 17.>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에서 통보한 물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 경우(제4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불허가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⑥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 1. 27.>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령을 제·개정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7. 1. 17.>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 3. 27.>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변경한 경우 3. 수출예정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⑦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제목개정 2019. 4. 17.]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개정 2019. 4. 17.> 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07. 4. 27., 2012. 2. 1., 2017. 1. 17., 2020. 5. 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고 또는 변경승인·변경신고 제16조(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8. 6. 12., 2022. 6. 1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13.>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8. 12. 13.> 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2022. 6. 10.> ⑤ 제1항·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개선명령과 제4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6. 10.>		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최초의 개선기간과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을 합한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 ④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8. 1. 17., 2018. 12. 13., 2019. 4. 17.>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 공사기간 및 공사비 -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잔류성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처리현황 -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 및 운영대책 -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 2019. 4. 17.>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4. 삭제 <2011. 4. 18.> 제10조의2(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① 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8. 2., 2015. 2. 2., 2018. 12. 13., 2019. 4. 17., 2023. 6. 12.>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전·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개선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2020. 5. 26., 2022. 6. 10.> ②배출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4. 9., 2023. 6. 7.>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료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본조신설 2011. 4. 18.] [제목개정 2018. 12. 13.]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8. 2.>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2.> [본조신설 2019. 4. 17.] 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세제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⑤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된 과징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6. 1. 27.> [제목개정 2012. 2. 1.]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 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 4. 17.> [본조신설 2012. 8. 2.]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① 삭제 <2023. 6. 12.> ② 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로 측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2022. 6. 1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②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2022. 6. 10.>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19. 7. 2., 2020. 7. 14., 2023. 6. 7.>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④ 배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 2023. 6. 12.> ⑤ 삭제 <2023. 6. 12.> [제목개정 2019. 4. 17.] 제14조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 및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측정분석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보유한 기술인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3.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19조의2제3항 및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12.]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측정이나 조사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6개월 ② 배출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18. 10. 16.) [제목개정 2016. 1. 27.]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연월일 [본조신설 2023. 6. 7.]	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측정기간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3개월 [제목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변경지정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변경지정 사항 [본조신설 2023. 6. 7.]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5.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본조신설 2023. 6. 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가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①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2017. 1. 17.>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사업자에게 사고의 확대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6. 1. 27.>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개정 2016. 1. 27.> [제목개정 2016. 1. 27.]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목개정 2016. 1. 27.]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7. 3. 27.> 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 7. 31., 2017. 3. 27.>	제17조(사고처리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7.> 1.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할 것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할 것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할 것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9. 4. 17.>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삭제 <2016. 1. 27.>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6. 1. 27.>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1. 영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가. 재활용의 종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가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인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 나. 재활용 용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도 1) 폐절연유: 정제절연유. 다만, 재활용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을 받은 결과 변압기 수리과정에서 배출된 절연유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환경관서의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된 변압기의 절연유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을 마친 유입식(油入式) 전력기기의 내부 부속품 중 급속류: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 [전문개정 2019. 4. 17.]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설비·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전문개정 2012. 2. 1.]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6. 10.> ②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본조신설 2012. 2. 1.]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 4. 5., 2012. 7. 31., 2023. 6. 7.>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2023. 6. 12.>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2.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3.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4.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한다) 5.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②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2023. 6. 12.> 1. 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 교체 2.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본조신설 2012. 2. 1.]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2.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7.> [본조신설 2012. 7. 31.] [제목개정 2017. 3. 27.]	3.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④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2023. 6. 12.>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말한다)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 11. 30.>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오염기기등 및 보관창고에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② 시·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시를 기기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시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6장 보칙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 제28조(국제협력) 정부는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며, 잔류성오염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제5장 보칙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법 제26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8. 2.] 제6장 보칙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2019. 4. 17.> 1. 법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준수 여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2022. 6. 10.> 1. 제1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 2. 배출사업자 3. 제22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 4. 제2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5.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소유자 6.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등 개시 7일 전까지 검사등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검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3.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결과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등의 이행 여부 5.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한의 이행 여부 7.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의사항 표시 여부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테이프, 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검사를 할 때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통합하여 출입·검사하는 것이 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8. 6. 12.>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 6. 7.>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2., 2014. 12. 24.,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주요 관리계획 4.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2.]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2. 8.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신청의 접수 3.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 지정 4.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3. 27., 2019. 4. 9., 2023. 6. 7.>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2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포 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6.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1., 2016. 1. 27.> - 제11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에 관한 업무 - 제27조제2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에 관한 업무(제14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의2(별치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치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2. 1.]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12. 7. 31.] 제25조(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 8. 25.] 제26조의2 삭제 <2020. 7. 14.>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2. 8. 2.>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1. 30.]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2. 8. 2.>] 제24조 삭제<2023.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벌칙 제3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 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제32조는 제32조의2로 이동 <2016. 1. 27.>] 제32조의2(벌칙)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6. 12.> [제32조에서 이동 <2016. 1. 27.>] 제33조(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 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제33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6. 1. 27.>]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18., 2016. 1. 27., 2018. 6. 12., 2020. 5. 26., 2022. 6. 10.> 1. 삭제 <2016. 1. 27.>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제6장 벌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아니한 자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에서 이동 <2016. 1. 27.>]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18., 2016. 1. 27.>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35조(벌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거나 처리한 자(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22. 6. 10.> 1. 삭제 <2016. 1. 27.>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③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7. 31.> [본조신설 2011. 4. 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2. 1.> ⑤ 삭제 <2012. 2. 1.> ⑥ 삭제 <2012. 2. 1.> ⑦ 삭제 <2012. 2. 1.> 부칙 <제8292호, 2007.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배출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및 제2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측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②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1호, 2007. 12. 28.>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⑫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5호, 2009.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75호, 2008.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변압기 가. 발전용 변압기 및 송·배전용 변압기 : 2008년 7월 27일까지 나. 주상용 변압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주상용 변압기를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2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기 : 2008년 4월 27일까지 제3조(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오염기기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오염기기등에 제22조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 7월 27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⑩ 내지 ⑯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04호, 2007. 4. 27.>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 생략 ⑰ 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⑳부터 ㉓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77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00호, 2012. 7. 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 부칙 <제352호, 2009.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절연유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하는 폐절연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12호, 2011.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완료 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2호, 2012. 8. 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4, 별표 5의 2, 별표 12,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032호, 2010. 2. 4.>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034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878호, 2014. 12. 23.>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65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6호 및 별표 1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업체에 대한 정보 ② 삭제 <2018.1.22.>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3호, 2015.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집·운반·보관·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⑱부터 ③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263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부분, 제19조제5항, 제33조제1호,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제37조제1항제3호로 한정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596호, 2018. 1.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제29682호, 2019. 4. 9.>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8호 및 제29호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3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미나미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785호, 2018.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시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시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5호, 2019.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미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2, 별표 2 비고 외의 부분 표 중 다이옥신에 관한 부분, 별표 3 제목 외의 부분, 별표 5의2 제1호다목 및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시기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측정 시기는 별표 6 제4호다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로 한다. ⑨부터 ㉔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464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6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847호, 2020. 7. 14.〉 이 영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14호, 2023. 6. 7.〉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항제16호, 제21호 및 제16조의2제5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3조제5항제5호 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및 수은”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5841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11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 2020.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 2023.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삭제 <2020. 7. 14.>	7225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7225
[별표 3] 환경기준(제16조 관련)	7225
[별표 4]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	7226
[별표 4의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제21조의2제2항 관련)	7227
[별표 4의3]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	7228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7229

[별표 1] 삭제 <2020. 7. 14.>

[별표 2] <개정 2020. 7. 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 가.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함유폐기물(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한다)
 - 1) 분진
 - 2) 폐촉매
 - 3)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4)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 오니
 - 5)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6)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 다. 잔류성오염물질을 함유한 폐농약
2. 미나타협약에 따른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로 구성된 폐기물(원자재 수은 또는 잉여수은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3.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3] <개정 2019. 4. 9.>

환경기준(제16조 관련)

분야	항목	기준
대기	다이옥신	연간 평균치 0.6pg-TEQ/Sm ³ 이하

1. 환경기준이란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2. 다이옥신은 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9. 7.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제품

① 잔류성유기오염물질명

②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③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한 해당 물질의 허용 용도 및 특정면제 용도

④ 취급 시 주의사항

나. 크기: $a : b \approx 3 : 4$

용기·포장의 용량	크기($a \times b$)
5ℓ 미만	용기·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cm ²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cm ²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cm ² 이상
500ℓ 이상	450cm ² 이상

다. 색상: 바탕은 황색, 글씨는 흑색

2.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보관·저장·진열 시설

① 잔류성유기오염물질명

② 보관·저장·진열 수량

③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한 해당 물질의 허용 용도 및 특정면제 용도

④ 취급 시 주의사항

⑤ 관리자

나. 크기: $a=40\text{cm}$, $b=60\text{cm}$ 이상

다. 색상: 바탕은 황색, 글씨는 흑색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제21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은 각각 구분·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시설 및 장비는 해당 측정분석 전문기관에서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은 임차(임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 중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된 임차계약서를 지정권자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 다.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바.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고시된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시험기준별로 지정항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이옥신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을 기본항목(이하 "기본항목"이라 한다)으로 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가. 시설 및 장비 기준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시설	1)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60제곱미터 이상 2) 항온·항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3) 사무실: 40제곱미터 이상

구분	시설 및 장비명
분석장비	1) 기본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분해능 10,000 이상으로 다이옥신 정량용 프로그램을 갖춘 것을 말한다): 1대 이상 나) 속של렛 추출장치: 4세트 이상 다) 정제용컬럼: 4개 이상 라) 회전중발 농축기 또는 질소 농축기: 1세트 이상 마) 시료냉장보관설비(4℃이하): 1대 이상 2) 기본항목 외의 시험기준을 추가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1)가)부터 마)까지에 따른 장비 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방법별 장비
시료채취장비	1) 배출가스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먼지포집부, 기체흡수부 및 기체흡착부: 각각 2세트 이상 나) 배출가스 유속 및 유량측정부: 각각 2세트 이상 다) 진공펌프 및 흡입기체 유량측정부: 각각 2세트 이상 라) 배출가스분석기(Flue gas analyzer, 일산화탄소 및 산소측정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대 이상 2) 환경대기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고용량 공기시료채취기(여과지와 XAD-2 수지 또는 활성탄 수지 펠트 및 폴리우레탄폼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대 이상

나. 기술인력 기준

구분	자격기준
분석 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춘 것 1)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환경분야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구분		자격기준
		4)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담당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춘 것 1)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라프-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라프-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보조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시료채취	책임자	배출가스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춘 것 1)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담당자	배출가스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춘 것 1)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보조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2)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보조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보조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별표 4의3] 〈신설 2023. 6. 7.〉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영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분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5] <개정 2023. 6.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 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잔류성오염물질을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지 않은 경우 가) 배기가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나) 폐수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500	700	1,000
3)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위반한 경우		100	200	300
		200	300	500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등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3)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1)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라.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200	300	500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거나 처리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1)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3)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별표 2 제2호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바. 삭제 <2017. 3. 27.>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사. 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의 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2)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를 제외한 관 리대상기기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한 사항을 허위 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	100	100	100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	100	100	10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배출시설(제2조 관련)	7235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	7236
[별표 3]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	7236
[별표 3의2] 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	7238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	7238
[별표 5]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	7239
[별표 5의2]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	7240
[별표 6]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	7240
[별표 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	7242
[별표 8]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	7243
[별표 9] 삭제 <2019. 4. 17.>	7248
[별표 10] 삭제 <2015.2.2.>	7248
[별표 11]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	7248
[별표 12]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	7249

[별표 1] <개정 2019. 12. 20.>

배출시설(제2조 관련)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제철 및 제강시설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소결로
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제품 제조시설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 (유도로를 포함한다)
3.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나.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다.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 시설	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전로, 정련로, 배소로(焙燒爐), 용융·용해로(鎔融·鎔解爐), 전해로(電解爐), 건조로
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6. 시멘트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소성(燒成)시설
7.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8. 소각시설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폐기물 소각 열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비고

1.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계수
무연탄	kg	1.00	수소	Sm ³	0.62	경유	L	1.9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kg	1.32	에탄	Sm ³	3.36	휘발유	L	1.68
이탄	kg	0.80	일산화탄소	Sm ³	0.62	열피지	kg	2.40
목재	kg	0.70	발생로가스	Sm ³	0.2	석탄타르	kg	1.88
중유(C)	L	2.00	혼성가스	Sm ³	0.60	에탄올	kg	1.44
원유	L	1.90	전기	kW	0.17	톨루엔	kg	2.06
등유	L	1.80	유연탄	kg	1.34	메탄	Sm ³	1.86
나프타	L	1.80	갈탄	kg	0.90	아세틸렌	Sm ³	2.80
액화 천연가스	Sm ³	1.56	목탄	kg	1.42	석탄가스	Sm ³	0.80
메탄올	kg	1.08	유황	kg	0.46	수성가스	Sm ³	0.54
벤젠	kg	2.02	중유(A, B)	L	1.86	도시가스	Sm ³	1.42

2. 제1호에 따른 환산계수가 없는 연료 또는 원료의 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 또는 원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0. 12.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1. 다이옥신(류란을 포함한다)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100피코그램 티이큐(pg-TEQ) 나. 고체상태의 물질: 그램당 3나노그램 티이큐(ng-TEQ)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0.05밀리그램 나. 액체상태 외의 물질 1) 금속판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 형태의 물질: 100제곱센티미터당 0.05마이크로그램 2) 구리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비평면 형태의 물질: 킬로그램당 0.005밀리그램 3) 그 밖의 물질: 용출액 리터당 0.0005밀리그램
3. 폐농약에 함유된 잔류성오염물질	리터당 0.1나노그램

비고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19. 4.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

1.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제조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m³)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10. 12. 31.까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 이후
철강 소결로	0.5	1.0	0.5	0.5
철강 전기아크로	0.5	1.0	0.7	0.5
알루미늄 제조시설	0.5	1.0	0.5	0.5

비고

1. 철강 소결로의 표준산소농도는 15퍼센트를 적용한다.
2. “신설시설”이란 2008년 1월 27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증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2. 동(銅) 제조시설 및 시멘트 제조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m³)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이후
시멘트 소성로	0.1	0.1	0.1
동 제조시설	1	10	1.0

비고: 시멘트 소성로의 표준산소농도는 13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3.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
(단위: pg-TEQ/L)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1.이후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50	300	50

4. 소각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 1) 소각시설(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단위: ng-TEQ/Sm³)

구분	신설시설	기존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인 경우	0.1	1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미만 2톤 이상인 경우	1	5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5	10

비고

1. “신설시설”이란 2001년 1월 1일(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2004년 7월 20일)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9. 4. 17.>

- 2)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0.1ng-TEQ/Sm³
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단위: ng-TEQ/Sm³)

시설별 적용기간 시간당 처리능력	신설 시설	2001. 1. 1.이후 2004. 7. 20.전에 설치된 시설	2001. 1. 1.전에 설치된 시설
4톤 이상	0.1	0.1	1
2톤 이상 4톤 미만	1	1	5
1톤 이상 2톤 미만	1	1	5
200kg 이상 1톤 미만	5	5	5
25kg 이상 200kg 미만	5	10	10

비고

1. “신설시설”이란 2004년 7월 20일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2001. 1. 1. 이후 2004. 7. 20. 전에 설치된 시설”이란 2001년 1월 1일 이후 2004년 7월 20일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5. 공통사항

-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다이옥신은 퓨란을 포함한다.
나.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 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TEQ)를 말한다.
독성등가 환산농도(TEQ) = $\sum (\text{각 동족체의 TEF} \times \text{실측농도})$
다.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측정은 배출된 다이옥신이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후 최종 방류구에서 부지경계선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별표 3의2] 〈신설 2018. 12. 13.〉

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로서 단순 정비 또는 조치를 통하여 60일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배출시설
 - 가. 활성탄 흡착 공급설비의 외부공기 유입 차단을 위한 단순 공사 또는 분사노즐의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한 경우
 - 나. 여과집진기의 여과포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 다. 세정탑의 세정수·충전물(접촉면적을 넓혀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 세정탑에 채워 넣는 인공물을 말한다)의 청소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 라. 건식 또는 반건식 반응 설비의 노즐 및 분사장치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마. 소각로의 연소공기 공급 노즐 및 밸브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바. 그 밖에 배출시설 운전원의 시설·장비운전이 미숙한 경우 등 단순 정비 또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인 배출시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text{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 = \frac{(\text{실제 측정된 수치} - \text{배출허용기준 수치})}{\text{배출허용기준 수치}} \times 100$$

[별표 4] 〈개정 2023. 6. 12.〉

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사용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용중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개선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
2) 1) 외의 배출시설	법 제16조 제1항 본문	사용중지	사용중지	사용중지
나.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2항	폐쇄		
다.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6조 제2항	폐쇄		
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	사용중지 20일	사용중지 40일	사용중지 60일
마.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의무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사용중지 10일	사용중지 20일	폐쇄

비고

- 가목1)의 개선명령 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목2)의 사용중지 기간은 사용중지 처분에 명시된 사용중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5]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

구분		부과계수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가.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g-TEQ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2.0
	나.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소각시설	1.0
	다.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	0.5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0.5

[별표 5의2] <개정 2019. 4. 17.>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13조의2 관련)

1. 배출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 가. 조사횟수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3월말까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나. 조사대상 : 별표 1의 배출시설
- 다. 조사대상 물질 : 다이옥신, 퓨란 및 환경부장관이 스톡홀름협약의 이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라. 조사내용 :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구 현황, 측정농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측정한 농도를 포함한다), 측정당시의 활동도 자료 등
- 마. 조사방법 : 별도의 조사표를 이용하되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바. 제출된 배출원 조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취합·검토 후 확정한다.
- 사. 기타 세부적인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량 산정방법

-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부문별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 나. 부문별 배출계수는 배출원 조사결과 등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할 수 있다.
- 다. 활동도 자료는 배출원 조사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라. 그 밖에 배출량 산정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개정 2019. 12. 20.>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

- 측정대상 : 별표 1에 규정된 배출시설
- 측정물질 :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측정매체 : 배기가스, 폐수
- 측정의 주기 및 횟수
 - 공통사항
 - 측정 주기는 배출시설 최초 가동일부터 기산하고, 기산일부터 나뭇목 및 나뭇목의 구분에 따른 측정 주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료일 전후 30일의 기간(이하 "측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측정해야 한다. 최초 측정이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 측정일을 기산일로 본다.
 - 조업물량 감소, 시설개선 등의 사유로 측정기간 중에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해야 한다.
 - 배기가스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 : 24개월마다 1회 이상
 - 소각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

구분	측정주기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g-TEQ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6개월 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1년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2년마다 1회 이상

비고

-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과 배출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g/년) = 다이옥신 배출계수($\mu\text{g-TEQ/톤}$) / [1- {방지시설 설계효율(%) / 100}] × 최대 연간활동도 × 10⁻⁶
 - 가목의 최대 연간활동도는 일일활동도에 연간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다이옥신 배출계수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실측값이 있는 경우
다이옥신 배출계수 = A × B / C
A: 다이옥신 농도(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실측한 값 중 최대값, ng-TEQ/Sm³)
B: 최대 일일유량(시설유량, Sm³/일)
C: 최대 일일활동도(톤/일 또는 kw/일)
 - 나. 삭제 <2019. 4. 17.>
 - 최근 2년 이내 실측 횟수가 4회 미만이거나 실측값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종별 평균배출계수를 적용한다.

< 업종별 평균 다이옥신 배출계수 >

배출시설		배출계수 ($\mu\text{g-TEQ/톤}$)
제철 및 제강시설	소결로	0.9
	전기아크로	1.0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전기아크로	1.5
	용융/용해로	1.0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	0.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	전기아크로	1.0
	용융/용해로	25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	0.5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용융/용해로	6.0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	0.5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	용융/용해로	1.5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	0.5
시멘트 제조시설	소성로	0.1

- "방지시설 설계효율"이란 해당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에 대한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한다.

가. 처리효율은 해당 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지시설 효율 값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먼지 제거 효율 값을 적용한다.
나. 배출시설에 2기 이상의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방지시설 설계효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ta_t = \eta_1 + \eta_2 \left(1 - \frac{\eta_1}{100}\right) + \eta_3 \left\{1 - \frac{\eta_1 + \eta_2 \left(1 - \frac{\eta_1}{100}\right)}{100}\right\} + \dots$$

η_t : 방지시설 전체에 대한 총 방지효율

$\eta_1, \eta_2, \eta_3, \dots$: 개별 방지시설의 설계효율

다. 폐수 부문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만,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비고

연간 다이옥신 배출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간 다이옥신 배출량(g/년) = 실측농도(pg-TEQ/L) × 일일유량(L/일) × 연간 조업일수 × 10⁻¹²

- 일일유량은 측정유량(L/hr)에 조업시간을 곱한 값을 말한다.

2.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가.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로 산정한 유량

나.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 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 유량

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용수사용량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수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용수량을 제외한 양

[별표 기] <개정 2020. 12. 1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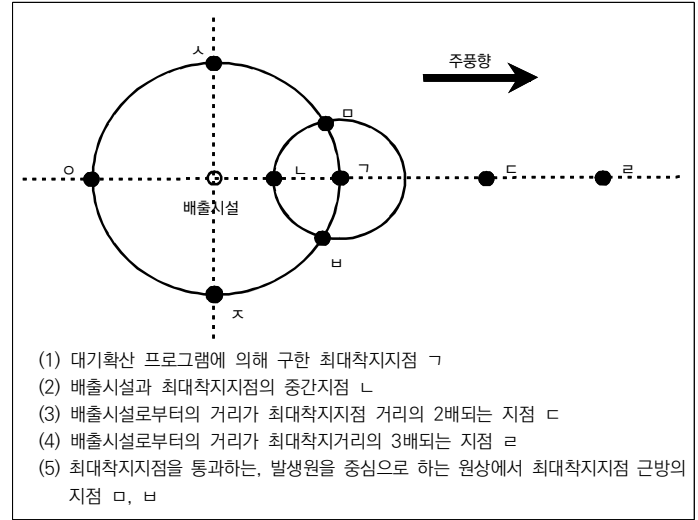
1. 조사횟수 : 3년마다 겨울철(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말한다)에 1회 이상
2. 조사지점

가. 토양

- 1) 배출시설과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구한 다이옥신 최대착지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아래의 4지점
 - 가)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 : ㄱ
 - 나) 배출시설과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의 중간지점 : ㄴ
 - 다)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의 2배가 되는 지점 : ㄷ
 - 라)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거리의 3배가 되는 지점 : ㄹ
- 2)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원상에서 최대착지지점 근방의 지점(2지점) : ㅁ, ㅂ
- 3) 배출시설 및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그 직선과 발생원과 직교하는 직선상에 있는 2지점 및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 거리에 있는 지점 : ㅅ, ㅇ, ㅈ

나. 대기

- 1) 배출시설과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구한 다이옥신 최대착지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아래의 3지점
 - 가) 대기 확산 프로그램에 의해 구한 최대착지지점 : ㄱ
 - 나) 배출시설과 최대착지지점의 중간지점 : ㄴ
 - 다)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의 2배가 되는 지점 : ㄷ
- 2) 배출시설 및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그 직선과 배출시설과 직교하는 직선상에 있는 지점 및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 거리에 있는 지점 : ㅅ, ㅇ



비고

1. “배출시설”이란 의무측정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결과와 다이옥신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설을 말하며, 최대착지지점은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잔류성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착지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점을 말한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지점 위치가 하천 등 대기 또는 토양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곳인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측정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제18조 관련)

- 영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 한다.
-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 한다.
-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해야 한다.

가. 수집·운반의 경우

-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방법 및 운반 경로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상차·하차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 및 수집·운반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자가 누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상차·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분의 누출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시 누출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변압기의 경우: 변압기 본체로부터 분리된 부싱의 접속 부분, 방열판의 용접부, 본체와 고정판의 접합부, 온도계, 밸브 등의 돌출부
 -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납 용기의 경우: 용접부, 외부의 압력을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

- 4) 수집·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부식될 우려가 없는 재질의 것으로 밀폐가 가능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폐변압기·폐축전기·폐안정기 등을 운반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고,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바닥과 측면이 밀폐구조이어야 하고, 뚜껑을 닫았을 때 빗물이 내부로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

(2) 뚜껑은 완전밀폐가 가능하여 내용물이 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용기 내면은 쉽게 닦을 수 있도록 복잡한 형상이나 요철이 아니어야 한다.

라) 사용한 운반용기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에 의한 2차 오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동일한 용도를 위해 재사용할 수 있다.

- 5) 수집·운반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수집·운반차량"이라 한다)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차량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수집·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 별지 제11호서식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차량적재함에 U자형 방유판(모형 ㄴ)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방유판의 용량은 변압기 전체 용량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운반차량의 적재함은 형질, 중이 등으로 닦아내고, 물 세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 (4) 용기는 운반 시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 짐받이에 고정하여야 한다.
- (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고정된 상태로 운반 중 급제동·급커브 시에 용기 형상이 유지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집·운반 중 비상대책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 중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유출, 화재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반차량 및 수집·보관시설에는 소화기, 흡수재, 걸레 및 보호장구 등 응급조치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2) 운반차량에는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 다목(3) 비고 제2호에 따른 레벨 2 이상의 보호장구를 2인용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시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1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투입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보관 시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쉽게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울타리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여야 한다.
- 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장소에는 기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또는 오일 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나 눈의 침투으로부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옥외에 보관할 수 있다.

- (1) 드럼 등 밀폐형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
- (2)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변압기, 축전지로 외부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보관창고 및 보관용기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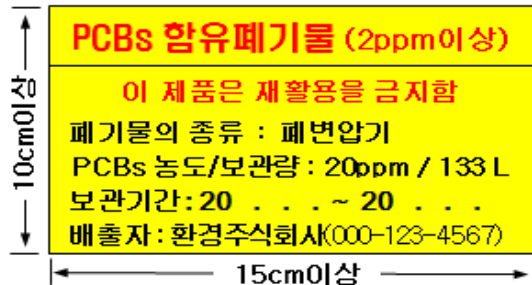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보관시설에 표시하는 경우



※ 비고

1. 색상: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선과 글씨로 한다. 다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글씨는 빨간색으로 한다.
2. PCBs 농도는 보관하는 함유폐기물 중 최고 농도를 적는다.

나)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보관용기에 표시하는 경우



※ 비고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선과 글씨로 한다. 다만, "PCBs 함유폐기물(2ppm이상)" 및 "이 제품은 재활용을 금지함" 글씨는 빨간색으로 한다.

다. 처분의 경우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분방법

- 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 나) 화학처리(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만 해당한다)
- 다) 세척처리(고체상태의 물질만 해당한다)
-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방법
- 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된 작업복·장갑 등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분기준(1)나)부터 라)까지의 처분방법에 한정한다]

가) 액체상태인 경우

- (1) 처리된 물질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이어야 하며, 함유량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잔류성오염 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2)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수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 노말헥산 추출물질 함유량 및 수소이온 농도 등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1회 이상 배출수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유량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3) 처분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는 0.1 ng-TEQ/Sm³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나) 고체상태인 경우

처리된 물질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은 다음과 같아야 하며, 함유량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1) 금속판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형태의 내부 부재(部材): 100제곱센티미터당 0.4마이크로그램 미만
- (2) 구리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비평면형태의 내부 부재: 킬로그램당 0.04밀리그램 미만
- (3) 종이, 목재 등 기름을 흡수하는 내부 부재(종이, 나무와 금속이 서로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 용출액 리터당 0.003밀리그램 미만
-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을 때 부과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분시설 기준
-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분시설은 외부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처분시설은 자체중앙 및 적재하중과 그 밖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사고 시를 대비하여 보관탱크, 반입설비, 반응설비 등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 방지턱이나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처분시설 작업장은 외부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유벽 또는 유출 방지 도랑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처분시설의 바닥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리약품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축조하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휘발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시설의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처분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내부 공기는 이중필터를 갖춘 환기장치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세척액 분리시설의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분시설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의한 오염 가능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구역을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구역		관련공정	관리 내용
일반 관리 구역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오염우려가 없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취급구역	·반입 및 보관공정 (용기 등 외부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 공정)	·일반 환기 ·일반 작업복 착용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국소배기 장치 설치
관리 구역 1	일반적인 공정의 작업에서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의한 오염이 없고 최소한의 관리로 대응할 수 있는 구역	·세척처리 공정 ·절연유처리 공정 ·기타 작업 공간	·강제배기처리 ·국소배기로 작업환경 유지 ·건강자 출입가능 ·레벨 1 보호구 착용
관리 구역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의한 오염은 없으나, 작업 중 간접적으로 고농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관리가 필요한 구역	·용기에서 절연유 발유 구역 ·진공 가열분리 구역 ·1차 세척 후 해체 및 분별 공정	·강제배기처리, 음압유지 ·방유판 또는 유출 방지턱 설치 ·국소배기로 작업환경 유지 및 모니터링 ·관계자 외 출입금지 ·레벨 2 보호구 착용
관리 구역 3	일반적인 공정의 작업에서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구역	·변압기의 해체 공정 ·콘덴서 등의 해체 공정 ·해체 및 분별공정의 일부 ·용기, 펌프, 배관에서 누출	·강제배기처리, 음압유지 ·방유판 또는 유출 방지턱 설치 ·독입구역 밀폐작업 또는 국소배기로 작업환경 유지 및 모니터링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레벨 3 보호구 착용

※ 비교

1. 국소배기: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나 용기, 작업조건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그 발생원 가까이에 공기흡입구(후드)로 포집하며 덕트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2.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취급자 개인보호구 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보호구 착용 사례	보호장구
레벨1		보호안경(필요시) 안전모 일반작업복 장갑(고무 또는 가죽) 일반작업화
레벨2		화학 방호 앞치마 보호안경(필요시) 안전모 일반작업복 간이 활성탄마스크 내용제성 장갑(고무 또는 가죽) 전용작업화
레벨3		등면개방형 화학방호복 보호안경 안전모 일반작업복 방독마스크 또는 간이 활성탄 마스크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내부과성 겹장갑(고무 또는 가죽) 속장갑(고무, 1회용) 화학방호장화

4) 취급자 안전관리

가)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처분업자는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취급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처분시설은 적합한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작업장 내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의 공기 중 농도를 최소화한다.
- (2)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정에서는 차단후드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취급자의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노출을 최소화한다.
- (3) 작업장 내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농도는 1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4)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작업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와 흡연을 철저히 금지한다. 휴식 시 음식물 섭취, 흡연 전에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에 노출된 손과 피부를 씻어야 한다.
- (5) 보호복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갖추고 필요시 오염제거를 위하여 세탁설비를 구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처분업자는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취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취급자가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에 노출된 경우 긴급히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직·간접적으로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에 노출되어 의학적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취급자는 건강상의 장애에 대해 상담받도록 한다.
- (2) 작업 개시 전 취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취급자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분업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에 노출되는 모든 취급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 작업의 위험성, 청소, 보호구, 장비의 사용방법 등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1)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과 훈련
 - (2) 누출 및 유출시 대처방법
 - (3) 오염물질의 제거 절차
 - (4) 소화기구의 위치와 사용방법
 - (5) 응급처치 절차 및 응급함의 위치와 사용방법
4. 유입식 콘덴서 등 밀폐식 관리대상기기를 농도분석성적서 없이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3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하여야 한다.

[별표 9] 삭제 <2019. 4. 17.>

[별표 10] 삭제 <2015. 2. 2.>

[별표 11] <개정 2019. 4. 17.>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

1. 오염기기등에 부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주의사항	
○ 이 기기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 기기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① 농도 :	mg/L
② 총중량 :	
③ 분석일자(기관) :	
④ 점검일자 :	
⑤ 비상연락처 :	
⑥ 관리책임자 :	

2.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에 부착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표지

주의사항	
○ 이 곳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로 관계자 외의 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 보관현황 :	
② 점검일자 :	
③ 보관개시일자 :	
④ 비상연락처 :	
⑤ 관리책임자 :	

비고

1. 오염기기등의 외면에는 주의사항 표지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고, 보관창고에는 보관창고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비·바람 등에 의한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로 표지를 제작하고, 표지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주의사항 등 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주상 변압기 등 소형기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빨강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로 한다.

[별표 12] <개정 2020. 12. 1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및 행정처분의 공표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현황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현황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발생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수 시	사고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6. 배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7.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8편 환경보건

0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255	제1조(목적) 7255
제2조(정의) 7255	제2조(직업성 질병자) 7255
	제3조(공중이용시설) 7255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7257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257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7257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259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7260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7260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7260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7260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261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7260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7261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261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262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7263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265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7265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726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칙 제12(형 확정 사실의 통보) 7266 제13(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7266 제14(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7267 제15(손해배상의 책임) 7267 제16(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7267 부칙 7268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7266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7267 부칙 726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1. 1.26 법률 제179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중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정 2021.10. 5 대통령령 제32020호 개정 2022.12. 6 대통령령 제32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중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사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받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3.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받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많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만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공중이용시설·대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공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받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공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부칙 〈제32020호, 2021. 10. 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23호, 2022. 12. 6.〉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7271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7272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7273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7274
[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7275

[별표 1] <개정 2017. 10. 17.>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애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styrene)·시클로헥산(cyclohexane)·노말헥산(n-hexa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로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갑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별표 2] 〈개정 2022. 12. 6.〉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공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육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비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波除堤) 및 호안 (護岸)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꺾기 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 교량 양측 교대의 홍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홍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저수지·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용벽과 철도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층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타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이나 도로(하천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송수관(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2항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의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
10.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제8편 환경보건

07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287	제1조(목적) 7287	제1조(목적) 7287
제2조(정의) 7287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7287	
제2조(정의) 7289		
제3조(적용범위) 729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292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7292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7293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7293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7294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7294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296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7296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7297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7297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7297		제2조(화학물질확인) 7297
제9조(화학물질확인) 7299		제2조(화학물질확인) 7298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7299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7299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7300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7300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7301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7302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7302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7302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7303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7303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7304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7305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7305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7304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 7305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7307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307 제7조의3(위원의 해촉) 7308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7309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7309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7310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7310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7311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7311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7311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7312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7312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7313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7312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7314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7314	제13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7314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7314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7315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7315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7316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7317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7317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7317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7318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7320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입의 구분) 7346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입의 구분) 7346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7347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7352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7353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7354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7354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7355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7355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7356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7357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7358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7358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7360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7362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7363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7365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7365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7359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7365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7347 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7348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7348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7351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7353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7354 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7355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7356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7356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7358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7362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7362 제35조(안전교육기관) 7365 제36조(안전교육계획) 7366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7367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7366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 7367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7368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7369	제13조의2(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 7369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7371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7370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7372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7375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7378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7378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378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7378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7379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7379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7380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7380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7380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7381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7381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7382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7382
제41조 삭제 7382		제45조 삭제 7382
		제46조 삭제 7382
		제47조 삭제 7382
제41조의2 삭제 7382		제47조의2 삭제 7382
제42조 삭제 7382		제48조 삭제 7382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7382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7382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7382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7382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7383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7383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7384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7384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7385	
제46조(조치명령 등) 7385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7386	제51조(조치명령 등) 7385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7386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7387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7387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387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7388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7388	제52조(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7388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7388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7389		
제48조의4(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7389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7389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7389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7391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7391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7393	제54조(출입·검사) 7392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7394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7393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7394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7393
제51조(청문) 7395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7394
제52조(자료의 보호) 7395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7395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7396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7397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7397
제54조(수수료) 7398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7397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7400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7400	제59조(수수료) 7398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403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7403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보고) 7407	제60조(보고) 7407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407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7408		
제58조(벌칙) 7408		
제58조(벌칙) 7409		
제59조(벌칙) 7410		
제59조(벌칙) 7411		
제60조(벌칙) 7412		
제61조(벌칙) 7412		
제61조(벌칙) 7413		
제62조(벌칙) 7414		
제62조(벌칙) 7414		
제63조(양벌규정) 7415		
제64조(과태료) 7415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415	
제64조(과태료) 7417		
	제25조 삭제 7419	제61조(규제의 재검토) 7419
부칙 7420	부칙 7420	부칙 7420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13. 6. 4 법률 제1862호 개정 2014. 3.18 법률 제12490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 1.20 법률 제13035호 2015.12. 1 법률 제13534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16. 1.27 법률 제13890호 2016. 5.29 법률 제14231호 2016.12.27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6.12.27 법률 제14493호 2017. 1. 17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5호 2018. 6.12 법률 제15659호 2018.12.24 법률 제16084호 2020. 3.31 법률 제17182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5.18 법률 제18174호 2021. 8.17 법률 제18420호 2024. 2. 6 법률 제20231호	제정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개정 2016. 7. 6 대통령령 제27317호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 3.29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5. 8 대통령령 제28031호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3호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3호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4호 2019.11.26 대통령령 제30216호 2020. 9.29 대통령령 제31072호 2021. 3.30 대통령령 제31582호 2021.11.19 대통령령 제32128호 2022.11.15 대통령령 제32994호 2023.10. 4 대통령령 제33782호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7호	제정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개정 2016. 4. 7 환경부령 제647호 2016. 7.27 환경부령 제668호 2017. 5.30 환경부령 제701호 2017. 7.31 환경부령 제70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27 환경부령 제730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0.26 환경부령 제774호 2018.11.29 환경부령 제778호 2019. 3.29 환경부령 제804호 2019. 4.17 환경부령 제805호 (진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019.11.29 환경부령 제831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9.29 환경부령 제886호 2021. 4. 1 환경부령 제911호 2021. 9.16 환경부령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1. 9.30 환경부령 제944호 2022. 1.10 환경부령 제968호 2023.10. 4 환경부령 제1066호 2024. 4. 9 환경부령 제10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4. 2. 6.〉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8. 삭제 (2024. 2. 6.)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시행일: 2025. 8. 7.] 제2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8.>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충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제5호, 제59조제7호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21. 5. 1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기술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20. 3. 31.>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본조신설 2016. 7. 6.]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5. 8., 2017. 7. 26., 2018. 11. 27., 2020. 9. 29.> 1.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1. 27.> 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5. 29.]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에 관한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8조, 「선박안전법」 제41조 및 「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 제조사·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		[시행일: 2025. 1. 1.] 제2조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9.> [시행일: 2025. 1. 1.]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8. 7.] 제9조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삭제 <2017. 5. 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삭제 <2017. 5. 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5. 1. 1.] 제4조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제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및 영업비밀심의 기준·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에 수정·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9.]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9.]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 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 11. 29.]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1. 28.> 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처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 2018. 11. 29.>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30.>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9. 3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④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9. 30.>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 9. 29.>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7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9.]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실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5. 8. 7.] 제13조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전문개정 2021. 9. 30.]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 10.>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① 별 제15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0. 9. 29.〉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16조의2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2. 6.>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7.>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제목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17조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3. 10. 4.>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②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6. 12., 2024. 2. 6.>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합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 6.)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제목개정 2018. 6. 12.] [시행일: 2025. 8. 7.] 제18조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수입·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안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말한다.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한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 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과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수입·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한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 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⑨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⑩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19조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1.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전문개정 2022. 11. 15.]	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합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① 삭제 <2024. 2. 6.> ②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제목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20조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4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III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V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 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8. 1.>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로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제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 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제 확인서 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충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정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 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		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목적·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보완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 시기·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안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증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 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 시기·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시행일: 2025. 8. 7.] 제23조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1년 주기 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년 주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방법·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조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절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20조의2 삭제 <2021. 4. 1.> 제20조의3 삭제 <2021. 4. 1.> 제20조의4 삭제 <2021. 4. 1.> 제20조의5 삭제 <2021. 4. 1.> 제20조의6 삭제 <2021. 4. 1.>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시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다. [시행일: 2025. 1. 1.] 제22조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 3. 3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1.> 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④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 3. 31., 2024. 2. 6.>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2024. 2. 6.>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5. 8. 7.] 제24조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8. 7.] 제25조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 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6.)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26조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시행일: 2025. 8. 7.] 제27조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31., 2021. 5. 18.>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 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한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절한 판리를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4. 1.>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1. 4. 1., 2022. 1. 10.>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정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0. 9. 29., 2021. 4. 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만 해당한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4. 1.>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4. 1.>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 1. 10.> 1.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⑧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1. 4. 1., 2022. 1. 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4. 7., 2021. 4. 1., 2022. 1. 10.>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허가일·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31., 2021. 5. 18.,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 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4. 2. 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2024. 2. 6.> ⑧ 환경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⑨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제목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28조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29조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제목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29조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본조신설 2017. 12. 27.]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5. 30., 2017. 12. 27., 2020. 9. 29., 2021. 4. 1.>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 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7.]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2. 6.>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29조의2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제2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 11. 29.> [본조신설 2017. 12. 27.]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 11. 29.> [본조신설 2017. 12. 27.]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자제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29조의3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2021. 5. 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 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0. 9. 29.>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물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9.>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20. 3. 31.)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정밀화학기사·화약류제조기사·환경위해관리기사·화학분석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위험물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계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2025. 8. 7.] 제31조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0.>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삭제 <2021. 3. 30.>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5. 30.>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8. 7.] 제32조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제35조(안전교육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20. 9. 29.> 1. 화학물질안전원 2. 삭제 <2022. 1. 10.>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또는 환경·화학·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동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춘 것 다.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인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10.>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10.>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④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33조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 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세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4. 7., 2017. 5. 30.>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16. 4. 7., 2017. 5.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4. 7.>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제13조의2(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신설 2017. 12. 27.>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 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营业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 7. 2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6. 1. 27.]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2024. 2. 6.)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제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일: 2025. 8. 7.] 제34조의2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1. 28., 2020. 3. 31., 2021. 5. 18.>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업무를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1.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삭제 (2020. 3. 31.) 22. 삭제 (2020. 3. 31.)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영업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1. 28., 2020. 3. 31., 2021. 5. 18., 2024. 2. 6.>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1.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营业을 한 경우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삭제 (2020. 3. 31.) 22. 삭제 (2020. 3. 31.)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8. 7.] 제35조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31.> ⑤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사업자등록증 -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활용계획서 -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삭제 <2020. 3. 31.> 제41조의2 삭제 <2020. 3. 31.> 제42조 삭제 <2020. 3. 3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 삭제 <2021. 4. 1.> 제46조 삭제 <2021. 4. 1.> 제47조 삭제 <2021. 4. 1.> 제47조의2 삭제 <2021. 4. 1.> 제48조 삭제 <2021. 4. 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위해성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 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 1. 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8. 12. 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8. 12. 24.> 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의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 (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위험성·방제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의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3으로 이동 (2021. 8. 17.)]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3으로 이동 (2021. 8. 17.)]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의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제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검토 및 위험도·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5. 8. 7.] 제48조의2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2에서 이동 (2021. 8. 17.)] 제48조의4(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 제19조제1항·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48조의4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2. 1. 10.]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		여 매년 8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7. 12. 27., 2021. 4. 1.>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4. 1.> ③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 라목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9의2. 삭제 (2020. 3. 31.)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4. 삭제 (2024. 2. 6.)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7. 12. 27., 2021. 4. 1., 2024. 4. 9.>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4. 1., 2024. 4. 9.> ③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 라목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하야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야야 하는 자 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야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야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야야 하는 자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9의2. 삭제 (2020. 3. 31.)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야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2025. 8. 7.] 제49조		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시행일: 2025. 1. 1.] 제53조 제54조(출입·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 2021. 4. 1.) 1.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의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3. 삭제 (2021. 4. 1.) 5의4. 삭제 (2021. 4. 1.)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0. 삭제 (2021. 4. 1.) 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 -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한 자 -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4. 2. 6.> -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 -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자 -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		[시행일: 2025. 1. 1.] 제55조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5. 30., 2019. 4. 17.>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3.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조·수입 신고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8. 7.] 제50조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3. 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문개정 2016. 1. 27.]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③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9. 11.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③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9. 11. 29., 2024.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 [시행일: 2025. 1. 1.] 제57조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시행일: 2025. 1. 1.] 제58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폐업신고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3. 제19조제1항·제6항·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3의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4. 삭제 <2024. 2. 6.>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폐업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신고 [시행일: 2025. 8. 7.] 제54조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6., 2017. 5. 8., 2018. 11. 27., 2019. 11. 26., 2021. 3. 30.>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 요청 및 수정·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마련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6. 삭제 <2021. 3. 30.> 6의2. 삭제 <2021. 3. 30.>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8의2. 삭제 <2021. 3. 30.>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6., 2017. 12. 26., 2018. 11. 27., 2019. 11. 26., 2020. 9. 29., 2021. 3. 30.>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확인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수리 등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7. 5. 8.>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6., 2017. 5. 8.>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재목개정 2020. 9. 29.]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6., 2017. 5. 8., 2018. 11. 27., 2019. 11. 26., 2021. 3. 30.>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 요청 및 수정·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6. 삭제 <2021. 3. 30.> 6의2. 삭제 <2021. 3. 30.>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8의2. 삭제 <2021. 3. 30.>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6., 2017. 12. 26., 2018. 11. 27., 2019. 11. 26., 2020. 9. 29., 2021. 3. 30., 2024. 4. 2.>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확인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등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수리 등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 4. 2.>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관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 4. 2.> [제목개정 2020. 9. 29.] [시행일: 2025. 1. 1.] 제22조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7. 3. 27.]	제60조(보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 12. 27.>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6. 12., 2020. 3. 3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회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 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 만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6. 12., 2020. 3. 31., 2024. 2. 6.>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 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 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 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25. 8. 7.] 제58조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3. 3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3. 31., 2024. 2. 6.>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4. 2. 6.>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시행일: 2025. 8. 7.] 제59조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4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시행일: 2025. 8. 7.] 제61조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4. 2. 6.>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2의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시행일: 2025. 8. 7.] 제62조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4의2. 삭제 (2020. 3. 31.) 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3. 31.)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의7.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4의2. 삭제 (2020. 3. 31.) 5. 제2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0의2.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1의3.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 <2020. 3. 31.>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등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2025. 8. 7.] 제64조	제25조 삭제 <2023. 10. 4.>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1.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021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부칙 <제25836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 해제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받은 요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년 6월 30일 2.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2021년 6월 30일 3.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 2021년 6월 30일 4.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5.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 부칙 <제583호,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선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선산 또는 한정자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출승인서를 갱신·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 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한정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한정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한정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장의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의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 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로 한다. 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⑯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시설 제22조의7제1호(나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목록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 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제11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8>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다)”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	⑮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1호, 2016. 7. 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71호, 2017. 3. 29.>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을 취급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장비·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②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⑪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⑫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 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 ⑮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⑯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	부칙 〈제28031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2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23호, 2017.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03호, 2017. 12. 26.〉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하며, 제89조의3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을 통지받은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로 하고, 제92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한다.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허가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㉖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㉗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㉚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㉔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제29314호, 2018. 11. 27.〉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6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1072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2호, 2021. 3. 30.〉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28호, 2021. 11. 19.〉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4호, 2022.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2호, 2023.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㉒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㉓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490호, 2014. 3.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을 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부칙 〈제13035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4호, 2015. 12.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제33913호, 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거역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387호, 2024. 4. 2.〉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tr><td>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td><td>「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td></tr></table>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⑯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143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 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90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1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493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⑮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⑯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한다. ⑳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5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59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4호, 2018. 12. 24.〉		부칙 〈제647호, 201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관련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시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추가(추가하려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취급수량이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668호, 2016.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701호,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35조, 별표 4 제2호가목,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2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 제8호·제9호·제12호, 제59조제7호·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에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명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신고·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제1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이 되거나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별표 1 제2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18년 12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제37조 중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 부분: 2020년 10월 1일 5. 및 6. 생략 부칙 〈제18174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0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제4호, 제6호, 제8호, 제15호, 제19호, 제40호 및 제41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0231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7 제2호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또는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8호, 2017. 7. 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약 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서 및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774호, 2018.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술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8호, 2018.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유독물”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 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의2 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한다. 1.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0년 11월 29일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1년 11월 29일 제4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804호, 2019. 3. 29.> 이 규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로 한다. 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31호, 2019. 11. 29.>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1호, 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9호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제5호 및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⑯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⑲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통보받은 자의 취급시설의 위험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고위험도 취급시설: 가위험도 2. 중위험도 취급시설: 나위험도 3. 저위험도 취급시설: 다위험도 제5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해야 한다. 부칙 <제942호, 2021. 9. 16.> (여러문 법령용어 정비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㉖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㉗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㉙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㉚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44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8호, 2022.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52조의2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호, 2023.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비고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호, 2024. 4. 9.〉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㉔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3제1항·제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㉖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2조제2호아목 중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㉗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㉓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7443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744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 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1) 및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해당 업체가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휴업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이나, 영업정지 대상 영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600	800	1,000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600	800	1,000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라.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2	600	800	1,000
마.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180	240	300
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3	600	800	1,000
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4	600	800	1,000
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4호	600	800	1,000
자. 삭제 <2021. 3. 3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삭제 <2021. 3. 30.>				
카.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5호			
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300	400	500
2) 1)외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600	800	1,000
타.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	180	240	300
파. 법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6호	600	800	1,000
하.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의2	180	240	300
거.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7호	600	8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너.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4호	180	240	300
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8호	600	800	1,000
러.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9호	600	800	1,000
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600	800	1,000
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1호	600	800	1,000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5호	180	240	30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7449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7451
[별표 3]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7455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	7456
[별표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	7461
[별표 4의2] 삭제 <2021. 4. 1.>	7463
[별표 4의3] 삭제 <2021. 4. 1.>	7463
[별표 4의4] 삭제 <2021. 4. 1.>	7463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7464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7466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7467
[별표 6의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	7468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7469
[별표 8]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	7473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	7473
[별표 10] 삭제 <2021. 4. 1.>	7473
[별표 11] 삭제 <2021. 4. 1.>	7473
[별표 12] 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7474
[별표 13]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	7474

[별표 1]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1.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 가.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 나.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시설(集水施設)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할 것
- 다.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接地)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다만,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라.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마. 앞서 저장한 화학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탱크로리, 저장탱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폐액(廢液)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 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에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 나. 유해화학물질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 접촉하지 말 것
- 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다만,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라.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당 물질을 관리할 것
- 마.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열·스파크·불꽃 등의 점화원(點火源)을 제거할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는 장소 주변이나 하역하는 동안 차량

안 또는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말 것

- 사.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티의 비산(飛散)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 아. 유해화학물질이 묻어 있는 표면에 용접을 하지 말 것. 다만, 화기 작업허가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자. 열, 스파크 등 점화원과 접촉 시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하거나 중화, 세척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 차.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중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한 가스의 존재여부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 카.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호퍼(hopper: 밑에 깔대기 출구가 있는 큰 통)나 컨베이어, 용기 등에 낙하시킬 때에는 낙하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고체 유해물질의 낙하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때에는 분진을 포집(捕執)하기 위한 분진 포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타.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에는 용기 높이의 90%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할 것
- 파. 인화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은 그 물질이 반응하지 않는 액체나 공기 분위기에서 취급할 것
- 하. 유해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기를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시 상시 가동할 것
- 거. 용기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공정에 모두 투입한 경우에는 용기에서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密封)하여 두거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 둘 것
- 너.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반응, 추출, 교반(휘저어 섞임), 혼합, 분쇄, 선별, 여과,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은 밀폐 또는 격리된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더.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 러.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할 것
- 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3. 보관·저장

- 가.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 나. 폭발성 물질과 같이 불안정한 물질은 폭발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
- 다.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 상태로 보관할 것

4. 상자·하차 및 용기·포장

- 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나. 뚜껑을 포함한 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 등으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 다.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는 용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운송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포장을 견고히 하여 운반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라.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출 것

5. 운반

-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 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 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학물질안전원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 마.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 아.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 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비고: 위 기준 외에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24. 4. 9.>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물질명	국제연합번호	그림문자

← b →

나. 양식크기: $a=50\text{cm}$ 이상, $b=(3/2)a$, $c=(1/4)a$, $d=(1/4)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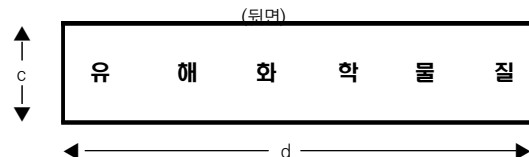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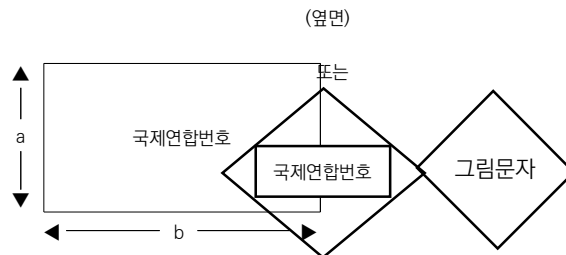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가) 1톤 초과 4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cm 이상, $a=10\text{cm}$ 이상, $b=25\text{cm}$ 이상, $c=12\text{cm}$ 이상, $d=50\text{cm}$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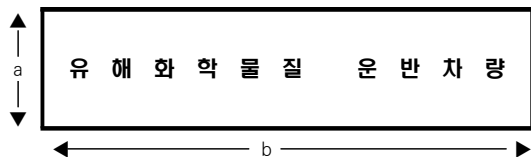
- 나) 4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cm 이상, $a=10\text{cm}$ 이상, $b=25\text{cm}$ 이상, $c=20\sim30\text{cm}$, $d=80\sim100\text{cm}$ 로 한다.
- 3) 글자크기: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4) 그림문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TDG),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성·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성·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 5) 색상: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고,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으로,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해야 한다.
- 6) 표시위치: 양 옆면과 뒷면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해야 한다.
- 7) 유해성·위험성 우선순위
- 방사성 물질
 - 폭발성 물질 및 제품
 - 가스류
 -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 자연 발화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비고

1톤 초과 1.5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제2호가목의 표시방법을 이행하는 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제2호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a=10\sim20\text{cm}$, $b=30\sim80\text{cm}$ 이어야 한다.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일반 작성 원칙

-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기재한다.
-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 5)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6)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 7)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8)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 9)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양식 및 규격

1) 양식

명칭	
	○ 신호어 : ○ 유해위험문구 :
○ 예방조치문구 : ○ 공급자정보 :	

2) 규격

0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가) 용기의 용량별 크기

용기·포장의 용량	크기
나)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용기·포장 자체의 순길이 최소한 0.5cm ² 이상의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다) 유해위험문구의 배용량이 100g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UN번호, 제조자 또는 공급자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여하에 관계없이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UN번호, 제조자 또는 공급자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200g 이상기 500g 미만 또는 용기 300ℓ 이하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 마) 1ℓ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 및 규격

1) 양식

명 칭 UN번호

2) 규격

- 가)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나) 명칭 및 UN번호의 문자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여야 하며, 용량이 5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여야 한다.
- 다) 명칭을 기재할 때 고유번호(또는 CAS번호)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혼합물인 경우)은 제외할 수 있다.

라. 표시방법

1) 이중용기(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외부용기

외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내부용기

내부용기에는 다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운송그림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비고

가) “이중용기”란 1개의 용기 안에 1개 이상의 용기가 들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나) “외부용기”란 이중용기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한다.

다) “내부용기”란 운반을 위하여 외부용기가 필요한 용기로 외부용기 내부의 모든 용기를 말한다.

2) 단일용기(이중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용기에는 다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text{cm}$ 이상, $b=(3/2)a$, $c=(1/4)a$, $d=(1/2)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는 빨간색으로,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폭발성 물질”이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나. “인화성 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 다. “에어로졸”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 라. “산화성 가스”란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 마. “고압가스”란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 바.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 사. “인화성 고체”란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상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만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자. “자연발화성 액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 차. “자연 발화성 고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이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파. “산화성 액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 하. “산화성 고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 거. “유기과산화물”이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 너. “금속부식성 물질”이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급성독성 물질”이란 임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이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이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이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바. “발암성 물질”이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 사. “생식독성 물질”이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아.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이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자.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이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이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이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한다.

[별표 3의2] <신설 2021. 4. 1.>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

1.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단위: 톤)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아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8	시아나화수소(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6	3
9	염화비닐(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2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4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6	메틸비닐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18	메틸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9	니트로벤젠(나이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0	4-니트로톨루엔(4-나이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1	벤질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2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23	알릴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4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5	에틸렌디아민(에틸렌다이아민)[Ethylenediamine ; 107-1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7	m-크레졸(m-크레솔)[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28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9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30	n-부틸아민(n-부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1	트리에틸아민(트라이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3	시아나이드(사이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 143-3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황철염(Potassium ferrocyanide)·적철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2	20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2,4-TDI) ; 584-8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7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8	인화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39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0	다이소시아산이소포론(다이아미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1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	400*
43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린화 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	20*
44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0*	400*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45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6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48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9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51	아르신 또는 삼수산화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 7784-42-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2	클로로술폰산(클로로설폰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3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4	옥시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56	디보란(다이보레인)[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57	산화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8	니트로메탄(나이트로메테인)[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0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	60
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2	염산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4	과염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0
66	염산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date ; 107-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69	염화시아니드[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0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3	트리플루오로보란(트라이 플루오로 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4	트리클로로보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헥사플루오로-1,3-부타다이엔) [Hexafluoro-1,3-butadiene ;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6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7	셀레늄화수소(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8	이소프렌(아이스오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79	1,1-디클로로에틸렌(1,1-다이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80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1	펜타카르보닐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2	오불화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3	염화티오닐[염화싸이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4	사염화타이타늄(사염화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5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6	비닐에틸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87	실란(실레인)[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8	디실란(다이실레인)[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9	디클로로실란(다이클로로실레인)[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90	트리클로로실란(트라이클로로실레인) [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1	메틸디클로로실란(메틸다이클로로실레인) [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메틸트라이클로로실레인) [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5	테트라메틸실란(테트라메틸 실레인) [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6	테트라클로로실리콘(테트라클로로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7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수량 기준(각 물질별 하위 규정수량과 상위 규정수량 기준을 말한다)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규정수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채류(일 시적으로 채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수량에도 불구하고 42번, 43번 및 44번의 물질은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
3. 규정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개정 2021. 4.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

1.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 1) 사업장 일반정보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1군·2군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취급시설 개요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장치·설비의 종류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1)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명세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유해화학물질별 물리적·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른 구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대표 유해성 정보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유해성이 가장 큰 대표 물질 2종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 1) 취급시설의 입지정보는 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및 주변 환경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전체배치도는 사업장 내 건물 및 설비의 위치, 건물 간 거리, 단위공정 또는 단위공장 배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설비배치도는 단위공정 또는 단위공장별로 각 설비의 위치, 주요 설비의 설치 높이, 각 설비 간 거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전체배치도 상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4) 주변 환경정보는 사업장 인근 지역 시설물의 위치도·명세, 주민분포 현황 및 자연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시설정보

가. 공정안전정보

- 1) 공정안전정보는 공정개요, 공정도면, 장치·설비의 목록 및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절차·방법의 흐름에 따라 공정설명 자료를 작성한다.
- 3) 공정도면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측장비 및 제어 설비, 물질 및 열에너지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된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를 작성하고,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를 추가로 작성한다.
- 4) 장치·설비의 목록 및 명세는 단위공정별로 장치 및 설비의 명칭과 용량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안전장치 현황

- 1) 안전장치 현황은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누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벽 및 트렌치 등 시설의 목록, 용량 및 배치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의 고정식 유해감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위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4)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단위공정별로 적정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5)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스크러버(scrubber: 세정기) 및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 등 배출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적절한 성능과 용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장외 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취급시설의 용량 및 취급시설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고시나리오 작성대상 설비를 선정하여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한 공정위험성 분석을 하고,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대상 설비와 사업장의

총괄영향범위를 산정하는 내용 등을 작성한다.

나.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평가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총괄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 수,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목록 등 현황 및 사고영향의 분석·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위험도 분석

사고시나리오별 사고 영향과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후 작성한다.

4.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관리,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 및 자체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안전관리운영계획은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관리 방침과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관리는 수립된 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개선·보완, 변경사항 발생 시 현행화를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은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환경오염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횟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5) 자체점검계획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비상대응체계

1) 비상대응체계는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조직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비상연락체계는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담당자, 공동 대응을 위해 연락 가능한 인근 사업장, 유관기관의 목록 및 신고·연락 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비상대응조직도는 사고 대응·수습·복구 단계별 대응 부서별 편성인원과 임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내부 비상대응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1)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 방재 인력·장비·물품 운용계획,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 및 응급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방재 인력·장비·물품 운용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투입되는 방재인력 및 장비 현황, 개인보호구 등의 물품 보유현황, 방재장비·물품 배치도 및 관리·유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유지관리방법 및 경보전달 방법·담당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응급조치계획은 저장, 운반(탱크로리)·이송(배관), 보관시설, 반송·교반 등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별로 화학사고 발생 시 자동 차단 또는 단계별 차단, 확산방지 및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과 비상대피계획 및 응급의료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1) 화학사고 사후조치는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과 사고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은 사고조사팀의 구성·임무,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항목·방법 및 개선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사고복구계획은 사고현장을 복구하기 위한 조직·임무, 환경책임보험 가입이력 및 가입여부 및 환경복원전문업체의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 공조계획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수습·복구를 위한 정보 공유, 지역사회와의 소통, 화학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 등 지역사회·지역비상대응기관·인근사업장 등과의 공조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1)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은 주민에 대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행동요령, 응급의료계획 및 주민대피 장소·방법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 및 유지관리방법,

경보전달 방법·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보전달체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행동요령은 사고유형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대피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4) 응급의료계획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목록 및 비상연락망,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경로, 이동시간, 수용가능 병상, 환자후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5) 주민대피 장소·방법은 집결지와 대피장소를 구분하여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 경로, 이동시간, 수용가능 인원, 실내·지상·지하 여부,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해당 여부, 수송계획, 비상연락망 및 대피장소관리 담당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지역사회 고지계획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대상이 되는 사고시나리오별 총괄 영향범위 내 주민의 목록 및 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고지정보는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비고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 단위로 작성하며,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운영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위별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1)의 1군·2군 사업장의 구분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사업장 구분	기준
가.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나.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으로서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3.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호에 따른 외부 비상대응계획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4. 제4호가목, 제5호 및 제6호의 작성 항목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항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제6호에 따른 외부 비상대응계획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2] 삭제 <2021. 4. 1.>

[별표 4의3] 삭제 <2021. 4. 1.>

[별표 4의4] 삭제 <2021. 4. 1.>

[별표 5] <개정 2021. 4.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 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유해화학물질이 누출·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라.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2.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중독이나 질식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기능상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4)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5)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은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설비(集水設備)를 설치해야 한다.
- 6)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설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 7)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 시설과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기준

- 1) 가목2)에 따른 배출설비에서 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중화, 소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자기발열성 물질의 발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로 설비가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4)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과열이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자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5)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6)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7)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필요 최소한의 양만 취급해야 한다.
- 8) 그 밖에 제조·사용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저장·보관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기능상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유해화학물질 종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4)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5)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은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6)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설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 7)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체척시설과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 8) 저장설비는 그 설비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9) 저장·보관시설은 바닥에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관리기준

- 1) 가목2)에 따른 배출설비에서 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중화, 소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자기발열성 물질의 발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로 설비가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4)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과열이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자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5)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6)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7)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필요 최소한의 양만 취급해야 한다.
- 8)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9) 그 밖에 저장·보관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운반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용기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가. 설치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설계·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 2)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누출·유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확보해야 한다.

나. 관리기준

- 1) 운반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적재(積載) 또는 하역(荷役)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 2) 운반과정에서 운반시설에 적재된 유해화학물질이 쏟아지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및 그 운반용기를 고정해야 한다.
- 3)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주·정차해야 한다.
- 4) 그 밖에 운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그 밖의 시설

- 가. 사업장 밖에 있는 배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하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 배관설비는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 2) 배관 및 그 지지물 등의 설비는 물리적·환경적 영향 등 외부요인으로 파손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 3) 유해화학물질 유출·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확산 방지 또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나. 그 밖에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준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미세공경이나 항만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용 대상과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23. 10. 4.> [환경부령 제774호(2018. 10. 26.)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1. 취급시설·장비 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 바. 누출·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
-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
- 자. 물질의 누출·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 차. 삭제 <2017. 12. 27.>

2. 기술인력 기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표면처리기술사·위험물기능장·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정밀화학기사·화학류제조기사·환경위해관리기사·화학분석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학류제조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표면처리산업기사·환경기능사·위험물기능사·가스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표면처리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환경부령 제774호(2018. 10. 26.)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6의2] <개정 2023. 10. 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총 교육시간 중 8시간 이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나머지 교육시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에 한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하 "인터넷 교육"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 교육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의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4.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수시기 및 교육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6의3] <개정 2021. 4.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대상자(영 제1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위험도 분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 사. 개인보호구, 방제 장비 등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취급, 보관·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및 운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시 준수사항 라.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화학사고 대피·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다.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별표 기 <개정 2022. 1.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5)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개선투자 및 안전 환경 인력 채용을 확대한 경우
-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 7)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이행을 위해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8)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9)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1호, 법 제35조 제2항제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2호, 법 제35조 제2항제3호				
1)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3호, 법 제35조 제2항제4호				
1)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4호, 법 제35조 제2항제5호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5호, 법 제35조 제2항제7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자.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8호의2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차.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5호의2, 법 제35조 제2항제8호의3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카.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9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0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파. 법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거.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법 제35조 제2항제11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법 제34조의2 제6호, 법 제35조 제2항제1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34조의2 제1항제7호, 법 제35조 제2항제13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너.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더.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4호	허가취소			
	법 제34조의2 제1항제8호, 법 제35조 제2항제15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머.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버.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35조 제2항제1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35조 제2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서.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9호, 법 제35조 제2항제19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5일
여.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사고대비물질의 유출·누출 또는 도난·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10호, 법 제35조 제2항제20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저.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3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 허가 취소	
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11호, 법 제35조 제2항제24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12호, 법 제35조 제2항제25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6호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30일)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60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90일)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180일)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

1. “공동활용계획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소별 업무내용(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시설·장비 확인 등), 근무소요시간과 배분근무계획 등
 -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제조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및 사용량과 1회 사용 시 소요시간(원료투입부터 포장까지)과 업소별 사용시간의 원칙적 배정내역 등
 -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보관·저장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사용면적 또는 사용용량, 위치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잠금장치의 열쇠 보관관리 등 안전설비관리계획
 -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반하려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성상별 일일운반소요량, 일일운반능력(대당운반능력×횟수×대수)과 운반차량의 업소별 활용시간배정계획, 세차 등 차량관리계획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는 공동활용 업소의 위치와 이동로 및 이동거리 등을 표시한 도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의 명세서로 같음한다.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에는 공동활용 내역,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공동대처방안, 대표업소의 선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한계 및 업무지원 내역(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내역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부재 시 유독물 관리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내역을 기재한다.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

1.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나.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취급시설 운영자·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보관시설, 진열·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라.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때는 제외하며, 5년간 동의서를 보존해야 한다.
 - 마.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2.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2] <개정 2022. 1. 10.>

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종별	수수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2.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4. 허가물질 허가 및 재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5. 제한물질 수입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6.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7. 유독물질 수입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8.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9.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10.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 신청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11. 삭제 <2022. 1. 10.>		
12. 삭제 <2022. 1. 10.>		
1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30,000원	27,000원
1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000원	18,000원
15.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 신고	13,000원	11,700원
16.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	9,000원	7,200원
17. 유해화학물질 영업 재개 신고	13,000원	11,700원
18. 취급시설의 검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및 안전진단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비고 :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3] <개정 2024. 4. 9.>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적 및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권리·의무승계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화학사고 현장 대응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화학사고 영향조사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화학사고 조치명령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화학물질 확인 업무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제8편 환경보건

0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485 제1조(목적) 7485 제2조(정의) 7485 제2조(정의) 7489 제3조(적용범위) 7492 제4조(국가의 책무) 7493 제5조(사업자의 책무) 7493 제5조(사업자의 책무) 7494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7495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7496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7499 제9조 삭제 7499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74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485 제2조(정의) 7485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7487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7487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7496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7496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497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7498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7498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499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7499 제9조 삭제 7499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7500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7500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의 기준 등) ... 75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485 제2조 삭제 7490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3조 삭제 7499 제4조 삭제 7499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749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7506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7508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7511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7513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7517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7517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7511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7524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7527 제16조의2(취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7528 제17조(취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7528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7509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7517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 7517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7524 제14조의2(취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7528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7503 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 7504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7505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7509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인의 변경신청 등) 7511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7512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7513 제10조(변경등록 사유) 7514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7515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7515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7519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7519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7520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7520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7521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7521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7524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7524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7526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7527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75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7530	제15조(취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7529	제21조(취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7529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채납처분 등) 7531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7530	제22조(취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7529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7530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7530
제18조(유해성심사) 7532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7531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9조(유해성평가 등) 7534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7532
제19조의2(사용료) 7535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 7534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7533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7536	제17조(연구기관) 7538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7533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7536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7542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7534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7536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7535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7537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7543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7537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7537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7538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7538		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7539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7540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7539
제24조(위해성평가) 7541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7540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7541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7543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7541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7545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7542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754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7545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7546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7547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7550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7551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7553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3. 20.>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7553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7556 제34조 삭제 7556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7556 제36조 삭제 7558 제37조 삭제 7558 제7장 보칙 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7558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7559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7545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7547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7547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7548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7549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7550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7551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7552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7553 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12. 28.> 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7553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7555 제43조 삭제 7556 제44조 삭제 7556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7556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 7557 제47조 삭제 7558 제48조 삭제 7558 제6장 보칙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755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7560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7560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7561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7561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7562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7562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7562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7561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7562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7563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7563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7563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 7563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7564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7564		제52조(출입·검사) 7564 제53조(검사기관) 7565 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7566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7567
	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7566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7566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7566	제30조(자료의 보호) 7567	
제45조(자료의 보호) 7567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7568 제5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7568 제56조(수수료) 7569
제45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7568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7569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7570	
제46조(수수료) 7569		제57조(규제의 재검토) 7575
제47조(청문) 7570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7570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575		
제8장 벌칙	제6장 벌칙	
제49조 삭제 7575		
제50조(벌칙) 7575		
제51조(벌칙) 7576		
제52조(벌칙) 757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양별규정) 7577		
제54조(과태료) 7577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577	
제54조(과태료) 7578		
부칙 7579	부칙 7579	부칙 757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3. 5.22 법률 제11789호 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1호 2018. 3.20 법률 제15512호 2018. 4.17 법률 제15584호 2018.10.16 법률 제15844호 2019. 1.15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장비를 위한 환경노동위 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법 률) 2021. 4.13 법률 제18034호 2023. 1. 3 법률 제19172호 2024. 1. 9 법률 제19964호 2024. 2. 6 법률 제20232호	제정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5호 개정 2016. 8. 2 대통령령 제27434호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2호 2018.12.24 대통령령 제29413호 2019.12. 3 대통령령 제30229호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0. 7.14 대통령령 제30849호 2021.10.14 대통령령 제32061호 2023.12.12 대통령령 제33952호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5호	제정 2014.12.24 환경부령 제582호 개정 2015.10.30 환경부령 제615호 2016. 8. 4 환경부령 제672호 2018. 1.15 환경부령 제740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2.28 환경부령 제790호 2019. 9.16 환경부령 제824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병령용어 장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31 환경부령 제840호 2020.12.17 환경부령 제896호 2021.10.14 환경부령 제946호 2022. 3.31 환경부령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장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 7.29 환경부령 제997호 2023.12.18 환경부령 제1064호 2024. 4. 9 환경부령 제10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삭제 (2018. 3. 20.)	1. “비분리증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삭제 (2018. 12. 24.)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나.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다.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 반응물을 말한다. 5. “단량체단위”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6.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말한다.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3.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번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 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16. 삭제 (2018. 3. 20.) 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2024. 2. 6.>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삭제 <2018. 3. 20.>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삭제 (2024. 2. 6.)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제2조 삭제 (2016. 8.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3.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 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16. 삭제 (2018. 3. 20.) 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일: 2025. 8. 7.] 제2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21. 4. 13.>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충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 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업자는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교환·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업자는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교환·활용하고, 화학물 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 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5조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1.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관련 조사·연구,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 3. 20.>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3. 20.> 1.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삭제 <2018. 12. 24.>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8. 2.]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 12. 24.>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 3. 20.> 제9조 삭제 <2018. 3. 20.>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 1. 위해성평가위원회 2. 정보제공심의위원회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 12. 24.> 제9조 삭제 <2018. 12. 24.>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3조 삭제 <2018. 12. 28.> 제4조 삭제 <2018. 12. 28.>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화학물질의 명칭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전문개정 2018. 12. 24.]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7. 29., 2024. 4. 9.>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4의2. 해당 화학물질이 현상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하 이 호에서 “통제된 조건”이라 한다)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상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라. 1천톤 이상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가 변경된 경우 3. 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5.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1톤 2.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10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	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이하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 2021. 10. 14.> 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1의2.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나.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1의3. 영 제13조제1호의4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만,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2.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중 유해성에 관한 서류, 같은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현장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2의2.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3.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4. 영 제13조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5. 영 제13조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 ③ 영 제13조제1호의3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모두에서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1. 별표 1에 따른 시험자료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개정 2024. 4. 9.> 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 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0조의2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10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분기별 현황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4. 2.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고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4. 9.>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본조신설 2018. 12.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4. 2. 6.> 1.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⑥ 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 [시행일: 2025. 1. 1.] 제10조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6. 8. 4., 2018. 12. 28.> 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 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 2024. 4. 9.>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확인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2.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등면제확인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 확인 신청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8.> ⑥ 영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통제된 조건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제목개정 2018. 3. 20.]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4. 2.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 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8. 12. 24.]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사항 중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또는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2. 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화학물질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변경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제목개정 2018. 3. 20.] [시행일: 2025. 8. 7.] 제11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7조제1항제1호의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3.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인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현황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 2020. 12. 17., 2024. 4. 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4. 삭제 <2018. 12. 28.> 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0. 12. 17., 2024. 4. 9.>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등록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 제10조(변경등록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란 등록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별표 6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에서 상위의 무게범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1.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2.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나. 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등록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1.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전문개정 2018. 1. 15.] [제목개정 2018. 12. 28.]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신고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삭제 <2018. 12. 24.>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 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 1.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9.> [본조신설 2018. 12.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험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총 제조·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자 나.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자 1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4.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고분자 화합물 2. 현장분리중간체.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장 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 2의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5.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7.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 8.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 2. 외국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진술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1. 시험자료의 명칭 2. 삭제 <2018. 1. 15.> 3.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4. 시험의 구체적 방법 5. 예상 시험 일정 6.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험계획서가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1. 시험조건 또는 방법 2. 시험자료의 제출기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3. 20.)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 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 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		3. 그 밖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시험자료의 제출기한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험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사·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3. 20.>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4. 2. 6.>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5. 1. 1.] 제14조제6항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사·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4.]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사항 중 신고한 자의 연락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④ 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5., 2018. 12. 28.>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⑥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5., 2018. 12.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⑧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8. 4., 2018. 1. 15., 2018. 12. 28.> ⑩ 대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2. 28.>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1.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자료제공 동의서(영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인과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제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국내의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4.]	한다. <개정 2024. 4.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⑤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7.>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제록개정 2018. 12. 24.]	제21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제목개정 2018. 4. 17.]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4.]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⑤ 삭제 <2023. 12. 12.>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4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⑥ 삭제 <2023. 12. 12.>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18. 12. 24.]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③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이하 “유해성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8.> 1. 등록유예기간의 만료일 2. 대표자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2024. 4. 9.> 1. 국내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⑤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 12. 28.>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10. 14., 2024. 4. 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2024.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0. 14., 2024. 4. 9.>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1.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를 검토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된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정·절차 등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국내 제조·수입량 및 수출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의 관련법령·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8. 10.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료 하역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0. 16.> 제19조의2(사용료)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6.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8. 나노물질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승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해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 8. 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시행일: 2024. 7. 10.] 제19조의2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평가 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19조의3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제목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20조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5. 8. 7.] 제21조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시설 현황 내역서 2. 운영 현황 내역서 3.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2. 시험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 3. 세부 시험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 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 서식의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인력과 연구시설·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매 2년마다 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와 적정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기준, 제3항에 따른 조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시험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에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1.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제조·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사용형태 4.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이용 가능한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2.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국내외 정보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위해성평가 기간 3.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평가 4.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량-반응평가 6.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평가 7.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선정 등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 해당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삭제 (2018. 3. 20.) 2. 삭제 (2018. 3. 20.) 3. 삭제 (2018. 3. 2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유해성관리대책(이하 “유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유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유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유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유해성 2.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유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자 및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4.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후보물질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7.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위사용자의 업체명,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2. 제조·수입·사용하는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취급량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관련 정보(해당하는 물질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 1.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검토 결과(제2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21. 10. 14.> 3.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관리대책 4.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과 그 도입시기에 관한 정보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물질로 지정하는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신기술의 상용화(常用化)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허가유예기간 4. 그 밖에 허가물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0. 14.>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면제용도 3. 허가유예기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0. 14.>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20.)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21. 10. 14.)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용도와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제10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2021. 10. 14.>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①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 신청 정보 및 신청 사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등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가 새롭게 파악되어 국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7.〉 [본조신설 2018. 12. 28.]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개정 2021. 10. 14., 2023. 12. 18.〉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제공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만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 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 위해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9.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4. 9.>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15., 2020. 5. 26., 2024. 2. 6.) 1. 제10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3. 유해성미확인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8. 7.] 제29조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판매량 4.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 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 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4. 9.>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3. 20.)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4. 9.>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 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12. 28.) 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 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 3.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제목개정 2018. 3. 20., 2020. 5. 26.]		전에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18.>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함유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품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23. 12. 18.]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한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물질별 총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수입하는 경우 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3.] 제34조 삭제 <2018. 3. 20.>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양도하는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제43조 삭제 <2018. 12. 28.> 제44조 삭제 <2018. 12. 28.>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는 해당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제목개정 2020. 5. 26.]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1. 해당 제품명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삭제 <2018. 3. 20.> 제37조 삭제 <2018. 3. 20.> 제7장 보칙 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입(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제32조에 따른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입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입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12.>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4. 9.> 제47조 삭제 <2018. 12. 28.> 제48조 삭제 <2018. 12. 28.> 제6장 보칙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입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입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24. 4. 9.>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입계약서 사본 등 선입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하고 있거나 제조·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한 업무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8. 삭제 <2018. 12. 24.> 9. 삭제 <2018. 12. 24.> 10. 삭제 <2018. 12. 24.> 11. 삭제 <2018. 12. 24.> 제21조의2(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8. 12. 24.]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12.> 1. 삭제 <2018. 12. 24.>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한다. <개정 2018. 1. 15., 2024. 4. 9.> ⑤ 삭제 <2018. 12.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증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24.>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8. 2., 2021. 10. 14.>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20.)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저감(低減)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유해성 저감 활동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 4.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화학물질관리협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 저감 및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조직·예산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판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 분야 2. 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42조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4호의2 및 제6호의2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유독물질 해당 여부 4의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결과 - 유해성에 관한 결과 6의2. 유해성에 관한 결과 -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2020. 5. 26.>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 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27.]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 3. 삭제 <2018. 12. 24.> 4. 삭제 <2018. 12. 24.>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본조신설 2016. 8. 2.]	제52조(출입·검사)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8. 12. 28.>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삭제 (2018. 3. 20.)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5. 삭제 (2018. 3. 20.) 6.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신고·변경신고, 등록등면 제확인 및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7., 2018. 12. 28., 2024. 4. 9.>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2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0. 5. 26.> 1. 삭제 <2018. 3. 20.> 2.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증점관리물질의	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한 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4., 2021. 10. 14.) 1. 국립환경과학원 2. 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6.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18.> 1. 삭제 <2018. 12. 28.>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 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를 한 자 5. 삭제 (2018. 3. 20.) 6. 삭제 (2018. 3. 20.)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간체 관리대상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6. 삭제 (2018. 12. 28.) 7. 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8.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45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록등면제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3.]	8.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보호가 제2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0. 14.> [제목개정 2021. 10. 14.]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본조신설 2018. 12. 28.] 제5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 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45조의3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0. 5. 26., 2023. 1. 3.>		합유된 증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제56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7.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제4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4. 2.>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5.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6.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기술적 지원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한정한다) 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9.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10.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 4. 2.>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 3.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 확인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10.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14.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3. 12. 12., 2024. 4. 2.> 1. 삭제 <2018. 12. 24.>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고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 8. 2., 2018. 12. 24., 2024. 4. 2.> 1. 삭제 <2018. 12. 24.> 2. 삭제 <2018. 12. 24.>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 8. 2.,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 2023. 12. 12., 2024. 4. 2.>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1의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제공 및 비용의 징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의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1의5.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1의6.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 1의7.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의8.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2. 법 제42조의2제1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8. 2., 2018. 12. 24., 2021. 10. 14., 2024. 4. 2.> 1.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3. 20.> 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6. 1. 27.] 제8장 별칙 제49조 삭제 <2018. 3. 20.> 제50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1. 4. 13.>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	에 관한 업무 5. 삭제 <2017. 12. 26.> 6. 삭제 <2018. 12. 24.> 7. 삭제 <2018. 12. 24.> 8. 삭제 <2018. 12. 24.> 9.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8. 12. 24.> [제목개정 2021. 10. 14.] 제6장 별칙	제5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1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 등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의2.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에 들어있는 증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증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5. 삭제 <2018. 3. 20.>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21. 4. 13.> 1. 삭제 <2018. 3. 20.>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2.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3. 1. 3.>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의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3. 1. 3.)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의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2. 6.>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제54조	부칙 <제11789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2015년 1월 1일 2.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 4.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5.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 제2조(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	부칙 <제582호,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서 2. 제1호의 통지서를 제공한 제조·수입자의 정보(통지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본래의 소유자 정보를 말한다) 3.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부칙 〈제2743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및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대한 위탁의 유효기간)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신청의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02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	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8.1.15〉 제4조(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신규화학물질: 2015년 12월 31일 2.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호의 신규화학물질: 2017년 12월 31일 부칙 〈제615호, 2015.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 2016.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5항, 제27조제4항·제5항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결과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신청에 관한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에 대한 실적의 보고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389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2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제15호, 제4조제4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2019년 7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회에 접수된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임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제9호에 따른다. 부칙 〈제29413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19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2년 12월 31일 3.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5년 12월 31일 4.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8년 12월 3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	따른다. 부칙 〈제740호, 2018.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제확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 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부칙 〈제790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면제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자 및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유예기간 이내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간 1톤 이상 기준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준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84호, 2018. 4. 17.〉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4호, 2018. 10. 16.〉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72호,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예정량을 등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30229호, 2019. 12. 3.〉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생략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0 제2호4)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보고서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034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72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64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49호, 2020. 7.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1호, 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52호, 2023. 12. 12.〉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5호, 2024. 4. 2.〉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824호, 2019.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 2020.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 2021. 10. 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2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7호,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시험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4호, 2023. 12. 18.〉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 2024. 4. 9.〉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7587
[별표 1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	7588
[별표 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7589
[별표 3]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7592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7592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7593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7593

[별표 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 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 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 독성	1)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피파렘(2,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라. 피부 부식성/자극성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마.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급성독성	1) 어류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물벼룩 수의 반에게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EC50, 48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조류(藻類)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조류의 생장물을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농도(IC50, 72hr 또는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바.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구분	지정기준
사. 반복노출독성	1)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또는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아. 변이원성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자.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차. 생식독성	1)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카. 기타	1) 위의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 또는 혼합물 2) 위의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 비고

-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mg/L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ppm 또는 mg/L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text{mg/L} = (\text{ppm} \times \text{분자량} / 24.45) \times 1 / 1,000 \text{ (상온, 상압)}$$
- 수생생태독성을 평가할 때에 대상 물질이 수계(水界)에서 쉽게 흡착되거나 분해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유독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 어독성 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어종(魚種)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 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이 위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 위 항목별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라도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예상 노출량,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2] <신설 2018. 12. 24.>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9조제2호 관련)

1. 법 제2조제10호의2가목의 화학물질

구분	고시기준
가.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나. 변이원성 (變異原性)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다. 생식독성	1)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라. 내분비계 장애	사람의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2. 법 제2조제10호의2나목의 화학물질

구분	고시기준
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半減期)가 40일을 초과할 것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구분	고시기준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화학물질이 어류 등 생물의 체내로 들어와서 남아 있는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생물 체내의 화학물질 농도를 환경에서의 농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00을 초과할 것 3) 독성: 별표 1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할 것
나. 1) 및 2)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가 60일을 초과할 것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가 5,000을 초과할 것

3.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의 화학물질

가.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나.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하거나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킨다는 소견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4.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의 화학물질: 호흡기과민성 물질(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화학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 비고: 중점관리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함께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물리적·화학적 특성, 국제적 관리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8. 12. 24.>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용도분류	내용
1. 흡수 및 흡착제 (Absorbents and Adsorbents)	가스나 액체를 흡수 또는 흡착하는 물질
2. 접착제·결합제 (Adhesive·Binding agents)	두 물체의 접촉면을 접합시키는 물질 또는 두 개의 개체를 결합시키는 물질
3. 에어로졸 추진제 (Aerosol propellants)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로서 용기에서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내용물을 분출시키는 물질
4. 응축방지제 (Anti-condensation agents)	물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응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 부동액 (Anti-freezing agents)	냉각에 의해서 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
6. 접착방지제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두 개체 접촉면의 접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7. 정전기 방지제 (Anti-static agents)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물질
8. 표백제 (Bleaching agents)	섬유 등 착색물체의 색깔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제거함으로써 백색·무색으로 하는 물질
9. 세정 및 세척제 (Cleaning and Washing agents)	표면에 오염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10. 착색제 (Colouring agents)	다른 물질을 발색하도록 하는 물질
11. 착화(錯化)제 (Complexing agents)	주로 중금속 이온인 다른 물질에 배위자(配位子)로서 배위되어 착물(복합체)을 형성하는 물질
12. 전도제 (Conductive agents)	섬유류와 플라스틱류의 대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조공정에서 첨가·도포하는 물질

용도분류	내용
13.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건축용 자재에 사용하는 물질
14.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s)	공기를 비롯한 화학물질, 옥외노출 등으로 생기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5. 화장품 (Cosmetics)	화장품 및 세면용품에 사용하는 물질
16. 분진결합제 (Dust binding agents)	분진의 발생·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7. 전기도금제 (Electroplating agents)	금속표면의 세척 및 세정을 위해서 쓰이는 물질 및 도금공정에서 도금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8. 화약, 폭발물 (Explosives)	화학적 안전성이 있으나 화학적 변화를 거침으로써 폭발 또는 팽창을 동반한 다량의 에너지 및 가스를 매우 빠르게 발생시키는 물질
19. 비료 (Fertilizers)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20. 충전제 (Fillers)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 등에 광택, 인장, 발색 등 기능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
21. 정착제 (Fixing agents)	섬유의 염료와 반응하여 색이 정착하도록 하는 물질
22. 내화·방연제 및 난연제 (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주로 섬유 및 플라스틱의 연소 방지·지연 효과를 위해 작업과정 중에 첨가·반응시키는 물질
23. 부유제 (Flotation agents)	광물질의 제련 공정 중에서 광물질을 농축·수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24. 주물용 융(融)제 (Flux agents for casting)	광물질을 녹이는 공정에서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용도분류	내용
25. 발포제·기포제 (Foaming agents)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에 첨가해서 작업과정 중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를 형성하게 하는 물질
26. 식품 및 식품첨가물 (Food·Foodstuff additives)	식품(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첨가하는 물질
27. 연료 (Fuel)	연소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
28. 연료첨가제 (Fuel additives)	연소 효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에 첨가하는 물질
29. 열전달제 (Heat transferring agents)	열을 전달하고 열을 제거하는 물질
30. 유압유 및 첨가제 (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각종 압축기에 넣는 액체(기름) 및 압력 전달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31. 함침(含浸)제 (Impregnation agents)	가공성제품의 품질향상, 형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재에 미리 처리하여 놓는 물질
32. 절연제 (Insulating materials)	전기기기에 있어서 도체 이외의 부분을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물질
33. 중간체 (Intermediates)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34. 실험실용 물질 (Laboratory chemicals)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질
35. 윤활유 및 첨가제 (Lubricants and additives)	두 표면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투입하는 물질
36. 비농업용 농약 및 소독제 (Non-agricultural pesticides and Disinfectants)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물질. 다만, 농약, 의약품·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동물용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용도분류	내용
37. 향료 (Odor agents)	향을 내는 물질
38. 산화제 (Oxidizing agents)	특수한 조건에서 산소를 쉽게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수소를 제거하는 물질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물질
39.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절하거나 안정화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40. 농약 (Pesticides)	농작물을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의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다만, 비료는 제외한다.
41. 의약품 (Pharmaceuticals)	의약품·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외품의 활성성분인 물질
42. 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 (Photochemicals)	영구적인 사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질
43. 공정속도조절제 (Process regulators)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44. 환원제 (Reducing agents)	주어진 조건에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45. 복사용 물질 (Reprographic agents)	전자복사기 등에 쓰여 영구적인 이미지 생성에 사용하는 물질
46. 반도체용 물질 (Semiconductors)	규소단결정체처럼 절연체와 금속의 중간 정도의 전기저항을 갖는 물질로서 빛, 열 또는 전자기장에 의해 기전력을 발생하는 물질
47. 연화제 (Softners)	일반적으로 직물, 가죽, 종이 등을 부드럽게 하거나 고무 등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 배합해 쓰는 가교결합약제 등의 물질
48. 용제 (Solvents)	녹이거나 희석시키거나 추출, 탈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

용도분류	내용
49. 안정제 (Stabilizers)	제조공정이나 사용 중에 열, 빛, 산소, 오존 등에 의해서 열화가 일어나 모양, 색깔, 물성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0. 계면활성제·표면활성제 (Surface-active agents)	한 분자 내에 친수기와 소수기를 지닌 화합물로서 액체의 표면에 부착해서 표면장력을 크게 저하시켜 활성화해주는 물질
51. 탄닌제 (Tanning agents)	탄닌제, 가죽마감제, 가죽케어 등 가죽 처리 물질
52. 점도조절제 (Viscosity adjusters)	수지 등 고분자화합물을 용해한 점성재료의 농도를 안정화시켜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물질
53. 가황(加黃)제·가황촉진제 (Vulcanizing agents)	고무와 같은 화합물에 가교반응을 일으켜 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단단하게 하는 물질
54. 용접제 (Welding and Soldering agents)	금속류의 용접 및 납땜질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55. 기타(Others)	제1호부터 제54호까지에서 규정한 물질 외의 물질

[별표 3] <개정 2020. 7. 14.>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

(제13조제1호 관련)

기간	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 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별표 4] <개정 2018. 12. 2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 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기간은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화학물질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 다. 가목에 따른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연간 매출액에 7,2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4,4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3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0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6] <개정 2018. 12.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600	800	1,000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600	8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않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600	800	1,000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의2	600	800	1,000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00	800	1,000
2)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0	800	1,000
사. 법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600	800	1,000
아.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7호	600	800	1,00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7587
[별표 2]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	7600
[별표 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	7602
[별표 3의2]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7603
[별표 3의3]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	7603
[별표 4] 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7604
[별표 5]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7606
[별표 6]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	7607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7607
[별표 8]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	7609
[별표 9]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7610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7610
[별표 11]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7611

[별표 1] (개정 2024. 4. 9.)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물질의 상태 2) 물용해도 3) 녹는점/어는점 4) 끓는점 5) 증기압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2) 복귀돌연변이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2) 이분해성

비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물용해도가 1mg/ℓ 미만인 화학물질
- 2) 영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같은 표 제43호에 따른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화학물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1)부터 3)까지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야	시험항목
1)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물질의 상태 나) 물용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바) 옥탄올/물 분배계수 사) 밀도 아) 입도분석
2)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3)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어류급성독성 나) 이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비고: 2)나)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3호나목3) 및 같은 목 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인화성 2) 폭발성 3) 산화성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2) 눈 자극성/부식성 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분야	시험항목
	5) 반북투여독성(28일) 6)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담수조류 생장저해 2) pH에 따른 가수분해

비고

1. 나목1)의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나목4)의 시험동물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제2호2)나)의 복귀돌연변이 및 나목3)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4.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점도 2) 해리상수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본질적분해성 2) 분해산물의 확인 3) 어류만성독성 4) 물벼룩만성독성 5) 육생식물 급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흡착 및 탈착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다목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2호3)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5.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반북투여독성(90일) 2) 최기형성 3) 2세대 생식독성 4) 발암성
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2) 육생식물 만성독성 3)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5) 저서생물 만성독성 6) 생물농축성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다목 및 제4호다목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2호3) 및 제3호다목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6.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제조·수입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0.1톤 이상 1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나. 1톤 이상 10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마. 1,000톤 이상	1)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2) 1) 외의 경우 제3호에 따른 시험자료

비고: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 3) 잔류단량체의 함량(%)
-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7. 나노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가. 입자크기
- 나. 입자크기분포
- 다. 입자모양
- 라. 종횡비(縱橫比, aspect ratio)

8.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0.1톤 이상 1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나. 1톤 이상 10톤 미만	제2호1)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마. 1,000톤 이상	라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2호2) 및 3)에 따른 시험자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는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全文: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원문 및 국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 및 세부작성방법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19. 12. 20.>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위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제8호에 따른 최종 노출시나리오에서 기술하고 있는 위해성관리대책을 요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 자료”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일반원칙

가.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성이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나. 화학물질의 제조 및 하위 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해성과 권고되는 위해관리수단·취급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 수준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구조 유사성으로 인해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의 위해성이 유사하거나 규칙적인 경향을 가지는 하나의 그룹이나 물질 카테고리로 간주되어 어떤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가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의 작성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료를 이용하여 위해성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마.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험계획서에 따른 추가적인 시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필요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바. 위해성 자료에는 다음의 평가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다음 1)부터 5)까지를 평가한 결과 화학물질이 별표 7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성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6) 및 7)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2) 환경에 대한 위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3) 환경에 대한 위해성(생태영향)평가

4)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성평가

5) 잔류성·축적성 평가

6) 노출평가(노출시나리오 개발 및 노출예측)

7) 안전성 확인

사. 바목 6)의 노출평가는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를 확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전 생애 동안 제조·사용되는 방법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거나 하위사용자에게 통제하도록 권고하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세부 조건인 노출시나리오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3. 바목 1)에 따른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중 폭발성, 인화성 및 산화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화학물질의 용도에서 발생하는 용량(농도)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바목 2)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위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환경에서의 분해, 농축 등 거동 특성을 평가한다.

나. 분해성을 고려한 먹이사슬을 통한 축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바목 3)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위해성(생태영향) 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와 관련된 환경영역에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도출하여야 한다.

나. 1) 수생(침전물 포함)생물, 2) 육생생물, 3)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성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바목 4)에 따른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성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용량(농도)을 도출하여야 한다.

- 나. 1) 급성영향(급성독성, 자극성 및 부식성), 2) 과민성, 3) 반복투여독성, 4) 발암성·변이원성(유전독성)·생식독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7. 바목 5)에 따른 잔류성·축적성 평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8. 바목 6)에 따른 노출 평가

가. 노출 평가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정성적 및 정량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환경매체에 미치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용량·농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아래의 2단계로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노출시나리오의 개발 또는 적절한 용도와 노출 범주의 개발
- 2) 노출예측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충분히 통제됨을 입증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의 노출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먼저, 이용 가능한 모든 유해성 정보, 취급조건 및 위해관리수단에 대한 초기 가정한 초기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예상노출량에 따라 작성한다.
- 2) 초기 노출시나리오에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요소를 수정하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라. 개발된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1) 배출예측, 2) 화학물질의 거동 및 경로에 대한 평가, 3) 노출수준 예측의 세 가지 요소를 수반하여 노출을 예측해야 한다.

마.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소비자, 작업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노출수준을 예측해야 한다. 이 경우 인체 노출과 관련된 모든 경로(흡입, 입, 피부 및 이들의 조합)를 포함한다.

9. 바목 7)에 따른 안전성확인

가. 제8호에 따른 노출시나리오에 기술한 위해성관리대책에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나. 모든 배출원에서 화학물질이 모든 환경 영역으로 유출·배출 및 손실되는 총 결과를 통합하여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검토해야 한다.

10. 유해성 자료는 아래의 형식에 따라 각 구성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유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2.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3. 제조 및 확인된 용도
4. 분류 및 표시
5.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 가. 폭발성
 - 나. 인화성
 - 다. 산화성
6.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7.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평가
 - 가. 수생 환경영역(침전물 포함)
 - 나. 육생 환경영역
 - 다.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성
8.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 가. 급성독성

- 나. 자극성·부식성
- 다. 과민성
- 라. 반복투여독성
- 마. 변이원성
- 바. 발암성
- 사. 생식독성
- 아. 다른 영향
- 자.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 도출

9. 잔류성·축적성 평가

10. 노출평가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노출시나리오 2의 제목]

-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추가)

11. 안전성 확인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환경
- 인체 건강

[노출시나리오 2의 제목]

- 환경
- 인체 건강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추가)

[전체적인 노출(관련된 모든 배출/유출원의 조합)]

- 환경
- 인체 건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개정 2024. 4. 9.>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

1. 취급방법

가. 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조건

- 1) 저장 공간 및 저장 용기에 대한 재질, 특정한 모양·형태, 환기시설 등
- 2)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
- 3) 온도, 습도, 빛 등 저장·보관 조건
- 4) 정전기 방지 조치

나. 취급 시 주의사항 : 사고 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다.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2.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가.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 1) 화재 진압 시에 착용할 보호구
- 2) 화학물질 자체 또는 화학물질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유해화학물질 등)

나. 소화제 및 소화장비

- 1) 적절한 소화제
- 2)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화제

3. 누출 시 방제요령

가. 예방조치

- 1) 호흡기, 피부 및 눈 보호, 분진관리 등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 2) 배수시설,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환경적 예방조치

나. 방제약품, 장비, 방법: 흡수제 사용, 물을 이용한 가스 저감, 희석 방법 등

4. 폐기방법

가. 적절한 폐기방법

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제어하는 폐기물관리대책

5.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신설 2018. 12. 28.>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

(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 정제, 이송, 시료채취, 분석, 세정 및 장비 보수, 장비 또는 용기의 선적 및 하적,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및 창고 보관을 포함한 해당 화학물질의 전체 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되어 엄격하게 통제·관리될 것
2.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3. 세정 및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제조공정이 시작되어 해당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전에 정화 및 세척 등의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
4.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 정화, 청소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될 것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절차는 해당 제조현장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할 것

[별표 3의3] <신설 2018. 12. 28.>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 가. 별표 7 제3호에 따른 건강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건강 유해성”이라 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환경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환경 유해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나.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항목에서 만성 구분 3 또는 만성 구분 4로만 분류되고,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으로만 분류되는 기존화학물질(둘 이상 분류되는 경우 및 제1호나목과 중복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가.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항목: 구분 4
 - 나.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항목: 피부 자극성 물질 구분 2
 - 다. 별표 7 제3호다목에 따른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항목: 구분 2
 - 라. 별표 7 제3호라목에 따른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항목: 피부 과민성 물질 구분 1
 - 마. 별표 7 제3호사목에 따른 생식독성 물질 항목: 추가 구분
 - 바. 별표 7 제3호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 항목: 구분 3
 - 사.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른 오존층 유해성 물질 항목: 구분 1

[별표 4] <개정 2019. 9. 16.>

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1. 영 제13조제8호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시험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점도 2) 해리상수	1) 추가 유전독성 2) 반복투여독성(28일) 3) 반복투여독성(90일) 4)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5) 최기형성 6) 2세대 생식독성 7) 발암성	1) 어류만성독성 2) 물벼룩만성독성 3) 육생식물 급성독성 4)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5) 육생식물 만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저서생물 만성독성 9) 본질적분해성 10) 분해산물의 확인 1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12) 생물농축성 13) 흡착 및 탈착 1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2.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옥탄올/물 분배 계수	1) 급성경구독성 2) 급성경피독성 및 급성흡입독성 3) 피부 자극성/부식성	1) 어류급성독성 2)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3) 담수조류 생장저해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4) 눈 자극성/부식성 5) 피부 과민성 6) 복귀돌연변이 7)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제이상 8) 시험동물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9) 추가 유전독성 10) 반복투여독성(28일) 11) 반복투여독성(90일) 12)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13) 최기형성 14) 2세대 생식독성 15) 발암성	4) 어류만성독성 5) 물벼룩만성독성 6) 육생식물 급성독성 7)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8) 육생식물 만성독성 9)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10)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11) 저서생물 만성독성 12) 이분해성 13) 본질적분해성 14) 생물농축성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말한다.

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험자료의 범위

- 1)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다만, 등록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물질의 상태 나) 용융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바) 옥탄올/물분배 계수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가) 어류급성독성 나) 이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라) 담수조류 생장저해 마) pH에 따른 가수분해 바) 본질적분해성 사) 분해산물의 확인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사) 밀도 아) 입도분석 자) 인화성 차) 폭발성 카) 산화성 타) 점도 파) 해리상수	마)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 독성 바) 눈자극성/부식성 사)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제이상 아)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자) 반복투여독성(28일) 차)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카)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타) 반복투여 독성(90일) 파) 최기형성 하) 2세대 생식독성 거) 발암성	아) 어류만성독성 자) 물벼룩만성독성 차) 육생식물 급성독성 가)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타)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파) 흡착 및 탈착 하)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거) 육생식물 만성독성 니)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더)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러) 저서생물 만성독성 머) 생물농축성

2) 그 밖의 경우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점도 나) 해리상수	가) 추가 유전독성 나) 반복투여독성(90일) 다)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라) 최기형성 마) 2세대 생식독성 바) 발암성 사) 급성흡입독성	가) 어류만성독성 나) 물벼룩만성독성 다) 육생식물 급성독성 라)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마) 육생식물 만성독성 바)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사)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아) 저서생물 만성독성 자) 본질적분해성 차) 분해산물의 확인 카)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타) 생물농축성 파) 흡착 및 탈착 하)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험자료의 범위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점도 나) 해리상수	가) 추가 유전독성 나) 반복투여독성(90일) 다)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라) 최기형성 마) 2세대 생식독성 바) 발암성 사) 급성흡입독성	가) 어류만성독성 나) 물벼룩만성독성 다) 육생식물 급성독성 라)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마) 육생식물 만성독성 바)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사)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아) 저서생물 만성독성 자) 본질적분해성 차) 분해산물의 확인 카)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타) 생물농축성 파) 흡착 및 탈착 하)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범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5] <개정 2022. 7. 29.>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출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 가. 국외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 예정량 합계가 100kg 미만인 경우
 - 다.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
 - 가. 영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수출국, 수출량 등
 -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실험·분석·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이 경우 제품 단위로 수입되는 시약은 해당 시약의 대표물질로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약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의 성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 다. 영 제11조제1항제4호
 - 1)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영 제11조제1항제4호 각 목 중 해당하는 항목 및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 2) 공정도(임의 제출)
 - 3) 화학물질의 분류정보(해당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로서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가)부터 마)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안전관리자 현황(성명, 직위, 연락처 등)

나) 취급 시 주의사항

다) 저장 및 보관 방법

라)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마)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바) 연구성과물(해당 화학물질의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잔량을 포함한다)의 사후처리방안 및 사후처리결과.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처리결과를 생략할 수 있다.

※ 비교: 1)부터 4)까지의 자료는 연구개발자 등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영 제11조제1항제5호

1) 해당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만, 당해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는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3) 분자량 1,000 미만 및 500 미만의 함량(%)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

마. 영 제11조제1항제6호

1) 표면처리과정 확인 목적의 공정도식도

2)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간 반응구조식 및 표면처리 비율

3)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및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영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 공정도식도 등 화학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현장분리증간체의 경우 유출 또는 노출의 차단에 관한 기술적 방법 설명

3. 삭제 <2015.10.30.>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톤수 범위(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무게 범위
1.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이상 0.1톤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구분 1 또는 구분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5.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6.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7.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8.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 화학물질의 분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구분에 따른다.
- 물리적 위험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폭발성 물질”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및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 “에어로졸”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그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 마. “고압가스”는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 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 사.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과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자.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 차.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파.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 하.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 거. “유기과산화물”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 나.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바. “발암성 물질”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 사.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아.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자.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한다.

5. 화학물질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명칭: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상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 나.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다.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 라.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 마.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 바.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사.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물질 분류번호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개정 2019. 12. 20.>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

1. 용도의 범주: 주요 용도의 확인
 - 가. 산업적/전문적 용도
 - 나. 소비자 용도
2. 용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
 - 가. 산업적/전문적 용도
 - 1) 가) 밀폐된 시스템에서의 사용, 나) 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써의 사용, 다) 비분산적 사용, 라)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 마) 그 밖의 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2) 시설의 형태를 가) 저장보관시설, 나) 이송운반시설, 다) 사용시설, 라) 환경오염 방지시설, 마)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 나. 소비자 용도: 소비자의 구체적인 사용례를 작성
3. 주요 노출경로(화학물질이 배출원으로부터 인체 또는 환경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를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술
 - 가. 인체 노출: 1) 입, 2) 피부, 3) 흡입, 4)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 나. 환경 노출: 1) 수계, 2) 대기, 3) 폐기물, 4) 토양, 5)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4. 노출형태에 관한 구체적 기술
 - 가. 돌발적·간헐적, 나. 가끔씩, 다. 지속적·빈번한, 라.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5. 제조·사용량 및 제조·사용일수에 관한 기술
 - 가. 일일 평균 제조·사용량을 작성
 - 나. 연간 예상 제조·사용 일수를 작성

[별표 9] <개정 2024. 4. 9.>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결정하여야 한다.
 - 가.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 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되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 라. 임의로 제출된 자료 등의 적정성·신뢰성
 - 마. 영 제3조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가. 반응성, 가연성 등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
 - 나. 급성독성, 자극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일시적 섭취 또는 단기간에 직접 노출로 인한 유해성
 - 다.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변이원성(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로 인한 유해성
 - 라. 수생생물독성, 육생생물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 마. 분해성, 생물농축성,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으로의 일시적 또는 반복적 유출로 인한 유해성
 - 바.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
 - 사. 외국에서의 규제 상황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항목별로 구체적인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개정 2021. 10. 14.>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시험기관 지정취소
5)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2호	경고	시험항목 또는 시험분야 지정취소		
6)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7)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4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0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1] <개정 2023. 12. 18.>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00,000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100,000원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1) 등록의 면제 확인	50,000원
2) 신고의 면제 확인	30,000원
다.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50,000원
2)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000원
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20,000원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20,000원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15,000원
사.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2,000원

2. 감면기준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80%를,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감면한다.
-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8편 환경보건

09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619	제1조(목적) 7619	제1조(목적) 7619
제2조(정의) 7620	제1조의2(정의) 7620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7620
제2조(정의) 7621		
제3조(적용범위) 7622		
제4조(기본이념) 7622		
제5조(국가 등의 책무) 7623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7623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7623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7624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7624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7625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7626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7626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7626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7626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7627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627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627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7628	
	제5조(회의) 7628	
	제6조(간사) 7629	
	제7조(전문위원회) 7629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7629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7630	
	제9조(수당과 여비) 7630	
	제10조(운영세칙) 7630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7630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7630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7631		
제2장 위해성평가 등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7632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7632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7632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7632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7633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7633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7633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7634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7634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7634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7634
		제6조(조사의 방법) 7635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7635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7635
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 7635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7635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7637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 7636	
제16조 삭제 7638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7638		
제17조 삭제 7640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7640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이행) 7640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7641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7641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7641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7641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7642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7642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7644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7644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7645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7645		
제20조의6(과징금 처분) 7646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7646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7646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7646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7646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생성 관리) 7647	제15조 삭제 7647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7647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7647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7649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7648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7649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7651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7651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7650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7651
		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7652
		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7653
		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7653
제23조의3(교육) 7653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7654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7654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7656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생성평가 등) 7656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7656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7656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7657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7658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7659		
제24조의2(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7661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7661
제24조의3(자가관리계획의 수립) 7662		제11조의11(자가관리계획의 수립) 7662
제25조(어린이 위생성 정보의 제공) 7663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7663	제19조의3(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7663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7664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7666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7667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7668 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7668 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668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7669 제29조의2(수수료) 7670 제29조의3(청문) 7670 제29조의3(청문) 7670 제30조(위임 및 위탁) 7670 제30조(위임 및 위탁) 7673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7674 제31조(벌칙) 7675 제31조의2(형의 감면) 7676 제32조(양벌규정) 7676 제33조(과태료) 7677 부칙 7678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 7664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7665 제20조의3(환경보건센터 재지정) 7665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7666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7668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7668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7670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674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7677 제23조(규제의 재검토) 7678 부칙 7678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7664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7665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7666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668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7669 제15조(수수료) 7670 부칙 7678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2008. 3.21 법률 제8946호 개정 2010. 1.18 법률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1. 5.19 법률 제10655호 2011. 7.21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2. 2. 1 법률 제1265호 2013. 1. 1 법률 제11619호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4. 1.14 법률 제12243호 2014. 3.24 법률 제12524호 2016. 1.27 법률 제13893호 2017.10.24 법률 제14931호 2018. 4.17 법률 제156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8. 6.12 법률 제15661호 2020. 2.18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기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 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 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55호 2023. 8.16 법률 제19668호 2024. 3.19 법률 제20384호	제정 2009. 3.12 대통령령 제21347호 개정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9호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2. 7.31 대통령령 제23997호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4호 2013. 6.28 대통령령 제24649호 2014. 4.10 대통령령 제25301호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1호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 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9.24 대통령령 제25626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5. 6. 1 대통령령 제26295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2015. 7.24 대통령령 제264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 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 8.11 대통령령 제26482호 2016. 7.12 대통령령 제27336호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2.20 대통령령 제2767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4.24 대통령령 제28826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 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 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5호 2020.12.31 대통령령 제31357호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5호 2022.11.22 대통령령 제33001호 2023. 5.23 대통령령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10.31 대통령령 제33840호 2024. 2. 6 대통령령 제34193호	제정 2009. 4.17 환경부령 제330호 개정 2010. 6.30 환경부령 제373호 2011.11.14 환경부령 제429호 2012. 8. 2 환경부령 제471호 2013. 7. 2 환경부령 제511호 2014. 3.13 환경부령 제549호 2014. 9.25 환경부령 제575호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6. 7.27 환경부령 제673호 2016.12.22 환경부령 제68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문화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12.31 환경부령 제900호 2021. 6. 8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4. 7 환경부령 제980호 2024. 2.16 환경부령 제1076호 2024. 3.11 환경부령 제108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 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5. 19., 2012. 2. 1., 2013. 6. 4.〉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への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9. 12. 31., 2021. 7. 6.〉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13., 2014. 12. 24., 2016. 12. 22., 2018.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6. 가습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환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5. 19., 2012. 2. 1., 2013. 6. 4., 2024. 3. 19.〉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결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 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화 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 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본조신설 2012. 7. 31.]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환경보전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하 “환경보전취약계층”이라 한다)이 환경성질향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시행일: 2024. 9. 20.] 제2조제9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본이념) 환경보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조치가 필요한 질량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 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 수용제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 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에	1.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6.]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27.>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27., 2024. 3. 19.>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정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삭제 (2024. 3. 19.)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 2025. 1. 1.] 제9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 5.>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관계 공무원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6.]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4.> 1. 위원회의 위원 2. 환경보전 전문가 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 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연구하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4. 관계 공무원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21. 7. 6.>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8조의3(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 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 증진을 위한 시책 -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환경보전 전문가 - 환경보전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 환경보전 관련 산업계 종사자 -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10조의2(지역환경보전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전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 증진을 위한 시책 - 삭제 <2024. 3. 19.> -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1. 7. 6.]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전 전문가 2. 환경보전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전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2025. 1. 1.] 제10조의2 제2장 위해성평가 등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24. 2. 6.>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시행일: 2025. 8. 7.] 제12조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할 때에 사업장의 작업환경 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에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초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 2. 정밀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날의 90일 전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항목에 관한 자료 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		선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중앙건강영향조사반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건강영향조사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 1. 5.]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4로 이동 <2021. 7. 6.>]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3. 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3. 19.> [전문개정 2021. 1. 5.] [시행일: 2025. 1. 1.] 제15조 제16조 삭제 <2021. 1. 5.>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1. 환경부장관 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 5.] 제17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17조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이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4. 대책의 추진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2025. 1. 1.] 제17조의2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18조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본조신설 2021. 7. 6.]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는 제1항의 책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8. 6. 12.>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2014. 3. 24.>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 1. 건강피해의 상담 및 검진 비용 2. 건강피해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비용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다. ④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기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1.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조부모 바. 형제자매 2. 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장례비 ⑦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부장관은 환경보 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제20조의2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 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1. 제6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2. 제6항제2호의 유족: 장례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 인정의 신청 방법·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4. 10.]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 7. 6.>]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제20조의3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보건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운영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제20조의4 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제20조의5 제20조의6(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제20조의6 제21조(환경보전 지표의 개발)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전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환경보전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제14조(환경보전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9조(환경보전 지표의 개발 및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전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상태를 측정·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전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생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국내의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정밀조사 자료 2. 대기·수질·토양·실내공기·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3. 대기·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4.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2. 7. 31.>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7. 31., 2015. 6. 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0. 2. 18.>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7. 2., 2016. 7. 27., 2020. 12. 31., 2022. 4. 7.> 1. 시장·군수·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 2. 교육감: 영 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4. 7.>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2023. 8. 16.>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⑦ 제23조제6항 본문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⑧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2023. 8. 16.>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4. 2. 6.>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본조신설 2014. 9. 24.] [참조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4. 9. 24.>]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4. 7.>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4. 7.>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0., 2024. 2. 16.> 1. 기본검사: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증감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가.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본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검사가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⑨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2023. 8. 16.> ⑩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20. 2. 18., 2023. 8. 16.> [제목개정 2012. 2. 1.]		필요한 경우 ⑤ 법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로, 마감재료,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이하 “도로등”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등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9. 25.] [중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4. 9. 25.>]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명령서에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4. 7.>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공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검사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7. 31.]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 9. 24.>]	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4. 7.>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6. 7. 27.] [중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16. 7. 27.>]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6. 7. 27., 2022. 4. 7.> 1.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2016. 7. 27.)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6. 7. 27., 2022. 4. 7.> 1. 검사기관의 기관명·대표자·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8. 2.]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6. 7. 27.>] 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또는 대표자 3. 기술인력 및 시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6. 7. 27., 2022. 4. 7.>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5., 2016. 7. 27., 2022. 4. 7.>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④ 검사기관은 시험·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12. 2. 1.] 제23조의3(교육)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6. 7. 27.> [본조신설 2012. 8. 2.] [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7로 이동 <2016. 7. 27.>] 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7.] [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2016. 7. 27.>] 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 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 1.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기간 2. 검사기관 지정번호 3. 기관명 또는 대표자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②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7. 27.> [본조신설 2012. 8. 2.] [제11조의5에서 이동 <2016. 7. 27.>]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안심 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2.> 1.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기준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교사(敎舍)안에서의 공기질유지기준) 3.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4.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22., 2022. 4. 7.> 1.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관련 성적서 2. 환경안심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3.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2. 4. 7.>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되, 갱신에 필요한 절차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안심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확인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다. ⑧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27.]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4. 3. 24.>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4. 3. 24.>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어린이용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4. 3. 24.>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에게 어린이 용도로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7.>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판매증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증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가 들어있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20. 5. 26.>	이하 같다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0. 28.>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의 수락 여부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③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24조제4호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說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4. 7. 14.>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1. 사업자의 이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중전 제11조의9는 제11조의10으로 이동 <2020. 12. 31.>]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⑩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⑪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권고,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4. 1. 14., 2014. 3. 24.>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7. 14.> 1.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2. 해당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명칭 3. 해당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유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4.> [제목개정 2014. 7. 14.]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용품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20. 5. 26., 2024. 3. 1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	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6. 1., 2024. 2. 6.>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②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9. 24.]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4. 3. 24.>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4. 3. 24.>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어린이용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4. 3. 24.>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에게 어린이 용도로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가 들어있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20. 5. 26.>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⑩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⑪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권고,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4. 1. 14., 2014. 3. 24.> [시행일: 2024. 9. 20.] 제24조제1항 제24조의2(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관련 사업자는 사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2. 위반사항 3. 조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1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6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2. 16.] [중전 제11조의10은 제11조의11로 이동 <2024. 2. 16.>]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⑤ 관련 사업자는 사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3. 8. 16.]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3. 8. 16.)] 제24조의3(자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2.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의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2. 6.]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24. 2. 6.)]	제11조의10(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16.> 1. 사업자 일반현황 2.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현황 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19.] [제24조의2에서 이동 (2023. 8. 16.)]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24.>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제19조의4(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감감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위한 방법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7. 2.] [제11조의10에서 이동 (2024. 2. 16.)]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어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지원의 한도액·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9조의3에서 이동 <2024. 2. 6.>]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2.> 1.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이하 “지정목적”이라 한다)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2.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에 충실할 것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4. 연구인력·조직·시설·장비 등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갖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 2016. 7. 27.> 1. 연구인력 현황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환경보건 분야 연구 실적 4. 유효기간동안의 사업계획서 5.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서 7.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출 것 5. 환경보전 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이 있을 것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 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6. 7. 12.>] 제20조의3(환경보건센터 재지정)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6. 1. 27.>	출 것 5. 환경보전 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이 있을 것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 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6. 7. 12.>] 제20조의3(환경보건센터 재지정)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8.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또는 재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7. 27.>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7. 2., 2016. 7. 27.>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6. 1. 27.>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정기평가: 연 1회 환경보건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2.> 1.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 역학조사 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③ 평가단의 단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평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2.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 1.]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6. 1.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8.]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6. 7. 12.>]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2.]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③ 삭제 <2012. 2. 1.>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출 것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영 제22조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건강과 생태계 영향,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및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등에 관한 정보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 정책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 [본조신설 2016. 7. 27.]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0. 2. 18.)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3. 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3조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4., 2016. 7. 27.)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는 경우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4.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생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2. 18.> ④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20. 2. 18.> 제29조의2(수수료)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29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2012. 2. 1.] 제29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4. 3. 19.> 1.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취소 2.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2012. 2. 1.] [시행일: 2024. 9. 20.] 제29조의3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삭제 <2020.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 10. 28., 2016. 7. 12., 2022. 11. 22., 2024. 2. 6.>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15조(수수료)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2. 8. 2.]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2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2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접수 2의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및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4. 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에는 이 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0. 28., 2012. 7. 31., 2020. 12. 31., 2021. 7. 6., 2022. 11. 22.>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전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 2의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 조사 2의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인자의 노출 평가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 9. 24., 2016. 7. 12., 2016. 11. 29., 2018. 4. 24., 2020. 12. 31., 2021. 7. 6., 2022. 11. 22.>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관리 등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삭제 <2022. 11. 22.> 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증지나 어린이용품의 회수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6.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제30조제2항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 11. 22., 2023. 5. 23.>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6.> 1. 환경보건센터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4., 2021. 7. 6.> 1. 환경보건센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수탁기관명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3. 6. 28., 2018. 4. 24., 2021. 7. 6.> [제목개정 2021. 7. 6.]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9., 2014. 3. 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도지사 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1. 7. 6.>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4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2.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1. 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21. 1. 5., 2023. 8. 16.> 1.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④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 5. 19., 2021. 1. 5.> ⑤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3. 24., 2021. 1. 5.> [시행일: 2025. 1. 1.] 제31조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9., 2014. 3. 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1. 5., 2024. 3. 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21. 1. 5., 2023. 8. 16.> 1.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④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 5. 19., 2021. 1. 5.> ⑤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3. 24., 2021. 1. 5.> [시행일: 2025. 1. 1.] 제31조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3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21. 1. 5., 2023. 8. 16.>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1. 22.> [본조신설 2016. 7. 12.]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 5.> 부칙 <제894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1.1> 제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제1조의 2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014년 9월 25일 2. 제16조의2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2014년 9월 25일 3. 제19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9. 24.] 부칙 <제21347호, 200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1.1.>	부칙 <제330호, 2009.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적용례) 제10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한다. 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55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부칙 <제23269호, 2011. 10. 28.>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56호, 2011. 12.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23997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생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1265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제1조의2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중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한다)의 보육실 및 교실을 말한다. 부칙 <제24294호, 2013. 1. 1.>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49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	부칙 <제373호, 2010. 6. 30.>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 2011. 11. 14.>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 2012. 8. 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 2013. 7. 2.> 이 규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 2014.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호, 2014.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제239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㉔부터 ㉔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㉔부터 ㉔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265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1619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946호 환경보건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	재료를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301호, 2014. 4.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51호, 2014. 7. 14.>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26호, 2014. 9. 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6호, 2014. 12.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한다. ㉔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673호, 2016. 7. 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 2016. 12.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센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가 종전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 실적 등을 평가받은 경우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243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조치의 요청 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6295호, 2015. 6.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 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6435호, 2015. 7. 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482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②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 2021.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장관이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아직 해당 조치가 실시되지 아니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524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10항·제11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9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환경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4931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83호, 2018. 4.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제2조(수입기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 처분·행위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 행위는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처분·행위 또는 교육감에게 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7336호, 2016. 7. 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675호, 2016. 12.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980호, 2022. 4. 7.〉 이 규칙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 2024. 2. 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 2024. 3.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목질판상제품”을 각각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로 한다. 부칙 〈제15661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2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826호, 2018. 4. 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55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68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4호, 2024. 3. 19.〉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제24조제1항, 제29조의3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9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특례) 제1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으로서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31357호, 2020. 12. 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5호, 2021.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2)·3)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세워서 하는 지역계획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울 수 있다. 제3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2)·3)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001호, 2022. 1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9호, 2023. 5.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건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⑯ 생략 부칙 〈제33840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들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93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을 수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7689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7689
[별표 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	7690
[별표 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7691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	7692

[별표 1] <개정 2023. 10. 31.>

건강영양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개발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 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분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3) 중간처분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4)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개정 2021. 7. 6.>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 2)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 3)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합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나.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 나.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삭제 <2021. 7. 6.>

라. 삭제 <2021. 7. 6.>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mg/kg 이하일 것

다.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합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 $\mu\text{g}/\text{m}^3$ 이하일 것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mu\text{g}/\text{m}^3$ 이하일 것

[별표 3] <개정 2021. 7. 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가. 화학, 수질, 토양, 역학, 먹는물 분야(3명 이상) 나. 의학, 생물학, 대기, 실내공기 또는 약취 분야(2명 이상)	가. 시설: 실험실 나. 장비 1) 분석저울(0.0001g) 1대 2) 정제수 제조장치 1대 3) 가열맨틀 1대 4) 가열혼합기 1대 5)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6) 진공펌프 1대 7) 열탈착장치 1대 8) 튜브클리너 1대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가) 소형 체임버시스템 1대 및 클린룸시스템 1대 나) 공기시료채취 펌프 4대(유량 0.1 ~ 1.5L/min 3대, 유량 0.05 ~ 0.1L/min 1대), 유량제어장치 1대, 유량보정장치 1대 및 흡착관 10개 10) 삭제 <2013.6.28> 1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12)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1대 13)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14)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1대 15) 자외-가시선분광광도계(UV/VIS) 1대 16) 광학현미경 1대 17) 원심분리기 1대 1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비고: 위 표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1)부터 9)까지 및 11)부터 17)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의 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23. 10. 31.>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제2호나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환경보건의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나.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시정 명령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법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마.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별표 5] <개정 2024. 2.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1,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3항	100	200	300
다.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250	350	500
라.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250	350	500
마.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3호	250	300	400
바.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4호	250	350	450
사. 법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5호	250	300	400
아. 법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6호	250	350	50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7호	250	350	500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위해성기준(제3조 관련)	7695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0조 관련)	7695
[별표 2의2]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6 관련)	7696
[별표 3]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	7697
[별표 4] 수수료(제15조 관련)	7698

[별표 1] <개정 2019. 12. 20.>

위해성기준(제3조 관련)

1. 초과발암위해도(超過發癌危害度)를 적용할 경우 위해성기준은 $10^{-6} \sim 10^{-4}$ 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해성기준은 위험지수 1로 한다.

비고

1. “초과발암위해도”란 독성역치(독성을 보이는 최소한의 수준)가 없는 환경유해인자에 평생 노출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2. “위험지수”란 독성역치가 있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을 동일 노출기간의 최대허용 노출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0. 6. 30.>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0조 관련)

(단위: mg/kg)

물질	기준
카드뮴	4 이하
비소	25 이하
수은	4 이하
납	200 이하
6가크롬	5 이하

비고: 위 기준의 적합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별표 2의2] 〈신설 2016. 7. 27.〉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6 관련)

1. 검사기관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된 자료는 시험·검사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 자료는 매 시험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시험제목 및 목적(법적 서류 제출용, 일반 연구용 구분)
- 2)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3) 신청업체 및 대표자
- 4) 시험의 개시일 및 종료일
- 5) 시험방법 및 시료명
- 6) 분석 기기조건 및 시험·검사 결과
- 7) 시험성적서의 작성일자 및 고유발급번호
- 8) 시험·검사 결과서 발급의 법적근거 및 사용제한 표기

나.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는 매 시험마다 작성하되, 시료의 전처리, 시험자, 기기 분석 조건, 검정곡선 등 관련 기초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운영관리 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장비, 표준물질 및 시약 관리대장
- 2) 시험분석 장비의 검교정 내역서(성적서 포함)
- 3)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실적
- 4) 주요 분석기기별 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산정 자료
- 5) 품질문서 제·개정본 및 기관의 품질방침에 따른 내부정도관리 실적

라. 시료채취 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신청기관 현황
- 2) 시료채취 대상시설 현황 및 시료채취 지점(시료채취 장면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포함한다)
- 3) 중금속 항목의 경우 간이측정결과

2. 검사기관은 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2호	지정취소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3호	지정취소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4] <개정 2022. 4. 7.>

수수료(제15조 관련)

1.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가.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 교실(보육실) 또는 75제곱미터 면적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50,000
나. 실외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 1개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00,000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는 영 별표 2 제2호가목1)·2), 같은 표 제3호 및 같은 표 제5호가목에 관하여 검사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4. 75제곱미터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호·제7호의 시설에 한정한다.

2.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가. 도로나 마감재료	1) 납 2) 카드뮴 3) 수은 4) 6가크로뮴 5)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7종)	44,200 44,200 44,200 44,200 150,0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나. 도로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1)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험 항목 전부 가) 폼알데하이드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250,000
	2)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 폼알데하이드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24,000 139,000
다. 목재 방부재	다음의 시험항목 전부 1)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2) 크로뮴·구리·비스 화합물계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160,000
라. 모래 등 토양	1) 납	44,200
	2) 카드뮴	44,200
	3) 6가크로뮴	44,200
	4) 수은	44,200
	5) 비소	44,200
	6) 기생충란	39,300
마.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1) 납 2) 카드뮴 3) 수은 4) 6가크로뮴 5) 폼알데하이드 6) 프탈레이트류(7종)	44,200 44,200 44,200 44,200 45,000 150,000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프탈레이트류(7종)”란 영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른 프탈레이트류[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어린이용품과 관련한 시험·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어린이용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한 환경유해인자	가. 다이- <i>n</i> -옥틸프탈레이트(Di- <i>n</i> -octyl phthalate: DNOP, 000117-84-0)	90,000
	나.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isononyl phthalate: DINP, 028553-12-0)	90,000
	다. 트라이부틸 주석(Tributyltin compounds, 688-73-3)	90,000
	라. 노닐페놀(Nonylphenol, 025154-52-3)	90,000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707 제2조(정의) 7707 제3조(적용대상) 770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7709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7709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7710 제7조(배상책임한도) 7710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7710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7711 제10조(연대책임) 7712 제11조(구상권) 7712 제12조(책임의 배분) 7712 제13조(배상방법) 7713 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7713 제15조(정보청구권) 7713 제15조(정보청구권) 7715 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7716 제16조 삭제 7718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707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7707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7709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7710 제5조(환경·안전 관계 법령) 7711 제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7716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조(목적) 7707 제2조(운영기관) 7708 제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7710 제3조(환경오염 사고의 기록·보존) 7710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7712 제5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7713 제6조(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7714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 771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7718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7718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 7718	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7718 제9조(보장계약 체결 사유) 7719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7720 제11조(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7721
제18조(보험자) 7720	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7721	제12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7724
제18조(보험자) 7722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7722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7723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7724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7725	제11조(선지급의 기한) 7725	제13조(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7725
제20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7726	제11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7726	제13조의2(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7726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7727		제13조의3(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7726
제22조(재보험사업) 7727	제12조(재보험사업) 7727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7727	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7727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7728	제14조(의료비) 7728	
	제15조(요양생활수당) 7728	
	제16조(장의비) 7728	
	제17조(유족보상비) 7729	
	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7729	
	제19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의 구성) 7729	
	제20조(심의회의 운영) 7730	
	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 7730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7729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7731
제24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 7731		제15조(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7732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7731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7733	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7733
		제16조의2(피해등급의 기준) 773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7734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7735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7735		
제27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7736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7736		제17조(심사청구의 제기) 7736
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7737		제18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7736
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7737	제23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737	
제29조 삭제 7738		
제30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7739		
제30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7738		
제31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739		
제31조 삭제 7740		
제32조(재심사청구의 제기) 7740		제1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7740
제32조 삭제 7740		
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7741		제20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7740
제33조 삭제 7741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7741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7742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7742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운용) 7743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7743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7743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7744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7744	
	제26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7744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7745		제20조의2(실태조사 대상 등) 7745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보고 등) 7746		제21조(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7746
제40조(학술조사·연구 등) 774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재정지원) 7747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7747	제22조(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7747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7747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7747	제23조(소송지원단의 구성·운영) 7748
제43조(행정처분 등) 7748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7748	
제43조(행정처분 등) 7749	제30조(권한의 위임) 7749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7749	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7749	
	제32조(보고) 7750	제24조(보고) 7750
	제33조(업무의 위탁) 7750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7751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7752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7752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752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753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753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7753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7754		
제48조(양벌규정) 7754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755	
제49조(과태료) 7755	부칙 7755	부칙 7755
부칙 775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4.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填補)하거나 배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보장계약”이란 사업자와 운영기관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 보장계약을 말한다. 9. “보장금”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3. 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제2조(운영기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5.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 8.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1.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防除)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①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40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제3조(환경오염 사고의 기록·보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설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 지역 안의 상시 근무자,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제공(공유를 포함 한다)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와 결과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 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0. 5. 26.> ③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제5조(환경·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17. 3. 27., 2018. 1. 16., 2018. 6. 12., 2020. 12. 1., 2021. 3. 30., 2022. 11. 29.>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일시·장소, 원인, 시설 현황 등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 2.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의 정도 등 인명피해 상황 3. 피해재산 종류별 피해 규모·피해액 등 재산피해 상황 4. 환경오염 사고 후 조치 및 수습 현황 5.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피해배상 현황 등 6. 그 밖의 환경오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등 환경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사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구상권) ①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재·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책임의 배분)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관계의 전반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친다. 제13조(배상방법)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급계약서를 해당 시설의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에 피해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 일시·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6조(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과 그 첨부서류 -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서에 따라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5조 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2., 2023. 4. 18.) 1.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관한 사항 2. 보험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보험가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피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제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공무원, 전문가, 피해자,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정에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에 영향을 준 사정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 전문가 등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 영 제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 7. 제23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제심사청구의 심의 9.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환경오염피해 및 책임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산업안전 및 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7. 해양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제8호에 따른 제심사청구의 심의와 관련하여 제심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를 신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1.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오염피해의 배상 청구를 하였거나 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16조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① 법 제17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③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	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2. 환경책임보험이 개발·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16.> ⑤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6.> 1.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3.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날(법 제17조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법 제1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장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9.> 1.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장계약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장계약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장계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보장계약의 체결·해지 및 종료 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보장금 일부의 선지급, 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및 재보험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보장계약 체결 사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없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제3조제6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⑥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3. 4. 18.>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 1. 사업계획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자 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3항에 서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환경·안전 관계 법령(이하 “환경·안전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중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조업중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 중인 경우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5.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6. 정관 7.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 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 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 보험자 및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사업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⑤ 보험사업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2024. 3. 19.>	2.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4.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사업장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3. 보험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준이 인정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단의 보험자가 제출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평가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험사업단을 대표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자 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 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사업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⑤ 보험사업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여 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시행일: 2025. 1. 1.] 제18조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 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 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3. 4. 18.〉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 사업자가 종전 보험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사업자가 다른 보험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안 경우 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인·허가 기관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⑥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보험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해지 통보서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삭제 〈2018. 6. 12.〉 2. 삭제 〈2018. 6.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3. 4. 18.〉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 사업자가 종전 보험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사업자가 다른 보험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인·허가 기관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⑥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⑦ 환경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19조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지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	제11조(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	제13조(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금액은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원 전 전문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란 환경오염피해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손해조사등을 요구했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본조신설 2024. 4. 16.]	50 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의2(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실시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19.] 제13조의3(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실시일의 7일 전까지 손해 조사의 실시 일시, 조사 사유,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한국산업기술원이 제1항의 실시계획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손해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① 피해자는 피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제12조(재보험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 6. 12.>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조사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4. 1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있다. <개정 2020. 5. 26.>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 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	4. 유족보상비 5. 재산피해보상비 제14조(의료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요양생활수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삭제 <2021. 6. 1.> 제16조(장의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 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 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시행일: 2024. 8. 17.] 제23조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2.>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유족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피해보상비의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 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제19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6. 12.>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 6. 12.>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심의회 및 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손해보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은 심의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위원이 임명하는 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 6. 12.> ⑤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제칙·회폐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이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6. 12.> ②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 6. 12.> ③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8. 6.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 ① 삭제 <2024. 3. 19.>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③ 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19.> [제목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24조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운영기관의 임직원 2.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환경부장관은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⑤ 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선임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⑥ 비상임 조사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4. 4. 19.>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한다) 3.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4.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단서·검사서류·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7.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9.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15조(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피해의 내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단은 예비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원 분포 현황 등 지역 현황,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환경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⑤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⑥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	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본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조사단은 본조사표를 작성하여 피해내용 등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설 등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장이 정한다. 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예비조사·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선지급의 기준,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들은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들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⑤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⑥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비조사·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선지급의 기준,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25조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②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등과 환경부장관(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26조 제27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어난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제17조(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운영기관은 법 제28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③ 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2024. 3. 19.>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19.> [제독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28조 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①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2.>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 6. 12.>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 내용과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29조 제30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및 손해보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6. 12.>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⑥ 심사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운영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18. 6. 12.> ⑦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⑧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제30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0. 5. 26., 2024. 3. 19.>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제목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30조 제31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사건의 심리·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5. 26.> 1. 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31조 제32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제32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32조		제1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2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20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재심사청구 사항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主文)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2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를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33조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6. 재결 연월일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재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③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34조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 12. 12.> 1. 재보험료 2. 보장계약금 3.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4. 제3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6. 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8.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④ 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2.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 3. 제35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구제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 재보험금의 지급 6.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제5장 보칙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인·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인·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1.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운영 및 집적·관리 2. 법 제38조제2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의 집적·관리 3.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관리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의 인·허가 및 처분 자료 2. 환경책임보험의 계약·변경·해지,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3. 보장계약의 계약·변경·해지 및 보장금 자료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26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작성된 재난 상황의 기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보험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0조의2(실태조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업단이 정한다. 1.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2. 보험자 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의 실태조사 요청 현황 3.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최근 3년 이내의 실태조사 결과 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취급 물질, 배출 물질, 배출량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의 예방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단체, 보험자, 환경책임보험 가입자 등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보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 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학술조사·연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등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 등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등 환경책임보험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자나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4. 19.] 제21조(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보험자는 법 제39조제4 항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 등을 매년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문서로 환경부장관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입의무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술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이행하였을 것 4. 연간 보험료가 해당 사업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용,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6. 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제22조(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번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은 소송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23조(소송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번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② 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소송지원단의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④ 그 밖에 소송지원단의 변호사 보수, 소송지원의 사후관리 등 소송지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9.>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43조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3. 4. 18.>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시설(제2항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6. 12.>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3.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호의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6. 12.> 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2023. 4. 18.>	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3조 각 호의 시설(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직접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 6. 12., 2024. 4. 16.>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구상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회 및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선지급의 신청 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지급 여부·피해등급 등의 결정·통지 및 지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업무 5. 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의 통지에 관한 업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제24조(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3. 4. 18.>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5조제5항,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2023. 4. 18., 2024. 3.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44조	7. 법 제30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업무 8.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제정의 설정·운용, 자금 차입, 기탁 금품의 접수 및 기부금 제정의 설정·관리에 관한 업무 9.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제정의 관리·운용 및 환수·납입에 관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4. 4. 16.>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험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 4. 16.>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 6. 12., 2024. 4. 16.>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손해조사등의 착수 사실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연구 및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45조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5. 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번호인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 6. 12.)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⑦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6. 12.) ⑧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2. 12.>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2. 12., 2024. 3. 19.> [시행일: 2025. 1. 1.] 제46조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42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배상청구소송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4. 4. 16.]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 제15조제6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의 범위: 2022년 1월 1일 -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및 공동계약체결의 사유: 2022년 1월 1일 - 제2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 3. 8.] 제6장 벌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4. 18.>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2.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2949호, 2014. 12. 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제26806호, 2015. 12. 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부칙 <제634호, 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제1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제11호”로 한다. 〈8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0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인·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기관 등이 행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피해자 등이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피해자 등이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로 본다.	별표 3 및 별표 4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37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부칙 〈제27810호, 2017. 1. 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①까지 생략 ②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 2018. 6. 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8호, 2024. 4. 19.〉 이 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7182호, 2020. 3. 31.〉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362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70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28966호, 2018. 6. 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12호, 2020. 12.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576호, 2021. 3. 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등이 구제급여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86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 2. 종전의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3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 심의·결정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능조정 등에 따른 재심사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②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19호,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제1항에 따라 피해등급을 다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74호, 2022. 6. 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33004호, 2022. 11. 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34414호, 2024. 4. 16.>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7763
[별표 2]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7763
[별표 3]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7766
[별표 4]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7766
[별표 5]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7767
[별표 6]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7767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7768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7768

[별표 1] <개정 2019. 7. 2.>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시설의 종류	범위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 처리시설
2.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저장시설, 교반(휘저어 섞음)시설, 처리시설

[별표 2] <개정 2021. 6.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1. 「대기환경보전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사업장 으로서 같은 법 제25 조에 따른 1종사업장 의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 른 특정대기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 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 른 특정대기유해 물질이 포함된 오 염물질을 배출하 는 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사업장으 로서 같은 법 제25 조에 따른 2종 또 는 3종 사업장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 을 제외한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제11호에 따 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 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포 함된 오염물질을 배	1) 「물환경보전법」 제 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이 포함되지 않은	가군 및 나군의 시설 을 제외한 시설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시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 사업장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매립면적 2백만㎡ 이상인 매립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인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해당 시설 전체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해당 시설 전체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중 총 용량 1만kL 이상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중 총 용량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7.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이하 이호에서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주요취급시설로서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주요취급시설로서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취급하는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8.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해당 시설 전체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이 표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또는 제3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시설	이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또는 제3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기준의 100배 이상인 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기준의 100배 미만인 시설 (합계 용량 1천kl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비고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위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2. 동일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내에 위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및 제7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을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및 제7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가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가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나군의 시설로 본다.
4. 나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나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다군의 시설로 본다.
5. 사업장과 연결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은 출하를 위한 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업장별로 이와 관련된 배관 및 부속 공작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별표 3] <개정 2021. 6. 1.>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1.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 시설
 -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2.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3.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비고

제2호의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등록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보장 금액
1. 별표 2 가군의 시설		300억원
2. 별표 2 나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8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100억원
3. 별표 2 다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3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50억원

비고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은 사업장별로 환경오염피해 한 건마다 위 표의 보장 금액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21. 6. 1.>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요양생활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피해등급	지급비율(%)
1등급	47.50
2등급	34.20
3등급	22.80
4등급	11.40
5등급	4.75
등급 외	미지급

비고

1.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지급하며,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등급을 결정할 날부터 5년마다 피해등급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
2. 4등급 및 5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월 단위로 지급하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21. 6. 1.>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유족보상비는 제16조에 따른 장의비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제14조에 따른 의료비와 제15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피해등급	지급비율(%)
1등급	1,500.00
2등급	1,080.00
3등급	750.00
4등급	500.00
5등급	250.00

비고 : 피해등급 산정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피해등급은 1등급으로 본다.

[별표 7] <개정 2024. 4. 16.>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8] <개정 2024. 4.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1호	250	35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 및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다.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라. 법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2호	250	350	500
마.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바.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3호	250	350	500
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4호	250	350	500
아.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5호	250	350	50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피해등급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7773

[별표] <신설 2021. 6. 1.>

피해등급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피해등급은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에 관하여 제1호에 따른 중증도 평가 결과 산정된 중증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결정된다.

1. 중증도 평가

가. 중증도 평가지표

개별 질환에 관하여 다음 표의 평가지표에 따라 각각 0점부터 100점까지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평가지표	내용
1) 증상	질환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정신적인 증상의 정도
2) 합병증	2차적으로 더욱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도
3) 예후(豫後)	질환을 치료받지 않을 경우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정도
4) 치료예정기간	질환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기간

비고

- 중증도 평가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환에 대한 진단·검사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되,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의 감증을 받을 수 있다.
- 1) 및 2)의 평가지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중증도 평가점수의 산정

$$\text{중증도 평가점수} = D_1 + [(100 - D_1)/100 \times \{(1/2 \times D_2) + (1/4 \times D_3) + (1/8 \times D_4) + (1/16 \times D_5) + \dots + (1/2^{n-1} \times D_n)\}]$$

비고

D는 가목에 따라 개별 질환을 평가지표별로 각각 산정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은 질환부터 D1, D2, D3, D4, D5...Dn 순으로 부여한다.

2. 중증도 평가점수에 따른 피해등급

피해등급	중증도 평가점수
1등급	90점 초과 100점 이하인 경우
2등급	70점 초과 90점 이하인 경우
3등급	50점 초과 70점 이하인 경우
4등급	30점 초과 50점 이하인 경우
5등급	20점 초과 30점 이하인 경우
등급 외	0점 이상 20점 이하인 경우

비고

피해자가 중증도 평가를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질환의 발병에 음주·흡연 등 다른 원인의 영향이 큰 경우 등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편 집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 마 루

전산사무관 노 원 택

곽 현 아

환 경 법 전 (하권)

2024년 6월 일 인쇄

2024년 6월 일 발행

발행처 : 환 경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 201-6396

인쇄처 :

비매품